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8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왕현중 외 4인 지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선린 우호의 관계를 지속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침략과 저항, 지배와 수탈이라는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근대사의 과정에서 전개된 동북아 삼국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날까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의 근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후세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전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삼국의 역사인식이 동일하지 않으며 심지어 과거에 대한 역사 인식 자체가 왕왕 국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의 이면에는 조선의 개혁 및 자립의 몸부림, 동북아시아로의

팽창을 노리는 일본의 야망, 쇠퇴해가는 제국 청(淸)의 실상이 모두 오버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승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가 무너졌음을 강하게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청일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에 대한 인식은 관련 당사국 각각의 주관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호간에 진지한 학술적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청일전쟁 시기 조선·청·일본 삼국의 상호인식과 정략의 충돌,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했으며 그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모두 다섯 편의 연구 논문을 통해 청일전쟁의 발발 및 전개 과정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여 청일전쟁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학계가 공조하여 청일전쟁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연구를 개척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국제적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일반 독자의 역사 이해를 더 깊게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과거의 아픈 역사 기억을 슬기롭게 치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 이해의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역사재단

은 역사 왜곡에 대처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동북아 역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미래 구축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책머리에 ... 11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대일 정략과 종속의 심화 | 왕현중

I . 머리말 ... 17

II . 1894년 조선의 정치 상황 변화와 일본의 개입 ... 23

1. 농민전쟁의 발발과 청·일의 개입 ... 23

2. 일본의 전쟁 유도 전략... 31

III. 갑오개혁 정부의 성립과 대일관계 ... 36

1. 갑오개혁 정권의 성립 과정 ... 36

2. 갑오개혁 정권의 청일전쟁 협조 ... 42

IV. 갑오개혁 정권의 개혁 방향과 대일 정략 ... 51

1. 조선 정치세력의 대일 정략과 혼선 ... 51

2. 보병사절의 파견과 대일 외교 협상 ... 56

3. 일본의 내정간섭 강화와 보호국화 추진 ... 63

4. 조선 정부의 대응책과 정치·경제적 종속화 ... 68

V . 맺음말 ... 75

청일전쟁 전후 조선의 대청정책과 조청관계의 변화 | 은정태

- I . 머리말 ... 81
- II . 속방체제의 함의, 조약체제의 한계 ... 85
 - 1. 1880년대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과 조선의 반청정책 ... 85
 - 2. 청일전쟁 - 속방보호론과 속방의식의 결합과 해체 ... 92
- III . 대청관계의 변화, 새로운 모색 ... 97
 - 1. 청일전쟁 이후 외교관계의 복원 시도 - 전근대질서의 여진 ... 97
 - 2. 한·청 외교의 질 - 한청통상조약 ... 100
 - 3. 문명개화론과 아시아연대론 속의 청국 ... 104
- IV . 맺음말 ... 107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 오비나타 스미오

- I . 머리말 ... 111
- II . 임오군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 116
 - 1. ‘조선비청국지속국론(朝鮮非淸國之屬國論)’과 ‘일직선’ 노선 ... 116
 - 2. 터키·이집트·영국과 청국·조선·일본 ... 123
 - 3. 청일동맹론과 조선 중립화 구상 ... 127
- III . 청불전쟁·갑신정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 133
 - 1. 청불분쟁과 조선 문제·유구 문제 ... 133
 - 2. 비공식 교섭 루트의 부상 - 미야지마 세이이치로의 위치 ... 138
 - 3. 갑신정변과 천진조약 체제 ... 144
- IV . 청일전쟁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 151
 - 1. 아마가타 구상과 아오키 구상 ... 151
 - 2. 청일전쟁 개전과 조선 내정개혁 문제 ... 155
 - 3. 전후 조선 문제의 귀추 ... 163

V. 맺음말 ... 170

日清戦争前後の日本政治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 | 大日方純夫 ... 176

갑오 중일전쟁 기간 청 정부의 대일정책 | 다이동양

I. 머리말 ... 249

1. 연구동향 ... 249
2. 본문의 시각 ... 254

II. 속방 구레와 중·일 천진조약에 따른 파병 ... 256

1. 오래 지연된 파병 결정과 파병 ... 256
2. 중·일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통지하다 ... 265

III. 일본의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에서 ‘한국 동란’을 조속히
평정하여 일본 병사를 철수시키기까지 ... 269

1. 일본 파병과 청 정부의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 정책 ... 269
2. 일본의 증병과 조속한 난 평정 후 일병을 철수시키자는 정책 확립 ... 276

IV. ‘난 진압’과 ‘조약에 따른 철병’ 교섭 ... 284

1. 원세개와 오토리의 철병 회담 ... 284
2. 왕봉조의 철병 교섭 ... 296

V. ‘무쓰 3조’를 둘러싼 교섭과 철병 교섭의 중지 ... 300

1. ‘무쓰 3조’와 이홍장의 3대 정책 ... 300
2. 왕봉조와 일본의 교섭 그리고 일본의 ‘제1차 절교서’ ... 306

VI. ‘초비(剿匪) 우선시’ 방침의 포기과 ‘방왜(防倭) 중시’ 방침의 제출 ... 314

1. 일본의 증병과 청 정부의 이홍장 증병 불가 방침에 대한 질의 ... 314
2. 오토리가 조선에 화속 부인을 압박하자 청 정부가 ‘방왜 중시’
방침을 제출 ... 320

- VII. 열강의 조정과 고무라 ‘회담’ … 330
 - 1. 러시아·영국에 조정을 청하다 … 330
 - 2. 고무라와의 ‘회담’ … 336
- VIII. 최후의 조정과 일본의 개전 … 347
- IX. 맺음말 … 351

中日甲午戰爭開戰前夕清政府的對日政策 | 戴東陽 … 353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 민중 탄압 | 강효숙

– 일본군의 ‘비합법성’을 중심으로

- I . 머리말 … 421
- II .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1894. 10. 18. 이전) … 425
 - 1. 당시 일본인의 ‘문명전쟁’과 ‘국제법’의 의미 … 425
 - 2. 일본군의 조선 병참화 과정 … 430
 - 3. 초기 농민군 탄압(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 … 436
 - 4. 조선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농민군 ‘진정’ 요청 과정 … 439
- III.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후(1894. 10. 18. 이후) … 442
 - 1. ‘살광’의 원점과 농민군 탄압의 실상 … 442
 - 2.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 … 448
 - 3.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 관련법 … 453
- IV. 맺음말 … 460
- 청일전쟁·갑오개혁 관련 한국 학계 연구문헌 소개 … 466
- Abstract … 485
- 찾아보기 … 498

19세기 말 조선은 청·일본만 아니라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탈의 초점이 되었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에 발발하여 1895년 4월에 끝난 전쟁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전쟁은 명분과 실체가 완전히 달랐다. 초기에는 조선의 대외 독립과 내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한반도에서 자국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간의 쟁투에 불과했다. 전쟁의 결과, 청과 조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승리자인 일본은 대륙 진출의 기반을 쌓았으며, 불행하게도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 소용돌이로 빠뜨리게 하였다.

이렇게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크게 흔들었고 이후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기원이 되었다. 한·중·일 삼국에서는 1945년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전쟁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학술 활동

과 각종 전쟁기념관 조성이 이어졌다. 중국은 10년을 주기로 하여 ‘갑오 중일전쟁’에 대한 학술대회를 활발하게 가지면서 사료 발굴과 연구를 축적해 왔다. 일본은 초기 전쟁 책임의 자체 비판이 행해진 이후 한동안 논의되지 않다가 ‘일청전쟁’ 백주년을 전후하여 전쟁 경험과 기억을 되살렸다. 한국에서는 1894년 농민전쟁 연구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청일전쟁의 발발 과정과 갑오개혁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정작 청일전쟁 자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이 책은 한·중·일 삼국에서 지금까지 각국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일전쟁상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틀로 재조명한 것이다. 참여한 공동 연구자들은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해온 중견연구자들로써 삼국의 청일전쟁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필자 나름의 독특한 시각에 의해 재구성하였다.

왕현중은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대일 정략과 종속의 심화」에서 1894년 7월 청일전쟁의 발발과 갑오개혁 정부의 개혁 과정을 조선정부 내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갑오개혁 정권은 외세 일본의 군사적 개입으로 수립되었으나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9월 중순 이후 소극적·수세적인 대일 정략을 취하면서 종속화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갑오정권과 일본과의 관계를 타율성과 외세의존성으로 비판해왔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청국의 차병 과정 중 국제관계 구상 모색, 정권 수립 직후 대청관계의 단절 공문, 청일전쟁 사절단의 방문 외교 등 새 사실을 검토함으로써 갑오개혁 정권이 권력의 독자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일본의 원조를 받으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정태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대청정책과 조청관계의 변화」에서 1880년대에서 1890년대에 이르는 조청관계의 변화를 정치사·정치사상

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1880년에는 조약체제와 조공체제의 충돌
 기로 규정짓고, 청의 대조선정책이 전통적인 ‘조공-속방’ 관계를 뛰어넘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모습을 띠었다고 보았다. 1894년 9월 평양전
 투의 청군 패배이후 점차 ‘청국적인 것’의 부정과 ‘일본적인 것’의 긍정으
 로 바뀌어 갔고, 1899년 대등한 평등관계를 담고 있는 한청조약이 체결됨
 으로써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종언을 고했다고 하였다. 이 논문
 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조선 정부와 지식인의
 관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오비나타 스미오[大田方純夫]는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
 시아 질서 구상」에서 1882년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기까지 일본 정부 당
 국자의 정책 구상과 발언 속에서 동아시아 구상과 정책을 해명하였다. 일
 본의 정권중추부가 영국의 이집트 정책에서 대조선 정책의 모델을 삼았
 고, 또한 조선의 영세중립국화를 구상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구미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러시아의 조
 선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 글은 조선 중립화론을 포함
 한 여러 갈래 대조선정책 구상을 새로운 사료와 관점을 제시하면서 계통
 적으로 정리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이동양[戴東陽]은 「갑오 중일전쟁 기간 청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현
 재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일전쟁의 제 문제를 충실하게 소개하
 면서, 청 정부의 대일 정책을 군사적으로 피동적 자세, 외교상에선 적극적
 인 태도로 대응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청 정부는 일본이 각기 다른 시기
 에 다른 이유와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가능한 한 조정과 양보를 하였다고
 보았다. 청 정부의 대일정책은 철병 교섭에서 제1차 절교서 제출 이후 일
 본 방어론으로 전환되었지만, 이후에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쟁의 위기

를 피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청이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고, 다양한 외교통로를 통해 전쟁 회피 전략을 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효숙은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 민중 탄압-일본군의 ‘비합법성’을 중심으로」에서 청일전쟁을 ‘문명전쟁’으로 인식하는 일본 지식인들을 비판하면서 제2차 동학농민전쟁 탄압이 국제법과 관련법에 비추어 일본군의 ‘비문명적’, ‘비합법적’인 행위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서 조선 정부와 협의 없는 일본군의 파견, 개전을 위한 제반 준비, 조선 민중의 탄압 명령 등이 모두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군은 1894년 8월 경상도 함창에서 처음으로 비전투원인 ‘동학당’ 조선민중에 대해 학살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수만명이 희생된 농민군 처형을 사후에 만들어진 ‘일청전역 국제법’으로 정당화시켰다고 하였다. 이 글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일전쟁과 아울러 민중적 차원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최초의 해외 민중 대량 학살 사건이라는 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상 다섯 편의 글을 통해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 중국과 일본, 일본과 조선 민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호 관계를 바라보았다. 국가간, 정부간 레벨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다초점의 연구방식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다루는 데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수록된 글들은 처음에는 각국의 언어로 쓰여졌으므로 원의를 그대로 살린다는 취지아래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실기로 했다. 또한 한·중·일 삼국 학계에서 그동안 연구하여 온 사료와 연구논문 목록을 첨부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자들은 원래 한·중·일 삼국의 공동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주제 연구를 모색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공동 연구과제로 진행시킨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현 단계의 청일전쟁 연구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독특한 논점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청일전쟁 연구에 대한 삼국의 공동역사상을 아직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관한 연속된 공동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공동연구의 성과가 책으로 출간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북아역사재단 제1연구실 이재석 연구위원과 번역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교정·교열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재단 출판팀에게도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공동연구자를 대표하여

왕 현 중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대일 정략과 종속의 심화

왕현종 |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I . 머리말
- II . 1894년 조선의 정치 상황 변화와 일본의 개입
- III. 갑오개혁 정부의 성립과 대일관계
- IV. 갑오개혁 정권의 개혁 방향과 대일 정략
- V .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왕조국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면서 정치·군사적 개입을 병행하였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권 획득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 사회 내부에서는 조선왕조의 봉건 국가 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주 독립의 근대국가로 발전시키려는 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개혁운동으로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개혁을 들 수 있다.

갑오개혁은 흔히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1894년 6월부터 1895년 12월 말까지 진행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¹ 이 사건은 일본에 의한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의 격동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1945년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근대 외교사와 청일전쟁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² 1945년 이후 일본 학계의 연구에서는 전전(戰前) 연구동향에 대

1 갑오개혁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鄭昌烈(1987), 「甲午農民戰爭과 甲午改革」, 『韓國史研究入門(제2판)』, 지식산업사; 糟谷憲一(1985), 「甲申政變·開化派研究の課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주진오(1994), 「갑오개혁의 새로운 이해」, 『역사비평』 가을호(26호); 李培鎔(1995), 「開化思想·甲申政變·甲午改革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史論』 25, 국사편찬위원회; 왕현종(1996),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한국역사입문』 3, 풀빛.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특히 일본 외교사의 입장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대륙 진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청일전쟁을 연구

한 반성과 비판이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관점을 가졌다.³ 1980년대 이후에는 청일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경향도 나타났다.⁴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중국 등 외국 학계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있다 해도 일제 식민지화의 일환으로 갑오개혁을 다루는 경향이 많았다. 즉 일본이 갑오개혁에 내정개혁의 원리를 제공하였고 메이지[明治]국가의 제도를 이식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연구에서는 흔히 일본의 침략성을 부정하고 일본을 근대적 개혁의 후원자로 간주하였다.⁵ 이러한 연구는 갑오개혁의 타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것이다. 田保橋潔(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下), 조선총독부 중추원; 信夫清三郎(1934), 『日清戰爭: その政治的・外交的觀察』, 福田書房; 信夫清三郎(1935), 『陸奥外交: 日清戰爭の外交史的研究』, 叢文閣.

3 山辺建太郎(1949), 『日韓聯合小史』, 岩波書店; 中塚明(1968),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藤村道生(1973), 『日清戰爭』, 岩波書店; 朴宗根(1982), 『日清戰爭と朝鮮』, 青木書店; 森山茂徳(1987), 『근대일선관계사연구』, 동경대학출판회.

4 청일개전의 이유로 종전에 강조되던 것과 달리 일본의 확고한 대한정책의 결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민족 독립과 근대 국가 형성의 의식이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전쟁의 경험과 피해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다. 高橋秀直(1995), 『日清戰爭への道』, 東京: 創元社; 檜山幸夫・大谷正(2001), 『近代日本の形成と日清戰爭-戰爭の社會史』, 雄山閣; 大濱徹也(2003),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戰爭-帝國への歩-』, 刀水書房.

5 대표적인 논자는 앞서 언급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였다. 그는 갑오개혁에 대해 일본이 조선의 구체제를 타파하고 근대국가의 형태로 정비하려고 기도한 개혁이었다고 주장한다. 田保橋潔(1944), 「近代朝鮮における政治的改革」, 『近代朝鮮史研究』, 조선총독부.

북한 학계는 1960년대 초부터 이에 대한 반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학계는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갑오개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⁶ 특히 “갑오개혁기 내정개혁의 원리가 조선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특히 누구에 의해 제기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요시하였다.⁷ 그래서 북한 학계는 갑오개혁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당시 국내외적인 정세 변동과 관련시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 학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종래의 타율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유영익은 갑오개혁이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간섭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의 개화와 세력이 독자적인 개혁논리를 가지고 개혁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였다.⁸ 1980년대 후반부터 개별 개혁정

6 북한 학계에서는 1950년대 말 갑오개혁의 타율적인 성립 과정과 근대개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침략자들은 이 개혁을 마치 조선을 위한 것인 듯 가장하였는데,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일본 침략자들의 조선 침략을 용이케 하는 방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58),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원출판사.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러한 견해는 크게 바뀌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1962), 『조선근대혁명운동사』, 사회과학원출판사.

7 갑오개혁은 1894년 농민전쟁이 달성한 주요 성과라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한편, 갑오정권 성립의 주체적 계기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갑오정권의 성립과 개혁안의 채택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리유백(1961), 「1894년 《갑오개혁안》의 채택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1년 6호 ; 탁병채(1963), 「갑오경장의 역사적 전제조건」, 『역사과학』 1963년 6호 ; 박인근(1964), 「갑오경장의 역사적 전제조건(역사과학 1963년 6호)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역사과학』 1964년 3호.

8 柳永益(1975), 「甲午更張을 圍繞한 日本의 對韓政策」, 『歷史學報』 65. 이른바 自律性を 강조하는 논의였다. 유영익은 일본이 조선 문제에 개입한 시기를 ① 일본의 출병 및 개혁 권고기, ② 소극 간섭기(7. 23~9. 18), ③ 적극 간섭기 등

책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화폐금융제도·조세재정제도·재판제도·지방제도의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결론은 갑오개혁의 제도 개혁이 근대국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봉건제제를 충분히 개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략을 막아내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⁹

지금까지 갑오개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 온 것은 정권의 대외적인 성격, 즉 타율성과 자율성 여부였다. 한편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련성이 큰 매판정권으로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성립 과정이 타율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혁의 내용에 상대적 자율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양 극단의 평가는 외세의 개입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내적인 갈등을 종속변수로 놓고 설명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갑오정권이 왜 독자적인 정책을 할 수 없었는가 하는 내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¹⁰ 또한 갑오개혁 정부가

으로 구분하였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패전하고 있었던 ②의 시기에는 일본이 갑오개혁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상황을 이용하여 갑오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갑오개혁의 실시 시기를 군국기무처의 시기, 박영효 주도기, 을미개혁기 등으로 더욱 세분해 검토하였다. 유영익(2000),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 40 -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306~308쪽.

⁹ 최근에는 청일전쟁 시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갑오개혁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웅현(2006), 「역사로서의 중일전쟁 - 중일전쟁의 연구사」; 서민교(2006), 「1894~5년 중일전쟁기의 일본군과 조선」; 김현철(2006), 「중일전쟁기 조선의 외교정책과 한일관계」,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 중일전쟁의 국제정치와 군사전략』, 리북.

¹⁰ 왕현중은 갑오개혁의 주체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1880년대 후반에 개화과

일본의 보호국화 추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어떤 측면에서 종속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갑오개혁에 관한 연구에서는 갑오개혁 정부의 입장에서 대외 종속성과 개혁 내용의 주체성이란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조선 갑오개혁 정부의 대일본정책과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청일전쟁 시기 조선 갑오개혁 정권이 일본과의 대외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1894년 조선의 혁명적 상황에서 어떻게 갑오정권이 수립되었는가를 다루어야 한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의 개전 외교로써 조선의 내정개혁 문제를 내세워 청과의 분쟁을 야기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의 개혁세력들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일본은 청과의 개전을 위해 조선 정부를 교체하려고 하였다. 1894년 6월 21일 경복궁 점령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을 때, 갑오개혁 정부는 청과의 개전과 전쟁 협조에 어느 정도 나서고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내정개혁의 진행, 청과의 기존 조약 폐기, 일본군의 전쟁 협력을 위한 조약 체결 등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1894년 9월 이후 갑오개혁 정부가 향후 추진할 개혁사업을 위해 일본에 협조를 구하였던 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양전투 승리에 대한 보병사 파견으로 일련의 외교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

의 개혁 이념으로 ‘군민공치론(君民共治論)’이 정립되었으며, 갑오개혁은 개혁관료들이 스스로 집권해서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개입에 편승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정권 성립의 외세 의존성이 이후 갑오개혁의 전체 성격을 절대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갑오개혁 정부의 자율성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왕현중(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승리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과 보호국화 조치에 대해 갑오개혁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특히 당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외교적 명분 추구하고 더불어 산업기반의 장악을 통한 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보호국화라는 양면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는 일본 외교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산물과 갑오개혁 정부의 일정한 대응책에 의한 결과였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다.¹¹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1894년 하반기에서 1895년 상반기에 이르는 동안 조선의 갑오개혁 정권은 당시 정치정세의 변동 속에서 어떻게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응했으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요컨대 대외정책의 차원에서 갑오개혁의 타율성과 자율성에 대한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검토의 대상 시기는 갑오개혁 전 기간으로 확대하지 않고 일정하게 제한하기로 하였다. 갑오개혁기 일본의 대한정책은 크게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초래된 삼국간섭을 획기로 삼아 전후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앞 시기를 주로 다루려고 한다.

11 高橋秀直(1995), 앞의 책; 유영익 외(1996), 『淸日戰爭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최석완(1997), 『日淸戰爭への道程』, 吉川弘文館 참조.

II. 1894년 조선의 정치 상황 변화와 일본의 개입

1. 농민전쟁의 발발과 청·일의 개입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3월 중순 무장에서 재차 봉기하여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였다. 전봉준의 지휘로 농민군은 조선왕조에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국가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크게 변동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청과 일본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청은 조선을 청의 속방(屬邦)으로 취급하면서 개입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여 조선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양국은 이미 1884년 갑신정변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들은 1880년대 후반 내내 군사력을 강화하고 조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¹² 1894년 벽두부터 일어난 동학 농민전쟁의 확대를 청·일 양국은 조선 내정 개입의 좋은 기회로 삼고 있었다. 다만 개입의 명분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획득하는가가 선결 과제였다. 이를 해결해준 것은 당시 조선 정부를 맡고 있었던 민씨 정권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1894년 당시 해상공국 당상이자 병조판서 겸 친군경리사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민영준(閔泳駿)은 농민봉기를 군사적 탄압을 통해 진압하

¹² 최석완(1997), 「壬午事變期の東アジア政策」, 『日清戦争への道程』, 吉川弘文館, 5~59쪽; 高橋秀直(1995), 「甲申政變・巨文島事件と軍擴計劃の再編」, 『日清戦争への道程』, 122~214쪽.

려고 하였다. 그는 1894년 4월 2일(양력 5월 6일) 고종을 설득하여 흥계훈을 초토사로 임명하고 수도 방위를 맡고 있던 장위영병을 전라도 현지에 파견하였다.¹³ 그는 창궐하는 동학당을 초토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장차 청의 원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원세개(袁世凱)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다. 원세개가 처음부터 청의 파병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¹⁴

4월 13일(5월 17일) 민영준은 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청군의 구원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고종에게 건의하였다. 이날 민영준은 “적의 세력이 갈수록 더 확대되어 그들을 초멸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전보로 연락하여 원조병(援助兵)을 요청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하였다.¹⁵ 이 부분을 처음으로 청병설을 제기한 것으로 주목해왔다.¹⁶ 그런데 이 부분의 기록은 『일본외교문서』의 내용과 약

13 『일성록』 31, 1894. 4. 2, 99쪽; 「兩湖招討謄錄」,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이하 사료총서)』 6, 사운연구소(1996), 3쪽; 「兩湖電記」, 『사료총서』 6, 85쪽.

14 이태진(2000), 「1894년 6월 淸軍 出兵 과정의 진상 - 자진 請兵說 비판」, 『고종 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10~213쪽.

15 “十三日惠堂奏曰賊勢去益猖獗莫可剿滅捕捉請電達要求請兵來助恐合事宜”.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4), 「淸國에의 援兵要請論議 中止 件」(發第 61號, 1894. 5. 22, 발신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45쪽.

16 이선근은 『일본외교문서』 27-2책, 153~154쪽에 보이는 스기무라의 보고문에 근거하여 “據招討電達 要求請兵來助恐合事宜”를 “초토사의 전보에 근거하여 청병내조를 요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선근(1963), 『한국사(현대편)』, 67쪽, 각주 1 참조. 그러나 당시 초토사 흥계훈의 전문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

간 차이가 있으며, 해석도 연구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¹⁷ 홍계훈이 초토의 어려움을 호소한 전문이 있기는 하지만,¹⁸ 이때는 민영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토사 홍계훈이 직접 청의 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이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⁹

아무튼 4월 13일 민영준의 청병 요청에 대해 고종이 반대하자, 민영준은 “이미 원세개와 밀약(密約)을 하였으므로 번거롭게 비밀 자리를 마련하지 마시고 대신들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차 강요하였다. 이에 고종은 4월 14일 새벽 대신들을 경연에 불러 사안에 대해 상의하도록 하였다.

이날 대신회의에서 대신들은 “안으로 영단을 내려 먼저 큰 폐정을 저지른 자를 제거하고 불량한 수령과 방백들에게 중한 형벌을 가하여 저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 난민들이 귀화할 것이며 국내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신들은 외국 군대의 도움을 요구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국가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데 수만 명의 생령(生靈)을 죽이게 되고, 둘째는 외국군이 국내로 들어오면 경향에 그 폐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므로 인심이 흔들릴 것이며, 셋째

므로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¹⁷ 이태진은 홍계훈이 건의한 시기를 다보하시가 4월 19일(5월 23일)이라고 본 데 대해 이선근의 수정으로 고쳐서 보아야 한다고 잘못 정리하였다. 이태진(2000), 앞의 글, 200쪽.

¹⁸ 「兩湖電記」, 『사료총서』 6, 4월 12일 전보 기사(96~98쪽) 참조.

¹⁹ 이 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다보하시는 4월 19일(5월 23일) 청군의 원조를 요청하였다고 보았는데, 근거 자료를 『東學黨匪亂史料』라고만 인용하였다. 田保橋潔(1940), 앞의 책(下), 274~275쪽.

는 외국군이 국내로 들어오면 각국 공사들도 반드시 군대를 출동하여 제 각기 공관을 수호하게 되어 알력이 생기기 쉬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요컨대 군사 개입으로 인해 폐단이 많아지고 국제적 개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에 따라 고종은 더 이상 원조병을 거론하지 않고 심영(沁營) 병정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고종은 여러 대신을 궁중에 불러들여 회의를 열었지만, 청군의 원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론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민영준의 제의를 일단 중지하기로 하였다.²⁰ 그 대신 4월 27일 팔도에 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칙유(勅諭)를 내렸다.²¹

그러나 4월 19일(5월 23일) 초토사 홍계훈은 청군의 원병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다.²² 그는 나주와 함평에서 농민군을 뒤쫓으면서 더 이상 조선 군대로는 토벌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청병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실제 4월 23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이학승 부대가 농민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농민군들은 봉건정부의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고 마침내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에 대해 4월 29일(6월 2일) 민영준은 정부의 원병 논의를 다시 주도하여 청병을 차용해 농민군을 모두 초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고종은 “외병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국의 조신 중에 도시 호령

20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4), 「淸國에의 援兵要請論議 中止 件」(發第61號, 1894. 5. 22, 발신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17~19쪽.

21 『일성록』 31, 1894. 4. 27, 128~129쪽.

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9), 「東學黨에 관한 報告」(發第126號, 1894. 5. 27, 발신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28~29쪽.

을 행할 자가 없으니 원세개가 고생스럽더라도 한 번 걸음을 해서 전주 등지에 내려가 순변·초토의 병력을 지휘해주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라며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준의 주도로 청병 요청이 확정되었으며, 4월 30일 밤 정식으로 원세개에게 파병 요청 공문을 보냈다.²³ 공문을 받은 원세개는 곧바로 본국 정부에 전보하였다. 이로써 청나라 정부는 재빨리 출병절차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²⁴

한편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를 곧바로 조선에 파견하여 서울로 진주시켰다. 명목상의 이유는 거류상인의 보호였다. 또한 일본은 군대 파견을 제물포조약과 천진조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²⁵ 그러나 두 조약은 단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상호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상호 군사 개입을 명문화한 것은 아니었다.²⁶ 일본이 청의 원병 파견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선 정부의 반응은 매우 복잡한 양상이었다. 특히 청군의 파견 요청을 주도한 민영준은 본래 자신의 권세를 잃을까 두려워 원세개에게 의뢰한 것이었는데, 국제적 간섭의 위기를 맞아 대응하기가

23 『주한일본공사관기록(1)』(8), 「朝鮮政府ガ清兵借用ニ至リタル顚末探聞」(第77號, 발신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 수신 陸奧宗光), 261~264쪽.

24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8), 「淸國軍出兵에 관한 通知」(第77號, 발신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71~72쪽.

25 『일본외교문서』 27-2책, No. 611, 「朝鮮國へノ出兵ニ關シ通知ノ件」, 267~268쪽.

26 박종근 저·박영재 역(1989),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8~27쪽.

더욱 곤란해졌다.²⁷ 조선 정부는 일본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장상회의(將相會議)를 열어 당분간 원세개에게 청국군의 상륙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반면에 청국은 사태의 원인인 동학란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파악하고 원세개에게 훈령을 내려, 일본에 반드시 퇴병할 것을 재촉하기 보다는 조선에 비도를 하루 속히 초멸할 것을 재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의 방침이 다시 바뀌었다. 조선 정부는 이미 5월 8일(6월 11일) 전주성에서 농성 투쟁 중이던 농민군에게 폐정 개혁을 약속하고 농민군을 전격적으로 해산시켰다. 또한 조선 정부는 비도들을 이미 평정하였으므로 청국의 원병 진격을 원치 않는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청군이 바로 철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청군의 지휘자인 섭지초 통령은 “병졸들은 비록 뱃길로 귀국하게 하더라도 나는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입경하여 국왕을 알현한 다음에 돌아가겠노라”고 하였다. 이는 청병의 진주 명분을 살리면서 청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²⁸

27 청군 출병 후 홍종우는 민영준에게, “내가 오랫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청국을 내왕하여 양국의 형편을 볼을 보듯이 환히 알고 있습니다. 청군이 남하하면 列國이 틀림없이 몹시 피해를질 것입니다. …… 또한 일본이 반드시 이 기회를 타서 군대를 내보낸다면 여기에 국가의 안위가 달릴 것이니, 장래의 일을 미리 내다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깊이 헤아리십시오”라며 정세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1)』(25), 「日·清兩國軍來韓에 따른 國內外探情 報告」 第153號(在仁川 能勢 二等領事), 第154號(在釜山 室田 總領事), 第155號(在元山 上野二等領事), 第24號(在北京 小村 臨時代理公使), 79~82쪽.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1)』(8), 「清國軍 派韓反應과 清使의 對應」(發第87號,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혹시 청군이 임오군란 때와 같이 뜻밖의 방향으로 나아가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었다. 혹자는 “저들이 군대의 위세를 빌려 우리를 위협해서 주권을 장악하려 함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래서 청국 군대가 아산에서 즉시 철수한다면 무사하겠지만, 대병력을 이끌고 경성으로 들어온다면 종전 임오군란 때와 같이 금방 큰 변을 야기할 염려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²⁹

실제 5월 25일(6월 28일) 밤 조정회의에서는 청군의 향후 동향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대신들은 특히 일본 군대가 떠난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다시 물러와서 죄를 물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판중추부사 김홍집(金弘集)이었다.

신(臣)이 들은 바로는 각국 사신들이 전 세계를 왕래하는데, 모두 황제(皇帝)로 칭하긴 해도 왕(王)으로 칭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조선만 왕이라 지칭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속임수를 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러시아·청나라·조선·일본을 생각해 볼 때, 러시아는 청나라보다 강하고 일본은 조선보다 강하므로 러시아와 일본이 합세하면 조선과 청나라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주 독립권을 얻어서 안으로 덕정(德政)을 닦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 번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청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원한을 품을 것이니 후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

1894. 7. 3,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94~98쪽.

29 물론 이 내용은 주한일본공사관의 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 청국의 정치적 개입과 조선 관료들의 지나친 우려를 일본의 입장에서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각국의 공사들을 회동시켜 그들이 입증하도록 하고 또 일본이 와서 보호해 주도록 맹약(盟約)을 체결하여 러시아와 함께 협력한다면, 청나라는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년(丙子年)의 수치는 어느 때 썰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먼저 원세개(袁世凱)가 있는 청국(淸國) 공관(公館)에 서한(書翰)을 보내시어 그의 의견을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⁰

그의 제안은 우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각국의 공사를 회동시키고 일본도 참여하여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입증하게 하고, 맹약을 체결한다면 청나라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일본 군대 주둔은 일본의 변명처럼 일본 상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파악한 반면, 청군의 주둔은 장차 정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김홍집은 열강의 압력하에 이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정부의 잘못된 국제정세 인식, 특히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오인에서 유발된 것이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군 파병 요청이 도리어 국제적 간섭을 초래했으며, 장래에 조선에 위협 요소가 된다는 현안만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었다.³¹

³⁰ 『주한일본공사관기록(1)』(8), 「淸國軍 派韓反應과 淸使의 對應」(發第87號, 1894. 7. 3,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島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98~99쪽.

³¹ 5월 3일 俞吉濬과 金嘉鎮은 당시의 타개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능하다면 일본과 청국 두 나라 사이에 의논이 잘 이루어져 조선에 대해 中立 혹은 保護國의 자격이 주어져 ‘영국과의 사이에 密約을 체결할 것, 이는 현재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淸國政府의 斡旋에 일임해야 한다’, 餘命을 유지하게 하

여기서 향후 갑오개혁 정부의 대일인식과 관련하여 짐작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1894년 6월 당시 김홍집을 비롯한 유길준 등 개혁 관료들은 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보증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의 도움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원칙적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의 파병에 대한 오도된 인식을 보여준다.

2. 일본의 전쟁 유도 전략

일본은 1894년 5월 중순 청과의 대치국면에서 조선의 농민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일·청 양국의 공동간섭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청과의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일본군은 지속적으로 파병하여 1만 명의 병사와 9척의 병선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배치하였으며, 요충지에 행영(行營)과 포대를 수축하여 전쟁 발발에 대비하였다.

일본은 이때 일·청 양국의 공동간섭론이 실현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³² 5월 27일(6월 30일) 오

는 방법이라도 있다면 큰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청·일 양군의 협조로 조선 정국이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駐韓日本公使館紀錄 1』(9), 「淸國出援에 대한 朝鮮朝廷內의 不服黨의 運動과 袁氏의 密話」(機密 第82號 本 54, 別紙 1894. 6. 6, 발신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1894. 6. 27 발신), 268~269쪽.

- 32** 杉村濤(1932), 『明治 廿七八年 在韓苦心錄』, 東京; 勇喜社(1984), 『舊韓末日 帝侵略叢書 VII; 정치편 7 - 在韓苦心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한상일 역 (1993), 『서울에 남겨둔 꿈 - 在韓苦心錄』, 건국대학교 출판부, 12~13쪽 참조.

전 10시 오토리[大鳥圭介] 공사는 외무독판 조병직과 면담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속방 문제를 꺼냈다. 이는 사실상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선 정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전쟁 발발에 협조할 수 있는 정권을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조선 독립과 속방 문제를 꺼낸 것은 이를 위한 빌미에 불과하였다.

또한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는 주한 청국공사 원세개에게 양국의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면서 군대 철수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세개는 이홍장의 군대 철수 훈령을 받아 양국의 동시 철병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이미 4000여 명의 대군을 파견한 이상 정책상 동시 철병은 불가하며 청국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민란이 진정되었다는 실증을 보여준 다음에 철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은 또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 힘쓰고 있는 반면, 청국은 조선을 속방시하여 군주권을 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청의 군대 철수를 강조하였다.³³ 그러면서도 오토리는 5월 14일(6월 17일)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비록 무력을 써서라도 일본이 청국의 군대를 물러나게 하여 일본의 위엄과 이익을 보전하는 것은 사양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³⁴ 이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확보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로 잡

³³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 「日・清軍 충돌 가능성을 外國人에게 表明하여 賛同을 얻으려는 趣意書」, 機密 第101號(能勢 二等領事), 機密 第102號(室田 總領事), 機密 第103號(上野 二等領事), 機密 第104號(京城 內田 二等領事) 1894. 6. 23,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87 쪽.

³⁴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9), 「陸軍을 철수시키는 최후 조치에 대한 품의」(機密 第96號 本 62, 1894. 6. 17,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으려는 술책에 불과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자주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 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도리어 더 압박해 들어갔다. 6월 1일(7월 3일) 오토리 일본공사는 두 번째 제안으로 내정개혁 방안의 세목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혁 안건을 강요하였다. 이날 보낸 문건은 「내정정리요강안(內政整理要綱案)」 5조였다. 이 안건은 조선의 내정개혁의 대체적인 방안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후 7월 7일(8월 7일) 구리노[栗野] 정무국장이 가져온 일본 정부의 훈령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일본은 5조의 강목에 따라 작성하되 내정개혁안의 세부안으로서 27개 절목을 두었다.³⁵ 또한 각 조항의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시행기일을 명시하였다. 어떤 조항은 3일, 어떤 조항은 6개월 혹은 2년 내라는 식이었다. 이는 압박의 효과를 최대한 올리려는 것이자 명백히 조선의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가 내정개혁의 권고를 거절할 때 일본이 취할 수단으로 이미 6월 8일(7월 10일) 2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하나는 군사적 위력으로 이를 강요하여 실행을 독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청 간의 종속관계를 제거하고, 최혜국조관을 이용하여 청국의 특혜를 일본 측도 반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⁶

陸奥宗光), 284~286쪽.

³⁵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0), 「內政改革案 提出의 件」(機密 第121號 本 70, 1894. 7. 9,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94~298쪽.

³⁶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1), 「朝鮮 內政改革의 勸告가 거절될 때 日本이 취할 수단에 관한 품의」(機密 第122號 本 71, 1894. 7. 10,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

사전에 이런 방침을 결정해 둔 후, 오토리 공사는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조선 측 위원인 신정희 등 2명에게 일본 측의 안건을 설명하였다. ‘노인정(老人亭) 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에서 조선의 개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질의·응답이 오갔다.

조선 측은 우선 일본 측의 요구가 조선의 현상과 법도에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군대가 파견된 것은 조선의 비도들이 많은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이를 이용하여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자고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우리나라는 본래 자주적인 내치(內治)를 하면서 청나라와 외교를 맺어온 지 300년이 되었지만, 서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만국공법(萬國公法)에도 ‘이웃나라는 다른 나라의 내치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일본의 정치 간섭에 반대하였다.³⁷ 조선 정부는 이전에 청과의 공동간섭에 반대하였듯이, 이번에도 조선 정부 위주로 강력하게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본 측의 개혁 요강에 명시된 각 절목별 시행기한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항의하였다.

격론속에 진행된 회의는 일본 측의 방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측의 요구가 사실상 거부된 것이었다. 조선 측 위원들은 당시 작성한 의사록(議事錄)을 대신들에게 회람시켜 일본 측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의 권고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98~299쪽.

37 『주한일본공사관기록(1)』(9), 「內政改革勸告에 대한 朝鮮政府의 反應」(發第 90號, 1894. 7. 19,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102~108쪽.

일본은 원래 내정개혁 요구가 일·청의 충돌을 재촉하게 되면 다행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에 주둔한 일본 군대는 점차 증가하여 청군의 2~3배였으므로 속전속결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측은 내정개혁의 요구가 더 이상 관철되지 않는 이상 무력의 방법을 써서 조선 정부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 정부에 독립·속방과 내정개혁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도록 다시 압박하였다.³⁸ 그렇지만 6월 13일(7월 15일) 조선 정부의 회신은 조선 정부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었다.³⁹

이에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는 6월 17일(7월 19일) 조선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는 6월 17일 일본 정부에서 청과의 개전을 결정한 제53호 전보와 혼노[本野] 참사관이 가져온 훈시에 따른 것이었다.⁴⁰ 일본 측은 우선 경성~부산 간 군용 전신선 가설에 착수했으며, 병영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산에 와 있는 청나라 군대 철수를 청나라 정부에 요구하려고 하였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중강통상장정 및 길림통상장정을 폐기하라고 조선 정부를 압박하였다.⁴¹ 조선 정부가 당시 정치상황

38 『주한일본공사관기록(1)』(6), 「朝鮮屬邦說 배척 및 內政改革 斷行手續에 관한 上申(機密 第110號 本 65, 1894. 6. 28,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90~293쪽.

39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5), 「內政改革 勸告에 대한 朝鮮政府의 회답(機密 第129號 本 74, 1894. 7. 18,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02~303쪽.

40 『일본외교문서』 27-1책, No. 414, 「朝鮮國政府改革案ノ拒絶ニ對シ適宜ノ處置 ヲトルベキ旨訓令ノ件」, 612쪽; 高橋秀直(1995), 앞의 책, 426~428쪽.

41 『주한일본공사관기록(1)』(19), 「朝鮮政府의 內政改革案 拒絶로 인한 談判 및 大院君 執政의 件(機密 第136號 本 79, 1894. 7. 25,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

에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는 조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수순의 하나였다. 이제 일본 측의 최종 수순은 고종과 민씨 척족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1894년 6월 21일(7월 23일) 새벽 오전 4시 용산에 있던 1000명의 병력을 경복궁 쪽으로 진군시켰다. 그리고 일본은 ‘그쪽에서 먼저 발포’해왔으므로 일본 군대가 이에 맞서 싸워, 조선군을 물리치고 성문을 열어젖히고 궤내로 진입하였다.⁴² 이처럼 일본군은 끝까지 외교적 수사로 호도해 가면서 자신들의 경복궁 강제 점령을 합리화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경복궁을 강제 점령함으로써 조선의 정국을 일거에 전환시켰다. 일본은 기존의 조선 정부를 붕괴시키고 청과의 전쟁에 협조할 수 있는 친일정권을 탄생시켰다.

III. 갑오개혁 정부의 성립과 대일관계

1. 갑오개혁 정권의 성립 과정

1894년 6월 22일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후원아래 전권을 장악하였다. 고종은 대원군에게 모든 서무와 육군 및 해군의 사무를 전결할 수 있는 권

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09~314쪽.

⁴² 구체적인 경복궁 점령사건과 평가에 대해서는 박종근 저·박영재 역(1989), 앞의 책, 48~90쪽; 高橋秀直(1995), 앞의 책, 438~443쪽; 中塚明(1968), 앞의 책; 왕현중(2003), 앞의 책, 144~147쪽.

한을 위임하였다.⁴³

그러나 대원군이 고종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다. 6월 21일 고종은 영의정에 김병시(金炳始)를 임명하였고,⁴⁴ 6월 22일에도 의연히 주요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고종은 이원공을 부교리로, 김학진을 병조판서로, 박제순을 전라감사로, 어윤중을 선혜청 당상으로, 신정희(申正熙)를 통위사로, 이봉의를 총어사로, 경리사 조희연을 장위사로, 이원회를 좌포장으로, 안경수를 우포장으로, 김윤식을 강화유수로, 이규석을 춘천유수 등으로 임명하였다.⁴⁵

이날 고종은 오토리 일본공사의 알현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에 오토리가 제기한 5개조 설명을 직접 청취하였다. 그리고 고종은 우리나라의 옛 법과 제도도 있다면서 5조도 좋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때 고종은 조선의 전래 제도를 기반에 두고 신법을 참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⁴⁶ 당시 배석한 관료는 영의정 김병시, 좌의정 조병세(趙秉世), 우의정 정범조(鄭範朝), 외무독판 조병직(趙秉稷), 내무독판 신정희 등으로 민씨 척족을 제외한 원로대신들이었다.

6월 25일에는 새로이 군국기무처의 처소가 정해졌고, 영의정 김병시가 사직하고 그 자리에 판중추부판사 김홍집이 전격 임명되었다.⁴⁷ 이어 군

⁴³ “凡今庶務緊重與海陸軍事務大院君前命進明裁決 敎曰凡今庶務遇有緊重事件 先爲就明于大院君前又敎曰各國事例其軍務皆歸親王管轄本國則海陸軍事務進明于大院君前裁決.” 『일성록』 31, 1894. 6. 22, 187쪽.

⁴⁴ 김병시는 6월 20일에 임명되었으며, 6월 21일에 그대로 추인되었다.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1971), 『일성록』 31, 1894. 6. 20~21, 184쪽.

⁴⁵ 『일성록』 31, 1894. 6. 22, 187~188쪽.

⁴⁶ 『일성록』 31, 1894. 6. 22, 187쪽.

군국기무처 회의원들이 차례로 임명되었다. 군국기무처에는 김홍집을 총재관으로 하고 박정양, 민영달, 김윤식, 김종한, 조희연, 이윤용, 김가진, 안경수, 정경원, 박준양, 이원궁, 김학우, 권형진, 유길준, 김하영, 이응익, 서상집 등 18명이 임명되었다.⁴⁸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군국기무처 총재관을 영의정으로 겸직 발령하면서 김병시를 김홍집으로 교체하였다는 것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이러한 김홍집의 교체와 군국기무처 회의원의 임명 사실을 크게 강조하여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는 별도로 새로운 권력의 출범으로 해석하였다.⁴⁹

그렇지만 군국기무처의 설립은 경복궁 점령을 통한 일본의 개입이라는 사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 일본 공사관 스키무라

⁴⁷ 북한 학계의 초기 연구에서는 “7월 23일(양력) 중국과의 전쟁 도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일본 침략자들이 도발한 조선왕궁 습격사건을 소위 정변이라고 날조해 내었으며, 그 후 조선 정부에 신정부라는 간판을 붙여 조선의 정치적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한 듯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리우백(1961), 앞의 글.

⁴⁸ 『일성록』 31, 1894. 6. 25, 192쪽.

⁴⁹ 북한 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1894년 6월 21일 이후 안팎에 조성된 정세와 변화된 세력관계 속에서 혁신관료들이 부르주아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 혁신관료가 민가세력(민씨척족)을 청산하고 자기 권력을 다시 세우려는 대원군의 기도와 친일파 퇴장권을 꾸며내 침략의 길을 닦으려고 한 일본 침략자들과 다른 침략 열강 사이의 모순을 이용하면서 혁신정권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본다. 그 결과 1894년 6월 25일 김병시 과도정부의 사직과 함께 중추부판사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었고 협의제 입법기관으로서의 군국기무처가 창설되었다고 결론짓는다. 리종현(1991), 『조선부르조아민족운동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2쪽.

서기관은 이 회의체를 평의회(評議會)로 구상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⁰ 물론 당시 일본 외교관들은 실제 근대 내정개혁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하고, 학식과 추진력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한 것을 보면,⁵¹ 이들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군국기무처의 대외적인 정책 결정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갑오개혁 정부의 대외 독자성을 보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군국기무처는 주로 김홍집, 박정양, 김윤식 등 중견 관료층과 유길준, 김가진 등 소장 관료층이 어우러져 구성되었다. 특히 유길준, 조희연, 안경수, 김학우, 권형진 등은 이미 청·일 간섭이 심화된 5월께부터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 측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개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권력 수립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 결국 군국기무처에는 중견 관료층과 소장 관료층 등 두 개의 개혁 관료층이 포괄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일본과 무관한 독립적인 세력이기보다는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주체적인 개혁을 시도해 보려는 정치세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²

6월 26일부터 군국기무처는 회의를 갖고 회의처의 장정과 규정을 의논하여 결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로 논의된 것은 군국기무처의 설치 목적과 직능에 관한 것이었으며, 회의 결정 방식도 토론되었다. 6월 26일 새로운 군국기무처 장정이 공포되었다. 이때 군국기무처는 국정 전반에 결

⁵⁰ 『제한고심록』, 135~137쪽.

⁵¹ 田保橋潔(1944), 앞의 글, 39쪽.

⁵² 군국기무처 회의원의 구성과 성향 분석은 유영익(1990),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41쪽; 왕현중(2003), 앞의 책, 148~159쪽 참조.

쳐 개혁을 수행하는 기구로 결정되었다. 중앙의 행정·사법 기구를 비롯하여 국정 개혁 및 식산흥업 등 모든 군국사무를 담당하는 의결기구로 규정되었다.⁵³ 이에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의 법령을 발의하여 토의하고, 이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 군국기무처의 회의는 회의원 반수 이상이 참가했을 때 개최할 수 있었으며, 토의사항은 가부의 다소에 따라 결정하는 다수결의 방식을 따랐다. 결정된 안건은 왕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처음부터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는 6월 26일 김홍집에게 각국에서 회의할 때 군주가 참여하는 사례를 물으며 자신의 참석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⁵⁴ 그렇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국기무처는 7월 15일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이후에도 의정부에 소속되어 당분간 국정의 실질적인 권력기구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표와 같이 7월 15일에 임명된 1차 갑오개혁 정부의 고위관료는 대개 군국기무처 회의원 출신이었다. 물론 일부 대신급에는 회의원이 아닌 자도 있었지만, 의정부 의정과 외무·내무·탁지·학부·공무 등의 부서를 장악하였다. 그렇지 않은 법무·궁내부 등의 경우에는 협판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였다. 결국 1차 갑오개혁 정부에서 군국기무처의 회의원들이 2부 8아문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군국기무처 회의원이 정부 부서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초기 개혁 정책과 법령 시행에서 추진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1894년 8월 중순 이후 중앙정계의 정치

⁵³ 『章程存案』(규장각 17237), 1894. 6. 26 참조.

⁵⁴ 『일성록』 31, 1894. 6. 27, 195쪽.

표 1차·2차 갑오개혁 정부의 주요 관리 비교⁵⁵

1차 갑오개혁기			2차 갑오개혁기		
衙門名	大臣	協判	部署名	大臣	協辦
議政府	金弘集*	左右贊成: 金壽鉉 李裕承 都憲: 朴容大, 李重夏, 李泰容,* 趙寅承, 俞吉濬,* 金學洙(10. 3)	議政府	金弘集*	俞吉濬 (內閣總書)*
宮內府	李載冕	金宗漢,* 趙漢國(7. 28)	宮內府	李載冕	金宗漢*
外務衙門	金允植*	金嘉鎮*	外部	金允植*	李完用
內務衙門	閔泳達*, 徐相雨(8. 25)	李垞鎔	內部	朴泳孝	李明善 李允用 (警務使)*
度支衙門	魚允中*	金喜洙, 韓耆東(11. 1)	度支部	魚允中*	安駟壽*
軍務衙門	李奎遠, 趙義淵 (서리: 8. 13)	趙義淵,* 白樂倫(8. 7)	軍部	趙義淵*	權在衡*
法務衙門	尹用求, 李容元(8. 27), 洪鍾軒(9. 8)	金鶴羽,* 鄭寅星(10. 7)	法部	徐光範	李在正
學務衙門	朴定陽*	鄭敬源*	學部	朴定陽*	高永喜
工務衙門	徐正淳, 安駟壽(7. 19)*	韓耆東, 李道宰(8. 7) 趙東弼(10. 7)	農商工部	金嘉鎮*	鄭秉夏
農商衙門	嚴世永	鄭秉夏, 成岐運(9. 4)			

※ () 부분은 『일성록』 7월 15일 이후 추가 임명기사, * 표시는 軍國機務處 會議員.

적 상황 변화에 따라 주요 부서의 고위 관료들의 면모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표 오른쪽은 1894년 12월의 각료 임명과 그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1895

⁵⁵ 『일성록』, 『官報』 1894년 7월 15일자 관직 임명사항임; 2차 갑오개혁 정부의 관리 임명은 『官報』 1895년 4월 1일자 관직 임명사항임.

년 4월 1일에 2차 갑오개혁 정부가 새롭게 재편된 것을 보여준다. 앞서의 1차 개혁 정부와 비교해 보면 의정부와 궁내부·외부·탁지부·법부·학부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내부와 법부에 박영효와 서광범이 새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894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정계의 권력 다툼에 따른 것이다. 두드러진 특색은 흥선대원군 계열의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⁶

갑오개혁 정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당시 정파의 분석은 “김충리(金總理), 김외무(金外務), 어탁지(魚度支)는 보수파(保守派)로” 구분하고 이들의 참모로 ‘내각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의 지위에 해당하는 유길준(兪吉濬)’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에 ‘박내무(朴內務), 서법무(徐法務) 두 사람은 새로 외국에서 귀국하였기 때문에 개신파(改新派)라고 일컬어진다”고 보고 있다.⁵⁷ 이러한 변화는 1894년 9월 이후 조선 내부의 정세 변화와 일본의 적극적인 간섭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이었다.

2. 갑오개혁 정권의 청일전쟁 협조

일본은 1894년 6월 경복궁 점령 이후 청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선의 구축 의의를 받아낼 심산이었다.⁵⁸ 그래서 일본 대본영에서는 “개전의

56 大院君派에는 흥선대원군의 자손인 전 궁내부대신 李載冕, 李垞鎔을 비롯하여 朴準陽, 李泰容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朴準陽, 李泰容 등은 1894년 9월 이후 살해되어 정치세력에서 탈락하였다. 「對朝鮮政策關係書類 - 10. 現今朝鮮各派閣と重要人物」, 『原敬關係文書』 6권, 日本放送出版協會, 122~123쪽.

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7)』(12), 「朝鮮內閣의 破裂 및 總辭職 動議件」(機密 第45號, 1895. 4. 24), 10~14쪽.

근거가 될 만한 주의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 여러 갈래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터에 오토리 공사가 건의에서 밝힌 대로 병력으로써 한정(韓廷)을 압박하고 왕궁을 포위하여 강제로 우리나라의 요구에 응하고 따르게 한다”는 ‘고수적 외교전략’을 취하려고 하였다.⁵⁹

일본은 경복궁 점령 직후 고종을 압박하여 청군을 몰아낼 것을 일본에 요청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원군과 조병직은 3일간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지연책을 썼다고 한다. 결국 6월 23일(7월 25일) 오토리 공사가 조선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다.⁶⁰

그렇지만 중요한 증거인 전문은 밝혀져 있지 않다.⁶¹ 당시 일본 신문은 6월 23일 기사에서, “궁중에서 대회의를 열어 아산에 있는 청병을 철거시키기 위해 오토리 공사에게 위임장을 건네주는 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대원군은 크게 동의를 표하고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병직은 책임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붓을 들기를 주저하고 여하튼 구실을 붙여 줄곧 항의해 마지않았다. 이에 외무협판 김가진, 동참의 유길준이 정

58 일본의 개전 전략에 대해서는 朴宗根(1984), 앞의 책, 76~81쪽.

59 『蹇蹇錄』 초고본, 108쪽; 朴宗根(1982), 앞의 책, 76쪽 각주 52 재인용.

60 유영익은 대원군과 일본 간의 불화 요인으로 대원군이 일본의 대청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7월 25일까지 조선에서 청군을 축출할 권한을 일본군에 부여하는 내용의 조선 외무아문의 위임장을 발급해 달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다보하시의 견해에 따라 부연 설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청국 구축을 요청하는 위임장의 내용과 문제점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유영익(1996), 「대원군과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재조명』, 98쪽; 田保橋潔(1940), 앞의 책(下), 446~449쪽.

61 이에 대해 나카쓰카는 의뢰 자체가 조선 정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中塚明(1968), 앞의 책, 225쪽.

론을 주창하고 이를 반박하여 일시 논의의 꽃이 분분하게 피게 되었다”고 전하였다.⁶²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결국 아산에 주둔한 청병을 철거해달라는 위임장을 오토리 공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 부분에는 상당한 이론이 있다. 김윤식은 오토리가 입궐하여 내정개혁안의 승낙을 강요한 뒤, 일본군이 칼을 빼들고 국왕을 협박했기 때문에 조·청 간 모든 조약의 폐기와 함께 의뢰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다고 하였다.⁶³ 이 기록은 당시 김윤식이 음력 6월 22일자로 해배되어 먼천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고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6월 23일의 정황으로 보아 일본의 강요와 대원군의 동의를 통하여 구축 의뢰의 위임장을 제공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병 구축 의뢰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런데 이는 실제 문구상으로 일본의 요구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토리는 “문체(文體)가 온당치 못해서 협의 개정 중이다”라고 보고하였다.⁶⁴ 그것은 조선 정부에서 직접 청국의 구축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일본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내용으로 일본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 자체로는 외교상 개전의 명분이 되기 어려웠다.

⁶² 『時事新報』 1894년 8월 5일 2면 3단 「景福宮大會議」 기사.

⁶³ “日使以五條爲請，皆即準許，不請召外督辦，使爲照會，言明我國與中國章程，均爲廢紙，督辦持難，日兵皆拔劍上殿，不得已而許之，又討票據一張言，在牙山之清兵，準日公使代辦，亦不得已書給.” 김윤식, 『속음청사』(상), 고종 31년 6월 26일조, 327쪽.

⁶⁴ 『일본외교문서』 27-1, No. 423, 「事變後大關内ノ模様内政改革ノ進行并外交上ノ變更」, 629~630쪽.

그래서 의뢰 위임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본군이 풍도에서 청과 개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전 의뢰 위임장을 둘러싼 논쟁은 조선 정부가 직접 청군의 구축을 요청하는 외교공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는 조선 주재 일본공사의 강압에 따른 조치에 불과했으며, 구축 의뢰의 외교공문을 정식으로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렇게 갑오개혁 정부는 청과의 개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일본 정부의 강요에 대응하여 소극적인 입장 또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대외 협조 강요가 이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갑오개혁 정부는 이전의 조·청관계 폐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6월 28일(7월 30일) 갑오개혁 추진 기관인 군국기무처는 “從今以後 國內外公私文牒 書開國紀年事 一與清國 改正約條 復派送特命全權公使 于列國事”⁶⁵라고 결의하였다. 이는 종래 청국과의 형식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의 독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국과의 약조를 개정하고 여러 나라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1880년대 중반 이래 강요되어 왔던 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조약을 체결한 각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7월 1일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이 청과의 전쟁을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 2건을 내렸다.

65 『일성록』 31, 1894. 6. 28, 200쪽; 서울대학교 규장각(1991), 「議案」, 『議案·勅令』(上), 6쪽.

- 이번엔 일본 정부가 군사를 출동시켜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주권(自主權)을 보호하고 인정하였으니 급히 전권대사를 파견하여 사례함으로써 우의를 두터이하고 선린관계를 더욱 깊게 할 것이다.
- 일본 군사가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나라 군사를 막자는 데서 나온 것으로써 조금도 악의가 없으니 모든 우리 백성들은 각각 서로 안심하고 무사하다는 것을 잘 알라는 뜻으로 각 지방에 통지할 것이다.⁶⁶

청일전쟁에 대한 협조 공문은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갑오개혁 정부가 일본에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렇지만 전쟁 협조 공문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6월 25일(7월 27일) 풍도 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오개혁 정부가 이전에 명백하게 청과의 단절과 전쟁 협조를 선언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양국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가조약(假條約)’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⁶⁷ 이는 7월 1일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의 내정개혁 권고를 채택하여 순서대로 실행하기를 보장할 것, 철도 부설을 일본 정부 혹은 일본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수할 것, 내정개혁 실시를 위하여 정무(政務) 법률(法律)의 고문으로 일본인을 초빙할 것” 등이었다.

⁶⁶ “一 此次日本政府 出力保認我固有自主 派全權大使 致謝厚誼 益敦好事 一 日兵之留駐各地方寔出於防備清兵 毫無惡意 凡我士民 其各洞悉相安無事之意 行會各地方事.” 『일성록』 31, 1894. 7. 1, 204쪽.

⁶⁷ 『주한일본공사관기록(1)』(7), 「朝鮮政府와의 假條約締結件」(機密 第143號, 本 83, 1894. 8. 1,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19쪽.

대체로 일본이 내정개혁을 간섭하고 철도 부설 등 산업 기반 확대의 이권 침탈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갑오개혁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통한 개혁과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그런데 이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금년 7월 23일 대궐 인근에서 양국군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이를 거론하지 말 것”과 “일본 정부는 원래 조선국의 독립을 도와 자주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니 장래 조선국의 독립 보호에 관한 모든 필요 타당한 사항은 따로 양국 위원을 보내 회동하고 상의하여 결정할 것” 등 2개의 조항이었다. 전자에 관해서는 경복궁 점령사건에 대해 일정한 의견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조선 측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독립과 더불어 보호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가조약안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향후 구체적인 조약 체결을 통하여 조선의 내정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와 간섭이 보장되는 합법적인 근거로 악용될 수 있었다.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조선 측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한 성과로 7월 20일(8월 20일) 양국 잠정 합동 조관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관의 전문은 “대조선·대일본 양국 정부는 조선력 개국 503년 6월 21일·일본력 메이지 27년 7월 23일 한성에서 양국 군대가 우연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을 수습하는 한편 장래 조선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고, 또한 피차의 무역을 장려하여 더욱더 양국 간의 친밀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기에 합동조관(合同條款)을 잠정(暫定)하니”라고 되어 있다. 이는 향후 양국의 외교·경제 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요 요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一. 내정개혁 절목 중 京城·釜山 두 지역 및 京城·仁川 두 지역 간에 철도를 부설하는 일은 조선 정부에서 그 재정이 아직 윤택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일본 정부 혹은 일본의 어떤 회사와 계약을 체결, 시기를 보아 기공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일의 추진이 어렵다. 그러므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서 가능한 빨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추진되도록 함이 긴요하다.
- 一. 京城·釜山 두 지역 및 京城·仁川 두 지역 간에 일본 정부에서 이미 가설한 군용 전신선은 적절한 시기를 참작, 조관을 체결하여 그 存置를 도모하여야 한다.
- 一. 장래 양국의 교제를 친밀히 하고 또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는 전라도 연안에 하나의 通商港을 개설해야 한다.
- 一. 올해 7월 23일 왕궁 근처에서 일어났던 양국 군대 간의 우연한 충돌사건은 피차간에 이를 추궁하지 않는다.
- 一. 일본 정부는 본시 조선을 도와서 그 독립과 자주의 業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희망하므로, 앞으로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하여는 양국 정부에서 위원을 파견해 회동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⁶⁸

이 조관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조관 체결의 목적이 일본 정부가 조선을 도와서 독립과 자주의 業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양국 간의 무역 증대를 위해 철도 부설, 군용 전신선의 설치, 개항장의 증설 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의

⁶⁸ 『일본외교문서』 27-1, No. 442, 「朝鮮政府ト假條約締結ノ件」(1894. 8. 25, 발신 駐韓日本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652~656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5)』(11), 「朝鮮政府와의 假條約締結件」(機密 第173號, 本 97, 1894. 8. 25,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4~26쪽.

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7월 23일 왕궁 근처에서 일어났던 양국 군대 간의 우연한 충돌사건”이라고 하여 경복궁 점령사건을 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차간 이를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책임에서 아예 벗어나려 하였다.⁶⁹

일본은 또다시 조선 정부에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강요하였다.⁷⁰ 그러나 조선의 갑오정권은 그러한 강요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7월 26일(8월 26일)에 체결된 양국 맹약의 전문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대조선·대일본 양국 정부는 조선력 개국 503년 6월 23일·일본력 메이지 27년 7월 25일에 조선 정부가 청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를 조선 경성 주재 일본 특명전권공사에게 위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한 이후 양국 정부는 청나라에 대하여 이미 공수상조(攻守相助)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양국이 일처리를 함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69 향후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양국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는 사문화되었다. 일본은 조선 정부에 정부에 밝은 사람을 시정고문으로 삼으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외무대신 김윤식은 공식적으로 고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김윤식은 고문의 역할이 정치적 간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70 1894년 5월 하순 일본은 “조선국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의 보호를 받게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내정개혁에 관해서도 제국 정부의 보조를 받게 하는 特約을 맺어 제국 정부가 조약상의 권리로 조선 정부의 내지 외교에 간섭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일본외교문서』 27-1, No. 379, 「對朝鮮政策ニ關シ意見上申ノ件」, 1894. 5. 23(양 6. 26), (발신 京城駐在領事 内田定槌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562~567쪽; 『일본외교문서』 27-1, No. 428, 633~635쪽; 『일본외교문서』 27-1, No. 441, 652~656쪽 참조.

다음은 6월 23일 청국 군대를 철수시키게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체결하였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 정부가 청나라에 대해 이미 ‘공수상조’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한 것이다. 조선은 청일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를 후원해 주는 나라도 아니었다는 것이 조판 체결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이후에는 청일전쟁의 협조자로서 위치한다는 의미였다. 경복궁 점령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 후인 7월 26일에서야 비로소 조선과 청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실제 조항은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첫째와 둘째 조항에서 언급한 대로 “이 맹약은 청국군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 것”과 “일본군은 청국에 대한 공수의 전쟁을 맡고”조선국은 그 배후에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⁷¹

그런데 양국 간의 ‘잠정합동조판’과 ‘양국맹약’은 대외적으로 조약으로서 정식으로 공포되지 못하였고, 단지 양국 내부의 비밀문건으로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 갑오개혁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점령과 정치적 강요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일본의 왕궁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청일전쟁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후 갑오정권의 행동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빌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약조는 양국 간의 정식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국가 간의 구속 효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과의 맹약 체결을 통하여 정부 간의 레벨에서 긴박될 수밖에 없었다. 이

71 『주한일본공사관기록(5)』(12), 「朝日兩國盟約 調印の件」(機密 第174號 本 98, 1894. 8. 27,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島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6~27쪽.

러한 갑오개혁 정부의 일본과의 약조는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선 정부를 구속하여 강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변형의 상태였다고 하겠다.⁷²

IV. 갑오개혁 정권의 개혁 방향과 대일 전략

1. 조선 정치세력의 대일 전략과 혼선

1894년 하반기 조선 정국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새로운 개혁정권의 수립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이미 5월부터 정치적 복귀를 꿈꾸고 있었으나 제대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정치 전면에 나서지 못하였는데, 이제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갔다. 6월 고종은 그동안의 정치 폐단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대원군에게 국가의 주요 정무에 관한 처결권을 넘겼다. 본래 대원군이 정치에 뜻을 다시 두었다 하더라도 대원군의 등장은 당시 일본 외교관들의 보고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³ 아무튼 대원군은 고종의 권위를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게

⁷²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해서 조선 정부에서 먼저 농민 탄압을 요청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일본군이 동원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894년 9월 일본은 이 양국 맹약을 이용하여 그것을 합리화시켰다. 왕현종(1996), 앞의 글, 511~519쪽.

⁷³ “일반 인민의 인기는 전적으로 大院君에게 쏠리고 있으며 대원군도 청운의 뜻을 품고 있는 모양이기에,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金嘉鎮·安駟壽·岡本·小川 등을 이용하여 우선 대원군을 입궐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한일본공사관

되었고, 1차 개혁 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의 개혁 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원군은 초기 군국기무처의 개혁 추진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내심 과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대원군은 “입결 후 오로지 개혁파의 의견에 굴종하고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은 채 대개 인가해 주는 것이 상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7월 초순부터 개혁정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7월 4일 이미 대원군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만나서 청·일 양국의 대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에 일본은 이웃나라의 호의를 아끼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록(1)』, 『朝鮮政府의 內政改革案 拒絶로 인한 談判 및 大院君 執政의 件』(機密 第136號 本 79, 1894. 7. 25,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309~312쪽, 번역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토리 공사는 “평상시 개혁을 희망한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여 그 시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 사람들은 金嘉鎮·趙義淵·權泳鎮·俞吉濬·金鶴羽·安駟壽·洪鍾宇 등으로 먼저 閔氏를 물리치고 대원군을 總理로 추대하여 정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대원군의 추대설을 강조하였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3)』, 『安駟壽氏의 內話』(發第85號, 1894. 6. 24,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24~26쪽. “그러나 대원군이 마음속으로 국왕으로부터 꼭 칙사가 오기를 기대하고 주저해서 입결할 결심을 하지 않으므로 杉村 서기관이 몰래 사람을 趙義淵씨에게 보내 속히 입결해서 칙사를 대원군에게 보내도록 조치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럴 때 칙사가 오고 안 오고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오직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입결해 주기 바란다’고 대원군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大院君의 入闕 顛末』(內信, 1894. 7. 31,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312~314쪽.

그 호의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본이 바라는 개혁은 너무 지나치게 급하고 과격해서 이에 대해서는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일·청 양국은 이미 개전(開戰)하였다는데 양국이 전쟁을 길게 계속하면 동양 평화에 매우 해가 될 것입니다. 부디 각국의 주선에 의해 조정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⁷⁴ 대원군은 일본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갑오개혁의 내용이 조선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7월 말 대원군은 “근래에 와서 점차 전자(專恣)의 징조를 나타내고 이미 국왕의 인가를 거쳐 발표한 법률과 규칙에도 아랑곳없이 일을 처리하는 일이 있다”고 비판하였다.⁷⁵ 그래서 갑오개혁 관료들 중 일부는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대원군은 군국기무처의 개혁에 반대하는 행동을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일본의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청군과 연락을 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7월 말 청국은 대규모 군대를 출병시켜 이미 평양에 들어와 주둔하고 있었고, 조만간 서울로 진격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 - 관리들 중에는 청국군의 남하를 바라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국에의 기대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양국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미묘한 상황으

⁷⁴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러시아 公使 베베르의 大院君 面謁의 件」(機密 第144號 本 84, 1894. 8. 4,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島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20쪽.

⁷⁵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朝鮮政府 內政改革의 전반적 進行상황」(機密 第176號 本 100, 1894. 8. 31,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島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28~29쪽.

로 반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원군은 앞서 7월 4일 러시아 베베르 공사와의 회동에서 청일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동양 평화에 방해되니 이를 중재해 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원군은 청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은밀하게 추진하였다.

7월 28일 대원군은 평안감사 민병석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의 군대 주둔을 비판하며 청나라의 군대가 승리하길 고대한다는 편지를 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⁷⁶ 실제 편지는 “상국(上國)은 많은 원병(援兵)을 보내시어 우리의 종사와 궁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매국행위를 감행한 간악한 무리들을 하루빨리 일소하여 이 위기를 구제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요컨대 일본군을 구축하고 일본인에게 아부하는 친일 개혁파 무리들을 일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문건은 8월 17일 일본군의 평양성 전투 승리 이후 9월 11일에 압수되었다.⁷⁷ 9월 초까지 일본은 대원군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뚜렷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청군의 의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 남쪽에 있던 동학군의 복상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 남은 수단은 동학농민군의 재봉

76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清將에게 보낸 大院君의 親書 件」(1894. 10. 10, 발신 平壤 公使館에서 一等書記官 小村壽太郎 → 수신 在京城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1894. 11. 02), [別紙 1] 「大院君의 親書」 1(1894. 7. 28, 발신 老石生 → 수신 箕伯台兄), 80~81쪽; 유영익(1996), 앞의 글, 104~113쪽 참조.

77 『주한일본공사관기록(5)』(4), 「大院君의 東學黨 선동에 관한 件」(1894. 11. 10,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82~85쪽.

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갑오개혁의 내부 개혁 관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⁷⁸

8월 말 당시 동학농민군은 곳곳에서 재봉기를 결의하고 있었으므로 갑오개혁 정부의 담당자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 회의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때,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직접 농민군들에게 조정의 개혁사업의 취지를 소개하면서 농민군을 귀화시키려는 효유문을 내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대원군은 각지에 밀사를 보내어 은밀하게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원군은 갑오개혁 정부의 개혁 관료들을 축출하기 위해 9월 3일 궁문장 김기홍으로 하여금 김홍집을 위시한 8명의 개혁 관료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⁷⁹ 이에 중앙정계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군국기무처 개혁이 주춤하게 되었다. 더욱이 개혁 관료 중의 한 사람인 법무협판 김학우의 암살이 있던 10월 2일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정치 변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제에 이르렀다.⁸⁰

이처럼 대원군은 일본의 감시와 갑오정권의 비협조 속에서 조선 정부의 정권을 독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이중적인 정략을 구사하였다. 그렇

⁷⁸ 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백(1963), 「동학당과 대원군」, 『역사학보』 17·18; 양상현(1997), 「대원군과의 농민전쟁 인식과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5)』; 趙景達(1998), 『異端の民衆反亂』, 岩波書店 참조.

⁷⁹ 『관보』, 개국 503년 9월 1일·4일; 『일본외교문서』 27-1, No. 458, 「宮門將金基泓 上疏ノ件」, 1894년 10월 10일(음 9월 12일), 676~677쪽; 『甲午實記』, 9월 4일; 『羅岩隨錄』 217, 「守門將 金基泓 上疏」, 9월 3일, 394쪽.

⁸⁰ 『주한일본공사관기록(7)』, 「大院君과 李埈鎔의 음모에 관한 전말 보고」(機密第48號, 1895. 5. 9,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15~19쪽.

지만 대원군의 대내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대원군과 그의 손자 이준용(李埈鎬)의 정치 공작이 상당히 음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광범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9월 중순에 이루어져서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 핵으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간이나 북상이 늦어짐으로써 중앙정계의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8월 중순 이후 조선 정계의 혼돈 상태는 당시 일본 외교관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으며, 일본과 청의 전쟁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2. 보빙사절의 파견과 대일 외교 협상

갑오개혁 정부는 8월 4일 일본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안을 결의하였다.

현재 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니 교제를 더욱 돈독하고 밀접히 해야 하므로 금번 보빙대사(報聘大使)는 평소 성망(聲望)이 두드러지는 사람 중에서 신중히 선택하여 속히 파견하고 일본 동경에 주차하는 판리공사는 감하하여 교섭사무에 익숙한 사람을 임명하여 전권공사로 파송한다.⁸¹

이는 갑오정권의 대일외교 창구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81 “一 現在本國與日本關係 綦重交際 尤宜敦密 此次報聘大使 慎擇聲望 素著之員 從速派遣 而駐劄東京辦理公使減下 以諳練交涉事務之員 差送全權公使事.” 『議案』(규장각자료총서(1991), 『의안·칙령』(상), 서울대학교 도서관, 34쪽).

당시 주일관리공사 김사철은 6월에 급거 귀국하였는데, 그는 일본의 전쟁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청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대한정책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⁸²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사를 파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8월 16일 보병대사 박정양, 전권공사 이완용을 임명하였다.⁸³ 8월 20일 전권공사 이완용의 임명을 취소하고, 학무참의 이상재를 보병대사의 수원으로 포함시켰다.⁸⁴ 이어 8월 29일에는 보병대사로 임명된 박정양이 신병을 이유로 체임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고종은 “중정경(宗正卿) 이준용을 일본을 답례 방문하는 대사(大使)로 특별히 파견하여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두터이할 것이다”라는 전교를 내렸다. 고종의 전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보병대사는 8월 17일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갑오개혁 정부를 대표해 파견되므로 정치적으로 주요한 지위를 가진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⁸⁵ 여기에는 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을 일본

82 한철호(2003), 「주일 조선공사의 파견과 외교 활동(1887~1894)」, 『한국 근대 사회와 문화』(I), 서울대학교출판부, 153~154쪽.

83 “議政府啓言 日本報聘大使與全權公使 不可不趁速派遣 臣會同外務大臣議薦備望 請取旨點用 從之 以朴定陽爲報聘大使 李完用爲全權公使.” 『일성록』, 278쪽; “농상아문 협판 성기운(成岐運)을 주차일본 전권대신(駐節日本全權大臣)으로 특파하여, 東京에 가서 사신의 일을 처리하게 하라.” 『일성록』 31, 1894. 9. 6, 301쪽.

84 1894년 8월 27일 이완용은 상을 당하고 부친의 병환으로 관직을 맡을 수 없음을 고하는 사직 상소를 올렸다. 『일성록』 31, 1894. 8. 27, 283쪽·290~291쪽.

85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인 8월 24일 군부대신 조희연은 일본에 축하 전문을 보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5)』(35), 「平壤勝戰에 대한 軍務署

에 파견하여 국내에서의 정치 활동을 제약시켜야 한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대원군은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에게 “보빙대사로 박정양 대신 나의 손자 이준용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니 9월 1일(9월 29일) 자신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⁸⁶

그러나 9월 5일에 다시 보빙대사가 바뀌었다. 고종은 최종적으로 “일본보빙대사(日本報聘大使)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堉)이 특별히 가서 우의(友誼)를 돈독히 하라”고 결정하였다.⁸⁷ 당시 이준용은 갑오개혁 정부의 전복을 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 보빙대사의 역할을 스스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반면에 대원군은 보빙대사의 역할을 이준용에게 맡김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보빙대사 임명을 둘러싸고 혼선이 발생한 것은 보빙대사의 정치적 위상이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외교적 측면과, 일본과의 개혁 협조를 위해서는 개혁의 실무 인사들이 수행원으로 참석하여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대외정책 등 다각도의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보빙대사의 파견을 단순히 청일전쟁에서의 일본 승리를 축하하는 사절단이라는 의미에 한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갑오개혁 정부는 8월 말쯤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지위 상실과 개혁 진로의 불투명성 때문에

理大臣의 축하전보」(1894. 9. 19,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大將 山縣有朋), 274쪽.

⁸⁶ 『各國特派使節來朝雜件』, 「日清韓交涉事件에 關한 朝鮮報聘大使義和宮來朝의 件」(電受 제844호, 電信 譯文 명치 27년 9월 28일 오후 6시 45분, 7시 30분 접수 도쿄, 陸奧 外務大臣).

⁸⁷ 『일성록』 31, 1894. 9. 5, 300쪽.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갑오개혁 정부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향후 개혁의 향방에 대해 일본에 협조를 최대한 구한다는 입장에서 대외 정책의 실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수행원의 면모를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9월 13일(10월 11일) 보빙대사 수원(隨員)은 학무참의 고영희(高永喜), 전 훈련판관 장순규(張順逵), 통역(通譯) 궁내부주사 전준기(全峻基), 유람조사(遊覽朝士) 의정부 도헌 유길준(兪吉濬), 탁지주사 어윤적(魚允迪), 의정부 주사 윤치호(尹致昨), 전 주사 한선회(韓善會), 전 우승선 박준양(朴準陽), 전 현감 김사준(金思濬), 의정부 주사 조중응(趙重應), 외무아문 주사 김관제(金觀濟), 장위영 부령관 이병무(李秉武) 등으로 결정되었다. 보빙사의 일행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정부, 학무아문, 탁지아문, 외무아문 등의 실무 관료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갑오개혁의 핵심 관료 중 하나인 의정부 도헌 유길준이 수행한 점이 주목된다.

보빙대사 의화군의 일행은 9월 15일 각 아문 대신, 협판, 참의 등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하였다.⁸⁸ 이들은 9월 22일 대본영이 있는 히로시마[廣島]에 도착하였다. 이어 9월 24일 메이지 일본 황제를 알현하고 봉서를 헌납하였다. 9월 29일(10월 27일) 도쿄로 가서 일본국 황후를 알현했으며, 10월 5일에는 황태자를 면담하였다. 이렇게 한 뒤 10월 13일 도쿄를 출발하여 10월 20일 서울로 돌아와 고종에게 귀국보고를 하였다.⁸⁹ 이때 보빙

⁸⁸ 9월 12일에 의화군이 보빙대사로서 하직인사를 했다고 하였지만, 다른 기록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종실록』 1894년 9월 12일; 『續陰晴史』(上), 고종 31년 갑오 10월 15일, 340쪽.

⁸⁹ 『各國特派使節來朝雜件』, 「日清韓交涉事件에 關한 朝鮮報聘大使義和宮來朝의 件」; 『고종실록』 1894년 10월 20일.

사 수행원으로 참가한 유길준은 일행과 별도로 9월 29일쯤 대본영이 설치된 히로시마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별도의 회담을 벌였다. 그는 김홍집의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⁹⁰

유길준은 1차 갑오개혁 정부의 핵심 관료로서 이번 일본 방문에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신정부 창립 후의 상황과 앞으로 개혁을 실행하는 데 곤란한 사정을 상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고문관의 고병, 사관(士官)의 초병, 국채(國債) 발행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었다.⁹¹

우선 유길준은 일본 정부의 인사와 면담하면서 조선 정국과 갑오개혁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는 1894년 6월 이래 아직 지상의 개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실지 개혁을 할 것이고 조선의 일은 상하가 일심으로 합한 연 후에 가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총리대신 김홍집과 탁지대신 어윤중, 외무대신 김윤식의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 정국의 정파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길준은 대원군도 개혁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증기기관이 양 바퀴처럼 개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유길준은 군국기무처의 개혁을 매우 낙관적으로 긍정하고 있어서 대원군과 소장 관료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 조화롭게 정치를 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갑오개혁 정부 성립 이후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90 『兪吉濬全書』(IV), 353~391쪽;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1979), 『伊藤博文關係文書』七, 塙書房, 「178, 明治 27년 10월 27일(음력 9월 29일)」(발신 陸奥宗光 → 수신 伊藤博文 편지), 308쪽.

91 『兪吉濬全書』(IV), 「총리대신 이등박문 문답 - 갑오」, 일조각, 1971, 353~364쪽.

을 일본과 협의하고 자문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특히 의정부의 고문관이 될 사람으로는 총리대신을 보필하고 대원군의 전횡을 억제하고, 아래로는 각 아문의 고문관을 제어하여 협화(協和)를 잃지 않게 할 정도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위와 명망이 다 같이 제일류인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²

유길준은 또한 일본을 조선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나라로 인식하면서 일본에 의존하여 자주의 권리를 보존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었다.⁹³ 그래서 그는 일본의 권고와 압박으로 인해 개혁에 착수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뉘우치면서도 일본의 협조를 받아 개혁을 잘 행하면 독립을 보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유길준의 구상은 갑오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개혁 관료들과 공통적인 인식이었으며, 개혁사업에 일본의 협조와 충고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일본의 숨은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기도 하였다.⁹⁴

92 『주한일본공사관기록(5)』(4), 「都憲 兪吉濬氏가 金總理大臣의 內命을 받고 渡航하는 件」(秘密 第197號, 本 118,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59~60쪽,

93 兪吉濬은 1894년 6월 이후 스스로 개혁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의 권고와 압박에 의하여 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전국 인민과 세계 만국, 후세자손 등에게 ‘三恥’를 남겼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개혁이 비록 타율적이긴 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직 改革을 잘해서 자기의 獨立을 보존하고 남에게 불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開進의 실효를 거두어 保國安民을 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兪吉濬全書』(IV), 376~377쪽 ; 『議奏』 21책, 「秘密會議 求하는 請議書」 1895년 6월 19일.

이러한 회담을 통해 유길준은 일본 측에 몇 사람의 고문관 파견과 국제 모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토 총리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는 이미 조선 주재 일본 전권공사로 파견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갑오개혁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 정부가 향후 정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총리대신 김홍집을 위시한 갑오개혁 정부는 7월 중순 하나의 정부로서 조각을 한 후 수백여건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병사의 파견을 이용하여 일본 정부의 요로와 소통하며 개혁의 협조와 지원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이 방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갑오개혁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정부 차원의 평등한 교섭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결국 유길준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보병사 일행이 도쿄를 다녀온 후, 유길준은 히로시마에 다시 와서 이토 총리와 무쓰[陸奥] 외상을 만나 조선의 개혁 문제를 협의하였다. 마지막 만남을 마치고 유길준은 이들 앞에서 “조선국 독립만세”를 외쳤고, 두 대신은 박수를 쳐 주었다고 한다. 이때 일본과 조선 양측에게 조선 독립의 의미가 서로 달랐을 것이다.⁹⁵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갑오정권의 보병사를 통한 외교 활동에 대해 별다른 협조를 해 주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대조선방침은 청일전쟁의 항

⁹⁴ 일본의 보호국화 방침은 1894년 7월 17일(8월 17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大日方純夫, 「日清戰爭前後 日本政治에 있어서 東아시아秩序의 構想」 참조.

⁹⁵ 『兪吉濬全書』(IV), 364쪽.

방이 결정된 이후 더욱 명확해졌다. 일본은 이미 주한 일본공사의 교체를 통하여 이전과 달리 조선 내정에 깊이 간섭하려는 이른바 ‘보호국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현 정권의 권력구조에서 대원군을 제외시키고 박영효·서광범 등을 입각시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김홍집을 위시한 조선정권의 대외 협력 요청을 묵살하였던 것이다.⁹⁶ 결국 1894년 10월 갑오개혁 정부의 보병사 파견을 통한 대일 협상과 협조 요청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3. 일본의 내정간섭 강화와 보호국화 추진

1894년 9월 일본은 전격적으로 주한 일본공사의 교체를 통하여 개혁 정부의 재구성과 새로운 개혁정책의 수립, 동학농민군의 대토벌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하였다.⁹⁷ 이에 따라 일본은 당연히 대원군의 정치 간섭을 배제시켜 정치적 힘의 중심을 새로운 주한 일본공사로 옮기기 위해 강제적인 간섭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9월 17일(10월 15일) 전격적으로 주한 일본공사를 교체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중요 직책을 두루 거친 원로이자 조선 문제에 정통한 내무대신 이노우에를 조선주차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는 9월 19일에 전격 소환되었다. 이어 9월 28일 이노우에 공사가 파견되었다. 그는 조선 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우선 흥선대

⁹⁶ 『兪吉濬全書』(IV), 「外務大臣 陸奥宗光 問答」, 364~377쪽; 『兪吉濬全書』(IV), 「外務次官 林董 問答」, 384~386쪽.

⁹⁷ 유영익(1990), 앞의 책, 29~34쪽.

원군을 정치 일선에서 배제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김학우 암살사건 수사를 통하여 대원군의 음모를 조사하는 한편, 일본 대본영으로부터 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 보낸 밀서의 사본을 10월 10일에 송부받았다.⁹⁸ 10월 11일 김홍집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를 증거로 하여 대원군을 정계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였다.⁹⁹ 또한 10월 24일(11월 21일) 어전회의에서 7월 23일 대원군에게 부여되었던 정치적 권한을 회수하게 하였다.

이노우에는 10월 23일, 24일 이틀간에 걸쳐 내정개혁 요강 20개조를 새로이 제출하면서 향후 관제 개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주요한 조항은 제3조 왕실사무를 국정으로부터 분리할 것, 제5조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조직 권한을 제정할 것, 제6조 조세 기타 일체의 공납 등은 탁지아문에 귀일시키고 민중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일정한 비율로 하고 다른 여하한 명의로라도 이를 징수치 못하게 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이미 군국기무처에서 시행한 1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다만 제1조에 정권은 모두 하나의 원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국왕의 친재권을 명시한 것이 달랐다. 이 밖에 몇 가지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¹⁰⁰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98 『주한일본공사관기록(5)』(1), 「淸將에게 보낸 大院君의 親書 件」(1894. 10. 10, 발신 平壤 公使館에서 一等書記官 小村壽太郎 → 수신 在京城 特命全權公使 大島圭介, 1894. 11. 2), 80쪽.

99 『주한일본공사관기록(5)』(11), 「井上公使의 大院君祖孫 箝制策 內申 및 東學黨 鎮撫를 위한 日兵増派 요청」(機密 第211號, 1894. 11. 10,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69~72쪽.

100 “十六. 工務衙門은 아직 必要로 認치아니함. 十七. 軍國機務所의 組織權限

담고 있는 조향을 들 수 있다. 이는 갑오개혁 정부의 권력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의 고문관 초빙과 유학생 파견은 앞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간섭정책 선언에 따라 조선 정부는 10월 20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른바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으로 불리는 것으로, 향후 국가행정기구의 개혁과 사법부의 개혁, 재정차관의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10월 29일 이노우에 공사는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정을 개혁해야 되고 청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국시(國是)의 변경을 종묘에 서고하고 전국에 선포해야 한다”고 강제하였다.¹⁰¹ 이에 12월 12일 고종은 왕세자, 대원군, 종친, 여러 관료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5개조의 서고문을 바쳤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기본 강령으로 홍범(洪範) 14조를 선언하고 전국에 반포하였다.¹⁰² 홍범 14조 제1조는 “청(淸)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自主獨立)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1894년 12월 16일 의정부를 궁내로 옮겨 내각으로 칭하면서 본격적인 개혁 명령을 반포하기 시작하였다. 다음해 3월 25일 각 아문 설립령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칙령을 제정 반포하였다. 종묘에의 서고와 홍범 14조는 조선 정

을 改正이 可함. 十八. 熟練 顧問官을 各衙門에 聘用이 可함. 十九. 留學生을 日本에 派遣이 可함.” 『고종실록』 1894년 10월 23일조; 『일본외교문서』 27-2, No. 482, 「謁見ノ模様報告ノ件」 1894년 11월 20일(음 10월 23일), 91~107쪽.

¹⁰¹ 『일본외교문서』 27-2, No. 482, 「謁見ノ模様報告ノ件」, 106쪽; 『일본외교문서』 27-2, No. 486, 「謁見ノ模様報告ノ件」 1894년 11월 26일(음 10월 29일), 115~119쪽.

¹⁰² 『舊韓國官報』 1894년(개국 503) 12월 12일, 819~853쪽.

부가 일본의 개혁 강요에 따라 새로운 개혁을 선언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본격적인 간섭정책의 전개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조선의 내정간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력기구가 미비하였다. 그래서 주한 일본공사의 정치적 역량과 차후 배치될 각부의 고문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12월부터 본격화된 관제 개혁 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정권의 핵심기구인 내각관제와 내각회의가 출범하자 이제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¹⁰³ 이러한 상황에서 이노우에 공사는 조선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내정간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호국화의 기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재정 차관의 공여와 개항장 및 철도 부설 등 산업기반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 一. 경성에서 부산, 경성에서 인천, 경성에서 의주에 이르는 철도선로를 기한을 정해서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의 손으로 부설한다는 약속을 할 것
- 一. 電信線은 日淸강화 후에도 몇 년간 기한을 정해서 계속 일본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약속을 할 것
- 一. 군함 정박에 편리하고 긴요한 장소를租借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
- 一. 古阜(혹은 木浦), 大同江을 개항하고 거류지를 설치할 것

103 왕현중(2003), 앞의 책, 제6장 「근대국가체제의 권력구조와 지향」, 228~245쪽.

- 一. 30만 원을 海關稅를 담보로 대여하고 세관감독으로 일본인을 초빙, 고용하게 할 것
- 一. 銀貨 또는 地金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는 件¹⁰⁴
- 一. 전항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3도의 조세 외에 더해서 평양의 석탄 갱을 채굴하게 할 것. 단, 일본 기사를 초빙, 고용하여 그 채굴을 감독하게 할 것
- 一. 각 광산을 시굴하기 위해 일본 기사 3명을 초빙, 고용하게 할 것¹⁰⁵

이러한 방침은 11월 8일 이노우에 공사가 기안한 것이었다. 그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 정세를 틈타 조선에서 일본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을 도와서 그 독립을 공고히하고 내정을 개혁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모두 단순히 선린관계의 명분을 빙자했을 뿐”이라면서 “철도라든가 금전대여로 하여 이번에 조선에 대해 실리적으로 우리의 기반을 굳혀 두고 재정상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기타의 관계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간섭의 구실을 만들어 두는 것이 긴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영국이 이집트에 자본을 투하하여 실리적인 산업 기반을 독점한 침략 수법과 같은 것이다.¹⁰⁶ 이노우에는 만일 이

¹⁰⁴ 전라·충청·경상 3도의 조세를 담보로 충당하고 이의 원리금이 완제될 때까지 3도의 세무 기타 지방사무의 감독자로서 각 도에 일본인을 초빙 고용하게 할 것. 단, 원리금은 해마다 분할해서 3도의 조세 안에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조선 정부의 세입으로 할 것.

¹⁰⁵ 『주한일본공사관기록(5)』(10), 「內政改革에 관한 貸付金에 대한 上申」(1894. 12. 4,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160~165쪽.

¹⁰⁶ 갑오개혁기 일본의 내정간섭은 1905년 통감부의 설치와 보호국 지배방식과 상당히 달랐다. 有賀長雄(1906), 『保護國論』; 田中愼一(1977), 「保護國の歴史的 位置」, 『동양문화연구소기요』 71. 1894년의 시점에서 일본은 침략정책의

러한 내정개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학당 정벌을 위해 파견한 일본 군대를 철수하여 동학당의 진출을 수수방관함으로써 서울을 일시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하여 다시 강제하는 방안까지 동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결국 일본의 조선 내정간섭 정책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이용하여 조선의 내정간섭을 하고 일본의 정치·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자본 투자를 통하여 내정간섭의 구실을 영구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보호국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였다.

4. 조선 정부의 대응책과 정치·경제적 종속화

2차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의 적극적인 내정간섭에 대하여 수세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다. 우선 조선 재정의 궁핍과 개혁 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 재정 차관 300만 원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가혹한 조건들을 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1차 재정 차관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긴급한 재정 자금 충당을 위해 1894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다음해 1월 8일(2월 2일)에 종결된 논의에서 일단 13만 원 차관 도입이 결정되었다.¹⁰⁷ 이

모범을 영국의 이집트 지배사례에서 찾았다. 그래서 내정개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별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며, 조선 주재 전권공사를 통해 내정을 간섭하고 있었다. 일본은 명목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 내에서 간섭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¹⁰⁷ 『일본외교문서』 28-1, No.205, 「第一國立銀行ヨリ朝鮮政府ヘノ貸付金ニ關シ具申ノ件」 1895년 2월 2일(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23~325쪽.

자는 전체 대부액의 일부는 6%, 나머지는 10%로 고율이었다.

일본의 내정간섭 전략은 1895년 이후 재정차관 500만 원의 공여를 비롯하여 재정 정리 및 화폐 정리사업에 미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의 경제 개혁을 빌미로 해서 차관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894년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895년 1월 23일(2월 17일) 조선 재정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⁰⁸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은 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이었다. 황해·평안도가 엄청난 전쟁 피해를 입어 납세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세입의 대상은 경기·강원 2도의 조세만 있을 뿐이었다.¹⁰⁹ 1894년 말 당시 조선의 재정 상황 및 세출입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채의 원리금 미불액이 68만여 원, 외국인 급료 체불액이 2만여 원 등 대외채무가 모두 71만여 원이었다. 또한 탁지아문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무려 94만 6000여 원이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가 모두 지출해야 될 총액은 165만 7991원이나 되었다.¹¹⁰

¹⁰⁸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23) 「朝鮮의 財政」(機密 第14號,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1895. 2. 17(음력 1월 23일), 111~125쪽(원문 362~375쪽).

¹⁰⁹ 이에 따라 이노우에[井上馨]는 安廣 書記官이 귀국하는 편에 앞서 설명한 500만 원 공채발행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니오[仁尾] 主稅官에게 갑오 12월 말까지 조선 재정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하였다.

¹¹⁰ 이때 稅入을 가상하여 조사한 표에서는 지세를 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평안도의 지조 50만 원, 홍삼세 18만 원, 어업 및 염업세 1만 2000원, 화전세 등이 30만 원, 호세가 100만 원, 해관세가 50만 원 등 749만 원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内外債 상환 연액 96만 1000여 원을 공제하면 조세 수입에서 650만 원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원래 일본은 재정차관 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액수는 실제 재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지폐증발의 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새로 확보된 자금은 한편으로 700만 원의 지폐증발의 자금으로 지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재정을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민재정으로 재편성한다는 것이었다.¹¹¹

드디어 1895년 1월부터 일본 정부와 갑오개혁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

의 여유가 생기므로 600만 원 내외로 재정수요를 확정하고 급격한 개혁을 기도하지 말도록 하였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朝鮮國 現在の 内外債調査」(갑오 12월말), 113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朝鮮政府 歲入假調査」, 115쪽 참조.

- 111**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500만 원 공채를 대여하면서 제시한 요구조건이었다. 가혹한 차관 도입 조건은 조선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제1조 공채의 저당으로는 전라·경상·충청 3도의 조세로 할 것, 제2조 위의 저당권에는 선취권을 줄 것, 제3조 공채의 상환을 끝내기까지는 일본 정부의 관리 1명을 조선 탁지아문에 출장시켜 재정에 대한 조건을 붙여 전체의 감독을 하게 하는 동시에 조세로 저당 잡힌 지방에는 일본 관리를 파견해서 조세 징수를 감독하게 할 것, 제4조 공채 상환에는 금액 완제의 연한을 정하고 매년 말에 그 연도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지불하게 하며 만일 저당으로 충당한 지방의 조세가 어떤 사고에 의해 그 상환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국고의 수입으로써 그 부족분을 보상하게 할 것, 제5조 공채의 저당으로 충당한 지방의 공조수입 절차에 대해서는 조선 백성 중의 재산가와 일본 債主의 대리자 사이에 공동조합을 약정하게 하고 조선 정부의 명을 받아서 국고금을 취급하게 하는 방법을 정하게 할 것, 제6조 일본인을 조선 정부의 總稅務司로 임명할 것.” 『주한일본공사관기록(5)』(23), 「朝鮮의 財政」(機密 第14號, 1895. 2. 17,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111~125쪽.

부 차원의 재정차관 도입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¹¹² 12월 말 무쓰 외상은 대장대신 와타나베[渡邊國武]와 더불어 미쓰이[三井]은행, 미쓰비시[三菱]은행, 쇼킨[正金]은행, 다이이치[第一]은행 등 주요 은행 대표와 만나 조선 공채를 담당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결국 1월 28일(2월 22일) 무쓰 외상 측은 일본의 정부 예산 중에서 300만 원을 일본은행에 하부하여 니혼[日本]은행의 명의로 조선 정부에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곧 이어 300만원 대여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하였다.¹¹³ 이 차관안은 2월 23일 일본의 중의원과 귀족원을 통과하였다. 무쓰는 법제국 국장 스에마쓰[末松謙澄]와 니혼은행 대표 다루하라[鶴原定吉]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정부와 차관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협상하도록 하였다.¹¹⁴

그런데 차관협상을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계약 조건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로 말미암아 정부 간의 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차관협상은 공식적으로 니혼은행과 조선 정부의 ‘사적인 관계’ 계약으로 입지가 축소되었다.¹¹⁵ 양국 간의 협상은 2월 23일(3월 19일)부터 일본은행 협

¹¹² 『일본외교문서』 28-1, No. 222, 「朝鮮財政ニ關シ報告ノ件」, 337쪽.

¹¹³ 이때 일본 정부는 300만 원을 일본태환권(지폐)으로 조선 정부에 대여하되 조선 정부는 2년 이내에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 공채로써 이를 상환토록 하고, 300만 원 차관의 이자는 연 6%, 담보는 조선의 세관 수입으로 할 것 등을 내정하였다. 『일본외교문서』 28-1, No. 224, 「朝鮮國政府へ一時金貸付ニ關シ通知ノ件」, 343쪽; 『일본외교문서』 28-1, No. 227, 「朝鮮國政府へノ貸付金ニ關シ通報ノ件」, 344~345쪽.

¹¹⁴ 『일본외교문서』 28-1, No. 229, 「朝鮮國公債ノ條件ニ關シ意見具申ノ件」, 346~347쪽.

¹¹⁵ 이토 총리도 “대여하는 금액의 처치에 있어서도 主客의 입장을 명백히하여 國際上 關係와 私法上 契約의 차이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고 이노우에 공사

상단과 조선 정부의 대표자로서 내무아문 대신 박영효, 탁지아문 대신 어윤중, 협판 안경수 등 사이에 여러 차례 이뤄졌다.

당시 일본은 차관 공여를 통해 일본의 태환지폐를 조선의 법정화폐로 통용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개화와 개혁 관료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¹¹⁶ 이들 개혁 관료는 일본 재정차관의 가혹한 조건에 대해서 조선의 독립 체면을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¹¹⁷ 이들은 지폐 발행으로 인한 일본 화폐에의 종속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차관의 저당물과 관련하여 해관세에서 타 차관과의 변제, 각 지방의 조세금을 저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상환기간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¹¹⁸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재정차관의 조건은 일부 수정되었고 3월 6일(3월 31일) 최종적으로 전 6조의 ‘차관조약’이 성립되었다. 그 조약의 내용은 일본은행이 조선 정부에 반액은 은화로, 반액은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총액 300만 원을 교부하고 연리 6%로 하여 3개년 거치 후 5개년 이내에

에게 간곡히 주문하였다. 伊藤博文 編(1936), 『秘書類纂：朝鮮交渉資料』(下), 東京：秘書類纂刊行會, 556~557쪽; 『일본외교문서』 28-1, No. 230, 「朝鮮國公債ニ關シ申進ノ件」, 349쪽.

116 당시 兪吉濬은 이미 1894년 10월 일본에 건너가 고문관과 차관 도입을 타진할 때, “借款은 富國이라면 殖産興業에 유리하겠지만 債務不履行에 의해 국제적 신의를 잃어버린다면 이집트와 같이 亡國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西遊見聞』 제8편, 「國債」, 226~231쪽; 『兪吉濬全書』(IV), 353~364쪽.

117 『일본외교문서』 28-1, No. 238, 「朝鮮公債ノ件」, 353쪽.

118 『在韓苦心錄』 125쪽; 『일본외교문서』 28-1, No. 238, 「朝鮮公債ノ件」, 353~360쪽; 『尹致昊日記』 IV, 42쪽.

상환한다는 것이다.¹¹⁹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대조건이 매우 가혹한 것이었음에도 재정차관 300만 원으로 당장의 재정 곤란을 타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¹²⁰ 이 재정차관 300만 원의 공여로 말미암아 1895년도 예산안이 확보되어 제2차 관제 개혁의 기본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조약상의 권리’를 빌미로 해서 경제적 차원에서 조선 문제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이때에 철도·전신에 관한 조약도 맺으려고 하였다. 1894년 10월에는 경성~부산 간, 경성~인천 간 철도 부설건으로 선로를 답사하기 위하여 측량조사단이 파견되었다.¹²¹ 12월 26일 일본 정부는 철도 건설 및 전신선 포설, 개항에 관한 조

119 『일본외교문서』 28-1, No. 238, 「朝鮮公債ノ件」, 357~358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朝鮮公債의 件」(機密 第30號), 186~193쪽.

120 특히 커다란 문제로 제기된 것은 재정차관의 담보물이 조세수입이라는 점이었다. 즉 조선의 국토, 그 일부의 수확물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이러한 차관협상에 대해서 재야 지식인이던 李沂는 “徒以借款爲事 則今年明歲逋負積多 其勢必至於割地而償之 苟以五百年社稷 三千里封疆 交手付人 後世君子執筆而求罪人 則吳恐閣下(魚允中)其爲首也”라며, 차관계약의 책임자가 된 魚允中이 경제정책에서 실책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차관 상환을 위해 땅을 떼어줘야 할 것을 우려하고 후세 사가들이 어윤중을 매국죄인으로 규정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李沂, 『海鶴遺書』 권5, 「答魚度支允中書」 乙未, 89~90쪽.

121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京城 釜山 및 京城 仁川間 鐵道建設約定概要 上申」(機密 第199號 本 120, 1894. 10. 12, 발신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166~167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釜山 京城 仁川間 鐵路踏査의 件」(機密 第215號 本 130,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1894년 11월), 167쪽.

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철도 부설을 일본이 담당함으로써 향후 50년간 철도의 운영권을 일본 정부에서 관리하는 가혹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였다.¹²²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 내부에서도 철도 부설안에 대한 반대론이 많아졌다. 일본 정부는 일부 조건을 양보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3월 19일 일본 정부의 각의에서 인천과 노량진 사이의 철도조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¹²³ 그렇지만 이 철도조약은 갑오개혁 정부의 반대로 실제 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1894년 말에서 1895년 3월 말까지 진행된 조선의 2차 개혁과 국채 도입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내정간섭과 이권 획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갑오개혁 정부의 개혁 관료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 자주권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재정 차관의 도입에서 보여주듯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후 1895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내각 관제를 비롯한 중앙행정제도의 개혁, 지방제도의 개혁, 재정 일원화 등 일련의 2차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 자금으로 이용되었으며, 개혁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일본인 고문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1895년 삼국간섭이라는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으로 인하여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이 일단 실패할 때가

1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鐵道建設 電信線布設 및 開港에 관한 條約締結의件」(機密 送 第5號, 1895. 1. 21, 발신 外務省 政務局長 小村壽太郎 → 수신 京城 公使館 書記官 杉村濤), 171~172쪽(원문 415~417쪽).

123 『주한일본공사관기록(5)』, 「仁川驚梁津間 鐵道條約締結의件」(機密 送 第25號, 1895. 4. 13, 발신 外務大臣 陸奧宗光 → 수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195~202쪽.

지 일본의 내정간섭 강화와 경제적 종속화는 지속되었다.¹²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갑오개혁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일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10월 보빙사 일본 파견을 통하여 일본과의 협조 전략을 구사하였던 대일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1894년 후반 동학농민전쟁의 2차 봉기에 대해 일본군의 협조하에 탄압함으로써 개혁정책의 내부 지지층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갑오개혁 정부의 외세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침탈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V. 맺음말

1894년 조선을 둘러싼 청일전쟁의 전개와 관련하여 갑오개혁 정부와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1894년 3월에 발생한 조선의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해서 청과 일본은 조선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세의 개입을 허용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민씨 정권의 정치적 실책을 들 수 있다. 당시 정권 담당자인 민영준은 원세개와 협의하면서 여러 차례 청군의 출병을 주장하였다. 결국 청군의 개입과 일본의 파병으로 청·일의 군사적 개입은 조선 내정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비화시켰다. 이에 대하여

124 삼국간섭 이후 1895년 4월 8일 이노우에는 종전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 개입정책을 재고하여 새로운 대한정책을 확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외교문서』 28-1, No. 266, 「日清平和後ニ於ケル對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 内申ノ件」(1895. 4. 8, 발신 特命全權公使 井上馨 → 수신 外務大臣 陸奥宗光), 396~397쪽; 柳永益(1984), 「清日戰爭中 日本의 對韓侵略政策」, 『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1~172쪽 참조.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5월 25일 김홍집이 언급했듯이,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국제적으로 보증하고 조정하는 방략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청이 임오군란에서처럼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본의 청·일 공동 간섭도 내정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대외적인 상황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침략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청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청의 군사 파견은 중주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내정간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어 조선의 개혁을 위해 공동 간섭하자고 주장하더니, 마침내 조선의 개혁강요와 청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수순을 밟았다. 그렇지만 일본이 원하는 상황으로 조선 정부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도리어 조선 정부로부터 자주독립권을 침해한다는 항의를 받고 있었다. 결국 일본은 경복궁 불법점령을 통해 자신의 정치·군사적 침략을 성취해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담당할 주체로서 갑오개혁 정권이 1894년 6월 25일 만들어졌다. 이 정권은 군국기무처라는 회의체를 통해 개혁 의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개혁의 주체성 확보에 노력했으며 대외적 간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7월 1일 가조약안과 7월 20일 양국 잠정 합동조관, 7월 26일 양국 맹약을 통해 압박해 나갔다.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일련의 강요를 수용하였지만, 대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정식 조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일본과의 맹약은 정부 간의 레벨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갑오개혁 정부는 전쟁 협조를 위해 조선군 및 조선 민중들을 동원했고 결국 청일전쟁 수행을 위한 대일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1894년 9월의 정국 상황에서 흥선대원군 정치세력의 정권 장악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평양성에서 청군이 승리한 후 청국의 협조를 얻고, 한편으로 동학농민군을 회유한다고 하면서도 농민군의 2차 봉기를 추동하는 등 이중적인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원군 계열의 정치세력은 갑오개혁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정치적 공작을 가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갑오개혁 정권은 상황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오개혁 정권은 자신의 권력 기반 확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사업의 추진에도 점차 일본의 영향력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본래 갑오정권의 의도는 최대한 개혁의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최소한 일본의 원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대일 전략의 일환으로 청일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보빙사 의화군 이강 일행의 방일시, 유길준은 일본의 정계 지도자인 이토나 무쓰에게 최소한의 고문관 협조, 유학생의 대일 파견 등을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갑오정권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신임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를 통해 경제적 차원에서 보호국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결국 제2차 갑오개혁과 그 자금으로 재정차관 300만 원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갑오개혁 정부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킨 계기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갑오개혁 정권은 자신의 개혁 주체성 확보와 대외적 독립권 획득에 대한 명분을 점차 잃어갔으며, 실질적으로 일본에 종속되는 길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갑오개혁 정권이 정권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에 의해 좌우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종

속 매판정권이었다고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갑오개혁 정부는 정권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거나 연기시켰다. 갑오개혁 정부는 가급적이면 일본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일 전략을 취하였다. 이런 미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갑오개혁 정권이 본래 독립과 자주권의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갑오개혁 정부는 1894년 하반기에 흥선대원군의 정치세력 배제와 동학농민군의 탄압 등 여러 차례 정치적 사안에서 일본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더욱 종속적 위치로 전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일전쟁 전후 조선의 대청정책과 조청관계의 변화

은정태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속방체제의 함의, 조약체제의 한계
- III. 대청관계의 변화, 새로운 모색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청일전쟁 시기를 전후의 조선의 대청(對淸)정책 변화와 이것이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을 대청 인식상의 전환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려는 것이다. 청국의 대조선정책이나 조선관이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조선 정부가 취한 정책은 무엇인가. 특히 청일전쟁을 계기로 전통적 속방 질서가 붕괴되면서 조선의 대청관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고, 대청관계의 새로운 양상은 무엇이었을까.

한국 근대사에서 조선과 청국 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관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청일전쟁이 가져왔다. 전통적인 중화질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만국공법적 국제질서가 전면화되면서, 내·외정의 혼란 속에 ‘과분(瓜分)’의 위기에 빠져드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새로운 맹주국으로 대두된 일본, 일본의 보호(식민)국 위협에 노출된 조선 등으로 재정립되었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과 근대의 충돌 및 해소가 이루어지는 지점이자, 문명적 진보와 민족적 열정을 제각각 분출하게 한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¹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삼국에서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조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1 청일전쟁에 관한 서적 중 당시 한국에서 많이 읽혀진 것은 미국 선교사 알렌(Young J. Allen)과 청국인 채이강(蔡爾康)의 『中東戰紀本末』(上海 廣學會, 1897)을 국한문으로 발췌·출간된 『中東戰紀』(柳槿·玄采, 皇城新聞社, 1899)였다. 청일전쟁은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로 받아들여졌으며, ‘야만’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문명’을 향한 각국 간의 경쟁만 남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청일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의 결과에 주목해, 일본의 조선 침략정책, 동학농민운동 및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관계 그리고 청일전쟁 전후의 국제관계 등 청일전쟁 이후 한국근대사의 흐름을 고려한 한·일관계사 연구에 집중하였다.²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청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군 파병의 배경, 속방관계의 청산, 대청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주목한 것들이 있다.³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유신과 천황제’라는 시각에서 일본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청일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청일전쟁을 ‘화이질서’가 ‘국제법질서’에 의해 해체·재편되는 과정으로 다루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⁴ 갑신정변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구래의 중주권이 아

2 실상 한국에서 청일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9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일전쟁 관련 심포지엄이 열린 자리에서 한 연구자는 “지금까지 한국인 중에는 전혀 연구자가 없다”고 고백하였다. 곧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조건에서 청일전쟁 자체보다는 그 결과에 주목하였고, 특히 일본의 조선 침략 기도에 따라 조선의 개혁 의지 좌절, 조선의 국제적 운명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6), 『淸日戰爭의 再照明』, 한림대 출판부 참조.

3 董德模(1974), 「淸日戰爭과 韓國 - 淸日 兩國의 派兵을 中心으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사회과학계』 4 ; 李洪吉(1976), 「淸日戰爭에 있어서 中國의 主戰論」, 『용봉논총 - 인문과학연구』 5집,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金舜圭(1988), 「청일전쟁 - 청측의 패인 분석」, 『軍史』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金志煥(2005), 「청일전쟁기 중국 외교노선의 변화」,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 具仙姬(2006), 「청일전쟁의 의미 - 조·청 ‘속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 엄찬호(2006),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10 등 참조.

나라 제국주의적 지배성격을 가진 조·청관계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체되고 후일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근대적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⁵ 즉 청국의 속방질서가 철저하게 관철되어 조선의 독립이 지연되었는데,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1882년 이래의 조·청관계를 ‘중주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외교적 실책이나 미숙한 원세개 임명 등의 ‘오류’가 있기는 했으나, 청일전쟁 직전에 청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우호적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고 파악한다. 아울러 청일전쟁에서 청군의 파병은 조선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청국은 전쟁을 피하려 했으며, 개전은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⁶ 그런데 청일전쟁을 다루면서 중국의 연구는 일본의 침략성을, 일본의 연구는 중국의 갑신정변 이후의 대조선정책을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흥미롭다.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침략주의적 모습이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해체를 위한 조선의 적극적 노력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76년 개항과 동시에 조선은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에 편입되었고, 1880년대 청국의 속방질서가 근대국제질서에서의 편입에 왜곡을 가져와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에 질곡으로 다가왔으며,⁷ 청일전쟁은 ‘속방 보호’를

4 이에 대해서는 大日方純夫(2007), 「일본에서의 청일전쟁 연구현황」,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참고.

5 原田環(1997a), 「日清戦争により朝清関係の変容」, 『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変容』, ゆまに書房; 原田環(1997b), 『朝鮮の開國と近代化』, 溪水社; 岡本隆司(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 出版會 참조.

6 陳偉芳 著(1959), 『朝鮮問題與甲午戰爭』, 權赫秀 譯(1996), 『清日甲午戰爭과 朝鮮』, 백산자료원; 林明德(1970), 『袁世凱與朝鮮』,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명분으로 한 청국과 ‘독립’을 내건 일본 간의 동아시아 패권 투쟁이었다는 점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국의 파병이 도리어 원세개가 조선 정부에 강요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왔다.⁸

한편 한국에서는 조선의 대청 외교정책과 대청 인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⁹ 이들 연구는 1880년대 조·청관계에 집중해 청일전쟁을 다루거나, 개전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것은 조선에서 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조·청관계나, 청일전쟁이 한국인들의 대청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 근대에서 한국인들의 중국 인식의 원형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전통적 청국관이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 간섭으로 대청외교와 인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국내적 위기가 사라지고 일본적 문명의 우위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대청외교와 인식에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곧 청일전쟁은 한국에 ‘청국적인 것’에서 ‘일본적인 것’으로의 뚜렷한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겠다.¹⁰ 그리고 조선의 대청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속방·자주

7 연갑수(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8 이태진(1999), 「1894년 6월 淸軍 朝鮮 出兵 결정 과정의 眞相 - 조선 정부 자진 요청설 비판」, 『韓國文化』 24.

9 申基碩(1967), 『韓末外交史研究 - 淸韓從屬관계』, 일조각; 權錫奉(1984),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研究(1894~1895)」,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權赫秀(1998), 「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 研究(1870~18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具仙姬(1999), 『韓國近代對淸政策史 研究』, 혜안; 王元周(2003), 「韓國 近代移行期 華夷觀의 變化와 民族意識」,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의 관계에서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대등한 관계로, 대청 인식상에서 보면 대국론에서 멸시론으로 전화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청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시기의 탐구는 제국주의와 문명에 대한 욕망, 전통과 보편에 대한 기억이 공존하는 가운데 연대와 갈등이 상존하는 오늘날의 한·중관계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한·청 양국 간의 상이한 역사상의 접점을 형성하길 기대한다.

II. 속방체제의 함의, 조약체제의 한계

1. 1880년대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과 조선의 반청정책

18, 19세기 들어 북학론(北學論)의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론(老論) 집권세력들 사이에서 청국이 ‘상국(上國)’ 혹은 ‘대국(大國)’으로 간주되고 배청(排淸)의식은 형해화되어 갔다.¹¹ 개항 전후 시기에는 『해국도지(海國圖志)』, 『이언(易言)』 등을 수용하는 등 조선에게 청국은 서양 근대 물질문명의 수입과 접근의 중요 창구였다. 또한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조선 독립의 보호자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부 개화파 지식인들은 청국에 대해 “자주(自主)이나 독립(獨立)은 아니다”라는 사고를 보여주기도 하

10 배항섭(2001), 「개항기의 對淸意識과 그 변화 - 민중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16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였다.

11 유봉학(1988), 「18·1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推移」, 『한신논문집』 5권; 盧大煥(1994),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對淸 危機認識과 北學論」, 『韓國學報』 76 참조.

였다.¹² 한편, 여전히 숭명배청(崇明排淸)을 고집하던 재야 유생들은 1860년 청국의 북경 함락과 병인·신미양요 그리고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지켜보면서, 문명적 위기감을 가지고 청국을 서양문명의 압력 하에서 유교문명을 함께 보존해 나갈 운명공동체로 간주하기도 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일부 유생들은 청국을 중주국으로 간주하는 대청 의존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¹⁴ 1870년대까지 청국을 매개로 서양 근대문명을 접촉해 나가던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에게 청국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나 유교문명의 보존을 위해 함께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흐름은 서세동점의 위기가 된 산물로, 강화도조약이나 조미조약 등 서양 각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12 1882년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국이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다’라고 명시하려는 것에 대해, 조약 체결에 깊숙이 개입하던 金允植은 조선에 해가 없으며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것은 천하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조선의 걱정은 각국이 조선을 청국의 속국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청국이 나서서 조선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조선은 幼弱한 상태로 만약 大國이 보호하지 않으면 홀로 獨立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는 각국에 조선이 청국의 屬邦임을 성명하면 청국도 우리를 擔任하지 않을 수 없고, 각국 또한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라며 이른바 ‘兩得論’을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1955), 『從政年表·陰晴史』, 57~58쪽.

13 華西 李恒老는 「洋禍」에서 ‘청은 夷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제자 金平默은 청이 비록 夷狄이지만 중원에 진입한 후에 用夏變夷하여 악습을 개혁하고 중화의 문물을 계승했다면 중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王元周(2003), 앞의 글, 157~170쪽 참조.

14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2월 26일, 「嶺南萬人疏」, “夫中國者 我之所臣事也 課歲玉帛 結轡遼薊 謹守信度 祗服藩職者 二百年于茲.”

여러 격변을 거치면서 더 심화·왜곡되었다.

한편, 청국은 흔들리는 중화체제를 지켜내고 중국 변경의 방어를 위한 고리로 조선을 염두에 두고 조선의 내정과 외정에 대한 강력한 개입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청국은 이리지방과 대만 문제의 교섭을 둘러싸고 러시아·일본과 갈등을 겪었고, 이른바 ‘육방(陸防)·해방(海防)’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당시 양무관료들은 마지막 남은 조공국인 조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동삼성(東三省)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한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1879년 7월 “조선의 내정·외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선을 청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청의 안보를 유지하자”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에 광서제(光緒帝)는 대조선정책을 승인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를 완곡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청국은 조선에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도,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¹⁵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국은 이러한 전통적 관계를 뛰어넘어 군사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였다. 또 외교통상고문과 군사교관 파견을 통해 조선의 내·외정에 대한 통제를 꾀하는 등, 이른바 조선 속방화정책을 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전문에는 조선을 청국의 속국이라 명시하였고, 조선 정부에는 외교에 관한 일은 모두 청국에 문의하라고 강요했다. 또 군대를 서울에 상주시킨 가운데 재정고문 진수당(陳樹棠)은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라는 구절을

15 權錫奉(1986),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79~116쪽.

넣은 방문(榜文)을 남대문에 내걸기도 하였다.¹⁶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대조선정책은 의례적이고 관념적인 속방관계를 실질적 속방관계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국가의 주권 관념의 확산과 문명개화론이 수입·확산되면서 ‘관념적 중국’과 ‘현실의 청국’을 상대화하려는 개화파 세력이 청국 비판론을 적극 펼쳤다. 김옥균(金玉均)을 비롯한 문명개화파들은 시대착오적인 청조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조선을 설정하였다(甲申政變). 아울러 국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문명론의 영향 속에 청국을 불결하고, 완고하고, 낙후되고, 타국에 수모를 당하는 나라로 이미지화하였다.¹⁷

청군에 의해 갑신정변이 진압되면서 청국의 조선 내정간섭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고종을 비롯한 정권 주도 세력들은 이러한 청의 간섭을 군세외교(均勢外交)를 통해 견제하려고 했다. 조선이 러시아와 접근하는 등 ‘인아거청(引俄拒清)’ 정책 흐름을 심각하게 본 청국은, 1885년 ‘감국대신(監國大臣)’의 자격으로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하였다. 당시 원세개는 조선을 ‘부용국(附庸國)’으로 간주하고 근대 국제법에 규정된 식민국으로 위치지워 전통적 의미의 ‘속국’ 개념과 달리하였다. 2차 조러밀약 사건 이후인 1886년 7월 원세개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선대국론(朝鮮大局論)’은 조선이 청에 의지할 때와 배반할 때의 득실을 밝힌 것이다. 조선이 서양 열강이나 이웃나라인 일본·러시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접국으로 유사시 군사 출병이 용이한 청국에 의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다른 나

16 『尹致昊日記』 1883년 11월 3일.

17 柳永烈(1985), 『開化期の尹致昊研究』, 한길사 참조.

라를 끌어들이지 않고 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한다면 부국자강(富國自強)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청을 배반할 때는 조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⁸ 이 외에도 「유언4조(諭言四條)」와 「시사지무십관(時事至務十款)」을 올려 조선을 기울어져가는 집에 비유하며 자신이 제시하는 10가지 처방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¹⁹

조선 정부는 열강의 세력균형을 이용한 균세외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서양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당시 정계의 실력자였던 민영익(閔泳翊)은 “청은 본래 구미제국(歐美諸國)을 두려워하므로 우리가 사절을 파견하여 구미제국과 결속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고종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²⁰ 이윽고 일본·미국·유럽 각국에 파사(派使)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공사가 각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 공사관으로 가서 보고하여 청국공사와 함께 해당국 외부에 갈 것, 조회나 공연 및 여러 교제석상에서 조선공사는 청국공사의 뒤를 따를 것, 교섭상의 중요한 사건은 조선공사가 청국공사와 상의한 후 지시를 따를 것 등 이른바 ‘삼단(三端)’을 조선에 요구하였다. 이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¹⁸ 『高宗實錄』 고종 23년 7월 29일. 『清季中日韓關係史料』 4(이하 『關係史料』) 光緒 12년 9월 26일, #1178-(5), 2161~2163쪽. 러시아 주재 청국공사 劉瑞芬이 조선을 行省으로 삼는 것이 上策이고, 영국·미국·러시아 제국과 같이 조선을 보호하는 것이 中策이라고 하는 등, 당시 청국에서는 元나라의 선례에 따라 조선에 監國을 파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林明德(1970), 앞의 글, 95쪽에서 재인용.

¹⁹ 원세개의 방자한 행동이나 조선 내정간섭을 원세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중국 쪽의 연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林明德(1970), 앞의 책 참조.

²⁰ 具仙姬(2006), 앞의 글, 112쪽.

청국의 속방정책과 조선의 자주정책은 1890년 대왕대비의 장례 과정에서 다시 충돌하였다. 청국의 조문사신이 오고 이를 관례에 따라 접대하면 조선에 머물고 있는 외교사절에게 자주독립국의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조선 정부는 우려하였다. 그래서 재정 곤란을 들어 조문사신 파견을 거절했지만, 청국 정부는 육로가 아닌 해로로 가고 연로의 접대비용도 줄여 반드시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관철시켰다. 청국으로서는 속방체제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였다.²¹

청국은 외교 차원에서 속방화정책을 펴고, 조선의 자강정책 추진 과정에도 개입해 억제하였다. 1889년 민영익과 데니(O. N. Denny, 德尼)의 주도로 프랑스로부터 200만 양, 1890년 르젠드르(W. LeGendre, 李善得)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150만 원 등 각국 정부와 상인들에게 차관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채(洋債)는 청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면 조선의 시도를 막았다. 결국 청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청국은 차관 자체보다는 차관을 통해 이권을 회수하는 등 조선 정부의 자주적 움직임을 더욱 경계하였다. 특히 대외적으로 청나라의 조공국이 아니라 자주국가로 비칠 가능성 때문에 적극 간섭한 것이었다.²² 그리고 정부가 차관을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관세 운영권 회복을 시도하였지만, 청국이 해관세(海關稅)를 담보로 차관을 대여함으로써 조선의 해관은 청국 해관에 더욱더 종속되었다.²³

²¹ 王元周(2003), 앞의 글, 204~205쪽.

²² 權赫秀(1998), 앞의 글, 223~224쪽. 청 光緒帝의 스승이자 측근인 戶部尙書翁同龢는 청국이 조선에 차관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로 조공관계의 강화를 들었다(『李鴻章全集 6冊 譯署電稿』, 「論朝鮮借款」, 「議朝鮮借款」, 31~32쪽, 35~39쪽).

군사적 측면에서의 개입도 있었는데, 북양육군 대신 북양해군을 통한 해방권(海防權)의 강화, 봉황변문(鳳凰邊門)에 북양육군의 이동 배치, 서로(西路)전선의 가설 등을 통해 조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조선을 압박하였다.²⁴

이와 같이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전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1880년대 초반 ‘속국이나 내치·외교는 자주’라는 관념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세개를 배경으로 두고 있던 민영준(閔泳駿)을 비롯한 친청세력이 자연스럽게 득세하였다.²⁵ 이들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러시아나 일본이 아닌 청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대국(大國) - 소국(小國)’ 관계를 넘어서 후일 아시아연대론의 전조라고도 할 수 있는 ‘동문동종(同文同種)’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갑신정변 이후 청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직면한 조

23 金正起(1976), 「朝鮮政府의 淸借款 導入(1882~1894)」, 『韓國史論』 3.

24 金正起(1985), 「淸의 朝鮮에 대한 軍事政策과 宗主權(1878~1894)」, 『邊太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25 閔泳駿과 같이 권력 핵심에 있던 閔泳煥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 東蕃이며, 字小事大는 고유한 명분이다. …… 중국과 東蕃이 서로 신임하는 것은 러시아와 일본이 통탄스러워 하는 것이다. …… 중국과의 관계는 자고로 오래 맺어왔다. 그 境界로 말하면 강 하나를 두고 있고, 인물로 보면 역시 同族 이고, 두터움을 논하면 형제와 같다. 상호간의 관계는 입술과 이처럼 의지하는 관계이다. 러시아는 경계도 멀고 인물도 다르고 情도 없고 의존관계도 맺을 수 없다. …… 하물며 러시아는 천하를 삼킬 의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東蕃을 튼튼하게 키울 의원(李鴻章, 袁世凱)이 있다. 천하를 삼키면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1955), 『閔忠正公遺稿』, 47쪽.

선 지식인들은 조선에서의 국제적 균세(均勢)를 이용한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물론 그 실현 방도는 조선에서 청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 중립화안이었다.²⁶ 유길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청국의 강력한 속방화정책 앞에서 조선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청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고될 정도로 조선에서 청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절대적이었다. 친청파가 득세하는 가운데, 일본과 연계하여 근대적 개혁을 꿈꾸던 개화파 관료와 지식인들로서는 국가적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반청의식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²⁷ 이런 분위기에서 청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내정장악, 이후 친일 개화파 세력의 득세는 필연적이었다고 하겠다.

2. 청일전쟁 - 속방보호론과 속방의식의 결함과 해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 양국 군대가 파병되고 청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조선에서만 본다면 조선에서 우위를 점하여 내·외정의 간섭을 일삼던 청국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과 청국의 이른바 속방질서의 변질

²⁶ 權寧培(1992), 「韓末 朝鮮에 대한 中立化 論議와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17.

²⁷ 근대 국제관계에 탁월한 감각의 소유자였던 유길준은 청의 조선 압박 강도에 따라 대청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188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청국의 역할을 인정한 ‘兩截體制論’을 주장하다가, 유폐에서 풀려난 1892년 이후에는 조공질서의 실질적 부정을 주장하면서 청국의 조선 내정개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정용화(2004), 『문명의 정치사상 :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참조.

과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독립’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자 조선 정부에는 청국에 군사 파병을 요청하여 진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등장하였다.²⁸ 당초 청병 파병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었다. 원세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민영준을 비롯한 친청세력은 원세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속에 “상국(上國)과 소국(小國)은 통양일체지간(痛痒一體之間)”이라며 차병(借兵)을 주장하였다. ‘상국’과 ‘소국’이라는 속방체제의 구도를 차병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민영준이 청병의 차병을 고집한 것은 민씨 척족에게 불리한 내정개혁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모색했기 때문이다. 반면 제대신(諸大臣)들과 안경수(安駟壽)나 유길준(兪吉濬) 등은 천진조약(天津條約)에 따른 청·일 양국의 충돌을 우려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개입도 야기할 것이라 우려하면서 차병 반대론을 피력하였다.

청군 파병은 겉으로는 조선 정부가 원세개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청군 파병을 주창했던 민영준의 뒤에는 감국대신(監國大臣) 원세개가 있었다.²⁹ 원세개는 청군 파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수시로 농민군의 진압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경군(京軍)의 파병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원세개와 민영준은 사전 밀약단계를 거쳐, 전주성이 함락되는 4월 말에는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고종은 청군이 도성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원세개의 약속을 근거로 결국 청병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청

28 이하 청군의 파병과 속방 논쟁에 대해서는 具仙姬(2005), 「淸日戰爭 直前 ‘屬邦’ 問題와 朝·淸關係」, 『史學研究』 54 참조.

29 이태진(1999), 앞의 글.

국 정부와 이홍장은 조선 정부가 요청도 하지 않은 해군병력을 파견하거나 필요할 경우 증원병력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미 파병의 원칙이 세워진 가운데, 명분 축적을 위해 조선 정부의 공식적 차병 요청을 강요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³⁰

청군 파병의 논리는 ‘속방 보호’였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당시 청군의 파병을 상기하면서, 원세개는 “청국이 군사를 보내어 대신 진압해줄 것을 구하니 조선이 청국의 보호하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내란을 스스로 끝낼 수 없어 청국에 대신 진압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상국(上國)의 체면으로서 물리칠 수 없다”며 파병의 효과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³¹ 곧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의 내란을 대신 진압해주는 것은 청국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것은 근대 조약체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때문에 광서제는 조선의 농민봉기를 진압하여 ‘번복(藩服) 조선의 안정을 도모하라며 파병을 허락했다.

청·일 양국 군사가 조선에 출병한 다음, ‘상국 - 속방’ 관념은 조·청·일 삼국 사이에 논란이 되었다. 1894년 6월 청국은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청군의 조선 파병을 알리면서 속방을 보호하는 구례(舊例)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을 청국의 속방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³⁰ 權赫秀(1998), 앞의 글, 269~270쪽 참조. 李鴻章은 북양함대 소속 군함의 출동 등 조선 정부가 요청하지 않은 해군병력의 파견을 감행하고, 葉志超에게 필요할 경우 증병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홍장과 원세개가 조선 정부에 청군 출동을 요청하는 공식 조회문을 보내도록 종용해온 것은 청군 출병의 명분을 확보하고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간섭을 막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³¹ 『李鴻章全集 7冊 電稿』 권15, 「寄譯署」 光緒 20년 4월 28일, 3859쪽.

반발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자인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받을 위협이 걱정되고, 부인하자니 청과의 관계가 문제되어 즉시 회답하지 못했다. ‘속방’ 논란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 계속된 문제로, 청국에는 조선에 전통의 외교를 쓴 근대적 의미의 속방을 강요하는 계기였다면, 일본에는 조선 개입·침략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곧이어 청·일 양국 군사의 충돌은 만국공법적 국제질서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고종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탈 직후에 민상호(閔商鎬)를 통해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밀서(密書)를 보냈다. 이에 이홍장은 평안감사 민병석(閔丙奭)에게 평양에 집결한 2만 명의 청군에게 아낌없이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윽고 고종은 평양으로 밀사를 보내어 청장(淸將)에게 “천사(天師)의 동원(東援)을 통해 종사와 전궁(殿宮)을 보호하고 간당(奸黨)과 매국(賣國) 무리를 일소(一掃)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국의 군사지원을 받아 조선에서 일본군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³²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위기에 직면한 고종과 그 친위세력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들의 호소는 속방을 보호해달라는 논리로, 청군의 출병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라는 뚜렷한 변수는 전통적인 조·청관계의 유용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³³

³² 權赫秀(1998), 앞의 글, 303~305쪽.

³³ 친정적인 태도는 동학농민군들의 경우에도 보인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이 자행되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청군을 조선을 도와주는 天軍이나 天兵 혹은 義旅로까지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농민군들 사이에는 청군과

이때 조선 정부의 관료들이 친청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은 역으로 근대 조약체제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임오군란으로 청국으로 끌려갔던 흥선대원군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만국공법적 질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나간 갑신년에 우리나라의 못된 놈들이 역모를 꾸몄을 때 원세개의 군대가 아니었으면 왕실은 이미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제법이라는 것도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말하였다. 대원군도 일본군을 구축하기 위해 평안감사와 접촉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894년 9월 평양전투에서 ‘대국(大國)’ 청국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군에 패배했다. 게다가 청군이 행패와 약탈을 일삼으면서 형편없이 무너지던 모습은 큰 충격이었다. 이러한 청군과 대조적으로 일본군은 ‘엄정한 군 기강과 인민을 위무(慰撫)’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명국’인 ‘대국’ 일본의 이미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청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선은 조공국일 뿐이라는 친청 사대적 의식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화이론적 세계관이 그 빛을 잃기 시작했다.³⁴

연합하여 일본을 배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민군들의 의식에는 사대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재야유생들의 ‘衛道’를 위한 논리보다는 ‘爲國’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배항섭(2001), 앞의 글 참조.

34 다음 『독립신문』의 논설은 조선의 청국관과 일본관의 극적인 변화를 잘 보여준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오직 중국을 ‘中原’으로 숭배하고 일본을 倭라 칭하며 경멸했던 것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항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비로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 손님으로 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서구의 문화와 법률을 이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문명국이며 어떤 나라가 야

한편 청일전쟁 발발 후 조선 정부는 일본과 조일공수동맹(朝日攻守同盟)을 체결하고, 청국과의 일련의 무역장정이나 기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조·청 양국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사대지례(事大之禮)’를 모두 폐기하였을 뿐 아니라 종묘서고(宗廟誓告) 행사, 칭제건원(稱帝建元) 논의 등을 통해 ‘대조선제국(大朝鮮帝國)’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⁵ 물론 이 과정은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화와 세력들의 대청독립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배후에는 일본의 근대국가 모델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로써 조선과 청국의 속방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청일전쟁이 던진 선물이었지만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한 과정이었다. 조선은 이제 만국공법적 국제질서 속에서 온전한 의미의 생존을 스스로 담지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III. 대청관계의 변화, 새로운 모색

1. 청일전쟁 이후 외교관계의 복원 시도 - 전근대질서의 여진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청·일 양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함으로써 조선의 명분상 ‘독립’이 양국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조·청 양국 간의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근대 조약체제를 통해 양국관계의 법적·제도적 정리가 요구되었다. 이것

만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신문』 1899년 6월 5일 논설.

35 왕현중(2002),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52~261쪽.

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매듭짓는 문제였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보호국 기도에서 벗어난 아관파천 이후 무조약 관계인 청국과 대등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청·일 간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재한(在韓) 청상(淸商)의 수가 차츰 증가하자, 1896년 6월 청국 정부는 조선상무총동(朝鮮商務總董) 당소의(唐紹儀)를 파견하여 재한 청상을 보호하려 했다. 이때부터 조선 정부는 청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조약 체결 의지를 밝혔다. 7월 고종은 청국통인 변원규(卞元圭)에게 청국과의 약장(約章) 체결을 지시하였다. 이튿날 역관(譯官) 박태영(朴台榮)은 당소의를 방문하여 현재의 조·청관계는 “강린(強隣)이 자주독립을 꾀박한 결과로 조선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장(舊章)이 철폐되었으니 신약(新約)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국의 힐문이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이런 요구에 대해 당소위는 “국왕이 아관(俄館)에 머물고 있어 자주독립이 아닌 번속(藩屬)과 다름이 없으니 그런 나라에 파사(派使)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주국임을 인정한 것과 조약 체결은 별개로, 자주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만 구장(舊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약 체결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소위는 앞으로 예상되는 조선의 조약 체결 요구에 대비하여 통상장정만을 체결해 총영사를 파견하고, 사신 파견과 국서(國書) 교환을 하지 않는 정도의 방침을 청국 총서(總署)에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야 조선 정부가 먼저 북경에 파사(派使)하려는 기도를 막아 각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³⁶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외교적

36 이하의 한청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殷丁泰(2005),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歷史學報』 186 참조.

압력에 따라 형식적이거나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청조로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속국’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진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청조는 조선을 여전히 중번관계의 번속국(蕃屬國)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삼불원칙(三不原則)’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즉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복원을 꺼리면서 통상장정만을 체결하여 총영사를 파견하고, 사신을 파견하거나 국서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청국은 1896년 11월 당소의를 총영사로 승격시켜 다시 조선에 파견하였지만 한국 정부와 교섭권을 갖지 못한 ‘방불영사(彷彿領事)’에 불과하였다. 조선에서 그는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청상 보호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조계지(租界地) 운영회의에서도 배제되었다.

당소의를 통해 조약 체결 불가 방침을 확인했음에도 조선 정부는 그 해 11월 조약안을 만들어 청국에 외교관을 특파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선 정부가 마련한 조약 초안에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화인(華人)에게는 한례(韓例)를 적용하고, 화(華)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인(韓人)에게는 화례(華例)를 적용한다”는 이른바 영사재판권 부정안을 담고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내용도 담겼다.

1897년 9월 대한제국의 수립과 함께 조선의 조약 체결 시도는 계속되었다. 대한제국이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비문에 ‘대행황후(大行皇后)’라 조각하고, 과거 청국 사신이 머물던 남별궁(南別宮)에 원구단을 건축하는 것을 청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에는 고종의 황제 즉위를 위한 존호(尊號)는 참람(僭濫)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각국이 대한제국의 출범을 인정하는지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청국은 여전히 “갑오(甲午) 이후 아국(我國)은 조선을 평행자주국(平行自主國)으로 인정하

지 않았는데, 하물며 국왕을 황제로 하는 것은 더욱 인정하기 어려우며, 1897년 5월에 공개된 조선을 둘러싼 ‘러일밀약’으로 보아 조선에는 자주 지권(自主之權)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그런 나라와의 입약(立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대한제국의 외교관계 수립 요구와 청국의 거절이 지속된 것은 청국의 기본적인 한국관 때문이었다. 그 변화는 청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2. 한·청 외교의 질 - 한청통상조약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이 진행되던 중에, 조선의 대등조약 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각국의 압력에 직면한 청국은 조약 체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국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와서 자국의 체면을 손상하기 전에 먼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고, 조약의 내용도 각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국 조약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국은 서수봉(徐壽朋)을 주찰조선국흠차대신(駐紮朝鮮國欽差大臣)으로 임명하고, 이를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와 조선 주재 각국 공사에게 통보하였다.³⁷ 이와 같은 청국의 조약 체결 결정은 이 해 6월부터 진행된 광서제(光緒帝)의 무술변법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있던 당소희는 조선 주재 각국 공사를 방문하여 서수봉의 파

37 『關係史料』 권8, 光緒 24년 6월 23일, 本衙門奏摺稱, #3500, 5133~5134쪽; 光緒 24년 7월 12日, 朝鮮總領事唐紹儀稟稱, #3520, 5145~5150쪽. 조선 주재 각국 공사는 청국의 派使 결정 이후에도 徐壽朋의 직함이 ‘全權’이 아닌 ‘駐紮’인 것을 두고 청국이 조선을 여전히 ‘以大字小’하려는 뜻이라고 의심하였다.

한(派韓)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각국 공사의 관심은 전권(全權) 여부, 공사의 등급, 주찰 문제, 국서 및 국호(國號) 등에 집중되었다. 10월 6일 청국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국(大韓國)’으로, 호칭을 ‘대황제(大皇帝)’로 한 국서를 준비하였다. 이어 총서(總署)와 전권사신 서수봉은 최혜국 조항과 영·미·일 등 각국과의 통상조약을 참고하여 조약안을 사전 준비하였다.³⁸

한편 대한제국의 외부는 조약안의 준비와 협상과정에서 한·청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지식인들과 상인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영사재판권 철폐 문제, 내지행상 단속과 한성철잔(漢城撤棧) 문제, 국경선 획정 문제가 현안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이 가운데 한성철잔 문제는 한청통상조약 체결의 결렬위기를 낳을 정도로 조선 정부가 주목한 현안이었다. 당시 시전상인들과 독립협회, 홍종우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 언론에서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연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한·청 양국 정부 차원에서 조약 체결 요구와 거부가 거듭되는 동안 청국과 청상(淸商)에 대한 민간의 여론은 부정 일색이었다. 『독립신문』이 논설에서 조선도 진보하여 “청국을 쳐 요동과 만주를 차지해보자”³⁹고 주장할 정도로 청국을 야만이자 ‘식민’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문명담론이 팽배하였다. 이것은 야만의 상징인 청국과는 다른 조선을 지향하자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으로, 청국은 조선이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조선의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자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이 현실에서 접촉하는 청국인은 청상과 국경지방의 비도(匪徒)였다. 특히 청상의 아편 거래나 사적인

38 조약 협상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殷丁泰(2005), 앞의 글 참조.

39 『독립신문』 1897년 12월 21일 잡보.

매삼(賣蔘)과 같은 불법행위는 비문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청상에 대한 재판권이 조선 정부에 없다는 것이었다.

8차례의 공식회담 끝에 1899년 9월 한청통상조약이 타결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무조약(無條約) 상태에서 자주 독립을 추구하던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수약(修約) 요구와 4000여 명의 재한 청상의 보호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한 청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한국 정부가 한때 영사재판권의 폐지를 구상하였지만, 회담 과정에서 상호 영사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또 청국이 관심을 보인 홍삼(紅蔘)의 매운(買運)은 금지되었고, 청국이 제안한 청은화(淸銀貨)의 유통안은 삭제되었다. 한국이 처음 제안한 영토감계(領土勘界) 문제는 청국의 반대로 후일 육로통상장정 협상으로 넘어갔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한성철잔 문제는 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였지만 결국 조약에서 누락되었다.⁴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독립신문』은 애초 준비한 초안과 대등소이한테, 다만 한성철잔 조항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방곡령, 홍삼 금수, 아편 금수 등 경제적 조항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대등조약 체결의 의미에 주목하지 않고 경제적 현안에 집중된 관심은 경제분야 조항에 대한 여론의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대등조약 체결을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던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평등한 외

40 『황성신문』은 1899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韓淸通商條約을 別報에 나누어 실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 조약 체결의 경과와 양국의 협상안 등을 담은 『韓淸議約公牘』(奎 15302)을 광고하였다. 한청조약 체결을 위해 1898년 10월 청국황제가 고종황제에게 보낸 國書에서부터 1899년 12월 互換條約에 이르기까지 80건 이상의 문서들을 정리한 것으로, 조약 체결 후 외부에서 한청조약 체결과정과 내용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정리·편집한 것이다.

교관계의 구축에 대해 개화파 지식인들은 상당히 흥분하는 투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청국도 조약 결과에 만족하였다. 한청조약의 내용에 대해 청국 전권 서수봉은 체결 직전 본국에 보고하면서, 애초 청국에서 준비한 원고(原稿)에 부합하다며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처음부터 청국이 서양 각국과 체결한 조약안과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이 현재 비록 자주(自主)하나 그 군신상하(君臣上下)는 여전히 내향지심(內嚮之心)을 가지고 있어서”⁴¹ 조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대한제국과 청국은 이로써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근대 조약체제 속에 양국관계를 위치지울 수 있게 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반포와 함께 한청조약 체결은 적어도 동아시아 역내에서 대한제국이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청조약은 황제국임을 선포한 대한제국의 외교적 의지의 시험장이자 그 단초였다. 국제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부 세력이 영사재판권 폐지나 한성철잔안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한·청관계만이 아니라 서양 각국과 관계되는 사안이기도 하였다. 대한제국이 직면한 외압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것은 대한제국에 개혁과 문명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청조약의 체결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

41 『關係史料』 권8, 光緒 25년 7월 10일, 軍機處交出徐壽朋鈔片稱, #3613, 5223쪽.

었다. 따라서 조약은 평등조약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대한제국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유럽 각국에 재외공사를 파견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선포할 때 일부 유생들이 반대하였음을 고려하면, 대등한 한·청관계의 확립은 국내 정치적 효과도 가져왔다.

3. 문명개화론과 아시아연대론 속의 청국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패하면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근대적인 국제질서로 바뀌었다. 대한제국도 적극적인 국제관계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 청국관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청일전쟁에서 청국의 패배는 현실의 청국만이 아니라 유교문명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낳았다. 그리고 이른바 ‘양반이즘’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전개하는 『독립신문』도 등장하였다. 근대적이고 평등한 외교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는 가운데 사회진화론의 영향 속에 청국멸시관이 차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⁴²

대한제국기 언론의 문명담론은 ‘천’한 청국 그 자체였다. 청국인은 아편이나 피우고 밀수나 하는 야만인이었고,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경쟁 상대이기도 했다. 모든 ‘중국적인 것’에 대한 부정은 시대의 대세였으며, 이는 언론이 주도하였다.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 협상이 이루어질 때 몇몇 정부 관리들은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청국에 영사재판권을 강요해야 한다거나 조약문에 ‘중국’ 대신 ‘청국’이라고 쓸 것을 주장하

⁴² 白永瑞(1997), 「大韓帝國期 韓國言論의 中國認識」, 『歷史學報』 153.

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국멸시관은 태동하는 민족주의적 감성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1897년 독일의 교주만 조차(租借) 이래로 청국이 과분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인종론과 문명론에 바탕을 둔 ‘동양’ 담론이 맹위를 떨쳤다. 청국이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지고 그 반대도 성립하며, 아울러 아무리 강한 일본도 국권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을사조약 시기까지 일본발 아시아연대론이 한국의 독립과 동아시아의 공영(共榮)을 위한 구상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청국의 역할은 부정되지 않았다. 청국의 부정은 곧 한국의 부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적 동양담론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한·청·일 삼국이 연대하더라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한-청의 위계로 문명발달 수준에 우열을 두는 안경수(安駟壽) 등의 일본맹주론(日本盟主論)적 입장이 있었다.⁴³ 그는 ‘미개발된 상태의 청국을 문명화된 일본의 기술로 개발하여 식산흥업을 일으키면 열강의 우수 상품도 능가할 수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연대의 고리를 찾았다. 근대문명의 수용과 일본으로부터 문명개화론이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연대론 속의 청국은 차츰 대상화될 수밖에 없었다. 청국과 ‘청국적인 것’의 부정은 정해진 수순이었고 이런 청국담론은 이후에도 계속 재생산되었다.

청국은 또한 조선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면교사로 분명히 자리잡았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1900년 의화단사건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반면교사였다면, 1898년 무술변법과 1901년 신축신정(辛丑新

43 대표적인 인사가 安駟壽였다. 宋京垣(1997), 「韓末 安駟壽의 政治活動과 對外 認識」, 『韓國思想史學』 8 참조.

政) 등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반면교사였다. 특히 청국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이에 환호하고 청국의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물론 이것은 조선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청국이 문명개화와 거리가 있거나 주권이 훼손되는 부정적 흐름이 전개될 때, 비슷한 처지에 있던 조선에서 그 이유와 새로운 방향을 제기하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었다. 후일 조선이 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조선이 청국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청일전쟁 후 재야 유생들의 청국관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이들도 한·청 간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이 연대론은 유교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전제한 뒤 서양 각국이 주장하는 공법적 국제질서 관념이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서세동점의 위기를 동양 삼국이 연대하여 헤쳐나가 동양문화를 보존하자는 입장이었다. 문명개화의 물결에 맞서 유교문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외세의 침략에 동병상련을 느낀 것이다. 유생의 병장 유인석(柳麟錫)이 청국에서 활동한 것은 보편문명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나라로서의 청국이라는 상이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⁴⁴ 1897년 의병장 柳麟錫은 한·청연대에 의한 반일투쟁을 주장하였다. 유인석은 근대 이래 청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예의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갑신정변 때는 그들의 역량 덕분에 倭洋이 되는 것을 면하였다. 지금 倭禍를 당하고 舊制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그들 역시 분개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망국한 변란을 당하고 스스로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다른 나라의 역량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重하고 어떤 것이 輕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그때에는 우리가 華이고 그들은 夷였기 때문에 당연히 엄밀한 수비를 고수했다. 지금은 청이 비록 夷狄이지만 倭洋은 이적보다 못한 禽獸이다. 금수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적의 역량을 의지하면 안되겠는가”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1895년 을미의병 창의문에도, 청국의 힘을 빌려 일본을 축출하려는 의식이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의 다양한 청국인식의 흐름은 문명개화론과 연대론의 영향 속에서도 전통적인 한·청관계의 유산이 꾸준히 작용한 결과였다. 대한제국 지식인들에게 배제와 연대의식은 독립 유지의 방도이자 문명담론의 내재화 과정이었다. 이것은 곧 한국 민족주의 태동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I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0년대는 청국의 노골적인 내·외정 간섭에 따른 조선 정부의 강한 반발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조약체제’와 ‘조공체제’의 충돌기라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 이전 청국의 조선정책은 전통적인 ‘조공 - 속방’ 관계를 뛰어넘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군세외교를 통해 반청정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일본의 경복궁 점령하에서 진행된 갑오개혁은 국왕 고종에게는 근대 공법질서의 침략주의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기를 느낀 왕권은 청국에 조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국도 ‘속방보호론’을 내걸며 일본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다. 왕권의 위기가 가져온 속방관념의 확산 속에 일순간 ‘조공체제’ 속에 안주하는 듯한 모습이 강해졌다.

그러나 1894년 9월 청일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인 평양전투에서 ‘대국’ 청군이 패배하고 이들의 행패를 목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중들 사이

드러나 있다. 이런 의식은 후일 만주 항일독립운동의 한 축이 되었다. 王元周 (2003), 앞의 글, 230~238쪽 참조.

에는 차츰 ‘청국적인 것’의 부정과 ‘일본적인 것’의 긍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개화세력들이 주도하는 조선 정부의 정책에서 더 이상 청국에 의지 혹은 기대하려는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통적 ‘사대의례’의 폐지와 대조선국의 수립을 모색하는 종묘서고(宗廟誓告), 칭제건원(稱帝建元)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근대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려 했다.

청국은 청일전쟁 종결 이후에도 전통적 조선관을 고수하였다. 조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청국은 번번이 거부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청국은 한청조약 체결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899년 9월 평등관계를 담은 한청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종언을 고하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문명개화론의 영향 속에 개화와 관료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청국멸시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한청통상조약 체결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연대론의 입장도 적극 개진되었다. 이는 문명 보존을 위한 연대의식, 서양 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정개혁을 위한 반면교사로서의 연대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천한 청국론’의 확산 속에 차츰 일본맹주론의 입장에서 일-한-청의 수직적 위계관념이 자리를 잡았다.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 속에 조선은 ‘독립’하였고 청국은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제 문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의 힘에서도 조선에서 청국과 ‘청국적인 것’은 더 이상 보편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다. 반면 조선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청국은 후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아쉬움을 가지면서 조선을 반면교사로 이해하였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대청정책과 대청인식이 청일전쟁을 경과하는 과정

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이 점은 청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청국관은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 간섭으로 대청외교와 인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국내적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에 서야 그리고 일본적 문명의 우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대청외교와 인식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곧 청일전쟁이 ‘청국적인 것’에서 ‘일본적인 것’으로의 뚜렷한 전환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환을 배경으로 대한제국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지닌 한·청외교와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한 이른바 ‘광무개혁(光武改革)’이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오비나타 스미오 |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교수

I . 머리말

II . 임오군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III . 청불전쟁 · 갑신정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IV . 청일전쟁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V .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입각하여 사료에 기초한 본격적인 청일전쟁 연구가 전개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외교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¹와 이를 계승하여 정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일전쟁상(淸日戰爭像)을 확립한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²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각 세력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전(戰前)에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淸三郎]가 정부와 군부의 이중 외교라는 관점에서 개전 외교를 논하였다.³ 이것은 전후의 연구에서도 전개되었다.⁴ 또 후지무라 미치오[藤村道生]는 청일전쟁의 성격을 화이질서(華夷秩序)를 타파하고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두고 청과 다투는 국면, 조선·대만의 영토를 약탈하는 국면, 제국주의 열강과 중국·조선의 분할을 다투는 국면이라는 세 국면의 중층적 구조에서 포착하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에 의한 전쟁 지도를 강조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 대한 주목도는 그 규모

1 山邊健太郎(1966),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2 中塚明(1968), 『日淸戰爭の研究』, 青木書店.

3 信夫淸三郎(1934), 『日淸戰爭』, 福田書房; 信夫淸三郎(1935), 『陸奥外交』, 叢文閣.

4 信夫淸三郎·藤村道生 校訂(1970), 『増補日淸戰爭 - その政治的・外交的觀察』, 南窓社.

5 藤村道生(1973), 『日淸戰爭』, 岩波書店; 藤村道生(1976), 『日淸戰爭』, 『岩波講座日本歴史』 16・近代 3.

나 세계사에서의 규정성(規定性)이라는 점에서 러일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청일전쟁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중요성이 눈에 띄게 강조되어 왔다. 즉 첫째, 청일전쟁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둘째, 그 후 일본의 아시아정책, 특히 전쟁정책에서 이 전쟁이 차지한 위치를 크게 강조하는 관점, 셋째, 일본이 ‘국민국가’로 확립된 후에 청일전쟁이 가진 획기성에 주목하는 입장, 넷째, 전쟁을 둘러싼 사회·민중사라는 각도, 다섯째, 일본 사회에서의 대외관·국가관 형성 및 전개에서 이 전쟁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주목 등으로 청일전쟁 연구의 의의가 강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청일전쟁 연구의 기본 동향을 근거로,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청일전쟁을 단순한 대조선정책·대중국정책이라는 개별 정책 레벨에서가 아니라 더 폭넓은 국제적인 시야에서 파악하는 연구가 최근에는 특히 강조되고 있다. 즉 청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동아시아 세계의 전통적 국제질서인 ‘화이질서’가 서구의 국제질서인 ‘국제법 질서’에 의해 해체·재편되어 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점이다.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는 명조·청조의 황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걸쳐 만들어졌던 조공·책봉체제(동아시아 지역 시스템)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이것이 변동되어 가는 역사적 움직임과 그 요인을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인 역동성 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⁶ 그래서 청일전쟁을 “강화도사건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역 변동의 귀

6 濱下武志(1997), 「東アジア史のなかの日清戦争」,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 上卷, ゆまに書房.

결이며, 종주권과 국가 주권 사이의 교섭 및 충돌이었다”고 파악한다.

또 이구치 가즈키[井口和起]도 세계사적인 관계 속에서 청일전쟁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구 국제정치 체계’, ‘화이질서(중화제국 체제)’, ‘대군 외교체제(일본)’라는 세 개의 체계가 전체적으로 ‘서구 국제정치체계’로 재편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⁷

그런데 ‘화이질서’ 재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청, 조선 간의 관계이다. 하라 다마키[原田環]는 1880년 이전부터 청일전쟁 후까지를 조망하여 조선과 청의 종속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을 개관하고 있다.⁸ 또 오자와 히로아키[大澤博明]의 「일청개전론(日清開戰論, 1997)」은 조선의 영세중립화 구상에서 청·일 공동 개혁론으로의 전환 과정을 개전(開戰)과 묶어서 논하고 있다.

조선 중립화 구상을 다룬 것으로는 이미 쓰다 다카코[津田多賀子]·다다 도시오[多田嘉夫]·하세가와 나오키[長谷川直子]의 논문이 있다.⁹ 오자와 히로아키는 여기에 본격적인 분석을 더하였다.¹⁰

7 井口和起(1997), 「日清戰爭をとりまく國際環境」,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 上卷.

8 原田環(1997), 「日清戰爭による朝清關係の變容」,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 上卷.

9 津田多賀子(1982), 「一八八〇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開と列強」, 『史學雜誌』 91-12; 多田嘉夫(1992), 「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二) - 江華島事件及び壬午甲申京城事變をめぐって」, 『國學院法研論叢』 19; 長谷川直子(1994),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10 大澤博明(1995), 「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 - 一八八二~八四年」, 『熊本法學』 83; 大澤博明(1998), 「朝鮮永世中立化構想と近代日本外交」, 『靑丘學術論集』 12.

그러나 어느 것이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관된 논리로 청일전쟁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는 이미 1882~1894년 사이 한·청관계의 변질 과정을 청국 입장에서 조명하였다.¹¹ 1882년 이후 청일전쟁의 발발에 이르는 시기에 각 방면으로부터 제기된 조선 중립화 구상에 대해 검토하였으나¹² 아직 개설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부터 한국 병합에 이르는 조선 식민지화의 과정을 분석한 모리야마 모치나가[森山茂徳]¹³는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후 보이는 조선 중립화안의 제기와 이것의 좌절 과정을 다루고 있으나 청일전쟁 이전 구상과의 연관은 살피고 있지 않다.

이 연구의 과제는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정계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동아시아 구상 및 동아시아 정책을 제기하고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밝히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국정책과 대조선정책의 상호관계를 청일전쟁 전후 정부 당국자의 정책 구상과 발언 속에서 찾고, 이를 통해 전쟁 배후에 있었던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을 기반으로 제시된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적 위치에 대한 고찰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 후의 민비 시해사건까지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청·일 간의 대립을 심각하게 만든 계기가 된 임

11 岡本隆司(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

12 岡本隆司(2006), 「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 - 日清戰爭以前の清韓關係に着眼して」, 『洛北史學』 8.

13 森山茂徳(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오군란의 연구에서는 일본·청·조선 3국의 관계와 구미 열강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어떻게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검토 과제로 제기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청·일 간의 이러한 대립은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나, 그 대신 조선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대립이 전면에 대두된다. 조선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현격하게 강화된 계기는 민비 시해사건이지만, 청일전쟁 이후의 새로운 상황이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구상이 종래의 구상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후에 대해 전망해보고 싶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가 개별적·단편적으로 고찰해 온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을 청일전쟁 이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견지에서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데 오카모토 다카시는 논문에서 동아시아 질서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국제적인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⁴ 또 외교 교섭의 배후에는 실제로 도마에 오르지 않은 안이나 구상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이러한 구상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선 중립화 구상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 중립화 구상이란 1882년에 일본 측이 먼저 발안하고 그 후 청일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각 방면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을 정치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 간 상호관계, 동아시아를 둘러싼 서구 열강의 세력관계, 이들 관계와 대면하는 외교정책·대외구상을 둘러싼 국내적인 대항

14 岡本隆司(2006), 앞의 글.

관계가 서로 얽힌 복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근대 초기의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전근대 국제질서[華夷秩序]와 서구에 기원을 둔 근대의 국제법 질서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독자적 시·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화에서는 선행하는 세계사적 사상(事象), 즉 서구 국제법 질서의 선례가 상기되어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려는 의식이 항상 작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구 열강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질서 구상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구 열강의 경우 선례가 있다는 논리구축법이 유효성을 발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에 없는 착안점을 도입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사적 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협의의 정치사·외교사·군사사적 연구와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각각의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에 내재하는 논리를 추출·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싶다.

II. 임오군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1. ‘조선비청국지속국론(朝鮮非淸國之屬國論)’과 ‘일직선’ 노선

1882년 5월, 미국과 조선 사이에 슈베르트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 - 역사주)이 조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6월에 영국·독일도 조선과 조약을 맺어, 조선 문제는 동아시아만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었다. 서구 열강의 의도와 움직임이 조선 문제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슈베르트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인에 이르기까지 교섭은 청국의 중개로 진행되었는데, 교섭 과정에서 청국 측은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내치·외교는 균등하게 자주를 얻고 있다”는 조항을 조약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전통적인 관계를 명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 앞으로 같은 내용의 조회문을 보내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조선이 청국의 ‘속방(屬邦)’이라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인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한편 같은 해 7월 하순, 조선에서는 임오군란이 일어나 청·일 양국군이 출병하였다. 청은 조선속국론을 근거로 군사 개입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청의 주일공사 여서창(黎庶昌)은 일본 측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고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조선은 속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측은 조일수호조규에서 조선을 ‘자주의 나라’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청은 ‘속방’이라고 하였다.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참사원의관(參事院議官)인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는 ‘속방’인가, ‘비속방(非屬邦)’인가를 청과 다투는 것은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이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노우에 외무경의 방침에 반대하였다. 유구(琉球)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의가 옆길로 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단순히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 기초하여 조선과 직접 담판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노우에 고와시의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이노우에 고와시의 주장의 근거를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자.

8월 6일에 이노우에 고와시는 전날 청국공사 여서창이 조선 사건에 대해 “귀국을 위해 조정한다”고 전해 온 것을 받아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기초하였다.¹⁵ 그 중에서 이노우에 고와시는 청국 측의 조정책이 ① 조

15 井上毅傳編集委員會 編(1966), 「京城事變對處案」, 『井上毅傳 史料篇』 第1卷,

선이 자신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담판을 청국에 맡기라고 할 경우 ② 일본과 조선 사이에 들어와 중재하겠다고 자청할 경우 ③ 일본의 사절과는 담판하지 않고, 단지 조선과 이전부터 관계가 있으므로 조선을 위해 충고하고 사죄처분을 촉구한다고 공고하는 것으로 그칠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①의 경우, 일본은 조선과 직접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청국의 중재는 필요없다고 거절한다. ②의 경우, 분쟁 당사국의 승낙이 없으면 중재할 수 없다는 공법[만국공법, 즉 국제법]상의 이유를 들어 중재를 거절한다. ③의 경우, 일본은 ‘일직선[一直線, 직접의 의미 - 역자주]’으로 조선과 담판을 벌여 청국이 조선에 충고하든 전력을 다하든 관계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어느 것이든 이번 목적은 전적으로 조선에 사건의 처분을 요구하여 만족스러운 보상을 얻는 데 있으므로 청국과 ‘조선비청국지속국론(朝鮮非淸國之屬國論)’에 관여하여 ‘목적 외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이노우에 고와시의 주장이었다.

‘조선비청국지속국부지문제(朝鮮非淸國之屬國否之問題)’에 관여할 경우, 청국의 편을 드는 다른 관계국이 있으면 귀찮은 일이 된다. 또 ‘조선비청국지속국론’에 맞서면 의논이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 버려, 결국 무의미한 논쟁으로 끝날 것 같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지엽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노우에 고와시는 주장하였다. 이노우에가 염두에 둔 것은 유구 처분 문제의 경험이었다.

이노우에의 의견은 7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제출한 의견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었다.¹⁶ 야마가타의 ‘조선 사건에 대한 청국

國學院大學圖書館・東京大學出版會, 309~310쪽.

관계의 의견¹⁷은 필시 이노우에 고와시의 기초에 힘입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노우에의 의견은 아마가타를 통해 정부 중추부(中樞部)의 의사 형성을 좌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월 4일 이노우에 고와시는 헌법 조사를 위해 유럽에 파견 중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 편지에서 청이 조선 정부를 도와 ‘반란’을 ‘평정’하는 ‘원병’을 내는 일이 있으면, 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다.¹⁸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보아소나드(Boissonade, Gustave Emile, 프랑스 법학자 - 역자주)에게 받은 의견을 번역하여 보내니 읽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8월 9일에도 이노우에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아소나드의 답문서(佛文)를 보냈다.¹⁹

이노우에와 보아소나드는 어떤 문답을 교환하고 있었을까? 7월 31일과 8월 1일의 응답에 입각하여 보아소나드는 8월 3일에 회답 ‘조선에 대

16 다만 井上意見書의 제3의 경우의 뒷부분에는 山縣意見書와 서로 다른 점이 인정된다. 또 山縣意見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朝鮮이 支那를 구실로 삼아 지연의 수순을 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기회를 봐서 신속하게 해답을 요구하고 만약 해답이 없을 때에는 즉시 육·해군을 사용하여 강제로 보상을 받는 조치에 임할 것.” 그러나 결국 8월 7일의 「山縣有朋壬午事變意見案」, 『井上毅傳 史料篇』 第6卷, 135~136쪽 및 「山縣有朋壬午事變意見書」, 『井上毅傳 史料篇』 第6卷, 井上傳 6, 137~138쪽은 井上이起草한 것이다.

17 『井上毅傳 史料篇』 第6卷, 133~134쪽; 大山梓 編(1966),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16~118쪽(三條文書).

18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68쪽;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1973),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塙書房, 333쪽.

19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69쪽.

한 처분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부산·원산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병하고, 그 담보물로 강화도·거제도·송도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청·미·영에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였다.²⁰

또 8월 9일자 「한국사건답의속고(韓國事件答議續稿)」에서는 청국이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번속국칭(藩屬國稱)’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청국의 번속국이든 아니든 일본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²¹ 이것은 이미 언급한 이노우에 외무경의 방침에 대한 이노우에 고와시의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 이노우에 고와시는 보아소나드의 견해에 입각하여 주장한 것이다.

이노우에가 8월 9일 이토 앞으로 보낸 서간에 첨부한 문서(일본어 번역문)는 아마 「조선 사건에 관한 이노우에 의관(議官) - 보아소나드의 문답기」²²일 것이다. 이노우에와 보아소나드는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교환하고 있다.

문 : 청국은 조선을 속국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조선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한다. 일본은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답 : 일본의 요구는 일본이 만족을 얻는 것에 그치므로, 청국과 조선 사

20 伊藤博文 編(1970), 「朝鮮事ニ付‘ボアソナード’氏ノ答議」,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卷, 明治百年史叢書, 原書房, 187~188쪽; 金正明 編(1966), 『日韓外交資料集成』 第2卷, 巖南堂書店, 136~137쪽.

21 伊藤博文 編(1970), 「韓國事件答議續稿」, 201~202쪽; 『日韓外交資料集成』 第2卷, 159~160쪽.

22 伊藤博文 編(1970), 「朝鮮事件ニ付井上議官‘ボアソナード’氏ト問答記」, 203~212쪽; 『日韓外交資料集成』 第2卷, 153~159쪽.

이에 상담하는 일에 일본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청국 정부가 일본과 조선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 청국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간섭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스스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청국의 간섭에는 개의치 말고 직접적으로 교섭하여 조선에 대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터키의 이집트에 대한 관계는 청국의 조선에 대한 관계보다 더욱 크다. 그러나 이집트인이 폭거[폭동]를 했다고 해도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를 패념치 않고 곧바로 이집트를 향해 처분했다. 그러므로 조선 사건에 대해 청국이 개입해도 청국에는 관계없다고 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다.

문: 일본 정부가 때를 놓쳐 청국 정부에 선두를 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 만일 일본 정부의 의향이 ‘主戰’에 있다면 그 방침에 따라 계획의 순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主和’라면 이 ‘線脈’에 따라 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주의를 개전인가 아니면 화친인가?

이노우에와 보아소나드는 대략 이러한 문답을 교환하였는데, 이 문답 속에서 주목할 것은 보아소나드의 청일동맹론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러시아이다. 청국은 일본과 ‘천연(天然)의 동맹국’이다. 인종·문자·풍속·종교도 같다. 유럽에 대해 ‘동양의 위세’를 펼치는 것은 일본과 청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재 청국과 일본은 협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일 양국이 나뉘면 아시아는 깨지고, 합치면 구주(歐洲)와 길항(拮抗)할 수 있다. 지금 만일 일본에 ‘정치의 대가’가 나와서 일본·청국·조선 3국이 동맹을 맺으면 속담으로 ‘귀신에게 쇠뿔등이

(강한 것에 강한 것을 더한다는 의미 - 역자주)’라서 러시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아소나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며 청·일이 동맹을 맺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

보아소나드는 청국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라고 충고하였다. 8월 12일에 이노우에 고와시가 외무대보(外務大輔, 외무차관)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清成)에게 이번 갈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가 조선과의 ‘직접지관계(直截之關係)’에 청국의 간섭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충고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²³ 공법상 논하면 조선은 ‘반독립국’이며 ‘바루바리(バルバリ), 원문 그대로 옮김 - 역자주)’의 터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공속국(貢屬國)’으로 있고, 외국과 교섭할 때만 ‘자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독립’인 조선에는 외교상의 자주권이 있다고 보고 ‘직접적’으로(청국을 고려하지 말고) 조선과 담판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노우에는 이 편지에서 유구와 조선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조선과 청국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조사했는데 청이 조선을 정복한 일은 전후 두 번 있으며, 정복의 사적(事績)이 있는 이상 조선과 유구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청국 측의 속방론에 대해 일본 측이 비속방론을 제창하면 결국 전년의 유구론(琉球論)과 마찬가지로 되어 논의가 옆길로 새어 아마도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들고 만다. 또 설령 ‘전단(戰端)’을 열게 되더라도 ‘요상문죄지명의(要償問罪之名義, 배상을 요구하고 죄를 묻는 명분)’를 버리고 ‘속방비속방지론(屬邦非屬邦之論, 속국·비속국 논쟁)’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비책(非策)’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23 『井上毅傳 史料篇』第4卷, 658~659쪽.

노우에는 끝까지 청국과 조선의 성격에 대해 의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일본 측은 이노우에 고와시가 주장하는 선에서 사건에 대처했는데, 오키모토 다카시가 지적한 것처럼 조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는 일본과 조선 두 나라 사이만 고려하는 방향과 청과 한국 관계도 포함하여 고려하는 방향이 병존하고 있었다.²⁴

2. 터키 · 이집트 · 영국과 청국 · 조선 · 일본

그런데 8월 9일자 이노우에 고와시와의 문답서에서 보아소나드는 청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일본의 관여 방법을 터키와 이집트의 관계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처 방법에서부터 설명했다. 영국 · 프랑스의 대처법이 일본에 참조 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집트는 터키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는 영 · 불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²⁵ 무하마드 알리조(朝)의 이스마일은 1867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헤디브(이집트의藩王 내지 副王)의 지위를 얻는 등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하였다. 그 배후에는 시리아 · 이집트 · 수단 지방에 대한 정치적 ·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립시켜 프랑스의 영향력에 대항하려는 영국의 정책이 있었다. 이스마일은 영국의 지원하에 1869년부터 1876년에 걸쳐 수단에 대한 통치권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스마일의 개발 정책은 빚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이집트

²⁴ 岡本隆司(2006), 앞의 글.

²⁵ 大日方純夫(1996), 「自由民權期のエジプト認識」, 『社會科學討究』 41 - 3.

인에 대한 세금은 인상되고 있었다. 또 1875년 이스마일은 소유한 수에즈 운하 회사주를 팔고 영국은 이것을 매수하여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었다. 1876년 이집트는 파산상태가 되어 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영국에 의해 채무정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878년에는 아르메니아인을 수상으로, 영국인을 재정장관으로, 프랑스인을 공공사업장관으로 하는 ‘유럽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것에 대해 마침 임오군란이 일어난 해와 같은 1882년에 이집트에서는 아흐마드 오라비 대령 등을 지도자로 하는 민족운동이 일어나 동시에 입헌제를 요구하는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8월 13일의 보아소나드의 의견 「조선 사건에 대한 의견」, 「반속국(半屬國) 또는 이와 같이 주장되는 나라가 체결하는 조약에 관한 의견(疑見)에 대한 응답」은 ‘만국공법’, 즉 국제법상에서 반속국의 권한을 논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투르크 - 이집트 - 영국·프랑스의 관계를 참조하면서 청국 - 조선 - 일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²⁶

일반적으로 ‘반속국’은 정치적 성질을 갖는 화친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집트의 위치는 이 문제의 선례가 된다. 터키에 대해 이집트가 ‘부庸국(附庸國)’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상세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이집트와 터키 사이에 비밀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어디까지 외국과 직접 조약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집트는 프랑스 및 영국과 여러 차례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이 강국들은 그 조약에 있는 조규를 이행시킨다는 보장을 얻기 위해, 이집트의 재정을 정돈하기 위해 이집트의 정부에 자주 간섭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의문에 대해서는 ‘확정된 법칙’이 없는 것으로 안다.

26 「朝鮮事件ニ付テノ意見」,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卷, 213~216쪽; 『日韓外交資料集成』 第2卷, 171~174쪽.

‘반속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어 그 반속국과 다른 조약국 사이에 중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국’ 또는 ‘보호국’은 조약 체결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것에 간섭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이론·법리라는 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만국공법은 많은 나라에서 민법에 있는 것처럼 편성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일본과 조선의 관계 및 조선과 청국의 관계 같은 정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보아소나드는 이상과 같이 서술하며 이집트를 선례로 하면서도 결국에는 조선의 위치가 가지는 독자성·특이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국공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8월 24일의 보아소나드의 「조선 사건에 관한 의견서」²⁷에도 이집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 의견서는 ① 만일 조선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답을 지연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② 만일 일본 정부의 요구를 조선이 거절할 경우 ‘최후의 조회서(최후통첩)’를 송부해야만 하는가, 그럴 경우의 목적은 무엇이며, 서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③ ‘최후의 조회서’를 송부한 경우의 공고 방법은 무엇인가 등 다섯 개의 질문에 회답한 것이다.

이 중에서 ②의 회답으로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전쟁을 노리거나 포격하는 따위의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어디까지나 군사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보아소나드의 입장이었다.

27 「朝鮮事件ニ付意見書」, 위의 책, 247~258쪽; 『日韓外交資料集成』第2卷, 200~208쪽.

만일 전쟁을 개시하게 되면 그것은 ‘몰려나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공격의 싸움’이 되어 조선을 침략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면 청국은 곧 조선을 응원하고, 일본과 적대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보고 반드시 질투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 포격은 ‘잔학하게 원수를 갚는 것 중 가장 심한 것’이어서 폭력으로 폭력을 갚는 것이다. 폭동과 관계없는 인민을 죽이고 가옥을 파괴하는 참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을 원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영원히 이것을 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보아소나드는 이렇게 서술한 후에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즉 유럽에서 일어났던 포격, 특히 최근 들어 영국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항을 포격한 것을 서로 도운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유럽이 행한 것이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이 일본이 행해야 마땅한 규범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알렉산드리아 포격에 대해서는 이미 행해진 폭거에 대한 보복에 머무르지 않고 (원한을 갚는 것만이 아니라) 수에즈를 방위하고 동시에 인민을 선동하여 유럽인에 대항하게 하려는 ‘아라비 파사’가 설치한 군비 및 포루 건축 등을 정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임오군란 1개월 정도 전인 6월 11일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폭동이 발발하고, 이에 대해 영국은 7월 11일 알렉산드리아항을 포격하며 군사 간섭을 하고 있었다. 보아소나드의 발언은 임오군란을 둘러싼 청·일 출병 직전에 있었던 이집트 사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²⁸

²⁸ 大日方純夫(1996), 앞의 글.

3. 청일동맹론과 조선 중립화 구상

러시아의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청·일이 동맹을 맺어야만 한다고 보아소나드가 주장한 것을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보아소나드는 8월 14일 참의(參議) 오키 다카토오[大木喬任]의 물음에 대답하는 중에 청일동맹론을 더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다.²⁹ 다소 길지만 그가 주장한 것을 아래에 소개하겠다. 보아소나드는 청일동맹의 필요성을 세 가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야말로 청·일 양국의 ‘공동의 적’이다. 유럽에는 러시아의 동양 침략을 방지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나라는 없고, 방어 방법이나 이를 위한 재력이 있는 곳도 없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청국 사이에 분쟁이 있다. 또 러시아는 이전부터 조선을 노리고 있으며 러시아 국내에서 ‘니힐리즘[원문은 허무당(虛無黨) - 역자주]의 불길’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정한(征韓)’에 착수할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압도하고 결국에는 일본의 독립에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큰 재앙’은 러시아이며 결코 청국이 아니다. 청국 또한 일본과 이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청·일 양국 간의 친화가 필요하며 이 두 나라가 ‘합종’하면 러시아가 조선을 뺏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청·일 양국 자체의 조선 정책과의 관련이다. 청일동맹에 의해 청국이 조선을 완전히 ‘중속’시켰다고 해도 일본에는 러시아의 조선 지배 같은 ‘해(害)’는 없다. 한편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고 하는 것은 ‘망령되기 떠드는 이야기’이며 이런 일을 한다면 러시아가 잠자코 있을 리 없다. 결국 일본이 일단 조선을 얻는다고 해도 곧 러시아에 쫓겨 마침내

29 「朝鮮事件ニ付大木參議へ答フ」,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卷, 230~237쪽; 『日韓外交資料集成』 第2卷, 174~179쪽.

일본 내지(內地)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구미에 눌러 있던 청·일 양국이 친목하여 저항력을 하나로 모으면 외국에 효과적일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일·청·한 삼국은 종교·문자·풍속이 같으므로 친화가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조선의 이번 사변’은 오히려 ‘삼국 교통의 길’을 연 것이며 도리어 ‘삼국 연합의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아소나드는 한편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일의 정치적·문화적 공통성을 제시하며 청·일이 동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첫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는 청국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도대체 셋째 이유는 과연 성립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노우에 고와시는 조선의 영세중립론을 구상하게 된다.

8월 이노우에 고와시는 조선에 건너가 제물포조약의 체결에 참여하고, 귀국 후 9월 17일 ‘조선정략’을 정리하였다.³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청·미·영·독 5개국에 의한 조선 중립화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 ① 일·청·미·영·독 5국이 모여 조선의 일을 협의하여 조선을 중립국으로 한다. 벨기에·스위스의 예에 따라 조선을 남을 침략하지 않고 남에게 침략당하지 않는 나라로 하며, 5국이 공동으로 보호한다. ② 5국 중에서 약속을 깨는 나라가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죄를 묻는다. ③ 5국 이외의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경우에는 5국이 동맹하여 방어한다. ④ 청국은 조선에 ‘상국(上國)’이며, 조선은 청의 ‘공국(貢國)’이지만 ‘속국’의 관계는 아니다.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인 것을 방해하지

30 『井上毅傳 史料篇』 第1卷, 312~313쪽;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334~335쪽;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69~71쪽; 「清韓ノ關係」, 『秘書類纂 外交篇』 中卷(1969), 17~72쪽.

않는다. 따라서 청국은 다른 4국과 함께 ‘보호국’이므로 4국과의 협의나 합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노우에는 이러한 조선 중립화 구상이 구체화되면 동양의 정략은 다 소 ‘안전한 길’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일본의 이익만이 아니라 조선·청국에도 유익한 (수락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았다. 즉 조선은 ‘영구 중립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청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청은 ‘조공국’의 ‘명의(名義)’를 온전하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배후에는 조선을 둘러싼 구미 열강의 동향을 예측하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정세를 간파하는 데 있었다. 이노우에는 조선 문제가 앞으로 ‘동양교제정략(東洋交際政略)’상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 이를 둘러싼 2, 3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번의 전쟁이 모두 조선 문제를 초점으로 한 것임을 알고 있는 후대의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유럽의 한 나라가 점거하여 안남(安南)이나 인도처럼 되면(식민지화되면) 일본은 머리에 칼을 둔 상태처럼 되고 만다. 러시아에 조선을 빼앗기면 ‘동양의 대세’는 수습하기 어렵게 된다. 이노우에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구미 열강의 동향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이렇게 강조하였다. 이 또한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진 대러 위협론의 논리이다.

그러면 이것에 동아시아 측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이노우에에게는 조선·청국 모두 현 상태인 채로는 구미 열강의 진출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노우에는 조선 정부의 ‘용약’성과 조선 인민의 ‘우매’

성을 강조하고 금후 수십 년간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이 되는 일은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조선 ‘군민(軍民)’이 외국인을 적대시하고 ‘무례’를 범하는 일(임오군란과 같은 경우)이 금후 수년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최근 새로이 조선과 조약을 맺은 영국·미국·독일 등은 이것을 이유로 조선의 요지를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여 조선을 안남·버마와 같이 하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았다(이노우에는 그것을 다분히 러시아라고 보았다).

청국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가? 이노우에는 청국에는 조선이 ‘속국’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조선이 ‘사죄’하게 하여 외국이 개입할 기회나 명분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나 조선을 충분히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보았다. 또한 청국이 이러한 간섭이나 보호를 조선에 실행하는 것이 일본에 불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남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보아소나드의 한·청·일 3국 동맹설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실상을 보면 도저히 ‘동맹 협력’할 나라가 아니다. 청국도 함께 일을 도모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3국 동맹설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구미 열강(특히 러시아)의 조선 진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아소나드와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보아소나드를 비판하였다. 그 근거에 있는 것은 청국·조선의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거기에서 이노우에가 이끌어 낸 것이 ‘다른 하나의 방책’, 즉 조선 영세중립화 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보아소나드의 청일동맹론을 비판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노우에는 9월 23일, 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청국의 조선 간섭이 영구할지, 한순간에 그칠지는 아직 측량하기 어렵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본의 정략 방침은 일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상한 것의 의의를 강조하였다.³¹ 즉 지난번에 제출한 영구중립 국인 벨기에·스위스의 선례에서 배워 조선을 ‘공동 보호’한다는 안은 ‘다시 바꿀 수 없는 상책’이라는 것이다. 청국의 의표를 찌를 것 같은 원대한 장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눈앞의 떡을 두고 싸우는 것으로 쓸데없이 많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되어 무익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상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어떤 근거를 댈 수 있을까. 아마 보아소나드의 「항수국외중립신론(恒守局外中立新論)」(10월 29일자)은 이러한 구상을 포함한 이노우에의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다.³² 그러나 보아소나드의 대답은 유럽의 국제법에서 ‘항수국외중립’에 관한 적당한 법칙을 찾으려고 해도 무리라는 것이었다. 응용성이 극히 희박하고 아직 이 건에 관해 ‘보통의 논의’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국외중립을 지키는 나라는 스위스, 벨기에, 세르비아, 룩셈부르크의 4국밖에 없다. 스위스는 국외중립을 예전부터 지키고 있으나, 벨기에는 1831년, 세르비아는 1856년, 룩셈부르크는 1867년에 이것이 정해졌다. 이들 나라가 국외중립을 정립한 이유는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로 타국의 손해가 될 것 같은 ‘절대 이익’이 ‘병탄’되는 것을 예방하려 했기 때문이다.

보아소나드는 유럽의 현상을 이렇게 서술한 뒤 필시 이노우에가 듣고

31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614쪽.

32 「恒守局外中立新論」,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卷, 223~229쪽; 「ボアソナード氏ノ恒守中立論」, 『秘書類纂 外交篇』 上卷(1969), 612~617쪽.

싶어 할 중립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두 가지로 해설하였다.

「제1문」은 다음과 같다. ‘고려(조선)’가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승낙하는 일이 없어도 국외중립을 선포할 수 있는가(갑), 그 경우의 국외중립은 어떤 나라가 선포할 수 있는가(을). 이에 대한 보아소나드의 대답은 선포할 수 있다(갑), 가장 그 나라에 이익을 가진 ‘대방(大邦, 청국과 러시아)’이(을)라는 것이었다. 결국 당사국인 조선의 의향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 강국은 조선의 중립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 여기에서 일본은 거론되지 않았다.

「제2문」은 ‘고려’가 국외중립의 승인을 바랄 경우, 어느 나라에 이것을 청구해야 하는가(갑), 이 국외중립의 결과는 어떠한가(을)였다. 보아소나드는 갑에 대해 「제1문」과 마찬가지로 관계하는 ‘큰 나라’라고 답하고 있는데, 아울러 ‘고려 삼인방(청국·러시아·일본)’ 중의 한 나라(예를 들면 러시아)가 국외중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결과 생기는 사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고려’의 땅을 침략한 경우 다른 이웃나라라는 먼저 외교적으로 이에 관여하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노우에의 조선 중립화 구상은 청·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조선과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영국·독일을 포함한 5개국에서 조선을 공동 관리하려는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이 방책에 대해 일본의 이익뿐 아니라 조선도 영구중립의 위치를 얻어 청국의 굴레를 벗어나며, 청국은 조공국이라는 명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조선이 청국의 속국인지 아닌지는 다투지 않고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래 명목적인 관계를 보장함(즉 명목적인 관계에 한정함)으로써, 청국이 실제로 조선에 간섭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다.

III. 청불전쟁·갑신정변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1. 청불전쟁과 조선 문제·유구 문제

이노우에 고와시는 10월 31일 외무대보 요시다 기요나리 앞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³

청국인의 지론은 조선이 각국과 평등한 계약을 하며 내치·외교를 자주적으로 맡기면서 동시에 완전한 청의 속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은 각국 위에 위치하는 세력이며 ‘동양의 로마황제’처럼 ‘왕에게 왕인 자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미몽’을 깨지 않으면 ‘조선 속방론’이 소멸할 일은 없다. 이번 건은 청이 이 ‘소론(素論)’을 실행한 것으로 ‘속방’과 자주 의 두 가지 문제는 병행하며 상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향해 ‘일직선’으로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결한 처분’을 했으나, 한편으로는 청의 ‘속방론’을 현장에 서 묵인한 흔적이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따라서 청에 공공연하게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청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노우에는 이렇게 써서 보내며 사건 그 자체에 대한 대응이 일단락되는 단계에 취해야 할 청국에 대한 대응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1882년 11월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의 건을 일단 무사히 매듭을 지었다며 그 대처 과정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조선 정세의 전개는 대단히 중대하지만 ‘동양의 무사태평’을 미리 점칠 수

³³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611~613쪽.

없다는 글을 보냈다.³⁴ 그리고 구미 여러 나라(러시아 이외)의 대응을 포함한 조선 문제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영·미·독 각국이 조선과 맺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 각국의 공사들에게 확인해 보니, 영국과 독일 두 나라는 비준을 비교하는 듯하다. 특히 영국 공사의 의견은 이 조약은 첫째 아편 매매를 금지하고, 둘째 연해 무역권을 조선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선 측에 이익이 있는 조약이다. 한편 이러한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면 청 정부와 조약을 개정할 때에 청 정부가 ‘속방인 조선의 조약’에서조차 이러하다고 하는 구실을 주어 ‘영국의 통상이익을 해하는 것’이 심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결국 이러한 조약에는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도 조선 조약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보류하게 될 것이다.

또 프랑스 공사의 말을 들으면 프랑스는 현재 청국과의 사이에 ‘통킹(베트남을 지칭 - 역사주)’에 관한 일조(一條)가 있으며, ‘통킹’과 청국의 관계는 정확히 조선과 청국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조선과 조약을 맺어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통킹에 대한 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당분간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 정부만은 예전부터 그랜트(미국의 제18대 대통령 - 역사주)의 지론으로 영국의 동양 정략의 반대에 나서서 되도록이면 동양 여러 나라가 만족하는 동양 정략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 공사의 말로는, 슈페르트의 말에 따르면 조선 국왕의 서간 중에는 청국에 진공하는 것은 언명하고 있으나 ‘속국 운운’하는 말은 없다. 그러므로 미 정부에서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 어느 정도 청국 및 일본에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비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34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177~181쪽.

한편 청나라 정부는 착착 ‘조선이 속방인 실정’을 들어 ‘사실’을 가지고 각국에 속방인 것을 나타내려는 듯이 보인다. 청 정부의 저의는 작년에 일본 정부가 유구에 대해 청국의 이론이 있음에도 폐번치현의 처분을 거행한 것처럼 이번에 조선에 대해 이와 같은 처분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조선의 모습은 ‘거의 쇠약의 극치’에 이르러 있으며 게다가 독립을 희망한다고는 해도 결국 ‘국왕과 기타 두세 명의 신하의 마음’일 뿐으로 결코 조선 정부의 의향은 아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조선을 보조하여 강력하게 독립을 성취시키려 하는 것은 득이 되는 대책이 아니다.

이처럼 이노우에 가오루는 미국을 제외한 서양 제국이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이 조선과의 조약에 조인한 새로운 상황하에서 조선 중립화 구상은 급속히 구체성을 띠어 가게 된다. 오자와 히로아키는 조선 영세중립화 구상은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의 안정과 제도화를 모색한 것이었다고 평하고 있다.³⁵

이노우에 가오루는 프랑스 공사의 말을 빌려 ‘통킹’과 청국의 관계를 조선과 청국의 관계에 비유했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베트남을 둘러싼 중국과 프랑스의 교섭·대항 관계이지만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교섭·대항하는 것은 일본일 수밖에 없다. 청·프랑스 관계가 험악해지는 것에 대한 청조 내부의 대응책 변화는 조선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1883년 5월 12일 이노우에 고와시는 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안남사건의견(安南事件意見)」을 보냈다.³⁶ 일·청·한의 관계에서 오늘날은

35 大澤博明(1995), 앞의 글.

36 『井上毅傳 史料篇』第1卷, 355~356쪽.

실로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것이다. 청국 정부는 증기택(曾紀澤)에게 안남(베트남)을 청·불 양국의 공동 보호로 하도록 담판하게 하였다. 또 프랑스가 파견한 사절이 천진(天津)에서 이홍장(李鴻章)과 의결한 주된 뜻도 이 방향으로 보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청·한 관계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노우에 고와시는 생각하였다. 청국 측이 베트남에 대해 프랑스와 공동 보호라는 방향을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선 문제에 대한 청국의 대응 방향을 예측하여 이 기회를 살려 청·일에 의한 조선 공동관리적 방향을 추급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노우에는 프랑스 정부는 지금 이 담판에 만족하지 않고 베트남에 대해 ‘주재권(主宰權)’을 행사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보았다. 베트남이 청의 속국인 것은 정확히 조선과 같은데 프랑스는 이치에 맞지 않게 청국의 보호를 배제하고 베트남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국 정부는 쇠약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베트남을 가지고 싸울 힘이 없다. 현재의 판세로 청국 정부는 결코 서양 각국에 대해 그 속국을 보호할 힘이 없으니 장차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속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노우에는 이렇게 예측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떤가. ‘청 - 베트남 ← 프랑스’라는 관계에 대응하는 것은 ‘청 - 조선 ← 일본’이므로, 일본이 프랑스와 같은 노선을 밟으면 조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일본이 될 터이나 웬지 이노우에는 조선이 러시아나 프러시아에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이노우에가 청·일의 조선 공동관리가 아니라 조선 중립화 구상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일본이 청국 정부에 조선을 공법상의 중립국을 모방하여 청·일 양국 또는 그 외의 조약국에 의해 보호하자고 제안하면 청국 측은 기뻐하며 이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써 작년부터의 조선 사건이 처음으로 결말을 얻을 뿐 아니라 일본과 청국 사이의 다년간의 원한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 대국(大局, 正세)’에서 ‘영원한 장계(長計)’로 이 이상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노우에 고와시는 6월 14일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내었다.³⁷

伊藤 參議가 귀국 길에 天津 또는 上海로 漫遊하여 李鴻章과 면회하면 담화는 반드시 ‘세계의 대세, 동양의 정국’에 이르게 될 터이므로 그 기회에 청·일 양국이 장래 영원히 서로 의논하는 친밀한 방향을 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일 그(청국)가 ‘류큐의 일’을 언급하면 나(伊藤)는 다음의 大意로 대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나는 류큐번을 폐하여 현으로 한 주장자이지만, 오늘에 이르러 유럽에 외유하고 대세를 통찰하여 청·일 양국은 순치의 관계를 온존하여, 동양의全局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청 정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 琉球王인 尙泰를 沖繩島司로 해도 좋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이미 공법이 있으므로 이 일은 귀국에서도 인정하여, 장래에 ‘류큐의 일’은 모두 불문에 부치기 바란다. 게다가 이 일은 쌍방이 묵인한 것으로 하고 다시 商議 結約하지는 않는다.

만일李가 이것을 수궁하면 伊藤公의 귀국 후 조속히 島制를 공포하여 오키나와·쓰시마 등의 諸島에 島司를 두고 尙泰를 沖繩島司로 하며 宗某를 對馬島司로 하는 등의 처분을 하면 좋은 결과에 이르지 않겠는가.

만일李가 強情으로 ‘中山復封之說(류큐왕국으로 되돌리려는 것 - 역

37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617~618쪽. 琉球 문제·조선 문제를 둘러싼 청국 측의 동향은 西里喜行(1994a), 「黎庶昌の對日外交論策とその周邊 - 琉球問題・朝鮮問題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53-3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자주)’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한데 모아 신속하게 전쟁 준비에 착수하여 전국의 힘을 모아 군사력을 사용하는 비상의 계획을 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伊藤公이 상하이로 가서 ‘화평의 結好 국면’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의 의중을 살펴 國是 결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노우에는 여전히 분류 중인 유구 문제의 타개책으로 위무성 측의 공식 루트가 아니라 이토의 입을 통해 타협책을 청국 측에 제시하여 국면 전환을 하고자 한 것이다. 거듭 이 기회에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고 일·청·미 3국에서 공동 보호하는 대책이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노우에는 자신의 제안이 ‘서생(書生)의 공론’같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기’에 즈음하여 ‘일대 기책(奇策)’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색된 국면을 녹이기 위한 ‘치료’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것은 청국 측(李鴻章)의 변화를 포착하여 이 기회에 청·일 간의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전환할 만한 ‘일대 기책’이었다. 그러나 이 ‘서생의 공론’ 자체는 구체화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서도 밝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유구 문제가 조선 문제와 더불어 당시 진행 중인 중요한 분쟁 사항으로서 청·일 양국 간의 현안이 되고 있었던 점에 주의하고 싶다. 그래서 유구 문제의 처리법은 조선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비공식 교섭 루트의 부상 – 미야지마 세이이치로의 위치

그런데 이노우에 고와시는 전술한 5월 12일자 ‘안남사건의견’ 말미에서

이 제안을 청국 측과 협의하는 방법에 대해 ‘여 공사와 오랜 교류를 가진 사람’과 ‘무언가 사적으로 의논을 해’ 보거나 ‘문자상의 교류에 의지해 한편의 동양교제론(東洋交際論)을 작성하여’ 그 내의(內意)를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공연히 우리 정부에서 저쪽 공사에게 말을 거는 것은 비책(非策)’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노우에 고와시는 정면으로 외교루트를 통하기보다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타진해 가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탐색하여 구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술한 이토 귀국을 핑계로 삼은 ‘일대 기책’의 제기와도 통하는 발상이었다.

‘여 공사와 오랜 교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노우에가 상정한 것은 그 후의 경과에서 보면 청국 외교관과 친밀한 미야지마 세이이치로[宮島誠一郎]였음에 틀림없다.³⁸ 그 시기 미야지마는 궁내성 직원이었으나 한시문(漢詩文)의 소양을 바탕으로 진작부터 공사를 비롯한 청국 외교관과 빈번하고 친밀한 교류를 쌓고 있었다. 또 본래 미야지마는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등 사쓰마[薩摩]계의 인맥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인물이었다.

미야지마의 일기에 따르면 6월 17일, 청국 공사 여서창은 미야지마의 집을 방문해 미야지마와 필담으로 ‘청불안남사건(淸佛安南事件)’, 즉 베트

³⁸ 「明治十六年日記」全3冊(早稲田大學圖書館 所藏「宮島誠一郎文書」A61).

이하에 대해서는 大日方純夫(2004), 「宮島誠一郎の對外認識と對外活動 - 一八八〇年前後の對淸問題を中心に」, 由井正臣 編, 『幕末維新期の情報活動と政治構想』, 梓出版社 참조. 또한 宮島와는 별도로 1883년 8월 16일 田邊太一이 청국 공사관을 방문하여 黎庶昌과 회담하고 淸·日(미국도 포함하여)이 조선을 공동으로 보호하며 영구중립국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西里喜行(1994a), 위의 글.

남 지배를 둘러싼 청국과 프랑스의 분쟁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8일에는 이노우에 고와시가 미야지마의 집을 방문하여 청국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야지마는 여서창과의 답판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19일에는 이노우에의 요구에 응해 미야지마는 청국 공사와의 필담을 복사하여 제출했다. 이 필담은 그 후 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직접 건네쳐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도 제출되고, 야마가타에 의해 천황에게도 주상된 듯하다.

7월 7일,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미야지마에게 내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노우에는 먼저 지금 ‘유구와 조선 사건’에 관해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토로하고, 청국 공사와 깊이 교류하여 양국의 교제로 성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때 이노우에는 미야지마와 여서창의 답화에 대해 내각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야지마는 처음에 왜 ‘지나(支那)’를 경멸했는가, 또 지금 ‘지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경멸도 두려움도 낯익이 가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세를 엄중히 비판하였다. 이에 이노우에는 자신은 처음부터 경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한 후,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짚어 설명하였다.

나는 군대로 조선 공사관을 지키려고 해도 비용이 없다. 그래서 다게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공사로부터 청국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뮈트장에게 “이미 조선은 평온해지고 내란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군대의 반을 귀국시켰다. 귀국에서도 수만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숙고하길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뮈트장은 기뻐하며 “이 지역은 청·일 양국이 국외중립으로 하여 취급하는 계

좋다. 이미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영·독 등도 밀고 들어올 게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청국 혼자서 조선을 속국으로 보아도 실제로는 가망이 없을 것 같다. 이 일은 일본 주재의 黎公使를 설득하여 그가 李鴻章과 상담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竹添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竹添으로부터 편지도 왔으나 竹添이 염려한 것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이 국외중립을 모색하면 즉시 琉球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琉球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지금 어떻게 이 두 나라(琉球와 조선)를 구분해 처분하면 좋은가를 고려 중이다. 작년 정부에서는 만일 청국이 琉球 처분에 대해 八重(야에야마 열도)·宮古(미야코 열도)에 대해 승낙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복구론’을 주장할 경우, 단호히 싸워서 결말짓는 수밖에 없다고 조정이 결의하여 천황의 재가를 받아 지방관에 통달하여 증세도 부과하게 되었다. 조만간에 琉球사건이 문제가 되어 일본과 청국이 담판을 짓는 일이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청국의 최종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黎庶昌과 깊이 교류하여 찾아냈으면 한다.

이노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유구 문제에 대한 청국 측의 의향을 탐색해 달라고 미야지마에게 의뢰하였다.

또한 미야지마와의 최초 간담에서 이노우에는 현재 정부에서는 청국이 군비를 준비하고 독일에 수척의 군함을 주문한 거동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고 불안하여 어떤 형세에 처하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 이것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6월 5일자로 제출한 「대청(對淸) 의견서」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³⁹ 야마가타는 의견서에서 청국의 군사력 강화와 서양식의 장비·훈련 양상을 강조하여 청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상정한 군사 태세의 강화를 제기했다. 일본은 청국과 체결한 조약(1871년 청일수호

39 「井上馨文書」, 『山縣有朋意見書』, 137~138쪽.

조규) 이래로 대만 출병, 유구 처분에서부터 조선 사변(임오군란)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청국의 기세를 능가해 왔다. 이에 따라 청국에 일본에 대한 불평이 쌓여 왔으며, 청국이 군비가 충실하고 내치가 안정되면 ‘동양의 도량(跳梁)’으로서 일본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또 청불 전쟁에서 프랑스와의 강화가 성립되면 방향을 바꿔 동쪽을 향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군함 건조와 포대 건축을 촉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의견서에서 야마가타가 외교전략은 가급적 ‘평화 온당한 침로(針路)’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한 점이 주목된다. 즉 충돌을 회피하면서 군사 건설을 진행하면 실제로 막상 청국과 충돌했을 때 상하일치, 전국일체하여 용맹하게 과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하의 의(義)가 고동치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외교상의 과제는 ‘평화 온당’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7월 21일 미야지마는 청국 공사 여서창을 방문하여 필담을 나누었다. 미야지마는 조선 문제에 대해 “청국이 대금(大金)을 써서 육·해군의 힘으로 조선을 보호하는 것은 소용없지 않은가. 독립해야 할 것은 독립시켜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유구 문제에 대해서도 “‘일사귀(琉球)’는 버리고 ‘본 뿌리(청국)’를 강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였다. 여서창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30년 동안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고 황제도 어려서 스스로 대권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9월 16일 미야지마는 여서창을 방문하여 청·불관계에 대해 통역을 두고 세 시간 반 정도 담화하였다. 이로써 청국병 1만 5000명을 투입한 것, 파리에서의 증기택의 담판 등을 알 수 있었다. 19일 미야지마는 이노우에와 면회하여 상세하게 청국의 내정을 이야기하고 여서창의 ‘비담(秘

談)’도 말하였다. 이노우에도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모양으로, 앞으로도 한층 세밀한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2일에는 이노우에가 야마가타와 만나서 청국 공사와의 담판에 대해 말했다. 10월 9일 미야지마는 청국 공사로부터 중앙철 연회에 초대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미야지마는 미리 이노우에 외무경과 밀담했다. 이노우에는 미야지마에게 청국 공사의 저의를 탐지하고 싶다는 정보의 수집을 의뢰한다. 미야지마는 이노우에의 뜻을 받들어 연회의 기회를 이용하여 청국 공사의 심정을 탐색하고 그날 밤 연회 후에 마쓰카타와 만나 지난 수일 동안 이노우에 외무경과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 정부의 수뇌부는 청국 외교관과 친한 미야지마 세이이치로라는 매개고리를 통해 비공식 루트로 청국 측의 의도를 탐색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10월 28일 미야지마는 김옥균과도 만나 청·불관계의 향방과 동아시아 정세의 추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화 내용도 야마가타와 이토에게 전해졌다.

10월 31일 미야지마는 ‘청 공사의 기밀 일조(一條)’를 기초하여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에게 기증하였다. 여서창과 나누었던 9월 16일의 대화기록이 그것이다. 11월 1일에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방문하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청국 주재 공사의 보고를 은밀하게 보여주었다. 11월 9일에는 출근 전에 이노우에와 면회하고 조퇴하여 청국 공사와 면회했다. 청국 공사와는 세 시간 정도 ‘동양의 대세’에 대해 필담·설담(舌談)했다. 이날, 9월 22일자 하여장(何如璋)의 편지가 청국에서 왔으며, 11월 22일에 내방한 이토에게 이 하여장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또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를 방문하여 청국 공사와의 담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면 관계상 그 후의 미야지마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겠는데,

청·불관계를 둘러싼 청국 측의 정보 수집은 미야지마가 담당하였다. 그것은 야마가타·이노우에·이토라는 조슈계[長州系] 참의와의 접근의 도를 깊게 해 주었다. 게다가 직접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탐색하는 등 비공식적인 공적 활동의 성격을 강화해 갔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동아시아 정세에 직면하여 그 시기에 공식 외교의 이면에서는 이렇게 별도 루트의 사적 ‘교섭’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3. 갑신정변과 천진조약 체제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노우에 고와시가 구상한 청·일의 조선 공동 보호는 중국 측의 거부로 인해 환영(幻影)으로 끝났다. 한편 분규를 거듭하고 있던 청국과 프랑스는 1884년 6월 전쟁 상태가 되었다. 이어 8월에 프랑스 함대가 대만과 복주(福州)를 공격함으로써 청국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야지마 세이이치로는 9월 3일, 청국 공사관에 건너가 여서창 공사와 이야기하고 이 전쟁에 대한 청국 측의 태세를 들었다.⁴⁰ 또 9일에 미야지마를 방문한 이노우에 고와시는 ‘프랑스군의 움직임, 청국 위급’의 기회를 타서 독일·러시아가 청국을 분할하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만 등을 취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또 여서창의 상태를 묻고 속을 떠보았다.⁴¹

한편 조선의 ‘독립’에 대해 국제적인 공인을 얻으려는 일본의 정책은

40 「明治甲申第十七年養浩堂日誌」, 『宮島誠一郎文書』 A63.

41 宮島는 같은 날의 일기 외에 ‘此時時事新保(ママ)紙ハ清國分割之圖を出したり, 竹添朝鮮之變も此時に胎生せりと言ふ’라고 부기하고 있다.

1883년부터 1884년에 걸쳐 조선과 미·영·독·이·러 사이에 각각 조약이 비준·체결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달성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으로 유명무실화하게 된다. 즉 조선 한성에서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쿠데타를 청국군이 개입하여 진압함으로써 조선의 정국은 청국이 장악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을 계기로 청·일 양국군이 충돌하는 등 청·일 간의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미야지마는 1884년 12월 12일 밤에 내방한 청국 공사관의 요문동(姚文棟)으로부터 경악할 만한 정보를 얻어 다음날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했다.⁴²

한편 12월 19일 이노우에 고와시는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이토 참의·이노우에 외무경 앞으로 글을 보내, 이대로 일이 되어간다면 장차 청국인의 세력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어 ‘메이지 8년(1875) 이래’의 정략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였다.⁴³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청국인에게 ‘논봉(論鋒)’을 강하게 하여 청국의 주둔병을 철수시키든가 아니면 대장(隊長)을 내보내는 등 조선인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이노우에는 조선인을 ‘무정신(無精神)의 어린아이’로 보고,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같고 도리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원자인 청국인의 ‘머리’를 충분히 눌러 후일에 조선이 제3의 난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에도 이노우에 고와시는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에게 청국에 대한 강경책을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⁴⁴

⁴² 「日記」, 『宮島誠一郎文書』 A65.

⁴³ 『井上毅傳 史料篇』 第1卷, 440쪽;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347~349쪽.

지나인(청국인)은 조선인을 교사하여, 힘써 방만한 언성을 내뱉고, 다
계조예를 칭하여 적에 섞이는 범죄의 장본인으로 삼아 이로 스스로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사태는 더욱 병력을 파견하여
최후담판 또는 강박에 의하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
울 것이다. 설령 일시의 평화를 얻더라도 장래 조선으로부터 종종 참기
힘든 무례를 받아 결국 제3의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노우에 고와시는 직면하고 있는 사태를 상당히 중시한 것으로 보인
다. 같은 날 외무경·궁내경(宮內卿)·외무대보에게 보낸 서간에서도 거의
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⁴⁴ 더욱이 같은 날 궁내경·외무경·궁내대보
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청국의 독일인 군사고문 뮐렌도르프를 강하게 비판
하였다.⁴⁶ 12월 27일에는 이토 궁내경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⁴⁷

청국 정부에 강요하여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중
점이 있다. 그 때 그들과 논쟁할 때 주의할 것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것인가를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조선은 청의 속국이 아니라고 논하는 것
- ② ‘京城의 變’과 관련해 청국 측의 ‘침범 행위’를 문책할 것
- ③ 처리 대책을 논하고 양국 장래의 ‘사단’을 막는 것을 철병의 명분으
로 할 것

①의 경우, 입론이 정대(正大)한 것 같으나 위험하다. 청국과 조선의 관

44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303~304쪽.

45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305~306쪽.

46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77쪽.

47 『井上毅傳 史料篇』 第4卷, 79쪽;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349~350쪽.

계는 ‘유럽의 보호국의 위치’와 유사하여, 청·일 사이에 의논이 일단 이 ‘조선속국론’에 미치면 청은 전력으로 일본에 저항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충돌밖에 해결할 길이 없었다.

②의 경우, ‘京城의 변’의 ‘선발 침범의 책임’이 청국 측에 있는 것은 명료하지만 이것에 관해 분쟁하여도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쟁으로써 소송을 해결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③을 채용해야 한다. 그가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협박의 수단’으로 조선 주재 청국병에게 일본의 위력을 보여주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을 양국 간의 일부 전장으로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즉 이것은 한편으로는 조선에 청국의 ‘명목상의 관계’를 남기고 그 ‘실력의 관계’를 끊어 점차 조선에 ‘독립의 진로’를 얻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함부로 선발침범의 죄에 대해 사죄시키는 길로 ‘논의는 공평하고 처리는 온당’하며, ‘세계의 방관론자’가 지적하려는 여지를 없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속국론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노우에의 견해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임오군란 때의 의견과 같다.

그런데 1885년 1월 4일, 미야지마 세이이치로는 외무대보 요시다 기요나리를 방문하여 이번 ‘조선 일조(一條)’와 외무성의 대응 방식을 상세하게 들었다.⁴⁸ 5일에는 청국의 새로운 공사 서승조(徐承祖)가 미야지마를 방문하여 조선의 일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미야지마는 협력과 화평의 근본이 서면 사이에 작은 일이 결코 양국을 대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대응하였다. 6일에는 외무성에서 요시

48 「日記」, 『宮島誠一郎文書』 A65.

다에게 면회하여 청국 공사와 왕래한 일을 이야기한 후 청국 공사관에서 새 공사에게 어제의 답례를 하고, 전 공사인 여서창을 찾아가 필담하였다. 여서창은 귀국이 조선에 간여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유구를 포기하면, 삼국(청국·일본·조선)이 화목하여 동방 만세의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미야지마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⁴⁹ 이 자리에서 여서창은 두 사람의 사담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공표하는 것은 삼값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쓰카타에게 이것이 전해져 이토의 집에는 필담 그 자체가 전달되어 있었다.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를 둘러싼 교섭 방침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한편으로는 다시 조선 문제와 유구 문제의 동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여서창은 이노우에 외무경과의 회담에 입각하여 1월 21일, 본국의 총리아문에 청국은 유구를 포기하고 일본은 조선에 간섭하지 않는 안과 유구와 조선을 청·일이 공동으로 보호하는 안을 제기했다.⁵⁰ 그러나 결국 이러한 안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조선에서의 사건에 대해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조선과 청국이 각각 별개로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결국 조선이 외교상의 자주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려 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이 독립국인 것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하고 청국에도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종래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49 『秘書類纂 外交篇 下卷』, 355~358쪽; 西里喜行(1994a), 앞의 글 참조.

50 西里喜行(1994b), 「清國(洋務派)の對日外交と琉球問題」, 『琉球大學教育學部紀要』第45集.

다만 이노우에의 노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슈파인 이토 히로부미가 비판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즉 이토는 청국에 대한 담판 문제에 강약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강이란 속국론에 입각하여 청국병을 철병시키는 것이고, 약론이란 단지 청·일의 장래 우호 보장으로 양국의 병사를 철수하는 것이다. 강론(強論)으로 담판하면 청국 측은 반드시 거부할 것이므로 회담이 결렬될 때 개전(開戰)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는 지금부터 준비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론(弱論)으로 하여도 청측이 거절하면 전쟁은 피하기 어렵게 되므로 개전에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강·약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도 특별히 사절을 파견하여 담판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외교 수속에 따라 에노모토 다케아키에게 명하여 담판짓게 해야 하는가.

조선 ‘독립’론을 명분으로 하여 교섭에 임하려는 이노우에의 입장은 ‘강론’이었다. 즉 청국과의 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토의 입장은 ‘약론’이었다.

실제로는 갑신정변의 국제적인 처리는 조선, 청국 각각 별개로 행해져 조선과는 1885년 1월에 한성조약(漢城條約)이, 청국과는 4월에 천진조약(天津條約)이 맺어져 분규는 일단 수습되었다. 전자는 전권대사 이노우에가 오류가 담당했고, 후자는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선 측과의 교섭을 통해 이노우에는 조선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음을 나타내려 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토 대사 앞으로 보낸 훈령을 통해 사변 당시 병대를 지휘하고 있던 장군의 처벌과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청국에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에 대해 이노우에 고와시는 청국에 철병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을 버릴 것을 원하는 것과 마

찬가지이므로 합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토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청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일본과 담판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 실제로 청국 측은 일본의 공동 철병 요구에 응할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청·일 공동 철병책은 천진조약에 의해 구체화하여 조선이 독립국인 것에 대해 국제적인 공인을 얻으려는 일본 측의 정책은 효과를 보였다. 또 천진조약에 ‘행문지조(行文知照, 문서로 서로 알리고 확인한다)’의 조항을 넣음으로써 일본 측은 청국 측과 대등한 권한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청국 입장에서 보면 속국인 것을 근거로 조선에 맘대로 출병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인 1885년 4월 15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를 무력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러청밀약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청·일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조선 문제는 문자 그대로 국제 문제화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은 영국이 오래 이 섬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러시아도 원산·부산·제주도 등의 점거를 조선 정부에 제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조선 정부는 조러조약의 최혜국 조항에 의해 다른 나라에도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조선 분할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심하게 되고 일본 근해는 쟁란분의(爭亂紛議)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이런 염려에서 대조선정책의 전환을 꾀하려고 하였다.

러시아와 조선의 접근을 염려한 이노우에 가오루는 6월, 청국의 주일 공사 서승조와 도모하여 ‘조선 변법 8개조’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러시아

의 조선 단독 보호를 지지해야만 하며 청·일 두 나라의 조선 공동 보호를 기도하자는 것이었다.⁵¹

그러나 이 ‘변법 8개조’는 이홍장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았고 청국을 이 용하려는 정책은 사실상 쓸모없게 되었다.

IV. 청일전쟁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

1. 야마가타 구상과 아오키 구상

제국의회 개설 단계에서 명확한 형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을 제기한 것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의견서이다.⁵² 원본으로는 오야마 아즈[大山樺]사가 편찬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의견서(意見書)』에 수록된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문서 중의 것과 무쓰 무네타쓰 문서 중의 「군비의견(軍備意見)」이 알려져 있다.⁵³ 아오키는 야마가타 내각의 외무대신, 무쓰

51 外務省 編(1963), 『日本外交文書』明治年間追補 第1冊, 日本國際連合協會, 359~360・380~381쪽; 高橋秀直(1995), 『日清戰爭への道』, 東京創元社, 190~194쪽; 崔碩堯(1997), 『日清戰爭への道程』, 吉川弘文館, 133~135쪽 참조.

52 『山縣有朋意見書』, 196~200쪽; 『井上毅傳 史料篇』 第6卷, 206~211쪽; 芝原拓自 外編(1988),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 12』, 岩波書店, 81~86쪽.

53 『山縣有朋意見書』 수록의 「외교정략론」은 陸奥宗光 문서 속의 山縣의 의견서 「軍備意見」(『井上毅傳 史料篇』 제6권에 「참고」로 수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大山 編, 『山縣有朋意見書』 수록 「외교정략론」에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 즉 198쪽 1행 중간부터 ‘今ノ時ニ及ンテ國民ト否ト拘ハラズ隣邦ノ利益ニ依リ’라는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착오라고 생

는 농상무대신이였다. 이 의견서는 1890년 3월, 각료의 열람으로 제공되었는데 『야마가타 아리토모 의견서[山縣有朋意見書]』는 그때 동시에 회람된 1888년 1월 중의 의견서(『山縣有朋意見書』 수록 「軍事意見書」)의 두서주기(頭書朱記)에 의거하여 「외교정략론(外交政略論)」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날짜도 무쓰 문서에 의해 보완되어 있다.

야마가타의 이 의견서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개된 전반의 주권선(主權線)·이익선론(利益線論), 후반의 조선 영세중립화론과 이 양자를 잇는 중간의 정세 분석 부분이다.

먼저 서두에서 ‘국가 독립 자위의 길’에는 ‘주권선’의 ‘수어(守禦)’와 ‘이익선’의 ‘방호(防護)’ 두 개가 있다고 보고, ‘이익선’, 즉 조선 확보의 의의를 강조하고 그를 위한 군비 확충을 제기한다.

게다가 1888년 1월의 군사의견서와 같은 사태를 상정하여⁵⁴ 시베리아

각된다. 陸奥宗光 문서 속의 「軍備意見」과 照合하면 본래는 ‘今ノ時ニ及ンテ國民’에 같은 쪽 16행의 ‘尙武ノ氣風ハ之ヲ鼓舞振起スヘキモ之ヲ萎弱ナラシム可ラス’가 이어질 뿐이며, 한편 ‘ト否トニ拘ハラス隣邦ノ利益ニ依リ’ 이하 16행 첫머리의 ‘將來ニ同舟’까지는 그대로 199쪽 12행 첫머리의 ‘之ヲ要求セル’의 뒤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山縣有朋意見書』가 底本으로 한 青木周藏文書の 원문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원문서의 잘못인지, 『山縣有朋意見書』의 실수인지, 어쨌든 이 「외교정략론」에서 해당 부분은 의미 불명이다. 또한 『山縣有朋意見書』의 注記에 따르면 이 수록문서는 青木 외무대신에게 제출된 것에 의한다고 하지만, 青木 앞으로의 建議에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陸奥文書の 日付에 의해, 「외교정략론」이라는 제목도 동시에 회람되었던 1888년 1월 중의 의견서(『山縣有朋意見書』 수록의 「군사의견서」)의 頭書朱記에 의해 판명된 것이라고 한다.

⁵⁴ 1888년 1월의 이 의견서에서 山縣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 175~

철도의 준공에 따른 조선 진출과 캐나다 철도 새 노선의 개통에 따른 영국의 동양 진출의 단거리화에 의해 ‘동양’에 일대 변동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청국 정부의 군비 증강 움직임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익선을 방호하여 일본의 독립을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실현적 보장으로 제기된 것이 조선 중립화이다.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이익선=조선의 독립’이 위협받는다. ‘동양의 상류(上流)’를 ‘타인=러시아’가 차지하면 직접 위험이 미치는 것은 청·일 양국이다. 청국은 최근 전력으로 ‘타인의 점유’를 거부하는 결의가 있는 듯하므로 친진조약을 유지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정세가 되고 있다.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상호간에 파병을 금한다는 친진조약의 조항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장래의 ‘장책(長策)’은 친진조약을 유지하는 데 있는가, 한 발 더 나아가 ‘연합보호의 방책’을 취하여 조선을 공법상 항구중립의 위치로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였다.

항구중립이란 스위스·벨기에·세르비아·룩셈부르크 4국의 예처럼

185쪽.

“영국과 러시아의 이익은 대립하고 서로 충돌하는 분쟁, 갈등의 요소는 실로 많다. 대륙상의 교통 운수가 편리해지면 충돌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진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부설은 영국의 동양 항로를 단축시키고 시베리아 철도 부설은 러시아 군대의 東向을 빠르게 한다. 영·러 양국은 아시아에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년 내에 동양에는 ‘일대 파란’이 일어난다. 그 때 조선은 영·러 충돌의 대립점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은 청·일 양국의 ‘분쟁의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정략은 조선을 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주독립의 한 나라’로 하고 유럽의 강대국이 이 일에 편승해 탈취할 염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군비의 강화가 최대 급무이다.”

해당국이 요구하면 반대와 관계없이 이웃나라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점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는 해당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의 중립은 청국만이 아니라 영국·독일의 이익에도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특히 영국에 조선은 동양에서 ‘이익선’의 ‘분쟁’의 땅이다.

이렇게 하여 야마가타는 영·독·일·청의 4국에 의한 조선의 항구중립화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이 중립화 구상의 안목은 러시아 대책이었으므로 중립을 협의·보장하는 관계국 중에는 물론 러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전에 협의대상국으로서 상정되었던 미국도 이번에는 빠져 있다.

야마가타가 이 의견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주권선·이익선이라는 발상은 로렌즈 폰 슈타인에게 배운 것이라고 한다.⁵⁵ 1888년 지방제도 조사를 위해 유럽을 방문한 야마가타가 다음해에 빈에서 슈타인을 만나 가르침을 얻을 때, 그는 ‘주권강역’ ‘이익강역’이라는 개념으로 일본의 과제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익강역’인 조선이 다른 나라에 점령되면 위험하므로 조선을 중립화시켜야만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야마가타의 구상을 구체적인 의견서로 정리한 것은 사료의 존재 상황으로 보면 이노우에 고와시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야마가타는 1890년 12월 6일, 수상으로서 제1회 제국의회에 임하여 시정 방침 연설에서 주권선·이익선론을 전개하고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⁵⁶ 다만 그것은 ‘군비의견(외교정책론)’

⁵⁵ 加藤陽子(2002), 『戦争の日本近現代史』, 講談社, 85~97쪽; 村中朋之(2006), 「山縣有朋의 ‘利益線’ 개념」, 『軍事史學』 165.

⁵⁶ 『山縣有朋意見書』, 201~204쪽.

전반의 주권선·이익선에 관한 부분만을 사용한 것으로 중립화 구상 부분은 밀려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5월에 야마가타 구상에 대항하려고 아오키 슈조 외무 대신은 「동아시아는 열국의 권리 저울」이라는 의견서를 각료에게 배포하였다.⁵⁷ 그것은 청·일 양국이 동맹하여 러시아와 싸워 청국은 서시베리아를, 일본은 만주·조선·캄차카반도를 영유한다는 구상이었다. 『아오키 슈조 자전(自傳)』에 의하면 각료들은 아오키의 대담한 논의에 크게 놀라고 체신대신이던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이외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⁵⁸

야마가타 구상과 아오키 구상은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항하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야마가타 구상은 동아시아의 청·일관계에 영국과 독일을 끌어들이므로써 그 힘으로 러시아의 진출을 억눌러 조선반도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세력균형의 논리에 서 있음에 반해, 아오키의 구상은 더욱 직접적인 군사동맹과 구체적인 군사 분할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또 야마가타 구상은 청·일관계와 관계된 천진조약 체제의 평가와 관련이 있어 청국의 군사 건설 상황에 대한 관심이 그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2. 청일전쟁 개전과 조선 내정개혁 문제

1894년 5월, 남조선 일대에 농민반란이 퍼져갔다. 갑오농민전쟁이다. 조

⁵⁷ 外務省 編(1952), 『日本外交文書』 第23卷, 日本國際連合協會, 538~543쪽.

⁵⁸ 坂根義久 校注(1970), 『青木周藏自傳』, 平凡社, 109쪽.

선 정부는 청국에 출병을 요청하고 일본도 6월 2일 공사관·영사관과 재류방인(在留邦人)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선에 출병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6일, 청국은 천진조약의 규정에 따라 조선에 파병하는 일을 일본에 통고하여 왔다. 머지않아 농민군은 철퇴됐으나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6월 15일의 각의에서 청·일 공동으로 조선 내정개혁을 하는 것을 청국 측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난민 평정’ 후 조선의 내정을 개량하기 위해 청·일 양국에서 상설위원 약간명을 조선에 두고 재정 조사, 관리의 정리, 경비병 설치 등에 종사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청국 측이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었다. 즉 무쓰 외상은 이 제안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 청국과 협의 중에는 철병하지 않는 것과 청국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맡는 것을 추가 제안하였는데, 이 점을 포함하여 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6월 22일, 청국 측은 일본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청국은 그 이유로 조선의 내란은 이미 평정된 점, 조선의 개혁은 조선 자신에게 맡겨야만 한다는 것(일본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內政에 간여할 권리는 없다), 사변 평정 후에 철병하는 것은 천진조약의 규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군의 주둔은 천진조약의 취지에 합치한다며 청국에 제1차 절교서(絶交書)를 보냈다.

러시아 공사가 6월 25일 청·일관계의 알선을 제안하고, 30일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에 응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일본 측은 7월 2일에 이것을 거부했다. 또 7월 2일 영국 공사가 청·일 간의 조정을 제안했으나 결국 이것도 실패로 끝났다. 일본 측은 7월 12일 제2차 절교서를 각의에서 결정하여 14일 청국 측에 송부하였다. 7월 19일에는 영국의 제2차 중개안

이 제시되었다. 조선 국내의 ‘변란(變亂)’의 진정, 내정개혁을 위한 ‘협동위원’의 임명, 청·일 양국 공동으로 조선 국토의 안전의 담보, 청·일 양국의 조선에 대한 통상상의 동일 권리(‘정치상’의 문자는 기입하지 않을 것), ‘속방론’은 제출하지 않을 것 등이 그 내용이었는데 일본 측은 이 제안도 거절하였다.

한편 7월 16일에는 영국과의 사이에 신통상항해조약을 조인함에 이르렀으므로 점점 개전을 단행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오토리[大鳥] 공사는 7월 20일 조선 정부에 청국과의 종속관계 파기와 청국군의 철병 등을 요구했다. 23일에는 일본군이 조선 왕궁을 습격하여 정권의 전복을 꾀하여 대원군을 집정으로 하는 친일파 정권을 옹립하였다. 25일에는 청국에 전쟁 공세를 취하고 8월 1일 선전의 조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개전 후인 8월 17일, 무쓰 외상은 금후 조선정책의 기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각의에 자문하였다.⁵⁹ 본래는 전쟁의 결말이 나면 의논해야 하지만 이것은 금후 외교상·군사상의 조치와 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해 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무쓰는 금후 취해야 할 조선정책은 4가지밖에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갑’, ‘을’, ‘병’, ‘정’으로 나누어 각각 그 이점과 단점을 비교 고증하였다.

‘갑’은 조선 자주 자치안으로,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자주 자치’에 맡기고 일본은 간섭하지 않으며 다른 간섭도 허용하지 않아, 그 운명을 조선에 일임하는 노선이다. 그것은 淸·日의 개전에서

59 『日本外交文書』 第27卷(1953), 646~649쪽; 「對韓政策閣議私案」,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91~96쪽; 「對韓問題閣議案」,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599~604쪽.

일본이 국내외에 성명을 낸 노선을 전쟁 승리 후에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노선을 취할 경우, 조선의 현 상태로 보아 내정을 개혁한다고 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본이 대군을 파병하여 거액의 군비를 사용한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또 그 경우 청국이 틈을 타 또 조선에 간섭하여 淸·日의 전쟁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을’은 일본 단독 보호안으로, 조선을 명의상으로는 독립국으로 공인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이 간접·직접으로 독립을 ‘보조’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타국의 비난과 시기를 불러 ‘무수한 갈등’을 낳을 염려가 있다. 가령 일본이 조선에 ‘보호국’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해도 만일 청국·러시아 등 조선에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조선의 독립을 침해할 경우에 혼자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염려된다.

‘병’은 淸·日 공동 관리안이다. 조선이 자력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없고(‘갑’안이 불가능한 경우), 일본이 보호책임을 맡지 않을 때(‘을’안이 불가능한 경우)는 淸·日 양국이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국은 ‘의식적 종속 문제’를 도저히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 후에도 청국이 조선에 대해 일본보다 ‘우등한 시각’을 갖는 것은 일본이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또 대립이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청국 정부가 굴복하여 ‘종속관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국에서 조선의 정무를 보조하는 감독관·위원을 파견한다든지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에도 淸·日 양국의 이해대립이나 정치가의 주의의 차이로 결국 충돌하게 될 것이다.

‘정’은 조선 중립국화안으로, 조선을 ‘세계의 중립국’으로 하는 것을 일본이 구미 제국과 청국에 제기하여 조선을 벨기에나 스위스와 같은 지위에 세우는 안이다. 그러나 조선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淸·日 양국으로 淸日전쟁의 결과 생긴 명예·이익을 다른 유럽 제국에 나눠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국 인민’은 만족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대군을 내어 거액의 군비를 지출한 결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세론의 공격을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무쓰는 응당 있을 수 있는 청일전쟁 후의 조선정책 노선, 즉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을 조선 자주 자치안, 일본 단독 보호안, 청·일 공동 관리안, 조선 중립국화안 네 가지 안으로 정리하고, 모두 ‘일리일해(一利一害)’가 있다면서 어느 것을 채용해야 하는가를 각의에 물었다. 4개 안과 함께 전후에도 청국이 조선 문제에 상응하는, 또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태가 상정되어 있다. 조선 문제에서 청국이라는 요소는 전후에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각의에서는 당분간 ‘을’안, 즉 일본 단독 보호안의 방향을 취하기로 하고 곧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청일전쟁을 전개하면서 겉으로는 개전 선언의 선에 따라 명목상 조선을 ‘독립국’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독립을 ‘보조’한다는 이유로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해 가는 노선이 채용되었다.

8월 20일에 체결된 일조잠정합동조관(日朝暫定合同條款)에는 조선 정부의 승인을 근거로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에 철도나 전신선의 이권을 제공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 26일에 체결된 일조공수동맹(日朝攻守同盟)은 청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동맹이었다.

청일전쟁 중에 조선 내정에의 개입 노선을 실제로 추진한 것은 공사로 조선에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였다. 그는 도착 직후인 10월 28일에 조선 국왕과 만났을 때의 상황을 31일자 서간에 적어 이토 히로부미 수상에게 보냈다.⁶⁰ 그것에 의하면 이노우에는 두 시간 정도 걸려 ‘메이지[明治] 9년의 조약 체결’ 이래 조선을 둘러싼 청·일 대립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

60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269~270쪽.

다고 한다. 즉 청국은 조선의 ‘동란’ 때마다 ‘간섭의 도’를 높여 일본 측으로부터의 ‘협동위원(協同委員)’에 의한 조선 ‘내정 개량’의 제안도 속방론을 주장하며 거부하였고, 군대를 동원해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고 ‘속방지론(屬邦之論)’을 한층 강화하려 하였다. 이노우에는 개전에 이르는 경위를 이렇게 설명한 후 “착착 개혁의 걸음을 진행하고 내치를 정리하여, 독립의 길을 여는 것이 급무”라며 “공사직무 외에 귀 정부의 고문처럼 만사 흥금을 터놓고 만사 하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노우에는 ‘고문 같은’ 형태로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른바 갑오개혁이다.

이노우에는 그 구상을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정책을 취해 현재와 장래의 양책과 결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토 총리 앞으로 보낸 12월 13일자 서간에 쓰고 있다.⁶¹ 또 이토에게 보낸 12월 25일자 글에서도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정책을 취한 수단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⁶² 이노우에의 머리에 있었던 것은 1883년 이후 총영사 겸 대표로서 이집트 통치 임무를 맡았던 크로머 경에 의한 이집트 개혁노선일 것이다. 이집트 통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영사 겸 대표를 필두로 하여 각 성청(省廳)에 ‘고문관’으로 배치된 영국인 관리가 쥐고 있었다고 한다.⁶³ 크로머 경을 중심으로 이집트 경제는 재건되고 행정·재정·사법 개혁 등이 추진되었다. 이노우에는 이러한 영국의 이집트 통치를 조선 개혁의 모델로 삼으려고 한 것이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노우에는 먼저 ‘방해물의 움직임을 봉쇄’하

61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271쪽.

62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272쪽.

63 山口直彦(2006), 『エジプト近現代史』, 明石書店, 215~223쪽.

려고 하였다.⁶⁴ 전술한 이토에게 보낸 12월 25일자 서간에서 “왕비를 수중에 장악하려는 계획은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말씀드린 대로이며 최초의 목적대로 착수하려고 합니다”라고 쓰고 있지만, 이토에게 보낸 1895년 2월 17일자 서간에서는 “대원군이 왕비 등과 함께 방해를 하는 원류인 바 강제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⁶⁵

개혁에 임해서는 ‘명목상 독립의 유지를 좇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 문제에 대해 “다른 것보다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12월 25일자 서간). 특히 ‘재정의 문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 있었다(1895년 2월 17일자 서간).

이것에 대해 3월 3일 이토 총리는 이노우에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⁶⁶

청나라는 이미 조선의 일에 개입할 수 없으나 영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개입하기 쉬운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명실공히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여 야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일은 없겠지만 처치가 타당성을 얻지 못하면 순식간에 비난과 공격이 일어나 조선이 여러 강국 사이의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또 각하는 부임한 이후 개혁을 착착 진행하고 있으나 염려되는 것은 경비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진작부터 이집트 운운하는 의논이 있으나 그 나라는 나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여하는 금액의 처치에 대해서도 ‘主客의 位地’를 분명히 하여 국제법상 관계와 사법상 계약

64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273~274쪽.

65 『伊藤博文關係文書』 第1卷, 273~274쪽.

66 「伊藤首相井上公使へ寄スル書簡」,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556~558쪽.

의 구별을 혼동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이토는 이렇게 서술하고 개혁이 도리어 열강(구체적으로는 영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것,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노우에 측은 청일전쟁의 종전을 눈앞에 둔 4월 8일, 전후를 내다보고 어떤 조선정책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부(陸奧 외상)에게 상세히 말했다.⁶⁷

청·일 양국의 개전은 원래 조선의 독립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천황은 이 일을 내외에 선언하고, 정부는 단독으로 조선 정부를 개량할 것을 각국에 ‘放言’하였다. 그래서 개량을 충고할 뿐 아니라 개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섭하였다. 본인도 조선 정부에 대해 독립을 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단언하며 간섭해 왔다. 그런데 현재 ‘다소의 변화상’을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명실공히 조선의 독립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청·일 강화 조건의 골자로 하려고 하고, 영국도 이에 동조하려고 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금후 조선의 독립이 보전될지 어떨지 모두가 주목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여러 강국은 이것을 두고 일본의 對韓정책을 구속하는 유일한 열쇠로 하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

철도의 건설도, 전신의 관리도, 내정 정리의 간섭도 모두 다소 조선의 독립권을 손상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본은 표면상으로 조선의 독립을 주창하고 있으나, 그 결과 조선을 예측시킬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선언과 실제 시책과는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7 『日本外交文書』第28卷, 396~398쪽; 『日清平和後ニ於ケル對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井上伯具申』,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下卷, 628~632쪽.

이노우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수비병의 배치, 철도 전신 조약, 내정개혁의 3건에 대해 급히 정부 방침을 확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1894년 8월에 각의에서 확인한 ‘을’노선에는 ‘독립’이라는 명목과 ‘보익부지(保翼扶持)’라는 것 사이에 본래 모순을 안고 있어서 당연히 타국의 비난을 부를 것을 예상하였으나 종전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3. 전후 조선 문제의 귀추

1895년 3월 하순부터 강화 교섭을 벌여 4월 17일 청·일 양국은 강화조약에 조인했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의 결과로 청국은 마침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개혁을 대의명분으로 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전후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 독립의 영속, 열국과의 협동이라는 방침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열강의 감시하에서 실질이 표면적 이유에 의해 제약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4월 23일의 러시아·프랑스·독일에 의한 이른바 삼국간섭에서도 일본의 요동반도 소유는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5월 상순의 철도 전신 조약을 교섭할 때에 느긋한 의견을 제안하며 내정개혁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느긋한’ 태도로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무쓰에게 전하여 무쓰도 이것을 양해하였다.⁶⁸

68 酒田正敏(1980), 「日清戰後外交政策の拘束要因」, 近代日本研究會 編, 『年報』

무쓰는 당시 이노우에 공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조선 내정개혁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열국이 공동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토에게 진언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토는 조선 내정개혁 정책의 포기에 반대했다. 조선 정부의 개혁은 겨우 실마리가 잡혔을 뿐이므로 조금 더 질서가 정돈될 때까지 일본인을 고문으로 두는 정도의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5월 18일자 陸奥에게 보낸 전보).

5월 25일 무쓰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선언을 열국을 향해 발표하고 싶다고 이토에게 전보로 요청하였다(5월 25일자 伊藤에게 보낸 전보). 그 이유는 러시아의 간섭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 조선은 청국의 간섭에서 구제하려 했던 개선 목적은 下關係約에 의해 달성되었다.
- 조선국의 독립 유지는 각국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조선의 개량은 각국과 협동하여 행한다.
- 장래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조약에서 얻은 권리 안에 머무른다.

당시 이토는 천황과 함께 교토[京都]에 있었으나 이 판단은 천황이 도쿄로 돌아간 이후에 한다고 하여 무쓰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5월 25일의 재경(在京) 각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⁶⁹

조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정략을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 독립의 영속은 각국 일반의 이해와 관계가

近代日本研究 二 近代日本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⁶⁹ 『日本外交文書』第28卷, 434쪽.

있으므로 일본은 단독으로 독립 유지의 책무를 지지 않으며, 일본 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조선의 사태 개선에 대응할 것을 표명한다.

6월 3일 무쓰 외상은 이토 총리에게 각의안을 제출하면서 1894년 8월 17일의 각의안을 첨부하였다.⁷⁰ 1894년 8월 각의는 조선정책을 당면(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을책(乙策)’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제 청·일 강화와 삼국간섭의 결과로 형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게다가 조선에 관해 러시아와 제휴하면 어떤가 하는 프랑스 공사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무쓰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도 종전 방침을 계속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단연 간섭 정략’을 그만두고 ‘통상조약국’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인가, 일정한 방침을 강구해 두는 것이 급하므로 신속하게 조정의 의견을 확정했으면 한다고 주장하였다.

6월 4일 각의는 앞으로의 조선정책에 대해 가급적 간섭하지 않고 조선을 자립시키는 방침, 즉 ‘타동(他動)의 방침’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⁷¹ 아울러 각의에서는 이 결의의 결과로 조선의 철도·전선 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실행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고 결정하였다.

이노우에는 6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6월 20일에 귀국하였다. 그 후 7월 6일 조선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이노우에를 후원자로 하여 개혁을 추진하던 내각이 경질되었다.

8월 17일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조선공사로 임명되었다. 미우라는 9월 1일 부임하고 이노우에는 9월 21일 조선을 떠

70 『日本外交文書』 第28卷, 440~441쪽.

71 「陸氣外務大臣ノ對韓策」,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597~598쪽.

났다. 그래서 10월 8일 미우라 공사를 중심으로 조선 왕궁을 습격하여 왕비 민비(명성황후)를 살해한다는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민비 살해 사건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을 뒤흔들었다. 17일 정부는 미우라 공사의 소환과 해임을 결행하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정무국장을 그 대리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10월 21일자 「조선사변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토 총리는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불간섭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² 즉 가능한 한 간섭의 흔적을 끊고 일본 정부의 처치에 대해 관계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장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25일 전신(電信) 수비병을 철수시킬 것, 조선의 질서 안정과 동시에 전 군대를 철수시킬 것,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열국에 선언하기에 이르렀다.⁷³ 조선 정부와 구미 열강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태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

이토의 손에 남은 문서를 정리한 『비서류찬(秘書類纂)』 속에는 「조선사변 처분안」이라고 제목을 단 동명(同名)의 문서가 2점 포함되어 있다. 일단 A안,⁷⁴ B안⁷⁵이라고 이름을 붙여두기로 하자. 둘 다 민비 살해사건 후의 처리책, 즉 조선 대책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⁷² 「朝鮮事變ニ付意見書」,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158~162쪽.

⁷³ 酒田正敏(1980), 앞의 글.

⁷⁴ 「朝鮮事變處分案」,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163~168쪽.

⁷⁵ 「朝鮮事變處分案」,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卷, 169~191쪽.

A안은 첫째, 관계국의 공사에게 미우라 공사의 말은 정부의 진의가 아니라고 알려 러시아·미국의 간섭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을 영세중립국 또는 협의중립국이라 칭할 것을 제기한다. 영구중립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하고 있다.

중립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국들이 협의한 뒤에 ‘일약국(一弱國)’의 중립을 승인하고 전시와 평시 모두 중립국으로 하여, 중립국이 그 의사에 따라 다른 나라와 ‘합종연횡(合從連衡)’하지 않고 또 날인한 여러 강국이 교전할 때 병사와 군함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국의 권력과 권력이 충돌하는 곳을 상호 공제하는 ‘무권력의 장소’로 하여 쌍방이 함께 침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A안은 구체적인 구상으로 일·러·영·불·미·독 6개국에 의한 조선 중립화를 제기했다. 또한 일본이 조선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는 문제점과 여러 강국, 특히 러시아가 전시에 조선 국경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점을 지적했다.

셋째, 러시아의 간섭을 허용하여 러·일이 각각 조선에 간섭할 경우 이 집트에서 영·프랑스의 관계처럼 결국에는 대파탄이 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될수록 원만한 교섭으로 충돌 시기를 늦추어 군비를 정돈하고 실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이점이 있다. 청일전쟁 후의 현 상황에서는 당장 러일전쟁이 도래하는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조선정책으로는 관계있는 6개국에 의한 조선 중립국화안과 러·일에 의한 조선 간섭 조정안을 제출한다. 또한 청국의 존재는 이미 없고 대신에 러시아가 문제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이 두 길은 다 궁핍한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조만간 조선 문제를 둘러싼 러·일의 개전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전후 곧바로 이어지는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사태에 있어서의 ‘일시의 미봉책’으로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B안인데, 이것은 ① 조선을 영구중립국 또는 협의중립국으로 하고, ②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영국과 이집트의 관계처럼 하며, ③ 어쩔 수 없다면 조선을 폴란드처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①은 A안과 동일하다. ②는 이집트가 상기된다는 점에서 A안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것을 일본의 조선정책에 참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현재 이집트의 국제법상 위치는 터키제국의 일부이며 이것을 영국이 감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집트의 군대는 터키 군대의 일부로 취급되고 이집트의 조세는 터키 황제의 이름으로 부과하며, 터키 황제가 체결한 조약은 이집트에서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집트는 공법상으로는 독립의 자격도 갖고 있지 않다. 1879년 영·불 2국 감독제를 하게 되어 양국의 감독자가 이집트 국무대신의 회의에 참여하였다. 1881년 대외강경파가 분란을 일으켰다. 영국은 프랑스와 협동하여 진정시킬 것을 제의했으나 프랑스가 응하지 않자 영국이 혼자 힘으로 이 반란을 진정시켜 이집트는 사실상 영국의 감독권 안에 들어갔다. 1883년 터키 황제의 칙령에 따라 2국 감독제는 폐지되고 1884년 영국이 이집트를 영구중립국 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1885년 영국은 이집트 처분에 관해 특별히 협의하였는데 그 요점은 이집트가 터키령인 것을 인정하고, 영국의 이익을 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세력을 이집트에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강고한 이집트 정부를 세워 외국(영국을 제외한)의 간섭을 피하려는 데 있었다. 영국은 터키 황제가 이집트에 갖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영국병이 이집트를 사실상 점령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약을 터키 황제와 맺었다. 그 조약에 따라 영국은 자기들이 바라는 동안 이집트를 사실상 점령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후,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 조선을 일본에 부속시킬 야심이 없다는 것, 각국의 이해를 손상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조선에 ‘내란외구(內亂外寇)’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일본이 점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조선에 인정받아 둘 것을 제기한다.

③의 폴란드화는 어쩔 수 없는 경우(즉 ①과 ②가 곤란한 경우)의 안으로 나왔다. 폴란드는 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시아 3개국에 3회에 걸쳐 모조리 분할해 버렸다고 한다.

그러면 조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안은 조선의 분할이 폴란드의 분할과 전혀 다르다고 하고 있다. ‘동양 평화의 유지’를 도모한다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박약한 부분 조선’에 ‘외과적 시술’을 행하여 ‘병근(病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을 두고 일본과 청국이 대치할 때는 이미 지났으며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절박하므로 ‘외과적 시술’은 부득이하다. 그래서 ‘동양 평화의 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러·일·영 3국에서 조선을 분할하려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①은 조선=스위스·벨기에화 안(案), ②는 조선=이집트화 안, ③은 조선=폴란드화 안이다. ①과 ②는 조선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③은 조선의 소멸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일본 단독의 조선 지배는 단념하고 있다. 또 어느 것이나 유럽의 전례를 참작하면서 이것에 비견해 동아시아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미 조선 내부에서는 일본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진척시키려는 세력과 러시아에 의지하려는 세력의 대립이 깊어져 있었는데, 민비 살해사건 이후 점차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1896년 2월 개혁파인 김홍집 내각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대신

친러파 내각이 성립하고 더욱이 조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다음해 4월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지배에 대해 러시아와의 관계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 고무라·웨버 각서(1896년 5월), 야마가타·로마노프 의정서(1896년 6월), 니시·로젠 협정(1898년 4월) 등이 잇달아 체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A안에서 세 번째로 든 러·일에 의한 조선 간섭 조정안이 전개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A안이 상정한 것과 같이 얼마 안 있어 조선 지배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하는 사태가 도래한다.

V. 맺음말

청일전쟁 전후 시기(1892년 8월~1896년 9월), 수상으로 있던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의 외무차관 커존(George N. Curzon, 1859~1925 - 역사 주)의 글 “Problems of The Far East(極東問題, 1894년간)”의 초역을 손에 넣었다.⁷⁶ 「조선정치의 미래, 조선의 불규칙한 정치상의 위치」라는 부제가 달린 자료이다. 본문에는 아직 청·일 양국의 개전 포고는 접하지 않았으나, 이미 육·해군이 모두 충돌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커존이 이 부분을 집필한 것은 1894년 7월 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조선에 관한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강

⁷⁶ 「極東問題」, 『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卷』, 133~181쪽. 原題는 George N. Curzon(1894), *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 - Korea - China*, Longmans, Green and Co. Curzon은 인도 차관이던 1892년 9월에 來日하여 伊藤과도 만났다. 大澤博明(1993), 「日清共同朝鮮改革論と日清開戦」, 『熊本法學』 75.

국 사이에 농락당하는 이 장난감 공의 정치상 미래 운명'이라고 하고 있다. 즉 조선은 '하고이타(羽子板, 모감주에 새의 깃을 꽂은 제기 비슷한 羽子를 치는 자루 달린 장방형의 판자로 한쪽 곁에는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음)'의 날개같이, 여러 강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호를 받든지 아첨을 하든지 능욕을 당하든지 총애를 받든지 한다는 것이다. 커존은 조선과 같은 상태의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즉 '독립국'이면서 한편으로 '속국'이라는 '정치상 가장 불규칙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는 달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조선에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에 대해 외부의 여러 강대국들은 군주권, 감독권, 보호권, 최혜국 조항, 동등한 지위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 모든 권리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조선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기괴한 현상은 첫째, 조선이 청국·러시아·일본이라는 세 나라 사이에 가로놓인 지리상의 특수한 위치 때문이다. 둘째, 조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던 청 제국이 다른 강대국들에 의한 조선 잠식의 움직임에 대해 종래의 노선을 뒤집어 이전과는 모순되는 조선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하며 커존은 '만국 연극의 주인공'은 청국·러시아·일본 3국이며, 조선은 그 '무대'로서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청·러 3국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그 주장을 분석해 보면, '강자'인 일본이 언제나 '약자'인 조선에 손실을 입히며 '교지(巧智)'와 '간책(奸策)'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잡한 각종 정책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커존은 이렇게 쓰고 고대부터 청일전쟁 개전 직전까지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개관한다. 거기에서는 조선 측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나 일본인의 교만 등을 지적하며, '한·일 양국'의 관계는 '청·한 양국민 사이에

성립하는 친밀한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서술한다. 이어서 중국이 조선의 '후견인' 지위에 있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그 실증을 들어가면서 근대에 들어 조선정책이 혼란함을 언급한다. 그런 다음 근년의 러시아의 '침략적 계획'을 언급하고 현재는 침략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술한다.

그러면 '대영국(大英國)'은 어떤 '지위'에 있는 걸까. 커존은 조선과 같이 많은 좋은 항구를 가지고 미개발된 '부원(富源)'을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손에 떨어지면 아시아·태평양에서 영국의 통상 무역은 큰 영향을 입을 것이며 러시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방해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조선은 다른 세력에 의해 가까스로 억제되어 있던 러시아의 '탐욕심', 청국의 강대한 '잠재력', 그리고 질투 많고 허명에 급급한 일본의 '이기주의'와 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속에서 조선이 존속하는 방법은 청국과의 주종관계를 유지하고 '청·한 양국의 결합'을 강고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술하며 커존은 청·한관계의 부활을 시사한다. 또 동아시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망은 청·일이 제휴하여 '공적(共敵)'인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커존의 제기는 대체로 동아시아에서 영국 위치의 안정화와 연결짓는 현상 유지적인 색채가 농후한 것이지만, 그 관찰은 조선을 둘러싼 청국·러시아·일본 3국 관계의 진상 및 심층을 꿰뚫고 있다.

전근대의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있었다. 그것은 중화(中華)인 중심국가 중국이 주변 여러 국가·여러 민족을 이(夷)로서 종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인 화이질서(華夷秩序)는 중화에 의한 권력적인 지배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상하관계를 기준

으로, 언제든지 각각의 자립성과 독자성이 보증되는 시스템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직접 이 화이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것은 유구와 조선이다. 조선은 중국을 중주국으로 하는 관계에 있었다. 또 유구는 독립된 왕국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종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사쓰마번[薩摩藩]의 지배를 받는 청·일 양속 관계 가운데에 있었다.

이러한 화이질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강요해 온 서구 열강의 압력에 의해 해체·재편의 과정에 들어갔다. 조선·유구와 중국의 관계가 재편성되는 것은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맺은 일조수호조규의 체결과 유구 처분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일본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1876년 일본은 조선에 강요하여 수호조규를 체결하고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분리시켜 주려는 것이었으므로 청국 측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879년 일본은 유구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청국으로부터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역시 청국 측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청·일 양국 간에 충돌이 계속되었다. 결국 청국 측이 이들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뒤였다.

그 과정에서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있었던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을 둘러싸고 두 번에 걸쳐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 문제의 처리는 유구 문제의 처리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동아시아에 갈등을 일으켰다. 동시에 이 과정은 동아시아 정세의 추이에 서구 열강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조선을 둘러싼 청·일관계에는 1880년 전후부터 서구 열강이 관여하게 되며, 1883년에는 청불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1885년에는 영국의 조선 거문도의 점거와 러시아의 조선·청국에의 접근이 동아시아 정세를 요동시켰다.

이런 정세 속에서 일본의 정권중추부(政權中樞部)에서는 앞서가는 서구 세계가 영도해 온 국제관계를 참작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를 구상하였다. 그 하나가 조선을 이집트에 견주어 영국의 이집트 정책에서 일본의 조선정책을 이끌어내려는 수법이었다. 또 강국의 이해관계의 교차점을 안정화시키는 계획으로 등장한 것이 영세중립국화이며, 그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선은 선례인 스위스·벨기에에 견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영세중립화 구상은 원래 해당국의 의향보다는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강국 쪽의 의향에서 발상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질서의 구상으로서 조선의 영세중립화가 처음 제기된 1882년 9월 단계에서는 일·청·미·영·독 5개국을 대상국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1890년 3월의 야마가타[山縣] 의견서 단계에서는 영·독·일·청 4개국으로 하는 것이었다. 공통되는 것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청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청·일 관계에 조선과 조약을 맺고 있는 구미의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청일전쟁 개전 직후인 1894년 8월의 무쓰[陸奥]에 의한 각의안에서는 구미 제국과 청·일 양국이 중립화 구상의 대상국이며 구체적인 구미의 국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 청일전쟁 후 민비 살해사건 이후로 보이는 구상에서는 일·러·영·불·미·독이 대상국이었다. 결국 청국이 빠지고 러시아가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미 청국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영·불·미·독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진출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지향하지 않고 러시

아와의 이해 조정을 꾀하고, 오히려 청일전쟁 후에는 조선 측에서 제기한 영세중립화 구상을 거절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日清戦争前後の日本政治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

大日方純夫(日本早稲田大学)

I. 序論

日本において、戦前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批判を踏まえ、史料にもとづく本格的な日清戦争研究が展開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60年代にはいつてからのことである。外交史料を中心に分析を加えた山辺健太郎¹ およびこれを継承して定説とも言うべき日清戦争像を打ち立てた中塚明²の研究がそれを代表している。

他方、日清戦争に諸勢力がいかにかかわったかについては、戦前、信夫清三郎が政府と軍部の二重外交という観点から開戦外交を論じ、³ これは戦後の研究でも展開された。⁴ また、藤村道生は日清戦争の性格を、華夷秩序を打破し、朝鮮における支配権を清国と争う局面、朝鮮・台湾の領土を掠奪する局面、帝国主義列強と中国・朝鮮の分割を争う局面という3局面の重層的構造からとらえようとし、また、伊藤博文・陸奥宗光による戦争指導を強調した。⁵

しかし、こうした研究にもかかわらず、日清戦争への注目度は、その規模や世界史への規定性という点で、日露戦争に比して相対的に低かった。ところが、近年、日清戦争の占める歴史的な重要性が著しく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すなわち、第一に、日清戦争を東アジアの国際関係転換の画期としてとらえる角度から、第二に、その後の日本のアジア政策、とくに戦争政策にとってこの戦争が占

1 山辺健太郎、『日韓併合小史』、岩波書店、1966年。

2 中塚明『日清戦争の研究』、青木書店、1968年。

3 信夫清三郎、『日清戦争』、福田書房、1934年；信夫清三郎、同『陸奥外交』、叢文閣、1935年。

4 信夫清三郎(藤村道生校訂)、『増補日清戦争—その政治的・外交的観察』、南窓社、1970年。

5 藤村道生、『日清戦争』、岩波書店、1973年；藤村道生、「日清戦争」、『岩波講座日本歴史』16・近代3、1976年。

めた位置の大きさを強調する観点から、第三に、日本が「国民国家」として確立する上で日清戦争がもった画期性に注目する立場から、第四に、戦争をめぐる社会史・民衆史という角度から、第五に、日本社会における対外観・国家観の形成・展開にこの戦争が占める位置への注目から、日清戦争研究の意義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本研究は、以上のような日清戦争研究の基本動向を踏まえて、日清戦争前後の日本政治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に検討を加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日清戦争を単に対朝鮮政策・対中国政策という個別の政策レベルではなく、より広い国際的な視野で捉えるべきだとする研究が、近年、とくに強まっている。すなわち、日清戦争に至る過程を、東アジア世界の伝統的国際秩序である「華夷秩序」が、西欧の国際秩序である「国際法秩序」によって解体・再編されていく過程としてとらえようとする視点である。

濱下武志は、明朝・清朝の皇帝を中心として東アジア・東南アジアの広域地域にかけて作られた朝貢・冊封体制(東アジア地域システム)を歴史的な背景としておさえ、これが変動させられていく歴史的動態とその要因を、東アジア地域の歴史的ダイナミズムのなかに探ろうとしている。⁶そして、日清戦争を「江華島事件から顕在化する地域変動の政治過程の帰結であり、宗主権と国家主権との間の交渉および衝突であった」と捉える。

また、井口和起も、世界史的な関係のなかで日清戦争をとらえるべきことを強調し、「西欧国際政治体系」・「華夷秩序」(「中華帝国」の体制)・「大君外交体制」(日本)という3つの体系が全体として「西欧国際政治体系」に再編成されていく過程として、これを理解している。⁷

ところで、「華夷秩序」の再編という場合に問題となるのは、日本・清国と朝鮮との関係である。原田環は1880年以前から日清戦争後までを見通して、朝鮮と

6 濱下武志、「東アジア史のなかの日清戦争」、東アジア近代史学会編、『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巻、ゆまに書房、1997年。

7 井口和起、「日清戦争をとりまく国際環境」、同前『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巻、1997年。

清との宗属関係の解体過程を概観している。⁸ また、大澤博明「日清開戦論」(1997年)は、朝鮮永世中立化構想から日清共同改革論への転換過程を開戦とからめて論じている。

この朝鮮中立化構想については、すでに津田多賀子・多田嘉夫・長谷川直子らの論文があったが、⁹ 大澤博明はこれに本格的な分析を加えた。¹⁰ しかし、いずれも壬午軍乱と甲申政変の間の時期を対象としたものであって、一貫した論理のもとで、日清戦後までを見通したものはない。岡本隆司は、すでに1882~1894年の間の清韓関係の変質過程を清国側から照らし出していたが、¹¹ これにつづいて1882年以後日清戦争の勃発にいたる時期に、各方面から提起された朝鮮中立化構想に検討を加えた。¹² ただし、いまだ概説にとどまっている。他方、日清戦争後から韓国併合に至る朝鮮植民地化の過程を分析した森山茂徳は、甲午改革や日清戦争後における朝鮮中立化案の提起と挫折の過程を扱っているが、¹³ 日清戦前の構想とのかかわりは視野のそとに置かれている。

本研究の課題は、日清戦争前後の時期、日本の政界が東アジアをいかに認識し、いかなる東アジア構想・東アジア政策を提起していたのかに焦点をあてて解明を試みることにある。具体的には、対中国政策・対朝鮮政策とその相互関係を、日清戦争前後の政府当局者・の政策構想や発言のなかに探り、それらを通じ

8 原田環、「日清戦争による朝清関係の変容」、同前『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巻、1997年。

9 津田多賀子、「一八八〇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開と列強」、『史学雑誌』91-12、1982年；多田嘉夫、「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二)―江華島事件及び壬午甲申京城事変をめぐって―」、『國學院法研論叢』19、1992年；長谷川直子、「壬午軍乱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朝鮮史研究会論文集』32、1994年。

10 大澤博明、「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一八八二~一八四四年―」、『熊本法学』83、1995年；大澤博明、「朝鮮永世中立化構想と近代日本外交」、『青丘学術論集』12、1998年。

11 岡本隆司、『属国と自主のあいだ―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名古屋大学出版会、2004年10月。

12 岡本隆司、「『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日清戦争以前の清韓関係に着眼して―」、『洛北史学』8、2006年6月。

13 森山茂徳、『近代日韓関係史研究』、東京大学出版会、1987年6月。

て、戦争の背後にあった日本政治における東アジア認識と東アジア秩序の構想、およびそれを通じて提示された日本の東アジア政策のあり方を分析し、その歴史的 position について考察を加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

対象とする時期は、壬午軍乱から日清戦後の閔妃殺害事件までである。朝鮮半島をめぐる日清間の対立を深刻化させる重要な契機となった壬午軍乱は、日本・清国・朝鮮3国の関係、およびこれをめぐる欧米列強との関係をめぐって、いかに東アジアの国際秩序を構想し、日本がこれといかに向き合うべきかという検討課題を提起した。しかし、日清戦争を経て日清間のこうした対立は基本的に“解消”し、かわって朝鮮半島をめぐる日露の対立が前面に出てくる。朝鮮半島に対するロシアの影響力が格段に強化されるきっかけは、閔妃殺害事件にあったが、こうした日清戦争後の新たな状況は、東アジア秩序の構想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また、その構想は、従来の構想とどのような位置関係にあるのか。こうした点を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後への見通しをつけることにしたい。総じて、これまでの研究が個別的、断片的に考察してきた東アジア秩序の構想を、日清戦後までを視野におさめて、全体的な見地から考察してみることにしたい。

岡本隆司は前掲の論文において、東アジアの秩序構造を考えるためには、朝鮮の国際的な位置がいかなるものだったかが、避けて通れない重大な問題だと指摘している。¹⁴ また、外交交渉の背後には、実際には俎上にのぼらなかった案や構想が存在すると述べて、そうした構想のうちで最も重要なものの一つが、朝鮮中立化構想だとしている。ここにいう朝鮮中立化構想とは、1882年に日本側がまず発案し、その後、日清戦争にいたる時期、各方面から提起されたものである。本研究では、この点を念頭において検討をすすめることにする。

東アジア秩序の構想を政治的に検討するためには、さしあたり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国家間の相互関係、東アジアをめぐる西欧列強の力関係、以上と向き合う外交政策・対外構想をめぐる国内的な対抗関係の3点が絡まりあった複合的な関係を念頭におい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近代初頭の東アジアは、それ

14 前掲 岡本隆司、「「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

自体、中国中心の前近代国際秩序(華夷秩序)と、西欧に起源をもつ近代の国際法秩序が複雑に交錯する独自の時空間であった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東アジア秩序の構想化にあたっては、先行する世界史的事象、すなわち西欧国際法秩序の先例が想起され、それを参酌す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秩序の位置を安定化させようとする意識がつねに働いていた。なぜなら、西欧列強環視のもとで、その東アジア秩序構想の正当性を担保するためには、西欧列強の側に先例があるという論理構築法が有効性を発揮した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のような従来の研究にはない着眼点を導入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大きな世界史的な視点から東アジア秩序の構想を検討してみることにしたい。

なお、本研究は狭義の政治史・外交史・軍事史的研究とは一線を画す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むしろそれぞれの東アジア秩序の構想に内在する論理を抽出・分析することに主眼をおくことにしたい。

II. 壬午軍乱をめぐ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

1. 「朝鮮非清国之属国論」と「一直線」路線

1882年5月、アメリカと朝鮮の間でシューフェルト条約が調印された。これを契機として6月にはイギリス・ドイツも朝鮮と条約を結び、朝鮮問題は東アジアのみの内部的問題ではなくなった。西欧列強の思惑や動きが朝鮮問題のあり方と密接にかかわ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シューフェルト条約の調印にいたる交渉は、清国の仲介によってすすめられたが、交渉過程で清国側は、「朝鮮は中国の属邦である。内治外交は均しく自主をえている」という条項を条約に挿入しようとした。伝統的な関係を明示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しかし、これはアメリカ側の反対で実現しなかった。そこで、朝鮮国王がアメリカ大統領に宛てて同じ内容の照会文を送ることなどによって、妥協がはかられた。朝鮮が清国の「属邦」であることについて、国際的な認知を得ようとしたのである。

一方、同年7月下旬、朝鮮では壬午軍乱がおり、日清両国が出兵した。清は

朝鮮属国論にもとづいて軍事介入したのである。この事件に際して、清朝の駐日公使黎庶昌は日本側に、朝鮮は清の「属邦」だと通告してきた。これに対して外務卿井上馨は、朝鮮は「属邦」ではないと主張しようとした。

日本側は日朝修好条規で朝鮮を「自主ノ邦」と規定した。しかし、清は「属邦」としている。これにどう対処すべきか。参事院議官の井上毅は、「属邦」か「非属邦」かを清と争ってみても、水掛け論に終わるだけで無意味だと、井上外務卿の方針に反対した。琉球問題と同様、議論が横道にそれてしまい、問題の落着をみ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のである。単純に日朝修好条規第一条にもとづいて朝鮮と直接に談判するだけにすべきだというのが、井上毅の主張であった。このような井上毅の主張の根拠を、やや立ち入ってみてみることにしよう。

8月6日、井上毅は、前日、清国公使黎が朝鮮事件について「貴国のために調停する」と伝えてきたことを受けて、これに対する対処策を起草した。¹⁵ そのなかで、井上は清国側の調停策を、① 朝鮮が属国であることを主張し、今度の談判は清国で引受けると言明する場合、② 日本と朝鮮の間に入って仲裁すると申し出る場合、③ 日本の使節とは談判せず、ただ朝鮮と従来からの関係があるので、朝鮮のために忠告し、謝罪処分を催促すると公告するにとどまる場合、の3つに分けて、それぞれに対する対処法を、以下のように論じた。

① の場合は、日本は朝鮮と直接に対等の条約を結んでいるので清国の仲介は必要ないと拒絶する。② の場合は、紛争当事国の承諾がなければ仲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の公法上の理由から、仲裁を断る。③ の場合は、日本は「一直線」に朝鮮との談判を遂げ、清国が朝鮮に向かって忠告しようが、尽力しようが、関係ないという態度をとる。いずれにせよ、今度の目的は、もっぱら朝鮮に向かって処分を求め、満足のいく補償を得ることにあるので、清国と「朝鮮非清国之属国論」に立ち入って「目的外之葛藤」を生じることは避けるべきだ。これが井上の主張であった。

「朝鮮非清国之属国否之問題」に立ち入った場合、清国の味方をする他の関係

15 井上毅伝編集委員会編、「京城事変対処案」、『井上毅伝 史料篇』第1巻、国学院大学図書館・東京大学出版会、1966年、pp. 309～310。

国があると面倒なことになる。また、「朝鮮非清国之属国論」にわたると、議論が「枝葉」の問題になってしまい、結局、「水掛論」に終わりがねない。したがって、できるだけ「枝葉之葛藤」を避けることが緊要だ。井上はこのような主張した。井上の念頭にあったのは、琉球処分問題の経験であった。

この井上意見は、翌7日、山県有朋が提出した意見書と基本的に同一内容である。¹⁶ 山県の「朝鮮事件ニ付清国関係之意見」¹⁷は、おそらく井上の起草にかかるものであろう。逆に言えば、井上の意見は、山県を通じて政府中枢部の意思形成を左右したといえる。

ところで、8月4日、井上毅は憲法調査のために渡欧中の伊藤博文にあてて、清が朝鮮政府を助け、「乱民」を「討平」する「援兵」を出すことがあると、清との関係を引き起こしはしないかと懸念していると書き送っていた。¹⁸ そして、ひそかにボアソナードに意見を尋ねたことへの答書の訳を送るので見てほしいと書き添えた。8月9日にも、井上は伊藤にボアソナードとの答問書(仏文のまま)を送っている。¹⁹

では、井上とボアソナードはいかなる問答をかわしていたのであろうか。7月31日と8月1日の応答をふまえ、ボアソナードは8月3日に回答「朝鮮ニ対スル処分按」を提出した。そこでは、釜山・元山にいる日本人を保護するために出兵し、その抵当として江華島・巨濟島・松島を占有することについては、朝鮮と条約を締

¹⁶ ただし、井上意見書の第三の場合の後の箇所には、山県意見書との相違が認められる。また、山県意見書の末尾には、つぎのような一文が追加されている。

「又朝鮮ヨリ支那ヲ仮リ口実トシテ以テ遷延ノ手順ニ出ツル共我ヨリ時日ヲ期シテ速ニ決答ヲ要シ若シ返答ナキ時ハ直ニ陸海軍ヲ以テ強償ノ処分ニ取掛ル可シ」

しかし、いずれにしても8月7日の「山県有朋壬午事変意見案」、『井上毅伝 史料篇』第6巻、pp.135～136;および「山県有朋壬午事変意見書」、『井上毅伝 史料篇』第6巻、井上伝6、pp.137～138;は、井上の起草である。

¹⁷ 『井上毅伝 史料篇』第6巻、pp.133～134、大山梓編、『山県有朋意見書』、原書房、1966年、p.116～118(三条文書)。

¹⁸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68、伊藤博文関係文書研究会編、『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塙書房、1973年、p.333。

¹⁹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69。

結している清・米・英にも通知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²⁰

また、8月9日付の「韓国事件答議続稿」では、清国が韓国に付している「藩属国称」の当否を論議することは無用なことであるとして、韓国が清国の藩属国であろうとなかろうと、日本には何の関係もないと主張している。²¹ これは、すでにふれた井上外務卿の方針に対する井上毅の批判の論理と同じである。井上はボアソナードの見解を踏まえて主張していたのであろう。

井上が8月9日付の伊藤宛書簡に付した文書(和訳)が、おそらく「朝鮮事件ニ付井上議官「ボアソナード」氏ト問答記」²²であろう。井上とボアソナードは、そのなかで以下のような問答をかわしている。

《問》清国は朝鮮を属国とみなしているの、朝鮮国の内政に干渉しようとするが、日本はこれにどう対処したらよいか。

《答》日本の要求は日本が満足を得るに止まるので、清国と朝鮮の間で相談することには日本は関与しなくていい。ただし、清国政府が日本と朝鮮との間に立ち入ることは許すべきではない。

《問》清国が朝鮮と日本との関係に干渉してきたらどうするか。

《答》日本は朝鮮を独立国と認め、自ら条約を締結したのだから、どこまでも清国の干渉には頓着することなく、「一直線二進ミテ朝鮮ニ対シ満足ヲ求メテ」よい。たとえば、トルコのエジプトに対する関係は、清国の朝鮮に対する関係よりさらに大きい。しかし、エジプト人が暴挙をしたとしても、イギリス・フランスはトルコに頓着せず、直にエジプトに向かって処分した。ゆえに朝鮮の事件について清国が介入しても、清国には関係ないとして頓着しな

20 伊藤博文編、「朝鮮事件ニ付「ボアソナード」氏ノ答議」、『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中巻』(明治百年史叢書)原書房、1970年、pp.187～188。なお、金正明編伊藤博文編、『日韓外交資料集成』第2巻、巖南堂書店、1966年、pp.136～137。

21 「韓国事件答議続稿」(同前、pp.201～202)。なお『日韓外交資料集成』第2巻、1966年、pp.159～160。

22 「朝鮮事件ニ付井上議官「ボアソナード」氏ト問答記」(同前、pp.203～212)。なお『日韓外交資料集成』第2巻、1966年、pp.153～159。

くてよい。

《問》日本政府が時機を後れ、清国政府に先んじられたときはどうするか。

《答》もし日本政府の意向が「主戦」にあるならば、この方針によって計画の順序をたてなければならない。もし「主和」ならば、この「線脈」にしたがって事を議する必要がある。日本政府の主意は開戦なのか、和親なのか。

井上毅(問)とボアソナード(答)は、おおよそこのような問答を交わしているが、この問答のなかで注目されるのは、ボアソナードの日清同盟論である。それは、以下のような論理で提起されている。すなわち、現在、日本が最も恐れるべきはロシアである。清国は日本とは「天然ノ同盟国」である。人種・文字・風俗・宗教も同じだ。欧州に対して「東洋ノ勢威」を張ることは、日本と清国が協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現在のところは、日清は協同の目的をもって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清両国が離れればアジアは破れ、合すれば欧州と拮抗することができる。今、もし日本に「政治家ノ大家」が出て、日本・清国・朝鮮3国が同盟を結べば、俗に言う「鬼二金棒」であり、ロシアも恐れるに足りなくなろう。このようにボアソナードはロシアの脅威を強調して、日清が同盟すべきことを提案したのである。

ボアソナードは清国を無視して「一直線」に朝鮮との交渉に臨めとアドバイスした。8月12日、井上毅が外務大輔吉田清成に対して、今回の葛藤については、専ら「一直線」に進み、朝鮮との「直截之関係」に清国の干渉をいれるなど主張したのは、このアドバイスと符節を一にしている。²³ 公法上から論じれば、朝鮮は「半独立之邦」であり、「バルバリー」のトルコにけると同様、「貢属国」であって、外国交際にのみ「自主之権」があるとするのが妥当である。したがって、「半独立」の朝鮮には外交上の「自主之権」があるとして、「一直線」に(清国を顧慮せず)、朝鮮と談判せよというのである。

²³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p.658~659。

なお、井上はこの書簡で、琉球と朝鮮とは違うと主張している。自分は、朝鮮と清国の関係について歴史を調査したが、清が朝鮮を征服したことは前後二度あるとして、征服の事績がある以上、朝鮮と琉球とは「懸隔之相違」があると述べている。清国側の「属邦」論に対して、日本側が「非属邦論」を唱えたと、結局は前年の琉球論と同じになって、議論が横道に入り、恐らく「水掛論」におちいつてしまう。また、たとえ「戦端」を開くに至ったとしても、「要償問罪之名義」を捨てて「属邦非属邦之論」を名とするのは、はなはだ「非策」だというのである。このように、井上はあくまで清国と朝鮮の性格について議論しないという立場を貫くべきだとした。

結局、日本側は井上毅の主張の線で事件に対処したが、岡本隆司が指摘するように、朝鮮問題に対する日本の対応には、日朝の二国間だけで考える方向と、清韓関係も含めて考える方向とが並存していたのである。²⁴

2. トルコ・エジプト・イギリスと国・朝鮮・日本

ところで、8月9日付の井上との問答書で、ボアソナードは清国と朝鮮の関係に対する日本の関与方法を、トルコとエジプトの関係に対するイギリス・フランスの対処方法から説明していた。イギリス・フランスの対処法が、日本にとっての参照基準とされているのである。

当時、エジプトはトルコに隷従しつつ、政務については英仏諸国の干渉を受けていた。²⁵ ムハンマド＝アリー朝のイスマーイールは、1867年、オスマン帝国によってヘディーヴ(エジプトの藩王ないし副王)の地位を与えられるなど、オスマン帝国からの自立性を強めた。その背後には、シリア・エジプト・スーダン地方に対する政治的・経済的な影響力を強化するため、エジプトをオスマン帝国から自立させ、フランスの影響力に対抗しようとするイギリスの政策があった。イス

²⁴ 前掲 岡本隆司、「『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

²⁵ 以下、大日方純夫、「自由民権期のエジプト認識」、『社会科学討究』41-3、1996年。

マーイールはイギリスの支援のもと、1869年から1876年にかけてスーダンへの統治権を拡大した。他方、イスマーイールの開発政策は借金を増大させ、その結果、エジプト人に対する税金は引き上げられていった。また、1875年、イスマーイールは所有のスエズ運河会社株を売りに出し、イギリスはこれを買収して、発言権を強化していった。1876年、エジプトは破産状態となり、フランス・オーストリア・イタリア・イギリスによる債務整理委員会が組織された。78年にはアルメニア人を首相、イギリス人を蔵相、フランス人を公共事業相とする「ヨーロッパ内閣」が成立した。これに対して、ちょうど壬午軍乱と同じ1882年、エジプトではアフマド＝オラービー大佐らを指導者とする民族運動がおり、あわせて立憲制をもとめる改革運動を展開していた。

8月13日のボアソナード意見「朝鮮事件ニ付テノ意見」「半属国(又ハ此ノ如クニ主張セラルル国)ノ締結セル条約ニ関スルニ疑件ニ付テノ応答」は、「万国公法」すなわち国際法上から「半属国」の権限を論じ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が、ここでもトルコ＝エジプト＝イギリス・フランスの関係を参照しながら、清国＝朝鮮＝日本の関係がつぎのように論じられている。²⁶

一般に「半属国」は政治上の性質をもつ和親条約を結ぶ権利を有しないものとする。エジプトの位置は、この問題についての先例となる。トルコに対してエジプトが「付庸国」であることははっきりしているが、まだ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エジプトとトルコの間に秘密条約があるために)、エジプトがどこまで外国と直に条約を結ぶことが出来るかという点である。エジプトは、フランスおよびイギリスとしばしば条約を締結している。ゆえにこれらの諸強国は、その条約のある条規を履行させる保障を得るために、またエジプトの財政を整頓するために、エジプトの政務にしばしば干渉したことがある。ゆえにこの疑問については、「確定シタルノ法則」がないものとする。

「半属国」が外国と条約を結び、この「半属国」と他の条約国との間に重大な紛争が生じたとき、「管轄国」もしくは「保護国」は、条約締結時に異議を申し出てい

26 「朝鮮事件ニ付テノ意見」、『秘書類纂朝鮮交渉資料中巻』、pp.213～216。なお『日韓外交資料集成』第2巻、pp.171～174。

ない限り、これに干渉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の問題を、理論・法理の点から検討するのは妥当ではない。「万国公法」は多くの国において民法にあうように編成したものではない。この問題に関する先例になりうるものはない。なぜなら、日本と朝鮮の関係、および朝鮮と清国との関係と同様な情況はどこにもないからだ。

ボアソナードは以上のように述べて、エジプトを先例としつつも、結局、朝鮮の位置の独自性・特異性を確認せざるを得なかった。「万国公法」は基準たり得ないとしたのである。

8月24日のボアソナード「朝鮮事件ニ付意見書」²⁷にも、エジプトは登場している。この意見書は、①もし朝鮮が日本政府の要求への応答の引き伸ばしをはかったときにはどうするか、②もし日本政府の要求を朝鮮が拒絶した場合、「最後ノ照会書」(最後通牒)を送付すべきか、その場合の目的は如何、書式は如何、③「最後ノ照会書」を送付した場合の公告の仕方は如何など、5点の質問に回答したものである。

このうち、②への回答で、最後通牒を送ることは当然としつつも、その目的は、戦争を挑み、または砲撃するなどということ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した。あくまで軍事行動はさけるべきだというのが、ボアソナードの立場であった。

万一、兵端を開くことになれば、それは「退守ノ闘」ではなく「攻撃ノ戦ヒ」となり、朝鮮を略取することに他ならなくなる。日本が朝鮮を攻撃すれば、清国はただちに朝鮮を応援し、日本に敵対することは必然である。ロシアはこの戦争を見て必ず「妬心」を起こすだろう。他の各国も日本を支持すまい。また、砲撃は「残虐ナル報仇中ノ最モ甚シキモノ」であって、暴をもって暴に報ずるものである。暴動に関係ない人民を殺し、家屋を破壊する惨状を現出することになる。しかも、日本を怨む念を引き起こし、永くこれを忘れないことになる。

ボアソナードはこのように述べたうえで、エジプトでの出来事に言及している。欧州で行った砲撃、ことに近頃、英国がエジプトのアレキサンドリア港を砲

²⁷ 「朝鮮事件ニ付意見書」(同前、pp.247～258)。なお『日韓外交資料集成』第2巻、pp. 200～208。

撃したことを引き合いに出すもの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欧州が行うことが必ず公正だとは考えない。日本が行うべき規範になるとは言えないというのである。

このアレキサンドリア砲撃については、すでに行われた暴挙に対する報復にとどまらず(「怨」を報じただけでなく)、スエズを防衛し、かつ人民を煽動して欧州人に対抗させようとして「アラビーパシヤ」が設置した軍備および砲壘建築などを停止するという目的があったとも説明している。

壬午軍乱の1ヵ月ほど前の6月11日、エジプトのアレキサンドリアでは暴動が勃発し、これに対してイギリスは7月11日、アレキサンドリア港を砲撃し、軍事干渉していた。ポアソナード発言は、壬午軍乱をめぐる日清出兵の直前にあったエジプトの事態を前提としたものだったのである。²⁸

3. 日清同盟論と朝鮮中立化構想

ロシアの進出に対抗するため日清が同盟すべきだとポアソナードが主張していたことは、先にもふれたが、ポアソナードは8月14日、参議大木喬任の問いに答えるなかで、この日清同盟論をより詳しく展開している。²⁹ やや長くなるが、彼が主張するところを、以下に紹介しよう。ポアソナードは日清同盟の必要性を3点にわたって提示している。

第一は、言うまでもなくロシアこそが日清両国の「共同ノ敵」だという点にある。欧州にはロシアの東洋侵略を防止することに直接、利益をもつ国はなく、防禦方法やそのための資力があるものもない。他方、ロシアと清国との間には紛争がある。また、ロシアは以前から朝鮮を狙っており、ロシア国内で「虚無党ノ勢焰」が盛んでなければ、必ず「征韓」に着手するに違いない。もしロシアが朝鮮を略取することになれば、必ず日本を押し、ついには日本の独立を傷つけるに至るに違いない。ゆえに日本の「大厄」はロシアであって、決して清国ではない。清国もま

²⁸ 前掲大日方純夫、「自由民権期のエジプト認識」。

²⁹ 「朝鮮事件ニ付大木参議へ答フ」、『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巻』、pp.230～237。なお『日韓外交資料集成』第2巻、pp.174～179。

た日本と利害を等しくする。したがって、日清両国間の親和が必要であり、この二国が「合従」すれば、ロシアが朝鮮を奪うことはできない。

第二は、日清両国自体の朝鮮政策とのかかわりである。この日清同盟によって清国が朝鮮を完全に「属従」させたとしても、日本にはロシアによる朝鮮支配のような「害」はない。他方、日本が朝鮮を「併呑」しようとするのは「迷妄輕躁ノ説」であり、そんなことをしたら、ロシアが黙っているわけがない。結局、日本がいったん朝鮮を得たとしても、たちまちロシアのために追われ、ついには日本内地を維持することが出来なくなってしまうだろう。欧米におさえられている日清両国が親睦して抵抗力を一つにすれば、外国に対して効を奏するに違いない。

第三は、日・清・韓の三国は、宗教・文字・風俗が同じであるから、「親和」こそが自然だという点である。「朝鮮今回ノ事変」は、むしろ「三国交通ノ途」を開いたものであり、かえって「三国連合ノ媒」とな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このように、ボアソナードは一方でロシアの脅威を強調しつつ、他方で日清の政治的・文化的共通性を提示して、日清は同盟すべきだと主張した。しかし、第一はともかくとして、第二は清国の朝鮮支配を認めるものであり、そもそも第三の理由は果たして成り立つのか。こうした考えをうけつつ、井上毅は朝鮮の永世中立論を構想していくことになる。

8月、井上毅は朝鮮に渡って済物浦条約の締結に参画して帰国後の9月17日、「朝鮮政略」をまとめあげた。³⁰そこでは、以下のような日・清・米・英・独の5国による朝鮮中立化構想が提起されている。

① 日・清・米・英・独の5国が集まって朝鮮のことを協議し、朝鮮を中立国とする。ベルギー・スイスの例によって、朝鮮を他を侵さず、他より侵されない国とし、5国が共同してこれを保護する。② 5国中で約を破る者があれば、他の国々が罪を問う。③ 5国以外が朝鮮を侵略することがある場合は、5国は同盟してこれを防ぐ。④ 清国は朝鮮に対して「上国」であり、朝鮮は清に対して「貢国」である

³⁰ 『井上毅伝 史料篇』第1巻、pp.312～313、『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334～335、『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p.69～71、「清韓ノ関係」、『秘書類纂 外交篇 中巻』、1969年、pp.17～72。

が、「属国」の関係はない。朝鮮は「一ノ独立国」であることを妨げない。したがって、清国は他の4国とともに「保護国」なので、4国との協議・合意を得ることなく単独で朝鮮の内政に干渉することはない。

井上は、この朝鮮中立化構想が具体化すれば、東洋の政略はやや「安全の道」を得るだろうと考えた。そして、それは単に日本の利益だけでなく、朝鮮・清国にとっても、相応に有益な(つまり、受諾可能な)プランだと考えた。すなわち、朝鮮は「永久中立の位地」を得ることによって清の「羈軛」を脱することができ、清は「朝貢国」の「名義」を全うして「虚名実力相掩はざるの患」がなくなるだろうというのである。

その背後には、一方に朝鮮をめぐる欧米列強の動向への予測があり、他方にこれに対応すべき東アジア情勢への見通しがあった。井上は、朝鮮問題は、将来、「東洋交際政略」上の「一大問題」となり、これをめぐって2、3大国間の戦争がおけると見た。日清・日露の2つの戦争が、ともに朝鮮問題を焦点としていたことを知っている後年の我々にとっては、それが、ある意味で“適確”な判断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もし欧州の一国が朝鮮を占拠し、安南やインドのようになれば(すなわち、植民地化されれば)、日本は「頭上二刃」をつきつけられたような状態になってしまう。ロシアに朝鮮を奪われれば、「東洋の大勢」は收拾しがたくなってしまう。井上は、朝鮮半島をめぐる欧米列強の動向への危惧、とくにロシアへの脅威をこのように強調した。これまた、日露戦争に至るまで、日本において一貫して掲げられた対露脅威論の論理である。

では、これに東アジアの側はいかに対抗すべきか。井上には、朝鮮・清国ともに、現状のままでは欧米列強の進出に対抗し得ないとの認識があった。井上は、朝鮮政府の「庸弱」性と朝鮮人民の「愚昧」性を強調して、今後数十年間、朝鮮が「一個ノ独立国」となることは困難だと述べる。そして、朝鮮「軍民」が外国人を敵視して「無礼」を加えること(すなわち、壬午軍乱のようなケース)は、今後数年間、継起的に起こるであろうから、最近、新たに朝鮮と条約を結んだイギリス・アメリカ・プロシアなどは、これを理由に朝鮮の要地を占領し、内政に干渉して、朝鮮を安南・ビルマと同様にしようとするに違いない(井上は、それは多分ロシアだと見た)。

清国には、こうした事態に対する対応能力があるのか。井上は、清国には、朝鮮が「属国」だとして干渉し、朝鮮に「謝罪」させ、外国に介入の機会・名義を与えないようにすることも、朝鮮を十分に保護して応援することも困難だと見た。また、清国がこうした干渉・保護を朝鮮に対して実行することが、日本にとって不利なのは歴然としていると言う。

では、どうすべきか。清国と日本が協力して朝鮮の独立を保護し、ロシアの「南侵」をふせぐべきだというのが、ボアソナードの日韓清3国同盟説であった。しかし、朝鮮の実況を見ると、到底「同盟合力」すべき国ではない。また清もともに謀るにたりない。ゆえに3国同盟の説は夢想到過ぎない。このように、欧米列強(とくにロシア)の朝鮮進出への危惧という点で、ボアソナードと見解を等しくしながら、具体策においてはボアソナードを批判した。その根底にあるのは、清国・朝鮮の現状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であった。そこから井上が導きだしたのが、“他の一策”、すなわち朝鮮永世中立化構想である。その意味で、これは、ボアソナードの日清同盟論を批判的に継承したものともいえる。

井上毅は9月23日、参議山県有朋宛の書簡で、清国の朝鮮干渉が永久なのか、一時でやむのかは、いまだ「測量」がつきかね、これが判然としなければ、日本の政略の針路は一定しがたいとしつつも、自らの構想の意義を強調した。³¹ すなわち、先般差し出した案、永久中立国のベルギー・スイスの先例にならい、朝鮮を「共同保護」という案は、「不易之上策」だというのである。清国の「意表」に出るような「遠大之長策」に出なければ、「目前之やきもち喧嘩」をし、いたずらに「多事」をなすことになって無益だというのである。

では、このような構想は、国際法によっていかに根拠づけることができるのか。おそらく、ボアソナードの「恒守局外中立新論」(10月29日付)は、こうした構想を抱く井上の質問に答えたものであろう。³² しかし、ボアソナードの答えは、欧州の国際法に恒守局外中立に関する適則を求めようとしても無理だというもの

³¹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614。

³² 「恒守局外中立新論」、『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巻』、pp.223～229;「ボアソナード氏ノ恒守中立論」、『秘書類纂 外交篇 上巻』、1969年、pp.612～617。

あった。応用は極めて稀であり、まだこの件に関して「普通ノ論議」を定め得る状況にはないというのである。

現在、欧州で局外中立を守る国は、スイス、ベルギー、セルヴィア、ルクセンブルグの4個しかない。スイスは局外中立をずっと守っているが、ベルギーは1831年、セルヴィアは1856年、ザクセンブルグは1867年にこれを定めた。これらが局外中立を立定した理由は、その国の利益をはかるためというよりも、むしろ主として他国の損害となるような「絶大ノ利益」が「併呑」されることを予防しようとしたからである。

ボアソナードはヨーロッパの現状をこのように述べたうえで、おそらく井上が聞きたいであろう中立を具体化する段取りを、2点にわたって解説した。

「第一問」はつぎのようである。「高麗」(朝鮮)が請求することなく、また承諾することがなくても、局外中立を宣告できるか(甲)。その場合の局外中立は、どのような国が宣告できるか(乙)。これに対するボアソナードの答えは、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甲)、最もその国に利益を有する「大邦」(清国とロシア)である(乙)、というものであった。つまり、当事国である朝鮮の意向如何にかかわりなく、関係強国は朝鮮の中立を宣告できるというのである。ただし、ここでは日本はあげられていない。

「第二問」は、「高麗」が局外中立の承認を望む場合、いずれの国に向かってこれを請求すべきか(甲)、この局外中立の結果は如何(乙)、であった。ボアソナードは甲について、「第一問」と同様、関係する「大邦」であると答えているが、あわせて「高麗三隣邦」(清国・ロシア・日本)のうちの「一邦」(たとえばロシア)が局外中立を承認しない場合を想定し、その結果、生ずる事態についても検討している。すなわち、ロシアが「高麗」の地を侵した場合、他の隣邦はまず外交的にこれに関与し、つづいて必要な場合には軍事的にも関与せざるを得ない、とするのである。

井上の朝鮮中立化構想は、日清のみの関係だけでなく、朝鮮と条約を結んでいるアメリカ・イギリス・ドイツを組み込んで、5カ国で朝鮮を共同管理しようというものであった。井上は、この策は単に日本の利益だけでなく、朝鮮のためには永久中立の位置を得て清国の羈軛を脱し、清国のためには朝貢国という名義を全う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つまり、朝鮮が清国の属国であるかどうかは争

わず、清国に対して朝鮮に対する従来の名目的な関係を保障する(つまり名目的な関係に限定する)ことによって、清国が実際に朝鮮に干渉したり、保護したりすることを阻止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III. 清仏戦争・甲申政変をめぐ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

1. 清仏紛争と朝鮮問題・琉球問題

井上毅は、10月31日、外務大輔吉田清成に宛ててつぎのように書いていた。³³

清国人の持論は、朝鮮は各国と平等の約をなし、内治外交を自主に任せながら、全く清の属邦としている。ゆえに清は各国の上に位置する勢いであり、「東洋之羅馬帝」のように「王ニ王タル之資格」を示している。この「迷夢」を破らなければ、「朝鮮属邦論」が消滅することはない。今回の件は、清がこの「素論」を実行したものであり、「属邦自主之二点並行不悖之意味」をあらわ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は朝鮮に向かって「一直線」に最初の目的を達するために「簡潔之处分」をしたが、他方、清の「属邦論」を実地に黙許した形跡があるのは実に遺憾だ。したがって、清に向かって公然と掛け合わないまでも、一応は清の措置を認めないという態度を示しておくことが必要だ。井上毅はこのような書き送って、事件そのものへの対応が一段落した段階においてとるべき清国への対応を提起した。

他方、外務卿井上馨は、1882年11月、伊藤博文に宛てて、朝鮮の件も一応無事に始末がついたとして、その対処経過を詳しく伝えつつ、朝鮮情勢の展開はすこぶる重大であるが、「東洋の無事大平」をあらかじめ「卜定」することはできな

³³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p.611～613。

い、と書き送った。³⁴そして、欧米諸国(ロシア以外)の対応を含めた朝鮮問題の見通しをつぎのように述べていた。

英米独各国が朝鮮と結んだ条約の批准について、各国の公使等にあつて確かめたところ、英独二国は批准を見合わせるようだ。ことにイギリス公使の意見では、この条約は第一にアヘン売買を禁じ、第二に沿海貿易の権を朝鮮が占有するもので、朝鮮側に利益がある条約だ。かつこのような条約を朝鮮と締結すれば、清政府との条約改正の際に、清政府が「属邦たる朝鮮の条約」でさえこのようだという口実を与えて、「英国の通商利益を害する事」ははなはだしくなる。ゆえに英国は到底このような条約には批准を与えないだろうと言った。ドイツもまた、朝鮮条約によって別段の利益を得るところがないので、見合わせ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また、フランス公使の説を聞くと、フランスは現在、清国との間に「トンキン」の一条があり、「トンキン」と清国との関係は、ちょうど朝鮮と清国との同様の関係だ。したがって、朝鮮と条約を結んで、朝鮮が清国の「属邦」であると認め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トンキン」の事に影響する懸念がある。ゆえにフランスは差し向き朝鮮と条約を締結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

ただ米政府だけは、かねてからのグラントの持論で、英国の東洋政略の反対に出て、つとめて東洋諸国に満足を与えて東洋にその政略を伸ばしたいと望んでおり、米公使の説では、「シュフェルド」の言うところによると、かの朝鮮国王の書簡中には、清国に進貢することは言明してあるが、「属国云々」の言はない。ゆえに米政府では、朝鮮の条約を締結すれば、幾分か清国および日本のために利益を与え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考えて、これを批准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あった。

他方、清政府は着々と「朝鮮属邦たるの実」をあげ、「事実」をもって各国

34 『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p.177～181。

に「属邦」であることを示そう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清政府の「底意」は、先年、日本政府が琉球に対し、清国の異論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廃藩置県の処分を挙行したように、今回、朝鮮に対してこれと同様の処分を施行しようとしているものように察せられる。

朝鮮の有様は、「殆んど萎靡衰弱の極」にあり、その上、独立を希望するとは言っても、結局、「国王と其他一二朝士の意中」にあるだけで、決して朝鮮政府の意向ではない。ゆえに急に朝鮮を補助して強いて独立を成就させようとするのは得策ではない。

このように井上馨は、アメリカを除いて西洋諸国は朝鮮との条約の締結に応じないだろうとの見通しを述べていた。しかし、アメリカ・イギリス・ドイツが朝鮮との条約に調印したという朝鮮をめぐる新たな状況のもとで、朝鮮中立化構想はにわかに具体性を帯びたものとなってくる。大澤博明は、朝鮮永世中立化構想は、朝鮮をめぐる東アジア国際政治秩序の安定と制度化を模索したものだだったと評している。³⁵

井上馨は、フランス公使の言を借りながら、「トンキン」と清国の関係を、朝鮮と清国の関係になぞらえていた。その背後にあるのは、ベトナムをめぐる清国とフランスの交渉・対抗関係であるが、朝鮮をめぐる清国と交渉・対抗するのは日本にほかならない。清仏関係の険悪化に対する清朝内部の対応策の変化は、朝鮮問題にも影響を及ぼさざるを得ない。

1883年5月12日、井上毅は参議山県有朋に「安南事件意見」を送った。³⁶ 日清韓の関係において、「今日」は実に「不可失之機会」だというのである。清国政府は曾紀澤に安南(ベトナム)を清仏両国の共同保護にするとの主意で談判させた。また、フランスが派遣した使節が天津で李鴻章と議決した主意もまたこの方向だと見える。このチャンスを逃さず、日・清・韓関係の転換をはかるべきだと井上毅は考えた。清国側がベトナムにおいてフランスとの共同保護の方向を指向しそう

35 前掲大澤博明、「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

36 『井上毅伝 史料篇』第1巻、pp.355～356。

だとの判断に立って、朝鮮問題に対する清国の対応方向を予測し、このチャンスを生かして日清による朝鮮共同管理的方向を追及すべきだとの提起とも考えられる。

しかし、井上は、フランス政府はなおこの談判に満足せず、安南国に向かって「主宰権」を施そうとつとめていると見る。安南が清の属国であるのは、ちょうど朝鮮と同じなのに、フランスは「理不尽」にも清国の保護を排除して安南を侵略し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清国政府は衰弱しているため、フランスと安南を争う力がない。現在の勢いでは、清国政府は断じて西洋各国に対してその属国を保護する力はなく、ゆくゆく安南はフランスに帰してしまうだろう。井上は、こう予測する。では、朝鮮はどうか。〈清－朝鮮←フランス〉という関係に対応するのは、〈清－朝鮮←日本〉であるから、日本がフランスのような路線をとるとすれば、朝鮮を支配することになるのは日本のはずだが、なぜか井上は、朝鮮がロシアかプロシアに帰す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と述べている。おそらくそれは、井上が日清の朝鮮共同管理ではなく、朝鮮中立化構想をこそ指向していたからであろう。

安南紛争の現在、もし日本が清国政府に対して、朝鮮を公法上の中立国にならって、日清両国またはその他の条約国によって保護しようと提案すれば、清国側は喜んでこれに応じるだろう。これによって昨年来の朝鮮の事件がはじめて結局を得るだけでなく、日本と清国との間にある積年の「怨気」も「氷積」する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東洋之大局」における「永遠之長計」として、これ以上のものはないというのである。

また、井上毅は6月14日には山県有朋につぎのように書き送っていた。³⁷

伊藤参議が帰国のついでに天津または上海に漫遊し、李鴻章に面会すれば、談話は必ず「宇内之大勢、東洋之全局」に及ぶはずだから、こ

³⁷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p.617～618。なお、琉球問題・朝鮮問題をめぐる清国側の動向については、西里喜行、「黎庶昌の対日外交論策とその周辺－琉球問題・朝鮮問題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53-3、1994年12月に詳しい。

の機に乗じて「日清両国将来永遠之交誼ヲ親密ニスル之針路」を開くことはむづかしくない。もし彼(清国)が「琉件」に論及すれば、我(伊藤)は次の大意で答話を試みるのがよい。

余は琉球を廃して県治とした主唱者だが、今日に至り、欧州に遊び、大勢を通観し、日清両国は唇齒の交わりを全くし、東洋の全局を保持すべきことが、最重最大だということを知った。そこで、清政府の高誼をなすために、旧琉球王の尚泰を沖縄島司としてもよい。しかし、両国の間にはすでに公法があるので、このことは御国においても是認し、将来「琉ノ事」はすべて不問に付してほしい。もっともこのことは、双方の黙認とし、再び商議結約することはしない。

もし李がこれを首肯すれば、伊藤公の帰朝後、速やかに島制を公布して、沖縄・対馬などの諸島に島司を置き、尚泰を沖縄島司とし、宗某を対馬島司とするなどの処分をすれば、好結果に至るのではないか。

もし李が「強情」を申し募って「中山復封之説」を主張すれば、やむを得ず「国は一決」。速やかに「軍国之準備」に着手し、全国の力を挙げて兵事にのみ使用し、「非常之謀略」を図るしかない。

ゆえに伊藤公の上海行きによって、「和平之好結局」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もかもしれない。こうした目的が達せられなくても、十分に彼の「意衷」を探って「国是決議之資料」にすることができる。

井上は、依然として紛糾中の琉球問題の打開策として、外務省サイドの公式ルートではなく、伊藤の口を通じて妥協策を清国側に提示して、局面転換を試みようとしたのである。さらに、この機に朝鮮を中立国とし日・清・米3国で共同保護するという策が実現をみるかもしれないとした。

井上は自らの提案が「書生之空論」のようだと自認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変局」に際して、「一大奇策」を用いなければ、「固結」を「氷釈」するための「療治」はむづかしいとした。それは、清国側(李鴻章)の変化をとらえ、この機に日清間の懸案問題の解決をはかって東アジア情勢を転換すべく着想した「一大奇策」であった。しかし、もちろんこの「書生之空論」自体は具体化していない。

ただし、以下でも明らかなように、この時期、琉球問題は朝鮮問題とともに同時進行の重要な係争事項として、日清両国間の懸案課題になっていたことに注意しておきたい。そして、琉球問題の処理法は、朝鮮問題のあり方にも影響すると認識されていたのである。

2. 非公式交渉ルートの浮上—宮島誠一郎の位置

ところで、井上毅は前述の5月12日付〔安南事件意見〕の末尾で、この提案を清国側と協議する方法について、「黎公使ト熟交之人」から「何トナク私誼ヲ以テ談シ」、または「文字上之交際ニ托シ一篇之東洋交際論ヲ草シ」、その「内意」を叩くべきだとしていた。「公然我政府ヨリ彼ノ公使ヘ申入ル、ハ非策」とも述べているように、井上毅には、正面から外交ルートで迫るよりも、非公式のルートを通じて打診しつつ、相手側の状況をさぐって具体化をはかるべきだとの判断があった。それは、前述の伊藤帰国に仮託した「一大奇策」の提起とも通じる発想であった。

「黎公使ト熟交之人」として井上が想定していたのは、その後の経過から見て、清国外交官と親しい宮島誠一郎であったに違いない。³⁸ 当該期の宮島は宮内省勤務であったが、漢詩文の素養をベースとして、かねて公使をはじめとする清国外交官と頻繁かつ親密な交流を重ねていた。また、本来、宮島は松方正義・黒田清隆ら薩摩系の人脈と深いつながりをもつ人物であった。

宮島の日記によれば、6月17日、清国公使黎庶昌が宮島のもとを訪れている。

二人は

筆談によって「清仏安南事件」、つまりベトナム支配をめぐる清国とフランスとの紛争の状況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翌18日には井上毅が宮島のもとを訪れ

³⁸ 「明治第十六年日記」全9冊(早稲田大学図書館所蔵「宮島誠一郎文書」A61)。以下については、大日方純夫、「宮島誠一郎の対外認識と対外活動—一八八〇年前後の対清問題を中心に—」、由井正臣編、『幕末維新期の情報活動と政治構想』、梓出版社、2004年3月)を参照。なお、宮島とは別に、1883年8月16日、田邊太一が清国公使館を訪れ、黎庶昌と会談して、日清(あるいはアメリカも加え)が朝鮮を共同で保護し、永久中立国とす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前掲 西里喜行、「黎庶昌の対日外交論策とその周辺」)。

て清国のことについて話し、宮島は黎庶昌との談判を詳しく伝えている。19日には、井上毅の求めに応じて宮島は清国公使との筆談の写しを提出し、この筆談はその後、参議山県有朋に直接手渡され、太政大臣三条実美、右大臣岩倉にも提出され、さらに山県より天皇にも奏上されたいらしい。

7月7日、外務卿井上馨は宮島に来訪を求めた。冒頭、井上は、今、「琉球朝鮮事件」に関して非常に配慮していると、自らの立場を詳しく「吐露」し、清国公使と深く交わって、両国交際上の成果を得た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た。その際、井上は、宮島と黎庶昌との談話について、内閣では詳しくこれを承知しているとも語った。

これに対して宮島は、最初に「支那」を軽蔑したのはなぜか、また、今、「支那」を畏れるのはなぜか、侮るのも畏れるのも合点がいかないと、政府の姿勢をきびしく批判した。これに対して井上は、自分は初めから侮らず、また畏れもしなかったと弁明したうえで、直面している問題点をつぎのように立ち入って説明した。

我が兵隊をもって朝鮮公使館を守るといっても、費用がない。そこで、竹添公使より清国の兵隊を率いている呉長慶に向って、くすでに朝鮮は平穏となって内乱の心配がないので、日本は兵隊の半分を帰国させた。貴国にとっても数万の消費であろうから、この辺をご勘考ありたい」と申し入れた。これに対して呉は大喜びし、くこの地は日清両国で局外中立にして取り扱う方がよい。すでに朝鮮は米国と条約を結んだので、英独等も入り込むに違いない。そうすれば、清国一国が朝鮮を属邦とみなしていても実際にはおぼつかない。このことは日本駐在の黎公使に説得して、同人から李鴻章に相談すれば具体化するだろう」と、竹添に話したという。竹添から書状も来たが、竹添が懸念しているのは、朝鮮で日清両国が局外中立を謀ると、直に琉球にも影響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琉球については特別の「処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今、この2国(琉球と朝鮮)の区分をどのように立てて処分すればよいかを思慮中である。昨年、政府では万一清国が琉球処分について八重・宮古二島で承諾せず、どこまでも「復旧

論」を主張する場合、断然、戦いをもって決着をつけるほかないと廟議一決して、「聖断」を仰いで地方官に達し、増税も課すことになった。早晩、「琉球事件」が「一問題」となり、「日清之談局」を開くことがあるに違いない。そこで、「清国之極点」がどこにあるのかを黎庶昌と深く交わって見出してほしい。

井上は、このように述べて、琉球問題に対する清国側の意向をさぐってほしいと宮島に依頼した。

なお、宮島との懇談の最初に、井上は、現在、政府では清国の軍備の手配と、ドイツに数艘の軍艦を注文した挙動について頗る危疑を抱き、どのような形勢に陥るだろうかと心痛していると述べていた。おそらくこれは、山県有朋が6月5日付で提出した「対清意見書」とかわるものであろう。³⁹ 山県は、清国の軍事力の強化と西洋式の装備・訓練のさまを強調して、清国との軍事的な衝突を想定した軍事態勢の強化を提起していた。日本は清国との締約(1871年の日清修好条規)以来、台湾出兵、琉球処分から朝鮮事変(壬午軍乱)の処理に至るまで、ずっと清国の勢いを凌いできた。したがって、清国は日本への不平を蓄積させており、軍備が充実し、内治がおさまれば、「東洋ニ跳梁」して日本を脅かす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清仏戦争でフランスとの講和が成立すれば、転じて東に向かってこないとも限らない。山県はこう述べて、軍艦建造と砲台建築の促進などを要請していた。同時にこの意見書で、山県が外交政略はなるべく「平和穏当ノ針路」を取るべきだとしていた点が注目される。衝突を回避しつつ軍事建設をすすめ、いざ清国と衝突の際には「上下一致全国一体勇往果敢」、天下の義を鼓動することが展望されるのである。その意味でも、当面している外交上の課題は、「平和穏当」に処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7月21日、宮島は清国公使黎庶昌を訪問して筆談を交わした。宮島は朝鮮問題について、〈清国が大金を費やして海陸軍力で朝鮮を保護するのは無駄ではないか。独立すべきものは独立させ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などと述べた。琉球問

39 『山県有朋意見書』、pp.137～138(井上馨文書)。

題についても、〈「枝葉」(琉球)は放棄して、「本根」(清国)を強くすべきではないか〉と主張した。黎は、〈わが国では外国の事情をよく知っているものが多い〉と述べ、〈この三十年来、内憂外患が相次ぎ、また、皇帝も幼くて自ら大権を担うことができない〉と嘆いた。そのうえで二人は両国の友好関係の大切さを確認した。

9月16日、宮島は黎庶昌を訪問し、清仏関係をめぐって通訳を介して三時間半ほど談話

した。これによって、清国兵一万五千を繰り込んだこと、パリでの曾紀沢の談判などのことがわかった。19日、宮島は井上と面会して、詳しく清国の内情を話し、かつ黎庶昌の「秘談」をも話した。井上も大に悟ることができた様子で、なおこの上は「一層踏込んで」話してほしいと依頼した。22日には山県と会って、清国公使との談判について話している。10月9日には、宮島は清国公使から旧暦の重陽の宴会に招かれたが、これについても宮島はあらかじめ井上外務卿と「密談」していた。井上は宮島に対して、清国公使の「意底」を「探知」してほしいと、情報の収集を依頼していた。宮島は井上の意をうけ、宴会の機会を利用して清国公使の心情に探りを入れたことであろう。なお、同夜の宴会後、松方正義と会って、過日來の外務卿(井上)との談判の事情を内話している。

こうして、日本政府首脳部は、清国外交官と親しい宮島誠一郎のパイプを通じて、非公

式ルートから清国側の思惑をさぐりつつ、対応策を検討していたのである。10月28日には、宮島は金玉均とも会って、清仏関係のゆくえと東アジア情勢の推移について会話しているが、その会話内容も山県・伊藤に伝えられている。

10月31日、宮島は「清公使之機密一条」を起草し、井上馨外務卿に寄贈した。黎庶昌と交わした9月16日の会話記録がそれである。11月1日には井上馨を訪い、榎本武揚清国駐在公使からの報告を内々に見せてもらっている。11月9日には出勤前に井上と面会し、また、早退して清国公使と面会している。清国公使とは9時間ほど「東洋ノ大勢」について筆談・舌談している。この日、9月22日付の何如璋の手紙が清国から届いており、11月22日に来訪した伊藤に、この何如璋の手紙を見せている。また、太政大臣三条実美を訪問して、清国公使との談判について話

している。

紙幅の関係で、その後について宮島の動向を追うことは省略するが、清仏関係をめぐる清国側の情報収集を宮島は担当し、それは、山県・井上・伊藤といった長州系参議との接近の度を深めさせていった。しかも、直接に外務卿の井上馨の依頼を受けて情報探索にあたるなど、非公然の公的活動といった性格を強めていった。複雑を極める東アジア情勢に直面して、この時期、公式の外交の裏面では、このような別ルート of 私的“交渉”がおこなわれていたのである。

3. 甲申政変と天津条約体制

井上馨・井上毅らによる前述の日清による朝鮮共同保護構想は、中国側の拒否によって幻に終わった。一方、紛糾を重ねていた清国とフランスは、1884年6月、戦争状態になり、8月、フランス艦隊が台湾と福州を攻撃したことから、清国はフランスに宣戦布告するに至った。宮島誠一郎は9月3日、清国公使館に赴いて黎庶昌公使と話し、この戦争に対する清国側の構えを聞いている。⁴⁰ また、9日に宮島を訪ねた井上毅は、「仏兵運動、清国危急」の機会に乗じて、ドイツ・ロシアが清国を分割するだろうから、我が国も手をこまねいてはならないと述べ、台湾なりを取った方がよいと発言している。また、黎庶昌の様子を尋ねて、探りを入れている。⁴¹

他方、朝鮮の「独立」について国際的な公認化を得ようとする日本の政策は、1883年から84年にかけて、朝鮮と米・英・独・伊・露との間で、それぞれ条約が批准・締結されたことによって、ある意味で達成された。ところが、これは1884年12月の甲申政変によって、有名無実化することとなる。すなわち、朝鮮の漢城で急進開化派が起こしたクーデタは、清国軍の介入によって失敗に終わり、朝鮮の政局は清国に握られることとなった。甲申政変を機として日清両国軍は衝突

⁴⁰ 「明治甲申第十七年養浩堂日誌」、前掲「宮島誠一郎文書」A63。

⁴¹ 宮島は同日の日記欄外に、「此時時事新保(ママ)紙ハ清国分割之図を出したり、竹添朝鮮之変も此時に胎生せりと言ふ」と付記している。

し、日清間の緊張が再び高まるのである。

宮島は、1884年12月12日の夜、来訪した清国公使館の姚文棟から「驚愕」の報を得、翌日、伊藤博文にこれを伝えている。⁴²

一方、12月19日、井上毅は下関から伊藤参議・井上外務卿に宛てて、このまま事が収まってしまえば、将来、清国人の勢力が朝鮮を支配するようになり、「八年以来」の政略が水泡に帰してしまうと書き送った。⁴³ 少し無理であっても、なるべく清国人に向かって「論鋒」を強くし、清国の駐留兵を引き上げさせるか、または隊長を辞めさせるかするなど、朝鮮人の「目ヲ醒サシムル程ノ事」がなければダメだというのである。その際、井上は朝鮮人を「無精神ノ少兒」だととらえ、余り責めつけるのは「弱キタイジムル様ニテ却テ氣ノ毒」だとしていた。したがって、後ろ盾の清国人の「頭」を十分におさえ、後日、「朝鮮第三ノ難事」を引き起こすことがないようにすべきだとするのである。

24日にも井上毅は外務卿井上馨に対して、清国に対する強硬策をつぎのように進言した。⁴⁴

支那人ハ朝鮮人ヲ教唆シ、務メテ傲慢ノ言ヲ吐キ、竹添ヲ称シテ賊ニ
党スル罪魁トナシ、以テ自カラ其責ヲ逃レントス、故ニ此度ノ事ハ到底
更ニ兵カラ派シ、最後談判、又ハ強迫ニ出テサレハ満足ノ結果ヲ得カ
タカルベシ、仮令、一時ノ和平ヲ得ルトモ、将来朝鮮ヨリ屢忍フベカラ
サルノ無礼ヲ受ケ、終ニ第三回ノ騒動ヲ引起スニ至ルベシ

井上毅は直面している事態をよほど重視したものと見え、同じ24日の外務卿・宮内卿・外務大輔宛の書簡でも、ほぼ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⁴⁵ さらに同日、宮内卿・外務卿・宮内大輔宛の書簡では、清国のドイツ人軍事顧問メルレンドルフを強く批判した。⁴⁶ 12月27日には、伊藤宮内卿に宛てて、つぎのように

⁴² 「日記」、前掲「宮島誠一郎文書」A65。

⁴³ 『井上毅伝 史料篇』第1巻、p.440、『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p.347～349。

⁴⁴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p.303～304。

⁴⁵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p.305～306。

提案している。⁴⁷

清国政府に迫って朝鮮に駐在している兵員を撤回させることに重点はある。その際、彼を論難する「主義」としては、つぎの3点のいずれかを採ら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朝鮮は清の属国ではないと論じること。
- ② 「京城ノ変」における清国側の「侵犯ノ所為」を責めること。
- ③ 善後策を論じ、両国将来の「事端」を防ぐことを撤兵の名目とすること。

① について。「立論直遂正大」のようだが危険だ。清国と朝鮮の関係は、「歐洲ノ保護國ノ位置」に類しており、日清間で議論がひとたびこの「朝鮮属国論」に及ぶと、清は全力で日本に抵抗するに違いない。そうなれば軍事的な衝突抜きに解決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

② について。「京城ノ変」の「先発侵犯ノ責」が清国側にあることは明瞭だが、これに関して紛争しても、特に証拠はないので、「兵火ヲ以テ訟ヲ決スル」しかない。

したがって③を採用すべきだ。彼が応じないときは、「脅迫ノ手段」をもって朝鮮駐在の清国兵に向かって日本の「威力」を示し、やむを得ない場合は、朝鮮を両国間の「一局部ノ戦地」とするに越したことはない。すなわちこれは、一方では、清国の朝鮮における「名義上ノ関係」を存しながら、その「実力ノ関係」を断ち、段々に朝鮮に「独立ノ進路」を得させ、他方では、彼に「暗ニ先発侵犯ノ罪」について謝らせる道であり、「議論公平処置穩当」、「世界ノ傍觀論者」が「指議」をいれる余地をなくすることができる。

属国論に立ち入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井上の見解は、すでに見たように、壬午軍乱の際の意見と同じである。

⁴⁶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77。

⁴⁷ 『井上毅伝 史料篇』第4巻、p.79、『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p.349～350。

ところで、1885年1月4日、宮島誠一郎は外務大輔吉田清成を訪ねて、今回の「朝鮮一条」と外務省の対応振りを詳細に聞いている。⁴⁸ 5日には清国の新公使徐承祖が宮島を訪ねて挨拶し、その際、朝鮮のことなどは早く解決するようにしたいと述べている。これに対して宮島は、「協和之根本」が立てば、「中間之小事」は決して両国を対立させるものではないと応じている。6日には外務省で吉田に面会し、清国公使との「往来」のことを話した後、清国公使館で新公使に昨日の答礼をし、その後、前公使の黎庶昌を訪ねて筆談している。その際、黎は、貴国が朝鮮に干与せず、我が国が琉球を放棄すれば、三国(清国・日本・朝鮮)が和し、東方万世の利となると述べ、宮島もその通りだとこれに答えている。⁴⁹ その際、黎は両人の私談に過ぎないからとして、これを公表することは差し控えてほしいとした。ただし、松方にはこれが伝わっており、伊藤のもとには筆談そのものがもたらされている。

甲申政変の事後処理をめぐる交渉方針の検討が進められていた時期、他方では、あらためて朝鮮問題と琉球問題の同時解決を模索しようとする動きが現れていた。実際、黎庶昌は井上外務卿との会談をふまえ、1月21日、本国の総理衙門に対して、清国は琉球を放棄し、日本は朝鮮に干渉しないという案と、琉球と朝鮮を日清が共同して保護するという案を提起していた。⁵⁰ しかし、結局のところこれらの案は具体化することなく消滅していった。

朝鮮での事件に対して、外務卿井上馨は、朝鮮と清国、それぞれと別個に交渉をすすめる方針をとった。つまり、朝鮮が外交上の自主権をもつことを前提として交渉をすすめようとしたのである。それは、朝鮮が「独立」国であることを国際的に明らかにし、清国にもそれを認めさせようとする従来からの方針に沿ったものであった。

ただし、井上の路線に対しては、同じ長州派の伊藤博文から批判があり、両

⁴⁸ 以下、「日記」、前掲「宮島誠一郎文書」A65。

⁴⁹ 『秘書類纂 外交篇 下巻』、pp.355～358；前掲 西里喜行、「黎庶昌の対日外交論議とその周辺」参照。

⁵⁰ 西里喜行、「清国(洋務派)の対日外交と琉球問題」、『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第45集、1994年。

者の間で激論があったという。すなわち、伊藤は清国に対する談判問題には強弱の二つの方法があるとして、つぎのように述べていた。強とは属国論に立ち入って清国兵を撤兵させることであり、弱とは単に日清の将来の友好の障害であるとして両国の兵を撤去することである。強論をもって談判すれば、清国側は必ず拒否するだろうから、破談の時をもって開戦する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場合は、現在から備えに着手しなければならない。弱論をもってしても、清側が拒絶すれば、戦争は避けがたいとして開戦に及ぶべきか、あるいはそうではないか。強弱いずれに決するにしても、特別に使節を派遣して談判すべきか、それとも普通の外交手続きによって榎本に命じて談判させるべきか。

朝鮮「独立」論を名義として交渉に臨もうとする井上の立場は、「強論」であった。すなわち清国との開戦を前提とすることになる。これに対して、伊藤の立場は「弱論」であった。

実際には、甲申政変の国際的な処理は、朝鮮、清国、それぞれ別個に行われ、朝鮮とは1885年1月に漢城条約が、清国とは4月に天津条約が結ばれ、紛糾は一応の収束がはかられた。前者を担当したのは全権大使井上馨であり、後者は全権大使伊藤博文のもとですすめられた。

朝鮮側との交渉を通じて、井上は朝鮮の「独立」が国際的に公認されていることを示そうとした。一方、伊藤大使に宛てた政府の訓令は、事変当時兵隊を指揮していた将官の処罰と、兵隊の朝鮮からの撤退を清国に要求するように指示していた。これに対して、井上毅は清国に撤兵を求めるのは、朝鮮を棄てることを勧めるのと同じだから、合意は無理だと考えていたらしい。しかし、伊藤・井上馨は、清国はフランスとの戦争のため日本との談判に全力を尽くす余裕はないと判断していた。また、実際、清国側は日本の共同撤兵要求に応じる方針を決定していた。

こうして、日清共同撤兵策は天津条約によって具体化し、朝鮮が「独立」国であることについて国際的な公認を得ようとする日本側の政策は落着をみた。また、天津条約に「行文知照」の条項を組み込むことによって、日本側は清国側と対等の権限を得たと判断した。他方、清国にとってそれは、属国であることを根拠として朝鮮に自由に出兵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ことを意味した。

ところで、ほぼ同時期の1885年4月15日、アフガニスタン問題をめぐってロシアと対立していたイギリスが、朝鮮の巨文島を武力占領するという事件があった。これにつづいて、露清密約事件もおこる。こうして、これまで日清関係を中心として展開していた朝鮮問題は、文字通り国際問題化した。

外務卿井上馨は、英国が長くこの島を占有して退去しないなら、ロシアも元山・釜山・濟州島などの占拠を朝鮮政府に申し入れるかもしれないと考えた。そうなれば、朝鮮政府は露朝条約の最恵国条款によって他国にも同様なことを認めざるを得なくなり、朝鮮分割をめぐる各国の競争が激しくなって、日本近海は争乱紛議の中心となるだろう。井上は、こうした懸念から対朝鮮政策の転換をはかろうとした。

ロシアと朝鮮の接近を危惧する井上馨は、6月、清国の駐日公使徐承祖とはかって「朝鮮弁法」八カ条を提起した。それは要するに、ロシアの朝鮮単独保護を阻止すべく、日清2国の朝鮮共同保護を企図するものであった。⁵¹

しかし、この「弁法八ヶ条」は李鴻章の拒否により実現せず、清国を利用とする策は、事実上、破綻することとなった。

IV. 日清戦争をめぐ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

1. 山県構想と青木構想

帝国議会開設の段階で、明確なたちの東アジア秩序の構想を提起しているのは、山県有朋の意見書である。⁵² その原本としては、大山樸編『山県有朋意見書』収録の青木周蔵文書中のものと、陸奥宗光文書中の「軍備意見」が知られる。⁵³ 青木

⁵¹ 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明治年間追補 第1冊、日本国際連合協会、1963年、pp. 359～360、pp.380～381。なお、高橋秀直、『日清戦争への道』、東京創元社、1995年、pp.190～194、および 崔碩莞、『日清戦争への道程』、吉川弘文館、1997年、pp. 133～135、参照。

⁵² 『山県有朋意見書』、pp.196～200、『井上毅伝 史料篇』第6巻、pp.206～211、芝原拓自ほか編、『対外観 日本近代思想大系12』、岩波書店、1988年、pp.81～86。

⁵³ 『山県有朋意見書』収録の「外交政略論」は、陸奥宗光文書中の山県の意見書「軍備意

は山県内閣の外務大臣、陸奥は農商務大臣であった。この意見書は1890年3月、閣僚の閲覧に供されたが、『山県有朋意見書』は、その際に同時に回覧された1888年1月中の意見書(『山県有朋意見書』収録「軍事意見書」)の頭書朱記にもとづいて「外交政略論」という題名を付し、また、日付も陸奥文書によって補っている。

山県のこの意見書は、3つの重要な柱から構成されている。すなわち、軍備拡張の必要性を強調するために展開された前半の主権線・利益線論と、後半の朝鮮永世中立化論、およびこの両者をつなぐ中間の情勢分析部分である。

まず、冒頭で「国家独立自衛ノ道」には、「主権線」の「守禦」と「利益線」の「防護」との二つがあるとして、「利益線」、すなわち朝鮮確保の意義を強調し、そのための軍備拡充を提起する。

そのうえで1888年1月の「軍事意見書」と同様の事態を想定し、⁵⁴ シベリア鉄

見(『井上毅伝 史料篇』第6巻に「参考」として収録)と基本的に同一であると考えられる。ただし、大山編『山県有朋意見書』収録「外交政略論」には、重大な誤りが存在する。すなわち、198ページ1行目半ばから「今ノ時ニ及ンテ国民ト否トニ拘ハラス隣邦ノ利益ニ依リ」という文脈が続いているが、これは完全な錯誤と考えられる。陸奥宗光文書中の「軍備意見」と照合すると、本来は「今ノ時ニ及ンテ国民」に同ページ16行目の「尚武ノ氣風ハ之ヲ鼓舞振起スヘキモ之ヲ萎弱ナラシム可ラス」が続くべきであり、他方「ト否トニ拘ハラス隣邦ノ利益ニ依リ」以下16行目冒頭の「将来ニ同舟」までは、そのまま199ページ12行目冒頭の「之ヲ要求セル」の後に挿入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山県有朋意見書』が底本とした青木周蔵文書の原文書を確認し得ていないか、原文書の綴り間違いか、『山県有朋意見書』のミスか、いずれにしてもこの「外交政略論」では、該当錯雑箇所は意味不明である。なお、『山県有朋意見書』の注記によれば、この収録文書は青木外務大臣に提出されたものによったとあるが、青木宛の建議には日付がないため、陸奥文書の日付により、また、「外交政略論」という題名も、同時に回覧された1888年1月中の意見書(『山県有朋意見書』収録の「軍事意見書」)の頭書朱記から判明したものだという。

⁵⁴ 1888年1月のこの意見書で、山県はつぎのような主張を展開していた(pp.175～185)。

イギリスとロシアの利益は対立し、互いに抵触していて「紛議葛藤ノ種子」は実に多い。大陸上の交通運輸が便利になれば、衝突の時期はますます切迫する。カナダ太平洋鉄道の敷設は英国の東洋航路を短縮し、シベリア鉄道敷設はロシア軍隊の東向を駿速にする。英露両国はアジアにおいて衝突せざるを得ず、数年内に東洋には「一大波瀾」が起ころ。その際、朝鮮は英露衝突の対立点となる。そればかりでなく、朝鮮は日清両国の「紛情ノ種子」である。我が国の政略は、朝鮮を清から完全に

道の竣工によるロシアの朝鮮進出と、カナダ鉄道新線の開通によるイギリスの東洋進出の短距離化によって、「東洋」に「一大変動」が到来することを予測する。なお、その際、清国政府の軍備増強の動きも指摘している。

では、「利益線」を防護して日本の独立を完全にするためにはどうしたらよいのか。その現実的保障として提起されるのが、朝鮮中立化の方策である。シベリア鉄道が完成すれば、「利益線」＝朝鮮の独が脅かされる。「東洋ノ上流」を「他人」＝ロシアが占めると、直接の危険が及ぶのは日清両国である。清国は最近、全力で「他人ノ占有」を拒む決意があるようなので、天津条約を維持することは至難の情勢となっている。朝鮮の独立を保持しようとするれば、互いに派兵を禁ずるという天津条約の條款が障害とならざるを得ない。

では、将来の「長策」は、天津条約を維持することにあるのか、さらに一步を進めて「連合保護ノ策」をとり、朝鮮を公法上、恒久中立の位置にすべきか。これが今日の問題である。

恒久中立とは、スイス、ベルギー、セルビア、ルクセンブルグの四国の例のように、当該国が要求すると否とにかかわらず、隣邦の利益のために、他国の占有を防止することを目的に、他国は当該国を侵害しないと約束しあうことをいう。朝鮮の中立は、たんに清国だけでなく、イギリス・ドイツの利害にも間接的に関係している。とくに英国にとって朝鮮は、東洋における「利益線」の「必争」の地である。

こうして山県は、英独日清の4国による朝鮮の恒久中立化構想を提起するのである。この中立化構想の眼目はロシア対策であったから、中立を協議・保障しあう関係国のなかにももちろんロシアは含まれていない。なお、かつて協議対象国として想定されていたアメリカも、今回は落ちている。

山県がこの意見書で展開している主権線・利益線という発想は、ローレンツ・フォン・シュタインから学んだものだという。⁵⁵ 1888年、地方制度調査のた

離れた「自主独立ノ一邦国」とし、欧州の「一強国」が事に乗じて略取するおそれ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にある。そのためにも、軍備の強化が最大急務である。

⁵⁵ 加藤陽子、『戦争の日本近現代史』講談社、2002年3月、pp.85～97；村中朋之、「山県有朋の「利益線」概念」、『軍事史学』165、2006年6月。

めヨーロッパを訪れた山県が、翌年、ウィーンでシュタインに会って教えを得た際、シュタインは「主権疆域」「利益疆域」という概念で日本の課題を説明した。そして、「利益疆域」である朝鮮が他国によって占領されたら危ないから、朝鮮を中立化すべきだとしたのである。

そして、こうした山県の構想を具体的な意見書にまとめあげたのは、史料の存在状況からして、井上毅であった。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山県は1890年12月6日、首相として第一回帝国議事に臨み、施政方針演説において「主権線」「利益線」論を展開し、軍備拡張の必要性を主張した。⁵⁶ ただし、それは「軍備意見」(「外交政略論」)前半の「主権線」「利益線」に関する部分のみを使ったものであって、中立化構想の部分ははずされている。

他方、それに先立つ5月、この山県構想に対抗すべく、青木周蔵外相は「東亜細亜列国之権衡」という意見書を閣僚に配布していた。⁵⁷ それは、日清両国が同盟してロシアと戦い、清国は西シベリアを、日本は満州・朝鮮・カムチャッカ半島を領有するという構想であった。『青木周蔵自伝』によれば、閣僚は青木の「放胆」な議論に「一驚」し、通信大臣であった後藤象二郎以外、誰も同意するものがなかったという。⁵⁸

山県構想と青木構想は、ともにロシアの脅威を強調してこれに対抗しようとする点で、共通していた。ただし、山県構想は東アジアの日清関係にイギリスとドイツを引き込むことによって、その力でロシアの進出をおさえ、朝鮮半島の安定化をはかろうとするバランス・オブ・パワーの論理に立っているのに対して、青木の構想はより直接的な軍事同盟と具体的な軍事分割の論理を前面にだすものであった。また、山県構想は、日清関係にかかわる天津条約体制の評価とかかわっており、清国の軍事建設の状況への関心がそれにからんでいた。

⁵⁶ 『山県有朋意見書』、pp.201～204。

⁵⁷ 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第23巻、日本国際連合協会、1952年、pp.538～543。

⁵⁸ 坂根義久校注、『青木周蔵自伝』、平凡社、1970年、p.109。

2. 日清開戦と朝鮮内政改革問題

1894年5月、南朝鮮一帯に農民反乱が広がった。甲午農民戦争である。朝鮮政府は清国に出兵を要請し、日本も6月2日、公使館・領事館と在留邦人の保護を目的として朝鮮に出兵することを決定した。6月6日、清国は天津条約の規定にもとづいて朝鮮に派兵することを日本に通告してきた。ほどなく農民軍は撤退したが、日本軍は撤退せず、日本政府は6月15日の閣議で日清共同による朝鮮内政改革を清国側に提案することを決定した。それは、「乱民平定」後、朝鮮の内政を改良するため、日清両国から常設委員若干名を朝鮮に置き、財政の調査、官吏の整理、警備兵の設置などに従事させるという内容であったが、そこには、清国側が提案を拒否であろうことが含意されていた。すなわち、陸奥外相は、この提案とあわせて、この問題に関する清国との協議中は撤兵しないこと、清国が提案を拒否した場合は、日本が単独で朝鮮の内政改革にあたることを追加提案し、この点を含めて閣議決定がなされたのである。

6月22日、清国側は日本側の提案を拒否した。その理由は、朝鮮の内乱はすでに平定されたこと、朝鮮の改革は朝鮮自身にゆだねるべきこと(日本は朝鮮を自主の国としているのだから、内政に干与する権利はない)、事変平定後に撤兵するのは天津条約の規定であること、にあった。これに対し日本側は、日本軍の駐留は天津条約の趣旨に合致しているなどとして清国に第一次絶交書を送った。

6月25日にはロシア公使が日清関係の斡旋を申し入れ、30日、朝鮮政府の撤兵要求に応ずるよう勧告してきたが、日本側は7月2日にこれを拒否。また、7月2日にはイギリス公使が日清間の調停を申し入れたが、結局、これも失敗に終わった。日本側は7月12日に第二次絶交書を閣議決定し、14日、清国側に送付した。7月19日にはイギリスの第二次仲介案が示された。朝鮮国内の「変乱」の鎮定、内政改革のための「協同委員」の任命、日清両国共同による朝鮮国土の安全の担保、日清両国の朝鮮に対する通商上の同一権利(「政治上」の文字は記入しないこと)、「属邦論」は提出しないこと、などがその内容であったが、日本側はこの提案を拒絶した。

他方、7月16日にはイギリスとの間で新通商航海条約を調印するに至ったた

め、いよいよ開戦に踏み切る方向を明確にしていった。7月20日、大島公使は朝鮮政府に対して清国との宗属関係の破棄と清国軍の撤兵などを要求し、23日には日本軍が朝鮮王宮を襲撃して、政権の転覆をはかり、大院君を執政とする親日派政権を擁立した。そのうえで、25日にはついに清国に戦争を仕掛けて、8月1日、宣戦の詔書を発表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

開戦後の8月17日、陸奥外相は今後の朝鮮政策の基本をいかにすべきかを閣議にはかった。⁵⁹ 現在、なお交戦中のため、本来は戦争の結着がついてから議論すべきことであるが、これは今後の外交上・軍事上の措置に関して極めて緊密な関係があるため、今、確定しておきたいというのである。陸奥は、今後取り得べき朝鮮政策は「四策」しかないとして、以下のように甲・乙・丙・丁にわけ、それぞれその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を比較考証した。

まず「甲」は朝鮮自主自治案で、朝鮮を「一個ノ独立国」として朝鮮の「自主自治」にまかせ、日本は干渉せず、他からの干渉も許さず、その運命は朝鮮に一任する路線である。それは、日清の開戦にあたって、日本が国内外に対して声明した線を、戦争勝利後も継続することを意味する。

しかし、この路線をとった場合、朝鮮の現状から見て、内政を改革したとしても、これを維持し続けるのはむずかしく、日本が大軍を派出し、巨額の軍費を使用した結果が水泡に帰するかもしれない。また、その場合、清国が隙をうかがってまた朝鮮に干渉し、日清の戦争が再演されかねない。

「乙」は日本単独保護案で、朝鮮を名義上は「独立国」と公認しつつ、実際には日本が間接・直接に独立を「保翼扶持」とするという案である。しかし、この案は、他国の非難や猜疑を招き、「無数ノ葛藤」を生ずるお

59 『日本外交文書』第27巻、1953年、pp.646～649；「対韓政策閣議私案」、『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91～96；「対韓問題閣議案」、『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599～604。

それがある。仮に日本が朝鮮を「保護国」のように扱うことができたとしても、万一、清国・ロシアなど、朝鮮に利害関係をもつ国が朝鮮の独立を侵害した場合、独力でこれを防ぐ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懸念される。

「丙」は日清共同管理案である。朝鮮が自力で独立を維持できず(甲案が不可能な場合)、日本が保護責任を果たせないとき(乙案が不可能な場合)は、日清両国が朝鮮の安全を担保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実際には清国は「儀式的宗属問題」は到底放棄しなかり。また、戦勝後も清国が朝鮮に対して日本より「優等ナル観」があることは、日本として容認しがたかり。とすれば、また対立が起こってくるに違いない。仮に清国政府が「屈服」して「宗属関係ノ問題」を提起せず、両国から朝鮮の政務を補助する監督官・委員を派遣したり、軍隊を駐屯させた場合も、日清両国の利害対立や、政治家の主義の相違から、結局衝突することになり。

「丁」は朝鮮中立国化案で、朝鮮を「世界ノ中立国」とすることを日本から欧米諸国と清国に提起し、朝鮮をベルギーやスイスのような地位に立たせる案である。しかし、朝鮮に最も利害関係があるのは日清両国であり、日清戦争の結果生まれた名誉・利益を他の欧州諸国に分け与える必要はなかり。「帝国人民」は満足しないに違いない。まして大軍を出し、巨額の軍費を費やした結果、何も得ることがないとすれば、世論の攻撃は免れがたい。

このように、陸奥はあり得べき日清戦後の朝鮮政策路線、すなわち東アジア秩序の構想を、朝鮮自主自治案、日本単独保護案、日清共同管理案、朝鮮中立国化案の4案に整理し、いずれにも「一利一害」としつつ、いずれを採用すべきかを閣議にはかった。4案ともに、戦後においても清国が朝鮮問題に相応の、あるいは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るという事態が想定されている。朝鮮問題における清国ファクターは、戦後においてもなお無視し得ない存在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と言える。結局、閣議では、当分は乙案、すなわち日本単独保護案の方向をとること

にしておいて、いずれ議論の上、確定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

こうして、日清戦争を展開しつつ、表向きは開戦宣言の線にそって名目上朝鮮を「独立国」扱いしつつ、実際には独立を「保翼扶持」とするという理由で、日本が朝鮮の内政に介入していく路線が採用された。

8月20日に締結された日朝暫定合同条款では、朝鮮政府の了解のもとで日本が朝鮮の内政改革を推進することをうたい、日本に対して鉄道や電信線の利権を提供することなどが規定されていた。また、26日に締結された日朝攻守同盟は、清国を対象とする軍事同盟であった。

日清戦争下、朝鮮内政への介入路線を実際に推進したのは、公使として朝鮮に赴いた井上馨であった。彼は到着直後の10月28日に朝鮮国王に会ったときの模様を、31日付の書簡で首相伊藤博文に書き送った。⁶⁰ それによれば、井上は2時間ほどかけて「明治九年之条約締結」以来の朝鮮をめぐる日清対立の状況を子細に説明したという。すなわち、清国は朝鮮の「動乱」ごとに「干渉之度」を高め、日本側からの「協同委員」による朝鮮「内政改良」の提案も、「属邦論」を主張して拒否した。そして、兵力をもった朝鮮の「実権」を掌握し、「属邦之論」を一層強めようとした。井上は、開戦に至る経緯をこのように説明したうえで、この際、「着々改良之歩を進めて内治を整理し独立之実を奏功するは急務」だとして、「公使職務外に恰も貴政府之顧問同様に万事胸襟を開万事御下問あらん事を願ふ」と要請した。井上は「顧問同様」のかたちで朝鮮の内政に介入し、改革を推進しようとした。いわゆる甲午改革である。

井上はその構えを、「只々英之イチエプトに於ける政策を取る之現今并将来良策と決意罷在候」と、12月13日付の伊藤首相宛書簡で書いている。⁶¹ また、12月25日付の伊藤宛でも、「英国之イチツプトに於ける政策を取る之手段に出る之意」と述べている。⁶² 井上の頭にあったのは、1883年以後、総領事兼代表としてエジプト統治の任にあったクロマー卿によるエジプト改革路線であろう。エ

⁶⁰ 『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p.269～270。

⁶¹ 『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271。

⁶² 『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272。

ジプト統治の実質的な権限は、総領事兼代表を筆頭として、各省庁に「アドバイザー」として配置されたイギリス人官吏が握っていたという。⁶³ クローマー卿のもとで、エジプト経済は再建され、行財政改革や司法改革などが推進されていた。井上は、このイギリスによるエジプト統治を、朝鮮改革のモデルに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改革を推進するため、井上はまず「妨害物之動作を封鎖」しようとした。⁶⁴ 前述の12月25日付伊藤宛書簡でも、「国王妃を掌中に容之策嘗て於広島申述候通にて最初之目的通りやり付申候」と書いていたが、1895年2月17日付の伊藤宛書簡で、「大院君終に王妃共妨害候之源流故強制したる所謂に御座候」と報告している。⁶⁵

しかし、改革にあたっては、「名義上独立之実を迫」るだけでは足りない。「経済之点」については、「他より又手を出さ」ざるを得ない(12月25日付書簡)。しかし、「財政之紊乱」は「名状すべからず」と認識されていた(1895年2月17日付書簡)。

これに対して、3月3日、伊藤首相は井上公使に宛てて、要旨、つぎのような書簡を送った。⁶⁶

清国はもはや朝鮮のことに介入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英露はかえって容喙しやすい形勢をあらわしている。日本が名実ともに朝鮮の独立を保護して野心を現さなければ、他国が介入することはないが、処置が当を得なければ、たちまち非難攻撃が起こり、朝鮮が諸強国間の問題になるのは明らかである。また、閣下は赴任以来、改革を着々と進めているが、おそれるのは経費がどんどんかさんでいくことである。かねがね「埃及云々ノ御議論」があるが、同国は「悪因結果ナルコト」をよくよく考えてほしい。貸与する金額の処置についても、「主客ノ位地」を明らかにし、国際法上の関係と私法上の契約との別を混同しないようにして

⁶³ 以下、山口直彦、『エジプト近現代史』、明石書店、2006年、pp.215～223。

⁶⁴ 『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p.273～274。

⁶⁵ 『伊藤博文関係文書』第1巻、pp.273～274。

⁶⁶ 「伊藤首相井上公使へ寄スル書簡」、『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556～558。

ほしい。

伊藤はこのように述べて、改革がかえって列強(具体的にはイギリスとロシア)の介入を招きかねないこと、経済的な負担が大きすぎることを批判したのである。

一方、井上の側は、日清戦争の終結を目前にした4月8日、戦後を見通していかなる朝鮮政策をとるべきかを、要旨、つぎのように政府(陸奥外相)に具申していた。⁶⁷

日清両国の開戦は、もともと朝鮮の独立問題からおこった。天皇はこのことを内外に宣言し、政府は単独で朝鮮政府を改良するなど各国に「放言」した。そして、改良を忠告するだけでなく、改良をはかるために「干渉」した。自分も朝鮮政府に対して、独立を強固にする実をあげるためだと「断言」して干渉してきた。ところが、現在、「多少ノ変態」を考究せざるを得なくなっている。ロシア政府は、名実ともに朝鮮の独立を損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一条を日清講和条件の骨子にしようとし、英国もこれに同調しようとしているらしいからである。そうなれば、今後、朝鮮の独立が保全されるか否かは、皆が注目する重要問題となり、諸強国はこれをもって日本の対韓政策を拘束する唯一のカギとするようになるに違いない。

鉄道の建設も、電信の管理も、内政整理の干渉も、みな多少朝鮮の独立権を損傷するに相違ない。したがって、日本は表面上、朝鮮の独立を唱えているが、その実、朝鮮を「属隸」させる野心があるとの「疑心」を抱かせ、宣言と実際の施策とが矛盾しているという批判を受けざるをえないだろう。

⁶⁷ 『日本外交文書』第28巻、pp.396～398、「日清平和後ニ於ケル対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井上伯具申」、『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628～632。

井上このように述べて、守備兵の配置、鉄道電信条約、内政改革の3件について、至急、政府の方針を確定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

前年8月の閣議で確認した「乙」路線には、「独立」という名目と、「保翼扶持」という実質の間に、本来的な矛盾をかかえており、当然、他国の非難を招くことが予想されるが、終戦を目前にして、それがいよいよ具体化しそうな気配を示していたのである。

3. 戦後における朝鮮問題の帰趨

1895年3月下旬からの講和交渉の結果、4月17日、日清両国は講和条約の調印し、この下関条約の結果、清国はついに朝鮮の独立を認め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他方で日清戦争は、日本にとっては朝鮮の独立・改革を大義名分とした戦争であった。したがって、日本としては、戦後もある意味では、朝鮮独立の永続、列国との協同という方針をとらざるを得ない。列強の監視下で、実質が建前(名目)によって制約されざるを得なくなる。4月23日のロシア・フランス・ドイツによるいわゆる三国干渉でも、日本による遼東半島の所有は、朝鮮の独立を有名無実化するものと主張されていた。

井上は、5月上旬の鉄道電信条約締結交渉の際、「緩裕」な意見を申し出、内政改革についても当分は「緩裕」な態度で余り介入しない方針をとっていると陸奥に伝え、陸奥もこれを了解していた。⁶⁸

陸奥は、当時、井上公使のもとで展開されてきた朝鮮内政改革政策を放棄し、朝鮮独立を列国が共同保障する方式へと、政策転換をはかるべきだと伊藤に進言していたという。しかし、伊藤は朝鮮内政改革政策の放棄には反対であった。朝鮮政府の改革は、ようやく緒についたばかりなので、もう少し秩序が整うまでは、日本人の顧問を置くくらいのことはやむをえないと考えたのである(5月18付陸奥宛電報)。

⁶⁸ 以下、酒田正敏、「日清戦後外交政策の拘束要因」、近代日本研究会編、『年報・近代日本研究 二 近代日本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1980年11月。

5月25日、陸奥は要旨つぎのような宣言を列国に向けて発したいと、電報で伊藤に要請した(5月25日付伊藤宛電報)。その理由はロシアの干渉がいつ来るか予測しがたいという判断にあった。

- ・朝鮮を清国の干渉から救済しようとした開戦目的は下関条約によって達成された。
- ・朝鮮国の独立の維持は各国に関係するので、朝鮮の改良は各国と協同して行なう。
- ・将来の日本と朝鮮との関係は、条約で得た権利にとどまる。

当時、伊藤は天皇とともに京都にいたが、この判断は天皇が東京に戻ってから行なうとして、陸奥の提案は容れられず、5月25日の在京閣僚会議では、以下のような決定がなされるにとどまった。⁶⁹

朝鮮問題について、将来、我が政府が執るべき政略を速やかに決定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朝鮮独立の永続は各国一般の利害に関係するので、日本は単独で独立維持の責務を負わず、日本政府は利害関係がある他の諸国と協力して朝鮮の事態改善にあたることを表明する。

6月3日、陸奥外相は伊藤首相に対して閣議案を提出し、これに前年8月17日の閣議案を添えた。⁷⁰ 前年8月の閣議で、朝鮮政策は当面(戦争が終わるまでは)、「乙策」をもって進行することに決定したが、今や日清講和と三国干渉の結果、形勢は一変した。しかも、フランス公使から、朝鮮に関してはすべてロシアと提携してはどうかとの意見があった。ついては、新たな問題が出てくる前に、今後も従来どおりの方針をとり続けるのか、それともこの際、「断然干渉政略」をやめ、「通常条約国」の有様にたち戻るのか、とにかく一定の方針を講じておくことは刻下の急務なので、速やかに廟議を確定してほしい。陸奥はこう主張した。

6月4日の閣議は、将来の朝鮮政策について、なるべく干渉をやめ、朝鮮を自

⁶⁹ 『日本外交文書』第28巻、p.434。

⁷⁰ 『日本外交文書』第28巻、pp.440～441。

立させる方針をとること、ゆえに「他動ノ方針」をとることに決定した。⁷¹ あわせて閣議では、この決議の結果として、朝鮮の鉄道電信の件については、強いて実行しないことを期すと決定した。

井上は6月7日にソウルを発って、6月20日に帰国したが、その後、7月6日には朝鮮でクーデタが起こり、井上を後ろ盾として改革を推進していた内閣は更迭された。

8月17日、井上にかわって、三浦梧楼が朝鮮公使に任命された。三浦は9月1日に着任し、井上は9月21日に朝鮮を去った。そして、10月8日、三浦公使のもとで、朝鮮王宮を襲撃し、王妃閔妃を殺害するという計画が実行にうつされた。この閔妃殺害事件は、国際的に知れ渡るところとなり、日本政府の外交政策を揺るがすこととなった。17日、政府は三浦公使の召還と解任を決定し、小村寿太郎政務局長をその公認とした。

そして、10月21日付の「朝鮮事変ニ付意見書」で、伊藤首相は、今後、朝鮮に対しては不干渉路線をとるべきだと主張することになる。⁷² すなわち、なるべく干渉の跡を絶ち、日本政府の処置に対して、関係国から朝鮮の独立を無視するものだという非難が起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日本の将来の地位を保存するためには最も必要だとしたのである。その結果、25日には、電信守備兵を撤退させること、朝鮮の秩序安定と同時に全軍隊を撤退させること、朝鮮の内政には干渉しないことを、列国に対して宣言するに至った。⁷³ こうして、朝鮮政府と欧米列強からの非難をかわすために、日本政府はこれまでの朝鮮政策を放棄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である。

では、こうした新たな事態のもとでの東アジア秩序はいかに構想されるべきか。

伊藤の手元に残った文書を整理した「秘書類纂」のなかには、「朝鮮事変処分案」と題する同名の文書が2点含まれている。とりあえずA案、⁷⁴ B案⁷⁵と名づけておく

⁷¹ 「陸奥外務大臣ノ対韓策」、『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597～598。

⁷² 「朝鮮事変ニ付意見書」、『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158～162。

⁷³ 前掲 酒田正敏、「日清戦後外交政策の拘束要因」。

⁷⁴ 「朝鮮事変処分案」、『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163～168。

ことにする。いずれも閔妃殺害事件後の善後策、すなわち朝鮮対策を構想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A案は、まず第一に、関係国の公使に三浦公使の言は政府の真意ではないと告げ、ロシア・アメリカの干渉を防ぐことが必要だとする。

そのうえで第二に、朝鮮を永世中立国、あるいは協議中立国と称するものとするを提起する。永久中立国については、つぎのような説明が加えられている。

その中立に利害関係のある諸強国が協議の上、「一弱国」の中立を承認し、戦時、平時ともに中立国とし、この中立国がその意思によって他国と「合従連衡」させず、また、捺印した諸強国が交戦するとき、その兵士・軍艦が立ち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ものである。いわば、強国の権力と権力が衝突しあう所を、相互が控除しあう「無権力ノ所」とし、双方がともに侵す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ものである。

まずA案は、具体的な構想として、日露英仏米独6国による朝鮮中立化を提起する。そのうえで、日本が朝鮮に対してこれまで取ってきた努力が水泡に帰してしまうという問題点と、諸強国、とくにロシアが戦時に朝鮮国境を侵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利点を指摘する。

第三に、ロシアの干渉を許し、日露がそれぞれ朝鮮に干渉した場合、エジプトにおける英仏の関係のように、結局は大破綻を来たさざるを得なくなると予測する。しかし、できるだけ円満な交渉によって衝突の時期を延ばし、軍備を整頓して、実力を回復する期を待つ利点があるとする。日清戦後の現状では、ただちに日露戦争が到来する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こうして、具体的な朝鮮政策としては、関係6国による朝鮮中立国化案と、日露による朝鮮干渉調整案を提出する。ともに清国の存在はすでになく、代わってロシアが問題の中心に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しかし、いずれにしてもこの「二途」は、ともに「窮策」に過ぎず、早晚、朝鮮問題をめぐる日露の開戦は避けがたい。したがってこれは、戦後すぐに次なる戦争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事態

75 「朝鮮事変処分案」、『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下巻』、pp.169～191。

における「一時ノ彌縫策」として提起されていた。

つぎにB案であるが、これは、① 朝鮮を永久中立国あるいは協議中立国とする、② 日本と朝鮮の関係を、イギリスとエジプトの関係のようにする、③ やむを得なければ、朝鮮をポーランドのようにする、という3策を提起したものである。① については、A案と同じである。② については、エジプトが想起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A案と同様ではあるが、より立ち入ってエジプトに対するイギリスの関係を検討し、これを日本の朝鮮政策の参考にしようとし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そこでは、つぎのような説明がなされている。

現在、エジプトの国際法上の位置は、トルコ帝国の一部であり、これをイギリスが監督しているものと言う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エジプトの軍隊はトルコ軍隊の一部として扱い、エジプトの租税はトルコ皇帝の名をもって付加し、トルコ帝の締結した条約はエジプトにおいても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エジプトは公法上、独立の資格をもたない。1879年、英仏「二国監督」制を用いるようになり、両国の監督者がエジプト国務大臣の会議に参加した。1881年、対外硬派が紛乱をおこした。英国は仏国に協同して鎮定することを申し入れたが、フランスは応ぜず、英国は独力でこの反乱を鎮定し、エジプトは事実上、英国の掌握監督内に入った。1883年、トルコ帝の勅令によって二国監督制は廃止され、1884年には英国がエジプトを永久中立国とすることを提起した。1885年、イギリスはエジプト処分に関してとくに協議したが、その要点は、エジプトがトルコ領であることを認めると同時に、英国の利益を強固にするために必要な勢力をエジプトにもち、かつ強固なエジプト政府を立て、外国(英国を除く)の干渉をさけようとするにであった。英国はトルコ帝がエジプトにもつ主権を認め、その代償として英国兵がエジプトを事実占領することを認める締約をトルコ帝と結んだ。この条約により、英国は自己の欲する間、エジプトを事実占領することができる。

以上のようにイギリスとエジプトの関係を歴史的に整理したうえで、日本は朝鮮の独立を認めること、朝鮮を日本に付属させる野心はないこと、各国の利害を害しないことを主張し、これと同時に、朝鮮に「内乱外寇」の恐れがある間は日本が占領することが適法であると朝鮮に認めさせておくこと、を提起する。

③ のポーランド化は、やむを得ない場合(つまり、①②が困難な場合)の案とし

て出されている。ポーランドはロシア、オーストリア、プロシアの3国が3回にわたってことごとく分割してしまったという。

では、朝鮮をどうすべきか。この案は、朝鮮の分割は、ポーランドの分割とはまったく異なっているとしている。「東洋平和ノ維持」を計ろうとするならば、「東亜」で最も「薄弱ナル部分朝鮮」において「外科的施術」を行い、「病根」を断つ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朝鮮において日本と清国が対峙する時はすでに過ぎ去り、今、日本とロシアの対立が切迫しているので、「外科的施術」はやむを得ない。そこで、「東洋平和ヲ維持」するためという理由のもと、日露英3国で朝鮮を分割しようというのである。

いわば、①は朝鮮＝スイス・ベルギー化案、②は朝鮮＝エジプト化案、③は朝鮮＝ポーランド化案である。①②は朝鮮の存続を前提としているのに対して、③はその消滅が想定されている。しかし、いずれも日本単独での朝鮮支配は断念されている。また、いずれもヨーロッパの前例を参酌しつつ、これになぞらえて東アジアの秩序を構想していることが特徴的である。

では、現実はどうのように進行したのか。すでに朝鮮の内部では、日本にたよって近代化をすすめようとする勢力と、ロシアにたよろうとする勢力との対立が深まっていたが、閔妃殺害事件以後、次第にロシアの影響力が拡大していった。1896年2月には、改革派の金弘集内閣がクーデタで倒壊し、かわって親露派内閣が成立し、さらに朝鮮国王がロシア公使館に移ってしまうという事態となった(翌年4月まで)。こうしたなか、朝鮮支配についてロシアとの関係調整をはかることが不可欠となってきた。そこで、以後、小村・ウェーバー覚書(1896年5月)、山県・ロバノフ議定書(1896年6月)、西・ローゼン協定(1898年4月)などが重ねられていくことになる。その意味で、A案が第三にあげた日露による朝鮮干渉調整案が展開していったともいえる。そして、その先には、A案が想定したごとく、やがて朝鮮支配をめぐる日本とロシアが開戦するという事態が到来する。

V. 結論

日清戦争前後の時期(1892年8月～96年9月)、首相をつとめていた伊藤博文のもと

には、イギリスの外務次官カーゾンの著書“Problems of The Far East”(極東問題、1894年刊)の抄訳がもたらされていた。⁷⁶「朝鮮政治之未来 朝鮮ノ不規則ナル政治上ノ位置」との副題が付された資料である。本文中には、まだ日清両国開戦の布告には接していないが、すでに陸海両軍が衝突を始めたとの報を得たという記述があるから、カーゾンがこの部分を執筆していたのは、1894年7月末の時期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この資料は、朝鮮に関する諸問題のうちで最も重要な問題は、「諸強国間ニ弄バラタ」この「羽子」ノ政治上未来ノ運命」だとしている。すなわち、朝鮮は羽子板の羽のように、諸強国の利害関係によって、保護を受けたり、おべっかを使われたり、凌辱を被ったり、寵愛を受けたりしているというのである。カーゾンは、朝鮮のような状態の国は、世界中どこにもないという。すなわち、「独立国」でありながら、かつ「属国」であるなどという「政治上最モ不規則ナル状態」に落ちている国は、他にないという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事態が朝鮮に発生している理由を、つぎのように説明する。

朝鮮に対して外部の諸強国は、君主権、監督権、保護権、最恵国交際、同等の地位などを主張しているが、それは、これらすべての権利を是認すべき事情が朝鮮にあるからである。すなわち、この奇怪な現象は、第一に、朝鮮が清国・ロシア・日本の3国の間に横たわっているという地理上の特殊な位置に由来している。第二に、朝鮮に介入しない方針をとっていた清帝国が、他の諸強国による朝鮮「蚕食」の動きに対し、従来の路線を翻して以前とは矛盾する朝鮮政策をとったために発生し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述べて、カーゾンは「万国演劇ノ主人公」は清国・ロシア・日本の3国であり、朝鮮はその「舞台」として「強迫的ニ使用」されているのだとした。したがって、日・清・露3国が占めている位置とその主張を分析すれば、「強者」である

⁷⁶ 「極東問題」、『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 中巻』、pp.133～181。原題は George N. Curzon : 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Korea—China, Longmans, Green, and Co, 1894. カーゾンは、インド次官当時の1892年9月に来日し、その折、伊藤にも会っている。(大澤博明、「日清共同朝鮮改革論と日清開戦」、『熊本法学』75、1993年3月)。

日本が、つねに「弱者」である朝鮮に損失を負わせ、「巧智」と「奸策」によって遂行している「乱麻」のような各種の政策のあり方がよくわかるとする。

カーズンはこのように書いて、以下、まず、古代より日清開戦直前までの日本と朝鮮の関係を概観する。そこでは、朝鮮側の日本に対する悪感情や、日本人の高慢などが指摘され、「日韓両国間」の関係は、「清韓両国民ノ間ニ成立セル親睦ナル関係」とは比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よくない)とされる。つづいて、中国が朝鮮の「後見人」の地位にあることは、歴史が証明しているとして、その実証をあげつつ、近代にはいつてからの朝鮮政策の混乱振りに言及する。そのうえで、近年のロシアの「侵略的計画」に言及し、現在は侵略時機の到来を待っている状況だとする。

では、「大英国」はどのような「地位」にあるのか。カーズンは、朝鮮のように多くの良港をもち、未開発の「富源」をもつ国が、他国の手に落ちたら、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イギリスの通商貿易は大きな影響を被るとして、ロシアによる政治的・経済的妨害は座視できないとする。

今や朝鮮は、他の勢力によってようやく抑制されているロシアの「貪欲心」、清国の強大な「潜勢力」、そして、嫉妬深く虚名に汲々たる日本の「利己主義」と対抗せざるを得ない。こうしたなかで、朝鮮が存続する方法は、清国との主従関係を保持し、「清韓両国ノ結合」を強固にするしかない。こう述べて、カーズンは清韓関係の復活を示唆する。また、東アジア情勢を安定させるべき展望は、日清が提携して「共敵」ロシアにあたることだと結論づける。

カーズンの提起自体は、総じて東アジアにおけるイギリスの位置の安定化と結びつく現状維持的な色彩の濃いものであるが、その観察については、朝鮮をめぐる清国・ロシア・日本3国の関係の真相および深層を穿つものとなっている。

前近代の東アジアには、中国を中心と国際秩序があった。それは、中華である中心国家中国が周辺の諸国家・諸民族を夷として従属的に編成するものであった。ただし、この伝統的な華夷秩序は、中華による権力的な支配というよりも、儀礼的な上下関係のもとで、むしろそれぞれの自立性と独自性が保証されるシステムであった。東アジアにおいて、直接、この華夷秩序に編入されていたのは、琉球と朝鮮である。朝鮮は中国を宗主国とする関係にあった。また、琉球は独立

の王国、琉球王国であったが、一方で朝鮮と同じように中国に従属しつつ、他方で日本の薩摩藩の支配をうけると日清両属関係のもとにあった。

この華夷秩序は、19世紀半ば以降、東アジアに迫ってきた西欧列強の圧力のもとで、解体・再編の過程にはいつていく。朝鮮・琉球と中国との関係が再編されるのは、江華島事件を契機とする日朝修好条規の締結と、琉球処分とによってであった。これは、ともに日本の主導性のもとで推進された。1876年、日本は朝鮮に迫って修好条規を締結し、朝鮮は「自主ノ邦」だとした。これは、中国から朝鮮を切り離すということであったから、清国側はこれを認めない。一方、1879年、日本は琉球を自国の領土に組み込み、清国からの切り離しをはかったが、やはり清国側はこれを認めない。以後この問題をめぐって、日清両国の間では衝突が続き、結局、清国側がこれらを最終的に認めるのは、日清戦争の敗北によってであった。

その過程で、日清両国は、朝鮮における1882年の壬午軍乱と1884年の甲申政変をめぐって、二度にわたってぶつかりあうことになった。そして、この朝鮮問題の処理は、琉球問題の処理と複雑に絡まりあいながら、東アジアに葛藤を引き起こしていった。同時に、その過程は、東アジア情勢の推移に、西欧列強の影響が及んでくる過程でもあった。朝鮮をめぐる日清関係には、1880年前後から西欧列強が関与するようになり、また、1883年には清仏戦争がおこる。そして、1885年にはイギリスによる朝鮮巨文島の占拠と、ロシアの朝鮮・清国への接近が東アジア情勢を揺るがしていく。

こうした情勢のなか、日本の政権中枢部では、先行する西欧世界が領導してきた国際関係を参酌しつつ、東アジアの秩序を構想することが試みられた。その一つが、朝鮮をエジプトになぞらえて、イギリスのエジプト政策から日本の朝鮮政策を導きだそうとする手法であった。また、強国の利害関係の交錯点を安定化させるプランとして登場してきたのが永世中立国化であり、その場合、適用対象とされた朝鮮は、先例であるスイス・ベルギーになぞらえられることとなった。

しかし、この朝鮮永世中立化の構想は、もともと当該国の意向というよりも、利害が対立する関係強国の側の意向から発想されたものであった。具体的には、東アジア秩序の構想としての朝鮮の永世中立化構想は、初発に提起された

1882年9月の段階においては、日清米英独の5国を対象国にするものとして構想されたが、1890年3月の山県意見書段階では英独日清の4国となっている。共通するのは、ロシアを除外していることと、清国を組み込んでいることである。それは、基本的には、朝鮮をめぐる対立する日清関係に、朝鮮と条約を結んでいる欧米諸国を引き込んで、東アジア秩序の安定化をはかりつつ、ロシアの朝鮮侵出を阻止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といえよう。なお、日清開戦直後の1894年8月の陸奥による閣議案では、欧米諸国と日清両国が中立化構想の対象国となっており、具体的な欧米の国名は明示されていない。これに対して、日清戦争後の、閔妃殺害事件後とみられる構想では、日露英仏米独が対象国となっている。つまり、清国がはずれ、ロシアが組み込まれているのである。すなわち、もはや清国は朝鮮に影響力を行使しえないものと見なされ、かわって英仏米独を引き込んでロシアの侵出を規制することが、そこには含意されているもの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日本はこうした構想を具体化する方向は指向せず、ロシアとの利害調整をはかりつつ、むしろ日清戦争後には朝鮮側から提起されることとなっていく永世中立化の構想を拒絶する側にまわっていくのである。

| 참고문헌 |

1. 研究史の整理

1) 日清戦争研究の基本動向

日本において、戦前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批判を踏まえ、史料にもとづく本格的な日清戦争研究が展開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60年代にはいつてからのことである。外交史料を中心に分析を加えた山辺健太郎『日韓併合小史』(1966)、およびこれを継承して定説とも言うべき日清戦争像を打ち立てた中塚明『日清戦争の研究』(1968)が、そうした研究を代表している。

中塚は「日清戦争の全過程、すべての局面を、専制天皇制の政治の延長として解明すること」を目指し、日清戦争が「明治初年いらいの専制天皇制の内外政策、とくに対朝鮮・対中国政策と不可分のもの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そして、1890年恐慌にともなう日本の産業資本の朝鮮市場獲得要求の熾烈化と、甲申事変後の朝鮮からの日本の政治的後退との矛盾が、日清戦争を必然化したとする主張や、日清戦争の前史を条約改正をめぐる天皇制と議会・政党との抗争の歴史にもとめる主張は、ともに日清戦争を専制天皇制が明治初年以来追求してきた朝鮮抑圧政策のうえてみえていないとして、従来の研究の欠陥をきびしく批判した。

他方、日清戦争に諸勢力がいかにかかわったかについては、戦前、信夫清三郎が『日清戦争』(1934)と『陸奥外交』(1935)で、政府と軍部の二重外交という観点から開戦外交を論じ、これは同『増補日清戦争—その政治的・外交的観察』(1970)でも展開された。また、藤村道生『日清戦争』(1973)、同『日清戦争』(1976)は、日清戦争の性格を、華夷秩序を打破し、朝鮮における支配権を清国と争う局面、朝鮮・台湾の領土を掠奪する局面、帝国主義列強と中国・朝鮮の分割を争う局面という3局面の重層的構造からとらえようとし、また、伊藤博文・陸奥宗光による戦争指導を強調した。

しかし、こうした研究にもかかわらず、日清戦争への注目度は、その規模や世界史への規定性という点で、日露戦争に比して相対的に低かった。ところが、

近年、日清戦争の占める歴史的な重要性が著しく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すなわち、第一に、日清戦争を東アジアの国際関係転換の画期としてとらえる角度から、第二に、その後の日本のアジア政策、とくに戦争政策にとってこの戦争が占めた位置の大きさを強調する観点から、第三に、日本が「国民国家」として確立する上で日清戦争がもった画期性に注目する立場から、第四に、戦争をめぐる社会史・民衆史という角度から、第五に、日本社会における対外観・国家観の形成・展開にこの戦争が占める位置への注目から、日清戦争研究の意義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本研究は、以上のような日清戦争研究の基本動向を踏まえて、日清戦争前後の日本政治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の構想に検討を加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以下、当該テーマとのかかわりで、さらに近年の研究動向を整理しておくことにしよう。

2) 開戦経過に関する研究

日清開戦は政府・軍部が周到に準備したものだとする中塚の見解は、ほぼ通説の位置をしめてきたが、近年、これに対する批判的研究が目立ってきている。「日清戦争100年にかかわるシンポジウムの成果をまとめた『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1997)の総論「日清戦争の歴史的位置」で、檜山幸夫は「開戦過程が複雑であること、なかでも日本の開戦意思決定がどの段階でなされたのか、想定された戦争規模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戦争目的は何であったのか、という基本的な事項についても不明な点が多く、諸説乱立の状態にある」と指摘している。すなわち、中塚の「用意周到に準備された開戦論」という通説的理解に、檜山はじめ高橋秀直・大澤博明らが異議を唱える構造にあるとするのである。

大澤博明「伊藤博文と日清戦争への道」(1992)は、「日清戦争を勃発させるの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た日本政府の外交政策とは何であったのか」と問い、これに「94年2月段階での伊藤首相主導にかかる朝鮮政策の転換、即ち、日清共同朝鮮内政改革論にあった」と答えた。また、「日清共同朝鮮改革論と日清開戦」(1993)でも、同様な観点から実証を行い、「対清戦争を本来起す意図が無かった日本が戦争を引き起す理由は、共同改革実現の契機獲得の失敗という観点から捉え直されね

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当初より開戦を志向し次々と降りかかってくる障害を克服しつつ意図通り開戦に導いた「陸奥外交」なるものは『蹇蹇録』史観”“陸奥史観”にすぎないとして、その見直しを求めたのである。

また、高橋秀直『日清戦争への道』(1995)も、日清戦前の日本の対外進路の多様な可能性という視座から従前の諸研究を批判した。たしかに、井口和起「日清戦争をとりまく国際環境」(1997)が言うように、中塚と高橋の間には、明治初期以降、日清戦争に至る過程全体の把握はもとより、開戦過程そのものの把握にも大きな相違があるといえよう。

3) 対外観・対外認識に関する研究

開戦外交そのものとは別に、国民の対外観を問題とすべきだとする主張もなされている。

初めての対外戦争の経験が、一方で「国民」の一体化とその核としての天皇の威信を確立させ、他方で、中国蔑視的なアジア観を決定づけていったとするのである。

中村尚美『明治国家の形成とアジア』(1991)は、「たんに天皇制の侵略主義を指摘するだけでは、納得しきれない部分が残る。それは、戦争にたいする国民の思想状況をぬきにしては、戦争それ自体の展開も不可能であったわけで、したがってこの戦争が「国民戦争」としてたたかわれたのはなぜかという問題を明らかにせずには、この戦争の意義をとらえることは不可能だと考える」として、国民の好戦性ないし侵略主義が、どのような状況の中で、どのように形成されてきたのかを問題にしようとした。

額原善徳「日清戦争期日本の対外観」(1994)も、「日清戦争中における日本の対外観、特に在野思想家・言論人のそれについては未だ十分な研究が為されているとは言い難く、(中略)侵略主義的主張・好戦論的世論煽動等々と半ば自明の問題として簡単に触れられ処理されてきた」として、対外観を立ち入って分析・解明することにより、当該時期の日本外交の背後にどのような対外観があったのかを探ろうとした。扱っているのは、福沢諭吉の文明論的対外論、徳富蘇峰の積極的外交論、陸羯の北守南進論である。

これに対して、伊藤之雄「日清戦前の中国・朝鮮認識の形成と外交論」(1994)は、改進黨・自由黨系の新聞や雑誌・藩閥政府系新聞・『福沢諭吉全集』・『陸羯南全集』などを用いて、民間の中国・朝鮮認識の形成と外交論の構造的変化を明らかにし、藩閥勢力の中国・朝鮮認識及び外交論と比較して、両者の類似点の大きさを指摘した。また、日清戦争前の1890年代、朝鮮において清国が影響力を拡大するのを黙認しており、次善の策として日清と列強による朝鮮の中立化構想が論じられたとした。

同「日清戦争以後の中国・朝鮮認識と外交論」(1994)は、同様な手法で日清戦争中から1900年の北清事変の前までの中国・朝鮮認識と外交論に分析を加え、朝鮮を日本の保護国にしていこうとする方向では、藩閥も民間も一致しており、争点は中国の現状をどう認識し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という、中国問題にあったとした。

4) 国際関係・国際秩序に関する研究

日清戦争を単に対朝鮮政策・対中国政策という政策レベルではなく、より広い国際的な視野で捉えるべきだとする研究が近年、とくに強まっている。すなわち、日清戦争に至る過程を、東アジア世界の伝統的国際秩序である「華夷秩序」が、西欧の国際秩序である「国際法秩序」によって解体・再編されていく過程としてとらえようとする視点である。

濱下武志「東アジア史のなかの日清戦争」(1997)は、明朝・清朝の皇帝を中心として東アジア・東南アジアの広域地域にかけて作られた朝貢・冊封体制(東アジア地域システム)を歴史的な背景としておさえ、これが変動させられていく歴史的動態とその要因を、東アジア地域の歴史的ダイナミズムのなかを探ろうとした。そして、日清戦争を「江華島事件から顕在化する地域変動の政治過程の帰結であり、宗主権と国家主権との間の交渉および衝突であった」と捉えた。

また、井口和起「日清戦争をとりまく国際環境」(1997)も、世界史的な関係のなかで日清戦争をとらえるべきことを強調し、「西欧国際政治体系」・「華夷秩序」(「中華帝国」の体制)・「大君外交体制」(日本)という3つの体系が全体として「西欧国際政治体系」に再編成されていく過程として、これを理解した。

ところで、「華夷秩序」の再編という場合に問題となるのは、日本・清国と朝鮮との関係である。原田環「日清戦争による朝清関係の変容」(1997)は、1880年以前から日清戦争後までを見通して、朝鮮と清との宗属関係の解体過程を概観した。また、大澤博明「日清開戦論」(1997)は、朝鮮永世中立化構想から日清共同改革論への転換過程を開戦とからめて論じた。

この朝鮮中立化構想については、すでに津田多賀子・多田嘉夫・長谷川直子らの論文があったが、大澤博明は「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一八八二～八四年―」(1995)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と近代日本外交」(1998)で、これに分析を加えた。また、岡本隆司『属国と自主のあいだ―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2004)は、1882～94年の間の清韓関係の変質過程を清国側から照らし出したが、これにつづいて同「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日清戦争以前の清韓関係に着眼して―(2006)で、1882年以後日清戦争の勃発にいたる時期に、各方面から提起された朝鮮中立化構想に検討を加えた。東アジア近代の秩序構造を考えるにあたって、朝鮮の国際的地位が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は、避けて通れない重大な問題だとして、「朝鮮中立化構想」の意味を問うのである。

他方、日清戦争後から韓国併合に至る朝鮮植民地化の過程を分析した森山茂徳『近代日韓関係史研究』(1987)は、甲午改革や日清戦争後における朝鮮中立化案の提起と挫折の過程を扱った。

2. 主要著作・論文リスト

信夫清三郎(1934)、『日清戦争』、福田書房。

信夫清三郎(1935)、『陸奥外交』、叢文閣。

田保橋潔(1940)、『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下、朝鮮総督府中枢院(文献資料調査会復刻、1963)。

田保橋潔(1951)、『日清戦役外交史の研究』、刀江書院。

彭沢周(1960)、「清仏戦争期における日本の対韓政策」、『史林』43-3。

彭沢周(1963)、「甲申政変をめぐる井上外務卿とフランス公使との交渉」、『歴史学研究』282。

山辺健太郎(1966)、『日韓併合小史』、岩波書店。

中塚明(1968)、『日清戦争の研究』、青木書店。

岡義武(1954～1955)、「日清戦争と当時における対外意識」(1)・(2)、『国家学会雑誌』68-3・4、5・6。

彭沢周(1969)、『明治初期日韓清関係の研究』、塙書房。

信夫清三郎(藤村道生 校訂)(1970)、『増補 日清戦争』、南窓社。

坂野潤治(1971)、『明治憲法体制の確立』、東京大学 出版会。

藤村道生(1973)、『日清戦争』、岩波書店。

信夫清三郎 編(1974)、『日本外交史』I・II、毎日新聞社。

広瀬靖子(1974)、「日清戦争前のイギリス極東政策の一考察—朝鮮問題を中心として」、『国際政治』51。

藤村道生(1976)、「日清戦争」、『岩波講座 日本歴史』16・近代3。

坂野潤治(1977)、『明治・思想の実像』、創文社。

安夢弼(1977)、「イギリスの巨文島占領事件(1885～1887)」、『経済論集』26、大東文化大学 経済学会。

酒田正敏(1978)、『近代日本における対外硬運動の研究』、東京大学 出版会。

檜山幸夫(1978)、「日清戦争における外交政略と戦争指導—移行段階の講和条件確定問題を中心に」、『近代日本形成過程の研究』、雄山閣。

檜山幸夫(1979・1980)、「日清戦争宣戦詔勅草案の検討」1・2、『古文書研究』13・15。

佐々木揚(1980)、「日清戦争前の朝鮮をめぐる露清関係」、『佐賀大学教育学部研究論文集』28-1[I]。

酒田正敏(1980)、「日清戦後外交政策の拘束要因」、『年報・近代日本研究二 近代日本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佐々木揚(1981)、「イギリス極東政策と日清開戦」、『佐賀大学教育学部研究論文集』29-1[I]。

原田環(1981)、「朝・中「兩載体制」成立前史—李裕元と李鴻章の書簡を通して」；飯沼二郎・姜在彦編、『近代朝鮮の社会と思想』、未来社。

朴宗根(1982)、『日清戦争と朝鮮』、青木書店。

- 佐々木揚(1982)、「ロシア極東政策と日清開戦」、『佐賀大学教育学部研究論文集』30-1[II]。
- 津田多賀子(1982)、「一八八〇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開と列強」、『史学雑誌』91-12。
- 佐々木揚(1983)、「極東におけるロシア帝国主義の発端(I)」、『近代中国』14。
- 岩壁義光(1983)、「自由党の日清講和条約構想—森本駿の講和構想を中心として」I・II、『政治経済史学』203。
- 檜山幸夫(1984)、「伊藤内閣の朝鮮出兵決定に対する政略論的検討」上・下、『中京法学』18-1、18-2・3。
- 檜山幸夫(1984)、「朝鮮出兵事件と海外派兵体制の形成」、『中京法学』18-4。
- 檜山幸夫(1984)、「日清戦争と戦時体制の形成」、『中京大学社会科学研究』4-3。
- 原田環(1984)、「十九世紀の朝鮮における対外的危機意識」、『朝鮮史研究会論文集』21。
- 原田環(1985)、「一八八〇年代前半の閔氏政権と金允植」、『朝鮮史研究会論文集』22。
- 中島昭三(1985)、「井上毅と朝鮮問題」、『國學院法政論叢』6。
- 檜山幸夫(1986～1987)、「第一次朝鮮出兵事件について」1～4、『中京法学』20-3、4、21-1, 2。
- 永井和(1986)、「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関係の変容と日本の近代」、『日本史研究』289。
- 森山茂徳(1987)、『近代日韓関係史研究』、東京大学 出版会。
- 松浦玲(1987)、『明治の海舟とアジア』、岩波書店。
- 佐々木揚(1987)、「一八八〇年代における露清関係」、『韓』106。
- 朴日根(1987)、「巨文島事件と李鴻章の対韓政策」、『韓』106。
- 茂木敏夫(1987)、「李鴻章の属国支配観——一八八〇年前後の琉球・朝鮮をめぐる」、『中国—社会と文化』2。
- 檜山幸夫(1988)、「日清開戦期における国内世論と戦争指導」;同編(1988)、『現代の法と政治』、中京大学 法学部。
- 高橋秀直(1988)、「一八八〇年代の朝鮮問題と国際政治—日清戦争への道をめぐって」

て」、『史林』71-6。

芝原拓自(1988)、「対外観とナショナリズム」; 同他編『対外観 日本近代思想大系 12』、岩波書店。

檜山幸夫(1989)、「七・二三京城事件と日韓外交」、『韓』115。

高橋秀直(1989)、「壬午事変後の朝鮮政策」、『史林』72-5。

高橋秀直(1989)、「壬午事変と明治政府」、『歴史学研究』601。

高橋秀直(1990)、「形成期明治国家の軍備拡張政策」、『史学雑誌』99-8。

中村尚美(1991)、『明治国家の形成とアジア』、龍溪書舎。

坂本一登(1991)、『伊藤博文と明治国家形成』、吉川弘文館。

檜山幸夫(1991)、「日清開戦と陸奥宗光の外交指導－国家意思決定過程を中心に」、『政治経済史学』300。

伊藤之雄(1991)、「初期議會期の自由党」、山本四郎編、『近代日本の政党と官僚』東京創元社。

大澤博明(1991)、「天津条約体制の形成と崩壊」1・2、『社会科学研究』43-3, 4。

中塚明(1992)、『『蹇蹇録』の世界』、みすず書房。

高橋秀直(1992)、『日清戦争開戦過程の研究』、神戸商科大学 経済研究所。

糟谷憲一(1992)、「近代的外交体制の創出－朝鮮の場合を中心に」、荒野泰典他編、『アジアのなかの日本II 外交と戦争』、東京大学 出版会。

多田嘉夫(1991～1994)、「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江華島事件及び壬午甲申京城事変をめぐって」一～四、『國學院法研論叢』18～21。

多田嘉夫(1992)、「甲申政変と井上毅」、『明治国家形成と井上毅』、木鐸社。

小林道彦(1992)、「日清戦後の大陸政策と陸海軍」、『史林』75-2。

大澤博明(1992)、「伊藤博文と日清戦争への道」、『社会科学研究』44-2。

大澤博明(1993)、「対英依存から日英同盟へ」、坂野潤治他編、『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2 資本主義と「自由主義」』、岩波書店。

大澤博明(1993)、「日清共同朝鮮改革論と日清開戦」、『熊本法学』75。

崔碩莞(1993)、「日本政府の対朝鮮政策と甲申政変」、伊藤隆編(1993)、『日本近代史の再構築』、山川出版社。

大谷正(1994)、『近代日本の対外宣伝』、研文出版。

- 大谷正・原田敬一 編(1994)、『日清戦争の社会史』フォーラム・A。
- 原剛・安岡昭男(1994)、「日清戦争関係文献目録」、『軍事史学』30-3。
- 伊藤之雄(1994)、「日清戦前の中国・朝鮮認識の形成と外交論」、『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京都大学 人文研究所。
- 伊藤之雄(1994)、「日清戦争以後の中国・朝鮮認識と外交論」、『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119(史学40)。
- 長谷川直子(1994)、「壬午軍乱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朝鮮史研究会論文集』32。
- 穎原善徳(1994)、「日清戦争期日本の対外観」、『歴史学研究』663。
- 西里喜行(1994)、「黎庶昌の対日外交論策とその周辺—琉球問題・朝鮮問題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53-3。
- 藤村道生(1995)、『日清戦争前後のアジア政策』、岩波書店。
- 高橋秀直(1995)、『日清戦争への道』、東京創元社。
- 高橋秀直(1995)、「防殺令事件と伊藤内閣」、『日本国家の史的特質』、思文閣。
- 大澤博明(1995)、「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一八八二～八四年」、『熊本法学』83。
- 斎藤聖二(1995)、「日清戦争への陸軍の準備について」、シオン短期大学、『創造』24。
- 小原晃(1995)、「日清戦争後の中朝関係—総領事派遣をめぐって」、『史潮』新37。
- 井上晴樹(1996)、『旅順虐殺事件』、筑摩書房。
- 森山茂徳(1996)、「日清戦争時の日本軍部の対韓政策」、『独協法学』43。
- 大畑篤四郎(1996)、「日清戦争後の東アジア国際秩序の変動—不平等条約体制を中心に」、『史潮』新39。
- 目良誠二郎(1996)、「日清戦争をめぐる歴史の選択肢と歴史学・歴史教育—朝鮮の永世中立化策の現実性と関わって」、『黒船と日清戦争 歴史認識をめぐる対話』未来社。
- 佐々木揚(1996)、「日清戦争をめぐる国際関係—欧米の史料と研究」、『近代中国研究彙報』18。
- 崔碩莞(1997)、『日清戦争への道程』、吉川弘文館。

東アジア近代史学会 編(1997)、『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下、ゆまに書房。

檜山幸夫(1997)、「日清戦争の歴史的位置」、『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

濱下武志(1997)、「東アジア史のなかの日清戦争」、『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

井口和起(1997)、「日清戦争をとりまく国際環境」、『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

原田環(1997)、「日清戦争による朝清関係の変容」、『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上。

檜山幸夫(1997)、「日清戦争における外交政策」、『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下。

大澤博明(1997)、「日清開戦論」、『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変容』下。

檜山幸夫(1997)、『日清戦争—秘蔵写真が明かす真実』、講談社。

中塚明(1997)、『歴史の偽造をただす』、高文研。

原田環(1997)、「清と朝鮮の宗属関係について」;同(1997)、『朝鮮の開国と近代化』、溪水社。

大江志乃夫(1998)、『東アジア史としての日清戦争』、立風書房。

大澤博明(1998)、「朝鮮永世中立化構想と近代日本外交」、『青丘学術論集』12。

佐藤三郎(1998)、「日清戦争後の日本の対中国提携志向」、『日本歴史』601。

伊藤之雄(1999)、『立憲国家の確立と伊藤博文 内政と外交一八八九〜一八九八』、吉川弘文館。

井口和起(2000)、『日本帝国主義の形成と東アジア』、名著刊行会。

大澤博明(2001)、『近代日本の東アジア政策と軍事—内閣制と軍備路線の確立』、成文堂。

檜山幸夫 編(2000)、『近代日本の形成と日清戦争 戦争の社会史』、雄山閣。

森山茂徳(2001)、「『日韓共同研究叢書2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 I』、慶應義塾大学出版会。

斎藤聖二(2003)、『日清戦争の軍事戦略』、芙蓉書房出版。

岡本隆司(2004)、『属国と自主のあいだ』、名古屋大学 出版会。

濱下武志(2004)、「日清戦争と東アジア」、小風秀雅編、『日本の時代史23 アジアの帝国国家』、吉川弘文館。

大日方純夫(2004)、「宮島誠一郎の対外認識と対外活動——一八八〇年前後の対清問題を中心に」、『幕末維新期の情報活動と政治構想』、梓出版社。

大谷正(2006)、『兵士と軍夫の日清戦争』、有志舎。

岡本隆司(2006)、「『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日清戦争以前の清韓関係に着眼して」、『洛北史学』8。

村中朋之(2006)、「山県有朋の『利益線』概念—その源泉と必然性」、『軍事史学』165。

谷渕茂樹(2006)、「日清開戦をめぐる李鴻章の朝鮮政策—李鴻章の朝鮮認識と日本」、『史学研究』253。

菰田将司(2006)、「日本から見た日清戦争後の李鴻章について」、『史境』53。

原田敬一(2007)、『日清・日露戦争』、岩波書店。

3. 主要史料の紹介

1) 『梧陰文庫・井上毅関係文書』(国学院大学 図書館所蔵)

伊藤博文・山県有朋らのプレーンで、太政官大書記官・参事院議官・内閣書記官長などをつとめた井上毅旧蔵の文書・史料類。1882年の壬午軍乱の際には、外交交渉の段取りを構想し、重要文書を代筆するとともに、自ら全権大使井上馨の随員として朝鮮に渡って交渉の現場に身をおいた。また、1884年の甲申政変の際にも、朝鮮に渡って事後処理にあたるとともに、全権大使井上馨を補佐して日朝交渉にあたり、漢城条約の起草にあずかった。ついで全権大使伊藤博文に随行して天津条約の起草にもかかわった。このように対清・対朝鮮関係の外交問題に深くかかわったことから、その文書中には、40点を越える壬午軍乱関係史料(A 826～869)、100点以上の甲申政変関係(天津条約関係も含む)史料(A 708～825)が含まれている。また、山県有朋の外交政略構想などの起草にもあたっており、日清戦争に至る時期の外交問題・外交構想を究明する際には、その書簡とあわせて

不可欠な史料群となっている。ただし、日清戦争時には文部大臣であり、戦争終結を目前にして病没したことから、日清戦争そのものにかかわる史料はほとんどない。

2) 『陸奥宗光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 憲政資料室所蔵)

1892年8月、第二次伊藤内閣の外務大臣となり、日清戦争後の1896年5月まで、日清戦争前後の外交の最前線にあった(1895年6月から96年4月までは、病気のため西園寺公望が臨時代理)陸奥宗光の関係史料。当該期の外交一般史料32点、朝鮮問題関係史料159点、日清戦争関係史料39点、日清講和関係史料62点、三国干涉関係史料64点など、意見書・閣議案・公信類のほか、外務省の機密文書等を引用しつつ日清戦争の全過程をまとめた著書『蹇蹇録』の草稿類や、山県有朋の軍備意見など、多数の重要史料を含む。

3) 『井上馨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 憲政資料室所蔵)

1879年から85年まで外務卿、ついで87年まで外務大臣をつとめ、日清戦争中の1894年10月から戦後の95年10月まで朝鮮駐在大使の任にあった井上馨の関係文書。明治前期の朝鮮関係史料15点、日清戦争前後の朝鮮関係史料29点、日清戦争関係史料5点のほか、井上宛の書簡など多数を含む。

4) 外務省 編(1953)、『日本外交文書』第27巻～第28巻、国際連合協会

外務省所蔵文書によって編集された外交関係の根本史料。年単位の巻編成(複数巻を含む)からなり、各巻のなかを主題ごとに分け、それぞれ月日順に関係文書を収録している。巻末には、日付順の文書索引が付されている。日清戦争(朝鮮内政改革を含む)については、第27巻の「八 朝鮮内政改革ニ関スル件」「九 朝鮮国出兵ニ関シ列国ト交渉ノ件」「一〇 朝鮮国出兵ニ関シ列国ト交渉一件」「一六 日清戦争列国調停ニ関スル件」などが該当し、講和から戦後にかけては、第28巻の「七 朝鮮国内政改革ニ関スル件」「八 王城事変」「一二 三国干涉一件」「一三 清国使節来朝ノ件」「一四 日清講和条約締結一件」「一五 遼東還付一件」などが扱っている。なお、壬午軍乱については第15巻、甲申政変については第17巻・第18巻

が対応する。

- 5) 伊藤博文 編(1967)、『秘書類纂 機密日清戦争』(明治百年史叢書)原書房、同
(1970)『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全3巻(明治百年史叢書) 原書房

伊藤博文の関係書類を集めた史料集。伊藤は生前、みずからの手元に集まった公務に関する各種の書類を点検し、秘書に命じて主題別に類纂させた。明治10年代から20年代にかけてのものが中心で、内容は意見書・建白書・報告書、詔書・法律・勅令・条約の案文、演説草稿、会議の記録、公信、メモ・覚書・手記など多岐にわたる。伊藤の死後、宮内省に納められたが、1933～1936年、平塚篤・金子堅太郎・尾佐竹猛らの編集により『秘書類纂』全24巻として公刊された。同時に憲法制定関係の書類が『憲法資料』全3巻として刊行されたが、1969～1970年、両者をあわせて伊藤博文編『秘書類纂』全27巻が「明治百年史叢書」の一環として復刻刊行された。このうち、直接、日清戦争および明治前期の東アジア問題とかかわるのは、第1巻「機密日清戦争」と、第21巻～第23巻「朝鮮交渉資料」である。ここには国家の最高機密に関する重要な文書・記録類が多数収録されているが、刊行されたものには、編纂刊行当時の時代状況や検閲のために改竄・割愛・省略などが加えられているとされる。このため、2007年9月より、全127冊が影印復刻されることとなった。まず第1巻～第16巻の「朝鮮交渉」が刊行され、以後、「日清戦争」全12巻などがつづくことになっている。

- 6) 金正明 編(1962～1967)、『日韓外交資料集成』全10巻、巖南堂書店

1876年の江華島事件以後、壬午事変・甲申事変・日清戦争・日露戦争を経て、1910年の韓国併合にいたる日韓両国間の外交史料を収録。

- 7) 井上毅伝編集委員会 編(1966～1977)、『井上毅伝 史料篇』全6巻、国学院大学図書館・東京大学出版会

国学院大学図書館所蔵の梧陰文庫(井上毅関係文書)を中心として、井上毅の意見書・著作・書簡などを収録したもので、明治政府の政策を知るための根本史料。壬午軍乱・甲申政変関係の井上の意見書とその草稿類は第一巻に収録されて

いる。第四巻には、井上の書簡が宛先別50音順に収録されており、伊藤博文・井上馨・山県有朋らへの建策のさまをつぶさに知ることができる。また、第六巻には、井上が代草した山県らの意見書が収められている。

8) 伊藤博文関係文書研究会 編(1973～1981)、『伊藤博文関係文書』全9巻、塙書房

伊藤博文宛書簡約4000通を、憲政資料室所蔵文書を底本とし、「伊藤家文書」をこれに加えて、発信人別、50音順に収録したもので、第一巻の井上馨書簡・井上毅書簡、第七巻の松方正義書簡、第八巻の山県有朋書簡などが、日清戦争と東アジア問題にとっては重要である。また、第二巻は伊東巳代治書簡のみからなっている。

9) 大山梓 編(1966)、『山県有朋意見書』、原書房

山県有朋が提出した意見書等82点を年代順に収録したもので、時期的には1871年から1919年に及び、内容は、政治・外交・軍事にわたる。

10) 原敬文書研究会 編(1985・1986)、『原敬関係文書』第4巻・第6巻、日本放送出版協会

後に立憲政友会の幹部となり首相ともなった原敬は、1883年11月から85年5月まで天津領事をつとめていた。第4巻には、天津駐在中の日記や原が外務省等に送った外交文書の草稿などが収められている。内容的には、清仏戦争から甲申政変・巨文島事件に及ぶ。また、1892年8月、原は陸奥外相のもとで外務省通商局長となり、日清戦争後の95年5月から外務次官をつとめ、96年7から10月までは朝鮮公使としてソウルに駐在している。第6巻には、「対朝鮮政策関係書類」など、この時期の関係史料が収められている。

11) 京都大学文学部国史研究室 編(1993～)、『吉田清成関係文書』全7巻(既刊3巻)、思文閣出版

明治前半期の外交官吉田清成の書簡・書=類を収録。書簡は発信人別、50音順

に収録されており、書簡は5巻、書類は1巻の予定という。井上馨・井上毅・伊藤博文らの手紙が収められているが、1891年に死去したため日清戦争には及んでいない。

12) 慶応義塾 編(1958～1964)、『福沢諭吉全集』全21巻、岩波書店

福沢諭吉の全著作と時事新報論集(1882から1901年まで)、および書簡集を収録しており、とくに『時事新報』の社説は、福沢の日清戦争認識、中国・朝鮮認識を分析する際の重要史料となっている。

13) 西田長寿・植手通有 編(1970)、『陸羯南全集』第4巻、みすず書房

国民主義を唱えて政治批判を展開した言論人、陸羯南の論説を『東京電報』『日本』から収録しており、日清戦前から戦後にかけての陸の論調の推移を系統的に追究することができる好個の素材となっている。

14) 近衛篤磨日記刊行会 編(1968～1969)、『近衛篤磨日記』全6巻、鹿島研究所出版会

明治期の政治家(貴族院議員・学習院長・東亜同文会会長)近衛篤磨の、1895年から1903年までの日記。日清戦前は対外硬の立場から政府を批判し、戦後は日清同盟論をとねたことで知られる。

15) 『自由党党報』全10巻、柏書房、1979。

1891年立憲自由党と改称した自由党の機関誌。同年10月の創刊号から、1898年6月憲政党を結成するまでの158号分を復刻している。「党論」欄・「論説」欄に掲載された論説から、日清戦争前後の時期における自由党系の対外政策・対外認識をうかがい知ることができる。

16) 『立憲改進黨党報』全4巻、柏書房、1979。

1892年12月から96年1月まで発行された立憲改進黨の機関誌、全56号分を復刻したものである。「党論」欄・「論説」欄に掲載された主要党員の論説から、日清

戦争前後の時期における立憲改進黨系の対外政策・対外認識をうかがい知ることができる。

4. 史料リスト

1) 梧陰文庫・井上毅関係文書(国学院大学図書館所蔵)

擬与馬觀察書。

ボアソナード「恒守局外中立新論」。

国際法質議四則。

2) 陸奥宗光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蹇々余録草稿綴 上・下 1895年序 2冊。

蔵輝論 1891～1892年 4綴。

日清韓交渉事件記事 外務省政務局編 1894年 10月。

軍備意見 山県有朋 1888年 1月。

軍備意見 山県有朋 1890年 3月。

軍備意見 山県有朋 1895年 4月 15日。

朝鮮政略 井上外務卿八ヶ条ノ提案 1885年。

秘密 1894年 6月 2日。

閣議案 1895年 6月 3日。

李鴻章ト汪元鳳公使他往復電信綴 1894年 6月 6日～8月 6日。

陸奥宗光宛書簡 大鳥圭介 1894年 5月 31日。

陸奥宗光宛書簡 伊藤博文 1894年 6月 3日。

陸奥宗光宛書簡 伊藤博文 1894年 6月 15日。

陸奥宗光宛書簡 徳大寺実則 1894年 6月 21日。

陸奥宗光宛書簡 伊藤博文 1894年 6月 29日。

陸奥宗光宛書簡 伊藤博文 1894年 6月 30日。

陸奥宗光宛書簡 伊藤博文 1894年 7月 1日。

陸奥宗光宛書簡 加藤増雄 1895年 5月 3日。

陸奥宗光宛書簡 伊藤博文 1895年 4月 14日。
西徳二郎宛書簡 陸奥宗光 1895年 11月 30日。
陸奥宗光宛書簡 井上馨 1895年 5月 3日。
陸奥宗光宛書簡 西園寺公望 1895年 11月 23日。
陸奥宗光宛書簡 西園寺公望 1895年 12月 30日。

3) 井上馨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朝鮮政略三ヶ条答議書 岩倉具視 1882年 10月 29日。
明治一五年朝鮮関係書類綴 1882年 10月 30日～12月 1日。
井上馨宛書簡 陸奥宗光 1894年 4月 3日。
井上馨宛書簡 陸奥宗光 1895年 5月 10日。

4) 外務省 編(1952)、『日本外交文書』、日本国際連合協会
《第23巻》

青木外務大臣意見書「東亜細亜列国之権衡」 青木周蔵 1890年 5月 15日。

《第27巻》

朝鮮事件ニ関スル措置訓令ノ件 陸奥外務大臣 1894年 6月 4日。
朝鮮国変乱ニ対スル我が態度並ビニ将来ノ行動ニ関スル件 閣議案並決定 1894年
6月 15日。
朝鮮変乱処理ニ関シ回答ノ件 清国公使 1894年 6月 22日。
清国政府ノ回答ニ対スル日本政府ノ態度通告ノ件 1894年 6月 22日。
内政改革ニ関シ朝鮮国政府へ申入レヲナスベキ旨訓令ノ件 陸奥外務大臣 1894年
6月 23日。
朝鮮問題ニ関スル件 陸奥外務大臣・露国公使 1894年 6月 25日。
朝鮮国内政改革ニ関スル朝鮮国駐劄大鳥公使ヘノ訓令案 陸奥外務大臣 1894年 6
月 27日。
朝鮮国内政改革ニ関スル訓令 陸奥外務大臣 1894年 6月 28日。
朝鮮ヨリノ撤兵勧告ノ件 露国公使 1894年 6月 30日。

露国ノ申入ニ対シ回答ノ件 陸奥外務大臣 1894年 7月 2日。

朝鮮国政府改革案ノ拒絶ニ対シ適宜ノ処置ヲトルベキ旨訓令ノ件 陸奥外務大臣
1894年 7月 19日。

朝鮮問題処理ノ清国政府提案ニ関スル件 英国臨時代理公使 1894年 7月 19日。

清国政府ノ提案ニ対シ回答ノ件 陸奥外務大臣 1894年 7月 19日。

朝鮮問題ニ関スル日本側ノ提議撤銷ノ件 閣議決定 1894年 7月 28日。

朝鮮問題ニ関スル将来ノ日本ノ政策ニ関スル閣議案上申ノ件 陸奥外務大臣
1894年 8月 17日。

《第28卷》

日清平和後ニ於ケル對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内申ノ件 井上馨 1895年 4月 8日。

列国ニ依ル朝鮮ノ獨立維持ニ関シ意見上申ノ件 陸奥外務大臣 1895年 5月 15日。

朝鮮ノ政情報告ノ件 井上公使 1895年 5月 19日。

對韓政略ナルモノニ対スル意見伊藤總理ヘ陳述方ノ件 陸奥外務大臣 1895年 5月
22日。

朝鮮問題ニ付イテノ政略閣議決定ノ件 1895年 5月 25日。

朝鮮問題ニ対スル日本ノ意向各国政府ニ宣伝方上申ノ件 陸奥外務大臣 1895年 5
月 25日。

對韓政策ニ関スル閣議案 陸奥外務大臣 1895年 6月 3日。

5) 伊藤博文編(1970)、『秘書類纂 朝鮮交渉資料』全3巻、〈明治百年史叢書〉、原書
房

《朝鮮交渉資料 中巻》

朝鮮事件ニ付「ボアソナード」氏ノ答議 1882年 7月 31日・8月 1日。

韓国事件答議続稿 ボアソナード 1882年 8月 9日・10日。

朝鮮事件ニ付井上議官「ボアソナード」氏ト問答記。

朝鮮事件ニ付テノ意見 ボアソナード 1882年 8月 13日。

恒守局外中立新論 ボアソナード 1882年 10月 29日。

朝鮮事件ニ付大木参議ヘ答フ ボアソナード 1882年 8月 14日。

朝鮮事件ニ付意見書 ボアソナード 1882年 8月 24日。

朝鮮政府改革ヲ急務トスルニ付テノ方略 大鳥圭介 1894年 2月 14日。

《朝鮮交渉資料 下巻》

杉村濬朝鮮ニ施行スベキ事業並ニ処理セラルベキ事件ニ付建議 杉村濬 1894年 2月 22日。

対韓意見書 杉村濬 1893年 6月。

対韓政策閣議私案。

朝鮮事変ニ付意見書 伊藤博文 1895年 10月 21日。

朝鮮事変処分案。

朝鮮事変処分案。

伊藤首相井上公使へ寄スル書簡 伊藤博文 1895年 3月 3日。

井上公使前件ニ付電報 1895年 5月 25日。

陸奥外務大臣ノ対韓策。

対韓問題閣議案 陸奥宗光 1894年 8月 17日。

日清平和後ニ於ケル対韓方針ヲ定ムル義ニ付井上伯具申 井上馨 1895年 4月 8日。

井上伯爵意見書 井上馨 1895年 7月 1日。

6) 井上毅伝編、集委員会編(1966～1977)、『井上毅伝 史料篇』全6巻、国学院大学図書館・東京大学出版会

《第一》

京城事変意見案 井上毅 1882年 7月 23日。

京城事変対処案 井上毅 1882年 8月 6日。

京城事変訓令案 井上毅 1882年 8月。

朝鮮政略意見案 井上毅 1882年 9月 17日。

安南事件意見 井上毅 1883年 5月 12日。

京城事変意見 井上毅 1884年 12月～1885年 3月。

《第四》

伊藤博文宛書簡 井上毅 1882年 8月 4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毅 1882年 11月 9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毅 1884年 12月 27日。

(井上馨)宛書簡 井上毅 1884年 12月 24日。

井上馨・伊藤博文・吉田清成宛書簡 井上毅 1884年 12月 24日。

山県有朋宛書簡 井上毅 1882年 8月 30日。

山県有朋宛書簡 井上毅 1882年 9月 23日。

山県有朋宛書簡 井上毅 1883年 6月 14日。

吉田清成宛書簡 井上毅 1882年 8月 12日。

《第六》

朝鮮事件ニ付清国關係之意見 1882年 8月 7日。

參議山県有朋壬午京城事變意見案 1882年 8月 7日。

代山県有朋壬午京城事變意見書 1882年 8月 7日。

山県首相自衛議 1890年 3月。

總理大臣山県有朋施政方針演說案 1890年 12月。

7)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会編(1973~1981)、『伊藤博文關係文書』全9卷、塙書房

《第1卷》

伊藤博文宛書簡 井上馨 1882年 11月。

伊藤博文宛書簡 井上馨 1883年 1月 6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馨 1894年 10月 31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馨 1894年 12月 13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馨 1894年 12月 25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馨 1895年 2月 17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毅 1882年 8月 4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毅 1882年 11月 9日。

伊藤博文・井上馨・吉田清成宛書簡 井上毅 1884年 12月 19日。

伊藤博文宛書簡 井上毅 1884年 12月 27日。

《第2巻》

井上馨宛書簡 伊東巳代治 1884年 12月 14日。

《第7巻》

三条実美宛書簡 松方正義 1885年 2月 3日。

伊藤博文宛書簡 陸奥宗光 1894年 6月 6日。

伊藤博文宛書簡 陸奥宗光 1894年 6月 17日。

8) 大山梓 編(1966)、『山県有朋意見書』、原書房

朝鮮事変に際する対清方針意見 山県参議 1882年 8月 7日〈三条文書〉。

陸海軍拡張に関する財政上申 山県参事院議長 1882年 8月 15日。

対清意見書 山県参議 1883年 6月 5日〈井上馨文書〉。

軍事意見書 監軍山県陸軍中將 1888年 1月〈陸奥宗光関係文書〉。

外交政略論 山県総理大臣 1890年 3月〈青木周蔵文書〉。

施政方針演説 山県総理大臣 1890年 12月 6日。

朝鮮政策上奏 山県陸軍大將 1894年 11月 7日〈井上馨文書〉。

갑오 중일전쟁 기간 청 정부의 대일정책

다이동양 |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II. 속방 구레와 중·일 친진조약에 따른 파병

III. 일본의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에서 '한국 동란'을 조속히 평정하여 일본 병사를 철수시키기까지

IV. '난 진입'과 '조약에 따른 철병' 교섭

V. '무쓰3조'를 둘러싼 교섭과 철병 교섭의 중지

VI. '초비(剿匪) 우선시' 방침의 포기와 '방왜(防倭) 중시' 방침의 제출

VII. 열강의 조정과 고무라 '회담'

VIII. 최후의 조정과 일본의 개전

IX. 맺음말

I. 머리말

1. 연구동향

갑오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중국의 갑오전쟁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왔다.¹

1단계: 갑오전쟁 후 25년간은 연구 활동이 완만하게 시작되는 단계였다. 이 시기의 성과는 주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많은 1차 사료들을 발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사신편(時事新編)』 6권(陳耀卿 編, 1895년 간행본), 『중왜전수시말기(中倭戰守始末記)』(思恢復 主編, 1895년 간행본), 『간지중동화의주소(諫止中東和議奏疏)』 4권(佚名 編, 香港書局, 1895), 『보천충분집(普天忠憤集)』 14권(魯陽生(孔廣德) 編, 1895년 石印本), 『중일전집(中日戰輯)』 6권(王炳燿 編, 上海書局, 1896),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 14권(蔡爾康 編, 上海廣學會, 1896) 등이다. 두 번째는 주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 저술류로,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다. 『원해술문(冤海述聞)』(冤海述聞客, 1895년 간행본), 『순묵습여(盾墨拾餘)』 14권(易順鼎, 1896년 간행본), 『객한필기(客韓筆記)』(許寅輝, 1906년 長沙刻本)이다. 이상 2가지 분류로 본 서적들은 역사적 자료나 기록을 다시 모아 편찬한 것이고 각각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나 모두 사학자들의 저서는 아니다. 당시 전쟁 사라 부를 만한 저작은 매우 드물었다. 이 중 먼저 추천할 만한 것은 『동방병사기략(東方兵事紀略)』 5권(姚錫光, 1897년 간행본), 『대만전기(臺灣戰

1 여기서 말하는 단계 구분과 관련 소개는 戚其章(2000), 「中日戰爭史研究的世紀回顧」, 『歷史研究』 2000-1의 관점을 참고했다.

紀』 2권(洪棄生, 1907년 인쇄본), 『해군실기(海軍實記)』(池仲祐, 1926년 간행본)이다. 다만 지면상, 자료상의 제한으로 내용과 구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문충공전서(李文忠公全書)』(光緒乙巳年부터 戊申年까지 간행본)와 『옹문공공일기(翁文恭公日記)』(1925)도 이 시기에 정리·출판되었다.

2단계: 근대 중국에서 갑오전쟁사의 진정한 연구는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 갑오전쟁사 연구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다. 이 시기,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1932년부터 연속 간행), 『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1934년 인쇄본)가 먼저 간행되어, 연구에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 시기 거의 20여년간, 갑오전쟁과 관련된 저작 중 특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육십년래 중국과 일본[六十年來中國與日本]』(王藝生), 『중일갑오전쟁의 외교배경[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王信忠), 『갑오중국해군전쟁고(甲午中國海軍戰爭考)』(張蔭麟)가 있다. 이와 동시에 갑오전쟁과 관련된 논문도 많이 나왔다.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갑오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대한 논문, 즉 『광서갑신조국의 변경[光緒甲申朝局之變更]』(惜陰, 1931), 『갑오 이전의 중일방교[甲午以前的中日邦交]』(陳烈甫, 1934), 『갑오전전의 중일외교 정책개설[甲午戰前之中日外交政策概說]』(王信忠, 1936), 『갑오전전 일본도전사(甲午戰前日本挑戰史)』(問漁, 1932), 『조선문제와 갑오의 전쟁[朝鮮問題與甲午之役]』(魏建猷, 1937) 등, ② 북양해군(北洋海軍)과 갑오해전(甲午海戰) ③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논문, 예를 들어 『갑오전쟁과 원동국제관계의 변화[甲午戰爭與遠東國際關係之變化]』(張忠紱, 1932), 『갑오전쟁의 아국외교[甲午戰爭之俄國外交]』(張祿 編譯, 1934), 『중일외교사상의 이홍장[中日外交史上的李鴻章]』(左舜生), 『중일마관의화(中日馬關議和)』(王信忠, 1942), ④ 전쟁 실

패의 영향과 역사적 교훈에 대한 논문, ⑤ 이홍장(李鴻章) 등 인물과 관련된 연구, 예를 들어, 『서합비질사(書合肥軼事)』(1932), 『서옹이상경사(書翁李相傾事)』(1935), 『담갑오전쟁적이홍장(談甲午戰爭的李鴻章)』(1940), 『갑오전전이홍장적해방건설(甲午戰前李鴻章的海防建設)』(1944) 등, ⑥ 총론, 예를 들어 『논제1차중일전쟁(論第一次中日戰爭)』(楊松), 『논중일갑오지전(論中日甲午之戰)』(翦伯贊, 1945) 등이다. 종합적으로 말해, 이 시기 갑오전쟁사 연구는 아주 관심 있는 주제 중의 하나였으며, 그 결과 수준 높은 학술자가 출현했다.

3단계: 1950년대 이후 연구활동의 전환과 발전이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적으로 관련 사료가 편찬되었다. 그 중 중국사학회가 주편(主編)하고 소순정(邵循正) 등이 편찬한 『중일전쟁(中日戰爭)』 7책(1956)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갑오전쟁사 연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산둥, 요령 등지와 군대의 문사(文史) 종사자들이 직접 방문 조사해 객관적인 성과도 있었다.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 중에 갑오전쟁사 연구 또한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저술이 출판되었다. 국제관계와 외교를 언급한 것으로 『조선문제와 갑오전쟁[朝鮮問題與甲午戰爭]』(陳偉芳, 1959, 三聯), 『동학원(東學院) - 조선의 반봉건반제투쟁[朝鮮的反封建反帝鬥爭]』(週一良, 1954), 『마관의화전본이제마태책동이홍장매국음모적발현(馬關議和前本李提摩太策動李鴻章賣國陰謀的發現)』(丁則良, 1954), 『중일갑오전쟁전중일재조선적모순화투쟁(中日甲午戰爭前中日在朝鮮的矛盾和鬥爭) 1884~1894』(嚴啓祥, 1957), 『중일갑오전쟁중국제자본주의재중국적간섭활동화모순투쟁(中日甲午戰爭中國國際資本主義在中國的干涉活動和矛盾鬥爭)』(陳詩啓, 1959, 1960), 『1985년아덕법삼국간섭일본퇴환요동적내막(1985年俄德法三國干涉日本退還遼東的內幕)』(胡濱, 1953), 『중‘장건일기’간중국전쟁시

제후당쟁(從‘張謇日記’看中國戰爭時帝后黨爭)』(祁龍威, 1962), 『평개감숙거인 ‘청폐마관조약정문’ 급기타(評介甘肅舉人‘請廢馬關條約呈文’及其他)』(李鼎文, 1963)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갑오전쟁 연구의 뛰어난 저작이다. 이외 이 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폭로하고 인민의 항일 애국투쟁을 다룬 논저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갑오전쟁사 연구는 분명한 특징을 나타낸다. 즉 전쟁 장수에 대한 평가 문제 등 학술 분위기가 고취되고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4단계: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갑오전쟁 연구는 범위에서나 깊이에서 모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갑오전쟁 연구는 더 넓고 깊이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 1978~2000년 사이, 이미 10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가 다루는 주제는 전쟁의 배경, 국제관계 및 열강의 극동정책, 일본의 전쟁 준비와 전쟁 도발 방법, 인민의 항일투쟁, 동삼성(東三省) 연군(練軍) 및 극동 전장(戰場)으로 청군의 물자 조달, 제후양당(帝后兩黨)의 전화논쟁(戰和論爭), 북양함대 전멸 원인, 삼국간섭의 요동 반환 배경, 대만인민(臺灣人民)의 반할대운동(反割臺運動) 및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에 대한 평가, 전쟁의 중국 사상 문화에 대한 충격 및 민족의 각성, 갑오전쟁과 양무운동의 관계 등이다. 인물을 언급한 연구들은 광서제(光緒帝), 이홍장, 옹동화(翁同和), 유곤일(劉坤一), 엄복(嚴復), 황준헌(黃遵憲), 가철(柯鐵) 등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고 구봉갑(丘逢甲), 이홍장 등과 같은 인물들의 회의 소집 내용을 다뤘다. 출판된 저작 중 외교를 언급한 것으로는 『갑오전쟁연구비요(甲午戰爭研究備考)』(1997), 『갑오전쟁과 동아정치[甲午戰爭與東亞政治]』(戴逸 等, 1994), 『갑오전쟁전후의 만청정국[甲午戰爭前後之晚清政局]』(石泉, 1997), 『근대중일관계와 조선문제[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王如繪, 1999), 『갑오전쟁외교사(甲午戰爭外交史)』(孫

克復, 1989), 『갑오전쟁부터 갑신전쟁까지[從甲午戰爭至甲辰戰爭]』(楊惠萍 等, 1997), 『갑오풍운과 근대중국[甲午風雲與近代中國]』(關捷, 1997), 『갑오전쟁 국제관계사(甲午戰爭國際關係史)』(戚其章, 1994) 등이 있다. 관련 인물에 관한 저작은 『광서평전(光緒評傳)』(孫孝恩, 1895?), 『자희대전(慈禧大傳)』(徐徵, 1994), 『옹동화(翁同龢)』(謝俊美, 1994), 『이홍장평전(李鴻章評傳)』(苑書義, 1991), 『이홍장(李鴻章)』(董守義), 『이홍장과 갑오전쟁[李鴻章與甲午戰爭]』(劉成功, 1994), 『장지동평전(張之洞評傳)』(馮天瑜) 등이 있다.

갑오전쟁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정리·출판 작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지동전집(張之洞全集)』 12권(苑書義 主編, 1998),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電報 原稿, 顧廷龍·葉亞廉 主編, 1985), 『문정식집(文廷式集)』(汪叔子, 1993), 『갑오중일전쟁(甲午中日戰爭)』(盛宣懷檔案 資料 中 3, 上·下冊, 汪熙 主編, 1980~1982), 중국근대사 자료총간 속편(中國近代史 資料叢刊續編)인 『中日戰爭』(1989~1996) 등이다. 이 중 『중일전쟁』은 뛰어난 저작으로 꼽힌다.

최근 논쟁 중인 문제로는 ① 갑오전쟁의 원인 문제 ② 갑오전쟁의 성격 문제(중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매우 격렬한 논쟁거리이다. 대체로 몇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의전설(義戰說). 둘째, 방위설(防衛說). 셋째, 이중설(二重說)이다. 이중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③ ‘무쓰[陸奧] 외교’에 대한 평가 문제 ④ 여순(旅順) 대학살의 역사적 진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중·일 갑오전쟁에 관한 연구는 이미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 전쟁의 역사적 배경, 북양해군과 갑오전쟁, 국제관계 및 열강의 극동정책, 일본의 전쟁 준비와 전쟁 도발 방법, 인민의 항일투쟁, 동삼성 연군 및 극동전장으로 청

군의 물자 조달, 제후양당의 전화논쟁, 북양함대 전멸 원인, 삼국간섭의 요동 반환 배경, 대만 인민의 반할대운동 및 대만민주국에 대한 평가, 전쟁 실패의 영향과 역사적 교훈, 갑오전쟁과 양무운동의 관계 및 인물 평가 등을 언급했다. 갑오전쟁 관련 사료의 발굴, 정리, 출판 작업 또한 괄목할 만하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최근 전쟁사와 군사사 시각으로 본 연구 성과가 비교적 풍부하며, 외교사적 관점에서 본 성과물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많지 않은 외교사 논저들과 주로 갑오전쟁 전후 10년간 중·일관계를 소개한 것들은 배경이 상세하고 대부분 일본의 ‘도전사(挑戰史)’적 측면에 근거한 논저들이다. 따라서 일본 측 자료를 이용하여, 이 시기 일본의 대청 정책은 비교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 정부의 대일정책에 관해서는 아직도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본문의 시각

중·일 갑오전쟁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일본이 음모를 꾸며 도발한 역사이다. 그 동안 일본은 구미 각국의 간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적을 제압하여 기선을 잡고자 했으나 외교상으론 오히려 피동적 자세를 취했다.² 여러 가지 일본의 외교적 조치는 항상 구미 각국이 일본은 단지 전쟁에 응할 자세만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케함으로써, 구미 각국의 대청원조(對淸援助)에 타격을 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청 정부는 일본의 사전 모의

2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蹇蹇錄』), 商務印書館, 34쪽.

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등의 이유 때문에 국지적 세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도 피동적 자세로, 외교상에선 계속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갑오전쟁 때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청 정부는 주로 전보(電報)의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료들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정황도 비교적 복잡하다. 하루에도 여러 전보가 오고 갔고, 게다가 발전(發電)과 수전(受電)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전고(電稿)에는 종종 표주(標主)의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런 오류로 인하여 같은 전보의 시간차가 서로 다른 문헌 속에서 수 일이나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기 청 정부의 대일정책 과정을 연구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은 현존하는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증을 바탕으로, 이 시기 일본의 대청정책에 대한 비교적 충분한 연구를 배경으로 해서, 청 정부의 대일정책의 형성, 진행 과정 그리고 그 발전맥락을 계통적으로 고찰하여 이 전쟁이 일본의 도발로 인하여 일어났음을 청 정부의 외교정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동시에 이 글이 이 시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구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속방 구레와 중·일 천진조약에 따른 파병

1. 오래 지연된 파병 결정과 파병

동학당(東學黨) 기의(起義)는 청 정부의 조선 파병에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이후 중·일 갑오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다.³ 청 정부는 동란을 알고,⁴ 파병을 결정하기까지 비교적 긴 관찰 과정을 겪었다. 그 관찰 기간 동안 분명히 일본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일 천진조약의 제3관은 조선에서 만약 동란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중·일 양국 혹은 일국이 파병을 하며, 반드시 먼저 공문을 보내 상대방에게 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국이 파병하면 분명히 일본도 파병할 것이기 때문에, 청 정부는 파병에 신중을 기하고 일본의 대조선 동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초기 조선 정부의 내부는 파병 요청을 머뭇거리고 있었다.⁵ 그러나 원

3 일본 외무대신 陸奥宗光은 『蹇蹇錄』에서 “만약 이후 어떤 사람이 중·일 양국의 당시 외교사를 편찬한다면, 당연히 동학당의 난을 시작으로 제1장을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바로 동학당 기의를 기회로 삼아 갑오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현재 중·일 갑오전사에 대한 대표적 저작은 모두 동학당 기의를 시작으로 한다. 이 글은 이 관점을 따르고 있다.

4 이 용어는 원 사료에 따른 것으로 필자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하도 동일하며 다른 경우는 주로 밝혀 주겠다.

5 光緒 19년 3월(1893년 4월) 동학교도들이 忠淸道 報恩縣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조선 정부는 청조에 파병을 요청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光緒 20년(1894) 全瑑準 기의 후, 청조 파병 의견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국왕 李熙는 오히려 머뭇거렸다. 中·日 天津條約에 따라 중국이 조선에 파병할 경우, 일본 또한 이

세개(袁世凱)는 처음에는 동학당의 기의가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선이 파병을 요구할 당시 조선 정부에 정세 변화를 지켜보라고 권했다.⁶ 광서(光緒) 20년 4월 초(1894년 5월), 동학당의 세력이 점차 거세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4월 1일(5월 5일) 청 정부는 주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가 보낸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서 그는 전라도 태인현에서 동학당 수천명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홍계훈(洪啓薰)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압하도록 했다고 알렸다.⁷ 그러나 동학당은 파죽지세로 관군을 크게 패퇴시켰다. 당시 북양해군의 평원함(平遠艦)이 마침 인천항에 정박해 있었다.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이 홍장의 지지를 받은 원세개는 평원함으로 조선 병사의 이동을 도와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왕이 아직 요청을 하지 않아 일본 역시 파병을 듣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청 정부는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소식을 기다려 보고 여찌할지를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⁸ 이때 원세개도 일본 측에 어떠한 파병 움직임이 없다고 연이어 보고했다.⁹

를 구실로 병사를 출병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머뭇거린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戚其章(1990), 『甲午戰爭史』, 北京: 人民出版社, 12~15쪽 참조.

6 林明德(1970), 『袁世凱與朝鮮』,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38~346쪽; 王德昭, 「論甲午援韓」, 『中國近代現代史論集』(II), 239~242쪽 참조.

7 袁世凱가 李鴻章에게 전보를 보낸 것은 光緒 20년 4월 1일. 『養籌園電稿』 卷3, 114쪽 참조. 李鴻章은 4일 總署에 전보를 보냈다. 「寄譯署」, 光緒 20년 4월.

8 「寄譯署」(光緒 20년 4월 21일 未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2쪽.

9 「寄譯署」(光緒 24년 4월 21일 未時), 「寄譯署」(光緒 20년 4월 22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2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4월 21일 도착),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4월 22일 도착),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4월 22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5~6쪽.

4월 29일(6월 2일) 전후, 조선의 상황이 긴박해졌다. 조선 국왕은 “병사가 적어 더 파병할 수도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하니, 청 병사가 대신 토벌해 주기를 청한다”고 했다.¹⁰ 그렇지만 즉시 청 정부에 정식으로 파병을 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지는 않았다.

이때 원세개는 조선의 파병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원세개는 중조종번관계(中朝宗藩關係)로 볼 때, 속국이 자신의 내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대신 진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 와야 상국의 체면을 세울 수가 있다며, 조선 정부가 청 병력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문서를 올리면 자신이 전보를 보내 청 정부에 일을 처리해달라고 청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당시 극동의 국제정세로 보아 그는 만약 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 중에 ‘반드시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므로 먼저 병사를 일으키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원세개는 당연히 중·일 천진조약을 염두에 두고 일본도 병사를 일으킬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천진조약에 근거한 다 하더라도 조선 측에서 정식 문서가 온 이후에야 “조약에 따라 외교문서를 통해 조선이 요구한 바를 알려준다”고 했으나 조약상에는 단지 “중·일이 파병을 하면 먼저 문서를 통해 사실을 알려준다”고 했지, 본래 “중국이 파병을 하면 일본 또한 파병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일본이 설령 쓸데없는 일을 할지라도, “사관(使館)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병사 100여 명을 한성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

10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6~7쪽;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復遲疑電二件」, 『淸季外交史料』 卷90, 29~30쪽.

의군이 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외부(外部)가 일본의 파병에 대해 분명히 반박할 것이며, 각국 정부 또한 나서서 저지할 것이라고 보았다.¹¹ 그러나 원세개를 가장 안심시킨 것은 일본 측의 구두(口頭) 보증이었다.

동학당 기의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비밀리에 조선이 청에 병력 원조를 요청하는지를 염탐했다. 이미 4월 25일(5월 29일)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히쓰[陸奥宗光]는 일본의 주한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에게 조선 정부가 청에 원조 요청을 하는지 조사해 보라고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조선 정부와 원세개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지시했다. 스기무라는 청의 출병을 희망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원세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염탐했다.¹² 4월 28일(6월 1일) 스기무라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기로 한왕(韓王)이 결정한 것을 안 후, 서기생(書記生) 정영방(鄭永邦)을 원세개에게 보내 “비적의 상황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청정부 측 의사를 떠보았다. 회의 중 정영방은 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조선을 대신하여 난을 평정하길” 일본 정부가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원세개가 천진조약에 기초해 일본 측이 청의 파병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정영방은 “우리 정부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다.¹³ 다음날 스

11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6~7쪽 (949);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復遲疑電二件」, 『淸季外交史料』 卷90, 29~30쪽.

12 杉村濤(1932), 『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 東京: 勇喜社, 5쪽.

13 「寄譯署」(光緒 20년 4월 28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3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6~7쪽 (949);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復遲

기무라는 원세개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파병 문제에 대해 “청이 속히 대신 평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세개는 스기무라의 가장된 호의를 완전히 믿었다.¹⁴ 요컨대 원세개의 파병에 대한 예측은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조선 정부가 청의 파병이 필요하다고 문서를 갖추어 보내면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조선 측에 말했다.¹⁵

이홍장은 완전히 원세개의 형세 분석을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답했다. 그는 조선 정부의 문서가 전해지면, 직예제독(直隸提督) 섭지초(葉志超)에게 정예군 수천을 선발해서 상선을 타고 속히 출발하게 하고, 해군 4함대를 인천과 부산으로 각각 보내 도와 줄 계획이었다. 한편으론 천진 조약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일사신(駐日使臣) 왕봉조(汪鳳藻)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 외부(外部)에 알려주고자 했다. 4월 29일(6월 2일) 그는 원세개가 보내 온 전보와 자신의 초보적인 계획을 전보로 총서(總署)에 보내 총서가 대신 주를 올려달라고 청했다.¹⁶

이홍장과 청 정부가 조선 출병의 근거를 논의할 때, 두 가지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그 하나는 원세개의 보고이고 다른 하

疑電二件, 『清季外交史料』 卷90, 29~30쪽.

14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4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도작),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8쪽(954).

15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6~7쪽(949);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復遲疑電二件」, 『清季外交史料』 卷90, 29~30쪽.

16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7쪽;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復遲疑電二件」, 『清季外交史料』 卷90, 30쪽.

나는 왕봉조의 보고이다. 원세개의 보고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왕봉조는 보고를 통해, 일본은 메이지 23년(1890) 헌법이 실행된 이후 정부와 의회 간에 종종 충돌이 있었고 최근에는 특히 격렬하여 국외의 일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고 알려 주었다. 이런 관점은 무쓰 무네타쓰의 『건전록(蹇蹇錄)』에도 나온다.¹⁷ 또한 이는 이후 학자들이 널리 인용하는 자료이다. 현존하는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이홍장의 출병 결정 과정으로 볼 때, 주로 원세개의 보고에 근거한 것 같고, 왕봉조의 것을 참고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또한 이홍장이 원세개의 건의를 받아 청 정부에 파병을 건의했지만, 청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식 파병을 명령하는 데는 또 다른 과정이 있었다. 이는 조선 정세의 객관적인 진전, 일본이 이 기간 동안 벌인 외교적 수단과 관계가 있었다. 이 점은 이 후 중·일관계가 날로 복잡해진 후 더 명료해진다.

조선 정부가 분명한 파병 요청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홍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청 정부는 기본적으로 파병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조선으로 병사를 파견하여 동란 평정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선은 비록 이미 파병 요청에 대한 분명한 의향을 갖고 있었지만 ‘청병문(請兵文)’을 쓰는 것이 “각국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일본이 “쓸데없는 일을 일으킬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의군이 남쪽으로 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저하면서 정식으로 조회를 보내지 못하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청 정부는 단지 ‘먼저 준비를 하고’ 즉각적인 파병을 결정하지 못했다.¹⁸ 4

17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5쪽.

18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4월 29일 도착), 「北洋大臣來電三」(光緒 20년 4

월 30일(6월 3일) 총서는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파병을 수락하고, 동시에 “때가 되면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했다.¹⁹ 정식 파병은 아직 형세의 변화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4월 30일(6월 3일) 저녁, 기의군이 계속해서 복진하자, 조선 정부는 정식 파병 요청 문서를 원세개에게 주며 청 정부에 전달하도록 청했다. 문서는 청 정부가 임오(壬午), 갑신(甲申)의 사례를 근거로 병사를 보내 도란 평정을 도와달라고 청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전라도가 관할하는 泰仁, 古阜 등지의 현은 민습이 흉포하고, 민의 성격이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 동학교도들 만여 명이 모여 현·읍 10여 곳을 공격하고 오늘 또 북쪽으로 도망쳐서 전주성을 함락시켰습니다. 精練軍이 剿撫했지만, 그 비적들은 오히려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어 練軍이 패배하고 빼앗긴 포가 수 문입니다. 이런 흉악무도한 상황이 오래갈까봐 무척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성으로부터 400 수리에 있어 만약 다시 북쪽으로 오는 것을 방지한다면 畿內에도 소란이 일어나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새로 훈련받은 군대는 현재 거의 都會만 방어하고 전투 경험이 없어 비적을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만연하면, 청 조정의 우려로 남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壬午, 甲申 시기 우리나라의 두 차례 내란을 청 조정 병사에 의존해서 진압했습니다. 이에 구원 방안을 세워 청컨대 총리가 북양대신

월 2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7쪽;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 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復遲疑電二件」, 「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請兵文已繕就俟匪北竄始請代剿」, 『淸季外交史料』 卷90, 30쪽.

- 19 「總署致李鴻章派兵援韓希先期籌備電」(光緒 20년 4월 30일), 『淸季外交史料』 卷90, 30쪽.

에게 전보로 간청하여 군대를 파견해서 속히 와 대신 진압을 하고 아울러 우리 병사들이 軍務를 배워 이후 방어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비가 근절되기를 기다린 후 철군하시고, 병사들이 오랫동안 외지에서 피곤할 터인데, 감히 계속 남아서 방어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청컨대 총리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속히 원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²⁰

그날 밤, 원세개는 즉시 조선 원병문서를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냈다.

이홍장은 원세개의 전보를 받고 청 정부의 원래 방침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으론 즉시 해군제독 정여창(丁汝昌)에게 제원(濟遠), 양위(揚威) 2함대를 인천과 한성(漢城)으로 파견하여 상인을 보호토록 하고, 아울러 직예제독 섭지초에게 태원진(太原鎭) 총병(總兵) 섭사성(聶士成)과 함께 회군(淮軍) 연경려(練勁旅) 1500명을 선발 파견하여, 군장을 갖추고 초상륜선(招商輪船)에 나누어 타고 출발하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주일사신 왕봉조에게 전보를 쳐서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병사 파견을 일본 외무성에 통지하도록 했다. 다음날 이홍장은 원세개의 전보와 자신 부서의 활동을 총서에 전보로 알리고, 대신 주를 올려주도록 청했다.²¹ 이 시기 이홍장은 청의 파병에 대한 일본의 태도 인식이 진일보하였다. 4월 30일(6월 3일) 그는 천진 주재 영사 아라카와 미쓰구[荒川巳次]를 만났는데, 그의 말은 스기무라가 원세개에게 말한 것과 일치했다. 이홍장은 그에게 조선이 원병을 청할 경우 상황 추세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논의가 결정되는 것

²⁰ 「寄譯署」(光緒 20년 5월 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3~34쪽.

²¹ 「寄譯署」(光緒 20년 5월 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3~34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7~8쪽.

을 기다려 마땅히 왕 사신이 외부(外部)에 통보할 것이고 일이 끝나면 즉시 철군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아라카와는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며 단지 먼저 외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²²

5월 2일(6월 5일), 청 정부는 조선 측 청병(淸兵)에 대한 주접(奏摺)을 접수한 후 정식으로 조선 파병의 유지를 하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조선 동란의 무리가 매우 많아, 청이 조선에 병사를 파견하여 진압을 돕는데, 지세와 적의 동태 모두 익숙하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 안될 것이다. 1500명을 파병하는 것이 진압하는 데 족한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 병력을 더 모아야만 한다면, 다시 증병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해 계속 출발시켜 초반에 난을 평정한다.²³

이렇게 볼 때 청 정부는 파병의 목적을 난 진압을 돕는 데 두고, 병사들에게는 “반드시 만전을 기하라”고 경고했으며, ‘초반에 평정’하기를 희망했다. 다만 파병된 병사 수가 난 진압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필요하다면 병사 수를 조정하는 등, 이홍장에게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미 일본이 청의 파병에 대해 지지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상으론 거의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단지 조약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었다.

22 「寄譯署」(光緒 20년 5월 1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4쪽 ;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8쪽.

23 『光緒朝東華錄』 卷6, 3390쪽.

이홍장이 유지를 받고 난 후, 청 조정은 이전 전보에서 1500명을 파견 하라고 했으나 병사가 충분치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섭지초에게 아산·공주에 가서 적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고 만약 병사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즉시 전보로 상의해서 병사를 선발하라며 본부건 위려(威旅) 각 영(營)이 건 모두 지휘에 따르라고 했다.²⁴ 다음날인 5월 3일(6월 6일) 섭사성이 910인을 이끌고 해륜(海輪)을 타고 조선으로 갔다.

2. 중·일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통지하다

청 정부가 파병한 후, 외교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일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통지하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 파병에 대해 의논할 때, 청 정부는 청의 파병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알아보고, 원세개와 이홍장에게 명하여 일본공사와 영사에게 중국이 파병한 후 중·일 천진조약에 따라 어떻게 일본에 조회(照會)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했다. 원세개는 자신을 방문한 일본 주재 조선 사관(朝鮮使館)의 번역관 정영방에게 “을유조약(乙酉條約)에 따라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누가 통지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정영방은 총서나 북양(北洋) 모두 가능하다고 대답했다.²⁵ 이홍장은 뒤이어 일본 천진 주재 영사와 총서에 청이 파병한 후 “주일 왕 사신이 일본 외부에 통지할 것이다”라고 했다.²⁶ 이를 위해, 파병 유지를 하달한 후, 청 정부는 왕봉조가

²⁴ 「寄山海關葉提督」(光緒 20년 5월 2일 未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 15, 34쪽.

²⁵ 「寄譯署」(光緒 20년 5월 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4쪽 ;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4년 4월 2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7쪽.

일본 정부에 통지하고, 동시에 총서가 일본 주화대리공사(駐華代理公使)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통지하도록 결정했다.

5월 3일(6월 6일), 이홍장은 광서(光緒) 11년(1885) 중·일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청의 파병을 일본 외무성에 알린다는 내용의 전보를 주일사신 왕봉조에게 보냈다. 다음날 왕봉조는 조회를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히쓰에게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光緒 11년 중·일 의정조약에는 앞으로 조선에 내란이 있을 때, 청이 파병을 하면 마땅히 먼저 照會를 하고, 일이 진압된 후 즉시 철군을 하고 다시 남아 방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본 대신은 오늘 조선 정부의 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전라도 관할의 현 중 민습이 흉포한 곳에 동학교도들이 현·읍을 공격하고 또한 북쪽으로 달아나 전주성을 함락했는데, 練軍을 파견했지만,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일이 만연하면, 상국에 오히려 우를 많이 남길 것이므로 壬午, 甲申 우리나라의 두 차례 내란을 청 조정의 군대에 의존하여 대신 진압했으므로, 이에 청군대 군대를 파견하여 속히 와서 대신 진압해 주기를 바란다. 토비를 근절시킨 후 철군하기를 바라며 병사들이 외지에서 피곤한데, 계속 머물며 방어해 달라고 청할 수는 없다는 등의 얘기였다. 본 대신이 그 긴박한 상황을 살펴보고 파병을 해서 원조해 주는 것이 우리 조정의 屬邦 舊例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유지를 받들어 직예제독 섭지초에게 정예부대를 선발해서 속히 조선

- 26 「寄譯署」(光緒 20년 5월 1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34쪽 ;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8쪽(954) ; 「寄譯署」(光緒 20년 5월 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34쪽 ;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4월 2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7쪽(953).

의 전라·충청 일대로 가 비적을 토벌해서 반드시 속방을 안정되게 하고, 각 국의 통상자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케 하며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철수하고 다시 남아 방위하지 말도록 했다. 응당 조약에 따라 문서를 통해 통지를 한다. 마땅히 이상의 각 절을 속히 문서로 갖추어 일본 外務衙門에 알려주길 청한다.²⁷

청 정부가 일본에 설명하려고 한 것은 파병이 조선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청 정부가 파병에 동의한 것은 “속국을 보호한다는 구례(舊例)”에 기반한 것이었다. 군대의 주요 임무는 조선 전라·충청 일대의 동란을 진압하여 조선 국내의 형세를 안정시켜 조선의 국내의 민중이 “각각의 생업을 안정되게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일이 끝나면 즉시 철군하며 더 남아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 정부는 본래 이렇게 ‘세심한’ 조화로 완전히 일본의 우려를 제거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조회는 보내자마자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날 무쓰 무네미쓰는 조회에서 “속국을 보호한다”는 말이 있음을 들어 일본은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이 청하여 이를 참작·수정하라고 답변했다.²⁸ 왕봉조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일이 바로 일단락되지 않아 이홍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홍장은 답전에서 엄중한 태세로 일본의 입장이 어떠한지, “수정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²⁹ 다음날 왕봉조가 다시 외무성을 방문했다. 일본 측

27 「清國公使ヨリ陸奥外務大臣宛」, 6월 7일, 『日本外交文書』第27卷 第2冊,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1953), 167~168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3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9쪽(958).

28 「清國公使ヨリ陸奥外務大臣宛」, 6월 7일, 『日本外交文書』第27卷 第2冊, 169쪽.

은 일본이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보지는 않지만, 조희 용어에 대해 “다시 수정을 청하지 않겠다”고 했다.³⁰

‘속방(屬邦)’의 논쟁을 이끈 것은 이홍장이었다. 이홍장은 문제를 처리한 후, 상황을 종합하여 총서에 보고했다. 그 사이 총서나 군기처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홍장의 의견이 청 정부 입장을 설명해 준다고 본다. 이는 또한 조선의 지위 문제에 대해 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며 명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월 6일(6월 9일), 총서도 파병 사실을 일본 주화대리공사 고무라 주타로에게 통지했다.³¹

사실 일본이 속방 논쟁을 일으킨 것은 눈속임일 뿐이었다. 일본의 관심은 군사 파병이었고 우월한 힘으로 조선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파병 결의는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청에 출병 요청을 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고, 파병하기로 계획한 군대는 청보다도 많은 수였다. 무쓰는 이러한 명분논쟁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즉 속방 논쟁은 공연히 말만 오갈 뿐, 별 소득이 없는 사안이었다.³²

29 「寄譯署」(光緒 20년 5월 5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 (963).

30 「寄譯署」(光緒 20년 5월 5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 (963).

31 「發日本國公使小村照會」 5월 6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6, 1895, 3312쪽.

32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9쪽.

III. 일본의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에서 ‘한국 동란’을 조속히 평정하여 일본 병사를 철수시키기까지

1. 일본 파병과 청 정부의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 정책

청 정부는 조선 동학당 기의 후, 무턱대고 바로 파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파병을 논의할 때, 청 정부는 끊임없이 주중(駐中), 주조선(駐朝鮮) 일본 공사(公使), 영사(領事)를 통해 청의 파병에 대한 일본의 의사를 물어보았다. 당시 일본 측의 말은 모두 이해하며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스기무라 후카시가 원세개와 만났을 때, “한국이 문서를 보내 알려주어 안심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자 원세개는 이를 진심이라고 믿었다. 파병 후, 청 정부는 다시 재일사신(在日使臣)과 총서(總署)를 통해 일본 측에 조회(照會)를 했다.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청 정부가 막 파병 유지를 하달하고 왕봉조(汪鳳藻)의 조회가 외무성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은 오히려 먼저 파병을 했다. 이것은 청 정부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일본이 청에 “속히 한국을 대신하여 난을 진압하길 바란다”고 희망한 것이나, “다른 의사가 없다”는 일본 측의 말은 완전히 빈말이었다. 일본 정부와 군사 당국의 조선 문제에 대한 주장은 완급(緩急)의 차이는 있었지만, 출병 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전 모의된 일이었다. 동학당 기의가 빠르게 전개되자 일본 군사 당국은 적극적으로 출병을 준비했으며 비밀리에 군사동원을 진행했다.³³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수장으로 한 일본 정부 당국은, 특히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

光]의 태도는 더욱 적극적이어서 일본이 조선에서 세를 키울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³⁴ 그러나 당시 한성과 부산, 인천 등지는 위험지역이 아니었으며 일교거류지(日僑居留地)에는 난의 어떠한 파급도 없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출병을 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청의 파병을 기다렸다가 천진조약의 동시출병권에 의거하여 당당하게 출병한 것이었다. 주한대리공사(駐韓代理公使) 스기무라 후카시는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원세개의 동태를 살피며 적극적으로 청의 출병을 중용했다. 그 절차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4월 29일(6월 2일) 외무성이 스기무라의 급전(急電)을 통해 조선 정부가 원세개에게 청의 파병을 요구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바로 관저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한 이토 히로부미는 참모총장 로센 다루히토 신노(樓川熾仁親王)와 참모차장 가와가미 소로쿠(川上操六)를 회의에 참석케 하여 비밀리에 조선 출병을 결정했다. 이토는 즉시 이 비밀사항을 메이지 천황에게 상주하여 허락을 얻었다.³⁵ 사실 조선 정부는 4월 30일(6월 3일)에야 정식으로 청에 파병을 요청했다. 청 정부는 5월 2일(6월 5일), 정식으로 조선 파병의 유지를 하달했으며 5월 3일(6월 6일) 섭사성(攝士成)이 부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갔다. 청 정부가 그날 왕봉조에게 명하여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통지하도록 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출병을 결정한 후, 5월 2일(5월 5일) 오후 4시 전후에 주조공사(駐朝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외무성 참사관 모토노 이

33 상세한 내용은 田保橋潔 著·王仲廉 譯(1932), 『甲午戰前日本挑戰史』, 上海: 南京書店, 68쪽; 王信忠(1937),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北平: 國立清華大學, 157쪽; 戚其章(1990), 앞의 책, 23~24쪽 참조.

34 山崎有信(1915), 『大鳥圭介傳』, 東京: 東京博文館, 250쪽.

35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3쪽.

치로[本野一郎], 해군 군령부(軍令部) 제2국원(局員) 해군소좌 야스하라 긴지[安原金次]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순양함 야에야마[八重山]호를 타고 요코스카[横須賀]항을 출발했다. 이후 계속 증병하여 병사 수도 많아지고 조직도 치밀해져 청 정부를 능가했다.³⁶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기 하루 전, 청이 정식으로 병사를 파견하여 조선으로 오기 4일 전, 일본 정부가 출병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군대는 청의 군대가 출발하기 하루 전, 왕봉조가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통지하기 하루 전에 이미 출발했다.³⁷ 요컨대 일본 군대의 파견은 결코 피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준비되어 온 도발행위이다. 이에 대해 청 정부는 조금도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

처음으로 일본 파병을 보고한 사람은 청의 주일사신(駐日使臣) 왕봉조였다. 5월 3일(6월 6일), 왕봉조는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의 오토리가 20여 명을 이끌고 한국으로 갔으며 함선 1척을 파견하여 상민을 보호

³⁶ 일본 파병 수와 경로 등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王信忠(1937), 앞의 책, 162~165쪽; 戚其章(1990), 앞의 책, 27~30쪽 참조.

³⁷ 최근 陸奥의 ‘6월 2일 출병’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전쟁 목적은 아니다”라는 학설이 일본 학계에서 유행했다. 역사학자 信夫清三郎이 이 관점을 지지했는데, 陸奥의 출발점은 평화적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자고 인식한 것으로 출병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일본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크다. 예를 들어 高橋秀直과 大澤溥明이 바로 이런 관점의 제창자이다. 상세한 내용은 高橋秀直(1995), 『日清開戦への道』, 東京: 東京創元社, 305~306쪽; 大澤溥明(1993), 「朝鮮論と日清開戦」, 『熊本法學』 1993-7호 참조. 중국 학자 戚其章은 이 관점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계통적으로 반박했다. 상세한 내용은 戚其章(2006), 『走進甲午』,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34쪽 참조. 이 글은 戚其章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하러 한다고 보고했다.³⁸ 왕봉조가 일본의 파병에 대해 총서와 상의해서 전보를 보내 자문을 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³⁹ 다음날 일본은 조선주재 영사관, 천진주재 영사관을 통해 계속해서 원세개와 이홍장에게 통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5월 5일(6월 8일), 왕봉조에게 알려주고, 아울러 주화사령관(駐華司令官)이 총서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왕봉조의 보고 중에 나오는 20여 명이 청 정부가 가장 먼저 이해한 일본의 파병 수였다. 일본이 청 정부 각 부서에 알려준 내용에는 파병 수가 없다. 일본은 오히려 파병 목적이 “사서(使署), 영사 및 상민을 보호하는데 있다”,⁴⁰ “사관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⁴¹ “상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관병을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말썽의 단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⁴² 이 때문에 일본의 파병에 대해 이홍장 등은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며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파병에 대한 해석과 보고된 사람 수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 놀랄 만하다. 5월 4일(6월 7일), 한국 외서(外署)는 오토

38 「寄譯署」(光緒 20년 5월 3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4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3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8쪽(956).

39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3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8쪽(957).

40 「寄譯署」(光緒 20년 5월 4일 未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9쪽(961).

41 「寄譯署」(光緒 20년 5월 5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9쪽(962).

42 「寄譯署」(光緒 20년 5월 5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963).

리가 일본 군대와 함께 한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일을 만들지 않을까 염려하여 원세개를 접견하였다. 그러나 원세개는 오히려 오토리는 쓸데없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순포(巡捕) 20명을 데리고 와도 달리 병사를 움직일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⁴³

이홍장은 원칙상 일본 파병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먼저, 조선이 아직 일본에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일본은 마땅히 파병하면 안되고, 둘째, 만약 사관(使館), 상민 보호가 이유라면,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성은 현재 평온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그는 왕봉조가 일본과 ‘잘 협의하길’ 바라며, 아울러 의견을 처리해서 총서에 전보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⁴⁴ 그러나 사정이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의 전제하에, 그는 일본의 파병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5월 4일(6월 7일), 이홍장은 일본의 천진영사(天津領事) 아라카와를 만났다. 먼저 이홍장은 일본의 파병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하고 한성, 인천, 부산 각 지역은 현재 모두 안정적이며 청이 파병한 것은 전적으로 내지 토비를 소탕하기 위한 것으로 한성과 각 통상항구에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이 “파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 영사가 “이미 병사가 파견되었을 때, 말이 조금도 없었지만”이라고 하자, 이홍장은 오히려 바로 양보하며 “만약 이미 파병하여 관상(官商)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절

43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4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9쪽 (960).

44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3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8쪽 (957); 「直督李鴻章致總署汪鳳藻電韓未請日派兵日已派往祈安商」, 『淸季外交史料』 卷91, 2쪽.

대 파병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또한 조선이 파병을 청하지 않았으니, 내지로 들어가 청과 일본 병사 사이에 분쟁의 근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본 병사 수가 “많지 않고”, “내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그는 일본의 파병을 반대하지 않았다. 아라카와는 즉시 외무성과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보로 이를 전달하였다.⁴⁵ 이홍장의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라는 입장은 청이 천진조약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장의 이와 같은 입장은 이후 총서가 접수하여 일본의 파병에 대한 청 정부의 최초의 입장이 되었다.

총서는 5월 6일(6월 9일)에야 비로소 일본 주화대리공사(駐華代理公使)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로부터 일본 파병에 대한 조회를 받고 “조선에 현재 내란이 있어 병사를 파병하려고 한다. 조약에 따라 통지를 한다”고 알려주었다.⁴⁶ 당일 오후 3시 전후, 오토리와 그가 인솔한 부대는 이미 인천항에 도착했다. 문서에는 단지 “한 무리 병사”라고만 적혀 있어, 청 정부는 일본 군대가 이미 조선에 도착했을 때조차 일본의 파병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청 정부는 비록 일본의 파병을 반대했지만, “사서(使署)와 영사 두 관서와 상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파병은 필요없으며, 특히 내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홍장의 원칙을 채택했다. 원세개는 일본군의 한성 진입 저지를 조선 주재 각국 공사가 나서서 따져주길 바랐다. 당시 한성에는 아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세개는 일본의 파병에 대해

⁴⁵ 「寄譯署」(光緒 20년 5월 4일 未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963).

⁴⁶ 「發北洋大臣」(光緒 20년 5월 6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968).

경계했다. 즉시 조선 외서에 사람을 파견하여 “한성은 고요하기 때문에 일본 병사가 온다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 우의를 망칠 것이다. 또한 을유(乙酉) 여름 이미 각국에 알려 일이 있으면 조선이 40명의 병사를 파견하여 관서를 보호할 것이니, 절대 한성으로 오게 하지 말 것이며, 일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원세개는 만약 일본이 이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는다면, 조선을 대신하여 변론문을 작성하고, 아울러 조선이 나서서 각국에 도움을 청하게 할 생각이었다.⁴⁷ 조회를 받은 당일, 총서는 이홍장에게 문서를 보내 일본 군대의 수와 조선에 도착한 정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동시에 원세개에게 “각국으로 하여금 왜병이 한성에 온 것에 대해 따지도록 할 수 있는지”도 자문했다.⁴⁸

그러나 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라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전인 5월 6일(6월 9일), 고무라가 총서에게 일본의 파병을 통지한 날, 청 정부는 일본의 다수 병력 파병을 알게 되었고, 형세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⁴⁹ 청 정부의 대일본정책은 새로운 선택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⁴⁷ 「寄譯署」(光緒 20년 5월 4일 未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9쪽(961).

⁴⁸ 「發北洋大臣」(光緒 20년 5월 6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968).

⁴⁹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966); 「寄譯署」(光緒 20년 5월 6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971).

2. 일본의 증병과 조속한 난 평정 후 일병을 철수시키자는 정책 확립

일본의 파병 인원 수가 많은 상황에서, 청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정책은 중·일 양국이 신속하게 동시에 철병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철병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는 ‘토비를 진압’하여, ‘조선을 안정시킴으로써’ 일본 철병을 독촉하는 데 있었다. 이는 분명히 천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약 3관에는 “일이 끝난 후 즉시 철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신대책은 일련의 출병 저지 교섭이 좌절된 후 나온 것이었다. 출병 저지 노력은 원세개와 조선 정부가 협력하여 조선에서 진행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처음 원세개는 이전에 스기무라 등이 청의 출병에 이견이 없다고 한 말을 깊이 믿고 있었다. 그는 오토리가 병사 20인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결코 믿지 않았다. 5월 4일(6월 7일), 원세개는 스기무라의 일본 파병에 대한 ‘밀서’를 받은 후, 바로 눈치를 채고 조선 외서(外署)에 사람을 보내 따져 물었다. 스기무라가 일부러 청을 속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파병의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형세가 진전되면서 원세개의 낙관적인 예측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5월 5일(6월 8일), 인천 주재 일본영사가 인천 주재 청영사에게 일본이 앞으로 300명을 한성으로 파견할 것이며 오토리도 곧 당도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⁵⁰ 그 날 오후, 왕봉조는 전보로 일본이 3000여 명의 군대를 이미 출발시켰다면서, “확실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⁵¹

50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966).

51 「寄譯署」(光緒 20년 5월 6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

조선 정부는 원세개의 의견에 따라 일단 일본 파병을 저지하고자 했다. 5월 5일(6월 8일), 조선 외서는 원세개의 뜻에 따라, 스기무라 후카시에게 병사를 저지하라고 논박했다. 스기무라는 비록 ‘어색’하였지만, 책임을 청에 떠넘기며, 일본의 파병은 청이 파병했기 때문이며, 조선과 청이 의논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조선 간에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떤 소란이 없더라도 일본은 파병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일본이 “마땅히 갖고 있는 권리”이며, 조선은 “조약에 따라 조속히 병방(兵房)을 수리해야만 한다”고 했다. 스기무라에 대한 반박이 별 효력이 없는 후, 원세개는 조선 정부에 먼저 조선 주재 일본사절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 외무성과 파병 저지 교섭을 벌이라고 했다. 동시에 주병조선(駐兵朝鮮)이란 일본의 음모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이 기회를 타 파병을 한 일본에, “말로는 저지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왕 왔으나,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봐 두렵다”고 했다. 일본이 파병을 한 진정한 의도는 “조약에 근거하여 병사를 주둔시켜 조선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다.⁵² 다음날 조선 측이 일본의 파병 문제에 대해 따지며 문서를 보내 저지하려고 했지만 일본 사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조선 국왕은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 외참의(外參議)를 인천에 보내면서 “우리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이번 행동이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조선 정부는 청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⁵³

(971).

52 「寄譯署」(光緒 20년 5월 6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 (967).

5월 6일(6월 9일) 일본 군대가 계속해서 조선에 도착했다. 오토리는 순포(巡捕) 20명을 이끌고 이미 인천에 상륙하였다. 그는 병사 300명뿐 아니라 대포도 가지고 왔다.⁵⁴ 그날 조선 주재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는 정식으로 조선 정부에 문서를 보내, 오토리가 5월 7일 새벽 4시 호위 수사 300명을 이끌고 육로로 한성에 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⁵⁵ 일본 군대가 조선에 온 목적에 대해, 조선 주재 일본 사절의 통역관은 여전히 그 뜻을 숨기고자 했다. 원세개는 일병(日兵)의 도래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하며, “각국이 모방하려는 것 같다”, “때로 다른 사람이 친진조약 내에 들어오려는 것 같아 특히 우려된다”며 첩병을 건의하였다. 그 통역관은 “우리 정부는 다른 뜻이 없다. 만약 한왕이 허락하지 않아, 중당(中堂)이 전보를 보낸다면, 강력하게 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홍장으로 하여금 반신반의하게 했다.⁵⁶ 그러나 청 정부는 5월 6일(6월 9일) 밤, 오토리가 인솔한 부대 약 450명이 이미 인천에 도착했다는 것을 재빨리 확인했

53 「寄譯署」(光緒 20년 5월 6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亥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969).

54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12쪽(972); 「寄譯署」(光緒 20년 5월 7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쪽(973).

55 「寄譯署」(光緒 20년 5월 7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쪽(973).

56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12쪽(972).

다. 5월 7일 새벽 4시 오토리는 병사 400명을 이끌고 육로를 통해 한성으로 향했다. 50명으로 나누어 포 4문을 실은 소륜(小輪)이 한성으로 향했다. 대규모 파병과 한성으로 진군한 일에 대해, 주일본사관(駐日本使館) 김사철(金思轍)은 오히려 “청이 출병을 조회(照會)했다”며, 출병의 책임을 완전히 청에 전가하고, 앞서 청 정부가 말한 상민(商民)과 사관(使館)을 보호하기 위한 파병은 언급하지도 않았다.⁵⁷

일본 군대 이동과 오토리가 병사를 이끌고 한성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홍장은 정여창(丁汝昌)에게 용진(龍鎮)과 소륜 2척을 이끌고 아산으로 가서 정황을 살펴보고라 명하고, 방백겸(方伯謙)은 유등룡(劉等龍)을 파견하여 한성을 둘러보게 했다.⁵⁸ 그러나 일단은 각국이 나서서 일본의 출병을 저지해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일본 파병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관망적이었으며 김사철과 일본 측이 만났다는 것을 안 후에도 그러했다. 이홍장은 일본의 파병으로 군웅이 조선을 두고 다투는 형세가 야기될 것이라 생각했다. “한성은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일본이 혼자 병사를 이동했으니, 각 영사 사이에 마땅히 공론이 있을 것이다.” 그는 원세개가 각국을 움직여 들고 나서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청 정부 측에서는 그가 “차분하게 처리하기”를 주장했고, “만약 각국이 병사를 이동시켜 지원한다면, 다만 소란스러워질 뿐이다”⁵⁹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세개는 각

⁵⁷ 「寄譯署」(光緒 20년 5월 7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7쪽;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쪽(974).

⁵⁸ 「寄譯署」(光緒 20년 5월 7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쪽(973).

국이 나서서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재빨리 전보를 통해 보고했다. 왜냐하면 조선 주재 러시아, 프랑스 공사는 모두 떠나고 단지 통역관만이 남아 잠시 일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영국 모두 영사대리였으며, 새로 부임한 미국공사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듯싶었다. 원세개는 “일본이 맘을 단단히 먹고 왔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서둘러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⁶⁰ 당시 한성에서는 군웅쟁탈전이 펼쳐졌다. 5월 8일(6월 11일) 오토리와 그가 인솔한 부대, 무기가 한성에 도착했다. 이와 동시에 여선(黎仙)이 미국 병관(兵官) 여러 명과 함께 한성으로 갔고, 아울러 난을 토벌하라는 청 정부의 칙령을 조선 측에 전해 주었다.⁶¹ 프랑스 또한 병사 40명을 한성으로 파병했다.⁶²

일본이 조선 측에는 일본의 파병의 책임을 완전히 청에 전가하고, 청 정부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자, 그때서야 청 정부는 일본이 ‘음흉하고 악랄한’ 수단을 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본이 조선 동란을 기회로 병사를 보내 협박을 하고, 또한 청이 출병했다는 통지를 빌미로 삼으니 매우 악랄하다.” 이때 각국에서는 계속하여 끼어들려고 했다. 이 때문에 청

59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7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7쪽.

60 「寄譯署」(光緒 20년 5월 7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7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쪽(975).

61 「北洋大臣來電三」(光緒 20년 5월 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쪽(976).

62 「北洋大臣來電四」(光緒 20년 5월 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2~13쪽(977).

정부는 이홍장 등의 의견을 채택했지만 오히려 일본군이 조용히 관찰하는 태도를 보이자 원세개한테 “오토리가 왜 한성에서 회의를 열려 하는가”에 대해 조사토록 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가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도록” 했다.⁶³ 동시에 이미 한성으로 들어온 일본 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홍장이 원세개에게 명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파병은 곧 청과의 체면 다툼이므로, “병사는 오더라도 전쟁은 아니다”, 조선이 “절대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했다. ② 여러 차례 일본 파병 저지가 효용이 없자, 신속하게 전라도의 난을 진압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전라도가 평안해져 청 군대가 철수하면 ‘일본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 ③ 만약 일본이 조선에 위협을 가한다면, 조선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불허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⁴ 이렇듯 일본이 자국 상인, 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파병한 문제에 대한 ‘대군 파병의 불필요 내지 진입 불가’ 정책은 아직 그 방법을 진전시키지도 종결짓지도 못했다. 이후 청 정부는 중점을 조속한 난 진압에 둬으로써 일본 파병과 주둔의 구실을 없애고자 했다.

5월 8일(6월 11일) 오토리가 한성에 와서 조선 외서(外署)와 회담을 했다. 쌍방은 “오랫동안 담화를 했고”, 오토리는 이 자리에서 조선이 스스로 난을 진압할 능력이 없어 청에 대신 진압을 청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며, “병사를 이끌고 와 일본 스스로 보호

63 「發北洋大臣」(光緒 20년 5월 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3쪽(980);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8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7쪽.

64 「寄譯署」(光緒 20년 5월 8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7쪽; 「北洋大臣來電六」(光緒 20년 5월 8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3쪽(979).

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는 조선의 동란이 평정된 후 바로 철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 정부의 기존 방침과 약속이나 한 듯 거의 같아 보였다. 이 때문에 원세개는 다시 섬지초(葉志超)와 조선 정부에 “조속히 일본을 물러나게 하려면 조속히 난을 진압해야만 한다”고 재차 알려 주었다.⁶⁵ 최대한 빨리 난을 진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인 듯 보였다.

이 때 계속되는 일본 증병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5월 8일(6월 11일) 밤, 인천 방면에서 전해 온 소식은 일본 군대 1000여 명이 다음날 상선(商船)을 타고 인천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이 이미 배를 준비해서 병사를 연안에 상륙시키고 있으며, 일본 군대 8000명이 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⁶⁶ 오토리가 인천에서 한성으로 이끌고 온 왜병은 모두 1000명 정도였다.⁶⁷ 인천 주재 일본영사는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 일본 기마병과 보병이 1~2일 내로 인천에 도착할 것이며 항구에 도착한 후 바로 한성으로 갈 것이라고 통지했다. 동시에 세사(稅司)는 일본 정부가 이미 상선 14척을 빌려 병사를 싣고 인천으로 오고 있으며, 항구에 도착할 때 지체되거나 방해됨이 없기를 바란다는 일본영사의 문서를 받았다.⁶⁸ 무쓰 무네히쓰는 일본의 파병에 대한 청 정부의 완곡한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65 「寄譯署」(光緒 20년 5월 9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8쪽;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9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3쪽(981).

66 「袁道來電」(光緒 20년 5월 8일 酉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8쪽.

67 「寄譯署」(光緒 20년 5월 9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8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9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3쪽(982).

68 「北洋大臣來電三」(光緒 20년 5월 9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4쪽(983).

했다.

귀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비록 屬邦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조선이 청의 屬邦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번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濟物浦條約에 근거한 권리이다. 그리고 출병에 대해 天津條約에 따라 문서로 조회를 하는 것 이외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뿐이다. 따라서 군대 파견의 크고 작음이나 進退, 動止에 대해 우리가 청 정부의 방해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가령 日·淸 양국 군대가 조선 내에서 서로 맞부딪친다고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군대의 기율은 엄격해서 결코 경솔한 행동으로 충돌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 정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귀국 정부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군대에 명하기를 희망한다.⁶⁹

조회 내용을 보면, 무쓰 무네타쓰는 여전히 중·일 양국 군대가 최선을 다해 충돌하지 않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오토리는 이미 군대를 이끌고 한성으로 들어갔고,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혼성여단의 일부도 이미 인천에 도착한 상태였고, 그 중 첫번째 부대는 인천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에 따라 난 평정과 철병 교섭은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69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10쪽.

IV. ‘난 진압’과 ‘조약에 따른 철병’ 교섭

1. 원세개와 오토리의 철병 회담

일본이 증병할 즈음 조선 정부는 동란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⁷⁰ 이것은 “조속히 조선의 동란을 평정해서 일본 병사를 물러나게 한다”는 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청 정부는 5월 9일 밤(6월 12일 새벽) 조선의 동란이 평정되었다는 원세개의 전보를 받았다. 조선 국왕이 사람을 파견하여 말하길, “기의군이 청 병사가 연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도망쳤다. 그로 인해 전주가 탈환되었다”고 했다. 이후 조선 각군을 나누어 방어하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인 즉 청 군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일본 군대가 경성에 주둔하는 것이 모두 두려워하는 일로 날로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군대가 신속히 철수할 수 있게 하는 중국의 방책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원세개는 조선 정부가 비록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뜻이 “조속히 철병하여 왜병이 물러나게 해달라”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⁷¹ ‘조선의 동란’이 이미 평정되었으므로 천진조약에 따라 청

⁷⁰ 조선 정부의 동학당 기의에 대한 정책은 ‘主剿’에서 ‘主撫’로 바뀌었기 때문에 5월 8일(6월 11일), 삼남초무사 엄세영이 조선 정부를 대표하여 기의군이 제출한 조건을 받아들여 휴전협정, 즉 全州和約을 체결했다. 9일(12일), 전봉준이 전주에서 물러났다. 11일(14일) 신임 전라도 관찰사 金鶴鎭이 취임하여, 지방을 안무했다. 또한 청 정부의 군대는 아직 기의군과 전쟁을 하지 않은 때였다.

⁷¹ 『北洋大臣來電五』(光緒 20년 5월 9일 밤 丑時),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4쪽(985).

과 일본은 마땅히 공동으로 철병해야 했다. 이를 위해 청 정부는 즉시 철병 교섭을 전개했다. 철병 교섭은 동시에 한성과 동경에서 진행되어 원세개와 왕봉조(汪鳳藻)가 각각 주관했다. 먼저 원세개와 조선주재공사[駐朝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사이에 철병 교섭이 있었다.

원세개와 오토리 사이의 교섭에서 공동 철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하다가 5월 9일에서 13일까지, 이 짧은 며칠간, 일본 정부의 기존 도발 정책과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이 끊어지고 말았다.

사실 오토리는 병사를 이끌고 한성으로 들어왔을 때, 조선의 동란 형세가 크게 누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성과 통상항구는 어떠한 위험도 없기 때문에 일본은 파병 명분, 특히 한성에 주둔하여 상민(商民)과 사관(使館)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잃어버렸다. 오토리는 병사를 이끌고 오랫동안 한성에 머무르기 난감했으며, 특히 이전의 이유로 많은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교 분쟁을 초래할까 걱정했다.⁷²

5월 9일(6월 12일), 오토리는 한성에 온 다음날 원세개를 방문했다. 쌍방은 2시간 정도 회담했다. 병사를 이끌고 한성에 온 이유에 대해 오토리는 “진실로 사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의 토비 진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쌍방은 “인천에 도착해서 한성으로 오고 있는 800명의 병사는 잠시 머문 후 철수한다. 현재 한성에 있는 수사병(水師兵)은 800명이 오기를 기다린 후 바로 배로 돌아갈 것이며, 뒤이어 오는 병사는 연안에 오르지 않고 바로 돌아간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병사는 전보를 보내 오지 말도록 한다. 중국 또한 한성으로 더 이상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협의했다. 원세개는 일본이 14척의 배를 빌려 병사

⁷²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12~13쪽.

를 운송했으며, 병력이 약 2400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 이미 기의군이 청 군대가 온다는 것을 듣고 뿔뿔이 도망쳐 버렸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원세개는 “조선의 형세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 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파병을 한다면 청 또한 군대를 더 파견할 것이며 만약 서방까지 가세를 한다면 상황 수습이 어려워지므로, 청은 평화스러운 국면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오토리도 찬성을 표했다. 원세개는 한성 주둔 일본 병사의 수를 줄여 인천에 나누어 머물게 하라고 권고했다. 오토리는 “한 부대, 한 장군 이렇게 나누어 주둔시키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는 그러나 “사태가 안정되기를 기다린 후 즉시 전부 해산할 것이니, 반드시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의 파병 소식을 들으면 청 또한 상당한 병력을 준비해 맞설 것이기 때문에, 원세개는 만약 오토리가 계속 파병되는 군대를 저지할 수 있으면 자신도 전보를 보내 군대 증파를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토리는 이미 인천에 도착한 800명의 병사 이외에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⁷³

다음날인 5월 10일(6월 13일), 원세개는 오토리를 방문하여 전날 약속한 공동 철병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고, 쌍방은 동아시아 형세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서로 의견이 잘 맞았다.⁷⁴ 공동 철병 분위기는 한때 양호하

⁷³ 「大鳥公使-袁世凱ノ應對筆記」,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00~202쪽; 「寄譯署」(光緒20년 5월 10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9쪽; 「北洋大臣來電」(光緒20년 5월 10일 戌時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3~14쪽(986).

⁷⁴ 「大鳥公使-袁世凱ノ應對筆記」,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02~204쪽; 「北洋大臣來電三」(光緒 20년 5월 10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게 형성되었다.

원세개와 오토리의 철병 교섭에 대해, 청 정부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홍장(李鴻章)은 원세개의 전보를 받은 후, 오토리의 입장을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철병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본래 병사를 더 파병할 생각이었지만 원세개의 전보를 받은 후 즉시 중단하고, 전보로 섭지초(葉志超), 섭사성(聶士成)에게 공주, 아산에서 잠시 주둔하며 전주 일대의 적 동태를 잘 주시한 후 진공할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숙고하라고 명했다.⁷⁵

조선 정부는 오토리와 원세개가 회담했다는 것을 알고, 기의군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서한으로 알려주었다. 이는 이홍장으로 하여금 철병 교섭에 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5월 10일(6월 13일), 조선 정부는 원세개와 오토리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반드시 청이 철병을 해야 일본도 동시 철병을 고려한다는 것을 안 후, 곧 원세개에게 서한을 보내 재차 기의군이 이미 뿔뿔이 흩어져 전주가 회복되었으니 청은 병사를 증파하지 말고 일본 철병을 독촉해 달라고 청했다. “그 비적은 흩어져 숨어 있다가 깊은 곳에서 모이기 때문에 오직 저의 병사들만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국(上國, 청)의 병사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말에 일리가 있다”며, 섭지초에게 전보를 보내 “만약 더 진군할 생각이 아니라면, 조속히 군대를 아산으로 돌리고 군대를 정비해서 기한 내에 강을 건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원세개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동시 철병을 상의하도록 하라. 관망하다가 주저해서 중요한 일을 그

15쪽(988).

75 「寄譯署」(光緒 20년 5월 10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39~40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0일 戌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15쪽(986).

르치지 말라”고 명했다.⁷⁶ 이홍장은 이미 오토리가 동시 철병에 동의했고, 조선도 전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며 철병을 요구하니, 청의 군대가 조선에서 “오래 머물러 쓸데없는 일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지 오토리와 동시 철병을 약속만 하면, 철병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총서(總署)에 이러한 의견에 대해 주를 올려달라고 청했다.⁷⁷ 이와 동시에, 왕봉조도 동경에서 진행되는 교섭에서 실마리를 잡는 듯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하겠다.

여러 가지 정황은 철병 교섭이 적어도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청 정부는 이홍장 등이 진행시킨 철병 교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확실히 이홍장은 “논의의 요점은 앞으로 동시에 철병하는 데 방해될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요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청 정부의 이번 파병 목적은 토비를 진압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청 정부는 현재 토비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아직 처벌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사가 물러난 후 다시 일어날 것을 걱정했다. 이에 따라 섭지초와 섭사성에게 토비가 도망간 흔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체포할 방법을 강구해 “지도자급 범인을 생포하거나 참수시켜” 후환을 없애도록 했다. 요컨대 청 정부는 아직 막 수립된 “동란을 속히 평정하여 철병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철병 전 먼저 조선 내부의 철저한 반란 진압을 원했다. 당시 일본군의 한성 주둔은 한일조약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총서는 이홍장에게 “왜병이 한성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한왜 약정(韓倭約定)’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76 「朝鮮漢城速寄葉軍門」(光緒 20년 5월 10일 申時),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0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0쪽.

77 「北洋大臣來電五」(光緒 20년 5월 10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6쪽(990).

자문했다. 아울러 이홍장이 이 조약 내용을 제공해 주길 희망했다.⁷⁸

이홍장은 총서의 의견에 대해 일정 정도 제재를 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5월 11일(6월 14일), 이홍장은 총서에 답전을 보냈다. 전보에서 그는 “체포할 방법을 강구하라”, “지도자급 범인을 생포하거나 참수하라”는 총서의 의견에 대해, “지금 일본을 방어하는 것이 토비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한국 군대가 이미 청군의 진입 금지를 요구했고, 더욱이 산세도 험한 낮은 지역에서 청의 군대가 위협을 무릅쓰고 깊숙이 들어가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총서가 ‘한왜약정’을 물어본 것에 대해 그는 비교적 상세하게 회신했다.

이홍장은 갑신사변 후 일본과 조선(光緒 10년 12월) 그리고 일본과 청 사이에 체결한 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했다. 주병(駐兵)과 철병(撤兵)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양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진조약은 청·일 양국이 전부 철군하여 양국간의 불상사를 피하자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의 조약은 “일본 사관(使館)이 약간의 경비병을 둘 수 있으며, 만약 조선의 병사와 민이 규율을 잘 지키면 1년 후 방위할 필요 없이 철병한다”는 등 일정 인원이 머물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결코 양국 철병 협상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었다.⁷⁹ 이홍장은 한일조약이든 청일조약에 근거하든, 양국이 공동으로 철

78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11일 辰時),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6쪽(992).

79 「寄譯署」(光緒 20년 5월 1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1~42쪽; 「北洋大臣來電四」(光緒 20년 5월 10일 12시 반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5쪽(989).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이하 『交涉史料』라 약칭)의 「北洋大臣來電四」의 주에 따르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으며, 그 전후 여러 전보를

병한다는 것은 모두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직면한 문제는 다만 쌍방 모두 병사가 머무를 필요가 있는지, 몇 명이 머무를 것인지였다.

‘조선과 일본의 이전 조약’은 광서 10년 11월 24일(1885년 1월 9일)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의증속약(議增續約, 京城條約)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은 5조(條)이다. 제5조는 일본에 대한 사죄(謝罪), 배관(賠款) 이외에 “임오속약(壬午續約) 제5조에 의거하여 호위병사를 둔다”고 규정되었다.⁸⁰ 여기

조사해 보아도 시간이 모두 ‘5월 10일’이라 오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당 전보는 사실 11일 밤이나 12일 아침 시간에 보낸 것이었다. ① 이 「北洋大臣來電」은 또한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復譯署」라 불리는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光緒 20년 5월 11일 酉時’로 되어 있다. 약간 다른 점은 「北洋大臣來電四」의 줄을 바꾸어 쓸 때의 몇 글자 정도가 생략되어 있고, 말미에 한마디가 첨가되어 있다. 또한 李鴻章이 總署의 전보를 11일 酉時에 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다면, 總署가 전보를 받은 시간은 그 날 늦은 밤이나, 가장 늦게는 다음날이었다. ② 사실, 이홍장이 보낸 이 전보는 總署의 ‘5월 11일 辰時’ 전보, 즉 「北洋大臣來電四」에 대한 회신이었다. 11일 辰時 總署가 보낸 전보는 첫째, “지도자급 범인을 체포하여”, “후환을 없앨” 체포방법을 이홍장에게 요구하였고, 둘째, 일본이 병사를 이끌고 한성에 들어 온 것이 한일조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홍장은 회신에서 하나 하나 회답을 하였다. 먼저 일본 進兵 문제에 대해 “韓日의 이전 조약에 대해 문 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신하였다. 『交涉史料』에 있는 이 회신 내용에는, 즉 「北洋大臣來電四」의 첫머리에는 “11일 전보를 잘 받았나이다”라는 몇 글자가 있는데, 이는 總署의 「北洋大臣來電四」 시간과 일치한다. 이는 총서의 11일 전보에 대한 답신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만약 그 날 천진과 북경 간 전보가 3~4 시간 소요되었다고 보면, 李鴻章이 “11일 酉時の 電稿”를 보내서 總署가 받은 시간은 11일 깊은 밤 시간이거나 조금 늦으면 12일 아침일 것이다. 현재 주에 나타난 “光緒 20년 5월 10일 12시 반 도착”은 아니다. 이하 이 전보에서 인용한 것은 『交涉史料』 標注에 근거한 것으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서 임오속약이란 광서 8년 7월 17일(1882년 8월 30일) 조선 대신 이유원(李裕元), 이굉집(李宏集)과 일본 사신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체결한 제물포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사관(使館)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군대의 조선 주둔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이 갑신사변 후 의증속약에서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홍장은 광서 10년(1884) 12월 조선 국왕의 상주문에 일본 속약(續約) 제5관 “일본 사관에 약간의 경비병을 둘 수 있으며, 만약 조선의 병사와 민이 규율을 잘 지키면 1년 후 방위할 필요 없이 철병한다”⁸¹ 등을 첨부한 것이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일본이 군대 파견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천진조약과 제물포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 정부 측 문서는 일본의 근거가 광서 10년(1884) 11월 의증속약 제5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5관은 제물포조약의 관련 규정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당연히 일치한다. 다만 이홍장은 제물포조약보다 의증속약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당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천진조약 중 청·일 주병(駐兵)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의논을 할 때도 사실 몇 개월 전 체결한 이 의증속약 제5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홍장은 광서 10년(1884) 12월, 사관 보호를 위해 주둔할 수 있다는 이 조약 제5관의 내용을 첨부한 조선 국왕의 서신을 받았다. 다음해 3월 이토가 청에 와서 담판을 할 때 이홍장은 더 심혈을 기울여 “상호 전원이 철수한다”고 약정했

80 「會辦北洋事宜都察院左副都察史吳大澂奏朝日議約已竣商辦善後事宜折」(光緒 10년 11월 29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6, 44쪽(316).

81 「寄譯署」(光緒 20년 5월 1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2쪽; 「北洋大臣來電四」(光緒 20년 5월 10일 12시 반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5쪽(989).

다. 목적은 양국간 “불미스러운 단서 조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홍장은 철병이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진행되길 바라고, 다만 일본이 다시 의증속약 규정을 들어 병사 주둔을 요구할까봐 걱정했다.⁸² 갑신정변 후 한·일 갑신속약(甲申續約), 천진조약은 이홍장의 지도와 일본과의 철병 교섭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었다.

우리는 청 정부가 이홍장의 서신을 받은 후 결국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후 역사 과정을 볼 때, 청 정부는 “철저한 토비 진압”으로 일본 군대 철수 정책을 포기하길 원치 않았으며, 다만 이때 진행 중인 철병 교섭을 지지했고 매우 구체적으로 교섭의 뜻을 지시했다. 5월 11일(6월 14일), 이홍장은 원세개에게 전보를 보내 시의적절한 철병 교섭을 지시했다. 그는 한·일 갑신 의증속약이 비록 사관 보호를 위한 병사 주둔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다음해 천진조약이 이미 난 평정 후 전원 철수한다고 규정했고, 조약에서는 또한 앞으로 변란이 있어 병사를 파견할 경우, 난이 진압되면 즉시 철군하며 다시 방어를 위해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조약에 따라 반드시 공동 철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 오토리가 사관 보호를 위해 병사 주둔을 요구하면, 청의 군대 역시 주둔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군대가 주둔한다면 어느 곳에 주둔할 것인지, 원세개에게 조약에 근거하여 오토리와 타협한 후 다시 지시를 기다리라고 요구했다.⁸³ 구체적으로는 청 정부의 철병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철병 교섭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결국 일본이 다른 계락을

82 「寄譯署」(光緒 20년 5월 11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2쪽; 「北洋大臣來電四」(光緒 20년 5월 10일 12시 반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5쪽(989).

83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1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2쪽.

꾸며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오토리가 주동적으로 원세개와 철병을 상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일본 정부의 뜻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상반된 것이었다. 5월 9일(6월 12일) 오토리는 원세개와 철병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협정을 마친 후 무쓰에게 전보를 보내 협상의 대략적인 경과를 보고하고 허락을 청했다. 하지만 무쓰는 협상 내용을 거부하였다. 5월 10일(6월 13일), 무쓰는 오토리에게 전보를 보내 연이어 가고 있는 병사들을 한성으로 들여보낼 것이라며, 조선 정부에 동학당 토벌의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부대의 한성 진입의 이유로 삼도록 하라고 명했다. 동시에 앞으로 조선의 정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⁸⁴ 5월 11, 12일(6월 14, 15일),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철병하지 않고 공동으로 조선 내정을 개혁한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한 도발정책을 확정해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만약 청이 일본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단독으로 책임지고 조선 정부에 대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⁸⁵ 5월 12일(6월 15일) 오후 8시, 무쓰는 오토리에게 전보를 보내 어떤 일을 막론하고 병사를 주둔시키라고 명했다. 이를 위해 즉시 공사관 관원이나 영사관 관원을 폭동지역으로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또한 이 조사 임무를 천천히 수행하고, 아울러 반드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보고를 작성하라고 명했다.⁸⁶ 한·일 전선(電線)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전보는 5월 15일(6월 18

⁸⁴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13쪽.

⁸⁵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14~15쪽.

⁸⁶ 이 훈령에서 2가지 점을 지적했다. ① 내각회의에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결의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조선 정부의 조직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리고 청 정부

일) 오후 2시에야 도착했다. 이 때문에 5월 11일(6월 14일)에서 5월 15일(6월 18일) 사이에 오토리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세개와 철병 상의는 결국 끝을 맺지 못했다.

5월 12일(6월 15일), 원세개는 일본 통역관을 통해 오토리에게 공동철병 문제 상의를 독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친진조약에 근거하여 사관 보호를 위해 파견되는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일본이 대군을 파병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본래 일본이 한성에 병사를 주둔시키면, 아산에 주둔한 청 군대 또한 한성으로 진군하여 주둔할 수 있지만, 많은 병사가 만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현재 이미 기의군이 흩어졌는데, 양국 군대가 “무엇 때문에 헛되이 버티고 있는가?” 청은 본래 철병을 하려 했는데 일본이 증병하는 바람에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오토리가 대국(大局)을 생각해서 청 정부 측과 신속히 끝맺을 방법을 상의해서 다른 열강의 간여를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대치의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로 하여금 공동위원회 以達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명하도록 했다. 다음날 陸奧는 주일중국사신 汪鳳藻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비밀에 부치도록 했다. ② 陸奧는 중국과의 이 일에 대한 담판 문제에 대해 大鳥에게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일본 군대를 한성에 머무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李鴻章이 공동 철병에 대해 고심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군대 철퇴를 지연시키는 “가장 공공연하고 솔직한” 방법은 바로 공사관의 관원을 파견하거나 영사관의 관원을 파견하여 폭동지역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사를 지연시키고, 반드시 평화적 상황과 반대되는 보고를 해야만 했다. 만약 조선 정부가 이미 평화 회복을 주장하고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면, 일본 정부와 그 자신이 친히 특별히 파견하여 조사 상황의 보고를 해야만 했다. 田保橋潔 著·汪仲廉 譯(1932), 앞의 책, 94~95쪽.

다.” 이에 대해 통역관은 일본 정부가 헛소문을 끝이곧대로 믿고 청의 파병에 대비하여 급작스럽게 파병을 한 것으로, 스스로도 “다만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했다. 오토리 또한 “너무 급했다”고 말했다.⁸⁷

5월 14일(6월 17일), 원세개는 오토리와 매우 구체적인 철병 방안을 약정했다. 즉 일군은 이미 한성에 도착한 1000명 중 4분의 3을 철수하고 250명을 인천에 주둔시키며, 청의 군대는 5분의 4를 철수하고 400명을 인천 부근에 주둔시키며 모두 조선 동란이 평정되기를 기다린 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오토리는 철군 여부에 대한 조정의 명을 받지 않아 철병의 가부에 대한 정부의 답신이 와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했다. 이홍장은 “일본 정부의 뜻이 심히 교활하다”고 여겼지만, 철병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않았다.⁸⁸ 이때 이홍장은 조선 측과 원세개의 보고에 근거하여 조선 동란이 즉시 평정될 것이므로 일본과 “조약에 따라 철병 교섭”을 상의해서 “일본의 위협을 피하고”, “원세개와 비밀리에 철수와 주둔을 상의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청의 증병을 반대하고, 임시 지연책으로 관망하다가 “다시 적의 동태를 살펴 판단할 생각이었다.”⁸⁹

그러나 5월 14일(6월 17일), 일본 정부의 진의를 알아차린 오토리의 태

⁸⁷ 「寄譯署」(光緒 20년 5월 12일 卯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2쪽;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12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6쪽 (1993).

⁸⁸ 「寄譯署」(光緒 20년 5월 14일 戌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4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15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쪽 (1997).

⁸⁹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15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쪽 (1996).

도가 돌변했다. 이때 이홍장은 일본의 기존 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진조약의 틀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고자 했다.

2. 왕봉조의 철병 교섭

원세개와 오토리가 철병 교섭을 할 때, 왕봉조도 동경에서 철병 교섭을 진행했다. 5월 9일(6월 12일), 이홍장은 조선 측의 전보, 즉 조선의 내란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곧 주일사신 왕봉조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증병 사실을 알아보고, 철병 교섭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해 보니 한성에는 아무 일도 없으며, 전주는 이미 탈환되어, 이미 외서(外署)에게 따져묻고 있다. 아울러 각 국원(國員)이 조사하여 따져묻길 바란다. 일본은 병사를 이동시킨 것이 이미 너무 많은데 사관을 보호한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외무에게 자문을 구해 파병을 저지하길 바란다.”⁹⁰

5월 10일(6월 13일), 왕봉조는 이홍장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전보로 보고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현재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은 병사를 파병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토는 “조선 동란이 긴박한데, 길이 멀어 제대로 병사를 공급하기 어려울까봐 파병이 다소 많았다”고 했다. 오토리가 말한 바와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그는 사후에 병사 주둔에 뜻이 있음을 내비쳤지만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파병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란 평

90 「奇日本汪使」(光緒 20년 5월 12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8쪽;
「北洋大臣電五」(光緒 20년 5월 9일 밤 丑時),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4쪽(985).

정을 기다렸다가 상호 철병하는 것은 이후 일본과 총서가 방법을 상의하자며 그 뜻을 대신 전달해 주길 바랐다.⁹¹

원세개와 오토리의 철병 교섭이 급속도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었지만, 이홍장은 여전히 왕봉조가 일본에서 그 상태를 타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5월 13일(6월 16일) 오시(午時), 이홍장은 왕봉조에게 원세개와 오토리의 협상이 대치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전보로 알려주었다. 동시에 조선의 기의군이 도망쳤으며, 전라도가 이미 탈환되어 외국군의 힘을 빌려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왕봉조가 일본 외무성 및 이토와 ‘적절한’ 협상을 행하여, 천진조약에 따라 “난이 평정되면 즉시 철군하고, 다시 남아 방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조선인의 의심을 피하고 각국이 탄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동시에 만약 일본 병사가 조선에 남는다면, 청 또한 병사를 주둔시켜, “일이 종결되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었다.⁹²

그러나 일본 측은 이미 5월 12일(6월 15일) 각료회의에서 조선 동란이 평정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두고 크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선과 청은 모두 조선 동란이 이미 평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5월 12일(6월 15일), 이홍장은 왕봉조로부터 주일 조선사신(朝鮮使臣)이 외무성에 난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외무성이 조선에 있는 오토리의 전보를 받지 않아 “믿기 힘들다”고 회답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본의 각 신문 또한 조선의 동란 평정 소식을 전

91 「北洋大臣來電六」(光緒 20년 5월 10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6쪽(991).

92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4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쪽(995).

하며, 외국 군대가 철수하길 바란다고 선전했다. 이 때문에 왕봉조는 원 세개에게 “철저히 결과를 조사하여, 일본과 철병 상의”를 하도록 청했다.⁹³ 그러나 ‘철저한 조사’를 기다리기도 전에 오히려 일본 증병 소식을 듣고 점차 사후처리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는 청 정부의 철병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5월 13일(6월 16일), 마침내 일본이 5000여 명을 증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일본의 파병 주장은 “조선 동란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힘을 합쳐 진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왕봉조와의 논쟁을 거쳐 비로소 만약 청 정부가 실로 물러날 의사가 있다면 중지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나 그 선후처리 의사는 철병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정치의 개혁’에 둔 것이며, 아울러 왕봉조가 이 뜻을 총서에게 전달해 주길 희망했다.⁹⁴ 왕봉조와의 논쟁을 통해 이토는 겨우 천진조약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다수의 의견을 거역한 것이라며 이토가 사사로이 일을 처리했다고 협상을 번복하려 했다. 다시 왕봉조와 의논을 거쳐 일본 측도 결국 철병에 동의했지만, 전제는 여전히 “반드시 도적의 난이 평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였다.⁹⁵ 사실 그 안에는 깊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93 「寄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2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2쪽.

94 「寄譯署」(光緒 20년 5월 13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3일 밤 子亥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6~17쪽(994).

95 「汪使來電」(光緒 20년 5월 13일 戌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5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쪽(996).

왕봉조는 “조선 동란이 이미 평정되었다”라는 이홍장의 전보를 받은 다음날인 5월 14일(6월 17일) 외무성에 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외무성은 오토리가 아직 어떠한 전보도 보내지 않았으며 조선 동란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청 측의 말을 한마디로 부정했다.⁹⁶ 또한 조선 동란이 평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조선 측에서 주장하든, 청 측에서 주장하든 근거가 모두 부족하므로 일본 측 조선주재공사의 보고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오토리가 성심성의껏 철병의 의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홍장은 원세개에게 “일본 조정이 도적이 창궐할까봐 병사를 파견하여 진압하려고 했는데, 오토리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인지, 어찌 일본과 조선 사이의 전보가 단절되어 있단 말인가?”⁹⁷라며 의심스러워했다.

이때 왕봉조는 일본이 많은 병사를 배치하는 것을 보고 일본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왕봉조는 청 정부에 “병력을 모아서, 몰래 그 음모를 없애야만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그래야만 조선 동란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일본과 철병을 협의할 때 일본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홍장이 자신의 건의를 총서에 전달해 주길 원했다.⁹⁸ 어쨌든 이홍장은 여전히 철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원세개와 오토리가 동시 철병과 주둔에 대해 협상하고 있으므로 “며칠 기다려 다시 결정하자”⁹⁹고 했다. 왕봉조의 건의에 대해 이홍장은 반대했다. 5월 15일(6월 18일), 그는 왕봉조가 보낸 전보를 총서에 전달하

96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4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97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4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98 「汪使來電」(光緒 20년 5월 14일 戌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北洋大臣來電一」,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쪽(996).

99 「復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4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면서 “일본이 교활한 음모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는 하지만, 음모를 없애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¹⁰⁰라고 생각했다.

이홍장은 “조약에 따라 철병”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 철병 교섭이 당면한 문제는 조선 동란의 평정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즉 조선 내정 개혁 문제와 함께 뒤섞이게 되었다.

V. ‘무쓰 3조’를 둘러싼 교섭과 철병 교섭의 중지

1. ‘무쓰 3조’와 이홍장의 3대 정책

『건건록(蹇蹇錄)』은 공공연하게 이른바 조선 내정 개혁을 외교상의 충돌을 촉진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가 이미 평화적 해결에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기록했다.¹⁰¹ 그러나 일본의 이런 도발정책에 대해, 그 정책의 구체적 실행자인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도 그 요지를 이해하기는 힘들었다.¹⁰² 사정이 이러하니 청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때 청 정부는 주로 토비 진압으로 일본 철병을 독촉하는 데 희망을 걸고 있었다.

“공동으로 조선 내정을 개혁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한, 청 정부의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5월 13일(6월 16일) 일본이 이 안을 제출하고 5월 19일(6월 22일) 일본 정부가 “첫번째 절교서”를 발행하기까지는 약 6일

¹⁰⁰ 「北洋大臣來電一」,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쪽(996).

¹⁰¹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21쪽.

¹⁰² 王信忠(1937), 앞의 책, 183~185쪽.

이 소요되었다.

일본 정부의 이 새로운 정책 동향을 제일 먼저 청 정부에 보고한 사람은 왕봉조였다. 당시 왕봉조는 일본 외무성과 계속해서 철병 교섭을 하고 있었다. 5월 13일 밤(6월 16일), 왕봉조는 전보를 받고 철병 교섭의 새로운 상황과 일본에 “한국 내정을 개혁”하려는 사후처리 의사가 있음을 보고했다. 전보 중에는 따로 서신을 써서 상세하게 말하겠다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¹⁰³

사실 5월 13일(6월 16일) 무쓰 무네미쓰는 왕봉조와 회담하며 이번 조선 문제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일본 내각회의에서 제기된 안건의 요지를 전하였다. 무쓰는 조선 동란의 원인이 조선 정부의 악정(惡政)에 있다며, 만약 이 악정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이런 반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희망이 없으므로 공동 내정 개혁 요구를 제기하고, 왕봉조에게 이 요구를 청 정부에 전달해 주길 희망했다. 왕봉조는 먼저 조선에서의 공동 철군을 주장하고 이후 조선의 사후 문제를 의논하고자 했다. 회담은 5월 13일(6월 16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되었다.¹⁰⁴ 무쓰는 맘을 놓지 못하고, 다음날(6월 17일) 회담의 각 조항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왕봉조에게 보내 정식으로 공동으로 내정을 개혁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것이 이른바 ‘무쓰 3조(條)’이다.¹⁰⁵

¹⁰³ 「寄譯署」(光緒 20년 5월 13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3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3일 밤 子亥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6~17쪽(994).

¹⁰⁴ 「陸奧外務大臣清國公使對談概要」 6월 17일,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08~212쪽.

¹⁰⁵ 「陸奧外務大臣ヨリ清國公使宛」 6월 17일,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14

이와 동시에 주천진영사(駐天津領事) 아라카와도 이홍장(李鴻章)을 만나 무쓰의 파병 문제 처리에 관한 3가지 건의를 전달했다. 그것은 첫째, 일군과 청군은 힘을 합쳐 조선의 난을 진압하고, 둘째,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내정과 세무를 정리, 혁신하며, 셋째,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군대를 훈련시킴으로써 조선 스스로 난을 평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아라카와는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미 왕봉조와 이에 대해 의논하고 청해 놓았다고 전하였다. 이홍장은 즉시 왕봉조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 측의 요구가 현존하는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동란이 이미 평정되었는데, 우리 군대가 반드시 진군하여 진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본 군대 또한 진압할 이유가 없다. 둘째, 광서 11년(1885),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이 체결한 천진조약에 따라 일이 이미 평정되었으므로 철군해야 한다. 또한 조·일 조약도 조선의 자주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내정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왕봉조에게 “완전하게 회복”, “조약의 다른 방도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조약에 따른” 교섭 진행을 견지하라고 하였다.¹⁰⁶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오토리가 제 시간에 무쓰의 훈령을 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세개와 오토리의 철병 회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토리는 이미 실질적으로 “일본 조정의 철수 명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전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했

~215쪽.

106 「寄譯署」(光緒 20년 5월 14일 戌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4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15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渉史料』 卷13, 17쪽(997).

다. 또한 오토리가 말한 철병은 명목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홍장은 일본의 ‘교활’함에 크게 분노했다. 그는 총서(總署)에 “조선 정부가 비록 우둔하고 나약하지만, 어찌 일본이 개혁을 시도하려 하는지 정말 가증스럽다”고 말했다.¹⁰⁷ 이홍장은 일본이 새로이 제기한 이른바 ‘무쓰 3조’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반감을 갖고 있었다.

5월 15일(6월 18일), 일본군 4000명이 증병되어 인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홍장은 조선에서 일본군의 세력이 매우 흥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¹⁰⁸ 이것은 원세개와 오토리가 이전에 맺은 협정이 번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조선 주재 군대가 병사를 이끌고 한성과 인천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홍장은 이를 저지하며, “왕사신(汪使臣)과 일본이 전보로 상의하여 조약에 따라 철병하라”고 말했고, 섭지초(葉志超)에게 “약속을 잘 지킨 이후 명령을 기다리라”고 요구했다.¹⁰⁹

이때 한성의 인심이 들썩이고 있었다. 이홍장은 인천에 온 4000명의 일본군이 한성으로 들어가면, 한성은 반드시 사람들이 도망가서 비게 될 것이고, 조선 국왕도 두려워 한성 북쪽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각국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일본과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록 오토리와 철병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군대를 철수시킬 것

¹⁰⁷ 「寄譯署」(光緒 20년 5월 14일 戌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44쪽; 「北洋大臣來電二」(光緒 20년 5월 15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17쪽(997).

¹⁰⁸ 「寄譯署」(光緒 20년 5월 15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45쪽; 「北洋大臣來電三」(光緒 20년 5월 15일 亥時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17쪽(998).

¹⁰⁹ 「復葉軍門」(光緒 20년 5월 15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44쪽.

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일본이 자신의 뜻이 “한국을 위협”하는 데 있음을 드러냈고, 오토리가 완전히 “독자적”일 수 없고, “말로 논쟁하는 것”은 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홍장은 “병사를 크게 일으키면, 혹여 쉽게 끝나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홍장은 이때에도 여전히 전쟁 준비 의사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제기한 ‘무쓰 3조’에 맞서, 이홍장은 총서에 이런 “급속한 분열”을 방지할 구체적인 3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먼저 남북 수사(水師)를 이동시켜 재빨리 준비시키고, 계속해서 육병(陸兵)도 준비를 시킨다. 둘째, 한편으론 전보를 보내 왕봉조에게 일본과 협상토록 한다. 셋째, 총서가 주화(駐華) 각국 사신에게 조정을 청한다. 이홍장은 구체적 조치로 정여창(丁汝昌)에게 명하여 몇 척을 이끌고 인천으로 가서 잠시 기세를 보여주고, 그 나머지는 총서의 명령을 기다려 처리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¹¹⁰

이홍장은 즉시 왕봉조에게 전보를 보내, 자신의 두 번째 건의를 추진 하도록 했다. 그는 왕봉조에게 오토리와 원세개가 약정한 철군은 사실 오토리가 완전히 자주적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일본 병사 5000 명이 이미 증원되어 인천에 도착해 한성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왕봉조와 일본 외무성, 이토 히로부미의 ‘상의’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일본군이 조속히 돌아가지 않으면 청 또한 반드시 대군을 파견할 것이니, “대국(大局)에 지장을 줄까 두렵다”고 했다.¹¹¹ 이때 조선에 주

110 「寄譯署」(光緒 20년 5월 16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5쪽;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1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8쪽(999).

111 「奇日本汪使」(光緒 20년 5월 16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6쪽;

둔하고 있던 군대는 여전히 기의군 진압 활동을 하고 있었다.¹¹²

총서의 형세 판단은 이홍장에 비해 낙관적이었다. 당시 영국 주청공사 [駐華公使] 니콜러스 오코너(歐格訥, Nicholas R. O'Connor)는 일본군의 증병부대가 인천에 도착했지만, 반드시 한성에 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총서는 그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가 매우 ‘비밀리에’ 왕래한 것을 미루어 보아 그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여겼다. 조선의 소란이 이미 심각해진 상황에서, 총서는 원세개에게 전보를 보내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하라고 이홍장에게 명하였다. 이홍장의 3가지 건의 중 세 번째 건의, 즉 각국에 조정을 청하는 건을 총서는 중속체제에 손실이 있다고 여겨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쓰 3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홍장의 건의에 따라 처리했다. 5월 15일(6월 18일), 일본 주청대리공사 고무라가 총서에 와서 무쓰가 전보로 보내 준 ‘3조’를 건네주었다.¹¹³ 이것은 이홍장이 전보로 알려준 것과 같았다. 총서는 이홍장이 왕봉조에게 전보를 보내 알려준 방법에 따라 고무라에게 물었다. 당시 고무라는 답을 하지 않고, “외무성의 전보에 따른 것이다”라고만 말했다.¹¹⁴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16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8쪽(1000).

¹¹² 「復葉軍門」(光緒 20년 5월 17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6쪽.

¹¹³ 「小村臨時代理公使ヨリ總理衙門宛」,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31쪽.

¹¹⁴ 「發北洋大臣電一」(光緒 20년 5월 17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8쪽(1001); 「譯署來電」(光緒 20년 5월 17일 未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7쪽.

2. 왕봉조와 일본의 교섭 그리고 일본의 '제1차 절교서'

왕봉조는 이홍장의 전보 지시를 받고 교섭에 나섰지만, 지시의 요지를 약간 변경하였다. 5월 17일(6월 20일) 왕봉조는 무쓰와 회담하였다. 이번 회담의 요지도 일본의 첩병이었다. '무쓰 3조'에 대해 그는 이홍장의 지시를 “은근히 표시하기는 해도” 정식으로서는 제기하지 않았다. 왕봉조는 청의 추가 병력이 조선에 도착한 후 거절하겠다는 의도였다. 이 회담에서도 첩병 교섭은 여전히 성과가 없었다. 무쓰는 일본 군대가 대량으로 조선에 진입하면 상민(商民)이 “서둘러 피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만간 전보를 보내 상황을 조사하고, 재차 방법을 의논하자고 하였다. 왕봉조가 거듭 해명하였지만 일본은 첩병할 뜻이 없었다. 회담에서 무쓰는 화제를 '3조'로 돌려 '선후(善後) 3조(條)'에 대해 이미 주중공사로 하여금 총서에 통지하도록 전보를 보냈다면, 왕봉조에게 답신 재촉을 요구했다. 왕봉조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홍장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무쓰는 '3조'에 언급한 회초(會剿) 문제를 따져 묻고, 잔당의 비(匪)가 다시 소요를 일으키면 합초(合剿)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지시를 내려달라고 상급기관에 재차 청할 것을 부탁하였다. 회담 후 왕봉조는 회담 결과를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고하였다. 이홍장은 왕봉조의 전보를 받은 후 답전을 보내 조선에 남아 있는 비(匪)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추가 병력은 필요 없고, 중국이 이미 소대(小隊)를 보내 처리중이며, 곧 숙청될 것이니 양군(兩軍)이 합초하여 불화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¹¹⁵

115 「寄譯署」(光緒 20년 5월 17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47쪽; 「北洋大臣來電 1」(光緒 20년 5월 17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19

다음날 5월 18일(6월 21일) ‘무쓰 3조’와 관련해서 왕봉조는 이홍장에 게 4가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일본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인정할 것, ② 청이 일본의 회초에 동의할 것, ③ 난을 평정한 후 조약에 따라 철병할 것, ④ 청·일 모두 조선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조선이 스스로 내정을 정리하도록 권고할 것이었다. 왕봉조의 의도는 일본의 승인을 회초의 교환 조건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 만일 일본이 거절하면 청은 ‘무쓰 3조’를 거절할 명분을 얻게 된다. 왕봉조는 우선 이홍장의 뜻을 구해 만일 이홍장이 좋다고 승인하면 총서에도 전해 승인을 다시 청할 생각이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홍장이 지시한 ‘무쓰 3조’에 대한 회답은 청이 추가 병력을 파견하여 조선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회답을 시작할 의도였음을 재차 설명하였다.¹¹⁶ 분명 왕봉조는 국제정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근거로 총서와 이홍장이 이미 정한 답변에 약간의 변경을 가했다.

왕봉조가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고무라가 총서를 방문해 “본국 외무(外務)에서 온 전보를 받았는데 왕봉조가 청 정부 뜻을 외무에 알리지 않았다”며 어찌된 일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당시 총서는 외무의 삼단(三端)과 관련한 전보를 왕봉조에게서 받은 일이 없다며 일본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¹¹⁷ 이 때문에 이홍장은 왕봉조에게 온 전보의 회답에서 총서에 대한 고무라

쪽(1003).

¹¹⁶ 「寄譯署」(光緒 20년 5월 17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48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5월 1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19~20쪽(1007).

¹¹⁷ 「發北洋大臣戰 二」(光緒 20년 5월 17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18~19쪽(1002).

의 원망과 의혹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인용하며 “왕봉조가 일본 외무 3단을 총서에게 전보로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고, 일본공사와 영사가 이리저리 말을 전해서 총서와 나는 왕봉조가 직접 회답할 것을 기대했고, 이를 총서와 나는 이미 일본 측을 만나 답했다”고 했다. 왕봉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이홍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화속(華屬) 문제를 일본이 승인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이홍장은 을유년 이토와 회의할 때부터 일본은 승인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지적하였다. 회초에 대해서는 한적(韓賊)이 평정되어 사실 불필요하며, 일본이 타국으로서 조선 내지에 용병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서” 청이 대신 허락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조선 스스로 내치를 정돈하도록 중재하고 피차 어느 것에도 간여치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만 이홍장은 “이치에 맞는 의견”이니 참작하여 답하라 하였다. 또한 이홍장은 러시아대사 과진(過津)이 양국의 철병을 원하고 있으니 러시아의 조정이라는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러시아의 간섭에 기대하면서 왕봉조에게 “주일 러시아대사가 무엇을 논의하는지 밀탐하라”고 명했다.¹¹⁸

‘무쓰 3조’에 대한 이홍장의 기본태도는 분명 “완강한 거부”였다. 그는 즉각 이 입장을 조선에 있는 원세개와 조선 주둔 군대에 알렸다. 원세개에게 일본이 요구하는 3단에 대해 총서와 그는 “완강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유일한 원칙은 원래의 협의에 따라 중·일 공동으로 철병한다는 것이었다. 이외에 만일 별도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다방면에서 협박하는 것

¹¹⁸ 「寄譯署」(光緒 20년 5월 18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8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5월 1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0쪽(1007).

으로 간주해, 이유를 들어 반박해야 하며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¹¹⁹ 조선 주둔군에게는 원세개의 전보 내용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고 “대군(大軍) 회초”는 필요 없으며, 초비(剿匪) 진전을 위해 격려하라고 지시했다.¹²⁰ 또한 청 정부의 대일 기본입장을 조선 정부에 통지하고, 조선 정부가 일치된 조건으로 일본에 회답할 것을 기대했다.¹²¹

총서는 ‘왕봉조 4조’에 대한 이홍장의 의견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홍장에게 “매우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¹²² 일본이 대량으로 증병하고, 새로운 외교조건을 제출한 상황에서도 청 정부는 기존의 방침, 즉 초비하여 일본의 철병을 독촉한다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을 감히 병탄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의 돌연한 조선 병탄은 불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 주지하는 바”라 여겼다. 이 전제하에서 청 정부는 일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빌미를 잡아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기는데도 청 정부는 “일본군이 주둔하든 주둔하지 않든 우리가 모두 따를 만한 이전의 일이 있고, 때에 맞게 처리해 왔으므로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 과거의 일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이후 성공적 철병 교섭

¹¹⁹ 「寄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8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8~49쪽.

¹²⁰ 「復葉軍門」(光緒 20년 5월 18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9쪽.

¹²¹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18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0쪽(1008).

¹²²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18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0쪽(1010).

을 가리킨다. 큰 뒤탈 없이 일본이 철병하기를 희망하는 이상 청 정부는 문제의 관건이 여전히 초비에 있다고 여겼다. 비도(匪徒)의 존재는 일본 파병과 증병의 구실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회초를 제안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였다. 당시 청 정부는 조선 정부가 일본을 두렵게 여기고 오히려 초적(剿賊)을 문제시하지 않아 매우 당혹스러웠다. 조선 정부가 적비(賊匪)가 이미 평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청 정부는 “지금 주모자 1명도 잡지 못하고, 잔비(殘匪)의 행방을 알지 못해 두 성을 교란시킨 적들을 조사해도 종적이 없으니 누가 이를 진실로 믿겠는가?”라고 하였다. 물론 일본은 더욱 구실이 있으니 절대로 서둘러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동시 철병한 후라도 적의 기세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원세개에게 명하여 일본 퇴병을 독촉할 필요가 없고, “오직 조선을 다그쳐 초비”토록 하는 것이라며 섭지초·섭사성에게 명하여 기회를 보아 초비를 돕도록 하였다. 청 정부는 적사(賊事)를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단서가 있어 외국인의 공통된 의견이 나오면 그 때 일본과 동시 철병을 약속하는 것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다.¹²³ 분명 청 정부는 그때까지도 예견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청에 대한 전쟁을 준비 중이었다. 청 정부는 일본 측에서 나온 것이든 청 정부 내부에서 나온 것이든 어떤 새로운 건의도 고려하지 않았다.

왕봉조가 4가지를 건의하고 중국의 추가 병력 파견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회담 요구는 모두 청 정부, 특히 이홍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무쓰 3조’를 둘러싼 일본과의 교섭은 완전히 청 정부

¹²³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19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0~21쪽(1011).

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다. 5월 18일(6월 21일) 왕봉조는 이홍장의 전보 지시에 따라 일본 외무 3조에 대해 회답했다. “① 조선의 난이 평정되어 이미 청의 군대가 대신 토벌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고, 양국의 회초와 관련된 의논도 필요 없다. ② 처리 방법의 의도는 비록 좋으나 조선이 스스로 개혁 정돈할 수 있으니 청은 여전히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도 조선의 자주를 인정해왔듯이 그 내정권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난이 평정된 후의 철병은 을유년 양국이 정한 조약에 구체화되어 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¹²⁴ 그러나 왕봉조는 총서에 ‘무쓰 3조’에 대해 본래 신속히 회답하고 이에 대해 “추가 병력이 조선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회답하는 것보다는 더욱 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초 ‘무쓰 3조’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은 까닭은 고무라가 먼저 알렸기 때문에 전보에는 단지 대의만을 언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¹²⁵ 왕봉조는 청의 추가 병력이 조선에 도착한 다음, 일본과 ‘무쓰 3조’에 대해 새로운 철병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로 보아 이홍장의 전보 지시에 따라 회답했지만 이는 결코 본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고무라도 회답을 재촉하여 5월 19일(6월 22일) 총서에 편지를 보냈다. 왕봉조가 일본 외무와 직접 면담한 후 총서는 “귀국(貴國) 외무대신이 초안한 3단에 대해 왕(汪)대신이 이미 귀국 외무서(外務署)로 가서 직접 만나 회답했고 그 내용을 귀서(貴署) 대신에게 보내니 내용대로 처리

¹²⁴ 「清國公司ヨリ陸奥外務大臣宛」, 6월 22일,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34쪽.

¹²⁵ 「出使汪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19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渉史料』 卷13, 21쪽(1013).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¹²⁶ 청 정부는 이렇게 ‘무쓰 3조’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였다. 청 정부가 ‘무쓰 3조’를 단호히 거절한 것은 조선 내정개혁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한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조선 내정간섭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자주적 내정개혁에 대해 청 정부 측이 적극 지지했음은 아래에서 언급할 것이다.

왕봉조가 조회(照會)를 제출한 날에 일본 내각은 수상 관저에서 임시 회의를 열었다. 일본은 다음날인 5월 19일(6월 22일) 어전회의를 열고 청에 거절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무쓰는 외무서기관 가토 마쓰오[加藤増雄]에게 조선의 수도로 가서 조선 내정개혁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밀훈령을 오토리에게 전달해 조선 정부에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도록 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가토는 당일 도쿄를 출발하여 다음날 마칸[馬關]에서 무쓰가 오토리에게 보발(輔發)한 추가 훈령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곧 증명하였다.¹²⁷

5월 19일(6월 22일)¹²⁸ 무쓰는 왕봉조에게 문서를 보내, 청 정부가 조선 변란에 대한 일본의 회초 및 사후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니 일본 정부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철병 불가”, “절대 철수 불가”라고 성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철병하지 않는 여러 이유를 찾아내, “조선이 봉당을 만들어 서로 다투고 조선에 내란이 잇달아 일어나니, 결국 변이 일어난 것은 필시 완전한 자주의 이치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선과의

126 「總署致日本國公使小村壽太郎函」(光緒 20년 5월 21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6, 3321쪽(1905).

127 王信忠(1937), 앞의 책, 178~179쪽 참조.

128 일설에는 5월 19일(6월 22일), 『近代中國史事日誌』 下, 867쪽.

이해관계가 특히 깊어 결국 해당 국가의 참상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은 조선 변란의 근원이 완전한 자주권이 없는 데 있고, “조선과 이해관계가 특히 심중하여 해당 국가의 참상을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린의 우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위(自衛)의 이치에도 위배”된다고 하며 결국 조선 내정 문제를 일본의 ‘자위’ 문제와 연결시켰는데, 이는 실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장래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적절하려면 결국 철병할 수 없다”면서 철병하지 않는 것도 천진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철병하지 않는 것은 천진조약의 뜻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처리 예방의 계획이기도 하다.” 도대체 천진조약의 어느 조(條), 어느 항(項)을 따랐는지 분명한 언급이 없다. 철병하지 않는 것을 ‘사후예방’과 연결시키는 것은 천진조약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의도가 현재에 있지 않고 장래에 있으며 일본이 압암리에 더욱 큰 야심을 품고 있음을 암시한다. 일본은 왕봉조에게 보낸 문서의 마지막에 일본 정부의 소견이 청 정부와 “서로 다름이 있을지라도 결코 현재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병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¹²⁹ 이는 동학당 기의 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쓰는 이를 자칭 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1차 절교서’라 하였다.¹³⁰

129 「陸奥外務大臣ヨリ清國公使宛」, 6월 22일, 『日本外交文書』第27卷 第2冊, 235~237쪽; 「寄議署」(光緒 20년 5월 20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 15, 49쪽; 「北洋大臣來電 四」(光緒 20년 5월 21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22쪽(1020).

130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18쪽.

VI. ‘초비(剿匪) 우선시’ 방침의 포기과 ‘방왜(防倭) 중시’ 방침의 제출

1. 일본의 증병과 청 정부의 이홍장 증병 불가 방침에 대한 질의

일본은 제1차 절교서를 제출한 후 병력을 계속 파견하였고,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가토 마쓰오[加藤増雄]가 도착하기 전 대군을 배경으로 조선 정부에 구두로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청 정부는 이홍장(李鴻章)이 줄곧 외교교섭의 기조로 삼았던 정책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5월 21일(6월 24일), 중국의 인천 주재 총병(總兵) 임태증(林泰曾)과 원 세개가 일본의 추가 병력이 한성으로 진입한다는 소식, 병력수가 3000여 명에 달하며 150명의 기마병과 함께 대량의 군비물자가 운송되었다는 소식을 잇달아 전해왔다.¹³¹ 임태증은 비호(飛虎) 선주(船主)와 세무사(稅務司)의 건의로 유이사(劉理事)의 번역관과 함께 일본의 인천영사(仁川領事)를 만나 일본군이 밤에 한성으로 들어오는 연유를 추궁해서 일본군의 한성 진출을 저지하려 했다. 비호 선주와 세무사가 이미 전한 것처럼 일본 측은 역시 증병의 이유를 청에 떠넘겨, 청이 6000명을 파병한다는 말을 듣고 오토리 공사가 한성으로 이동하라고 하였다고 했다. 임태증은, 청의

131 「寄譯署」(光緒 20년 5월 21일 巳時), 「寄譯署」(光緒 20년 5월 21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50쪽; 「北洋大臣來電 六」(光緒 20년 5월 21일 도착),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5월 21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23쪽(1022)·22쪽(1018).

파병은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의 진병(進兵)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일본영사에게 전보로 보고하여 사단이 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홍장도 청의 6000명 파병과 같은 일이 결코 없다고 보증하였다.¹³² 그러나 일본군은 태연히 한성으로 들어왔다. 다음날 일본영사가 편지를 보내 일본의 진병 6관(款)을 주장하였다. 일본영사는 편지에서 군대는 한성에 집결하지 않는다. 인천은 물이 적고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두려움이 각국 상민(商民)에게 만연되어 있다. 이번 진군에 결코 다른 뜻이 없으며 인천과 전주 두 곳에 반씩 머물게 한다. 만일 양국의 퇴병 의논이 이루어지면 ‘즉각 되돌아갈 것’이라 하였다. 임태증은 이를 믿지 않았다.¹³³

원세개는 일본군 대대가 잇달아 한성에 들어오는 것을 본 후,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절감하였다.¹³⁴ 조선 정부는 일본 대군의 압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한성에 위기가 닥치자 “오직 청이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원세개를 통해 이홍장에게 “대군 파병”을 요청하였다.¹³⁵

일본의 증병에 대해 이홍장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 정부의 원래 방침을 계속 실행하면서 이제 막 시작된 열강의 조정에 희망을 걸었다. 또한 이전(5월 19일)¹³⁶에 “비(匪)의 처리를 우선시한다”고 한 청 정

¹³² 「寄譯署」(光緒 20년 5월 21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0쪽.

¹³³ 「寄譯署」(光緒 20년 5월 22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1쪽; 「北洋大臣來電 七」(光緒 20년 5월 22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4쪽(1030).

¹³⁴ 「寄譯署」(光緒 20년 5월 21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0~51쪽.

¹³⁵ 「北洋大臣來電 四」(光緒 20년 5월 22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4쪽(1027).

부의 뜻을 계속 관철시켜, 조선 정부가 초비를 적극 준비할 계획이었다. 당시 청 정부는 패비(敗匪)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해 이홍장을 문책하였고, 이홍장은 섭지초(葉志超)에게 난당(亂黨)의 정확한 행방을 알아내 구체적인 초비 계획을 보고하라고 명했다. 이홍장의 계획은 섭사성(聶士成)을 전주 서남 일대로 파견하여 남아있는 화근을 평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일본이 2000명을 다시 한성으로 파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홍장은 “일본의 기세가 날로 높아지고” 도발의 단서가 많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주장하였다.¹³⁷ 그리고 섭지초에게 이미 정한 방침을 준수하고, “일본이 결코 무고하게 개전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절대 먼저 도발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¹³⁸ 당시 조선 주둔군 중에는 일본이 계속 증병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청하는 이도 있고, “귀환”을 요구하는 이도 있었지만 이홍장은 “조용히 지킬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현재 러시아가 나서서 조정 중이니 점차 따르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¹³⁹ 이홍장이 각국의 조정, 특히 러시아의 조정에 희망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22일(6월 25일) 이후 원세개는 인천에 주둔했던 일본 군대가 한성으로 들어갔고, 일본이 3000~4000명을 더 인천으로 파병하고 있다고

¹³⁶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19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0쪽(1011).

¹³⁷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2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3쪽(1024).

¹³⁸ 「復葉軍門」(光緒 20년 5월 22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1쪽.

¹³⁹ 「復劉公島丁軍門」(光緒 20년 5월 22일 戌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1쪽.

보고하였다.¹⁴⁰ 주일사신(駐日使臣) 왕봉조 측도 일본군 파병 소식과 함께 일본이 주청사관(駐華使館)의 전신(電信) 수발(收發)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해 왔다.¹⁴¹

이때 청 정부가 “추가 파병할 의사가 없다”는 이홍장의 대일정책에 대해 문책하기 시작하였다. 5월 22일(6월 25일) 청 정부는 정식으로 다음의 유지를 내렸다.

현재 일본이 군사로써 의논할 것을 협박하고 조선 자주를 교사하므로 조선이 당혹해하고 있다. 현재 정황으로 볼 때 말로 하는 논쟁은 이미 소용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홍장에게 추가 파병할 의사가 없었다. 이는 본디 우리가 도발하는 것이 끝내는 것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 일본이 대군을 한성에 보내 형세가 더욱 급박해졌다. 만일 脅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에게 유리한 형세가 있고, 다시 만회하려고 해도 너무 늦었다. 이홍장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므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일본과 조선의 정세를 파악해 적당한 방법을 찾아 조속히 상주토록 하라. 앞서 剿匪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는 지금 어떻게 관리 배치해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잘 처리하라. 이홍장은 러시아 사신 카시니가 친진에 머물고 있으니 상의해서 처리하되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 수습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야심을 품고 달리 노리는 의도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아무쪼록 술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¹⁴²

¹⁴⁰ 「北洋大臣來電 五」(光緒 20년 5월 22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4쪽(1028).

¹⁴¹ 「北洋大臣來電 七」(光緒 20년 5월 22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4쪽(1030).

¹⁴²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 20년 5월 22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

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외교 경로는 희망이 막연하다. “현재 정황으로 볼 때 말로 하는 논쟁은 이미 소용없게 되었다.” ② 이홍장의 비파병정책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했다. ③ 이홍장이 줄곧 조선에 파견·주둔한 청 군대를 한성에서 멀리 떨어져 현지에서 조용히 기다리게 함으로써 일본군과의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청 정부가 군대를 어떻게 관리·배치·주둔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였다. ④ 이홍장이 간절히 바라던 러시아 주청공사[駐華公使]의 조정에 대해 청 정부가 그 진심에 잠시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고, 이홍장에게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책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청 정부는 이홍장에게 “명령에 따라 회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홍장은 지시를 받은 후 한왕(韓王)에게 즉각 내정개혁을 권고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는 분명히 무쓰 무네미쓰가 제출한 3조와 관련이 있었다. 맨처음 제의한 것은 왕봉조였다.

5월 23일(6월 26일) 왕봉조는 다음과 같이 전보를 보냈다.

일본의 간섭은 조선이 자치할 수 없다는 데 있으니, 탐오를 없애는 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韓王에게 즉각 내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일본과의 불화를 좁히는 것이 실제로 조선을 위한 계획이기도 함을 간곡히 권할 것이니 감히 결단하기를 청합니다.¹⁴³

왕봉조는 조선에 내정개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料』 卷13, 25쪽(1032).

143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23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5쪽(1033).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이홍장은 왕봉조만큼 낙관적이지 않았지만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곧 원세개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정부를 “수시로 간곡히 설득하는 데 힘써” 반드시 내정을 정리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청렴을 장려하며, 민생을 구제하고 관리를 감찰함으로써 일본이 “구실로 삼을 수 없도록” 힘쓰라고 권유토록 하라고 하였다.¹⁴⁴

그러나 이 새로운 조치의 전망은 오히려 낙관적이지 못했다. 조선 정치 문란의 근원은 민씨 일파가 조정을 유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개혁의 전제는 반드시 민씨 일족을 사직시키고, 명망 있는 신하를 발탁해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힘써 권고하는 중에도 며칠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원세개의 태도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는 이하응(李夏應)이 책임지고 집행하기를 기대했지만 애석하게도 줄곧 소용이 없었다. 원세개는 결국 내정개혁을 요구한 사실을 비밀이라며 “변고가 생긴 것이 누설되지 않게 비밀에 부치라”고 경고하였다.¹⁴⁵ 이로 보면 한국의 내정개혁은 사실 단기간에 실시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일본이 제출한 내정개혁안도 무쓰가 언급했던 것처럼 충돌을 재촉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홍장의 구상은 흐지부지됐다.

이렇게 새로운 대일정책이 대두하기 전까지는 청 정부의 동란 소탕책 및 이홍장의 각국 조정책이 청의 주요 정책이었다. 조선에 주둔한 섭지초는 “비적을 소탕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명령을 받고, 섭사성이 인솔하는 군대를 전주 일대로 파견하여 기

¹⁴⁴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23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5쪽(1033).

¹⁴⁵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4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5쪽(1034).

회를 보아 초무(剿撫)토록 하고, 재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약간의 구휼을 행하도록” 했다. 섭지초가 지휘하는 부대는 여전히 아산에 주둔해 있었다.¹⁴⁶

2. 오토리가 조선에 화속 부인을 압박하자 청 정부가 ‘방왜 중시’

방침을 제출

오토리는 조선을 압박하여 조속히 개전할 구실을 찾았다. 이에 따라 청 정부의 대일정책에 중대한 전환이 있었다.

5월 19일(6월 22일) 무쓰는 ‘제1차 절교서’를 제출한 즉시 어전회의를 열고, 당일 가토에게 도쿄를 출발하여 오토리에게 어전회의의 훈령과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였다. 5월 24일(6월 27일) 가토는 조선에 도착하여 어전회의의 구두훈령과 기밀훈령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가토와 상의해, 현재의 형세를 보니 전쟁이 불가피하므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개전의 구실을 만들되 개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권고 자세로 조선 정부와 중대담판을 벌여 내정개혁 시행을 독촉하라고 명하였다. 오토리 등은 무쓰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만일 속전(速戰)하고자 한다면 먼저 중번(宗藩)관계 문제로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이렇게 하면 청 정부가 결코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중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내정개혁 문제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더욱 간편하고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오토리는 5월 25

146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24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渉史料』 卷13, 26쪽(1036).

일(6월 28일) 이 방침에 대한 지시를 청하는 전보를 무쓰에게 보내고, 한편으로는 조선 외서(外署)에 각서를 보내 청의 속방임을 인정하는지 묻고 다음날 5월 26일(6월 29일)까지 회답하도록 요구하였다.¹⁴⁷ 오토리의 본뜻은 청과 조선의 종속 문제를 이용하여 청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조선 정치개혁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는 오토리가 무쓰에게서 조선 내정개혁 훈령을 받은 후 조선 주재 일본 관원(館員) 및 무관(武官)과 상의해 택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조선 정부가 청국 견제 아래 있어서 유효한 개혁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오토리는 국왕을 알현한 5월 23일(6월 26일) 무쓰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다.¹⁴⁸

오토리가 종속 문제로 협박하여 조선 정부와 청 정부 내부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였다. 5월 25일(6월 28일) 밤, 청 정부는 원세개로부터 급전(急電)을 받았다. 전보에는 일본의 추가 병력이 한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과 함께 오토리가 조선 정부에 “조선은 청의 보호 속방 여부를 내일까지 답하라”고 했음을 전달하였다. 소문에는 일본이 2만 병사를 준비하고 만일 청의 속방을 승인하면 “곧바로 불화(不和)할 것”이라 하였다. 조선 정부는 놀라 대항하기 어려웠고, 청이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했다.¹⁴⁹

다음날 원세개는 인천 세관원의 보고를 통해 일본 군함 나니와(浪速)·무사시(武藏)호가 상선 8척을 호위하여 오는데, 그 중 7척이 병사를, 1척이 석탄을 실었으며 병사가 총 3000명, 말 278필, 포 6문이라는 것을 알

¹⁴⁷ 王信忠(1937), 앞의 책, 183~184쪽 참조.

¹⁴⁸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28쪽.

¹⁴⁹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54쪽; 「北洋大臣來電一」(光緒 20년 5월 2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27쪽(1039).

게 되었다.¹⁵⁰ 당시 청의 주영사신(駐英使臣) 공조원(龔照璣) 측에서 보내온 소식도 거의 원세개의 보고와 일치하였다.¹⁵¹

일본이 조선에 청의 속방을 부인하라고 압박하는데도 이홍장은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조선 문제에 대한 청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하게 성명하였다. “조선을 압박하여 청의 속방을 부인케 하는 것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¹⁵² “조선이 청의 속방이 된 지 이미 1000여 년이라는 것은 각국이 모두 안다. 조선이 각 서양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때도 성명했다.” 그는 또 원세개에게 조선국왕이 기존의 입장을 “건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일 일본이 두려워 청의 속방을 부인하고 증거문건을 독단적으로 제출한다면 청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위협도 하라고 당부했다.¹⁵³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에서 그는 여전히 러시아의 조정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우선 러시아의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원세개에게 “인내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다”며, 조선 정부에 “간절한 당부의 말을 전달”하도록 했다.¹⁵⁴ 조선에서 친일세력이 적극

150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5쪽.

151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4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5월 2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7쪽(1040).

152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4쪽;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7쪽(1039).

153 「由上海長崎海參威琿春至朝鮮交袁道」(光緒 20년 5월 26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4쪽.

154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4쪽;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6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7

활동함으로써 조선국왕의 입장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홍장이 강조한 것은 여전히 러시아 측의 조정이었다.¹⁵⁵ 그러나 이홍장이 러시아와의 논의를 근거로 “조선왕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계획은 막연한 것이 이 드러났다.¹⁵⁶

당시 주일사신(駐日使臣) 왕봉조의 예측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그는 러시아의 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청까지 압박하자 “만회가 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는 이홍장과 충서에 불화하여 외교 사신이 철수한 이후 주일 각국 상민의 가족과 재산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해줄 것을 청하기 시작하였다.¹⁵⁷ 원세개는 일본이 이미 각 처에 근 1만 명을 배치했음을 감안해서 일본이 청에 도전하기를 기다렸다. 게다가 조선 역시 청의 속방 부인을 치밀하게 결성하기도 하고, 치욕을 면하기 위해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세개는 사정이 긴급해지

쪽(1039).

155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5쪽.

156 「寄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5쪽; 「復譯署」(光緒 20년 5월 26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5쪽; 「北洋大臣來電 五」(光緒 20년 5월 2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8쪽(1046). 按: 동일 전문 내에 표기된 시간이 다른 것이 있다. 『交涉史料』 중의 배열은 약간 뒤쳐지는 듯하다. 구체적 시각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電稿』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157 「寄譯署」(光緒 20년 5월 27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6쪽;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7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7쪽(1042). 按: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에 기록된 것 중 두 곳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 첫 구절의 “昨袁道轉汪使, 詢倭議若何. 頃接有電, 頃訪倭使, 適他往. 來函訂明晨往談”의 ‘詢倭議’와 ‘訪倭使’의 ‘倭’는 당연히 ‘俄’가 되어야 한다.

면 우선 인천으로 가서 지시를 기다릴 계획이었다.¹⁵⁸ 이때 오토리가 공법(公法)에 따르고 전례는 따르지 않으며, 군사가 원세개를 압송하여 조선에서 내쫓을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때문에 재차 원세개는 귀국해서 상의할 것 그리고 조선을 공격할 것을 요청했다.¹⁵⁹

그러나 왕봉조·원세개의 제의는 모두 이홍장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홍장은 왕봉조의 제안을 “지나치게 경솔한 것 같다”고 여겼다.¹⁶⁰ 원세개가 지시를 청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러시아공사에게 “다른 까닭이 없다면 먼저 중국과 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고, 영국 주중공사 구격눌(歐格訥)도 조정의 의사를 표시했으며¹⁶¹ 조선 측도 아직 “청의 속방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세개에게 “은밀히 견지할 것을 권고하고”, “지조를 굳게 하여 두려워해서 물려서지 말라”고 지시했다.¹⁶² 원세개도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¹⁶³

¹⁵⁸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27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8쪽(1044).

¹⁵⁹ 「寄譯署」(光緒 20년 5월 27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7쪽;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8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47).

¹⁶⁰ 「寄譯署」(光緒 20년 5월 27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6쪽;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7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7쪽(1042).

¹⁶¹ 「張侍郎來電」(光緒 20년 5월 27일 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8쪽.

¹⁶² 「寄漢城袁道」(光緒 20년 5월 28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8쪽;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28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49).

¹⁶³ 「寄譯署」(光緒 20년 5월 28일 卯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8쪽; 「北

그러나 종속 문제는 오히려 청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장래 대일정책 기초에서 중요하게 될 ‘방왜(防倭, 일본 방어)’ 문제가 의사일정에 올랐다. 청 정부는 5월 27일과 5월 28일(6월 30일과 7월 1일) 이홍장으로부터 일련의 전신을 받은 후, 5월 28일(7월 1일) “정세가 이미 긴박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¹⁶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목적은 원래 속국의 난을 평정하는 데 있었지만, 사정이 달라졌고, “일본을 막는 것이 시급한데” 군대가 먼 아산에 있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일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청 정부는 사절 철수 문제에 대해 조선이 청의 속방 부인을 밀결했다는 실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홍장의 처리에 동의했고, 원세개 도대(道臺)나 왕봉조 사신이 서둘러 귀국하여 일본에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¹⁶⁵ 이홍장은 즉각 왕봉조에게 전보로 이를 전하였다.¹⁶⁶ 그러나 왕봉조는 이홍장의 계속되는 일본에 대한 주요한 두 가지 조치, 즉 증병하지 않는 것과 각국 조정에 가탁하는 것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왕봉조는 “먼저 이홍장에게 추가 병력 파견과 적절한 대처 방법을 마련토

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28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49).

¹⁶⁴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2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50); 「譯署來電」(光緒 20년 20년 5월 27일 酉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29쪽.

¹⁶⁵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2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50); 「譯署來電」(光緒 20년 20년 5월 27일 酉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29쪽. 按: 같은 날의 「總理各國事務衙門擬發給李鴻章電信」,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0쪽 1052조와 1050조가 중복된다.

¹⁶⁶ 『復日本汪使』(光緒 20년 5월 28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59쪽.

록 수차례 분부하였는데 모두 보고를 받지 못했다. 현재 기세가 날로 왕성해지고 조선이 협박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이다. 타국의 충고나 제지 또한 빈축 만 살뿐 장차 관계가 결렬될 형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 정부는 더 나아가 “만일 조선이 압박당하여 탄 마음을 품게 되면 공개적으로 죄를 물어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병사를 일으켜 서로 싸우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전투병, 수비병 및 군량과 급료, 군수품 등 만사를 대비하여 자신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 가서 문제가 되지 않고, 정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¹⁶⁷ 그리고 청 정부에 대한 조선의 입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전쟁 준비와 관련된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① 이홍장에게 명하여 새로운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신속히 회답상주를 올려 심려치 않게 하라. ② 남양(南洋) 각 해구(海口)가 모두 중요하며 대만은 해외에 고립되어 있지만 일본이 일찍이 변경(藩境)까지 특히 탐내는 바이니 이홍장에게 명하여 각 독무(督撫)에게 밀전을 보내 언행을 태연하게 하고, 미리 준비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¹⁶⁸ 이에 따라 임전(臨戰)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 정부의 임전 준비는 완전히 방위 목적이었다. 일단 일본이 조선 문제에 완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외교노력도 조선의 상황을 해결할 우선적 방법이 었다.

무쓰 무네타미쓰가 도발을 결심했지만 일본은 외교상 분규를 고려하여 이때까지도 주로 내정개혁 문제를 구실로 삼아 외교상 합법수단으로써

167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 20년 5월 2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51).

168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 20년 5월 2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29쪽(1051).

청·일 충돌을 일으켰다.¹⁶⁹ 이 때문에 오토리의 종속 문제와 관련된 위협 행동에 대해 즉각 거부했던 것이다. 5월 25일(6월 28일) 무쓰가 오토리에게 답전하여 “속국(屬國) 두 글자 취소 및 아산의 청병(淸兵) 철수라는 두 가지 일은 현재의 정략과 서로 위배되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복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토가 조선에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 곧 내정개혁 문제를 제의하라”고 지시했다.¹⁷⁰ 이 훈전(訓電)은 전선(電線)이 막혀 5월 27일(6월 30일)에야 한성에 도달했다. 이후 오토리는 청·조 종속 문제를 포기하고 내정개혁의 제안에 착수했다. 내정개혁을 구실로 군사상 속전(速戰)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했다. 청 정부는 일본이 이미 도발정책을 결의한 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일본이 주동적으로 종속 문제를 포기한 것을 보고 전쟁 준비 절차를 늦추어 화(和)를 주(主)로 하고, 전(戰)을 보(輔)로 하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5월 29일(7월 2일) 이홍장은 총서의 조서에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① 원세개가 속전(續電)을 보내 한국이 화속(華屬)을 부인하지 않았고, ② 원세개는 여전히 한성에 머물며 왕봉조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전보를 보냈다. ③ 조선에 주둔한 군대가 철수 혹은 이동하는 문제는 원세개와 섭지초가 만나서 의논하고, ④ 청 정부 유지에 특별히 언급된 전쟁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 계획대로 처리하여 5월 27일 진시(辰時)에 급히 상주문을 보냈다.”¹⁷¹ 이홍장은 상주문에서 “일본인이 기회를 타서 불화를 조

¹⁶⁹ 王信忠(1937), 앞의 책, 183쪽.

¹⁷⁰ 杉村濤(1932), 앞의 책, 28~29쪽.

¹⁷¹ 「寄譯署」(光緒 20년 5월 29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59~60쪽;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2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 30~31쪽(1055).

성하고 대군으로써 조선을 위협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 준비를 할 것이니 미리 준비한 향(餉) 200만~300만 냥을 지시에 따라 제때에 지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호부(戶部)에 명해 주길” 청했다. 또한 북양 철쾌(鐵快) 함(艦) 중 해전에 대비할 만한 것은 8척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청 정부는 이홍장에게 해군의 훈련된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북양에 나누어 주둔하여 연해를 방어하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임전할 만한 직예의 녹영(綠營)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상주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이홍장이 준비를 청한 향수(餉需) 은량에 대해서는 회답 상주를 보고 다시 유지를 내린다고 했다.¹⁷² 이홍장의 관심은 무엇보다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군비 문제에 있었다. 그러나 청 정부는 이홍장의 군비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지 않고, 작전에 투입될 군대 상황의 보고를 받은 후 회답하겠다고 했다.

당시 원세개 측으로부터 조선의 친중국 세력이 청을 지지하며 “한왕(韓王)도 점차 뜻을 바꾼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조선에 주둔한 청군의 진초(進剿) 상황에도 진전이 있었다.¹⁷³ 또한 이홍장이 각국에 청한 조정에도 진전이 있었다.¹⁷⁴

이런 배경에서 청 정부의 입장은 임전 준비를 독촉하는 것에서 임전 준비와 협상이라는 두 가지로 전환되었다. 청 정부는 조선이 속방 문제에

¹⁷²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 20년 5월 29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1쪽(1058).

¹⁷³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5월 2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0쪽(1054).

¹⁷⁴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5월 2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0쪽(1053).

답하지 않아 아직은 결렬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당시 주중 영국 공사는 연일 총서로 와서 외부(外部)의 전보를 언급하며 중간에서 조정하여 도발에 이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고 했다. 그는 청이 조선 내정 정리, 해당국 토지 보호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타인에게 점거당하지 않고 피차 협의를 진행하길 원하는지를 묻고, 청의 답을 즉각 외부에 전보로 보내 주영사절에게 명하여 일본을 재촉하여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각국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철병을 재촉했다. 청 정부는 이 일이 순조롭다면 스스로 용병하는 것에 비해 수습이 용이하다고 여겼다. 청의 의도는 본래 조선을 보전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청 체제권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협의를 할 수 있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의논을 중지할 수 있고, 이는 두 가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 정부의 총체적 방침은 협상과 임전, 양자에 장애가 없다는 것이었다.¹⁷⁵ 이와 동시에 복건·대만 순무 유명전에게 “즉각 북경으로 와서 황제를 알현하라”는 명을 내렸다.¹⁷⁶

¹⁷⁵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29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1쪽 (1057); 「譯署來電」(光緒 20년 5월 29일 戌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60쪽.

¹⁷⁶ 「廬州電局專送六安交前臺撫劉」(光緒 20년 5월 29일),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60쪽.

VII. 열강의 조정과 고무라 ‘회담’

1. 러시아·영국에 조정을 청하다

열강은 청의 조선 파병 초기부터 간섭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청 정부는 처음부터 열강 간섭을 희망하지 않았다. “파병하여 소탕을 돕는 것은 여전히 상국(上國)이 속방을 보호하는 관례이며, 일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청의 군대는 즉각 철병하니” 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¹⁷⁷

가장 일찍이 열강의 직접 조정을 청했던 것은 조선에 있던 원세개이며, 조정의 주요 내용은 각국에 일본 파병 저지를 청하는 것이었다.¹⁷⁸ 청 정부가 각국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청이 직접 나서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이 직접 나서 처리했고 청 정부는 다만 관심을 표시하는 정도였다.¹⁷⁹ 그러나 최초의 각국 간섭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¹⁸⁰ 당시 일본의 대규모 파병에 대해 각국은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¹⁸¹ 사실 각국 주한공사가

¹⁷⁷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4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9쪽 (959).

¹⁷⁸ 「寄譯署」(光緒 20년 5월 5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5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5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0쪽 (962).

¹⁷⁹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6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 (968).

¹⁸⁰ 「寄譯署」(光緒 20년 5월 7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7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5월 8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3쪽 (975).

날로 흉악해지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어찌할 방법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다.¹⁸²

청 정부 내에서는 이홍장(李鴻章)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원세개와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의 철병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일본이 이른바 ‘무쓰 3조’와 대량의 증병을 제출하여 노골적으로 “군사를 머물게 하여 논의를 압박”하려 했던 때이다. 5월 15일(6월 18일) 주중 영국공사와 주중 러시아공사가 천진을 경유할 때, 이홍장이 그들에게 직접 조정해 줄 것을 청하였고, 그들은 모두 본국 주일공사를 통해 일본에 청과 기일을 약정하여 동시 출병하도록 권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일본이 영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것만 못하고, 협공이 있으면 따르게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기대에 넘쳤다.¹⁸³

그러나 총서(總署)는 각국에 조정을 청하는 것이 “중속(中屬) 체제에 손상이 있는 듯하다”고 여겼다. 사실상 당시 영국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았고, 16일(19일) 오키너가 총서에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대로 처리하기 곤란”함을 명백히 했다.¹⁸⁴ 기껏해야 “외무(外務)에 조전(照電)할 것”

181 「寄譯署」(光緒 20년 5월 6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36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5월 6일 亥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1쪽(969).

182 「寄譯署」(光緒 20년 5월 15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5쪽;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5월 15일 亥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7~18쪽(998).

183 「寄譯署」(光緒 20년 5월 17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7쪽; 「北洋大臣來電 三」,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9쪽(1005); 「直隸李鴻章致樞垣袁電日兵駐仁川租借英俄兩使來晤托其勸日撤兵電」, 『清季外交史料』 卷91, 10쪽.

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했다.¹⁸⁵ 가장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한 것은 러시아, 특히 주중공사 카시니(A. p. Cassini : 喀西尼)였다. 청 정부 측에서는 주로 이홍장이 사무를 직접 처리했다.

진심으로 조정할 뜻이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카시니였다. 사실 주일 러시아 외교관 히트로보(Hitro Vo : 希德洛夫)는 갖가지 고려에서 카시니의 직접 조정 주장에 대해 본래 적극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일본 정부가 조선의 독립 확립 및 화평을 희망하는 것 외에 결코 다른 뜻이 없고”,¹⁸⁶ “일본은 조선에 대해 결코 침략할 야심이 없으며”, 조선 국내 형세가 완전히 회복돼 평온해지면 “당연히 조선 경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일본 군대를 스스로 철병할 것”¹⁸⁷이라는 일본의 갖가지 보증에 속임을 당한 듯, 기본적으로 간섭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이 러시아 외부(外部)에 영향을 주어, 간섭 태도는 적극적인 것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표면상 영국 정부의 조정을 받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를 파견하여 총서와의 ‘회담’을 결정하기 전날 밤, 즉 5월 28일(7월 1일) 완곡하지만 명확하게 러시아의 조정을 거절했다.¹⁸⁸ 이후 러시아가 점차 조정의 제1선에서 제2선으로 물러나고, 영국이 대신하여 조

184 「發北洋大臣電一」(光緒 20년 5월 17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18쪽 (1001).

185 「寄朝鮮袁道」(光緒 20년 5월 17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47~48쪽.

186 陸奥宗光 著·龔德柏 譯(1929), 앞의 책, 28~29쪽.

187 田保橋潔(1930), 『近代日支鮮關係之研究』, 京城帝國大學研究冊, 202~203쪽; 王信忠(1937), 앞의 책, 203쪽에서 인용.

188 田保橋潔(1930), 위의 책, 202~203쪽; 王信忠(1937), 앞의 책, 203쪽에서 인용.

정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¹⁸⁹ 이와 상응하여 총서도 점차 조정이라는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서에서는 각국에 조정을 청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자못 의심하고 우려했다. 5월 27일(6월 30일) 주중 영국공사 오코너가 재차 총서에 조정의 뜻을 표시하면서, 심지어 청이 받아들일 뜻이 있다면 주중 일본공사 고무라에게 전보로 정부에 상의를 청하도록 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총서는 완곡하게 거절했다.¹⁹⁰ 그러나 오토리가 조선에서의 종속 문제를 스스로 수습함에 따라 청에 대한 태도는 날로 안정되어 갔으며, 게다가 영국이 계속 조정의 뜻을 적극 표시하였다. 조정의 방안은 여전히 고려의 여지가 있었고,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축소가 분명해졌을 때, 청 정부는 조정이라는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5월 28일(7월 1일) 이홍장이 총서에 제의하여 영국에 조정을 청하고 “어쩌면 한 번 더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¹⁹¹ 5월 29일(7월 2일) 청 정부는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다면 용병(用兵)하는 것에 비해 수습이 용이하다”고 했다. 조정을 받아들이는 전제는 청 체제 권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방법상 문제의 유무는 그때 의논해야 하며, 만일 일이 진행될 수 없다면 의논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총서는 적극 조정을 재촉하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¹⁹²

¹⁸⁹ 이홍장이 러시아에 조정을 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王信忠(1937), 앞의 책, 199~206쪽 참조.

¹⁹⁰ 「張侍郎來電」(光緒 20년 5월 27일 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58쪽.

¹⁹¹ 「複張侍郎」(光緒 20년 5월 28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卷15, 58쪽.

러시아와 달리 영국 측에서 적극적 자세를 표한 것은 주중공사만이 아니었다. 영국 외교부가 전보를 보내 주중공사에게 “조정을 통해 전쟁 도발을 피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이 제출한 최초의 조정 방안은 청이 만일 조선 내정 정리, 해당국 토지 보호를 타인에게 점거당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하길 원하면 주일 영국대리공사 파게트(巴健特: Ralphs Paget)에게 명하여 일본 정부에 철병 재촉을 제의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조정 방안은 즉각 이홍장의 반대에 부딪혔다. “조정어(調整語)가 모호한 것 같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일본이 왕봉조(汪鳳藻)에게 보낸 조회문에 따르면 일본이 요구하는 조선 내정 정리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한다. 재정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 중앙관리와 지방관리를 추려내는 것, 조선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병비(兵備)를 설치토록 하여 보국(保國)케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중 일본공사 및 영사의 번역과 “크게 다르며” 조선 측이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내정 정리라는 것은 “영국이 이집트에 대처한 것”과 형태가 유사했다. 따라서 내정 정리 1조항은 “서둘러 허가”될 수 없었다. 해당국 토지를 함께 보호하고 타인이 점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 이홍장은 러시아에 이미 회답하여 회담 조항으로 넣었음을 지적했다. 이홍장이 연일 러시아공사와 상의한 것은 회담 동의이고, 조선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원하는 것은 예정된 조항이 아니었다. 이홍장은 총서에 재차 오코너와 확실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일본이 왕봉조에게 조회

192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5월 29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0쪽 (1057); 「譯署來電」(光緒 20년 5월 29일 戌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61쪽.

한 삼사(三事)에 따르면 “결코 의논하여 처리하기 어렵다”¹⁹³는 것이다. 이 흥장은 일찍이 영국을 꼬드겨서 강력한 군대로 조선의 날을 진압하고 일본으로 함대를 파견해서 철병을 책임지라고 제의한 적이 있다.¹⁹⁴ 그러나 오코너가 거절했고, 총서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겼다.¹⁹⁵

그러나 영국의 조정은 오히려 러시아에 비해 진전이 명확했다. 파케트 대리공사가 전보를 받은 후 무쓰 무네미쓰와 회담하고, 청 정부가 청·조 종속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전제라면 회담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무쓰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파케트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쓰는 주중 임시대리공사 고무라 주타로에게 전보로 알렸다. “일본이 조선 독립 문제를 되도록 언급하지 않고, 청국 정부도 종속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철병·조선 내정개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¹⁹⁶ 이것이 바로 얼마 뒤의 고무라와 총서의 회담이다.

¹⁹³ 「寄譯署」(光緒 20년 5월 29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5, 61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6월 1일 丑時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쪽(1059).

¹⁹⁴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6월),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0쪽(1053).

¹⁹⁵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3, 31쪽(1057).

¹⁹⁶ 田保橋潔(1930), 앞의 책, 213쪽; 王信忠(1937), 앞의 책, 208쪽에서 인용.

2. 고무라와의 ‘회담’

주중 일본공사 고무라와의 회담은 바로 영국의 조정이라는 배경에서 고무라가 주동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이는 청 정부가 직접 일본과 진행한 최후의 회담이었다.

6월 1일(7월 3일), 고무라가 주동적으로 총서에 와서 조선 문제를 언급하고, 양국 협상을 원하며 이후 견제를 피하기 위해 타국의 간섭은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고무라의 총서 방문은 영국의 주선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다음날 오키노가 찾아와 영국 외부(外部)가 이미 주일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 외부와의 협상을 허락하였다고 우선 철병 상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고무라가 이미 외무의 전보를 통해, 상의권(商議權)을 받아 수일 내에 분명히 답판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나 청 정부는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 있었다. 첫째는 고무라와의 답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청 정부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당시 이홍장과 카시니 간에 이미 삼국회의의 말이 있었지만 고무라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타국의 간섭을 원하지 않으니 필시 일본이 옹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삼국회의의 말은 신뢰할 만한 게 못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의논을 시작한다면 러시아가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¹⁹⁷

총서는 고무라가 상의권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

¹⁹⁷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2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쪽 (1062); 「譯署來電」(光緒 20년 6월 2일 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3쪽.

왔다. 6월 5일(7월 7일) 오후 고무라가 왔다. 회담이 시작되자 고무라는 자신이 온 까닭에 대해 청·일이 조선 문제에 대해 공동 담판하기를 희망한다고 영국공사가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하루 전에 총서의 의향을 물어 그것을 본국 정부에 전보로 보내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하고 하루이틀 내에 답신을 보내라는 외무의 전보를 받았다고 했다. 고무라는 단지 통신의 책임을 질 뿐 상의권이 없었다.¹⁹⁸ 총서는 영국공사 오코너가 전한 말이 결코 정확하지 않음을 감지했다. 총서는 그러나 고무라의 문의에 어떻게 회답할 것인지 오히려 이홍장의 의견을 물었다.¹⁹⁹

6월 6일(7월 8일) 진시(辰時), 이홍장이 답전을 보내 몇 가지 의견을 냈다. 첫째, 우선 천진조약의 구체적인 규정 및 조선 문제에서 청·일의 구체적인 조치를 근거로 일본의 당시 행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사실상 위약(違約)이지 준약(遵約)이 아니므로 청은 완전히 천진조약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이 시비를 분명하게 분별한다. 둘째, 선후 처리를 잘 하려면 마음을 합쳐 의논하여 처리하고 조선의 사정을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힘쓸 수 있을 뿐이지 어찌 군대로 위협할 수 있겠는가? 표면상 조선 자주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천하만국이 자주국에 대처할 때 이처럼 행동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홍장은 러시아 정부가 연일 러시아공사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어투가 매우 긴박하다”고 전했다.²⁰⁰

¹⁹⁸ 「總署王大臣卜面談ノ概略」, 7월 7일, 『日本』 第27卷 第2冊, 255~256쪽.

¹⁹⁹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5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0쪽 (1093); 「譯署來電」(光緒 20년 6월 5일 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8쪽.

²⁰⁰ 「寄譯署」(光緒 20년 6월 6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8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6월 6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2쪽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삼국회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다. 6월 6일(7월 8일) 러시아는 총서에 이전의 조약을 성명하여 “영원히 조선 토지를 점거하지 않음”을 표명할 예정이라 했다. 카시니가 삼국회의 참여를 청하였지만 러시아는 아직 일본에 이 생각을 전하지 않았다. 총서는 현재 일본의 움직임이 러시아를 꺼리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여겼다. 러시아가 토지를 점령하지 않는다고 성명하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라며 이홍장에게 이 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²⁰¹ 이홍장은 곧 답전하여 러시아가 조선의 토지를 침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고무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총서의 추측을 바로잡아 지적하길, 일본의 이번 행동은 실제로 해당국의 자유당이 제멋대로 의논하여 일을 만들고 요직에 있는 자가 따르는 것이지 러시아를 꺼려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²⁰²

그러나 카시니의 제의는 사실 개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했다. 6월 7일(7월 9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는 청·일이 조선 문제에 대해 필요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카시니는 재빨리 장래 청·일 회의에 “간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실망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욱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여겼다. 영국·일본은 러시아가 조선 사무를 의논하는 데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귀서

(1099).

201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6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2쪽 (1097); 「譯署來電」(光緒 20년 6월 6일 巳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권 16, 9쪽.

202 「寄譯署」(光緒 20년 6월 6일 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9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6월 6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3쪽 (1104).

(貴署)가 고무라와 방법을 상의할 수 있으며 건제의 걱정은 없다”고 지적했다.²⁰³

6월 7일(7월 9일) 총서와 고무라는 1차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원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청 정부는 선(先) 철병, 후(後) 협상을 요구하였다. 즉 친진조약의 전제하에서 회담을 전개하여 “양국이 조약에 따라 동시 철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조약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선 협상, 후 철병을 요구하였다. 즉 조선 내정개혁 문제와 철병을 동시에 협상해 처리하는, “조선의 일이 처리되어 대강 결말이 나기를 기다린 연후에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무라는 총서에게 “장래 조선을 어찌할 것인지를 우선 말하고” 재차 철병을 토론하자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방식을 우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즉시 정부에 전보를 보내 신속히 철병토록 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심지어 총서에게 “본국에 전보할 수 있도록 대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총서는 이를 거절했다. 총서는 “아무리 어찌해도 철병 날짜를 명확히 정하고, 군대가 모두 철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사무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는 뜻을 전지하였다. 결국 고무라는 유유히 떠나갔다.

사실 조약에 따라 철병하는 것은 일본 본래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의 이해에서 중대한 편차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초비(剿匪) 문제에 대해 청은 비(匪)가 이미 평정되었다고 인식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비적이 있어서 조선이 편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청이 당초 파

203 「寄譯署」(光緒 20년 6월 7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2쪽;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6월 8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2쪽 (1110).

병한 주요 목적은 초비였다. 일본도 초비와 영사관 보호를 파병의 구실로 내세웠다. 하지만 비적의 평정 여부는 일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²⁰⁴

회담 상황은 일본이 이때 청과 협상을 원한다는 태도를 보인 주요한 원인이 각국의 간섭을 꺼리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회담 중에 고무라는 각국이 개입하는 것, 특히 러시아의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으며, 러시아의 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된 일을 청에 따져 물었다. 당시 러시아와 삼국회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무라는 바로 “절대 응낙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이 일로 싸움을 하게 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표시했다. 청 정부도 이를 간과하고, 다음날 이홍장에게 전문을 보내 “어제 고무라가 총서에 와서 통지하길, 군대 정리는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웃이 부추기고, 서쪽도 조속히 우선 동시 철병하라 하고, 또한 먼저 시기를 정하여 선포한 후 다시 조선의 일을 상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이를 전달하니 회신을 기다린다고 했다. 삼국회의설은 영국과 일본이 매우 꺼린다. 어제 철병 조정을 반박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고 알렸다.²⁰⁵ 분명히 러시아의 간섭은 일본이 회담을 적극 진행시킨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6월 7일(7월 9일) 카시니가 때마침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기초하여 청·일 회의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한 것은 상술한 바이다. 이 때문에 총서는 전보에서 특별히 이홍장에게 “러시아의 불간섭 전보는 공개치 말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²⁰⁶

²⁰⁴ 「軍機處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日使問答片」(光緒 20년 6월 9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8쪽(1122); 『朝鮮事件ニ關シ總署王大臣ト面談概略』, 7월 9일,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257~259쪽.

²⁰⁵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4쪽(1108).

이 회답에 청 정부는 기대를 걸었다. 당시 일본은 긴박하게 여론을 부추기면서 조선 측과 내정개혁 문제를 회담하고, 군대로 압박하여 조선 측이 청 정부에 위급함을 알려 도움을 청하도록 했다. 회답 다음날인 6월 8일(7월 10일) 총서는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원세개에게 즉각 전보를 보내 조선에 참고 기다릴 것이며, 현혹되어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설명하라”고 명하였다.²⁰⁷ 당일 이홍장은 총서가 보내온 전고(電稿)를 원세개에게 전달했다.²⁰⁸ 그리고 조선 주둔 군대에 전보를 보내 총서가 일본 외교관과 협상 중이므로 잠시 차분히 지키고 움직이지 말고 일본군의 도발행동을 경계하여 다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였다.²⁰⁹ 6월 10일(7월 12일) 조선에 주둔한 청의 군대가 추가 병력을 요구했다. 일본이 조선에서 나날이 창궐함에 따라 조선은 긴급히 도움을 청하였고, 각국 조정은 여전히 의논의 성과 없이 상·중·하 3책만을 제출했다. 상책은 청에 추가 병력을 요구하여, 요지에 주둔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만일 결렬되면 진병하여 궁지에 빠지는 것을 면하는 방안이다. 중책은 주동적으로 우선 철병하고 천진조약에 의거해 각국에 조회하여 알리고 일본에 동시 철병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때를 기다려 중대한 거동을 재차 도모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책은 현재 수비의 움직임이 없는 때에 이르

²⁰⁶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4쪽 (1108).

²⁰⁷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8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4쪽 (1108).

²⁰⁸ 「寄朝鮮袁道」(光緒 20년 6월 8일),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3쪽.

²⁰⁹ 「寄朝鮮成歡交葉提督聶鎮」(光緒 20년 6월 8일 亥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4쪽.

러 공연히 조선 사람만 일본에 수난을 당하여 우리보다 절망스러운 뿐만 아니라 군사가 전사(戰事)도 없이 오랫동안 병역을 하고 무더위와 비로 인해 병을 얻으므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홍장은 총서가 지금 일본과 협상 중이며 성급하게 대군을 더 늘려 의심을 품게 해서는 곤란하므로 상책은 반드시 나중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책은 이전에 원세개가 제기한 것이다. 이홍장은 군사가 노처하여 병에 걸리고 있다며 총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다.²¹⁰ 이홍장은 청의 철병 움직임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때는 이런 고려조차 모두 완전히 사라졌다. 총서와 고무라의 회담은 적어도 이홍장이 잠시 군대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6월 10일(7월 12일) 고무라는 여전히 “정부의 조사를 기다려 답변할 것”이라 했다.²¹¹ 그러나 공조원(龔照瑗)과 러시아공사 카시니의 회담은 일본이 “기꺼이 화평 논의하려는 것은 진의가 아닌 듯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²¹² 이홍장은 전문을 총서에 전달했을 뿐,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²¹³ 사실 공조원에게 보내는 답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고무라에게 총서와 회담하도록 명한 것은 “시간을 얻자는 계책”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²¹⁴

²¹⁰ 「寄譯署」(光緒 20년 6월 10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6쪽;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6월 10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20쪽(1125).

²¹¹ 「複日本汪使」(光緒 20년 6월 10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6쪽.

²¹² 「寄譯署」(光緒 20년 6월 10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6쪽.

²¹³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6월 10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20쪽(1126).

6월 11일(7월 13일) 공조원 사절에게 답전한 다음날, 왕봉조가 있는 곳으로부터 일본이 각국의 설득으로 이미 철병하고 화평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왕봉조의 소식은 최고의 밀탐으로부터 온 것이지만,²¹⁵ 이에 대해 이홍장은 반신반의하며 왕봉조에게 일본이 조선을 압박하여 내정개혁을 말하며 “철병의 뜻이 없는 듯” 한데 도대체 어떻게 “약속하였고”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기대하는지 물었다.²¹⁶ 6월 12일(7월 14일) 왕봉조는 회답에서 밀탐이 말한 바가 “확실한 듯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가사키[長崎] 쪽에서 온 전문 내용은 여전히 급료와 병기를 조선으로 보내는 등 밀보와 “달랐다.” 더욱 심한 것은 총서와 고무라가 “회담한 바”에 대해 고무라가 전보를 보낸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나가사키 쪽에서는 “총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지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²¹⁷

청 정부가 갖가지 추측을 하고 있을 때인 6월 12일(7월 14일) 고무라가 정식으로 일본 정부의 처리 의견을 청에 알렸다. 고무라는 조정 실패의 책임을 청에 돌리고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변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²¹⁸ 당일 청 정부는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 각서의

²¹⁴ 「複倫敦龔使」(光緒 20년 6월 10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7쪽.

²¹⁵ 「寄譯署」(光緒 20년 6월 11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7쪽; 「北洋大臣來電 四」(光緒 20년 6월 11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25쪽(1136).

²¹⁶ 「復日本汪使」(光緒 20년 6월 12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7쪽.

²¹⁷ 「寄譯署」(光緒 20년 6월 12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8쪽; 「北洋大臣來電 四」(光緒 20년 6월 12일 도착),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26~27쪽(1142).

²¹⁸ 「小村臨時代理公使ヨリ總理衙門宛照會」, 7월 14일, 『日本外交文書』 第27卷

정황을 전달했다.

7일 小村에게 先철병한 다음, 조선 사무를 再협상하자고 했다. 小村이 본국에 윤희를 바라는 전보를 보냈다. 조희에 따르면 답전을 받고 언급 하길, 청이 여전히 철병의 주장을 주로 하고 내정개혁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일을 끝낼 뜻이 없으니 금후 예측할 수 없는 변이 생겨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말의 의미가 매우 단호하여 조정할 기회가 없는 듯하다. 오늘 이미 조정이 進兵策을 결정했다. 戰事는 마땅히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완전하게 도모해야 한다. 선후 순서, 배치 장소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문을 우선 전보로 보내기 바란다.

청 정부가 “말의 뜻이 매우 단호해서 조정의 기회가 없는 듯하다”고 본,²¹⁹ 일본의 조희(照會)를 역사상 ‘제2차 절교서’라 부른다. 청·일 ‘회담’의 실패에 대해 무쓰는 매우 좋아하면서, “이 중재의 실패로 우리가 앞으로의 행동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오히려 만족스럽다”고 여겼다.²²⁰

고무라와의 회담은 영국 조정의 한 부분이었다. 이에 고무라와 총서의 회담기간에도 각국, 특히 영국은 조정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청의 주영사관(駐英使館)은 빈번히 영국이 적극 조정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6월 5일(7월 7일) 마격리(馬格裏)는 공조원에게 영국·러시아

第2冊, 260쪽; 「日本公使小村壽太郎照會」(光緒 20년 6월 12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第6卷, 3330쪽; 「日本使臣小村照會」 附件 1(光緒 20년 6월 13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32쪽(1155).

²¹⁹ 「發北洋大臣電」(光緒 20년 6월 12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26쪽(1138); 「譯署來電」(光緒 20년 6월 12일 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9쪽.

²²⁰ 『蹇蹇錄』, 42쪽.

가 이처럼 적극 조정하는 이유는 상무·교무와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²²¹ 또한 마격리는 밀함을 보내, 영국이 이미 “결실의 전보”를 보냈고, 일본에 청과 화평을 논의하도록 권하였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각 대국에 “참여해서 내정을 간섭하도록” 청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²²² 6월 7일(7월 9일) 마격리는 영국 정부가 청에 중주권 포기를 청할 수 없다며, 신속히 평화적 결말을 내라고 일본에 재촉했다고 언급했다.²²³ 당시 상해 서보(西報)에 6월 4일(7월 6일) 런던에서 온 전보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영국 외부가 하의원(下議院)에 공언하길, 청·일 간의 일은 현재 본국 조정에서 문서를 제출하여 양국이 안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니 조정으로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홍장은 이 소식을 총서에 전보로 알렸다.²²⁴

6월 3일(7월 5일) 프랑스도 조정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²²⁵ 이에 대해 이홍장은 관심이 있어 상세히 물었다.²²⁶ 오스트리아 사절도 와서 사견(私見)이라면서, 청·일이 불화하는 것은 러시아에 유리하니 잠시 양보하여

²²¹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6월 5일 밤 丑時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7쪽(1089).

²²²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6월 5일 밤 丑時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9쪽(1089).

²²³ 「寄譯署」(光緒 20년 6월 7일),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0쪽;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6월 7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3쪽(1106).

²²⁴ 「寄譯署」(光緒 20년 6월 6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9쪽; 「北洋大臣來電 一」(光緒 20년 6월 6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12쪽(1098).

²²⁵ 「龔使來電」(光緒 20년 6월 3일 申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4쪽.

²²⁶ 「複巴黎龔使」(光緒 20년 6월 3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4쪽.

도발해서는 안 되며 선 철병, 선후처리의 재협상으로 전수(戰守)를 진정시킬 것을 청하였다.²²⁷ 이홍장은 여전히 프랑스·미국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는 주리공사 허경징(許景澄)에게 독일 외교부와 상의하여 독일이 일본에 “힘껏 충고”하는 전보를 보내게 하라고 전보로 지시하였다.²²⁸ 6월 10일(7월 12일) 이홍장은 주미공사 양추(楊樞)에게도 전보를 보내, 미국 정부가 주일공사에게 전보를 쳐서 평화적 공동 보위를 직접 충고하도록 당부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²²⁹ 미국 정부는 즉각 동의를 표시하고 일본에 조기 철병과 조선 정치에 간섭하지 말 것을 권하였다.²³⁰ 이홍장이 적극 추진한 결과 고무라 조정기간에 영국·러시아·프랑스·미국·독일은 자국 주일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에 철병을 권하도록 지시하였다.²³¹ 이에 이홍장은 기대에 차서 만일 영국이 프랑스·러시아와 연합하여 일본에 먼저 신속하게 철병하고 사후처리는 재차 상의할 것을 “심각하게 재촉”할 수 있다면 “무사(無事)”할 것이라고 언급했다.²³²

그러나 영국이 각국에 철병 요청을 함께해주기를 청하였지만, 6월 10일(7월 12일)까지 소식이 없었다.²³³ 이때 주일사절 왕봉조는 밀탐에 나서

²²⁷ 「北洋大臣來電 二」(光緒 20년 6월 4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7쪽(1079).

²²⁸ 「寄彼得堡許使」(光緒 20년 6월 8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2쪽.

²²⁹ 「復華盛頓楊使」(光緒 20년 6월 10일 卯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5쪽.

²³⁰ 「寄譯署」(光緒 20년 6월 10일 辰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5쪽.

²³¹ 「寄譯署」(光緒 20년 6월 10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6쪽.

²³² 「復倫敦龔使」(光緒 20년 6월 10일 酉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7쪽.

²³³ 「北洋大臣來電 三」(光緒 20년 6월 11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4, 25쪽(1135).

각국 조정의 압력으로 일본이 이미 철병, 화평 논의를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홍장이 이를 믿고, 이 소식을 주영공사 공조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왕봉조가 밀탐하여 보고한 소식은 불확실한 것이었다. 6월 12일(7월 14일) 고무라는 일본 정부의 처리 의견을 정식으로 청에 알렸다. 총서와 고무라의 회담이 정식으로 실패하였다고 표명했음은 상술한 대로이다. 고무라가 전달한 각서에는 의외로 각국의 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에 듣자하니 주경(駐京) 영국대신이 친목을 염두에 두고, 더욱 일·청 양국이 화해하길 원해 힘을 다해 나서서 조정하였지만 청 정부는 “참견하길 좋아하고”, “분규를 일으킬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무라는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변이 일어나도 우리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이때 원세개 측에서 일본이 군비를 운송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²³⁴

VIII. 최후의 조정과 일본의 개전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와의 회담이 실패했으나 열강의 조정은 중단되지 않았다. 최후의 조정에서도 영국이 주가 되었다. 조정은 우선 고무라가 총서(總署)에 보낸 조회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총서는 일본의 조회를 받은 이틀 후인 6월 14일(7월 16일) 영국 외교관 오코너와 고무라 조회를 둘러싸고 회담을 시작하였다. 총서는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곳곳에서 모두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분규를 만들어 참견하길 좋아하고 도리에 맞지 않게 오히려 창을 거꾸로 돌

²³⁴ 「袁道來電」(光緒 20년 6월),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10쪽.

려 공격한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키너는 오히려 그 중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 “혹여 고무라가 잘못 들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현재 사정이 긴급하므로 만일 청이 조선을 보호하고 내정을 정리하길 원한다면 각국이 여전히 일본에 설명하여 철병을 재촉할 수 있다고 했다. 오키너는 일본의 조화에 대해 인사가 지나치다고 여겨 분명히 추궁할 필요가 있지만 조회를 볼 때 일본에 “결코 화평을 논의할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오키너는 회담 중 러시아가 도문강에 주둔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²³⁵

6월 15일(7월 17일) 오키너는 고무라의 조화에 대해 초보적으로 이해한 후 다시 총서와 회담하자고 했다. 영문 번역에 따르면 오키너는 단지 “귀국이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분규를 만들 뜻은 없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이 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쨌든 조정 타협이 필요하니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반드시 전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²³⁶ 이는 영국이 일본의 조화에 대해 비호할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이 여전히 조정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러시아 측도 자신들이 주도한 조정을 일본이 분명히 거절했지만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았다. 조금 안정된 후에 한동안 반대했던 영국과 연합하여 최후의 조정에 참여했다. 러시아가 재차 조정에 참여한 것은 대략 6

²³⁵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 20년 6월 15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 14, 36쪽(1168).

²³⁶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 14, 41쪽(1173).

월 20일(7월 22일) 이후이다. 6월 22일(7월 24일) 정세를 감안하여 러시아는 영국과 함께 조정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고, 일본에 철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²³⁷

6월 23일(7월 25일) 오코너는 카시니가 전보를 보내 일본 철병 후 재협상을 원한다고 하였다고 총서에 알렸다. 아울러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도 모두 참여하기를 원하니 모두 5개국이 힘을 보태어 요구하면 일본이 공론에 따르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²³⁸

영국이 실제 진행한 조정활동은 일본 철병 요구가 아니라 청·일 양국의 조선 “구획 점령”에 대한 의견 제출로 바뀌었다. 조선 내 일본 군대 주둔지를 조정하여 일본이 한성에서 철병하고 조선의 한 지방을 선택하여 주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²³⁹ 그러나 20일까지 회답이 없었다.²⁴⁰ 24일 이홍장(李鴻章)은 조선에서의 청·일 철병에 관한 각국의 방안을 받아들이 일본이 부산으로 퇴각하고, 청이 평양으로 퇴각하면 공평 타당한 것 같다고 여겼다.²⁴¹

그러나 하루 전인 6월 23일(7월 25일) 일본 군대가 아산에서 청의 군대

²³⁷ 「北洋大臣來電」(光緒 20년 6월 22일 亥時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5, 18쪽(1219).

²³⁸ 「譯署來電」(光緒 20년 6월 23일 亥時 도착),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30쪽.

²³⁹ 「北洋大臣來電 一」, 『北洋大臣來電 2』(光緒 20년 6월 17일 도착),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5, 4쪽(1178)·(1179).

²⁴⁰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 20년 6월 21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5, 16쪽(1217).

²⁴¹ 「複譯署」(光緒 20년 6월 24일 午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31쪽.

를 공격하였다. 이때 오코너는 총서와 회담을 갖고, “현재 영국·러시아 외에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이 이 일을 함께 처리하고 있고, 힘을 합해 일본을 압박하여 따지면 짐작컨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⁴² 이홍장은 여전히 주일사절 왕봉조(汪鳳藻)에게 영국·러시아·프랑스·독일·이탈리아와 힘을 합하여 일본 퇴병을 요구한 결과를 추궁하였으나, 왕봉조는 “어떠한지 아직 모른다”고 했다.²⁴³

6월 24일(7월 26일) 장경서문(章京舒文) 등이 오코너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 병사가 6월 21일(7월 23일) 조선의 궁을 포위하고 조선국왕 등을 체포한 일을 알렸다. 또 청은 청·일이 이미 불화했음을 각국에 포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이 오랫동안 조정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와서 알렸다. 오코너는 일본 병사의 조선국왕 체포설을 듣지 못했고, 청이 만일 즉각 각국에 청·일 불화를 조회한다면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며칠간 미를 만하며” 각국과 상의하여 청군에게는 평양으로, 일본 병사에게는 부산으로 퇴각할 것을 청하되 일본이 듣지 않으면 각국이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⁴⁴

6월 25일(7월 27일) 오코너는 총서와 회담하였다. 영국선 고승호(高升號)가 청의 병사들을 싣고 조선으로 갔으나 아산 항구 밖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격침되었다. 청의 포선 2척이 참전하였으나 한 척은 나포되었

²⁴²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 20년 6월 24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 15, 22쪽(1230).

²⁴³ 「致日本汪使」(光緒 20년 6월 24일 申時), 『李文忠公全書·電稿』 卷16, 32쪽.

²⁴⁴ 『景京舒文等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景京舒文等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20년 6월 25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5, 24쪽(1234).

고, 다른 한 척은 위해 위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청·일은 사이가 나빠졌고, 협의 권고를 말하던 각 조항은 이미 뒷전이 되어 버렸다.²⁴⁵

6월 28일(7월 30일) 군기처는 총리각국사무아문에 문서로 상주하여 각국에 일본이 먼저 개전했음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²⁴⁶

IX. 맺음말

이 시기 청 정부가 벌인 대일교섭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① 동학당 기의 후 청은 조선 정부의 파병 요청에 응했고, 이후 모든 것은 천진조약에 따라 대일관계를 처리하였다. ② 일본이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도 청 정부의 대일정책은 시종 ‘철병’이었고, 여전히 천진조약에 따라 처리하였다. 일본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이유와 조건을 제시할 때마다 청 정부는 가능한 한 조정과 양보를 했다. 철병정책의 내용은 시기마다 바뀌었다. ③ 청 정부의 대일정책이 철병 교섭에서 “일본 방어가 시급하다(防倭方亟)”는 것으로 전환된 것은 일본이 제1차 절교서를 제출한 이후였다.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쟁의 위기를 피하고자 했다. 청 정부, 특히 이홍장(李鴻章)은 각국의 조정에 희망을 걸었다. ④ 일본이 각국의 조정에 따라 주중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를 파견해, 주동적으로 총서와 회담하게 하였지만 사실은

²⁴⁵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 20년 6월 27일),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 15, 33쪽(1261).

²⁴⁶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 附件 1, 「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5, 34쪽(1262).

국제사회에서 시간을 벌려는 것에 불과했다. 일본이 갑자기 청의 군대를 공격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일 갑오전쟁은 일본의 치밀한 획책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I. 序言

1. 研究概況

自甲午戰爭結束以來，中國的甲午戰爭研究大致經歷了四個階段。¹

第一階段：甲午戰後的25年，是研究工作緩慢起步時期。這一時期的成果主要有兩大類：一類是刊印了不少資料彙編，如陳耀卿編《時事新編》6卷(1895年刊本)、思恢復主編《中倭戰守始末記》4卷(1895年刊本)、佚名編《諫止中東和議奏疏》4卷(香港書局，1895)、魯陽生(孔廣德)編《普天忠憤集》14卷(1895年石印本)、王炳耀編《中日戰輯》6卷(上海書局，1896)、蔡爾康編《中東戰紀本末》14卷(上海廣學會，1896)等。另一類是主要記述親身經歷的著述，具有代表性的有3種，即冤海述聞客著《冤海述聞》(1895年刊本)、易順鼎著《盾墨拾餘》14卷(1896年刊本)和許寅輝著《客韓筆記》(1906年長沙刻本)。以上兩類書籍重載歷史資料的纂輯或記錄，各具不同的史料價值，但還都不是史學著作。當時尚可稱為戰史著作的，僅寥寥數種而已。其中，應首推姚錫光著《東方兵事紀略》5卷(1897年刊本)，其次有洪棄生著《臺灣戰紀》2卷(1907年印本)和池仲祐著《海軍實記》(1926年刊本)，不過，受篇幅及資料所限，無論內容和結構都有完善的餘地。尚值得提及的是，《李文忠公全書》(光緒乙巳至戊申年刊本)和《翁文恭公日記》(1925)也在這一時期整理出版。

第二階段：近代中國對甲午戰爭史的真正研究始於30年代。30年代開始，甲午戰爭史研究進入了開創時期。這一時期，《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1932年起陸續刊印)、《清季外交史料》(1934年影印本)先後刊印，為研究這提供了較前豐富得

1 這裏的階段劃分及相關介紹，多參閱 戚其章：〈中日戰爭史研究的世紀回顧〉，《歷史研究》2000年第1期，一文的觀點。

多的資料。在這一時期的近20年的時間裏，出版了一批有關甲午戰爭的著作，特別值得介紹的是，王芸生著《六十年來中國與日本》、王信忠著《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和張蔭麟著《甲午中國海軍戰跡考》。與此同時，有關甲午戰爭的論文也大量出現，選題包括6個方面的內容：① 甲午戰爭的歷史背景和起因，如惜陰《光緒甲申朝局之變更》(1931)、陳烈甫《甲午以前的中日邦交》(1934)、王信忠《甲午戰前之中日外交政策概說》(1936)、問漁《甲午戰前日本挑戰史》(1932)、魏建猷《朝鮮問題與甲午之役》(1937)等；② 北洋海軍與甲午海戰；③ 國際關係與外交，如張忠絃《甲午戰爭與遠東國際關係之變化》(1932)、張祿編譯《甲午戰爭中之俄國外交》(1934)、左舜生《中日外交史上的李鴻章》、王信忠《中日馬關議和》(1942)等。④ 戰爭失敗的影響和歷史教訓。⑤ 有關人物研究，集中在李鴻章，如《書合肥軼事》(1932)、《書翁李相傾事》(1935)、《談甲午戰爭的李鴻章》(1940)、《甲午戰前李鴻章的海防建設》(1944)等。⑥ 總論，如楊松《論第一次中日戰爭》、翦伯贊《論中日甲午之戰》(1945)。總之，這一時期，甲午戰爭史研究已成為熱門課題之一，且推出了具有深度的高水準學術專著。

第三階段：50年代以後，是研究工作出現轉機與發展階段。這一階段，開始有組織地編纂史料，其中以中國史學會主編、邵循正等編《中日戰爭》(七冊)(1956)最為重要，對推動甲午戰爭史研究的發展作用頗大。同時，山東、遼寧等地及軍隊的文史工作者開展訪問和調查工作，也取得了可觀的成果。在搶救、搜集和整理史料的過程忠，甲午戰爭史研究也開始得到廣泛的關注，出現了一大批著述。涉及國際關係和外交方面的，有陳偉芳《朝鮮問題與甲午戰爭》(1959，三聯)、週一良《東學黨-朝鮮的反封建反帝鬥爭》(1954)、丁則良《馬關議和前李提摩太策動李鴻章賣國陰謀的新發現》(1954)、嚴啟祥《中日甲午戰爭前中日在朝鮮的矛盾和鬥爭(1884-1894)》(1957)、陳詩啟《中日甲午戰爭中國際資本主義在中國的干涉活動和矛盾鬥爭》(1959、1960)、胡濱《1895年俄德法三國干涉日本退還遼東的內幕》(1953)、祁龍威《從〈張謇日記〉看中國戰爭時帝后黨爭》(1962)、李鼎文《評介甘肅舉人〈請廢馬關條約呈文〉及其他》(1963)等，這些皆為甲午戰爭研究一時之佳作。此外，這一時期出現了揭露日本帝國主義暴行和人民抗日愛國鬥爭的論著。這個時期的甲午戰爭史研究表現出一個明顯的特點，就是學術氣氛開始活躍，展開了一些爭鳴。例如，戰爭將領的評價問題等。

第四階段：70年代後期迄今，甲午戰爭的研究無論廣度和深度都有了重要的突破，從此，甲午戰爭研究進入了拓寬與深化的階段。據粗略統計，1978～2000年間，就已經發表論文1000篇左右，涉及的問題有：戰爭的歷史背景、國際關係及列強的遠東政策、日本的戰爭準備與挑起戰爭的手段、人民的抗日鬥爭、東三省練軍及遼東戰場清軍的後勤供應、帝后兩黨的戰和之爭、北洋艦隊覆滅的原因、三國干涉還遼的影響、臺灣人民的反割台運動及對臺灣民主國的評價、戰爭對中國思想文化領域的衝擊與民族覺醒、甲午戰爭與洋務運動的關係等。涉及光緒帝、李鴻章、翁同和、劉坤一、嚴複、黃遵憲、柯鐵等歷史人物的評價，召開了丘逢甲、李鴻章等人物的專門會議。出版的著作涉及外交的主要有：戴逸等《甲午戰爭與東亞政治》(1994)、石泉《甲午戰爭前後之晚清政局》(1997)、王如繪《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1999)、孫克復《甲午戰爭外交史》(1989)、楊惠萍等《從甲午戰爭至甲辰戰爭》(1997)、關捷《甲午風雲與近代中國》(1997)、戚其章著《甲午戰爭國際關係史》(1994)、《甲午戰爭史》(1990)、楊念群主編《甲午百年祭：多元視野下的中日戰爭》(1995)等。有關人物研究的著作有：孫孝恩《光緒評傳》(1985)、徐徹《慈禧大傳》(1994)、謝俊美《翁同龢》(1994)、苑書義《李鴻章評傳》(1991)、董守義《李鴻章》(1996)、劉成功《李鴻章與甲午戰爭》(1994)、馮天瑜《張之洞評傳》(1994)等，茲不一一列舉。

這一時期，有關甲午戰爭的史料的挖掘、整理和出版工作，成績也斐然可觀，規模空前，如苑書義主編的12卷本《張之洞全集》(1998)、顧廷龍 葉亞廉主編《李鴻章全集》(電稿)(1985)、汪叔子《文廷式集》(1993)、汪熙主編《甲午中日戰爭》(盛宣懷檔案資料選輯之三)上、下冊(1980～1982)等，尤其是“中國近代史資料叢刊續編”《中日戰爭》(1989～1996)的編輯出版，貢獻很大。

目前正在爭論的問題，主要有：① 甲午戰爭的起因問題。② 甲午戰爭的性質問題。中國沒有爭論，日本的爭論卻相當激烈，大致有幾種見解：第一，義戰說。第二，防衛說。第三，兩重性說。兩重性說也有兩種。③ 對“陸奧外交”的評價問題。④ 旅順大屠殺的歷史真相問題。

總之，中國關於中日甲午戰爭的研究已經歷一百多年，取得豐碩的成果。涉及戰爭的歷史背景、國際關係及列強的遠東政策、日本的戰爭準備與挑起戰爭的手段、北洋海軍與甲午海戰、人民的抗日鬥爭、東三省練軍及遼東戰場清軍的後勤

供應、帝后兩黨的戰和之爭、北洋艦隊覆滅的原因、三國干涉還遼的影響、臺灣人民的反割台運動及對臺灣民主國的評價、戰爭失敗的影響和歷史教訓、甲午戰爭與洋務運動的關係，以及人物評價等。有關甲午戰爭的史料的挖掘、整理和出版工作，成績也斐然可觀，規模空前。

比較而言，當前從戰爭史和軍事史角度的研究較充分，外交史角度的研究成果相對較少。而這不多的外交史論著，或者主要介紹甲午戰爭前幾十年中日關係的歷史，詳於背景，或者大都著眼於日本“挑戰史”的角度，利用日方資料，對這一時期日本對華政策作較為充分的研究。對於清政府的對日政策，則尚有進一步探討的餘地。

2. 本文的視角

中日甲午戰爭的歷史是一部日本蓄意挑釁的歷史。其間，日本爲了防範歐美各國的干涉，雖然在軍事上常使制敵於先機，外交上卻採取被動的地位。² 其種種外交措施，常引起歐美各國認爲日本實只被迫應戰的錯覺，以打擊歐美各國對清朝的援助。與此相反，中國政府由於對日本的預謀缺乏準確判斷等原因，爲防止局勢惡化，軍事上雖然被動，在外交上卻一直積極主動，曾做了種種努力。

甲午戰爭時期，由於情況緊急，清政府主要採用電報形式，現存史料比較豐富，情形比較複雜。由於一日數電，加上發電與收電之間有時間差，因此，現存電稿，往往同一天內有數份，同一內容的電稿，收入在幾種文獻中，標注的時間還不同。甚至由於各種誤差，還出現同一份電報在不同文獻中標注時間相差數日的。這些給我們探索這一時期的清政府對日政策的發展脈絡，造成一定的混亂。

本文試在對現有資料做深入考辯的基礎上，以現有研究比較充分的這一時期日本對華政策爲背景，較系統地考察這一時期清政府對日政策的形成、推演的歷史過程及其發展脈絡，試將這場由日本挑釁而起的戰爭，從清政府外交政策的角度予以揭示。同時也以期對相關研究中存在的疑點，作一些必要的回應。

2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商務印書館，民國18年，第34頁。

II. 依據屬邦舊例和中日《天津條約》派兵

1. 漫長的派兵決策與派兵

朝鮮東學黨起義是清政府派兵朝鮮的直接動因，也是日後中日甲午戰爭爆發的導火線。³ 清政府自獲悉韓亂，⁴ 到決定出兵，經歷了一個較長的觀察過程。其間，日本因素顯然是一個重要原因。中日《天津條約》第三款規定，將來朝鮮國若有變亂重大事件，中、日兩國或一國要派兵，應先互行文知照。由於中國派兵很可能促使日本也同時派兵，因此，無論是清政府，抑或朝鮮政府，在派兵問題上均態度謹慎，且非常關注日本的對朝動向。

先是朝鮮政府內部就借兵問題舉棋不定。⁵ 而袁世凱最初也以爲東學黨起義不足爲慮，當朝鮮提出派兵要求時，力勸朝鮮政府鎮靜觀變。⁶ 光緒二十年四月初（1894年5月），東學黨起義蓬勃發展，勢不可當。四月初一日（5月5日），清政府接到駐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世凱來電，稱朝鮮全羅道泰仁縣有東學黨數千人聚眾煽惑，已派兵使洪啟璽帶軍剿撫。⁷ 但東學軍勢如破竹，大敗官軍。當時，北洋海軍的平遠艦正停泊仁川港。在李鴻章的支持下，因朝鮮政府之請，袁世凱將此艦借給朝鮮政府幫助運兵。然而，由於“韓王未請我派兵援助，日亦未聞派兵”，所

3 日本外務大臣陸奧宗光在《蹇蹇錄》第一章中曾說：“將來如有人編寫中日兩國間當時的外交史，當必以東學黨之亂爲開宗明義第一章。”日本正是抓住東學黨起義這一時機，挑起了甲午戰爭。目前關於中日甲午戰爭史的代表之作，均自東學黨起義起筆。文本擬沿用這一論點。

4 這裏用詞，採用原始史料的提法，不代表筆者的立場。以下同，不一一注明。

5 光緒十九年三月（1893年4月）東學道徒聚會忠清道報恩縣時，朝鮮政府即有借兵中國之意。至光緒二十年（1894）全琿准起義後，借兵中國之議再起。然而，國王李熙卻有顧慮。按照中日《天津條約》，中國向朝鮮派兵，日本也可藉口出兵，因此，舉棋不定。詳參 戚其章：《甲午戰爭史》，北京：人民出版社，1990年，第12-15頁。

6 林明德：《袁世凱與朝鮮》，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70年，第338-346頁；王德昭：《論甲午援韓》，《中國近代現代史論集(11)》，第239-242頁。

7 袁世凱發李中堂鴻章電在光緒二十年四月一日（《養壽園電稿》卷3，第114頁），李鴻章至初四日寄總署（《寄譯署》，光緒二十年四月初四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1頁），總署於當天收到（《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四月初四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5頁（940））。

以清政府仍然沒有派兵的考慮，主張“應俟續信如何再酌”。⁸ 其時，袁世凱接連報告，日本並無派兵的動靜。⁹

四月二十九日(6月2日)前後，朝鮮局勢危急。朝鮮國王“以兵少，不能加派，且不可恃為詞，議求華遣兵代剿”。¹⁰ 儘管如此，但並沒有立即發出請兵照會。

此時，袁世凱對於朝鮮請兵，態度也開始變得積極。袁世凱的考慮是，從中朝宗藩體系角度看，屬國內亂不能自了，請求代剿，是上國的體面。從遠東國際局勢看，如果中國不答應，其他國家“必有樂為之者”，這將使中國陷入尷尬的境地，自為必不可卻之舉。以袁世凱的精明，當然也顧及中日《天津條約》，而擔心日本有同樣的舉動。但他認為，根據條約，一旦朝鮮的正式請兵文到達，固然應“照約行文外部”，但條約只規定“華日派兵，只先行文知照”，本來就沒有“華派日亦派”的文句。因此他估計，日本即使多事，也不過“藉保護使館為名，調兵百餘名來漢”。而且，此時起義軍距漢城尚遠，日本派兵還將面臨巨大阻力，韓國外部固然要駁阻，各國政府也將出面阻止。¹¹ 而最令袁世凱放心的，還數日本方面的口頭保證。

自東學黨起義以來，日本一直密切關注朝鮮的借兵動向。早在四月二十五日(5月29日)，外務大臣陸奧宗光就密令其駐韓代理公使杉村濤，查朝鮮政府是否向中國乞援，並囑其充分注意朝方與袁世凱之間的關係。杉村假裝希望中國出兵的姿態，以探袁世凱的真實態度。¹² 二十八日(6月1日)，杉村探知韓王決定借兵後，派遣書記生鄭永邦拜訪袁世凱，以“詢匪情”的名義，試探中國方面的意向。會談

8 《寄譯署》，光緒二十年四月二十一日未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2頁。

9 《寄譯署》(光緒二十年四月二十一日未刻)、《寄譯署》(光緒二十年四月二十二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2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四月二十一日到)、《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四月二十二日到)，《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四月二十二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5-6頁。

10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6-7頁；《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複遲疑電二件》，《清季外交史料》卷90，第29-30頁。

11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6-7頁(949)；《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複遲疑電二件》，《清季外交史料》卷90，第29-30頁。

12 杉村濤：《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東京：勇喜社，昭和7年，第5頁。

中，鄭永邦聲稱，日本政府積極希望中國“速代韓戡亂”。當袁世凱探問日方基於中日《天津條約》對中國派兵的意向時，鄭永邦則表示“我政府必無他意”。¹³ 次日，杉村又親訪袁世凱，以證實派兵之事，聲稱“盼華速代戡”。袁世凱顯然完全相信了杉村偽裝的好意。¹⁴ 總之，袁世凱對於中國派兵援韓，可謂相當樂觀，他告訴朝鮮政府，如必需中國派兵，可由政府具文來，即代為轉達。¹⁵

李鴻章完全相信袁世凱對形勢的分析，予以積極回應。他計畫等到朝鮮政府請兵文轉到，擬派直隸提督葉志超選帶精隊千數百，乘商輪速往，並派海軍四艦赴仁川、釜山各口援護。一面根據中日《天津條約》的相關規定，致電駐日使臣汪鳳藻知照外部。四月二十九日(6月2日)，他將袁世凱來電，及本人的初步計畫致電總署，希望代奏。¹⁶

目前，談到清政府決定出兵朝鮮的根據時，往往認為有兩方面的報告起了非常關鍵的作用，一是袁世凱的，另一是汪鳳藻的。袁世凱的報告如上所說。汪鳳藻則曾經報告，日本自明治二十三年(1890)實行憲法後，政府議會之間常起衝突，近來尤為劇烈，絕無對外生事之餘力。這一觀點最早出自陸奧宗光的《蹇蹇錄》，¹⁷ 且被後來的學者所廣泛引用。據現有中方資料，這一時期李鴻章出兵的決策的出臺，所依據的應主要是袁世凱的系列報告，汪鳳藻報告在其中的作用並不明顯。而且，從李鴻章接受袁世凱建議，向清政府建議派兵，到清政府最終正式下令派兵，還有一個過程。而其間，朝鮮局勢的客觀發展，日本所施展的外交手段，均

¹³ 《寄譯署》，光緒二十年四月二十八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3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6-7頁(949)；《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複遲疑電二件》，《清季外交史料》卷90，第29-30頁。

¹⁴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8頁(954)。

¹⁵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6-7頁(949)；《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複遲疑電二件》，《清季外交史料》卷90，第29-30頁。

¹⁶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7頁；《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複遲疑電二件》，《清季外交史料》卷90，第30頁。

¹⁷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5頁。

具有相當影響。這在此後中日關係日趨複雜之後，還可以看得更加清楚。

由於朝鮮政府有了明確的派兵意向，加上李鴻章積極促進，清政府基本接受派兵建議，決定出兵朝鮮幫助平亂。當時，朝鮮方面雖然已繕就“請兵文”，但因擔心“貽各國笑”，日本“生事”，加上起義軍有南去的跡象，心存遲疑，未將請兵文正式送出，決定根據軍情的進展，再作決定。因此，此時清政府的決定派兵，只是作“先期飭備”，並未決定立即派遣。¹⁸ 四月三十日(6月3日)，總署致電李鴻章，肯定李鴻章派兵的建議，同時告誡“希先期飭備齊楚，以便臨時遣發”。¹⁹ 正式派兵尚需視形勢變化而定。

然而，就在三十日(6月3日)晚，由於起義軍繼續北進，朝鮮政府將正式請兵文交給袁世凱請轉中國政府，請中國政府依據壬午、甲申之例，派兵代為助剿，內稱：

敝邦全羅道所轄之秦仁、古阜等縣，民習兇悍，性情險譎，素稱難治。近月來，附串東學教匪聚眾萬餘人，攻陷縣邑十數處，今又北竄陷全州省。治前(疑有誤)精練軍前往剿撫，該匪竟敢拼死拒戰，致練軍敗挫，失去炮械多件。似此凶頑久擾，殊為可慮。況距漢城僅四百數十裏，如任其再為北竄，恐畿輔騷動，所損匪細。而敝邦新練各軍，現數僅可護衛都會，且未經戰陣，殊難用以殄除寇寇。倘滋蔓日久，其所以遭憂於中朝者實多。查壬午、甲申敝邦兩次內亂，賴咸中朝兵士代為勘定。茲擬援案，請煩貴總理迅即電懇北洋大臣，酌遣數隊，速來代剿，並可使敝邦各兵將隨習軍務，為將來捍衛之計。一俟悍匪挫殄，即請撤回，自不敢續請留防，致天兵久勞於外也。並請總理妥速籌助，以濟急迫，至切盼待。²⁰

18 《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四月二十九日到)，《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四月二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7頁；《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被亂黨戰敗韓王擬求我代剿嗣惑人言又複遲疑電二件》，《直督李鴻章致總署袁電韓請兵文已繕就俟匪北竄始請代剿》，《清季外交史料》卷90，第30頁。

19 《總署致李鴻章派兵援韓希先期籌備電》，光緒二十年四月三十日，《清季外交史料》卷90，第30頁。

20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3-34

當夜，袁世凱即將這一請兵文電寄李鴻章。

接電後，李鴻章按原定方針著手準備。一方面立即飭令海軍提督丁汝昌派濟遠、揚威二艦赴仁川、漢城護商，並調直隸提督葉志超率同太原鎮總兵聶士成，選派淮軍練勁旅一千五百名，配齊軍裝，分坐招商輪船，先後進發。另一方面致電駐日使臣汪鳳藻，要求其依據中日《天津條約》，將派兵事宜知照日本外務省。次日，李鴻章將袁世凱來電，並他本人的部署工作，一併致電總署，請代奏。²¹這一時期，李鴻章進一步確認日本對於中國派兵的態度。四月三十日(6月3日)，他會見日本駐天津領事荒川已次，探詢其對中國派兵的意見，荒川之意與杉村對袁世凱所言基本相同。李鴻章表示，如果朝鮮請兵，勢須准行，待定議，當由汪使知照其外部，事竣即撤回。荒川只說先告外部，並不表示異議。²²

五月初二日(6月5日)，清政府在接到關於朝鮮方面請兵的奏摺之後，正式下達向朝鮮派兵的諭旨，內稱：

此次朝鮮亂匪聚黨甚眾，中朝派兵助剿，地勢敵情均非素習，必須謀出萬全，務操必勝之勢，不可意存輕視，稍涉疏虞。派出兵練千五百名，是否足敷剿辦？如須厚集兵力，即著酌量添調，克期續發，以期一鼓蕩平，用慰綏靖藩服至意。²³

可見，清政府派兵的目的在於“助剿”，告誡中朝派出之兵“必須謀出萬全”，希望“一鼓蕩平”。所擔心的是所派人數不足敷剿辦，故告知如果確實需要，即酌量添調，給與李鴻章以相當的機動。既然日本已明確表示支持中國派兵，外交上似無後顧之憂了，只須按條約完成相應程式即可。

頁。

²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3-34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7-8頁。

²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李文忠公全書·電稿》卷15，《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8頁。

²³ 《光緒朝東華續錄》，第6冊，第3390頁。

李鴻章接旨後，鑒於清廷對其前電所奏派一千五百名前往尚恐不足，因而命葉志超到牙山、公州後，察看敵情，如須添調，即電商速拔，無論本部及威旅各營，均聽指調。²⁴次日，五月初三日(6月6日)，派聶士成率所部910人乘海輪赴朝。

2. 依照中日《天津條約》知照日本

清政府派兵後，外交上首要之事，就是依照中日《天津條約》知照日本。

早在醞釀向朝鮮派兵時，清政府除試探日本對中國派兵的意向外，還曾令袁世凱和李鴻章先後向日本公使及領事具體詢問中國派兵後，將如何根據中日《天津條約》照會日本。袁世凱詢問前來拜會的日本駐朝使館譯員鄭永邦，“以乙酉約，我如派兵，應由何處知照”。鄭回答，由總署、北洋均可。²⁵李鴻章則先後向日本駐天津領事和總署提出，中國派兵後，當由“駐日汪使知照日外部”。²⁶為此，下達派兵諭旨後，清政府決定同時由汪鳳藻知照日本政府，由總署知照日本駐華代理公使小村壽太郎。

五月初三日(6月6日)，李鴻章電駐日使臣汪鳳藻，令其根據光緒十一年(1885年)中日《天津條約》，將中國出兵事照會日本外務省。次日，汪鳳藻將照會寄達日本外務大臣陸奧宗光，內稱：

頃准我北洋大臣李電開“查光緒十一年中日議定專條內雲：將來朝

²⁴ 《寄山海關葉提督》，光緒二十年五月初二日未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

²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四月二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7頁。

²⁶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8頁(954)。《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四月二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7頁(953)。

鮮若有變亂事件，中國要派兵，應先行知照，事定仍即撤回，不再留防等語。本大臣今接朝鮮政府文開，全羅道所轄，民習兇悍，附串東學教匪聚眾攻陷縣邑，又北竄陷全州，前遣練軍往剿失利。倘滋蔓日久，遺憂于上國者猶多。查壬午、甲申敵邦兩次內亂，賴咸中朝兵士代為勘定，茲援案懇請酌遣數隊，速來代剿。悍匪挫殄，即請撤回，不敢續請留防，致天兵久勞於外等語。本大臣覽其情詞迫切，派兵援助，乃我朝保護屬邦舊例。用是奏奉諭旨，派令直隸提督葉選帶勁旅，星馳往朝鮮全羅忠清一帶，相機堵剿，克期撲滅，務使屬境乂安，各國在韓境通商者，皆得各安生業。一俟事竣，仍即撤回，不再留防。合亟照約行文知照。為此，電請貴大臣速即備文，照會日本外務省查照”等因。到本大臣准此相應備文，照會貴大臣查照可也。²⁷

清政府試圖向日本說明，中國派兵是應朝鮮政府之請。中國同意派兵是基於“保護屬邦舊例”。軍隊的主要任務是往朝鮮全羅忠清一帶剿滅韓亂，穩定朝鮮局勢，使在朝國內外民眾“各安生業”。最後聲明，“事竣後即撤回，不再留防”。清政府本以為，這樣“周到”的照會，可以完全打消日方的顧慮。不料，照會一開始就出現波折。

當天，陸奧回復，稱照會中有“保護屬邦”之語，而日本從未承認朝鮮為中國屬邦，要使館商請酌改。²⁸ 汪鳳藻當場嚴正相拒，但一時未能了結，向李鴻章請示。李鴻章複電，態度堅決，表示無論日本立場如何，中方“礙難酌改”。²⁹ 次日，汪鳳藻再訪外務省。日方表示，日本將不把朝鮮看作是中國屬國，但照會用語則“不復

²⁷ 《清国公使ヨリ陸奥外務大臣宛》，6月7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東京，日本國際連合協會，昭和28年，第167-168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三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9頁(958)。

²⁸ 《陸奥外務大臣ヨリ清国公使宛》，6月7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169頁。

²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0頁(963)。

請改”。³⁰

指導“屬邦”之爭的是李鴻章。李鴻章在處理後，向總署彙報。其間，我們沒有看到總署或軍機處在其中有什麼指示，說明李鴻章的意見代表了清政府的立場。由此也可以看到，在朝鮮的地位問題上，清政府的政策是一貫的，明確的。五月初六日(6月9日)，總署也將派兵事由知照日本駐華代理公使小村壽太郎。³¹

其實，日本挑起屬邦之爭只是一個陪襯，其真正關注、精心準備的是軍事派兵，試以壓倒優勢控制朝鮮。日本派兵的決議，比朝鮮政府正式要求中國出兵還早一日，而其計畫派遣的軍隊，遠遠多於中國。為此，陸奧不願在此名分之爭上，與汪鳳藻徒費口舌。³²

III. 從日本“無須多派，更不宜入內地”到速平“韓亂”以退日兵

1. 日本派兵與清政府的“無須多派，更不宜入內地”策

清政府早在得知東學黨起義時，不願貿然派兵，主要原因就是顧慮日本。為此，醞釀派兵期間，清政府通過日本駐中國和朝鮮的公使、領事，不斷探問日方對中國派兵的意向，進行溝通，而日方口頭上則均表示理解與支持。派兵後，清政府又通過中國駐日使臣及總署，先後分別照會日方作詳細說明，以避免引起可能的誤會，均如上所述。然而，清政府剛剛下達派兵諭旨，汪鳳藻的照會尚未到達外務部，日本卻率先派兵了。這是清政府所始料不及的。

其實，日本所謂的“希望中國速代韓戡亂”，及日本政府“必無他意”，完全是虛飾之辭。政府和軍事當局對朝鮮問題的措施的主張，緩急之間雖然稍有不同，但決心出兵卻可謂預謀已久，完全一致。當東學黨起義迅速發展時，日本軍事當局

³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申刻，《李文忠公全集·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到，《清光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71)。

³¹ 《發日本國公使小村照會》，五月初六日，《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6卷，第3312頁(1895)。

³²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9頁。

積極準備出兵，秘密著手進行軍事動員。³³ 而以伊藤博文為首的政府當局，尤其外務大臣陸奧宗光態度甚為積極，認為此時是恢復日本在朝鮮勢力的良好時機，不可失之交臂。³⁴ 但由於當時漢城、釜山、仁川等地均無危險，日僑居地毫無波及，此時出兵未免貿然，為此，寄希望於中國派兵，然後以中日《天津條約》的同等派兵權，堂皇出兵。授命駐韓代理公使杉村浚密探袁世凱的動向，積極慫恿中國出兵，即是其中一個步驟，如上所述。所以，當四月二十九日(6月2日)外務省接到杉村急電，報告朝鮮政府已向袁世凱提出借兵中國的請求時，正在官邸召開內閣會議的伊藤博文，就立即派人請參謀總長有棲川熾仁親王和參謀次長川上操六參加會議，立即秘密決定出兵朝鮮。伊藤立即將這項秘密上奏明治天皇，得到裁可。³⁵ 其實，到三十日(6月3日)，朝鮮政府才正式請求中國派兵。清政府則於五月初二日(6月5日)，正式下達向朝鮮派兵的諭旨，五月初三日(6月6日)派聶士成率所部赴朝，並於當天命汪鳳藻依據中日《天津條約》的相關規定知照日本，如上所述。而日本政府在做出派兵決定後，五月初二日(6月5日)午後四點左右，駐朝公使大島圭介就偕同外務省參事官本野一郎、海軍軍令部第二局員海軍少佐安原金次，及所率部隊，乘巡洋艦八重山號自橫須賀港出發了。此後不斷增兵，人數之眾，組織之嚴密，遠遠在清政府之上。³⁶ 可見，日本政府在朝鮮政府正式請求中國派兵前一天，中國正式派兵赴朝的前4天，就已做出派兵決定。而日本軍隊則在中國軍隊啟程前一天，也即汪鳳藻按照中日《天津條約》知照日本前2天，已經出發。³⁷ 總之，日本的派兵絕對不是被動之舉，而是有備而來，純屬挑釁行為。對此，清政府卻毫不知情。

³³ 詳參田保橋潔著、王仲廉譯：《甲午戰前日本挑戰史》，上海：南京書店，1932年，第68頁；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北平：國立清華大學，1937年初版，第157頁；戚其章：《甲午戰爭史》，北京：人民出版社，1990年，第23-24頁。

³⁴ 山崎有信：《大島圭介伝》，東京：東京博文館，1915年，第250頁。

³⁵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3頁。

³⁶ 關於日本派兵的人數、路徑等詳細情況，可參見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162-165頁；戚其章：《甲午戰爭史》，第27-30頁。

³⁷ 當前，關於陸奧“六二出兵”是目的和性質，一種“非戰目的”在日本學界頗為流行。日本已故歷史學者信夫清三郎持這一觀點，認為陸奧的出發點是和平地解決朝鮮問題，出兵是出於無奈何被迫的。這一說法在日本為相當多的人接受，至今影響頗大。如高橋秀直和大澤博明就是這一觀點的倡導者(詳參高橋秀直：《日清戰爭への

第一時間報告日本派兵的是駐日使臣汪鳳藻。五月初三日(6月6日)，汪鳳藻電告李鴻章，日本將派大島圭介帶捕二十名赴韓，並添調一艦護商。³⁸ 汪鳳藻不清楚日本派兵是否已與總署商洽，故而致電詢問。³⁹ 次日，日本將派兵事宜，分別由其駐韓使館知照袁世凱，由駐天津領事館知照李鴻章。初五日(6月8日)，又由外務省知照汪鳳藻，並稱將由其駐華使館知照總署。

關於日本派兵的人數，汪鳳藻報告中所稱二十來人，是清政府最早瞭解到的人數。而日本方面對此則竭力隱瞞。在致清政府各方照會中，均不予說明，倒是反復表示，派兵目的在於“保護使署、領事及商民”⁴⁰；在於“調護使館，無他意”⁴¹；在於“護商”，出於“非得已”；保證“切戒”所派官兵“毋生事端”，請中國“亦嚴切申諭”。⁴² 因此，對於日本派兵，李鴻章等人原則上反對，並試圖阻止，但對於其派兵的解釋，及所報告的人數，顯然深信不疑，未予以足夠警惕。五月初四日(6月7日)，韓國外署得知大島圭介派兵來漢的消息後，擔心大島生事，拜見袁世凱。袁世凱卻相告，大島不喜多事，帶巡捕廿名來，自無動兵之意。⁴³

道》，東京：東京創元社，1995年，第305-306、514頁；大澤博明：《日清共同改革朝鮮論と日清開戦》，《熊本法学》1993年第73号）。中國學者戚其章對這一觀點非常細緻、系統地予以駁斥（詳參戚其章：《走進甲午》，天津：天津古籍出版社，2006年，第20-34頁）。本文同意戚先生的觀點。

³⁸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三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4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三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8頁(956)。

³⁹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三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8頁(957)。

⁴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四日未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9頁(961)。

⁴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9頁(962)。

⁴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0頁(963)。

⁴³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四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9頁(960)。

李鴻章原則上反對日本派兵，原因一是朝鮮未請日本派兵，日本不應派；二是如果以使館護商的名義，所需究竟有限，且當時漢城等地安靜無事。為此，他希望汪鳳藻與日方“妥商”，並將這一處理意見電告總署。⁴⁴ 儘管如此，在“無須多派，更不宜入內地”的前提之下，他也不反對日本派兵。初四日(6月7日)，李鴻章會見日本駐天津領事荒川已次，首先聲明反對日本派兵，說漢城、仁釜各口現在都很安靜，中國派兵專為剿滅內地土匪，並不到漢城及通商各口，表示日本“似不必派兵，致人驚疑”。但當日本領事說“兵已派”時，雖“未言多少”，李鴻章卻立即讓步，稱：“如已派，保護官商，斷不可多。且非韓請派，斷不可入內地，致華日兵相遇生釁”。也就是說，在日本人數“不多”，“不入內地”的前提下，他是不反對日本派兵的。荒川表示立即轉電外務省與伊藤博文。⁴⁵ 李鴻章這一“無須多派”，“不宜入內地”的立場，表明中國尊重中日《天津條約》的精神，稍後並為總署所接受，成為清政府對日的最初政策。

總署於五月初六日(6月9日)才收到日本駐華代理公使小村壽太郎知照日本派兵的照會，稱“朝鮮現有內亂，擬派一隊兵，照約行文知照等因”。⁴⁶ 而當天下午3時左右，大島及所率部隊已經抵達仁川港。文中只用“一隊兵”字樣，因此，清政府在日本軍隊已經抵達朝鮮時，尚不知其派兵的真實人數。

清政府雖然反對日本派兵，但基本採用了李鴻章所稱其派兵“但為使領兩署及商民保護，無須多派，更不宜入內地”的原則。而將阻止日軍進入漢城的希望，寄託在袁世凱所提議的請駐朝各國公使出面阻詰之上。當時，漢城無事，袁世凱對日本的派兵有了一定警覺。立即囑咐韓國外署派員詰問，指出：“漢近靜謐，日兵來必騷動，殊非友誼。且乙酉夏已知照各國，有事由韓派四十兵護館，切勿來漢，反生事。”袁世凱進而設想，如果日方不予理睬，計畫代韓國擬文辯論，並期

⁴⁴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三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8頁(957)；《直督李鴻章致總署汪鳳藻韓未請日派兵日已派往祈妥商》，《清季外交史料》卷91，第2頁。

⁴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四日未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0頁(963)。

⁴⁶ 《發北洋大臣》，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68)。

望由韓國出面請各國幫助詰問。⁴⁷ 接到日本照會的當天，總署致函李鴻章，希望隨時查示日本軍隊的數目及抵韓情形，同時詢問“袁道欲外督囑各國助詰，倭兵至漢城，能辦到否？”⁴⁸

然而，清政府這一日本“無須多派，更不宜入內地”政策還沒有來得及展開，初六日(6月9日)，小村知照總署的當天，清政府獲悉日本大量增兵，局勢急劇緊張。⁴⁹ 清政府的對日決策也不得不面臨新的抉擇。

2. 日本增兵與速平韓亂以退日兵策

面對日本大量增兵的局勢，清政府所採用的新的對策是促使中日兩國儘快共同撤兵。實現共同撤兵的前提在於“剿匪”，以“亂定”來敦促日本撤兵。這一新的決策，顯然仍然是依據中日《天津條約》的規定，該條約第三款規定：“及其事定，仍即撤回”。這一新對策是在經歷了一系列的阻兵交涉受挫之後產生的。阻兵的努力在朝鮮進行，由袁世凱與朝鮮政府合力爲之。

如上所述，最初，袁世凱深信此前杉村等所謂日本政府對於中國的出兵必無異議的表態。對於所傳大鳥帶兵二十的消息，也並不以爲然。五月初四日(6月7日)，袁世凱接到杉村浚關於日本派兵“密書”後，有了一定警覺，立即囑咐韓國外署派員詰問，進而設想由韓國出面請各國幫助詰問。由於杉村有意隱瞞，當時尚不知道日本派兵的具體人數。但形勢的發展，完全打破了袁世凱原來的樂觀估計。初五日(6月8日)，駐仁川的日本領事已告知同駐仁川的中國領事，稱日本將派三百名赴漢，大鳥圭介即將到達。⁵⁰ 同日下午，又接汪鳳藻來電，告知探知日本

⁴⁷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9頁(961)。

⁴⁸ 《發北洋大臣》，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68)。

⁴⁹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0頁(966)；《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71)。

派三千多軍隊已經陸續出發，“確數難探”。⁵¹

朝鮮政府依照袁世凱之意，一度試圖阻止日本派兵。初五日(6月8日)，朝鮮外署依照袁世凱之意，前往與杉村浚辯駁阻兵。杉村雖然“語塞”，但將責任推給中國政府，說日本派兵是因為中國派兵之故，要朝方與中國商辦。又稱，日朝之間有條約，即使無事時，日本也可派兵，這是日本“應有權利”，要朝鮮“速照約修備兵房”。與杉村辯駁無效之後，袁世凱囑咐朝鮮政府先致電朝鮮駐日本使節，向日本外務省交涉阻兵。同時他也看到，日本企圖駐兵朝鮮蓄謀已久，此次乘機派兵，“似非口舌所能阻”，“既來，又恐非暫時所能去”。日軍的真實意圖是“照約駐兵挾制”朝鮮。⁵² 次日，朝鮮方面又就日本派兵一事當面詰問日本公使，又送文相阻，日使均不予理睬。無奈之下，朝鮮國王決定派外參議赴仁川迓阻，但也預計“未必聽”，指出日本此行“必有他慮，極可危”。無奈之下，朝鮮政府寄希望於清政府。⁵³

初六日(6月9日)，日軍陸續抵達朝鮮。大島隨帶巡捕廿名已經在仁川登岸，此外尚有兵三百名，且隨帶大炮。⁵⁴ 同時，杉村正式送函朝鮮政府，稱大島將於初七日早四點，隨帶護衛水師三百名，由陸路前往漢城。⁵⁵ 對於日本來朝的目的，日本

⁵⁰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0頁(966)。

⁵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71)。

⁵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67)。

⁵³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亥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69)。

⁵⁴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12頁(972)。《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七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頁(973)。

⁵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頁(973)。

駐朝使館的譯員還試圖掩飾。袁世凱對日兵之來深表擔憂，擔心“各國將效猶”，還提請“時或有他人亦擬附入津約內，殊可慮”，建議撤兵。該譯員居然說：“我政府無他意，倘韓王不允，中堂有電，似亦不能強來”。令李鴻章將信將疑。⁵⁶但清政府很快確知，初六日(6月9日)夜，大島及隨行軍隊已在仁川登岸，前後共約四百五十名。初七日凌晨四點，大島果然已帶兵四百由陸赴漢。分五十名帶炮四尊，由順明小輪赴漢。對於此次大規模派兵且前往漢城，日本卻對前往質問的朝鮮駐日本使臣金思轍說，是“由華照會出兵”，將出兵的責任完全推給中國，已根本不提此前致中國政府照會中所說的派兵爲了護商、護使館。⁵⁷

李鴻章在得知日本調兵，大島將帶兵赴漢的消息後，雖命丁汝昌派龍鎮及所附二小輪暫赴牙山察看，由方伯謙，派巡察劉登龍帶往漢城，⁵⁸但一度寄希望於各國出面的阻兵。對於日本派兵，其基本立場卻仍持觀望態度，即使獲知金思轍與日方會面的情形後，還是如此。他認爲，由日本的派兵，可能引起群雄爭韓的局勢：“漢城平安無事，而日獨調兵，各使當有公論。”希望袁世凱能調動各國出面。至於中國方面，他主張“處以鎮靜”，說“若各調兵作聲勢，徒自擾也”。⁵⁹但袁世凱很快電告，請各國出面調停希望渺茫。因駐朝俄、法公使均已離去，現在只由翻譯人員暫代。德、英兩國均是領事代理，美國新來的公使年歲已大，恐無濟於事。袁世凱估計“日來甚銳，似非有得，不肯遽去”。⁶⁰當時，出現了群雄爭韓的局面。初八日(6月11日)，大島及所帶兵隊及武器抵達漢城。與此同時，黎仙得同

⁵⁶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12頁(972)。

⁵⁷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7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頁(974)。

⁵⁸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頁(973)。

⁵⁹ 《複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7頁。

⁶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7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頁(975)。

美兵官數人赴漢，還傳出了朝鮮方面飭黎招剿之說。⁶¹ 法國也亦派兵四十名前往漢城。⁶²

日本既已明確向韓方表示其出兵的責任完全在中國，與此前向中國政府所表示的已截然不同，至此，清政府才深感日本手段“陰鷙極矣”：“日乘韓內亂，以兵挾議，又托言由華照會出兵，陰鷙極矣”。鑒於此時出現各國紛紛插手的局面，為此，清政府總體上如李鴻章等所採取的，反而對日本的派兵持靜觀的姿態，令袁世凱探查“大鳥到漢，如何開議？”對於俄國與美國的插手，則要朝鮮政府“堅持定見”。⁶³ 同時，針對已入漢城的日本軍隊，提出具體對策，仍由李鴻章指令袁世凱具體實行：① 認定日本派兵是爲了與中國爭體面，“兵來非戰”，讓朝鮮“切毋驚擾”。②由於多次阻兵無效，因此，要迅速設法清除全羅道的亂軍。待全羅道克復，中國軍隊離去，認爲“日自息”。③ 如果日本對朝鮮進行要脅，朝方需仍堅持不許。⁶⁴ 這樣，針對日本以護商、護使館名義派兵朝鮮而提出的“無須多派，更不宜入內地”策，未及展開即被新的速平韓亂策取而代之。此後，清政府將對日政策的重點放在儘快平亂之上，以此消除日本派兵和駐兵的藉口。

初八日(11日)，大鳥抵達漢城，朝鮮外署當日與其會晤。雙方“談駁良久”，大鳥堅持認爲朝鮮自身沒有能力清除亂軍，保護日人，請中國代勘就是明證，所以要“率兵自衛”。他聲稱待韓亂平定，就立即撤兵。這似乎與清政府的既定方針不謀而合。因此，袁世凱再告葉志超及朝鮮政府，“欲速退日兵，惟有速圖剿匪”。⁶⁵

⁶¹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頁(976)。

⁶² 《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2-13頁(977)。

⁶³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3頁(980)；《寄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7頁。

⁶⁴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八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7頁；《北洋大臣來電六》，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3頁(979)。

⁶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8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3頁(981)。

儘早平定韓亂，似乎已經成為問題的關鍵。

這時，傳來日本不斷增兵的消息。初八夜(6月11日)，仁川方面傳來消息，聽說日本軍隊一千人約次日乘商船廣島三泛來仁川。日人現已備船駁，軍隊上岸。又聽說日本軍隊八千人將陸續到來。⁶⁶ 大島由仁川至漢，共計日兵近千名。⁶⁷ 與此同時，日本駐仁川領事正式致函，稱日本馬步兵一、二天內到達仁川，抵港後立即赴漢城。同時，稅司又接該日本領事信函，稱日本政府已雇商船十四隻運兵來仁川，到港時請勿延礙。⁶⁸ 陸奧宗光因清政府對日本派兵頗有微詞，於五月初九日(6月12日)將一份措辭強硬的照會由小村送至總署，稱：

貴國派遣軍隊於朝鮮，雖雲系保護屬邦，但我政府未嘗認朝鮮為中國之屬邦。且我國此次派出軍隊於朝鮮，系根據《濟物浦條約》上之權利。又關於出兵事件，除遵照《天津條約》行文知照外，我政府唯行其所好而已。故關於其軍隊之多少，及進退動止，毫無受清國政府掣肘之理。又假令日清兩國軍隊於朝鮮國內，彼此相逢，言語不通，但我國軍隊皆以紀律節制而行動，決無妄行衝突之虞，此我政府所信而不疑者也。故希望貴國政府令其軍隊勿生事端。⁶⁹

照會中，陸奧仍表示希望中日兩國軍隊需盡力避免衝突。當時，大島圭介已經率軍隊進入漢城，大島義昌混成旅團先遣部隊也已抵達仁川，其第一批部隊正在駛向仁川途中。平亂與撤兵交涉刻不容緩。

⁶⁶ 《袁道來電》光緒二十年五月八日酉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8頁。

⁶⁷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8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3頁(982)。

⁶⁸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4頁(983)。

⁶⁹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10頁。陸奧宗光著、伊舍石譯：《蹇蹇錄》，商務印書館，1963年，第17頁。

IV. “亂定”與“照約撤兵”交涉

1. 袁-大鳥撤兵會談

正在日本增兵之際，朝鮮方面及時傳來韓亂平定的消息，⁷⁰ 這為清政府剛剛制定的“速平韓亂，以退日兵”之策，帶來轉機。

清政府於五月初九日深夜(初十凌晨)(6月12日、13日)接袁世凱關於朝方內亂已平的來電，稱韓王派人說，起義軍得知華兵登岸，立即逃散，全州克復。此後，飭令朝鮮各軍分防，自可毋勞中國軍隊。同時指出，日本軍隊駐紮京城，上下恐懼，在一日即危一日，期待中國設法，令日軍迅速離去。袁世凱認為，朝鮮政府雖然沒有明說，但其用意在於“早請撤兵以退倭兵”。⁷¹ “韓亂”既平，依照中日《天津條約》，中日雙方理應共同撤兵。為此，清政府立即展開撤兵交涉。交涉在漢城和東京同時進行，分別由袁世凱和汪鳳藻出面主持。首先是袁世凱與日本駐朝公使大鳥圭介的撤兵交涉。

袁世凱與大鳥之間就共同撤兵問題一度進行得頗有聲色，但只歷經五月初九日(6月12日)至十三日(6月16日)短短幾天，因與日本政府既定的挑釁政策相違背，嘎然而止。

大鳥之所以與袁世凱商議撤兵，是因為當他帶兵進漢城時，發現朝鮮亂勢大殺，漢城及通商口岸毫無危險，日本已失去大量派兵，尤其進駐漢城保護使館的口實。為此，大鳥也自感難以帶兵久留漢城，更無大量增派軍隊前來的理由，擔心以此招來外交糾紛。⁷²

初九日(6月12日)，大鳥抵達漢城的次日，前來拜訪袁世凱。雙方談論二個多小時。對於帶兵進漢城的原因，大鳥堅持說“實護館”，並相繼幫助韓國“禦匪”。此

⁷⁰ 由於朝鮮政府對東學黨起義軍的政策由“主剿”轉為“主撫”，五月初八日(6月11日)，三南招撫使嚴世永代表朝鮮政府接受起義軍提出地條件，簽訂休戰協定，即《全州和約》。初九日(12日)，全琫准推出全州。十一日(14日)新任全羅道觀察使金鶴鎮到任，開始安撫地方。也就是清政府的軍隊還沒有與起義軍接仗，起義軍即逃散了。

⁷¹ 《北洋大臣來電五》，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夜醜刻，《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4頁(985)。

⁷²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12-13頁。

次會談，雙方商定撤兵協議：“到仁之八百兵來漢，暫駐即撤。現在漢之水師兵，候八百到即回船。續來者，毋等岸，原船回日。未發者，即電阻。華亦不加派兵來漢。”袁世凱得知日本所雇傭十四船，將載運軍隊人數，竟多達二千四百人。而當時起義軍因聽說中國軍隊到來已逃散。因此，袁世凱說，朝鮮局勢已漸漸平定，中國計畫早日撤兵。但如果日本繼續派兵，中國也將加派軍隊。如此，一旦西方勢力加入，局面不堪收拾，表示中國希望維持和局。大鳥表示贊同。袁世凱勸令減少駐漢城之兵，分留仁川。大鳥以“一隊一將未便分駐”為由，予以拒絕。但答應“待事定，即全撤，必不久留。”因聽說日本派兵，中國也準備以相當兵力相抵，因而大鳥與袁世凱進一步約定，如果大鳥能夠阻止續來的軍隊，袁世凱可以致電阻止加派。大鳥則強調，除已經到仁的八百士兵外，其餘將完全阻止。⁷³

次月初十日(6月13日)，袁世凱回訪大鳥，就前一天達成的共同撤兵意向再作確認，雙方並談到東亞局勢，相談甚契。⁷⁴ 共同撤兵一度出現良好前景。

對於袁世凱與大鳥的撤兵交涉，清政府的反應非常積極。李鴻章在接到袁世凱來電後，顯然相信大鳥的立場，開始積極籌備撤兵。他本擬添派，接到袁世凱來電後立即中止，並電囑葉志超、聶士成暫駐公州、牙山，確探全州一帶賊情，再審進止。⁷⁵

朝鮮政府獲知大鳥與袁世凱會談後，進一步函告亂軍逃散的消息，這使李鴻章對撤兵交涉充滿期待。初十日(6月13日)，韓國政府當獲知袁世凱與大鳥達成協議，必須中國撤兵，日本才願同時撤兵後，便致函袁世凱，再一次告知起義軍已經逃散，全州已經克復，請中國不要繼續增兵，以敦促日本撤兵，稱“該匪散伏

⁷³ 《大鳥公使袁世凱應對筆記》，《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00-202頁；《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9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戌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4-15頁(986)。

⁷⁴ 《大鳥公使袁世凱應對筆記》，《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02-204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5頁(988)。

⁷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9-40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戌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5頁(986)。

叢深，惟敵邦卒役，易圖捕獲，似非上國士卒堪執此責。”對此，李鴻章認為“語甚近情”，致電葉志超，“若再前進，殊無趣，應即速調所部回牙山，整飭歸裝，訂期內渡，一面函商袁道催日本同時撤兵。勿再觀望遲疑爲要”。⁷⁶ 李鴻章認為，既然大鳥已經同意同時撤兵，朝鮮方面又有自我善後的能力和撤兵的要求，中國軍隊在朝鮮“未便久留，致生枝節”。在他看來，只要跟大鳥約定同撤，撤兵就可實現。請總署將其意見代奏。⁷⁷ 與此同時，汪鳳藻在東京的交涉也似乎出現眉目，詳參下文所述。

種種跡象表明，撤兵交涉至少是在向前行進。清政府對李鴻章等人撤兵交涉的成效頗爲肯定，稱李鴻章“所論甚中窾要，將來同時撤兵，或可不至掣肘”，但主旨則有所不同。清政府認為，此次派兵本意在於剿匪。現在匪黨雖散，但並未受到懲創，擔心兵退後又起，更費周折。因此，命令葉志超和聶士成確探匪徒蹤跡，設法剿捕，希望能夠“擒斬首要各犯”，以免“後患”。總之，清政府還是堅持其剛剛制定的速平韓亂的退兵之策，希望撤兵之前，先盡數剿滅韓國內部的叛亂。因日本當時聲稱進駐漢城是依據日韓條約，爲此，總署詢問李鴻章“此次倭兵徑抵漢城，究與韓倭定約是否相符？”並希望李鴻章提供該條約的約本。⁷⁸

對於總署的意見，李鴻章可以說一定程度予以抵制。十一日(6月14日)，李鴻章回復總署。電報中，他不贊成總署“設法剿捕”、“擒斬首要各犯”的意見，稱“此時防倭較重於防匪”，認為韓軍已經要求中國軍隊勿進入，加上人地生疏，山徑叢雜，中國軍隊的確很難冒然深入。至於總署所詢“韓倭定約”之事，他則作了詳細回復。

李鴻章提供了甲申事變後日本與朝鮮(光緒十年十二月)，以及日本與中國間訂立的條約的相關內容。指出兩者關於駐兵與撤兵的規定存在一定差距。中日《天津條約》規定中日兩國全部撤回，以免兩國滋端。而與朝鮮的條約卻規定“日本使館

⁷⁶ 《朝鮮漢城速寄葉軍門》，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申刻，《複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0頁。

⁷⁷ 《北洋大臣來電五》，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6頁(990)。

⁷⁸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十一日辰刻，《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6頁(992)。

置兵弁若干備警，若朝鮮兵民守律，一年後不防撤兵”等，如此，兩國將酌留一定人數。但這種差別並不足以影響兩國撤兵的協議。⁷⁹ 李鴻章認為無論依據日朝條約，抑或中日條約，兩國商談共同撤兵均足以為據。所面對的問題只是雙方是否均需酌留，酌留人數多少。

這裏的“韓日從前定約”，即光緒十年十一月二十四日(1885年 1月 9日)日韓訂立的《議增續約》(即《京城條約》)。具體內容五條，除對日謝罪賠款之外，第五條規定，“護衛兵弁照壬午續約第五款施行”。⁸⁰ 這裏的“壬午續約”即光緒八年七月十七日(1882年 8月 30日)朝鮮大臣李裕元、金宏集與日使花房義質訂立的《濟物浦條約》，其中規定日軍駐韓保護使館。這一條到甲申事變後的《議增續約》中，被重複提出。因此，李鴻章所存光緒十年(1884)十二月朝鮮國王奏謝折內附抄日本續約，第五條就注雲：“日本使館置兵弁若干備警，若朝鮮兵民守律，一年後不妨撤兵”等。⁸¹

79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1-42頁；《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十二點半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5頁(989)。按：《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以下簡稱《交涉史料》)的《北洋大臣來電四》所注時間精確到時刻，查其所收前、後數電，時間也均為“五月初十日”，似不應有誤，其實不然。該電報時間實應在十一日深夜或十二日早上之間。(1)這封《北洋大臣來電》，又見於《李文忠公全書·電稿》(以下簡稱《電稿》)卷15，題為《複譯署》，時間為“光緒二十年五月十一日酉刻”。略有不同的是，省略了《北洋大臣來電四》中的抬頭幾字，結尾處多出一句話。也就是說，李鴻章致總署電在十一日酉刻。如此，總署收電，應在當天深夜，最遲也應在次日十二日。(2)其實，李鴻章所發的這封電報，是對總署“五月十一日辰刻”《發北洋大臣電》的回電。十一日辰刻總署去電中表示，一要求李鴻章所部設法剿捕，“擒斬首要各犯”，以免“後患”；二詢問日本帶兵進入漢城是否與韓日條約相符。李鴻章就在這份回電中，一一做了回答。先談對進兵的看法，接著回復“承詢韓日從前定約”的情況。《交涉史料》所收李鴻章的這份回電，即《北洋大臣來電四》，開頭有“十一日電敬悉”幾字，正好與總署《發北洋大臣電》的時間一致，也表明這是對總署十一日來電的回電。可見，如果說當時天津與北京之間的電報需要3-4個時辰，那麼，李鴻章發這封發於“十一日酉刻”的電稿，總署收到時，當在十一日深夜，或者更稍後的十二日早上，而不是現在所注的“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十二點半到”。以下所引該電，依據《交涉史料》標注，不再一一說明。

80 《會辦北洋事宜都察院左副都禦史吳大澂奏朝日議約已竣商辦善後事宜折》，光緒十年十一月二十九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6，第44頁(316)。

81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2頁；《北

尚需說明的是，目前一般稱日本派兵所依據的是中日《天津條約》和日韓《濟物浦條約》，中方文件則聲稱日本依據的是光緒十年(1884)十一月日韓《議增續約》第五款。因第五款延引《濟物浦條約》的相關規定，兩者應是一致的。只是李鴻章本人對日韓《議增續約》較《濟物浦條約》印象更加深刻。他說，當初與伊藤博文議定中日《天津條約》中關於中日駐兵問題的內容，其實與幾個月前剛剛訂立的這個《議增續約》第五款直接相關。李鴻章於光緒十年(1884)十二月收到朝鮮國王來函，附抄該條約第五款有可駐兵護衛使館的規定。為此，次年三月伊藤來華談判時，李鴻章著意商定“彼此盡數撤回”，目的就在於避免兩國“滋端”。李鴻章希望這次撤兵依據中日《天津條約》進行，但他擔心日本重申《議增續約》的規定，要求留兵。⁸²顯然，甲申事變後日韓甲申續約、中日《天津條約》所訂立條約，是李鴻章指導與日本撤兵交涉的基本依據。

我們沒有看到清政府在收到李鴻章這封信後，究竟贊同抑或反對。但從此後的歷史過程看，清政府固然不願放棄徹底“剿匪”以退日兵策，但此時則完全支持進行中的撤兵交涉，且非常具體地指示了交涉的旨意。五月十一日(6月14日)，李鴻章致電袁世凱，指示撤兵交涉的機宜，指出日韓甲申《議增續約》雖然有駐兵保護使館的規定，但次年中日《天津條約》已經規定，亂定則盡數撤回。條約中又聲明將來若有變亂派兵，事定仍即撤回，不再留防，所以必須照條約共同撤兵。但是，如果大鳥要求留駐保護使館，那麼，中國軍隊也需要酌留，留守軍隊駐紮何處，要求袁世凱依據現有條約與大鳥妥議，再請示遵。⁸³具體傳達了清政府的撤兵旨意。

然而，撤兵交涉卻是一波三折，最後終因日本另出花招而成空局。

大鳥圭介之主動與袁世凱商議撤兵，不僅非出自日本政府的旨意，且與日本政府的既定方針恰恰相反。五月初九日(6月12日)，大鳥在與袁世凱就撤兵問題達成

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十二點半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5頁(989)。

⁸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一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2頁；《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十二點半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5頁(989)。

⁸³ 《複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一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2頁。

初步協定後，即致電陸奧報告協定的大致經過，請予以認可，卻立即遭到陸奧的否決。五月初十日(6月13日)，陸奧連續致電大鳥，命讓續來的部隊進入漢城，並向韓國政府提出討伐東學黨的要求，以便使部隊進入漢城言之成理。同時指示，關於對付朝鮮的將來政策，日本政府或將採取強硬的措施。⁸⁴ 十一、十二日(6月14、15日)，日本在騎虎難下的情況下，召開內閣會議，確定了以不撤兵和共同改革朝鮮內政為基幹的新的挑釁政策，以窘中國。並強調，如果中國不贊成日本提案，日本政府就獨立擔任，使朝鮮政府行前述之改革。⁸⁵ 於十二日(6月15日)午後八點致電大鳥，令其無論如何不可撤退駐屯部隊，為此，令其立即派遣公使館館員或領事館館員赴暴動地方調查實況，而這一調查務令緩慢，且必須作成與和平狀態相反的報告。⁸⁶ 由於日韓電線發生阻礙，此電直到十五日(6月18日)午後二點才到達。因此，十一日(6月14日)至十五日(6月18日)數日間，大鳥儘管態度“遲疑”，但與袁世凱的撤兵商議，卻並未完全終止。

五月十二日(6月15日)，袁世凱通過日本翻譯官轉告大鳥，催促商討共同撤兵問題。他指出，根據中日《天津條約》規定，僅可派遣保護使館所需的有限人員，而日本竟派大兵，自有用意。本來，日本駐兵漢城，中國駐牙山的軍隊也應該進駐，但考慮到大兵相聚必然發生衝突，故而沒有動兵。現在既然亂軍已經散去，兩國軍隊“何苦空相持”？指出中國本擬撤兵，因日本增兵，固未便動。希望大鳥以大局為念，與中方迅速商定了結辦法，以免招引其他列強的參與。否則，兩國相持後果不堪。翻譯官回話說，日本政府因為聽信謠傳，為了防備中國派兵，才

⁸⁴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13頁。

⁸⁵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14-15頁。

⁸⁶ 訓令中主要指出二點：(1)內閣會議決議採取斷然處置，擬與中國協力改革朝鮮政府之組織，而強迫中國政府任命共同委員會以達此種目的。定于次日由陸奧本人向駐日中國使臣汪鳳藻提議。但此事必須力守秘密。(2)當陸奧與中國談判此事期間，大鳥無論用何種口實，務必將日本軍隊留在漢城，因為李鴻章正苦心籌思共同撤兵。而延遲日本軍隊撤回的“最公然而坦白”的方法是，立即派遣公使館館員或領事館館員赴暴動地方調查實況。而這一調查務令緩慢，且必須作成與和平狀態相反的報告。如果朝鮮政府聲稱已恢復和平而請求日本軍隊撤退，則答以日本政府及其本人必須親自特別派遣調查實況之官吏報告(參見田保橋潔著、王仲廉譯：《甲午戰前日本挑戰史》，上海：南京書店，民國21年，第94-95頁)。

在倉促之間派兵，自稱“徒足貽笑”，大鳥也“甚急”。⁸⁷

十四日(6月17日)，袁世凱已與大鳥約定非常具體的撤兵方案：日軍已經到漢城的一千人，撤四分之三，留二百五十人駐仁川。中國軍隊撤五分之四，留四百移駐仁川附近，均待韓亂平定全撤。當時大鳥聲稱沒有奉朝廷之命，是否撤兵，尚需等待政府“複電乃定”，使李鴻章看到“日廷意甚狡肆”，但李仍對撤兵抱持希望。⁸⁸此時，李鴻章認為根據朝鮮方面和袁世凱的報告，均表明韓亂立即可以平定，故而與日本商議“照約撤兵交涉”，以免日本要脅，“仍與袁世凱密商分別撤留”。他反對中國增兵，認為當下之計，就是暫作觀望拖延策，“現飭再確探賊蹤酌辦”。⁸⁹

然而，就在十四日(6月17日)，大鳥在瞭解其政府的真實用意後，態度突變。而此時，李鴻章顯然對日本的既定政策很不了然，依然試圖在中日《天津條約》框架下展開對話。

2. 汪鳳藻的撤兵交涉

在袁世凱與大鳥開始撤兵交涉時，汪鳳藻與日方的撤兵交涉也同時在東京進行。五月初九日(6月12日)，李鴻章接到朝方來電，稱朝鮮內亂已定的電報後，同時也立即致電駐日使臣汪鳳藻，並就日本政府正式知照增兵事，指示其向日本外務省質問並予以阻止：“查漢城無事，全州已復，已屬外署詰問。並請各國員查詰。日調兵已過多，自非意在護館，究屬何意，望向外務詢問。”⁹⁰

⁸⁷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二日卯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2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二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6頁(993)。

⁸⁸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戌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4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7)。

⁸⁹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6)。

⁹⁰ 《寄日本汪使》，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8頁；《北洋大臣電五》，光緒二十年五月初九日夜醜刻，《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4頁(985)。

初十日(6月13日)，汪鳳藻致電李鴻章，報告交涉進展的情況。他向伊藤博文當面詢問日本為何派兵如此之多。伊藤的解釋是，“恐韓亂亟，道遠接應難，故派兵稍多”，與大鳥所說大致相似。但他也透露了留兵代議善後之意，經力阻始允。俟亂定，彼此撤兵，隨後當與總署妥商辦法，希望代為轉達。⁹¹

在袁世凱與大鳥的撤兵交涉迅速陷入膠著狀態時，李鴻章還希望汪鳳藻在日本能夠打開局面。五月十三日(6月16日)午刻，李鴻章電告汪鳳藻，袁世凱與大鳥的商談陷入僵持狀態。同時告知，朝鮮亂軍逃散“屬實”，全羅道已經克復，追捕無需借助客軍之力。希望汪鳳藻與日本外務省及伊藤博文“切實”相商，依照中日《天津條約》“事定仍即撤回，不再留防，以免韓人疑懼，各國生心”。同時要聲明，如果日本留兵在朝，則中國也當酌留，“轉非了局”。⁹²

然而，日本方面卻已經開始實行五月十二日(6月15日)閣議的新的精神，開始抓住韓亂是否平定問題，大做文章。朝鮮方面和中國方面均聲明韓亂已平，日本方面卻認定韓亂未平。十二日(6月15日)，李鴻章接汪鳳藻電稱，當駐日韓國使臣前往外務省告以亂軍已平時，外務省卻回答，沒有接到在韓國的大鳥的電稿，“不足信”。日本各大報紙又宣稱，朝鮮傳出賊平的消息，不過是希望外國軍隊撤離。為此，汪鳳藻希望請袁世凱“確查果實，再與日商撤兵”。⁹³但未等“確查”，卻傳來日本增兵的消息，且逐漸顯示其善後的意向，與清政府的撤兵之意完全背道而馳。

十三日(6月16日)，竟傳來日本增兵五千多的消息。日本的解釋是，“韓亂未平，擬並力共剿”。經汪鳳藻力爭才答應，如果清政府實有辭，也可允作罷論。然而，其善後之意，卻不在於撤兵，而在於“更革韓政”了，並希望汪鳳藻將此意轉達總署。⁹⁴後經汪鳳藻力爭，伊藤博文才同意按照中日《天津條約》辦理，但據說這

91 《北洋大臣來電六》，光緒二十年五月初十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6頁(991)。

92 《寄日本汪使》，光緒二十年五月十三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5)。

93 《寄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二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2頁。

94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三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北

大拂眾議，外務省指責其為徇私，意圖翻議。又經汪鳳藻折辨，日方終於同意可以撤兵，前提仍然是“必探確賊盡平為度”。⁹⁵ 其實，其中深藏玄機。

十四日(6月17日)，汪鳳藻接到李鴻章十三日這份認為“韓亂已定”的電稿後，立即前往外務省。不料，外務省卻聲稱，大島並無相應電報，將中國方面關於韓亂平定的報告一口否定。⁹⁶ 也就是說，韓亂是否平定，無論韓國方面的聲明，抑或中國方面的聲明，均不足為據，需完全依據日方駐朝代表的報告為準。一直以來大島所展示的是一幅誠心誠意撤兵的形象，以致李鴻章疑惑地問袁世凱：“日廷疑賊猖獗，尚欲派兵會剿，謂未得大島確信。豈日韓電斷耶？”⁹⁷

此時，在日本的汪鳳藻因日本大量佈置兵力，已深感其別有所圖，建議中國也應“厚集兵力，隱伐其謀”。待韓亂平定後，再與日本商議撤兵，才可能使日本就範。希望李鴻章將他的建議轉告總署。⁹⁸ 儘管如此，李鴻章卻仍然對撤兵充滿希望，已與袁世凱擬定與大島同撤分留辦法，“候日復即定”。⁹⁹ 對於汪鳳藻的派兵建議，李鴻章表示反對。十五日(6月18日)，他將汪鳳藻來電轉告總署，認為如此正迎合了日本“狡逞之謀，因擬必戰，殊非伐謀上計”。¹⁰⁰

李鴻章努力“照約撤兵”，但此後撤兵交涉所面臨的問題，不僅僅是韓亂是否平定的問題，而是與一個新的問題改革韓國內政問題糾纏在一起了。

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三日夜子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6-17頁(994)。

⁹⁵ 《汪使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戌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6)。

⁹⁶ 《複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

⁹⁷ 《複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

⁹⁸ 《汪使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戌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北洋大臣來電一》，《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6)。

⁹⁹ 《複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

¹⁰⁰ 《北洋大臣來電一》，《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6)。

V. 陸奧三條與撤兵交涉的中止

1. 陸奧三條與李鴻章的三大對策

《蹇蹇錄》公然表示，所謂改革朝鮮內政，不過是用來促成中日衝突的外交上的一種手段而已，陸奧已經認定和平沒有希望。¹⁰¹ 而對於日本的這一挑釁政策，即使這一挑釁政策的具體實行者日本駐韓公使大島圭介，一時也難領會其中要義，¹⁰² 慢說清政府。此時的清政府，還將主要希望寄託在剿匪以促成日本撤兵之上。

圍繞日本提出的“共同改革朝鮮內政”的交涉，由於清政府立場分明，歷時不長，大致自五月十三日(6月16日)日本提出此案，至十九日(6月22日)日本政府發出“第一次絕交書”，歷時約6天。

首先向清政府報告日本政府這一新的政策動向的是汪鳳藻，。當時汪鳳藻正與日本外務繼續進行撤兵交涉。十三日夜(6月16日)，汪鳳藻來電，除報告與日本交涉撤兵的最新情況之外，又告知，日本所言善後之意，在“更革韓政”。電報只是簡單提及，詳情將另函陳述。¹⁰³

事實是，十三日(6月16日)，陸奧宗光約見汪鳳藻，晤談這次朝鮮問題及善後辦法，轉述日本內閣會議提案的要旨。陸奧認為朝鮮內亂的遠因在於朝鮮政府的稅政，如不將此稅政根本改革，到底無根絕此種反亂的希望，提出所謂共同改革內政的要求，請汪鳳藻轉告清政府。汪鳳藻力主中日應首先互撤朝鮮駐軍，然後再商朝鮮善後問題。會談自十三日(6月16日)午後8時，直至次日凌晨1時。¹⁰⁴ 陸奧尚不放心，次日(6月17日)將會談各條製成公文，送給汪鳳藻，正式提出共同改革內政的方案。¹⁰⁵ 所謂的“陸奧三條”。

¹⁰¹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21頁。

¹⁰² 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183-185頁。

¹⁰³ 《寄議署》，光緒二十年五月十三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3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三日夜子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6-17頁(994)。

¹⁰⁴ 《陸奧外務大臣清國公使對談概要》，6月16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08-212頁。

¹⁰⁵ 《陸奧外務大臣ヨリ清國公使宛》，6月17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

與此同時，日本駐天津領事荒川已次也拜見李鴻章，轉告陸奧宗光關於處理派兵問題的三點建議：一、日軍與清軍會剿韓亂；二、兩國派員整理更革韓政及稅務；三、兩國派員弁教練韓軍，使其自能靖亂。並稱已商由汪使請示。李鴻章立即致電汪鳳藻，指出日方所提要求均超出現有條約範圍：其一，韓亂已平，我軍不必進剿，日軍更無會剿之理。其二，光緒十一年(1885)年伊藤博文與李鴻章訂立中日《天津條約》，事定撤回，又日韓條約承認韓國自主，尤其沒有干預內政之權。因此，要求汪鳳藻“直截回復”，“均難於約外另商辦法”，堅持“照約”展開交涉。¹⁰⁶

如上所述，當時，由於大鳥沒有及時得到陸奧的訓令，袁世凱與大鳥的撤兵會商仍在進行，但已經表示實際上“未奉日廷命撤”，需“候複電乃定”。也就是說，大鳥的所謂撤兵之說，很可能又是一個幌子，為此，李鴻章對於日本的“狡肆”甚為憤懣，對總署稱：“韓政雖闇弱，豈日所能更改嘗試，可恨”。¹⁰⁷ 可以說，李鴻章對於日本新提出的所謂陸奧三條的新主意，不但難以接受，且相當反感。

五月十五日(6月18日)，傳來日本增兵四千抵達仁川的消息，且在韓“勢甚兇悍”。¹⁰⁸ 這意味著所謂袁世凱與大鳥此前約定的協定，被徹底顛覆。當時駐朝軍隊有要求帶兵赴漢仁的，但被李鴻章勸阻，稱“正與汪使電商日照約撤兵”，要求葉志超“堅忍約束，以待後命”。¹⁰⁹

此時，漢城人心鼎沸，莫可遏制。李鴻章預計，如果這新抵仁川的四千士兵進漢，漢城必然逃空，朝鮮國王恐怕也要逃往北漢。此時，各對於國調停日本“均不理”。既然與大鳥的撤兵商議已不可信，日本也已明確表示真實用意在於“脅

214-215頁。

¹⁰⁶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戌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4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7)。

¹⁰⁷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四日戌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4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7)。

¹⁰⁸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5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亥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頁(998)。

¹⁰⁹ 《複葉軍門》，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4頁。

韓”，大鳥完全不能“自主”，“舌爭”已無濟於事，李鴻章也感到，只有“大舉，或易結束，否則，非有所得，不能去也”。然而，李鴻章此時仍無備戰之意。在總署信中，他道出了所以竭力避戰的一個機關：“今年慈聖慶典，華必忍讓”。在此情形之下，針對陸奧三條，李鴻章向總署提出所謂防止局勢“遽裂”的三點建議：① 先調南北水師速來嚴備，續備陸兵；② 一面電汪鳳藻商辦；③ 並由總署酌請駐華各國使調處。具體措施是，命丁汝昌添調數船前往仁川聊助聲勢，其餘請總署核酌。¹¹⁰

李鴻章立即致電汪鳳藻，推行他的第二點建議。他告訴汪鳳藻，大鳥與袁世凱約定的撤兵協議，事實證明大鳥完全沒有自主之權，日本已經增兵五千抵達仁川，漢城局勢大亂。希望汪鳳藻與日本外務和伊藤“切商”，重兵宜早抽調回國，否則中國也必派重兵，“恐誤大局”。¹¹¹ 此時，駐朝軍隊仍然在實施追捕亂匪的工作。¹¹²

總署對局勢的判斷，較李鴻章樂觀。當時英國駐華公使歐格訥來談，稱日本增兵在仁川，必不到漢城，總署鑒於歐格訥與小村交往甚“密”，認為應該可信。針對韓國驚擾已甚的局勢，命李鴻章電袁世凱，喻以鎮靜。然而，對於李鴻章的三大建議中的第三條請各國調處，總署認為似於中屬體制有損，不宜實行。而對於陸奧三條，則基本上是按照李鴻章的方案處理。十五日(6月18日)，日本駐華代理公使小村壽太郎來總署，交陸奧電寄的三條，¹¹³ 與李鴻章來電相告的一致。次日，總署就此與小村會談，針對陸奧三條，逐條指明其不可行性。第一條會剿問題，因朝鮮亂黨幾近告平，以朝鮮本國的力量足以平定。第二、第三改革朝鮮內政及理財、整頓軍務條，中國政府也斷難表同意，因朝鮮有其自主之權，雖為中國屬邦，但並無對其內政濫加干涉之權。總署是按照李鴻章致電汪鳳藻的說法，

¹¹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六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5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8頁(999)。

¹¹¹ 《寄日本汪使》，光緒二十年五月十六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6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8頁(1000)。

¹¹² 《複葉軍門》，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6頁。

¹¹³ 《小村臨時代理公使ヨリ總理衙門宛》，《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31頁。

答復小村的。當時小村無辭，只說“照電外務”。¹¹⁴

2. 汪鳳藻與日本的交涉與日本的“第一次絕交書”

汪鳳藻在接到李鴻章電示後，遵囑立即前往交涉，然其交涉的主旨，卻擅自略作了變更。

五月十七日(6月20日)，汪鳳藻即前往與陸奧會商，所持主旨仍在令日本撤兵，而對於陸奧三條，則是將李鴻章的指示“微示其意”，但不作正式答復。汪鳳藻的考慮是，擬中國增兵抵達韓國後，再往回絕。此次會談，於撤兵交涉仍無成效。陸奧稱，日本軍隊大量進入韓國，商民是否“慌避”，容電查情形再議辦法。經汪鳳藻反復申辯，日本“終無撤兵意”。會談中，陸奧特意將話題轉向三條，稱善後三條已電其駐華公使知會總署，要汪鳳藻催復信。汪鳳藻鑒於其既定考慮，沒有將李鴻章授意明白相告。陸奧又追問三條中提到的會剿問題，說余匪萬一複煽，容否合剿，托再請鈞示。會談後，汪鳳藻立即將相關情況電告李鴻章。李鴻章接電後，回電指示，朝鮮余匪僅餘少量，無須重兵，中國已經排小隊前往捕逐，不日必可肅清，未便兩軍合剿，以致生嫌釁。¹¹⁵

次日，十八日(6月21日)，針對陸奧三條，汪鳳藻向李鴻章提出四點建議：①日本承認朝鮮為中國屬國；②中國答應日本會剿；③亂定後依照條約撤兵；④中、日均不干預韓國政治，只勸韓國自行清理內政。汪鳳藻的用意是，以日本的承認所屬來交換會剿。如果日本接受固然好，如果拒絕，中國拒絕陸奧三條也有了說辭。汪鳳藻首先徵詢李鴻章之意，如果李鴻章認為可行，再請其轉達總署。最後，汪鳳藻再次說明，李鴻章所指示對陸奧三條的回復，他擬等中國增兵抵達

¹¹⁴ 《總理衙門大臣卜小村臨時代理公使卜ノ對話筆記》，6月19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32頁；《發北洋大臣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18頁(1001)；《譯署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未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7頁。

¹¹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7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9頁(1003)。

朝鮮後，再與開談。¹¹⁶顯然，汪鳳藻試圖以他對局勢的認識，略變更總署和李鴻章已經擬定的複詞。

由於汪鳳藻加進了自己的考慮，以致期間產生了一個小插曲。小村來總署，稱接到本國外務來電，汪鳳藻並沒有前往告訴清政府旨意，要總署電詢。當時總署說，外務的三端告汪使徑達總署，總署也沒有接到汪鳳藻相關來電，也要日本查詢。¹¹⁷為此，李鴻章在回復汪鳳藻來電中，轉述了小村對總署的抱怨和總署的疑惑，頗為不滿，稱汪鳳藻既沒有將日本外務三端清楚地向總署電告，僅由日本公使及領事傳述，而總署與其本人原希望汪鳳藻“直截回復之詞”，且總署與其本人已經面答日方。對於汪鳳藻提出的變更建議，李鴻章則基本予以否定。關於要日本承認華屬問題，李鴻章指出，自乙酉與伊藤會議迄今，日本絕不肯認，徒說無益。至於會剿，李鴻章再次強調，韓賊將平，實無庸會剿，而且，日本作為一個別國用兵朝鮮內地，“向無此例”，豈可由中國代允？惟對於勸韓國自行整頓內治，彼此皆不干預一條，李鴻章認為“尚是正論”，令其酌量答之。李鴻章同時告知俄國調停的新進展，稱俄使過津，極願兩國撤兵。對於俄國的干涉充滿期待，命汪鳳藻“密探駐日俄使議論如何”。¹¹⁸

的確，李鴻章對陸奧三條，基本態度是“力拒”。他立即將這一立場告知在朝鮮的袁世和合駐朝軍隊。對袁世凱說，日索要的三端，總署和他均“力拒”。唯一一個原則是，依照原來的商議，中日同時撤兵。此外如有別項要求，認他多方恫喝，當拒理駁辨，“勿怖勿餒”。¹¹⁹向駐朝軍隊指示，無須“重兵會剿”，指出袁世凱之電“畏怯太甚”，為駐朝軍隊的進一步剿匪鼓勁。¹²⁰同時，也將清政府對日基本

¹¹⁶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8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9-20頁(1007)。

¹¹⁷ 《發北洋大臣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8-19頁(1002)。

¹¹⁸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8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0頁(1007)。

¹¹⁹ 《寄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8-49頁。

¹²⁰ 《複葉軍門》，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9頁。

立場知會朝鮮政府，希望朝鮮政府以統一的口徑答復日本。¹²¹

李鴻章對汪鳳藻四條的處理意見得到了總署的完全肯定，稱李鴻章答復“極是”。¹²² 在日本大量增兵，且提出新的外交條件的情況下，清政府依然堅持原有的方針政策，即剿匪以敦促日本撤兵。其一個非常重要的前提，是清政府認為此時日本不敢併吞朝鮮，“倭之不敢遽謀吞韓，亦人所共喻”。在此前提之下，日本的一切作為均不足以慮。比如藉口駐兵，儘管是一個必須面對的問題，但清政府認為日本的“駐與不駐，我均有前事可循，相時辦去，亦不慮無以應之”。前事當指壬午兵變和甲申事變及此後成功的撤兵交涉。既然沒有大的後顧之憂，希望日本撤兵，清政府認為問題的關鍵還在於剿匪。匪徒的存在，不僅是日本派兵和增兵的藉口，也是日本提出會剿的一個理由。當時，朝鮮政府由於畏日如虎，轉致剿賊正事於不計，非常惶惑。儘管聲稱賊匪已平，但清政府指出，“今首要一名不獲，餘匪去向不知，以擾及兩省之賊眾，一旦杳無蹤跡，誰實信之？”無論日本更有詞，斷不遽退。即使同撤之後，而賊焰復燃，又當如何？因此指出，為今之計，命袁世凱不必敦促日本退兵，“惟在催韓剿匪”，並飭葉，聶相機助剿。清政府認為，只要能將賊事辦有切實頭緒，使外人共見，彼時約倭同撤，當較順手。¹²³ 顯然，清政府至此尚未覺察，日本正在醞釀一場對華戰爭。對於任何新的建議，無論來自日本方面，抑或清政府內部，均不予考慮。

汪鳳藻在其所擬訂的四條建議，以及要求在中國增兵的背景下對日進行新一輪的會商要求，均遭到清政府尤其李鴻章的否決之後，與日本圍繞陸奧三條的交涉，就完全依據清政府的意見進行了。五月十八日(6月21日)，汪鳳藻完全遵照李鴻章電示，以相應三條回復日本外務：“一、韓亂告平，已不煩中國兵代剿。兩國會剿之說，自無庸議。二、善後辦法用意雖美，止可由朝鮮自行厘革，中國尚不干預其內政，日本素認朝鮮自主，尤無干預其內政之權。三、亂定撤兵，乙酉年

¹²¹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0頁(1008)。

¹²²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十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0頁(1010)。

¹²³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十九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0-21頁(1011)。

兩國所定條約具在，此時無可更議。”¹²⁴但他還是向總署重申了其原來的想法，認為對於陸奧三端，本不想迅速答復，“俟添兵抵韓後再複，應更有備”。同時說明，當初之所以沒有詳細介紹陸奧三端，是因為小村已先知照，所以只在電報中提及大意。¹²⁵可見，汪鳳藻是主張中國增派軍隊，在添兵抵達朝鮮後，再與日本就陸奧三端展開新一輪的撤兵交涉的。遵照李鴻章的電示回復，這並非其本意。

此時，小村也正催問答復，於十九日(6月22日)致函總署。在汪鳳藻面複日本外務後，總署回復說“貴國外務大臣所擬三端，汪大臣已向貴國外務署面複等語，相應函複貴署大臣查照可也。”¹²⁶這樣，圍繞陸奧三端，清政府完全表明了其立場。清政府斷然拒絕日本提出的陸奧三條，並非認為朝鮮內政無需改革，而旨在表明中國反對日本干預朝鮮內政。對於朝鮮自主的內政改革，清政府則完全積極支持，下文將有論及。

就在汪鳳藻提出照會大當天，日本內閣在首相官邸舉行臨時會議。次日十九日(二十二日)舉行御前會議，會議結果是，向中國提出拒絕書，同時，陸奧特命外務書記官加藤增雄赴韓京，傳達日本政府關於向朝鮮提出內政改革要求得機密訓令及政府的方針。加藤於當天立即從東京出發，次日抵達馬關，又接到陸奧補發大鳥的追加訓令。同時立即增兵。¹²⁷

五月十九日(6月22日)，¹²⁸陸奧致文汪鳳藻，稱：中國政府不同意日本會剿朝鮮變亂及辦理善後，日本政府“不能同見，甚以為憾”。並聲稱，日本的基本立場是“不能撤兵”，“斷不能撤”。同時，他為不撤兵找出了多種理由：“惟朝鮮朋黨相爭，內亂踵起，究其事變，必于全其自主之道有所闕如。我國于朝鮮利害關係尤重，終不能將該國慘狀付之膜視”。日本竟宣稱，朝鮮變亂的根源在於沒有完整的自主之權。又稱日本於朝鮮“利害關係尤重，終不能將該國慘狀付之膜視”，不

¹²⁴ 《清國公使ヨリ陸奧外務大臣宛》，6月22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34頁

¹²⁵ 《出使汪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1頁(1013)。

¹²⁶ 《總署致日本國公使小村壽太郎函》，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清季中日韓關係史料》卷6，第3321頁(1905)。

¹²⁷ 詳參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178-179頁。

¹²⁸ 一說五月十九日(6月22日)，《近代中國史事日誌》下，第867頁。

然，不但有背鄰交之誼，“亦背我國自衛之道”，竟將朝鮮內政問題與日本的“自衛”問題聯在一起，這實際透露日本對朝鮮的野心。因此，爲了保朝鮮“將來邦安而政得宜，竟不能撤兵”。它又聲稱，不撤兵於中日《天津條約》也不相違背：“我之不輕易撤兵，非止遵照天津約旨，亦善後預防之計”。至於究竟遵照中日《天津條約》的哪一款、哪一項，則並未明說。將不撤兵與“善後預防”聯繫在一起，正如當初訂立中日《天津條約》時一樣，其用意不在當前，而在將來，正暗示著日本隱懷著更大的野心。來文最後斷然聲稱，雖然日本政府所見與中國政府“相違”，但日本“斷不能撤現駐朝鮮之兵”。¹²⁹ 這是東學黨起義後，日本政府第一次亮出其立場，陸奧自稱是日本政府對於中國政府的“第一次絕交書”。¹³⁰

VI. “剿匪甚於防倭”策的棄去與“防倭方戟亟”策的提出

1. 日本增兵與清政府對李鴻章不增兵策的質疑

日本在提出第一次絕交書之後，立即繼續增兵，而大島在加藤到達之前，也以重兵爲後盾，口頭向朝鮮政府單獨提出改革內政的要求。爲此，清政府開始對李鴻章一直以來以外交交涉爲基調的政策，開始懷疑。

五月二十一日(6月24日)，中國駐仁川總兵林泰曾和袁世凱先後傳來日本增兵進入漢城的消息，軍隊人數達三千多人，馬兵一百五十名，同時運送眾多軍備物資。¹³¹ 爲此，林泰曾在飛虎船主和稅務司的建議之下，約同劉理事的翻譯官一道，前往拜訪日本駐仁川領事，探詢日軍乘夜入漢的緣由，試圖予以阻止。正如

¹²⁹ 《陸奧外務大臣ヨリ清国公使宛》，6月22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35-237頁；《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9頁；《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2頁(1020)。

¹³⁰ 陸奧宗光著 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18頁。

¹³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巳刻，《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0頁；《北洋大臣來電六》，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到，《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3(1022)、22(1018)頁。

飛虎船主和稅務司已經傳言的，日方將增兵的理由果然推給中國，說是聽說中國派兵六千，因此大島公使電調進漢。林告之此信不確，希望日本停止進兵，並將此種情形電稟日領事，以免生髮事端。但日軍依然進漢。李鴻章也證實，中國派兵六千“並無此事”。¹³² 次日，日本領事送信聲稱這次日本進兵六款，其中包括 ① 兵不聚漢城；② 恐仁水少發瘟，蔓延于各國商民；③ 此次進軍絕非有他意，故一半猶留在仁、全兩地。還聲稱如果兩國達成退兵之議，“當立刻退回”。對此，林泰曾不敢輕信。¹³³

袁世凱看到日軍大隊陸續來漢城後，深感局勢不易挽回。¹³⁴ 朝鮮政府對於日本的重兵加壓深懷憂慮，漢城危在旦夕，“惟望華救”，請袁世凱向李鴻章求救，“請派重兵”。¹³⁵

對於日本的增兵，李鴻章則總體上並沒有採取新的措施。除繼續實行清政府的原定方針之外，主要寄希望於剛剛著手的列強調停，詳參下文所論。同時，試圖繼續貫徹此前(十九日¹³⁶)清政府“先重辦匪”的旨意，積極籌備剿匪，儘管韓國政府在剿匪問題上頗為消極。當時清政府質問敗匪確切位置何在，李鴻章命葉志超彙報了亂黨的確切下落，以及剿匪的具體計畫。李鴻章具體辦法是，派聶士成繼續往全州西南一帶妥為辦理，以靖餘孽。當時又傳來日本“二千又將赴漢”的消息，對此，李鴻章明明看到“倭勢日張”，多端挑釁，但他還是“堅忍以待”。¹³⁷ 並命令葉志超遵守既定方針，他認定日本“斷不能無故開戰”，命令“切勿自我先挑釁”。¹³⁸ 當時駐朝軍隊因日本不斷增兵，有“請戰”的，有要求調回的，李鴻章均予訓斥，命令

¹³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0頁。

¹³³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1頁；《北洋大臣來電七》，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4頁(1030)。

¹³⁴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一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0-51頁。

¹³⁵ 《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4頁(1027)。

¹³⁶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十九日，《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0頁(1011)。

¹³⁷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3頁(1024)。

“靜守”。告知“現俄國出爲調處，或漸就範”。¹³⁹ 可見，李鴻章將主要希望寄託在各國的調停，尤其是俄國的調停之上。

二十二日(6月25日)後，袁世凱告知，不僅駐仁川的軍隊進漢城，日本還繼續增派三、四千人抵達仁川。¹⁴⁰ 駐日使臣汪鳳藻方面也傳來日本派兵的消息，且有傳言說日本擬禁止中國駐華使館收發電信。¹⁴¹

此時，清政府開始對李鴻章“不欲多派兵”前提之下的對日政策發出質疑。二十二日(6月25日)，清政府正式下達諭旨，稱：

現在日本以兵脅議，唆使朝鮮自主，朝鮮恆怯惶惑，受其愚弄。據現在情形看去，口舌爭辯已屬無濟於事。前李鴻章不欲多派兵隊，原慮聲自我開，難於收束。現倭已多兵赴漢，勢甚急迫。設脅議已成，權歸於彼，再圖挽救，更落後著。此時事機吃緊，應如何及時措置，李鴻章身應重任，熟悉倭韓情勢，著即妥籌辦法，迅速具奏。前派去剿匪之兵，現應如何調度移紮，以備緩急之處，並著詳酌辦理。俄使喀希呢留津商辦，究竟彼國有無助我收場之策，抑另有覬覦別謀，李鴻章當沈幾番察，勿致墜其術中，是爲至要。¹⁴²

可見，清政府已經看到，① 外交途徑希望渺茫：“據現在情形看去，口舌爭辯已屬無濟於事”。② 對於李鴻章的不派兵政策也表示懷疑。③ 李鴻章一直以來命令派駐朝鮮的中國軍隊遠離漢城，就地靜候，以免與日軍發生衝突。對此，清政府對於如何調度駐紮軍隊表示關注。④ 對於李鴻章正熱衷的請俄國駐華公使的調停，

¹³⁸ 《複葉軍門》，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1頁。

¹³⁹ 《複劉公島丁軍門》，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戌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1頁。

¹⁴⁰ 《北洋大臣來電五》，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4頁(1028)。

¹⁴¹ 《北洋大臣來電七》，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4頁(1030)。

¹⁴²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二十年五月二十二日，《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5頁(1032)。

清政府暫時持懷疑態度，要李鴻章“當沈幾番察，勿致墮其術中”。諭旨要求李鴻章“遵旨寄信前來”。

李鴻章接到諭旨後，曾一度提議切勸韓王立即改革內政，顯然與陸奧提出的三條有關。這一建議最初是由汪鳳藻提起的。

二十三日(6月26日)，汪鳳藻來電稱：

倭之干預，以韓不能自治為詞，查汰貪污，尤所注意。由我切勸韓王，立將內政清厘，則釜底抽薪，庶占先手。不獨倭釁可彌，實亦為韓至計，敢請鈞裁。¹⁴³

汪鳳藻將勸說韓國改革內政作為對日的“釜底抽薪”之術。對於這一策略，李鴻章儘管沒有汪鳳藻那麼樂觀，但馬上採納這一建議，立即致電袁世凱，“務隨時切勸”朝鮮，務必整理內政，除貪獎廉，恤民察吏，以便使日本“無可藉口”。¹⁴⁴

不過，這一新舉措的前景卻不容樂觀。由於朝鮮政治紊亂的根源在於諸閔氏保持朝政，改革的前提必須令諸閔告退，拔用有名望老臣。但苦勸之下，數日間“毫無動靜”。對此，袁世凱的態度可謂相當消極，他寄希望於李夏應出來主持，但“惜老無用”。袁世凱最後告誡，此等秘密，“乞密防泄生變”。¹⁴⁵ 由此可見，韓國改革內政，其實並非短期內可以付諸實施的簡單事宜，也進一步證明，日本提出的所謂改革內政案，正如陸奧所自稱的，純屬促成衝突的手段而已。李鴻章的設想，其實是不了了之了。

這樣，在新的對日政策出臺前，清政府既定的剿亂策，及李鴻章熱衷的請各國調停的政策，實際依然是這一時期李鴻章執行的重要政策。駐朝的葉志超奉命“追剿土匪，無庸兼顧防倭”，已派聶士成率軍赴全州一帶相機剿撫，並在受災嚴重的

¹⁴³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三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5頁(1033)。

¹⁴⁴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三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5頁(1033)。

¹⁴⁵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四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5頁(1034)。

地區“略爲賑”。而葉所督部隊仍駐牙山。¹⁴⁶

2. 大鳥逼迫朝鮮不認華屬及“防倭方亟”策的提出

然而，大鳥圭介卻在朝鮮步步緊逼，試圖以逼迫朝鮮不認華屬，以儘早尋找開戰的口實。由此促使清政府的對日政策發生重大轉向。

五月十九日(6月22日)，陸奧提出“第一次絕交書”後，立即舉行御前會議，並當天命加藤從東京出發，向大鳥傳達御前會議的訓令和日本政府的方針。二十四日(6月27日)，加藤抵達韓國，轉達御前會議的口訓和機密訓令，大意是，觀今日之形勢，戰爭已不可避免，然而應採取何種手段，做成開戰口實，又不負開戰責任，特遣加藤書記官前來傳達，並商談。同時訓令以勸告態度，與朝鮮政府嚴重談判，促其施行內政改革。大鳥等由於未充分瞭解陸奧的苦心，以爲如欲速戰，莫若先將宗藩關係問題逼迫朝鮮政府。如此，中國政府一定不能漠視，必能引起重大結果，較之利用內政改革問題，更爲簡捷而有把握。二十五日(6月28日)，一面將這一方針致電陸奧請示，一邊照會朝鮮外署，質問其是否承認爲中國屬邦，並限其於次日二十六日(6月29日)答復。¹⁴⁷ 大鳥的本意是，想利用清韓宗屬問題，摒除清朝影響，以貫徹改革韓政的目的。這是大鳥在接到陸奧改革朝鮮內政的訓令後，與其館員和武官自我選定的一個步驟。他們“深信朝鮮政府在清國牽制之下”，“有效之改革決不可望”。于謁見國王的當天，二十三日(6月26日)向陸奧提出。¹⁴⁸

大鳥脅迫宗屬問題，在朝鮮政府和清政府內部引起極大不安。二十五日(6月28日)夜，清政府接到了袁世凱連夜急電。電中不僅報告日本增兵進漢城的消息，而且指出，大鳥圭介詰問韓國政府，“韓系華保護屬邦否，限明日複”。傳說，日本備兵兩萬，如果承認是華屬，即“失和”。朝鮮政府驚恐難持，希望中國設法。¹⁴⁹

¹⁴⁶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二十四日到，《清光緒中日交涉史料》卷13，第26頁(1036)。

¹⁴⁷ 詳參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183-184頁。

¹⁴⁸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28頁。

次日，仁川關員探報得知，日本軍艦浪速、武藏護商船八隻，其中七隻裝兵，一隻裝煤，來兵共三千人，馬二百七十八匹，炮六尊。¹⁵⁰ 當時中國駐英國使臣龔照瑗方面傳來的消息，也大致印證了袁世凱的報告。¹⁵¹

對於日本的逼認朝鮮非華屬，李鴻章基本沒有改變其既定對策。他一面聲明中國對朝鮮問題的一貫立場：“逼韓不認華屬，斷不可從。”¹⁵² 稱“韓屬華已千餘年，各國兼知。即韓與各西國立約，亦經聲明”。要袁世凱務勸朝鮮國王“堅持”，同時還以武力相威脅：“如畏日，竟認非華屬，擅出文據，華必興師問罪”。¹⁵³ 然而，在具體對策上，他依然將所有希望寄託在俄國的調停。先是告知俄國的調停正在進行中，囑咐袁世凱“略忍耐，必有區處”，希望“諄切轉囑”朝鮮政府。¹⁵⁴ 在得知朝鮮的親日勢力積極活動，朝鮮國王立場動搖的情景，李鴻章所強調的還是俄國方面的調停。¹⁵⁵ 儘管他欲借俄議以“解韓王怯貳”的計畫，事實表明也希望渺茫。¹⁵⁶

當時，駐日使臣汪鳳藻對局勢的估計非常悲觀。儘管俄國的調停尚無結果，但他預計日本逼迫中國至此，“恐乏轉圜”，而開始向李鴻章和總署請示一旦失和撤

¹⁴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4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7頁(1039)。

¹⁵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5頁。

¹⁵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4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7頁(1040)。

¹⁵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4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7頁(1039)。

¹⁵³ 《由上海長崎海參威彈春至朝鮮交袁道》，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4頁。

¹⁵⁴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4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7頁(1039)。

¹⁵⁵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5頁。

¹⁵⁶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5頁；《複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六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5頁；《北洋大臣來電五》，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8頁(1046)。按：同一電標注時間有異。《交涉史料》中的排序似乎有些滯後。應其沒有標注具體的時刻，故似應以《電稿》時間為準。

使後，駐日各國商民身家財產的處置問題。¹⁵⁷ 袁世凱鑒於日本已有近萬人各處佈置，待與中國“尋釁”，而韓國也密結“不認華屬”，也要求“撤回”，以“免辱”。如果事情緊急，則擬先赴仁川等候指示。¹⁵⁸ 又因傳言大鳥擬照公法作梗例，兵押袁世凱出韓，袁世凱再次要求回國稟商，請兵伐韓。¹⁵⁹

然而，汪、袁的請示均遭李鴻章否決。李鴻章認為汪鳳藻的提議“似過急率”。¹⁶⁰ 而袁世凱的請示則因日本方面向俄國公使聲稱“如無他緣故，不先與中國開仗”，英國駐華公使歐格訥也顯示調停的意向，¹⁶¹ 韓國方面也還是“未認非華屬”，因此，要袁世凱“密勸堅持”，“堅貞勿怯退”。¹⁶² 袁世凱很快回心轉意。¹⁶³

儘管如此，宗屬問題卻引起了清政府足夠警覺，而將對日政策基調作了一個重要的調整，“防倭”問題提上議事日程。二十八日(7月1日)，清政府在接到李鴻章二十七、八日(6月30日、7月1日)的一系列電信後，深感“此時事機已迫”，¹⁶⁴ 指

¹⁵⁷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6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7頁(1042)。按：《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所載有兩處重要錯誤。首句“昨將袁道轉汪使，詢倭議若何。頃接宥電，頃訪倭使，適他往。來函訂明晨往談。”這裏的“詢倭議”和“訪倭使”中的“倭”，應均為“俄”。

¹⁵⁸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8頁(1044)。

¹⁵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7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9頁(1047)。

¹⁶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6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7頁(1042)。

¹⁶¹ 《張侍郎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亥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8頁。

¹⁶² 《寄漢城袁道》，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8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9頁(1049)。

¹⁶³ 《寄漢城袁道》，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8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9頁(1049)。

¹⁶⁴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9頁(1050)；《譯署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酉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

出，此次赴韓之軍，原為屬國定亂，現在情事已經不同，“防倭方亟”，軍隊遠處牙山轉似置之無用，對日政策發生實質性轉變。

在撤使問題上，因韓密結不認華屬究無實據，同意李鴻章的處理，認為韓密結不認華屬究無實據，袁道汪使不宜遽歸，致為口實。¹⁶⁵ 由李鴻章立即轉電汪鳳藻。¹⁶⁶ 但對於李鴻章一直以來對日兩大主要舉措，不增兵和借各國調停，再次予以質疑：“前經迭諭李鴻章酌量添調兵丁並妥籌理法，均未複奏。現在焰愈熾，朝鮮受其迫脅，勢甚岌岌。他國勸阻亦徒托之空言，將有決裂之勢”。進而指出，如果韓國“竟被逼攜貳，自不得不聲罪致討。彼時倭兵起而相抗，亦在意計之中。我戰守之兵及糧餉軍火，必須事事籌備有把握，方不致臨時諸形掣肘，貽誤事機。”¹⁶⁷ 不僅僅如此，清政府由於朝鮮對中國政府的立場出現動搖，做出了主動備戰的相當具體的指示：① 命李鴻章詳細籌畫新的對策，迅速複奏，以慰廬系。② 因南洋各海口均關緊要，臺灣孤懸海外，日本曾至番境，尤所垂涎，令李鴻章密電各督撫，不動聲色，豫為籌備，勿稍大意。¹⁶⁸ 備戰問題正式提出。不過，應該看到，清政府的備戰，完全出於防衛的目的。一旦日本在朝鮮問題上表現出緩和姿態，外交努力仍是其解決朝局的首選途徑。

陸奧宗光雖決心挑戰，但因顧慮外交上糾紛，此時仍主以內政改革問題為藉口，而利用外交上合法手段，以激起中日衝突。¹⁶⁹ 為此，對於大鳥脅迫宗屬問題的舉動，立即予以否決。五月二十五日(6月28日)，陸奧電複大鳥，指示取消“屬國二字，及撤退牙山之清兵兩事，因與現下之政略相背，故無論朝鮮政府聽從與

卷15，第59頁。

¹⁶⁵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9頁(1050)。《譯署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西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8頁。按：同日的《總理各國事務衙門擬發給李鴻章電信》(《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頁(1052))與(1050)條重複。

¹⁶⁶ 《複日本汪使》，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西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9頁。

¹⁶⁷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29頁(1051)。

¹⁶⁸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頁(1051)。

¹⁶⁹ 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183頁。

否，應俟加藤抵韓後立即提議內政改革問題”。¹⁷⁰ 這份訓電因電線阻隔，至二十七日(6月30日)才抵達漢城。此後，大鳥放棄中朝宗屬問題，而著手於內政改革的提議。借內政改革以達到軍事上速戰的目的。清政府既對日本決議挑釁的政策沒有充分瞭解，看到日本主動放棄宗屬問題，而放慢了備戰的步驟，決定以和為主，以戰為輔，作兩手準備。

二十九日(7月2日)，李鴻章回復總署的上諭，非常簡略：① 袁世凱續電，韓未不認華屬；② 袁世凱仍留漢城，並電汪鳳藻令少待；③ 駐朝軍隊或撤或移問題，由袁世凱與葉志超會商；④ 至於清政府諭旨中特別提到的備戰情況，李鴻章表示“籌辦大略，二十七辰已馳奏”。¹⁷¹ 李鴻章奏摺的具體內容是，“倭人乘機構釁，遽以重兵脅韓，儻至無可收場，必須預備戰備，請飭戶部先行籌備的餉二、三百萬兩，以備隨時指撥”。奏摺中又稱北洋鐵快各艦堪備海戰者，只有八艘。為此，清政府下令李鴻章詳細複奏，究竟海軍所練之兵多少，此外北洋分紮沿海防軍多少，及直隸綠營兵丁可備戰者多少。至於李鴻章所請籌備餉需銀兩，俟複奏到日，再降諭旨。¹⁷² 可見，李鴻章對於軍備，不能說信心十足，所關心的首先是軍費問題。對於李鴻章的軍費要求，清政府沒有立即給與回應，而等到可供作戰的軍隊情況的報告到達後，再予以回復。

當時，從袁世凱方面傳來了朝鮮親華勢力支持中國，“韓王亦漸漸轉意”的消息。中國駐朝軍隊的進剿狀況也有進展。¹⁷³ 與此同時，李鴻章積極爭取各國調停也有進展。¹⁷⁴

在此背景之下，清政府的立場有所轉變，從督促備戰，向備戰和商議兩手準

¹⁷⁰ 杉村浚：《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第28-29頁。

¹⁷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9-60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31頁(1055)。

¹⁷² 《軍機處寄北洋大臣李鴻章上諭》，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1頁(1058)。

¹⁷³ 《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頁(1054)。

¹⁷⁴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頁(1053)。

備轉變。清政府認為，韓不答非屬，尚不至於決裂。當時，英國駐華公使連日到總署來，稱其外部來電，囑令從中調停，免致啟釁。詢問中國如願將整理朝鮮內政，同保該國土地，勿令他人佔據兩節，彼此和商，其即電複外部，令駐英使便日商辦。各國亦可責備日本，促其撤兵。清政府認為，此事如能善了，自較用兵易於收束。但有一個前提，就是中國本意原欲保全朝鮮，但必須無礙中國體制權力，盡可相商。只是辦法有無窒礙，須俟屆時斟酌，如果事不能行，仍可罷議，此與籌備兩無關礙。也就是說，清政府的總體方針是，商議與備戰兩無關礙。¹⁷⁵同時，下令福建、臺灣巡撫劉銘傳“即來京陛見”。¹⁷⁶

VII. 借列強調停和與小村“會商”

1. 請俄、英調停

列強在中國派兵朝鮮之事一開始就予以關注，但清政府起初並不希望列強干涉，“派兵助剿乃上國保護屬邦老例，俟事竣華兵即撤回”，外國“不必過問”。¹⁷⁷

最早試圖請列強出面調停的，是在朝鮮的袁世凱，調停的主要內容是請各國阻止日本派兵。¹⁷⁸這大概是清政府最早提出請各國調停的，但並非由中國出面，而由朝方出面，清政府只表示關注。¹⁷⁹但各國最初的干預，可謂成效不著。¹⁸⁰當

¹⁷⁵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1頁(1057)；《譯署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戌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60頁。

¹⁷⁶ 《廬州電局專送六安交前臺撫劉》，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60頁。

¹⁷⁷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四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9頁(959)。

¹⁷⁸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5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五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0頁(962)。

¹⁷⁹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68)。

¹⁸⁰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七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7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五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

時，對於日本大規模派兵，各國是持否定態度的。¹⁸¹ 但各國駐朝公使對於日本日益兇悍的作為，可謂無可奈何。¹⁸²

清政府中最積極經營於此者是李鴻章，時間大概在袁世凱與大鳥的撤兵交涉陷入僵局，日本提出所謂陸奧三條並大量增兵，露骨地“留兵挾議”之時。五月十五日(6月18日)，英國駐華公使和俄國駐華公使路過天津，李鴻章請他們出面調停，他們均同意通過本國駐日公使與勸日本與中國約期同時撤兵。對此，李鴻章充滿期待，“倭忌英，不若畏俄，有此夾攻，或易就範”。¹⁸³

不過，總署認為，想請各國調處，“似於中屬體制有損”。而事實上，當時英國的態度不甚積極，十六日(6月19日)，歐格訥來總署談時，明言“未便照辦”。¹⁸⁴ 至多不過表示“但雲照電外務”。¹⁸⁵ 表示積極態度的，首先是俄國方面，尤其是其駐華公使喀西尼(A. p. Cassini)，清政府方面則主要是李鴻章出面為之。

在俄國調停中，實心實意調停的是，主要是喀西尼。駐日俄使希德洛夫出於種種顧慮，一開始就對於喀使出面調停的主張並不熱心，加上受到日本一二再，再而三所謂“日本政府除希望確立朝鮮之獨立及和平外，絕無他意”，¹⁸⁶ “日本對韓並無侵略野心”、待朝鮮國內形勢完全回復平穩時“自當撤退目下朝鮮境內所有日本軍隊”¹⁸⁷的種種保證，似受其矇騙，基本不贊成干涉。這一立場影響了俄國外部，

13頁(975)。

¹⁸¹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36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五月初六日亥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1頁(969)。

¹⁸²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5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五月十五日亥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7-18頁(998)。

¹⁸³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7頁；《北洋大臣來電三》，《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9頁(1005)；《直隸李鴻章致樞垣袁電日兵駐仁川租借英俄兩使來晤托其勸日撤兵電》，《清季外交史料》卷91，第10頁。

¹⁸⁴ 《發北洋大臣電一》，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18頁(1001)。

¹⁸⁵ 《寄朝鮮袁道》，光緒二十年五月十七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47-48頁。

¹⁸⁶ 陸奧宗光著、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第28-29頁。

使干涉態度由積極而轉消極。而日本政府在表面上接受英國政府的調停，決定派小村壽太郎前來與總署“會商”前夕，五月二十八日(7月1日)，委婉而明確地拒絕了俄國的調停。¹⁸⁸ 此後，俄國漸漸由調停第一線逐漸退居二線，由英國取而代之，佔據調停的主導地位。¹⁸⁹ 與此相應，總署也漸漸開始接受調停這一途徑。

如上所述，總署最初對於請各國調停頗有疑慮。五月二十七日(6月30日)，英國駐華公使歐格訥再度向總署頻頻表示調處之意，提出如果中國有意，還可勸日本駐華公使小村電請政府前來商議，仍被總署婉卻。¹⁹⁰ 但隨著大島在朝鮮就宗屬問題自行收場，對華態度日趨穩定，加上英國繼續積極表示調停之意，而其調停的方案尚可考慮，在俄國調停日顯局促時，清政府開始接受調停這一途徑。二十八日(7月1日)，李鴻章向總署提議，請英國調停，“或添一調處亦宜”。¹⁹¹ 二十九日(7月2日)，清政府致電李鴻章，稱“此事如能善了，自較用兵易於收束”。而接受調停的前提是，必須無礙中國體制權力，盡可相商。只是辦法有無窒礙，須俟屆時斟酌。如果事不能行，仍可罷議。此後，總署基本上做兩手準備，一方面積極促成調停，另一方面仍在“籌備”不測。¹⁹²

與俄國不同，英國方面表示積極姿態的，不僅僅是駐華公使。英國外交部來電，要其駐華公使“從中調停，免致啟釁”。英國提出的最初的調停方案是，中國如願就整理朝鮮內政，同保該國土地勿令他人佔據這兩點進行和商，他就立即電複本國外部，令駐日英國代理公使巴健特(Ralphs Paget)向日本政府提議，催令

¹⁸⁷ 田保橋潔：《近代日支關係之研究》，京城帝國大學研究冊，昭和5年，第202-203頁，轉自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203頁。

¹⁸⁸ 田保橋潔：《近代日支關係之研究》，第202-203頁，轉自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203頁。

¹⁸⁹ 關於李鴻章請求俄國調停，詳參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199-206頁。

¹⁹⁰ 《張侍郎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七日亥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8頁。

¹⁹¹ 《復張侍郎》，光緒二十年五月二十八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58頁。

¹⁹²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頁(1057)；《譯署來電》，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戌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61頁。

撤兵。

這一方案立即遭到李鴻章的否定，稱其“調停語似含混”。而據最新日本照會汪鳳藻之文，日本所謂的整理朝鮮內政，具體而言三條，一查核度支，一淘汰京官並地方官吏，一使朝鮮政府設置所需兵備，以保國。這與日本駐華公使及領事譯述者“大異”，不僅朝鮮方面根本“不願”，中國也辦不到。“所謂整理內政，與英待埃及形似”。因此，整理內政一條，不能“遽允”。至於同保該國土地勿令他人佔據一條，李鴻章指出俄國已經答應寫入會議款內。李鴻章連日與俄國公使商議的，只允許會議，勸令朝鮮自行整理，未便預定條款。李鴻章建議總署再與歐切實言之，如果依照日本照會汪鳳藻的三事，“斷難商辦”。¹⁹³ 李鴻章曾提議，懲患英國以重兵壓韓商請派艦隊赴日本，責令其退兵。¹⁹⁴ 但立即遭到歐格納的拒絕，也被總署認為不妥當。¹⁹⁵

不過，英國的調停，較俄國進展明顯。巴健特代理公使接電後，前往會晤陸奧，稱中國政府在不涉及中朝宗屬問題的前提下，不拒絕會談。陸奧最初回避不答，後經巴使數次會議，陸奧開始答應，電告駐華臨時代理公使小村壽太郎，在日本“力求不論及朝鮮獨立之事，清國政府亦不克對於宗屬關係發言”的前提下，就撤兵、朝鮮內政改革等問題進行商議。¹⁹⁶ 這就是小村與總署的會商。

2. 與小村“會商”

與日本駐華公使小村的會談，就是在英國調停的背景之下，小村主動前來提議的。這是由清政府出面與日本進行的最後“會商”。

¹⁹³ 《寄譯署》，光緒二十年五月二十九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5，第61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六月初一日醜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頁(1059)。

¹⁹⁴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六月，《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0頁(1053)。

¹⁹⁵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3，第31頁(1057)。

¹⁹⁶ 田保橋潔：《近代日支鮮關係之研究》，第213頁，轉自王信忠：《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第208頁。

六月初一日(7月3日)，小村主動來到總署，談及韓事，表示甚願兩國相商，不欲他國干預，以免日後牽制。小村的這次前來，與英國的周旋有相當關係。次日，歐使來言，英外部已電駐倭公使，商允倭外部與我和商，一開議，先商撤兵。當時傳聞小村已接其外務電，予以商議之權，日內必能開談。但清政府對此有顧慮。其一，對於與小村開談是否可行，清政府沒有把握。其二，當時，李鴻章與喀使已有三國會議之說，但從小村所言中，既然日本不願他國干預，想必是日本並未應允。如此，則三國會議之說，恐靠不住。但現在若與日本開議，又擔心俄國有異言。¹⁹⁷

總署聽說小村擁有商議之權之說，其實並不盡然。初五日(7月7日)下午，小村前來。會談一開始，小村就稱，其所以前來，是因為英國公使傳話，希望中、日共同商談朝鮮事件。又稱前一天接到外務電，來詢問總署的意向，由他致電北國政府，再將具體辦法複商，並在一、二天內送復信。小村只負責通信，並無商議之權。¹⁹⁸ 總署感到英國公使歐的傳話並不準確。但如何回復小村的措辭，總署向李鴻章徵詢意見。¹⁹⁹

初六日(7月8日)辰刻，李鴻章複電，提出了幾點建議：①首先根據中日《天津條約》的具體規定，以及中日在朝鮮問題上的具體措置，辨明日本當時所為，事實上是違約而不是遵約，而中國則完全依照中日《天津條約》的旨意辦事。將此是非辨別清楚。②若是辦理善後事宜，只可和衷協商，力勸朝鮮酌辦，豈能以重兵脅迫。表面上聲稱是為朝鮮自主，天下萬國待自主國哪有如此作為的。同時，李鴻章告知，俄國政府連日致電駐俄公使，“語氣甚緊”。²⁰⁰

與此同時，俄國正積極希望列入三國會議中。初六日(8日)，俄國向總署表

¹⁹⁷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初二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頁(1062)；《譯署來電》，光緒二十年六月初二日亥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3頁。

¹⁹⁸ 《總署王大臣卜面談ノ概略》，7月7日，《日本》第27卷第2冊，第255-256頁。

¹⁹⁹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初五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0頁(1093)；《譯署來電》，光緒二十年六月初五日亥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8頁。

²⁰⁰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8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2頁(1099)。

示，想聲明此前條約，表明“永不占朝鮮土地”。喀使已請列入三國會議。但俄國還未與日本提出這一想法。總署認為，日本目前的所作所為，本出於忌恨俄國。現在若俄國聲明不佔領土地，想必也是日本所願意聽，就此徵詢李鴻章對此事的看法。²⁰¹ 李鴻章立即複電，認為可以將俄不占朝鮮土地之意略告小村。同時訂正了總署的一個推斷，指出日本此番動作，實由該國自由黨眾橫議生事，當軸俯徇，非起於忌俄。²⁰²

不過，喀使的提議其實只是表明其個人立場。初七日(7月9日)，由於俄國政府指示俄國在中日朝鮮問題上保持必要的節制，因此，喀使很快表示，將來中日會議，他“亦毋庸干預”。對此，李鴻章倒並不感覺失望，反倒感到更為順手。指出英、日本不願俄會議韓事，總署正可與小村商議辦法，無虞牽制。²⁰³

六月初七日(7月9日)，總署與小村進行了一次詳細的會談。

會談中，儘管雙方均顯示了會商的意願，但有一個根本的區別，清政府要求先撤兵，後商議，盡力在中日《天津條約》的前提下展開會談，要求“兩國按約同時撤兵”。而日本則不提條約問題，要求先商議，後撤兵，將改革朝鮮內政問題與撤兵同時商辦，所謂“俟朝鮮事辦有頭緒，然後能撤”。小村反復要求總署“須先說出將來朝鮮作何辦法”，再談撤兵。引誘說“若能先說出辦法，我便可即時電達政府作速撤兵”。甚至要求總署“將大意寫出，以便照電本國”。被總署拒絕。總署堅稱“總要訂明撤兵日期，待兵退盡，再議別事”。最後，小村“唯唯遂去”。

其實是否依約撤兵，並非日本本意所在。為此，在具體問題的理解上，均出現重大的偏差。如就剿匪問題而言，中國認為匪已平，而日本則認為朝鮮“尚有賊匪，不能便算平安”。中國當初派兵的主要目的是為了剿匪，日本派兵也借用剿匪

²⁰¹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2頁(1097)；《譯署來電》，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已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9頁。

²⁰²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已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9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3頁(1104)。

²⁰³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七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2頁；《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2頁(1110)。

護館之名。如今，賊匪已平與否，卻已經不是日本所關心的問題。²⁰⁴

會商的情況表明，日本之所以此時表現出願意與中國會商的姿態，主要原因是因為顧忌各國干預。會談中，小村毫不掩飾其對各國插手尤其俄國參與的抵觸情緒，不斷追問中國請俄國調停一事是否實有其事。當聽說俄國有三國會談之說時，小村當即聲稱“絕不答應”，甚至表示，“就為此事打仗，我們也不怕他”。清政府也正是看到了這一點，次日，在致李鴻章的電中稱：“昨小村來署，告以頓兵非約，鄰將尤效，西亦蜂起，亟先同撤，並先訂期宣佈，再商韓事。彼允轉達，且待回信。三國會談之說，英倭深忌。昨不駁撤兵轉圜，似由於此”。²⁰⁵顯然，俄國的干預，是促使日本積極進行會商的一個非常重要的因素，而初七日(7月9日)喀使剛剛來表示，基於俄國政府的立場，將來他將不“干預”中日會議，已如上所述。為此，在這份電報中，總署特別提醒李鴻章，“來電俄不干預，祈勿宣露”。²⁰⁶

對這次會商，清政府可謂寄予期望。當時日本正緊鑼密鼓地與韓方會談改革內政問題，步步進逼，促使朝鮮方面頻頻告急。會談次日，初八日(7月10日)，總署致電李鴻章，令其“即電袁告韓以堅忍靜待，毋惑烏言，致貽後悔”。²⁰⁷當天，李鴻章將總署來電原原本本轉致袁世凱。²⁰⁸並電告駐朝軍隊，總署現正與日使議商，我軍應暫靜守勿動。對於日軍的挑釁舉動，切戒勿與計較。²⁰⁹六月初十日(7月12日)，駐朝中國軍隊要求增兵。鑒於日本在韓國日益猖獗，韓急望救援，各國調處卒無成議，提出了上、中、下三策，上策要求中國增兵，擇要扼紮，若至

²⁰⁴ 《軍機處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日使問答片》，光緒二十年六月初九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8頁(1122)；《朝鮮事件ニ関シ総署王大臣卜面談概略》，7月9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57-259頁。

²⁰⁵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4頁(1108)。

²⁰⁶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4頁(1108)。

²⁰⁷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4頁(1108)。

²⁰⁸ 《寄朝鮮袁道》，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3頁。

²⁰⁹ 《寄朝鮮成歡交葉提督聶鎮》，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亥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4頁。

決裂，免至進兵無路。中策主動先撤兵，並依據中日《天津條約》知照各國，令日本同撤，如果日本不依，待秋初再圖大舉。至於目前守此不動，徒見韓人受困於日，絕望於我，且軍士既無戰事，久役露處，暑雨受病，言下之意為下策。李鴻章認為總署現正與日商，未便遽添大軍，致生疑阻，上策似須緩辦。至於中策，此前袁世凱曾經提起，而軍士露處受病，亦系實情，請問總署可否照辦？²¹⁰ 李鴻章傾向於中國現行撤兵，對此，他雖曾顧慮是否“示弱”，但此時似連這點顧慮都完全沒有了。總署與小村的議商，至少成為李鴻章暫時按兵不動的理由。

六月初十日(7月12日)，小村還稱“據稱候政府核複”。²¹¹ 但龔照瑗與俄國公使喀西尼的會晤，指明日本所謂的“肯和商，似非真意”。²¹² 李鴻章將此電轉告總署，但沒有發表意見。²¹³ 其實，在給龔照瑗的回電中，明確表示，日本政府命小村與總署會商，至今沒有成議，“恐是緩兵計”。²¹⁴

十一日(7月13日)，在回復龔使電的次日，從汪鳳藻處傳來日本因各國出勸，已經定議撤兵和商。汪鳳藻的消息得自一位元密探。²¹⁵ 對此，李鴻章將信將疑，進一步追問汪鳳藻，稱日本逼迫朝鮮改革內政，“似無撤兵意”，究竟如何“定議”，希望“確示”。²¹⁶ 十二日(7月14日)，汪鳳藻回復，稱密探所稱“似確”。但同時卻得到長崎方面來電，稱尚有糧械出口，與密報“兩歧”。更有甚者，有傳言稱，總署與小村“所議商”，小村並無電至。進而追問“署議雲何，乞詳示”。²¹⁷

²¹⁰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6頁；《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20頁(1125)。

²¹¹ 《複日本汪使》，光緒二十年六月十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6頁。

²¹²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6頁。

²¹³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20頁(1126)。

²¹⁴ 《複倫敦龔使》，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7頁。

²¹⁵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十一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7頁；《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六月十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25頁(1136)。

²¹⁶ 《複日本汪使》，光緒二十年六月十二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7頁。

正在清政府作種種揣測之際，十二日(7月14日)，小村將日本政府的處理意見正式照會中國。照會將調停失敗的責任，歸咎於中國，稱嗣後因此即有不測之變，我政府不任其責。²¹⁸ 當天，清政府致電李鴻章，轉告日本照會的情況，稱：

初七與小村先撤兵再商韓事，小村允電本國。頃據照會，接複電謂，中國仍主撤兵之言，而不依更正內治之意，是無意思事。嗣後即有不測之變，政府不任其責等語。詞意甚為決絕，似無轉圜之機。本日已有廷寄，命決進兵之策。戰事宜慎，必須謀出完全。希將如何分別先後次第佈置之處，先行電複文。

由於日本“詞意甚為決絕，似無轉圜之機”。²¹⁹ 日本發出的這份照會，史稱“第二次絕交書”。對於中日“會商”的失敗，陸奧十分高興，認為“該仲裁之失敗，令我國在將來之行動上，漸得自由，寧為可喜”。²²⁰

小村的主動前來會商，是英國調停的一個環節，因此，在小村與總署會商期間，各國尤其英國，並沒有停止其調停的步伐。

當時，從中國駐英使館頻頻傳來英國積極調停的消息。六月初五日(7月7日)，馬格裏向龔照燮分析，英、俄如此積極調停，是因為商務、界務有關。²²¹ 馬格裏又密函稱，英國已經寄“結實之電”，力勸日本與中國和商，否則，俄國將請各大

²¹⁷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十二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8頁；《北洋大臣來電四》，光緒二十年六月十二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26-27頁(1142)。

²¹⁸ 《小村臨時代理公使ヨリ總理衙門宛照會》，7月14日，《日本外交文書》第27卷第2冊，第260頁。《日本公使小村壽太郎照會》，光緒二十年六月十二日，《清季中日韓交涉史料》第6卷，第3330頁；《日本使臣小村照會》，附件一，光緒二十年六月十三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32頁(1155)。

²¹⁹ 《發北洋大臣電》，光緒二十年六月十二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26頁(1138)；《譯署來電》，光緒二十年六月十二日亥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9頁。

²²⁰ 《蹇蹇錄》，第42頁。

²²¹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六月初五日夜醜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7頁(1089)。

國“與聞”。²²² 初七日(7月9日)，馬格裏還稱，英國政府向日本稱，一定不能請中國放棄上邦之權，並催其迅速和結。²²³ 當時，上海西報登載初四日(6日)倫敦來電，外部對下議院宣稱，中日事現經本國朝廷發書力勸，兩國保泰為主。經此竭力解勸，想可仍歸和好。李鴻章將此消息電告總署。²²⁴

在英國表現出積極調停的同時，六月初三日(7月5日)，法國也表示頗願意調停。²²⁵ 對此李鴻章頗感興趣，並詢問其詳。²²⁶ 奧使也以私意來勸，稱中日失和正好對俄國有利，應稍遷就，不宜開釁，請先撤兵再商善後以定戰守。²²⁷ 李鴻章還積極爭取德、美等國的支援。他電示駐俄公使許景澄，令其與德國外交部相商，出面致電“力勸”日本。²²⁸ 初十日(7月12日)，李鴻章又電示駐美公使楊樞，希望美國政府電囑其駐日公使，出面力勸共保和局。²²⁹ 美國政府立即表示同意，勸日本早退兵，勿干預韓政。²³⁰ 經過李鴻章積極促進，在小村調停期間，英、俄、法、美、德均致電各國駐日公使，力勸日本撤兵。²³¹ 此時，李鴻章可謂充滿期待，稱如果英國能聯合法、俄“嚴催”日本先迅速撤兵，再商議善後，則“無事”。²³²

²²² 《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六月初五日夜醜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9頁(1089)。

²²³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七日，《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0頁；《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六月初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3頁(1106)。

²²⁴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9頁；《北洋大臣來電一》，光緒二十年六月初六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12頁(1098)。

²²⁵ 《龔使來電》，光緒二十年六月初三日申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4頁。

²²⁶ 《複巴黎龔使》，光緒二十年六月初三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4頁。

²²⁷ 《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六月初四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7頁(1079)。

²²⁸ 《寄彼得堡許使》，光緒二十年六月初八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2頁。

²²⁹ 《複華盛頓楊使》，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卯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5頁。

²³⁰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辰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5頁。

²³¹ 《寄譯署》，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6頁。

²³² 《複倫敦龔使》，光緒二十年六月初十日酉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7

然而，英國約同各國撤兵至六月初十日(7月12日)仍無消息。²³³ 駐日使臣汪鳳藻一度通過密探得知，在各國調停的壓力之下，日本已經定議撤兵和商。李鴻章頗為相信，將這一消息轉告駐英公使龔照瑗。但事實表明，汪鳳藻密探所報告的消息並不準確。十二日(7月14日)，小村將日本政府的處理意見正式照會中國，表明總署與小村的會商正式失敗，已如上所述。小村所轉達的照會中，對於各國的調停竟然說，近聞駐京英國大臣顧念睦誼，甚願日清兩國言歸於好，出力調停，但由於中國政府“好事”，“有意滋事”，終歸無用。嗣後有不測之變，我政府不任其責。同時，袁世凱方面傳來日本運送軍備的消息。²³⁴

VIII. 最後的調停與日本率先開戰

在與小村會商失敗後，列強的調停卻並未因此停止。最後的調停仍以英國為主。調停首先圍繞小村致總署的照會展開。

總署在收到日本照會後二天，六月十四日(7月16日)，與英國使臣歐格訥會晤，圍繞小村照會開始會談。總署指出，日本違約妄行，處處皆不按理，滋事好事，曲皆在彼，卻反而倒戈相擊，對此總署深表不滿。歐格訥卻認為其中有誤會，“或系小村聽錯亦未可知”，並稱，現在情事緊急，如果中國能夠答應，願意保護朝鮮整理內政，各國仍可向日本說明，催其撤兵。對於日本的這一照會，歐格訥也認為其語詞過當，需要前往問明，但認為從照會看來，日本“並無不願和商之意”。會談中還提到俄國在圖們江駐兵的事。²³⁵

十五日(7月17日)，歐格訥自稱對小村的照會作初步瞭解後，又與總署會商。認為根據譯出英文，只說“貴國不允辦法，並無滋事好事之義”，並稱，“此事我政府總要調處妥協，今晚或明早必有電來”。²³⁶ 可以說，英國對於這份日本照會，頗

頁。

²³³ 《北洋大臣來電三》，光緒二十年六月十一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25頁(1135)。

²³⁴ 《袁道來電》，光緒二十年六月，《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10頁。

²³⁵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附件一，《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二十年六月十五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36頁(1168)。

有庇護之意。也意味著，英國還沒有放棄其調停的決心。

俄國方面，儘管日本明確拒絕其所主持的調停，但並未完全就此作罷。在略作沉寂之後，又與它一度反對的英國聯手，參與最後的調停。俄國再度參加到調停中來，大概是在二十日(7月22日)以後。二十二日(7月24日)，鑒於情勢，俄國決定同意參與跟英國一同調停，令日本退兵。²³⁷

二十三日(7月25日)，歐格訥告訴總署，已接喀使電，願協同商令日本退兵再議，並告知，德、法、義三國均願參與，認為合五國加力責之，使從公論。²³⁸

然而，英國實際進行的調停工作，不再是敦促日本撤兵，而轉而提出一個新的建議，中日兩國在朝鮮“劃區佔領”。調停日本軍隊在朝鮮的駐紮地點，要日本退出漢城，在朝鮮選擇一個地方駐紮。²³⁹但直至二十日，尚無回信。²⁴⁰二十四日(7月26日)，李鴻章接受各國關於中日在朝鮮退兵方案，認為日退金山，我退平壤，似尚公允。²⁴¹

然而，就在二十三日(7月25日)，日兵在牙山率先向中國軍隊開炮。此時，歐格訥在與總署會談，稱“現在英、俄之外又約德、法、義三國同辦此事，合力逼著日本講理，諒亦不敢不從。”²⁴²李鴻章還在向駐日使臣汪鳳藻追問英、俄與法、德、意合力令日退兵的結果，“未知何如”。²⁴³

²³⁶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附件一，《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4，第41頁(1173)。

²³⁷ 《北洋大臣來電》，光緒二十年六月二十二日亥刻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18頁(1219)。

²³⁸ 《譯署來電》，光緒二十年六月二十三日亥刻到，《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30頁。

²³⁹ 《北洋大臣來電一》，《北洋大臣來電二》，光緒二十年六月十七日到，《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4頁(1178)、(1179)。

²⁴⁰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附件一，《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二十年六月二十一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16頁(1217)。

²⁴¹ 《複譯署》，光緒二十年六月二十四日午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31頁。

²⁴²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附件一，《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二十年六月二十四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22頁(1230)。

²⁴³ 《致日本汪使》，光緒二十年六月二十四日申刻，《李文忠公全書·電稿》卷16，第32頁。

二十四日(7月26日)，章京舒文等與歐格訥會談，告之日兵二十一日(7月23日)包圍韓宮拘捕韓王等事，中國擬以中日已經失和佈告各國。但因英國久有調處之意，故特來相告。歐格訥稱尚沒有聽說日兵拘捕韓王之說，中國若立即照會各國，未免可惜。他認為，“可稍緩數日”，與各國商請華兵退平壤，日本兵退至釜山，日本如不聽，各國均不能答應。²⁴⁴

直到二十五日(7月27日)，歐格訥來總署會談，告知英國船高升號租裝中國兵往韓，在牙山口外被日本開炮擊沉。中國二隻炮船曾與開仗，一被拿去，一駛回威海衛。現在中日已經失和。目前所說商勸各節正好攔開。²⁴⁵

二十八日(7月30日)，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決定向各國宣佈日本率先開戰。²⁴⁶

IX. 小結

縱觀這一時期清政府的對日交涉，可以得出以下幾點結論：①東學黨起義後，中國應朝鮮政府之請派兵後，完全依照中日《天津條約》處理對日關係；②在日本派兵，尤其不斷增兵的情況下，清政府對日政策始終圍繞“撤兵”展開交涉，所遵照的依然是中日《天津條約》。當日本不同時期提出不同理由和條件時，清政府盡可能不斷調整與讓步。撤兵政策的內容，在不同時期也有新的變化；③清政府對日政策由撤兵交涉到“防倭方亟”的轉變，是在日本提出第一次絕交書之後。但為了避免戰爭，清政府仍試圖通過外交途徑解決危機，將主要希望寄託在各國調停。(4) 日本在各國調停之下，不得不派其駐華公使小村壽太郎主動前來與總署會談，然而，這其實完全是一種敷衍國際社會的姿態。日本最後突然對中國軍隊進行襲

²⁴⁴ 《章京舒文等與英使歐格訥問答》，附件一，《軍機處奏錄呈章京舒文等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二十年六月二十五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24頁(1234)。

²⁴⁵ 《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附件一，《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與英使歐格訥問答片》，光緒二十年六月二十七日，《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33頁(1261)。

²⁴⁶ 《總理各國事務衙門致各國公使照會片》，附件一，《軍機處奏錄呈總理各國事務衙門致各國照會片》，《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15，第34頁(1262)。

擊，也證明了這一點。總之，中日甲午戰爭可以說是日本精心策劃與挑起的一場戰爭。



| 참고문헌 |

〈相關著作〉

1. 中文著作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王信忠著 北平 國立清華大學 1937年4月初版 有表(國立清華大學研究院畢業論文叢刊之二)

臺北 文海出版社 1964年1月 影印本

臺北 文海出版社 1987年3月 影印本

上海：上海書店 1996年

論述朝鮮問題的發端、壬午事變、甲申事變、東學黨之亂及中日出兵、日本隊朝鮮策略的演變、李鴻章求和活動、中日宣戰等。書前有著者序；末附“參考書目”、“日誌”及條約附錄。

六十年來中國與日本

王芸生著 北京三聯書店 1979～1980年

北京 三聯書店 2005年

本書分三卷：第一卷敘述1871年中日締結《修好條規》到甲午戰爭前的中日關係；第二卷敘述1894年甲午中日戰爭至1895年煙臺互換《馬關條約》的中日關係；第三卷敘述馬關條約簽訂後俄德法三國之干涉，至美國宣佈“門戶開放”政策的中日關係。

甲午中日戰爭外交史

孫克復編著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89年10月

內分戰前交涉、國際調停、廣島議和、馬關談判、締結和約、三國干涉、交割臺灣及歸還遼東等章，闡述甲午戰爭前後的清廷對外關係。

甲午戰爭史

戚其章著 北京 人民出版社 1990年9月出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年7月

本書從戰爭爆發並不是偶然的歷史背景開始，記述了豐島海戰、平壤之戰、黃海之戰、遼東各戰、威海之戰的全過程，對歷時八個月的戰爭，分階段做了分析，並對馬關條約的簽訂及戰後影響亦有詳述，其中引用了許多史料，為研究者提供了有價值的資料。

甲午戰爭國際關係史

戚其章著 北京 人民出版社 1994年1月

內分五章：內容包括日本蓄謀發動侵略戰爭與挑起戰端的外交策略、清政府乞保和局與列強調停、戰爭爆發後的國際外交、清政府加緊乞和與美國居間及馬關議和前後的國際關係。書前有著者前言。末附《重要西方人名中外文對照表》、《甲午戰爭國際關係記事》。

走進甲午

戚其章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6年

本書旨在總結作者幾十年的甲午戰爭研究心得，體例上沒有面面俱到，而是以章節體形式，將有關甲午戰爭研究中的學術問題納入到各章節之中。主要篇幅介紹各大戰役。

2. 日文著作

近代日支鮮關係之研究

田保橋潔著 京城帝國大學研究冊 昭和五年四月出版 非賣品。

本書系朝鮮京城帝國大學田保橋潔教授的研究之作，關於日本方面材料搜集甚豐，只是中文方面材料則甚少，僅《李鴻章全集》及《中東戰紀本末》等二、三部而已。敘述範圍自金樸事件起，至中日宣戰止。文中引用整篇原始材料極多，以大島與陸奧之間往返函件最多，大都采自日本外務省政務局所輯《日清韓交涉事件記事》。近於史料式的歷史，立論公正持平，甚少國家

成見，堪稱佳作。

甲午戰前日本挑戰史

田保橋潔著 王仲廉譯 上海 南京書店 1932年

內分七章，介紹明治十八年《天津條約》締結至明治二十七年日華開戰前的情況。

包括：《天津條約》後之日鮮關係、朝鮮國內政改革問題、朝鮮國政府改造、列強干涉及中日開戰。本書原名《天津條約以後中日開戰以前近代日華鮮關係之研究》。

大鳥圭介伝

山崎有信：東京：東京博文館，1915年

書中“大鳥公使與日清談判”一章等均頗有參考價值。

日清戰爭

(日)藤村道生著 米慶餘譯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1981年3月出版

本書系著者多年研究甲午戰爭的成果。書中對日本資本主義的發展、帝國主義的形成作了較為客觀的分析，特別是在戰爭的起因和責任問題上，揭示出日本的目的是在於取得朝鮮的統治權，並於1882年起便開始了對華發動戰爭的準備；對戰爭的國際背景亦有比較詳細的論述，指出戰爭的實質是國際資本主義侵略遠東的一環。

還史的本來面目

中塚明著 於時化譯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5年

本書包括“上編還歷史的本來面目-日清戰爭是怎樣發生的”和“下編《蹇蹇錄》的世界-日清戰爭開戰與陸奧宗光”兩大部分。

〈相關資料〉

1. 中文

李文忠公全書(165卷)

李鴻章著 吳汝綸編 清光緒三十一年(1904) 三十四年(1907)刊

本書分“奏稿”80卷，“朋僚函稿”20卷，“蠶池教堂函稿”1卷，“海軍函稿”4卷，“電稿”40卷。年月日皆加注明，編制頗精審。本文主要參考“電稿”部分。

《中國近代史資料叢刊·中日戰爭》(上海 新知識出版社1956)內收朋僚函稿、譯署函稿、海軍函稿、電稿。

中日戰爭

王鐘麟著 上海：商務印書館 1930年9月初版 1933年5月國難後1版 1939年2版

內分15節：中日交涉之開幕、琉球問題與侵入臺灣、朝鮮問題與天津之約、中國海軍之創設與日本海軍之襲擊、成歡平壤之戰、黃海之敗、旅順口陷沒、遼東之敗、馬關議和、割臺灣與台民自立等，敘述1894年中日甲午戰爭的經過。卷首冠圖，有葉聖陶序；書後有參考書目。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88卷)

故宮博物院編印 1932年出版

選故宮博物院所藏軍機處檔案編排而成。史料分兩大部分：卷1-74，收入光緒元年(1875)至光緒三十四年(1908)間有關中日關係、中日戰爭的奏議、廷寄、電奏、電寄等；卷75-88，收入光緒二十九年(1903)至光緒三十一年(1905)日俄戰爭時期的《東事收電檔》。全書約180萬字。

《大公報》民國二十一年十月十日《文學副刊》中蔣廷黻所著《外交史及外交資料》一文，對該書的貢獻及缺點有介紹。《中國近代史資料叢刊·中日戰爭》(上海 新知識出版社1956)第1-4冊中收60萬字，並對錯字作了校正。《中國近代史文獻彙編之一—中日戰爭文獻彙編》(臺北 鼎文書局 1973)內收同上。

中國近百年史資料(初編·續編、4冊)

左舜生選輯(北平) 中華書局 1933年9月出版

本書均選自清末以來之名記載，始於道光季年，止於辛亥革命。“初編”(2冊)，收入“中日兵事本末”；“續編”(2冊)，收入“東方兵事紀略”、“馬關議和中之伊李問答”、“臺灣八日記”及“海軍大事記”、“甲午戰事記”。

清季外交史料(243卷)

王彥威 王亮輯 1934年影印

合刊本。包括：《光緒朝外交史料》(218卷)、《宣統朝外交史料》(24卷)、《西巡大事記》、《清季外交史料》、《清季外交年譜》及地圖多幅。本書中有關中日交涉的史料，大都為《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和《李文忠公全書》所收。

中日戰爭(七冊)

中國史學會主編 邵循正等編 上海 新知識出版社 1956年出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7年出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1年11月出版 新1版(中國近代史資料叢刊)

全書分為三編：第一編為綜述編，收入概述中日甲午戰爭的文獻，包括：《東方兵事紀略》(姚錫光)、《盾墨拾余》(易順鼎)、《津門奉使紀聞》(曹和濟)、《中東戰紀本末》(蔡爾康)及日方記載的中日戰史；第二編為戰前文獻資料；第三編為戰後文獻資料，包括檔案和中外文資料。未附：中日講和條約及中日遼南條約等。(1973年被臺灣翻版，題目為《中國近代史文獻彙編之一—中日戰爭文獻彙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年 12月 11冊

本書根據總理各國事務衙門“朝鮮檔”及外務部有關日韓商務、邊務、郵電等交涉案件整理彙編而成。收入上諭、奏疏、函劄、照會、諮文、條約、合同、報告、稟帖等，時間自1864年起，止於1911年。本書有分類目錄和時間目錄兩種，合刊為第1卷。甲午戰前史料最為完整，多數未曾刊佈；戰爭期

間史料多為籌防籌餉購械等文件；戰後中日交涉史料欠缺。

2 日文

蹇蹇錄

(日)陸奧宗光著 伊金石譯 北京 商務印書館 1963年5月

本書曾由龔德柏譯為《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商務印書館，民國18年4月

甲午中日戰爭秘史

(日)陸奧宗光著 龔德柏譯《日本侵略中國外交秘史》(即《蹇蹇錄》)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1年5月出版

本書系日本外務大臣陸奧宗光密錄，原名《蹇蹇錄》，自東學黨起義起，至三國干涉止，其間日本政府策劃及措施經過情形，敘述極為詳細。

明治二十七八年在韓苦心錄

山村潛 東京 勇喜社 1932

作者東學黨起義爆發時，大島公使休假回國，杉村代理公使職務，大島回朝後，仍任參贊，對於朝事措施頗費苦心。因將其在此二年間經過情形，著成本書。記載中雖不免稍有誦功之處，但多為他書所不詳，使研究這一期間日本官員在朝交涉經過的好資料。

日本外交文書

外務省編纂 第27卷第1、2冊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昭和28年

第27卷第1冊“八 朝鮮国内政改革に関する件”和該卷第2冊的大部分，均收錄中日甲午戰爭時期的相關資料。

秘書類纂

伊藤博文編 原書房 1970年

《中國近代史資料叢刊·中日戰爭》(上海：新知出版社1956年)

《中國近代史文獻彙編之一：中日戰爭文獻彙編》(臺北 鼎文書局 1973年)

內收“朝鮮交涉資料”、“中國講和使節會談紀要”、“電報譯文(96件)”，爲日本官方關於朝鮮問題及中日講和談判的內部報告和記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 민중 탄압

- 일본군의 ‘비합법성’을 중심으로

강효숙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독립조사국 제3팀장

I . 머리말

II .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1894. 10. 18. 이전)

III.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후(1894. 10. 18. 이후)

IV. 맺음말

I. 머리말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초 전라북도 고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사건은 대내적으로는 조선왕조체제에 대한 민중투쟁으로 발생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특히 일본의 침략주의에 맞서 싸우는 반침략주의=항일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동학농민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질서를 뒤흔든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어 청일전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영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즉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동학농민전쟁의 위상을 의미한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은 단지 한국사의 근대 이행기 과정에서 발생한 일국사적인 관점의 연구가 아닌 동아시아 혹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사건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종래 한국 학계에서는 주로 이 사건을 한국사에 국한하여 다루어 왔으나 최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1894년 6월 초 제물포조약을 근거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였고, 급기야 7월 23일에는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일본군은 곧바로 조선 정부에 대해 내정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청일전쟁 개전에 앞서 조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민감하게 대응하는 동학농민군(이하 농민군)에 대한 탄압을 예정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조선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1894년 8월 29일 경상도 함창현에 농민군 탄압을 목적으로 최초로 출동한 이후, 항일운동을 펼치는 농민군을 대규모 살상하는 대탄압 작전에 나섰다.

이러한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의 이유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청일전쟁

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나, 일본 측 자료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제2차 동학 농민전쟁 연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 청일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조선 문제를 다룬 연구로서 먼저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의 『일청전쟁(日淸戰爭)』¹을 들 수 있다. 이하, 청일전쟁 관련 논문 및 자료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의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²

일본에서 발표된 농민군과 일본군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먼저 구양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일본 신문 자료를 사용하여 농민군 탄압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독립 후비보병 제19대대(이하 제19대대)의 존재와 3로 분진책의 ‘동학농민군 토벌책’ 그리고 황해·평안도의 농민군 ‘토벌’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의 관계 해명에 선구적인 연구를 이루었다. 박종근의 경우는 『일본외교문서』와 신문 그리고 일본 방위성의 방위연구소 도서관(이하 방위연구소)의 소장 자료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일본군의 조선 파견·조선 민중에 대한 탄압의 비합법적인 요소를 들어 조선 ‘침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민군 탄압 정책의 3로 분진책이 러시아를 의식한 ‘서남으로 몰아붙이기 작전’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1894년 9월 22일에 경상도 안동에서 유생의 지도하에

1 中塚明(1968), 『日淸戰爭』, 青木書店. 나카쓰카[中塚]는 『조선근대혁명운동사』, 『일본외교문서』, 『陸奥宗光文書』, 『일한외교자료집성』 등을 인용하여 당시 학계에서 간과되어 왔던 청일전쟁 당시 일본 정부의 조선정책,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과 조선 민중들의 갈등을 다루었다.

2 일본 학계의 청일전쟁 관련 연구는 대체적으로 전쟁의 원인이나 외교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3000여명의 민중이 봉기한 사실을 발굴하여 근대 최초의 의병투쟁이었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종래의 연구가 지나치게 전봉준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황해·평안도 등의 농민투쟁에 대한 재평가 문제를 제기하였다.³

한국에서는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전후하여 주로 한국 측 사료를 중심으로 한 제2차 동학농민전쟁 과정을 밝힌 연구가 발표되어 일본 측 사료와의 비교·검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⁴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한국 근대사의 문맥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고, 일본 근대사의 측면에서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접근한 연구로는 먼저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주로 방위연구소 소장자료를 사용하여 농민군 ‘토벌’ 목적이 ‘군용전선 보호’에 있었으며, 농민군 ‘토벌’의 중심 부대였던 제19대대의 실태와 ‘토벌’의 책임 소재

3 姜孝叔(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號, 歷史學研究會 編集, 青木書店, 18쪽. 관련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具良根(1975), 「東學農民軍の戰鬪課程の檢討 - 第二次蜂起と日本軍との交戦を中心に」, 『學術論文』 5, 朝鮮獎學會; 具良根(1976), 「東學農民軍の第二次蜂起と日本軍の部署」, 『新韓學會』 18, 新韓學會; 박종근(1982), 『日清戰爭と朝鮮』, 青木書店.

4 최현식(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995),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한국역사연구회(1995), 『1894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김양식(1996),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표영삼(1996),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천도교 중앙총부; 표영삼(1999), 「장흥지역 동학혁명」·「충청서부지역 동학혁명」·「경상남서부지역 동학혁명」, 『교사교리연구』, 천도교 중앙총부; 표영삼(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제5집, 한국동학회; 배항섭(1999), 「동학농민군의 반일 투쟁 전쟁의 전개」, 『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있다.

등을 밝혔다. 조정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국 근대사의 관점에 서 있으면서도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의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토벌’은 일본 근대사에서 최초의 해외 민중학살이었다고 논하였으며, ‘토벌’을 맡았던 일본군과 조선군의 규모·학살관계를 해명하는 데 노력하였다.⁵ 필자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방위연구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일본군과의 관계 속에서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전반적인 실상을 밝히고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⁶

이 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은 방위연구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 측이 주장한 ‘청일전쟁은 문명전쟁’이라는 관점에 대해, 특히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서 드러난 일본군의 ‘비합법적’(비문명적. 이하 ‘비합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⁷

먼저 당시 일본인의 ‘문명’과 ‘국제법’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인식을 살

5 姜孝叔(2002), 앞의 글, 18쪽. 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다. 井上勝生·古河講堂(1997), 『舊標本庫』, 人骨問題調査委員會, 『古河講堂「舊標本庫」人口問題報告書』, 北海道大學文學部; 井上勝生(1999),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の彈壓』, 『近代天皇制の形成・確立に關する基礎的研究』, 北海道大學文學部; 井上勝生(1999),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軍』, 田中彰 編, 『近代日本の内と外』, 吉川廣文館; 趙景達(1998), 『異端の民衆反亂 -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6 姜孝叔(2002), 앞의 글; 姜孝叔(2006),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千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姜孝叔(2005),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인문학연구』 제6집,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姜孝叔(2007a),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30호, 전북사학회; 姜孝叔(2007b),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

7 참고로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를 이

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일본군의 조선 병참화 과정·농민군 탄압 과정 등에서 드러나는 ‘비합법적’인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일본군의 조선 민중에 대한 탄압의 근거와 형태를 살펴보고,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최초의 해외 침략과정에서 행한 해외 민중 학살과 탄압행위의 명문화, 즉 법률화에 대해 고찰하고 일본의 해외 침략사에서의 제노사이드 문제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사 및 청일전쟁에 있어서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재조명이 될 것이며, 이는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축적해 온 많은 성과와 비교·검토하여,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이루는 데 그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해외 침략사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1894. 10. 18. 이전)

1. 당시 일본인의 ‘문명전쟁’과 ‘국제법’의 의미

먼저 일본 지식인을 리드하였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이하 후쿠자와]를 통해서 당시 일본인의 ‘문명전쟁’과 ‘국제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청일전쟁 직전, 후쿠자와에게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문명’과 ‘지금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문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장래 참된 문명보다 ‘본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더욱 절실한 ‘목적’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도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독립을 지키는 방법을 문명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즉 그는 “지금의 문명으로써 세계 각국의 관계를 보면 각 국가 간의 관계는 평시에는 물건을 매매하는 관계이지만, 서로 이익을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무기로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후쿠자와는 당시의 세계를 상업과 전쟁의 세계로 보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후쿠자와는 ‘지금의 문명’이라는 한정 속에 ‘전쟁’을 긍정하였고, ‘전쟁’을 ‘문명’의 일대 구성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청일전쟁에 대해 단호하게 싸울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그의 관점에 따르면 ‘문명’적인 행위였다. 그는 청일전쟁을 마치 문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문명 전쟁’이라 칭하였다. 이와 같은 후쿠자와의 전쟁 인식은 당시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의 인식이기도 하였다.⁸

그렇다면 당시 일본인에게 ‘문명’이란 무엇이었을까?

당시 일본인이 즐겨 사용한 ‘문명’이란 용어는 국제법, 즉 ‘만국공법’⁹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본인이 충격적으로 만나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유럽 최초의 법은 국제법이었다. 민법도 아니었고, 상법도, 헌법도 아니었다. 일본인의 국제법에 대한 환상은 막말부터 시작된다. 즉 야만인이라 생각하였던 이국인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일본에 개항을 요구

8 山内進(1996), 「明治國家における文明と國際法」, 『一橋論叢』 제115권 제1호, 25~27쪽.

9 당시 국제법이란 만국공법을 가리켰다. 1864년에 중국에서 International Law를 ‘만국공법’으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됐다. 그것이 1865년에 일본에 그대로 수입·번역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白羽祐三(2002), 『日清・日露戦争と法律學』, 中央大學出版部, 88쪽.

하였고, 그 다음의 무기로 내놓은 것이 국제법이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이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막부의 외교 당국이었다. 막부는 국제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후 국제법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이 시기의 국제법은 만국공법이었다.

메이지[明治] 중기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이 유럽 열강과 정치·외교적으로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국제법’ 클럽의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정회원의 기준은 ‘문명’이었는데, 일본이 처음으로 만난 것도 ‘(유럽)문명’과 일체화한 ‘국제법’이었다.

에든버러대학의 국제법 교수로 만국국제법학회 설립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던 제임스 로리마는 자신의 저서 『국제법강요(國際法綱要)』 제2권 제2장에서 인류를 문명화된 인류, 야만의 인류, 미개한 인류로 나누었다.¹⁰ 그리고 ‘문명화된 인류(문명인의 나라)’란 국제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인 인류를 칭하였고, 유럽 열강과 아메리카가 이에 속하였다.

일본 정부는 ‘문명인의 나라’에 합류하기 위해 ‘문명인의 나라’와 법적인 평등을 모색하였다. 즉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 1872년 11월 20일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특명전권대사로 한 사절단을 구미 각국에 파견하는 등 이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결실이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 침략전쟁인 청일개전 직전인 1894년 7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영일통상조약 조인으로 나타났다. 영국, 즉 ‘문명인의 나라’로부터 동등하게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¹¹

일본 정부는 영일통상조약이 조인되기 이전인 1886년에 국제적십자조

¹⁰ 山内進(1996), 앞의 글, 20~24쪽.

¹¹ 후쿠자와의 ‘탈아론’의 원점도 이러한 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약을, 다음해에는 파리선언에 참가할 것을 표명하여 일본군이 전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세계에 보였다. 군대 내부에서도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 교육이 시작되어 법적 측면에서의 일본군의 ‘문명군화’를 이루어 갔다.

영일통상조약 조인은 청일전쟁을 국제법(만국공법)에 따라 ‘문명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¹² 일본의 선전포고에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전력으로 싸우라고 선언한 것은, 역으로 일본이 행하는 청일전쟁은 ‘문명전쟁’으로 행한다는 것을 공시한 것이다. 즉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는 ‘문명국’이 채용한 국제법에 따른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에 청일전쟁은 천황이 말한 대로 ‘문명전쟁’이어야 했고, ‘정의의 전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천황의 지상명령이었고, 또한 메이지유신 이후 창출해 온 천황제 국가를 국제법상의 ‘문명국’으로서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기도 하다.¹³ 그러나 청일전쟁은 처음부터 일본에 의해 ‘비합법적’으로 시작되었다.

첫째, 청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는 1894년 8월 1일에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목적으로 한 일본함대는 이미 7월 23일에 사세보[佐世保]항을 출발하였고, 7월 25일에 서해의 풍도 앞 바다에서 청일해전을 일으켰다. 이것은 분명 국제법 위반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국제법 위반의 ‘속임수 공격’은 이후 1941년의 미국에 대한 진주만 공격까지 계속되었다.

둘째, 당시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를 살펴보면, ‘조선으로 하여금 화란

12 白羽祐三(2002), 앞의 책, 87쪽.

13 白羽祐三(2002), 앞의 책, 99~100쪽.

(禍亂)을 영원히 면하게 하고 치안을 장래에 보존하여 동양 전국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여’, ‘제국의 권리 이익을 손상하여 동양의 평화를 오랫동안 담보하려고 하는 것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특히 이웃나라 조선의 치안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국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선전포고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조선에 ‘비합법적’으로 군사적인 기반시설인 군용전선·병참선로 등을 설치하였고,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시설을 존속시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비대를 계속 주둔시켰다. 이는 이후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데 군사적인 기본 시설이 되었고, 결국 조선은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또한 청일전쟁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선전포고’의 내용이 조선과 청국에 대한 전쟁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킨 허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허구적인 ‘동양의 평화’라는 표현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의 선전포고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독립’,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재등장한다.

셋째, 방위연구소의 소장자료 가운데 ‘일청사건’, ‘명치 27·8년역(役)’으로 명명된 자료에서도 일본의 ‘비합법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을 ‘사건’ 혹은 ‘역’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 규약이나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구실을 만들었다. 이것은 일본 스스로 침략전쟁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즉 실제로는 일본의 침략전쟁이지만 ‘사건’이나 ‘역’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쟁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다. 이외에 ‘일청조사건’이라 명명한 자료가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단순히 청·일 양국 간의 전쟁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선까지도 전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무장의 ‘조선’을 전쟁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국제법, 즉 ‘문명’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되고, 서구의 ‘문명의 나라’로부터 질책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일청조사건’이 아닌 ‘일청사건’·‘명치 27·8년역’으로 표현하여 조선을 배제함으로써, 국제법과 ‘문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속이고자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군은 이미 1893년 12월 말부터 1894년 3월 말까지 군함 쓰쿠바[筑波]와 오시마[大島]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에 관한 정보·첩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 가운데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의 20만 인구를 아사 혹은 항복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서울 부근의 식량창고 조사를 비롯하여 러시아 접경지대인 나진항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¹⁴ 일본 정부가 조선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일본군의 조선 병참화 과정

여기에서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조선 병참화 과정에서 보인 ‘비합법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선 정부의 요청 없이 행해진 일방적인 일본군의 조선 파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894년 6월 3일 조선 정부는 청국에 농민군 ‘진압’¹⁵을 요청하였고 청군이 조선에 파견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

¹⁴ 방위연구소, 「米庫及舊水營之部」, 『鮮國警備事件軍艦筑波』, 3월 3일 ; 방위연구소, 『艦長外國諜報及び帝國公使領事報告 …… 雜件』.

¹⁵ 일본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압’은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한 뜻으로, ‘탄압’은 옳은 상대에 대한 억압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 학계를 염두에

빨리 제물포조약을 법적 근거로 일본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라는 목적으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 파견의 근거와 목적을 조선 정부에 행문지조(行文知照)하였을 뿐이다.

조선 정부는 6월 7일 즉시 재조선 일본 영사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 이하 스기무라]¹⁶에게 엄중하게 항의하였고, 주일 조선 공사관 김사철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철병을 요구하게 하였다. 6월 9일에는 참의(차관보) 교통통상사무 민상호와 아메리카의 외무고문 젠트라 등을 인천에 급파하여 재한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이하 오토리]가 대동한 해군 육전대의 서울 진입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음날에도 협판(차관) 교통통상사무 김용식이 서울 외항 양화진에 파견되어 일본군의 서울 진입 저지를 담판하였으나 오토리 공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에 진입하였다.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서울이 이미 평온해진 사실을 들어 일본군의 서울 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철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토리 공사는 일본군은 제물포조약에 의하여 언제든지 출병할 수 있으며, 파병 여부에 관한 권한은 일본 정부에 있으므로 조선 정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없다고 응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12일에는 일본군 제11연대 1050명을 인천에 상륙시켰다.¹⁷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강경하게 일본군을 서울에 입성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대해 일본군의 수를 허위 통고한 사실이다. 최초의 육전대 수에 대해 스기무라는 ‘300명’으로 조선

두고 있는 까닭에 농민군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¹⁶ 관련 자료에 나오는 인명은 성씨만으로도 구분된다.

¹⁷ 박종근(1982), 앞의 책, 16~17쪽.

정부에 통고하였는데 실제로는 488명 이상이였다. 이러한 허위 통고는 일본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조선 정부의 항의를 완화하고 청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기선을 잡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¹⁸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조선 파견의 목적으로 강조한 것은 서울의 일본공사와 거류민 보호였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 있던 다른 열강은 자국 영사 보호와 거류민 보호를 위해 본국에 파병을 요청하거나 특별히 문제로 삼은 흔적이 없다. 또한 만약 파병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조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목적으로 군부대를 파견한 것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파견된 일본군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당시의 조선 관련 국제법으로 살펴볼 때도 역시 ‘비합법적’인 수였다. 즉 제물포조약 제5조는 조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서울의 일본공사와 거류민 보호를 위해 ‘1대대’¹⁹를 제안한 것에 비해 조선 정부는 조선국의 체면을 손상한다고 주장하여 ‘호위병 1대대를 약간으로 수정’하여 타결된 것으로, 여기에서 ‘약간’은 곧 1000명 이하를 의미한다.²⁰ 그런데 6월 15일까지 파견된 일본군 수는 5000명에 이르렀고, 7월 10일에는 인천에만 혼성여단 7857명, 제2 전선가설대 345명, 군악대 58명, 해군 943명, 운송선 승조요원 80명이 파견되어 있었다.²¹ 더군다나 전선가설대, 군악대, 운송선 승조요원은 전쟁에 대비한 부대이다. 서울의 일본공사와 거류민 보호라는 파견 목적을 훨

¹⁸ 박종근(1982), 앞의 책, 18쪽.

¹⁹ 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구성되며, 1개 중대는 250명 안팎이므로 약 1000명이 된다.

²⁰ 박종근(1982), 앞의 책, 21쪽.

²¹ 姜孝叔(2002), 앞의 글, 14쪽.

썬 넘어선 규모였다. 그리고 6월 5일, 이미 도쿄에는 전쟁을 준비한 대본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면 조선 병참화를 위해 파견된 일본군, 즉 군용전선 가설대, 병참부, 도로 수선대 등의 파견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병참화를 위해 가장 먼저 파견된 부대는 군용전선 가설대였다. 오토리 공사는 6월 23일에 서울~부산 간 전선수리용의 전선과 공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다.²² 이에 대해 일본 대본영은, 6월 26일, 조선 정부로부터 가설권을 영구히 획득하여 서울~부산 간의 군용전선 가설에 임할 것을 명령하였다.²³ 그 목적은 개전 후에는 당시 서울에서 청국을 우회해서 상해를 경유하여 일본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서울~부산 간에 군용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송수신하기 위함이었다.²⁴ 이후 조선 정부의 허가 없이 제1·2전선 가설대가 7월 3일과 4일에 각각 부산과 인천에 도착하였다.²⁵

조선 정부는 일본군의 군용전선 가설에 대해 조선의 주권에 관한 침해

²²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이하 외무성 사료관), 『日清韓交渉事件の際に於ける軍用電線架設關係雜件』, 6월 27일.

²³ 방위연구소, 『日清朝事件 第5師團 混成旅團報告綴』, 6월 27일.

²⁴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部』, 7월 4일.

²⁵ 그들은 처음부터 참모총장熾仁親王이 제1·2전선 가설대에 내린 훈령에 의해 전선 가설이라는 본래의 임무 이외에 전선을 파괴하거나 저지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1항의 목적(군용전선 가설 - 필자주)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적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배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제1지대(368명)는 부산~청주 간을 담당하여 부산~대구 간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였고, 공사는 7월 29일 대구에서부터 착수했다. 제2지대(445명)는 서울~청주 간을 담당하여 먼저 7월 12일에 서울~인천 간 전선을 개통시켰다. 외무성 사료관, 앞의 책, 6월 27일.

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은 좀처럼 대본영의 명령대로 군용 전선을 가설할 수 없었다.²⁶ 7월 18일, 급기야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이하 오시마]는 외상 무쓰 무네히쓰[陸奥宗光, 이하 무쓰]의 명령에 따라 조선 정부에 군용전선 가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다음날 전선가설대에 전선 가설 착수훈령을 내렸다. 또한 오시마 혼성여단장은 조선 관·민의 방해를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처리해 가겠다고 오토리 공사에게 보고하였다.²⁷ 일본군의 ‘비합법적’인 전선 가설을 방해하는 조선 관·민에 대한 처리가 이 시기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 정부의 승낙 없이 강제적·비합법적으로 시작된 서울~부산 간 군용전선 가설은 8월 16일에는 거의 완성되었고, 8월 19일 일본군은 군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대구전신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²⁸

전쟁에서 군용전선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병참부이다.²⁹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서해안이 청군의 파견

²⁶ 국사편찬위원회(1989), 「京城釜山間電信船補修架設に關する報告」,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571쪽.

²⁷ 국사편찬위원회(1987), 「日清衝突に關する訓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472쪽 ; 국사편찬위원회(1986), 「京釜間 軍用電線架設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65쪽.

²⁸ 姜孝叔(2002), 앞의 글, 20쪽.

²⁹ 이외에도, 조선의 병참화를 위한 부대로 병참부와 함께 파견된 서울~부산 간 도로수선대(공병 제6대대 제1중대)가 있었다. 이 부대는 8월 2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병참감의 명령에 의해 처음부터 도로 수선뿐만 아니라 군용전선의 감시 보호 임무도 띠고 있었다. 즉 도로 수선을 마친 후에는 담당지구의 군용전선을 감시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兵站監督部』, 8월 1·2일.

루트였던 관계로 인천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본은 군대를 부산에 상륙시키고 육로를 통하여 서울에 진군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산~서울 간의 도로는 험하였고 서울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파견군에 대한 양식·탄약 공급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병참선로와 병참부의 설치는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7월 28일에 3개의 병참부를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부산 간에 20군대의 병참부가 설치되었다.³⁰ 최초의 병참부 파견 역시 선전포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8월에 들어서면서 비합법적으로 설치된 일본군의 군용전선이 조선 민중에 의해 절단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9월 1일, 병참감은 신설 병참사령관에게 군용전선 보호 임무를 명령하였고,³¹ 이후 각 병참부는 본래의 병참업무 외에 군용전선을 절단하는 조선 민중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비합법적인 조선 병참화 과정에서, 청일전쟁 확대와 함께 군용전선 가설대·병참부 등이 본래의 임무로부터 점차 군용전선 보호와 항일 조선 민중·농민군의 진압으로 그 임무가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³² 그러나 당초 조선 정부의 승인 없이 착수했던 까닭에 조선 민중에

³⁰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兵站監督部』, 7월 29일 ; 姜孝叔(2002), 앞의 글, 20쪽.

³¹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中路兵站監督部』, 9월 1일. 전쟁이 중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군용전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자, 11월 7일에는 병참감부가 대동강 입구의 어은동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병참총감의 명령에 따라 그 임무도 군용전선에 피해를 주는 조선의 ‘폭민’, 특히 ‘동학당’ 봉기를 진압하는 일까지 확대되었다.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督部』, 1894년 11월 7일.

³²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이 철저하게 농민군을 탄압한 가장 큰 이유 중

의한 군용전선 절단 등의 항일운동은 날로 확대되어 갔다.

8월 29일,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크[川上操六, 이하 가와카미]는 병참 관할구 내의 경비 등에 주력하고 군용전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10연대 제1대대를 부산~서울 간 병참수비대로 파견하였다. 제10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 부산에 도착하였고, 이후 서울~부산 간 병참선로와 전라·경상 양도의 남부 연안지역 농민군 탄압의 선두에 섰다.³³

3. 초기 농민군 탄압(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

여기에서는 조선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에 발생한 일본군의 비합법적인 조선 민중 탄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민중의 항일운동은 일본군이 군용전선 가설대를 비롯하여 병참 부·도로수선대를 파견한 경상도에서 일찍부터 나타났다.

8월 28일 함창현(현 상주)에서는 농민군이 지방 관리를 묶고 일본군을 위해 조선인을 무임금으로 복역시킨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사람들에게는 일본군의 용역 모집에 응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

의 하나로 조선 민중의 군용전선 절단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井上勝生에 의해서 밝혀졌다. 井上勝生(1999), 앞의 글, 245~255쪽; 姜孝叔(2002), 앞의 글, 20~21쪽.

33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兵站監督部』, 8월 31일. 보병 제10연대 제1대대는 7월 23일 후비군 소집명령에 의해 구성되어, 8월 5일에 企求반도의 戶笠山峯(窪古城山)의 수비명령을 받았으나, 8월 29일 조선 파견명령에 의해 같은 날 총인원 923명이 모지[門司]港을 출발하였다. 일본에 돌아간 것은 1895년 5월이다.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77』, 8월 30일; 방위연구소, 『明治 27年 日清戰史』 제8권, 35쪽.

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태봉병참사령관은 “(일본군의) 위세를 보여 병참로의 안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부산병참감에 보고하고, 다음날 일부 도로수선대를 인솔하여 함창현에 출동하였으나 농민군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³⁴ 이것이 방위연구소 소장자료에 나타난 일본군 최초의 농민군 탄압 목적의 출동이다.

같은 달 30일 문경병참사령관은 부산병참감에게 앞으로 직·간접을 논하지 않고 군대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곧바로 치기로 결심했다고 보고하였다. 9월 1일에는 300여 명의 조선 민중이 하담병참부를 습격하였다. 부산병참감은 9월2일 대구병참감에게 “이후 또 다시 절단하는 자가 있으면 책임 있는 마을은 불태우고, 그 주민을 격살할 정도의 위세를 보이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³⁵ 조선 민중의 전신주 파괴와 군용 전선 절단 행위는 날로 증가하여 9월 30일까지 적어도 15건이 발생하였다.³⁶

9월 2일 경상도 안동에서 3000여 명의 의병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³⁷ 부산 수비대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같은 날 1개 소대를 안동에 파견하였다. 부산영사 가토[加藤, 이하 가토]는 24일 무쓰 외상과 오토리 공사에게 조선 정부로 하여금 병참부와 협의해서 군용전선을 보호하고 농민군 봉기를 예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⁸ 일본군은 안동의 의

³⁴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監本部』, 1894년 8월 28·29일.

³⁵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兵站監督部』, 1894년 8월 30일.

³⁶ 姜孝叔(2002), 앞의 글, 22쪽.

³⁷ 박종근(1982), 앞의 책, 179~185쪽; 김상기(1997),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05~115쪽; 趙景達(1998), 앞의 책, 335~340쪽. 필자는 이상의 연구를 참고로 이후 안동 의병 봉기로 칭한다.

병 봉기를 기회로 농민군 탄압을 비합법적인 상황에서 본격화하려 하였다. 24일 일본군 경찰대가 경상도 용궁 부근에서 습격을 당하여 부관 1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 부근에 있던 도로수선대가 곧바로 파견되었고, 그 다음날에는 군용전선 보호와 농민군 탄압을 목적으로 부산 수비대로부터 2개 소대가 파견되었다.³⁹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전봉준 부대의 제2차 봉기 이전에 이미 농민군과 일본군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통설적으로는 전봉준 부대의 제2차 봉기를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봉준 부대가 봉기한 것은 10월 9일이다. 9월 29일에 전라도 순천·광양의 영호도회소가 봉기하여 하동으로 진출한 것을 일본군에 대항해 농민군이 벌인 최초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느 쪽도 9월 22일의 안동 의병 봉기를 기회로 병참선로 연도에서 시작한 농민군과 일본군의 싸움보다 늦다. 게다가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은 실질적으로 8월 29일의 함창현 출동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통설과는 달리 일본군의 시점에서 볼 경우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에서 8월 29일~9월 22일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⁴⁰

비합법적인 시기에 이미 일본군의 비합법적인 농민군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38 위무성 사료관, 앞의 책, 9월 24일; 방위연구소,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暴民』, 9월 30일.

39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77』, 9월 26일. 그 중 1개 소대는 10월 17일 전라도 농민군이 김해로 진격하려고 한다는 풍문 때문에 부산으로 되돌아갔다.

40 姜孝叔(2002), 앞의 글, 22쪽.

4. 조선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농민군 ‘진정’ 요청 과정⁴¹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 정부가 일본 측에 농민군 ‘진정’을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어떻게 해서 ‘농민군 토벌대’인 제19대대가 파견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조선 민중 탄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군에 농민군 ‘진정’을 요청할 것을 조선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9월 28일 대원군에 의해 거부당한 이후 특별한 변화 없이 10월 7일을 맞이하였다. 이날 경기도 안성·죽산에서는 농민군 봉기가 있었고 조선 정부는 그 ‘진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오토리 공사는 곧바로 무쓰 외상에게 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서울수비대로 2개 대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사인 오토리에게는 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외교 문제로 발전하여 러시아는 물론 영국 등의 간섭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주도권 장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10월 12일 오토리 공사는 무쓰 외상에게 조선 정부가 ‘동학도 토벌’을 위한 일본군 급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전보를 쳤다.⁴² 일찍부터 일본 정부에서도 농민군 ‘토벌’ 목적의 일본군 파견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잘 진행되지 않고 있던 차에⁴³ 오토리 공사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가 들어오자, 병참총감은 재

⁴¹ 좀 더 자세한 내용은, 姜孝叔(2002), 앞의 글, 23~25쪽 참고.

⁴² 방위연구소, 『韓國 東學黨蜂起 一件』, 10월 7·12일.

⁴³ 방위연구소, 『韓國 東學黨蜂起 一件』, 10월 13일.

빨리 14일에 인천 병참감 이토 유기[伊藤祐義, 이하 인천 병참감]에게 오토리 공사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군대를 파견하라고 명령하였고, 다음날 용산 수비대의 1개 소대가 경기도 안성·죽산에 파견되었다.⁴⁴

한편 10월 11일 부산 수비대장 역시 대본영의 병참총감에게 전라도 농민군이 10월 22일과 23일 김해로 진격하려 한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병참총감은 전라도 하동의 농민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⁴⁵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농민군 ‘진정’ 요청을 했다고 하는 10월 12일 이전의 일이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정말로 10월 12일 조선 정부가 일본 군에 농민군 ‘진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 오토리 공사가 보고한 조선 정부의 정식 요청이라는 것은 농민군의 위세를 두려워 하고 있던 조선 개화파 정부의 구두 요청이었고, 문서에 의한 조선 정부의 정식 요청이 아니었다. 10월 16일 오토리 공사가 조선 정부에 조회한 내용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누누 귀 대신에게 원하길, 먼저 유사를 발하여 그(농민군 - 필자 주)를 초멸하고, 그래도 그들이 귀순하지 않을 때는 병사를 파견하여 그를 誅討해야만 하며, 그때는 우리 또한 병사를 파견하여 귀병을 원조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그 실행에 이르지 못한 바, 요즘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세력이 점점 치열해져 …… 금년 7월 26일에 정결한 양국 동맹은 귀아가 동맹하여 청병을 귀 나라의 경계 밖으로 물리치는 것을 그 주지로 세운 것이거늘, 지금 비도 등이 패한 청의 잔병과 결탁하여 일

⁴⁴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894년 10월 14·15일.

⁴⁵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0월 11일.

변을 물리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곧 귀 정부 또한 마땅히 불문에 부치지 못할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본 공사는 이번엔 서울·부산의 양지에서 약간의 아병을 파병하여 귀병을 원조하여 비도를 진압함으로써, 오랜 國害를 제거하고자 하는 바…… 귀 대신은 각 지방관 및 출정대 관리에게 명하여 아병과 협심 진력하여 빨리 비도 섬멸의 공을 세우도록 조치하시길 …… 여기 귀 대신의 뜻을 얻고자 조회하는 바입니다.⁴⁶

이전부터 일본 측은 조선 정부에 몇 번이고 조선군이 농민군 ‘주토(誅討)’에 나설 때 일본군을 원병으로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조선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일본 측이 또 다시 조회를 통하여 조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또한 10월 12일 조선 정부의 정식 토벌 요청이 있었다는 오토리 공사의 보고와는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군은 청군과 농민군의 결탁을 강조하면서 7월 26일(양력 8월 26일)의 조일공수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군과 청군을 결탁시킴으로써 동맹의 내용에 비추어 조선 정부에 대하여 농민군 탄압이라는 지원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10월 18일 조선 정부는 일본 측에 농민군 ‘진정’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원병 문제는 조선에서 일본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일본 측과 농민군의 위세를 두려워하고 있던 일부 개화파의 협의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본래 조선 정부의 자진 요청에 일본이 응하는 형태여야 할 것이, 일본군이 조선 정부에 누차 ‘원병을 요청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조선 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졌

46 방위연구소, 『韓國 東學黨蜂起 一件』, 10월 16일(밑줄 필자).

다.⁴⁷ 이 요청 또한 이미 일본군의 치밀한 계획하에 점령된 조선 왕궁에서,⁴⁸ 더군다나 조선군의 무기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III.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후(1894. 10. 18. 이후)

1. ‘삼광’⁴⁹의 원점과 농민군 탄압의 실상

일본군에 대한 조선 민중의 저항은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비조직적인 형태의 군용전선 절단 혹은 전신주 무너뜨리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일본군에게 조선에 설치된 군용전선은 청일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정보 수단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후 확대되어 갈

47 방위연구소, 『韓國 東學黨蜂起 一件』, 10월 18일; 국사편찬위원회(1990), 「東學黨鎮壓の爲め援兵派遣決定」,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322쪽.

48 中塚明(1997),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中塚明은 조선 왕궁 점령이 사전에 일본군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사실을 일본군 사료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조선 왕궁 무력 점령’을 ‘조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논문이 있다. 檜山幸夫(1997), 『日清戦争』, 講談社.

49 일본군의 용어로는 ‘진멸소탕작전’, ‘소탕작전’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 측에서는 이것을 ‘삼광작전’ 혹은 ‘삼광정책’이라 불렀으며 일본에서도 이 용어가 정착해 있다. ‘三光’이란 중국어로 ‘燒光’, ‘殺光’, ‘搶光’(모두 태우고, 모두 죽이고, 모두 빼앗다)을 의미한다. 삼광작전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이 지배하고 활동하던 지역과 사람들을 철저하게 살육, 약탈, 방화하는 소탕작전을 전개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군의 삼광작전은 항일 근거지, 항일 게릴라 지구의 민중에 대한 진멸작전, 즉 제노사이드작전(절멸작전)이었다. 笠原十九司(1999), 『南京事件と三光作戦』, 大月書店, 77~78쪽.

청일전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에 의한 비조직적인 군용전선 절단 일지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였다.

9월 2일 부산 병참감은 대구 병참부 사령관에게 “이후 또 다시 절단하는 자가 있으면 책임 있는 마을은 불태우고, 그 인민을 격살할 정도의 위세를 보이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⁵⁰ 24일에는 다부(현 칠곡군) 병참부 사령관에게도 “수상한 자는 때려죽이고, …… 실수해도 괜찮다. 즉 반죽음을 시키라”는 등의 명령을 내렸다.⁵¹ 낙동 병참부 사령관은 9월 28일 경상도 안동 부근의 농민군 탄압을 목적으로 파견된 일부 부산 수비대에게 “도중에 집합 혹은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구축하고 …… 혹은 살육하고 혹은 포박하여 일본제국의 위세를 보이고, 그들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⁵² 10월 4일 부산 수비대장은 낙동 병참부 사령관에게 “전선에 방해를 가하는 자를 목격할 때는 재빨리 그를 포획하거나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⁵³

조선 정부가 일본군에 농민군 탄압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군용전선이 절단된 부근 마을은 그 책임을 물어 불태우고, 군용전선을 절단하는 조선인을 ‘반죽음’, ‘격살’, ‘타살’, ‘포획’, ‘살육’,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농민군 탄압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인 10월 22일, 인천 병참감은 병참총감에게 “병참사무를 보는데 동학당 때문에 항시 고민하고 있으며, 아군 작전상 지대한 관계가 있는 군

⁵⁰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部』, 1894년 9월 2일.

⁵¹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部』, 1894년 9월 24일.

⁵²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77, 1068쪽.

⁵³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77, 10월 4일.

용전선 또한 안전을 지키기 어려우며 …… 이번에 수비병 2개 중대를 증가시켜 오직 동학당 격양에 임하게 하여 이르는 곳의 적을 섬멸케 하면, 일거에 장래의 화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조선 남부 국민의 감정을 해하게 되겠지만, 아군 전반의 이익을 도모할 때 그 경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보를 쳤다.⁵⁴ 즉 인천 병참감은 일본군에 가장 중요한 군용전선에 위협을 가하는 농민군을 섬멸하여 장래의 화근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그로 인해 조선 민중의 감정을 해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비병 2개 중대의 증병을 요구한 것이다. 병참총감은 이와 같은 인천 병참감의 요구를 이튿날 바로 승인했으며, 10월 24일에는 인천 병참감 직속의 서울수비대 일부를 파견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인천 병참감이 요구한 것은 자료가 말해주듯이 군용전선과 병참부 보호 목적의 병참부 수비병의 증병이었다. 따라서 그는 같은 날 재차 군용전선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학당 박멸 병력’을 별도로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27일 4번째의 농민군 ‘토벌대’ 파견을 요청했다.⁵⁵ 같은 날 병참총감은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열할 것을 요한다. 향후 모두 살육하라”⁵⁶는 살육 명령을 내렸다.

조선 민중에 대한 살육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향후 모두 살육하라”는 전쟁 최고책임자의 명령은 조선의 현지 지휘관에 의해 그대로 충실히 실행되어 철저한 농민군 탄압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희생된 농민

⁵⁴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894년 10월 22일.

⁵⁵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894년 10월 23·24·27일.

⁵⁶ 병참총감 川上操六의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박종근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박종근(1982), 앞의 책, 193~194쪽.

군의 수에 대해 혹자는 사망자 5만 명, 혹자는 사상자 30만~40만 명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조선 민중의 대일항쟁은 거의 일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탄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모두 살육하라”는 바로 이 명령은, 이후 중일전쟁 당시의 삼광작전 중의 하나였던 ‘살광’의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은 일본군의 해외 침략사에서 최초의 대량민중학살(Genocide)이었다. 1894년 11월 제2군이 여순반도 점령 당시 행했던 민간인 학살에 앞선 것이다. 그러나 일본 학계 등에서는 여전히 1984년 11월 21일에 있었던 중국 여순구 학살을 일본군에 의한 최초의 해외 민중학살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⁵⁷

10월 28일 농민군 ‘토벌대’로서 제19대대의 파견 소식이 전해졌다.⁵⁸

본격적인 농민군 ‘토벌’만을 목적으로 한 제19대대가 조선에 파견된 이후의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을, 서울 이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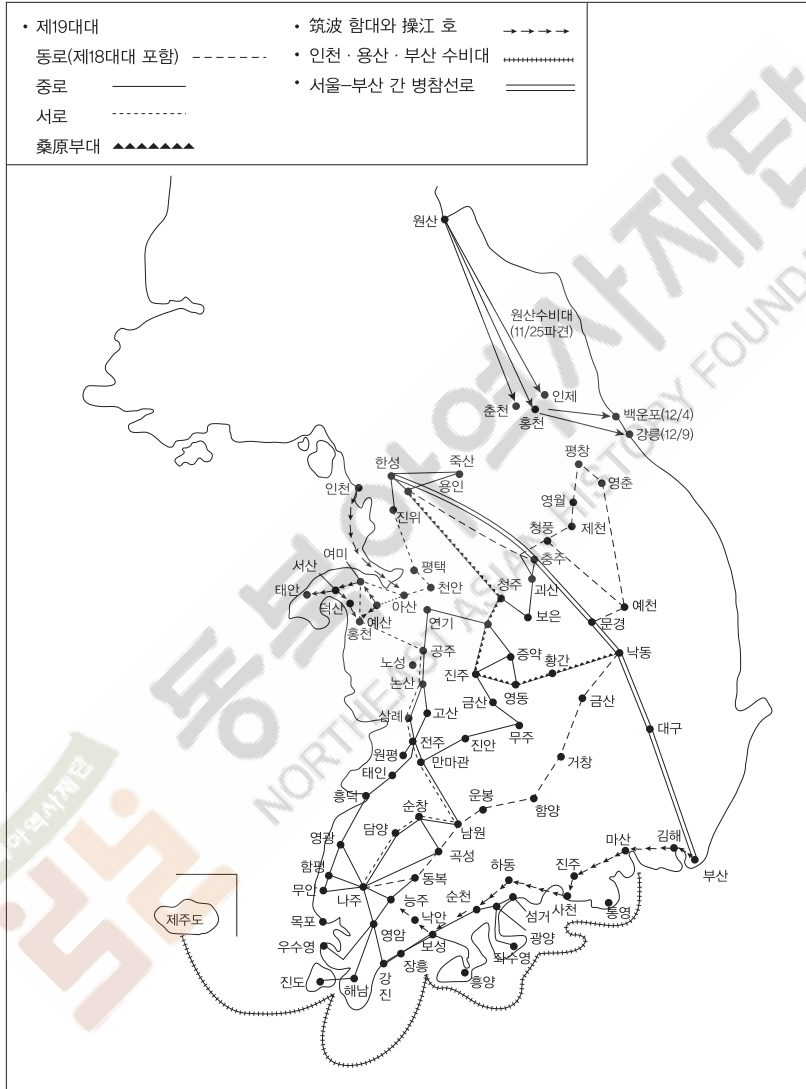
제19대대는 조선군을 동반하여 세길로 진군해 가면서 농민군을 조선의 서남단 방면으로 몰아붙여 갔으며, 서울수비대 독립 후비보병 제18대대의⁵⁹ 1개 중대가 여기에 가담하였다. 그 배후지인 충청·경기도에는 용산·인천수비대로부터 3개 중대가 파견되었다. 서울~부산 간의 각 병참부 수비병은 병참선로 주변을 담당하여 농민군이 병참선로를 넘어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로 도주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부산 수비대에서 파견된 부

⁵⁷ 田中利幸 外(2007), 『戦争犯罪の構造』, 大月書店.

⁵⁸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984년 10월 28일.

⁵⁹ 신경성수비대 제18대대는 11월 2·4일 인천에 도착했다. 제18대대는 다음해의 민비 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대는 전라·경상도 남단지역의 농민군을 탄압했으며, 쓰쿠바·소코고[操江號]함대 육전대가 도서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가담하였다(지도 참조). 육



지도_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서울이남 지역)

지와 바다에서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고 농민군을 서남지역으로 몰아붙여 가며 탄압한 것이다.

서울 이남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투입된 일본군 수는 다음과 같다. 산출은 제19대대를 근거로 하였다. 당시 제19대대는 3개 중대로 편성되었는데, 1893년 12월 23일의 「후비보병 연대 편제표」에 “후비보병 독립대대의 편제는 본표의 대대와 같다”라는 표기에 의하면, 본부는 56명, 1개 중대는 2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9대대 이외 제18대대 1개 중대, 용산·인천수비대의 1개 중대, 부산 수비대 1개 대대(병참부 수비병과 전라·경상도 남부에 파견된 부대를 포함)와 서울~부산 간 병참부의 보충병,⁶⁰ 육전대(쓰쿠바합대: 승무원 251명, 소코고: 승무원 82명) 등이 농민군 ‘토벌’에 참가하였다.⁶¹ 즉 제19대대를 포함하여 약 12개 중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2708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본군이 비합법적인 시기에 자행한 농민군 탄압까지 포함하면 서울 이남의 농민군 탄압에 참가한 일본군은 15개 중대 3371명에 달한다.⁶²

⁶⁰ 1894년 9월부터 1895년 2월까지 서울~부산 간 병참부 보충병으로 파견된 수비대는 다음과 같다. 1894년 9월 4일 - 하사 3명, 병졸 49명, 10월 26일 - 상등병 148명, 12월 4일 - 후비 제17대대, 상등병 이하 100명, 12월 16일 - 후비보병 제15연대 제1대대의 일부로 인수는 불명, 12월 22일-105명(용산수비대 보충), 1895년 1월 2일 - 후비 제17대대 하사 이하 10명, 2월 1일 - 후비 제17대대 37명.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監本部』, 1894년 9월 4일;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894년 10월 26일;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77, 1894년 12월 4일, 1895년 1월 2일, 1895년 2월 1일; 방위연구소, 『南部兵站監部日誌』, 1894년 12월 16·22일.

⁶¹ 방위연구소, 『南部兵站監部日誌』, 1894년 11월 16일.

⁶² 姜孝叔(2002), 앞의 글, 26쪽.

2.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⁶³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이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정’ 요청 이전 시기에 생포한 농민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 수비대에서 대구 부근에 파견된 미야케[三宅]부대의 보고에 의하면, 9월 21일 대구를 출발한 미야케부대는 내창촌에 이르러 이지동, 구해평, 상오점을 생포하여 현장에서 심문하였고, 9월 30일 대구 병참부로 끌고가 곧바로 헌병에게 인도하였다.⁶⁴ 10월 14일 충청도 충주 병참지부가 ‘단월’⁶⁵에 파견한 일본군은 농민군 지도자 성두한을 비롯하여 농민군 34명을 죽이고 4명을 생포하였다. 같은 날 충주 병참지부에서 생포한 농민군 7명이 가흥 병참부로 호송되었다. 10월 16일에는 곤지암 부근에서 농민군 2명을 생포하여 곤지암 병참부에서 심문하였다.⁶⁶ 10월 17일, 즉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농민군 ‘진정’ 요청이 있었던 바로 전날, 인천 병참감은 가흥 병참사령관에게 “충청도 안성, 죽산에 조선 정부에서 출병시킴. 포획자는 (조선군에게 - 필자주) 인도하라”고 명령하였다.⁶⁷

그러면 10월 18일 조선 정부의 일부 개화파가 농민군 ‘진정’을 일본군에 요청한 이후 생포 농민군 처리 등에 관한 일본군의 명령에 대해 살펴

⁶³ 자세한 내용은 姜孝叔(2007b), 앞의 글 참고.

⁶⁴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77, 1064쪽.

⁶⁵ ‘단월’은 일본 측 사료에 나타나는 ‘たんけつ, 단케쓰’라는 지명을 한글로 변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⁶⁶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22~23쪽.

⁶⁷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27쪽.

보기로 한다.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농민군 ‘진정’ 요청 이후 11월 25일, 인천 병참감은 충주 부근에 파견한 인천수비대에 “동학당 처분을 조선 관리 및 조선병에게 맡기라”고 훈시하였다. 이 명령은 일본군이 생포한 농민군을 조선 관리나 조선군에 인도하라는 것으로, 조선 관리에게 농민군의 처리를 모두 맡긴다는 뜻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인천 병참감은 대구 병참부 수비병이 성주 부근에서 생포한 18명의 농민군 처리에 대해 “동학당임을 자백하면 감사에게 인도하여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⁶⁸ 즉 조선 관리에게 인도하기 전에 일본군이 먼저 생포한 농민군을 심문하여 농민군이 ‘동학당’이라고 자백하면 그에 대해 극형으로 처리할 것을 정하고, 조선 관리에게 인계하여 처리를 실행하게 했다는 구도가 그려진다. 10월 28일 인천 병참감은 낙동 병참부 사령관에게 “동학당 참살은 귀관의 의견대로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1월 17일에는 대구 병참부 사령관에게 “동학당의 거두를 사로잡을 때는 엄중하게 호위하여 서울 공사관에 호송할 것. 거두가 아닌 자는 충분히 설유하고 감사에게 인도하여 감사가 개전시켜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⁶⁹

11월 26일 일본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이하 이노우에]⁷⁰는 어은동 병참감 후쿠하라[福原]⁷¹에게 “황해지역의 농민군 거두를 생포

68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3號 南部兵站監部』, 1894년 11월 25일.

69 방위연구소, 『南部兵站監部日誌』, 1894년 11월 17일.

70 井上馨은 10월 26일 오토리와 교체되어 조선 특명전권공사로 부임하였다.

71 11월 7일 인천에 있던 남부병참감부가 대동강 부근의 어은동으로 이전하였고 어은동 남부병참감은 福原이었다. 이토 남부병참감은 제1군의 병참감이 되었다.

하여 서류를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그 일에 노력하고 생포 혹은 압수한 후에는 취조를 위해 당 공사관에 호송하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 가운데 대원군, 이준·홍익хо은 왕비 측근이 보낸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압수할 것을 바란다”는 명령을 내렸다.⁷² 당시 황해지역 농민군과 대원군 등이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이노우에 공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생포한 농민군 거두를 서울의 일본 공사관으로 호송케 하여 일본 공사관에서 먼저 취조하고 그들의 서류를 검열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민군 지도자 처리방법에 관한 인천 병참감의 명령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포한 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처리는 대체적으로 ①조선 관리나 조선군에게 인도하여 처리, ②일본군이 심문한 후에 조선 관리나 조선군이 처리, ③일본군이 심문한 후에 일본군이 처리, ④농민군 지도자는 서울의 일본 공사관으로 호송하여 처리하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농민군 ‘토벌대’ 제19대대장 그 임무를 거의 마친 1895년 2월 5일 이후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西郎, 이하 미나미] 소좌가 전라도 나주에 임시재판소를 설치하여 각 지역에서 호송되어 온 농민군을 재판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 유형

- ① 일본군에 의한 심문과 처리(병참사령부로 호송한 후의 처리를 포함)
- ② 일본군이 심문한 후 조선 관리 혹은 조선군의 요청을 받아 일본군이 처리

⁷² 방위연구소, 『南部兵站監部日誌』, 1894년 11월 26일.

- ③ 일본군이 심문한 후 조선 관리 혹은 조선군이 처리
- ④ 전라도 나주의 임시재판소에서 처리
- ⑤ 서울 일본 공사관에 호송하여 内田 영사 회심에 의한 처리

⑤의 서울 일본 공사관에 호송하여 우치다[内田, 이하 우치다] 영사의 회심에 의한 처리는 ①·②·③·④와는 다소 다르다. 이노우에 공사가 조선 정부에 ‘회심’을 요청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895년 9월 20일 우치다 영사가 외무차관 하라케이[原敬]에게 보낸 「기밀 30호」와 「동학당 사에 부친 회심의 전말구보(東學黨事二付會審ノ顛末具報)」를 살펴보기로 한다.⁷³

「기밀 30호」

작년 이후 당국 법무아문에서 동학당사건을 심문할 때, 소관은 井上 특명전권공사의 명령에 따라 회심을 하기 위해, 시종 동 아문에 출정하였으며, 이번에 회심의 전말을 동 공사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 참고하시도록 그 보고서 옮긴 것 2통을 전하는 바이니 부디 보시기 바랍니다. 경구.

메이지 28년 9월 20일

「東學黨事件二付會審ノ顛末具報」

……작년 11월 중, 당국 법무아문에서 동학당사건의 심문을 개시하면서 소관은 각하의 훈령에 따라 조약의 규정에 기초하여 매회 법정 출석하여 당 관리와 회심을 행하여, 제1회는 같은 달 2일에 시작하였고, 다시 나가길 175일, 법정에 출정하는 일이 전후 31회, 피고인 취조한 것이 61명, 압수 증빙서류를 검열한 일이 실로 1496통에 이르고, 본

⁷³ 국사편찬위원회(198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07쪽.

년 4월 25일에 이르러 비로소 그 조사를 마치고 별지 1호와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끝냈음. 그리하여 본건 심리 방법은 우리 동학당 정토군대가 각 지방에서 흉도를 체포하여 우리 공사관을 경유하여 당 영사관에 송부할 때마다 당관에서 일단 조사를 행한 후에 2~3명의 속료를 동반하여 소관 스스로 해당 아문에 출장하여, 당국 관리가 입회한 후에 각 피고인의 심문을 행하였으며…….

우치다 영사는 이노우에 공사의 훈령에 따라 1894년 11월 2일부터 1895년 4월 25일까지 매회 법정에 출석하였으며, 조선의 법무아문 관리와 함께 회심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한 것은 31회이고, 취조한 피고인의 수는 61명이며,⁷⁴ 우치다 영사가 검열하여 압수한 서류는 1496통에 이르렀다. 한편 서울의 일본 공사관으로 호송된 생포 농민군은 최우선적으로 우치다 영사가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비로소 조선 정부의 법무아문에 보내졌고, 우치다 영사가 2~3명의 일본 관리를 동반하여 법무아문에 출장하여 조선 정부의 관리가 입회한 가운데 각 피고인의 심문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4년 11월 1일 농민군과 내통하여 농민군을 선동하였다고 보이는 이병희, 허엽을 감옥에 넣었다는 정보를 접한 이노우에 공사는 외무독판 김윤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회하였다.

⁷⁴ 内田 영사의 회심을 받은 농민군 61명 가운데, 47명에 대한 판결 선언은 1895년 3월 27일부터 4월 말쯤에 행해졌다. 5월의 판결 선언문에는 内田 영사의 서명이 없으며, 그 외 14명은 1895년 3월 27일 이전에 内田 영사의 회심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14명이 内田 영사의 회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료는 없다.

(B)……내일 駐漢城領事를 파견하여 조선의 承審官과 함께 두 사람을 심문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바라건대 귀 대신은 관계관에게 훈령하여 그 두 사람을 조사하는 일에 응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외무독판 김윤식은 “우리 법무와 경무, 양 아문에게 지시하였다”고 전하였다.⁷⁵

즉 앞서 기술한 ‘매회 법정에서 출석하여 당해 관리와 회심을 하여, 제 1회는 동월 2일에 시작하여’라는 우치다 영사의 보고에 비추어 볼 때, 11월 2일 우치다 영사가 이병휘, 허엽에 대해 회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치다 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농민군 관련자에 대한 최초의 회심이다.⁷⁶

한편 「동학관련판결선고서」의 죄명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생포된 농민군 재판에 적용한 법률은 조선의 『대전회통』의 형전으로 근대적인 법률이 아니었다.

3.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 관련법

전쟁에서 점령지 주민에 대한 재판은 군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청일 전쟁 당시, 전쟁 초부터 1895년 2월 중순쯤까지는 ‘적지 주민에 대한 재

⁷⁵ 국사편찬위원회(199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271쪽.

⁷⁶ 이후 회심에 처해진 자들은 61명이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東學黨事件二付會審ノ顛末具報」의 별지 제1호(외무성 사료관, 『寒國東學蜂起一件』)와 「동학관련판결선고서」(『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8권)가 있다.

판에 관한 일정한 제도가 없어 군사령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였다가, 189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대본영에서 공포한 「점령지 인민 처분령」에 따라 행해졌다.⁷⁷

전쟁과 관련된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법률인 『일청전역 국제법 전(日淸戰役 國際法 全)』은 1895년 2월 23일 완성되었다. 여기에서 청일전쟁 당시 군의 군율에 해당되는 『일청전역 국제법 전』의 「점령지 인민 처분령」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⁷⁸

77 有賀長雄(1896), 『日淸戰役 國際法 全』, 육군대학, 268~271쪽. 그러나 그 처분에 「점령지 인민 처분령」 반포 전후의 차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령지 인민 처분령」 발포 이전의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와 「점령지 인민 처분령」 내용의 비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점령지 인민 처분령」 반포 이전의 군율이었던 ‘군사령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진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1. 민사는 간섭하지 않으며, 인민이 出訴하여 우리의 재판을 요구할 때는 화해하도록 노력하고, 쌍방 모두 청국인이거나 한 쪽만 일본인이거나 논하지 않고, 그 토지의 법률, 관습에 따라 화해시킨다. 2. 刑事로 점령군대의 이해와 관계가 있을 때는, 즉 보통범죄의 경우는 적국의 형법에 비추어 처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는 일본 형법을 참작한다. 즉 청국 형률의 야만적인 것은 일본 형벌로 바꾸고, 피아를 대조하여 우리 형벌이 가볍고 혹은 단기인 것은 우리 형벌로 처분한다. 3. 刑事로 점령군대의 이해와 관계있는 것은, 즉 군사범죄는 모두 일본 법률에 따라 처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은 다음 2종류로 구별한다. ① 일본의 보통 형법 혹은 육군 형법에 成條가 있는 것은 그 성조에 따라 처단할 것. ② 일본의 보통 형법 혹은 육군 형법에 성조가 없는 것과 성조가 있으나 아군의 사정으로 보아 그 성조보다 더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는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율을 적용한다.

78 有賀長雄(1896), 위의 책, 276~281쪽.

제1조 청국 인민으로 군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육군 형법, 해군 형법 혹은 형법에 준거하여 처분한다.

제2조 청국 인민으로 다음에 기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⁷⁹

1. 전선, 철도, 조선, 병기의 공장, 船梁, 선실, 壘柵, 병기, 탄약, 기타 전쟁에 사용되는 물건 및 군사에 관한 도로, 교량, 삼림, 가옥, 선박, 기차, 수도 등을 파괴하거나 방화하여 파손한 자
5. 땅을 만들어 반항을 도모하고 기타 군대, 군함 함대, 군용 선박에 대해 항적하는 자

제3조 전조의 所犯은 정범, 중범, 교사자 및 그 행위를 한 자, 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자, 기타 예비 음모로 그친 자를 묻지 않고 정상에 따라 本刑(사형 - 필자주)을 科하거나 감등 처분할 수 있다.

제4조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처분하는 자는 범죄의 정상 혹은 時態의 필요에 따라 그 토지에서 행하는 법령, 관습을 참작하여 형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점령지의 질서, 안녕을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토지에서 행하는 법령, 관습 및 제국의 법령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제6조 앞의 조항에 대한 처분은 군사법원에서 행한다.

제7조 군사법원은 지방의 정황에 따라 그 토지에서 행하는 법령, 관습 혹은 제국의 법령을 참작하여 민사의 爭訟을 심리한다

제8조 군사법원은 군사회의 혹은 민정청을 사용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처분하게 한다.

제9조 군사법원의 처분 및 그 심리에 대한 수속, 집행, 기타 본령의 시행에 관한 세칙과 인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공

⁷⁹ 이 내용은 러일전쟁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篠田治策(1904), 『國際法雜紙』 제5권, 동경인쇄주식회사, 43~44쪽.

시하는 방법은 군사령관이 적당히 정한다.

「점령지 인민 처분령」(이하 「처분령」)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령」 가운데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제2조 제1항의 ‘전선, 철도, 조선(造船), 병기 공장 등을 파괴(毀壞)하거나 불태워 부수려는 자는 죽음에 처한다’와 제5항의 ‘당을 만들어 반항을 도모하고 기타 군대, 군함 함대, 군용 선박에 대해 항적하는 자’라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민중에 대한 탄압 상황을 그대로 법률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군이 철저하게 농민군을 탄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청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정보수단인 군용전선 보호와 전쟁터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참부의 보호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무리나 단체를 형성하여 일본군에 대항한 조선 민중에 대한 탄압 역시 「처분령」 제2조 제5항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미 저지른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처분령」의 제7조는 ‘군사법원은 지방의 정황에 따라 그 토지에서 행하는 법령, 관습 혹은 제국의 법령을 참작하여 민사의 소송(爭訟)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에서 일본군이 생포한 농민군 처리에 적용한 법은, 「동학관련 판결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고유의 법전인 『대전회통』의 법률이었다. 1895년 1월 6일 부산 수비대에서 행해진 농민군 거두인 집강 정홍섭의 처리가 ‘한법에 의한 참수’라는 기록에서도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다.⁸⁰

이외에 『일청전역 국제법 전』의 앞부분을 보면, 적지 주민에 대한 재

80 방위연구소, 『戰史編纂準備書類(58) 東學黨ノ狀況』, 1895년 1월 6일.

관을 하는 일본군 기관으로는 병참사령부, 행정청, 군법회의가 있었다.⁸¹ 그런데 이 세 기관은 일본군이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생포한 농민군을 처리한 기관과 거의 일치한다. 첫째, 생포 농민군을 처리했던 각 병참부나 병참감부가 그 첫째 기관에 해당되고, 둘째, 일본군이 조선 관리 혹은 조선병과 함께 조선의 각 지방관청에서 농민군을 처리하였는데, 각 지방관청은 행정청에 해당되며, 셋째, 제19대대장 미나미 소좌가 전라도 나주에 설치한 임시재판소가 군법회의에 해당된다. 조선의 경우, 이외에 서울의 일본 공사관에 보내어 일본영사의 회심으로 이루어진 처리가 추가된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 형태가 그대로 「처분령」으로 성문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처분령」과 『일청전역 국제법 전』의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일부 내용이 실제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탄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청일전쟁 당시 조선 민중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처분령」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은 점령지 아닌 점령지의 주민으로서 일본군의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은 일본군에게 전쟁의 현장이었고 조선 민중은 일본군에게 점령지의 주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청일전쟁’이 아니라 ‘조·청·일 전쟁’을 의미한다.

‘조·청·일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893년 12월 23일 조선의 정보·첩보 활동을 위해 조선에 파견된 군함 쓰쿠바와 오시마호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함대의 정보·첩보 활동은 1894년 3월 말까지 이루어졌는데,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

⁸¹ 有賀長雄(1896), 앞의 책, 267쪽.

의 20만 인구를 아사 혹은 항복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서울 부근의 식량 창고 등에 관한 정보가 일본 해군대신 사이고 쓰그미치[西郷徒道]와 해군 사령부장 무타쿠라 노스케[牟田倉之助]에게 상세하게 보고되었다.⁸² 이 시기에 이미 일본군이 조선을 청일전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당시의 선전포고를 들 수 있다. 즉 선전포고 가운데 전쟁 상대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본 정부의 청일전쟁 선전포고 초안 6점 가운데 1894년 7월 31일 각의의 승인을 받아 기안한 3점의 초안에 전쟁 상대국이 ‘청국 및 조선국’으로 기재되어 있다.⁸³ 이외에 방위연구소 자료인 『비밀 일청조사건 제정보첩(秘密 日清朝事件 諸情報綴) 1』(1894. 6~1894. 10, 육군성), 『비밀 일청조사건 제정보첩 2』(1894. 11~1894. 12, 육군성), 『비밀 일청조사건 제5사단 혼성여단 보고첩』(1894년, 육군성), 『청조사건 제상보첩(清朝事件 諸詳報綴) 1, 비밀 육군성』(1894. 6. 10), 『청조사건 제상보첩 2, 비밀 육군성』(1894. 11·12)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일·청·조사건,’ 즉 조선·청국·일본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7월 23일 이미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당한 후였고 조선군 또한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상태의 조선을 배제시킴으로써 전쟁에서 발생할 국제법 위반의 위험을 없애고자 하였고 조선 민중을 전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할 ‘문명국’의 질책으로부터 빠져나간 것이다.

⁸² 방위연구소, 『千代田文庫』 539 ; 방위연구소, 「米庫及舊水營之部」, 『鮮國警備事件軍艦筑波』, 3월 3일 ; 방위연구소, 『艦長外國諜報及び帝國公使領事報告……雜件』.

⁸³ 檜山幸夫(1997), 『日清戦争』, 講談社, 64쪽.

방위연구소의 또 다른 자료에는 농민군과의 많은 싸움이 ‘전투’로 기록되었는데, 이 또한 일본군이 농민군과의 싸움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⁸⁴ 당시 일본군이 농민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점이나 ‘포로’라는 전쟁용어를 사용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닌다.

이상에서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 실태와 일본군의 군율 비교를 통하여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청일전쟁의 일부’이자 ‘조·청·일전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즉 일본군의 사료에 나타나는 농민군 탄압에 대한 ‘전투’와 ‘일·청·조사건’ 등의 용어가 지니는 모순점이다.

당시 ‘문명전쟁’을 앞세웠던 일본군이 농민군 탄압에 대해 ‘전투’라는 전쟁용어를 사용한 것은 병력·조직력 등에서 일본군과 비슷한 수준의 농민군과의 싸움이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일본군이 농민군을 일방적으로 탄압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고자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전쟁’이 아닌 ‘사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일·청·조사건’에서 조선을 배제한 것은 일본의 조선침략에서 ‘비합법적’인 요소와 침략적인 사실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건’이라 부르면 규약이나 조약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청·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국제법 위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상호 모순되는 표현 속에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84 국사편찬위원회(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59·68·71쪽.

IV. 맺음말

후쿠자와로 상징되는 청일전쟁을 전후한 일본 지식인은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을 ‘문명’에서 구하였다. 후쿠자와는 당시의 세계를 상업과 전쟁의 세계로 규정하였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당시의 ‘문명’이라는 한정 속에 ‘전쟁’을 긍정하였다. 그에게 전쟁은 ‘문명’의 일대 구성 요소였다. 일본 지식인은 청일전쟁을 마치 문명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것을 ‘문명전쟁’이라 칭하였다.

당시 일본인에게 ‘문명’이란 ‘국제법’을 의미하였다. 1894년 7월 16일의 영일통상조약 조인은 일본 정부에 청일전쟁을 국제법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청일전쟁은 ‘정의’의 ‘문명전쟁’이어야 했다. 이러한 ‘문명전쟁’의 이데올로기는 아직 천황제적 이데올로기가 국민에게 침투되어 있지 않았던 청일전쟁 단계의 일본 민중 사이에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대외전쟁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청일전쟁을 이후의 전쟁과 비교하여 ‘문명전쟁’으로 인식하거나 주장하고 있는 일본 측에 대해 국제법 내지 관련법 등을 통하여, 특히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서 일본군의 ‘비합법적’(‘비문명적’)인 요소를 밝혀내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의 최초 조선 파견은 비합법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조선 파견 목적으로 강조한 것은 서울의 일본공사와 거류민 보호였다. 그런데 당시 서울에 있던 다른 열강은 본국에 파병을 요청하거나 특별히 문제로 삼은 흔적이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였으며, 파견된 일본군의 수 역시 그들이 주장한 일본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와 비교할 때 비합법적인 것이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 개전을 위해 조선의 병참화에 필요한 군용전선 가설대, 병참부, 도로수선대 등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부대의 파견 역시 조선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처음부터 각 부대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본래의 임무에서 점차 군용전선 보호와 항일 조선 민중·농민군의 탄압으로 그 임무가 확대되어 갔다.

조선 민중이 그러한 일본군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조선 민중의 초기 항일운동은 군용전선 절단, 전신주 쓰러뜨리기 등 비조직적이고 소규모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군은 청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정보 수단인 군용전선과 병참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농민군을 탄압하였다. 1894년 8월 28일 일본군은 경상도 함창현의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출동하였는데, 이것이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 목적의 최초 출동이었다. 일본군은 9월 22일 경상도 안동 의병 봉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 부산 수비대에 의한 병참선로 주변의 농민군 탄압을 가속해 갔다. 이처럼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일본군에 의해 촉발되어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전라도에서 전봉준 부대가 재봉기하기 이전에 경상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농민군 ‘진정’ 요청이 있기 이전에 이미 군용전선이 절단된 부근 마을은 그 책임을 물어 불태우고, 군용전선을 절단하는 조선인은 ‘반죽음’, ‘격살’, ‘타살’, ‘포획’, ‘살육’,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비합법적’인 시기의, ‘비무장’의 조선 민중에 대한 ‘비합법적인’ 학살 명령인 것이다.

10월 18일 조선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농민군 ‘진정’ 요청 역시 조선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 정부에 일본군의 원병을 요청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이뤄진 것이었다. 특히 7월 23일 일본군이 치밀한 계획하에 왕궁을 점령한 후에 조선군의 무기를 모두 압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0월 22일 인천 병참감은 병참총감에게 농민군 ‘토벌대’ 파견을 요청했고, 같은 날 병참총감은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열할 것을 요한다. 향후 모두 살육하라”는 살육 명령을 내렸다. 비전투요원인 ‘동학당’, 즉 조선 민중에 대한 학살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농민군 ‘토벌대’로 파견된 제19대대는 서울에서 전라도 서남단을 향하여 3로로 진군해 가면서 농민군을 탄압했다. 이때 일본군은 러시아의 간섭을 불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농민군을 러시아와의 접경지대와 정반대인 서남쪽으로 몰아붙이는 작전을 폈다. 제19대대의 ‘서남으로 몰아붙이기’ 작전에 서울수비대 제18대대의 1개 중대가 가담했고, 제19대대 진군 배후지였던 충청·경기도에는 용산·인천수비대의 3개 중대가 파견되었다. 또한 서울~부산 간의 각 병참부 수비병은 병참선로 주변을 담당하여 농민군이 병참선로를 넘어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로 도주하는 것을 막았다. 부산 수비대에서 파견된 부대는 전라·경상도 남단지역의 농민군을 탄압했으며, 쓰쿠마[筑波]·소코고[操江號]함대 육전대가 전라도 도서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가담하였다. 이중, 삼중의 탄압망으로 농민군을 탄압한 것이다.

서울 이남지역의 농민군 탄압에 투입된 일본군은 초기의 비합법적 농민군 탄압까지 포함하여 15개 중대로 총 3371명에 달하고, 그들에게 희생된 농민군 수에 대해 혹자는 사망자 5만 명, 혹자는 사상자 30만~40만

명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군의 생포 농민군 처리는, ① 일본군에 의한 심문과 처리(병참사령부로 호송한 후의 처리를 포함), ② 일본군이 심문한 후 조선 관리 혹은 조선군의 요청을 받아 일본군이 처리, ③ 일본군이 심문한 후 조선 관리 혹은 조선군이 처리, ④ 전라도 나주의 임시재판소에서 처리, ⑤ 서울 일본 공사관으로 호송하여 우치다영사 회심에 의한 처리로 나타난다.

일본의 전쟁 관련 최초의 근대적인 법률은 1895년 2월 23일 완성된 『일청전역(日淸戰役) 국제법(國際法) 전(全)』이다. 『일청전역 국제법 전』의 「점령지 인민 처분령」 제2조 제1항 ‘전선, 철도, 조선 병기 공장 등을 훼손(毀壞)하거나 불태워 부수려는 자’와, 제5항 ‘당을 만들어 반항을 도모하고 기타 군대, 군함 함대, 군용 선박에 대해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은 일본군이 조선 민중 탄압 행위를 그대로 성문화한 것이다. 「점령지 인민 처분령」의 제7조는 ‘군사법원은 지방의 정황에 따라 그 토지에서 행하는 법령, 관습 혹은 제국의 법령을 참작하여 민사의 소송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군이 생포한 농민군 처리는 「동학관련 판결선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고유의 법전인 『대전회통』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일청전역 국제법 전』은 앞부분에 ‘일본군의 적지 주민에 대한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병참사령부, 행정청, 군법회의’를 들었는데, 이 세 기관은 일본군이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생포한 농민군을 처리한 기관과 거의 일치한다. 각 병참부나 병참감부, 제19대대장인 미나미 소좌가 전라도 나주에 설치한 임시재판소, 각 지방관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생포한 농민군 처리에는 서울의 일본 공사관에 보내어 일본 영사의 회심 하에 이루어진 처리가 추가된다.

즉 조선에서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 과정이 그대로 일본 정부의 「점령

지 인민 처분령」 등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행한 민중학살 과정을, 일본군의 폭력성을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문명’을 꾀하며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의 농민군 학살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문명인의 나라’ 대열에 서고자 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기술하여 왔듯이 일본군의 최초 조선파견 및 조선의 병참화 과정, 선전포고, 농민군 탄압 과정, 생포 농민군 처리와 그와 관련된 법 등에서 당시 일본인이 환상을 품고 열중해 있었던 ‘문명’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비합법적’이고 ‘비문명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당시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일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국제법 준수’(‘문명’)는 후쿠자와의 ‘탈아론’이 대변하고 있듯이 당시 ‘문명의 나라’라 자칭하였던 유럽 열강에 대한 것으로, 유럽 열강 이외의 나라, 즉 당시 ‘문명의 나라’ 이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선의 병참화 과정·농민군 탄압 이유·농민군 탄압정책·생포 농민군 처리 방법과 「점령지 인민 처분령」 그리고 일본 정부의 선전포고 초안 6점 가운데 3점이 전쟁 상대국을 ‘청국 및 조선국’으로 기재한 것에서 당초 일본 정부가 ‘조·청·일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방위성 소장자료에 나타난 ‘일·청·조사건’이란 명칭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근대사에서 청일전쟁이 실질적으로는 ‘조·청·일전쟁’이었음을 의미한다.

1894년 10월 27일 가와카미 병참총감이 내린,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열할 것을 요한다. 향후 모두 살육하라”는 살육명령은 훗날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의 삼광작전 가운데 살광(모두 죽여라)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또한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자행된 일본군의 농민군 탄압은 ‘일본군의 해외 침략사에서 최초의 해외민중학살’로 1894년 11월 21일 제2군이 여순반도 점령 당시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에 앞선 것이다.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과제이다.



1. 연구경향 소개

19세기 말 갑오개혁은 조선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조선왕조의 지배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근대사회의 틀이 갖춰지게 됐다. 이는 조선국가가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첫 걸음이었다. 그런데 갑오개혁은 자체의 힘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1894년 6월 일본이 청과의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고 정권을 교체하였다. 이른바 일본의 ‘경복궁 점령사건’이 이후 갑오개혁을 촉발시켰다. 이 때문에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 이뤄진 타율적이고 종속적인 개혁인가, 아니면 조선의 주체적인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일제 강점하의 연구에서는 갑오개혁의 주체를 일본으로 설정하고 근대 개혁을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시각이었다. 일본 관련 학자들은 갑오개혁을 일본제국주의의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하였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1910년 한국 병합에 이르러서야 그 성과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田保橋潔, 1940).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이후 남과 북의 역사학계는 각기 자신들의 국가체제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근대시기 역사를 연구해 왔다.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북한 학계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근대사를 재검토하였다.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을 제기한 데 이어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에 대해 재평가했으며, 이제 갑오개혁을 주체적인 개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한국 학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갑오개혁이 일본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인 간섭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의 개화와 세력

이 독자적인 개혁논리를 가지고 개혁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았다(柳永益, 1975).

초기에는 갑오개혁 시기를 좁게 보아 개혁을 담당한 군국기무처가 설립되고 활동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는 너무 협소한 구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주한 일본공사 파견 이후 실시된 2차 개혁과 1895년에 발생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직전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갑오개혁은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는 군국기무처 개혁기(1894. 6. 21~11. 20, 이하 음력 기준), 2기는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간섭과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시기(1894. 11. 21~1895. 윤 5. 14), 3기는 고종 친정 강화기 혹은 주도권 강화와 개혁방향 논쟁기(윤 5. 15~8. 19), 4기는 을미사변 이후 3차 개혁기(1895. 8. 20~12. 28, 양력 1896. 2. 11)라고 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어떤 주도세력을 설정하고 개혁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일제가 청일전쟁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조선 내정에 소극적으로 간섭한 1기에 주목해 갑오개혁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일본의 경복궁 점령사건과 조선의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의 성립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였다. 갑오개혁의 담당자들은 단지 일본의 후원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신·구 권력관계의 공백 속에서 ‘일시적 균형’이라는 조건을 이용해 등장했다고 보았다(『조선전사』). 갑오개혁의 자율성을 한층 강조한 것이다. 또한 북한 학계에서는 흥범 14조 등 일본의 간섭과 박영효 등 친일분자들의 활동이 강화된 시기를 갑오개혁에서 분리하여 보았다. 따라서 북한 학계는 갑오개혁 2기 이후의 개혁정부를 친일 매관정부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갑오개혁의 전개과정을 전후로 분리시켜 이해하려고 했으므로, 북한 학계에서는 갑오개혁 정치세력의 변화와 개혁 내용의 단계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의 연구가 나타났다. 하나는 갑오개혁이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와 보호국화 정책으로 인해 종속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갑오개혁이 종래 조선 사회를 크게 개혁하여 근대 사회, 근대국가를 지향했으나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연구는 정치·외교사적인 접근을 통해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을 강조하거나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허용한 갑오개혁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조선의 독자적

개혁과 민중사의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 시각에서 일본과 함께 1894년 농민전쟁을 탄압한 갑오개혁 정부야말로 외세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근대 민족국가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고 낮게 평가하였다. 후자는 갑오개혁의 제반 개혁사업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로 전개되었다. 즉 국가제도 개혁으로서 행정조직과 지방제도의 변화, 사회개혁으로서 신분제 개혁과 근대적 재판제도 실시, 재정·화폐제도의 근대화, 농업에서의 지주제 발달과 유통경제의 변화, 상업 조직의 변화와 무역의 확대 등을 다루었다. 또한 갑오개혁의 개혁성과 관련해 유길준·박영효 등 주도 세력의 개혁사상을 다루기도 하였다(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갑오개혁과 이후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두 경향의 연구가 대조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논리를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후자의 견해에서도 사회 내부적인 개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취하면서, 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적인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침략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갑오개혁을 다룰 때 어떤 견해를 취하든 일본이라는 외세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 역사 발전 속에서 갑오개혁의 방향과 단계적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갑오개혁의 내적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왕현중, 2003).

최근에는 그동안 갑오개혁 연구에서 소홀했던 갑오개혁기의 국제적 환경과 주변 열강의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실 갑오개혁은 청일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벌어진 청일전쟁은 일본에 제국주의화, 중국에 반식민지화, 조선에는 식민지 종속화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가져온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서들이 전쟁의 당사자인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나왔다.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한국사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외교사 내지 국제관계사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한국 내에 남아있는 청일전쟁 관련 자료의 부족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지만, 독자적인 연구 시각과 관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외국 학계의 연구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외교사와 관련된 기본 문헌 해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용구·하영선, 1996).

2. 사료 해제 일반

청일전쟁에 관한 사료 편찬은 1945년 이후 메이지시기 일본제국주의 당국의 관찬 사료, 특히 외교문서와 군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주요 정치가들의 서한과 문서 등 사찬 사료집 간행도 이어졌다. 종합적으로 정리된 메이지 시기의 외교문서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대외 침략 사상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군이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국회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에 소장된 구한국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관찬 사료를 목록화하고 일부 문서를 해제해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주로 개항 통상 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서구 열강 및 청·일 간의 국제통상관계가 해명되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개화기 주요 인물의 문집을 간행하였다(갑오개혁에서 관료로서 활약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박정양 등의 문집 참조). 같은 시기에 간행된 『고종·순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는 『구한국판보』와 더불어 갑오개혁의 추진 의도와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자료들이다.

한편 갑오개혁에 관한 1차 원본 사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수만 종의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주로 1894년부터 대한제국시기에 작성된 것이고, 갑오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제도 전반에서 저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뤄진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헤아려볼 수 있게 해준다. 갑오개혁의 중추기관이던 군국기무처와 내각회의 및 각 중앙행정부서가 작성한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당시 개혁의 실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문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개혁정책의 시행과 적용 사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지방사회와 국민들의 대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규장각 소장 갑오개혁 자료들은 목록상으로 정리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갑오개혁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소개되거나 사료집으로 간행되지 못한 채 다수의 자료들이 아직도 발굴되지만 기다리고 있다.

1980년대 말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비장하고 있던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사진판, 추후 원문과 번역본으로 간행)을 공개하였다. 서울 주재

일본공사와 공사관 관련 인사들이 외무성과 주고받은 서한과 전보에는 당시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동향에 대한 1차적인 조사와 보고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메이지시기 『일본외교문서』와 함께 당시 외교정략의 실상과 이면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당시 국내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외교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던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었다.

이밖에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사료총서의 간행이나 한·일 교류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신문자료, 유학생 관련 자료의 소개 등이 갑오개혁 연구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청일전쟁에 관한 자료는 한국에서 별도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 학계에서 청일전쟁에 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료 발굴에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해야 한다.

3. 사료 해제 및 목록

1) 사료 목록 및 해제집

- 李用熙(1966), 『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外國編)』, 서울: 한국국회도서관.
- 全海宗(1966),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 서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金容九(1972), 「在日本韓末外交史關係文書目錄」, 『한국국제정치학회논총』 11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 金容九 編(1979), 『中蘇國際法理論 및 러시아, 蘇聯의 韓末外交史研究: 文獻目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일관계사연구회편(1993), 『韓日關係史論著目錄』, 서울: 玄音社.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66), 『한국근대외교사연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김원모(1984), 『한국근대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2) 한국에서 간행된 조선 정부 외교사료

-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1967), 『舊韓國外交文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제2권 「日案(2)」, 제3권 「日案(3)」, 제9권 「淸案(2)」, 제11권 「美案(2)」, 제13권 「英案(1)」, 제15권 「德案(1)」, 제17권 「俄案(1)」, 제19권 「法案(2)」 등의 자료가 관련됨.
-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1973), 『統署日記』- 舊韓國外交文書關係附屬文書, 제5권,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1974), 『外衙門日記』- 舊韓國外交文書關係附屬文書, 제6권,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國史編纂委員會 編(1986~200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8冊(1~11책: 번역본, 12~26책: 등사본, 27~28책: 목차색인집),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國史編纂委員會 編(1988~199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0冊(사진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國史編纂委員會 編(1968~1969), 『承政院日記』 15冊(高宗 編),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國史編纂委員會 編(1986), 『高宗純宗實錄』 3冊, 서울: 探求堂.
- 서울대 奎章閣 編(1967~1972), 『日省錄』(고종편) 44冊, 서울: 서울대학교 古典刊行會.
- 金容九 編(1995),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 韓末外交關係 日本의 主要未刊文書』 전 30권, 서울: 亞細亞文化社.

3) 조선 정부 및 개인 기록물

- 兪吉濬(1895), 『西遊見聞』, 日本 東京.
-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1971), 『兪吉濬全書』(I-IV), 서울: 일조각.
- 金弘集(1976), 『金弘集遺稿』,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黃玟(1955), 『梅泉野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黃玟, 『梧下記文』 7冊(未刊行 文書).
- 金允植(1971), 『續陰晴史』,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金允植(1980), 『金允植全集』 2冊, 서울: 아세아문화사.
- 魚允中(1978), 『從政年表』, 『魚允中全集』, 서울: 아세아문화사.
- 李沂(1955), 『海鶴遺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朴定陽(1984), 『朴定陽全集』 6冊, 서울: 아세아문화사.
- 『大朝鮮留學生親睦會規則』, 『親睦會會報』(1-6), 東京: 大朝鮮留學生親睦會, 建陽 1(1896).
- 『俞致衡日記』(未刊行 文書).
- 鄭喬(1974), 『大韓季年史』,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尹致昊(1973~1989), 『尹致昊日記』,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國史編纂委員會 編(1974), 『東學亂記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舊韓國官報』, 서울: 아세아문화사(1973).
- 『議案』,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 『大韓帝國官員履歷書』, 서울: 探求堂(1972).
- 『韓末近代法令資料集』 9冊, 서울: 국회도서관(1970~1972).
- 『議奏 勅令(上)』,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1991).
- 『詔勅: 法律』,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1991).
- 『章程存案』, 서울대 규장각 소장도서(奎 17237), 『議案』(奎 20066).
- 『告示』(奎 16026, 內閣編錄課), 『縉紳內案』(奎 19530).
- 『上疏存案』(奎 17232).
- 『結戶貨法稅則烈』, 『八道甲午條結戶都案』(奎 17977).
- 『約定書』(奎 23014, 奎 23072 - 奎 23085).
- 「刑法艸案」, 『法史學研究』 제16·17호.
- 『東學關聯判決文集』, 서울: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1994).
-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1996),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책, 서울: 사운연구소.
- 『通商彙纂』(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1987).
- 『舊韓末 條約彙纂: 1876~1945』(上,中,下), 서울: 국회도서관(1964~1965).
- 杉村濤(1932), 『明治二十七二十八在韓苦心錄』, 東京: 勇喜社; 한상일 역(1995), 『서울에 남겨진 꿈』,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뫼텔주교일기(I, II)』,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1986, 1993).

4. 연구서 및 연구논문

1) 청일전쟁 및 갑오개혁 관련 연구서

- 李瑄根(1937), 『朝鮮最近世史』,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 李瑄根(1963), 『韓國史(現代編)』, 서울 : 진단학회.
- 申國柱(1965), 『近代朝鮮外交史』, 서울 : 탐구당.
- 申基碩(1967), 『朝鮮外交史研究』, 서울 : 일조각.
- 金雲泰(1970), 『朝鮮王朝行政史』, 서울 : 일조각.
- 金容燮(1975), 『韓國近代農業史研究』(1984, 증보판, 상, 하), 서울 : 일조각.
- 國사편찬위원회 편(1976), 『한국사』(제17권), 서울 : 탐구당.
- 崔文衡(1979), 『列強의 東아시아政策』, 서울 : 일조각.
- 孫禎睦(1982),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研究』, 서울 : 일지사.
- 孫禎睦(1982),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 開港場 開市場 租界 居留地』, 서울 : 일지사.
- 이광린(1984), 『韓國史講座 : 近代編』, 서울 : 일조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4),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正起(1985), 『淸日戰爭과 韓日關係』, 서울 : 일조각.
- 柳永烈(1985), 『開化期の 尹致昊 研究』, 서울 : 한길사.
- 한국사연구회 편(1985),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 일본의 대한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 일조각.
- 愼鏞廈(1987), 『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서울 : 일지사.
- 權錫奉(1986), 『淸末對朝鮮政策史研究』, 서울 : 일조각.
- 朴宗根 지 · 박영재 역(1989), 『淸日戰爭과 朝鮮』, 서울 : 일조각.
- 김영작(1989),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 사상과 현실』, 서울 : 청계연구소.
- 金容九(1989, 1990), 『世界外交史』(상, 하),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董德模(1990), 『朝鮮朝의 國際關係』, 서울 : 박영사.

- 柳永益(1990), 『甲午更張研究』, 서울: 일조각.
- 吳斗煥(1991), 『韓國近代貨幣史』, 서울: 한국연구원.
- 한국역사연구회(1991~1997), 『1894년 농민전쟁연구(1~5)』, 서울: 역사비평사.
- 최문형 외(1992), 『명성황후시해사건』, 서울: 민음사.
- 柳永益(1992), 『韓國近現代史論』, 서울: 일조각.
- 柳永益(1992), 『韓國社會發展史論』, 서울: 일조각.
- 金容燮(1992),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서울: 일조각.
- 李光麟(1993), 『開化期의 人物』,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愼鏞廈(1993), 『東學과 甲午農民戰爭』, 서울: 일조각.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1993),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서울: 한울.
- 역사학연구소(1994),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서울: 거름.
- 한국사연구회 편(1995),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 지식산업사.
- 국사편찬위원회(1995), 『한국사론 2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金洋植(1996), 『近代韓國의 社會變動과 農民戰爭』, 서울: 신서원.
- 김용구·하영선 공편(1996), 『한국 외교사 연구』, 서울: 나남출판.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6), 『청일전쟁(1894~1895)의 재조명』,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 河元鎬(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서울: 신서원.
- 김용 섭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1997),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서울: 지식산업사.
- 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1998), 『한국근대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서울: 신서원.
- 김봉렬(1998), 『兪吉濬 開化思想의 研究』,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羅愛子(1998),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 韓哲昊(1998), 『親美開化派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 具仙姬(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서울: 혜안.
- 국사편찬위원회 편(1999), 『한국사 39 - 제국주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2000), 『한국사 40 -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과천: 국사편

찬위원회.

- 이영호(2001),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민원(2002),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서울 : 국학자료원.
- 김세민(2002), 『한국 근대사와 만국공법』, 서울 : 경인문화사.
- 송찬섭(2002), 『조선후기 환곡제 개혁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배향섭(2007),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서울 : 경인문화사.
- 왕현중(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 역사비평사.
- 정용화(2004), 『문명의 정치사상 : 유길준과 근대한국』,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이영호(2004), 『동학과 농민전쟁』, 서울 : 혜안.
- 장성학(2006),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 중일전쟁의 국제정치와 군사전략』, 서울 : 리북.
- 강상규(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국 일본』, 서울 : 논형.

2) 청일전쟁 및 갑오개혁 관련 연구논문

※ 일본·미국 등 해외 학계의 한국인 연구성과도 많이 있으나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록하였음

- 千寬宇(1954), 「甲午更張과 近代化」, 『思想界』 2권 9호.
- 金昌坤(1959), 「甲午更張推進機構의 成立過程」, 『史叢』 4, 고려대학교 사학회.
- 權錫奉(1963), 「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 『歷史學報』 21, 역사학회.
- 朴英宰(1972), 「淸日戰爭과 日本外交 : 遼東半島 割讓問題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54.
- Lew, Young Ick(1972), “The Kabo Reform Movement : Korean and Japanese Reform Effort in Korea, 1894,” Ph D. diss., Harvard University.
- 朴英宰(1973), 「淸日講和와 美國」, 『歷史學報』 59.
- 金源模(1974), 「美國의 對韓 居中調停(1882~1905)」, 『史學志』 8, 단국대학교 사학회.

- 金容燮(1974), 「갑신·갑오개혁기 개화파의 농업론」, 『東方學志』 15.
- 柳永益(1979), 「甲午更張을 圍繞한 日本의 對韓政策: 甲午更張 他律論에 대한 修正的 批判」, 『歷史學報』 65.
- 田鳳德, 「朴泳孝와 그의 上訴研究序說」, 『東洋學』 8, 1978.
- Lew, Young I. (1979), “Minister Inoue Kaoru’s Mission to Korea, 1894 ~ 1895: An Abortive Japanese Attempt to Control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 University of Washington.
- 李陽子(1981), 「淸의 對朝鮮政策과 袁世凱」, 『釜山史學』 5.
- Lew, Young I. (1981), “Korean-Japanese Politics behind the Kabo-Ulmi Reform Movement, 1894~1896,”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3, University of Washington.
- 崔文衡(1982), 「淸日戰爭 以後의 韓國과 美國」, 『韓美修交 100年史』,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 鄭昌烈(1982),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的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창작과 비평사.
- 權錫奉(1984), 「淸日戰爭 以後의 韓淸關係研究(1894~1898)」, 『淸日戰爭을前後한 韓國과 列強』,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吳斗煥(1984), 「甲午改革期の 賦稅「金納化」에 관한 연구」, 『經濟史學』 7.
- 吳斗煥(1984), 「甲午經濟改革의 구조와 성격」, 『(仁荷大)論文集』 3집.
- 金正起(1984), 「甲午更張期 日本의 對朝鮮經濟政策 - 日本의 借款政策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47.
- 金源模(1984), 「袁世凱의 韓半島 安保策(1886)」, 『東洋學』 16.
- 李求鎔(1984), 「朝鮮에서의 唐紹儀의 活動과 그 役割 - 淸日戰爭 前·後期를 中心으로」, 『藍史 鄭在覺博士 古稀紀念 東洋學論叢』.
- Lew, Young I (1984), “청일전쟁기간(淸日戰爭期間) 일본의 대한내정(對韓內政) 개혁기도(改革企圖): Minister Inoue Kaoru and the Japanese Reform Attempts in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亞細亞研究』 27-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柳永益(1984), 「淸日戰爭中 日本이 對韓 侵略政策: 井上馨 公使의 朝鮮保護國 化 企圖를 中心으로」,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正起(1985), 「淸日戰爭 前後 日本의 對朝鮮經濟政策」, 『淸日戰爭과 韓日關係』, 일조각.
- 慎鏞廈(1985), 「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廢止」, 『奎章閣』 9.
- 尹貞愛(1985), 「韓末 地方制度 改革의 研究」, 『歷史學報』 105.
- 李炳天(1985), 「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洪순권(1985), 「개항기 객주의 유통지배에 관한 연구」, 『韓國學報』 39, 일지사.
- 李潤相(1986), 「日帝에 의한 植民地財政의 形成過程 - 1894~1910년의 歲入 構造와 徵稅機構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1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최덕수(1986),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관」, 『史叢』 30.
- 金容燮(1988), 「近代化過程에서의 農業改革의 두 方向」, 『韓國資本主義性格 論爭』, 대왕사.
- 최덕수(1988), 「박영효의 내정 개혁론 및 외교론 연구」, 『民族文化研究』 21, 고려대학교.
- 최덕수(1988), 「淸日 露日戰爭期 日本人의 朝鮮論 研究: 福澤諭吉, 原敬, 近衛篤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진상(1989), 「갑오농민전쟁 과정에서의 청일전쟁의 의미」, 『사회와 역사』 15.
- 李相燦(1989), 「1894,5년 地方制度 개혁의 方向 - 鄉會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震壇學報』 67.
- 都冕會(1989), 「甲午改革 이후 貨幣制度의 문란과 그 영향(1894~1905)」, 『韓國史論』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주진오(1989), 「한국근대 집권, 관료세력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역사와 현실』 장간호, 한국역사연구회.
- 鄭在貞(1989), 「井上馨 - 明治政府에서의 役割과 朝鮮侵略의 實踐」, 『國史館 論叢』 1.
- 田美蘭(1989),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관한 연구」, 『梨大史苑』 24·25 합집.
- 신복룡(1989), 「淸朝의 對韓外交政策 研究 - 1876~1910」, 『國史館論叢』 5.

- 金正起(1989), 「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示威투쟁」, 『한국사연구』 67.
- 崔震植(1990), 「韓國近代의 穩健開化派 研究 - 金允植 金弘集 魚允中의 思想과 活動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徐榮姬(1990), 「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 『國國史論』 23.
- 河元鎬(1990), 「개항후 국가변동에 대하여(1976~1894)」, 『이우성교수정년기념논총 -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하)』, 창작과비평사.
- 왕현중(1991), 「19세기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 鄭昌烈(1991), 「甲午農民戰爭研究 - 全瑋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泰雄(1991), 「1894; 1910년 지방세제의 시행과 일제의 조세수탈」, 『韓國史論』 26.
- 박명규(1991), 「한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 19세기 후반 정치변혁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潤甲(1991), 「開港 - 1894년의 農民의 商品生産의 發展과 甲午農民戰爭 - 경북지역의 농업변동을 중심으로」, 『啓明史學』 2.
- 유정현(1992), 「1894~1904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과 이서충 동향」, 『震檀學報』 73.
- 왕현중(1992), 「韓末(1894~1904) 地稅制度의 改革과 性格」, 『韓國史研究』 77.
- 柳永益(1992), 「甲午更張과 社會制度改革 - 改革主體, 改革案 및 更張의 歷史의 意義에 관한 通說의 再檢討」,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 柳永益(1992), 「『西遊見聞』과 俞吉濬의 保守的 漸進改革論」, 『韓國近現代史論』, 일조각.
- 韓哲昊(1992), 「甲午更張 中(1894~1896) 貞洞派의 改革活動과 그 意義」, 『國史館論叢』 36.
- 吳瑛燮(1992), 「甲午改革 및 改革主體勢力에 대한 保守派 人士들의 批判的 反應 - 그들의 上疏文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36.

- 宋讚燮(1992), 「甲午改革期 結稅制度的 改革과 還穀制의 變化」, 『역사연구』 창간호.
- 김필동(1992), 「갑오경장 이전 조선의 근대적 관제 개혁의 추이와 새로운 관료 기구의 성격」, 『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문학과지성사.
- 柳永益(1992), 「淸日戰爭 및 三國干涉期 井上馨 公使의 對韓政策 : 閔妃弑害原因論」, 『明聖皇后 弑害事件』, 민음사.
- 柳永益(1992), 「甲午, 乙未年間(1894~1896) 朴泳孝의 改革運動」, 『國史館論叢』 36, 국사편찬위원회.
- 宋京垣(1993), 「韓末 安駟壽의 政治 經濟活動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鄭求先(1993), 「甲午改革期 官吏任用制度 改革에 관한 一考察」, 『慶州史學』 12.
- 李離和(1993), 「폐정개혁과 갑오개혁의 연관성 규명」,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 주진오(1993), 「개화파의 성립과정과 정치·사상적 동향」, 『1894년 농민전쟁 연구(3)』, 역사비평사.
- 崔德壽(1993),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 도면희(1993), 「근대 - 자본주의사회 기점으로서의 갑오개혁」, 『역사와 현실』 9.
- 全遇容(1993), 「개항기 한일자본가의 형성과 성격」, 『國史館論叢』 41.
- 鄭昌烈(1994),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의 관계」, 『인문논총』 5,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鄭昌烈(1994), 「근대국민국가 인식과 내셔널리즘의 성립과정」, 『한국사 11 - 근대민족의 형성 1』, 한길사.
- 金正起(1994), 「1876~1894년의 請의 朝鮮政策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진오(1994), 「갑오개혁의 새로운 이해」, 『역사비평』 26, 역사비평사.
- 주진오(1995), 「19세기 후반 開化 改革論의 構造와 展開」,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왕현중(1995), 「갑오정권의 개혁정책과 농민군대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 朴英宰(1995), 「1890년대 일본의 외교와 외교론 - 무츠 무네미쓰(陸奥宗光)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0.
- 李培鎔(1995), 「開化思想·甲申政變·甲午改革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史論』 25, 국사편찬위원회.
- 李培鎔(1995), 「開化期 明成皇后 閔妃의 政治的 役割」, 『國史館論叢』 66.
- 李憲祚(1995), 「갑오·을미개혁기의 산업정책」, 『韓國史研究』 90, 한국사연구회.
- 韓哲昊(1995), 「민씨척족정권기(1885~1894) 내무부의 조직과 기능」, 『韓國史研究』 90.
- 하원호(1995), 「개항기 경제구조 연구의 성과와 과제」, 『韓國史論』 25, 국사편찬위원회.
- 韓哲昊(1996), 「민씨척족정권기(1885~1894) 내무부 관료 연구」, 『아시아문화』 1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韓哲昊(1996), 「俄館播遷期 貞洞派의 개혁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
- 柳永益(1996), 「大院君과 淸日戰爭」, 『淸日戰爭의 再照明』, 翰林大學校 出版部.
- 李潤相(1996), 「1894~1910년 財政制度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王賢鍾(1996), 「甲午改革期 官制改革과 官僚制度의 變化」, 『國史館論叢』 68.
- 鄭銀景(1996), 「甲午改革의 鄉會制度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柳承烈(1996), 「韓末·日帝初期 商業變動과 客主」,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항섭(1996), 「東學農民戰爭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相燦(1996), 「1896년 義兵運動의 政治的 性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韓哲昊(1996), 「아관파천기 정동파의 개혁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

- 韓哲昊(1996), 「1884~1894년간 시무개화파(時務開化派)의 개혁구상」, 『史叢』 45-1.
- 具仙姬(1996), 「갑신정변 직후 反淸政策과 청의 袁世凱 파견」, 『史學研究』 51.
- 具仙姬(1997), 「淸日戰爭 直後 朝鮮 ‘屬邦’ 問題와 朝·淸關係」, 『史學研究』 54.
- 金泰雄(1997), 「開港前後 - 大韓帝國期 地方財政改革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賢淑(1997), 「구한말 고문관 데니(O.N.Denny)의 『淸韓論』 분석」, 『梨花史學研究』 23·24 합집.
- 李泰鎭(1997), 「서양 근대 정치제도 수용의 역사적 성찰 - 開港에서 光武改革까지」, 『震檀學報』 84.
- 金正起(1997), 「朝鮮 不平等條約의 間行權·漢城開棧權 분석」, 『金容燮教授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3 -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지식산업사.
- 전정해(1997), 「近代朝鮮의 對淸政策과 열강의교」, 『建大史學』 9.
- 都冕會(1998), 「1894~1905년간 刑事裁判制度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徐榮姬(1998), 「光武政權의 국정운영과 日帝의 국권침탈에 대한 대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殷丁泰(1998),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金恩珠(1999), 「韓末 鄭喬의 政治活動과 政治改革論」,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金京美(1998), 「甲午改革 前後 教育政策 展開過程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賢淑(1999), 「韓國 近代 西洋人 顧問官 研究(1882~190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泰鎭(1999), 「1894년 6월 靑軍 朝鮮 출병 결정과정의 眞相 - 조선정부 자진

요청설 비판], 『韓國文化』 24.

- 최석완(1999), 「일본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청일전쟁」, 『東洋史學研究』 65.
- 韓哲昊(1999), 「갑오개혁 주도세력의 현실대응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1.
- 韓哲昊(2000), 「갑오개혁의 성격」, 『東洋學』 30.
- 韓哲昊(2000), 「俞吉潯의 生涯와 思想」, 『韓日關係史研究』 13.
- 韓哲昊(2000), 「俞吉潯의 개화사상서『西遊見聞』과 그 영향」, 『震壇學報』 89.
- 全寅永(2000), 「中日甲午戰爭 前後 中國의 朝鮮認識 變化」, 『國史館論叢』 94.
- 왕현중(2001), 「갑오개혁기 개혁관료의 상업육성론과 경제정책」, 『韓國學報』, 2001년 겨울호, 105.
- 왕현중(2001), 「19세기말 개혁관료의 서구정체인식과 입헌문제」, 『韓國史思想史學』 17.
- 왕현중(2001), 「갑오개혁기 권력구조 변화와 군주권의 위상」, 『東方學志』 114.
- 韓哲昊(2001), 「開化期(1887~1894) 駐日 朝鮮公使의 과건과 외교활동」, 『韓國文化』 27.
- 배항섭(2001), 「개항기의 대청의식과 그 변화」, 『韓國思想史學』 16.
- 韓哲昊(2004), 「갑오개혁기(1894~1896) 주일 조선공사의 과건과 외교활동」, 『白山學報』 70.
- 구선희(2005),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전통적 조공관계의 성격」, 『史學研究』 80.
- 殷丁泰(2005),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歷史學報』 186.
- 具仙姬(2006), 「청일전쟁의 의미 - 조·청 ‘속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 嚴燦鎬(2006),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25, 한일관계사학회.
- 김기주(2006), 「갑오개혁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역사학연구』 27, 湖南史學會.

- 김건우(2006), 「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화」, 『古文書研究』 29, 韓國古文書學會.

5. 북한 학계의 연구논문

1) 연구서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58), 『조선통사(하)』, 조선로동당출판사(오월 번각, 1989).
- 리나영(1958), 『조선민족해방투쟁사』, 조선로동당출판사.
- 전석담 · 최윤규(1959), 『조선사회경제사(19세기 후반기~일제통치 말기)』,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윤규(1959), 『조선사회경제사(19세기 중엽~194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1960), 『조선에서의 부르조아민족형성에 관한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1962), 『조선근대혁명운동사』, 사회과학원출판사(한마당 번각, 1988).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편(1964), 『김옥균』, 사회과학원출판사(역사비평사 번각, 1990).
- 사회과학출판사 편(1970), 「조선에서 부르조아혁명운동」(허중호 · 오길보 · 김영숙 · 리중현 지음), 『역사과학논문집』 1.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0), 『조선전사 - 13 근대편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중현(1984), 『근대조선력사』, 사회과학출판사.
- 원종규(1991), 『조선정치제도사(3)』(제2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리중현(1991), 『조선부르조아민족운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원종규(1991),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근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역사편집부 편(1994),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 연구논문

- 「조선에서의 부르조아 민족형성에 관한 토론회」, 『력사과학』 1957년 1호.
- 「학계소식 : 우리나라 부르조아 민족운동 발생에 관한 학술토론회」, 『력사과학』 1957년 1호.
- 리유백(1961), 「청일전쟁 도발과정을 통하여 본 일본의 조선침략정책 - 일본 침략자들의 소위 《개화적 사명》의 본질」, 『력사과학』 1961년 4호.
- 리유백(1961), 「1894년 《갑오개혁안》의 채택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년 6호.
- 역사과학편집부(1961), 「토론 : 1894년 ‘갑오개혁안’의 채택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년 6호.
- 탁병채(1963), 「갑오경장의 역사적 전제조건」, 『력사과학』 1963년 6호.
- 박인근(1964), 「갑오경장의 역사적 전제조건(력사과학 1963년 6호)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력사과학』 1964년 3호.
- 리종현(1979), 「우리나라에서의 1894년(갑오) 부르조아개혁 (1, 2)」, 『력사과학』 1979년 1·2호.
- 리종현(1980), 「우리나라에서 부르조아개혁운동의 발생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과학』 1980년 4호.
- 원종규(1988), 「1894년(갑오)개혁 때 국가정치기구의 개편」, 『력사과학』 1988년 3호.
- 윤선중(1997), 「19세기 노비제도의 법적 폐지에 관한 역사적 고찰」, 『력사과학』 1997년 3호.
- 박학철(2000), 「갑오개혁 후 근대적 군사기구체계의 수립활동」, 『력사과학』 2000년 2호.

※ 청일전쟁에 관한 일본측 자료와 연구목록은 227쪽, 청일전쟁에 관한 중국측 자료와 연구목록은 4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The Political Strategies by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Political Tactics of Choson Gabo Reform's Government and Subordination toward Japanese Imperialism

Wang, Hyeonj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how Gabo Reform Government confronts with the Japanese policy for protection and what kind of the phrase in Choson is subordinated by Japanese during 1894~1895.

Firstly, I inquired into the basic factor in the domestic politics that the Min lineage's regime permitted to intervene the outside foreign powers when China and Japan started to intervene in Choson domestic matters at the cause of Donghak Peasant Movement's outbreak on May, 1894. I explained about that the behavior of Choson bureaucrat and King Kojong besides was

unfitted on these days. But I cited that Kim HongJip asserted to put to that Choson have acquired a national independence's right by the international guarantee among the Great powers on May 25, 1894.

But I doubted that Japanese government controlled the inner and outer situation around the Choson by herself with political and military invasion. I thought that Japan insisted on various obstinacy that Choson was called with tributary state, or a co-interference with China in order to breaking out Sino-Japanese War. But practically Japanese intension were to be ended in failure. Finally I explained these factors of diplomatic dispute and controversy about that Japanese Government had seized control of Korean royal palace Kyōngbok-kung, the coup d'état on July 23.

And then the Gabo Reform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liberative Council (Gunguk Gimucheo) and pushed aggressive reform policy on June 1894. Although the Gabo reform government was not founded by himself, I emphasized that they were eager to establish their own independence for making decision of reform policy. Nevertheless, Japan insisted on signing a secret Provisional Agreement (Chamjōng haptong chogwan) and a Japanese-Korean Treaty of Alliance (IL-Han yangguk maengyak) from July to Aug 1894. Also I emphasized that these treaties was not a official treaty and conformed on the revel of the cabinet of two countries, but these treaties were possible to compel Gabo Reform Government to

be obedient according to some variational situations.

On other side, the Gabo Reform Government felt obliged to be reliance on Japanese army and declined to be affected by Japanese power when they confronted with a challenge of Taewōngun's movement for a regime change on Sep, 1894. The Gabo Reform Government had an urgent demand to inviting a several councilor and sending student abroad by the government when they sent the Choson mission to japan for celebration of the Japanese victory in Sino-Japanese War. But these diplomatical policy absolutely ended in failure. Finally they could not help to refuse financial loan of 3,000,000 yen for reform fund. I had a main point that Choson was determinated to economical subordination under Japan by above these important facts.

Therefore as I originally research some characters of Gabo Reform, I have a conclusion that Gabo Reform Government have a consequent failure on ensuring subjective reformer and acquiring exterior independence by taking a defensive and passive tactics, and then they hōave run deeper and deeper into japanese economical satellization because of failing to perform a social integration for national unity from June 1894 to March 1895.

keywords _ Gabo Reform, Min lineage's regime Kim Hong Jip, Sino-Japanese War, Deliberative Council (Gunguk Gimucheo), a secret pro visional agreement (Chamjōng haptong chogwan), a Japanese-Korean Treaty of alliance (IL-Han yangguk maengyak)

Korea's Diplomatic Policy for Qing and the change of Korea-Qing Relation before and after Qing-Japan War

Eun, Jeongtae

Qing Dynasty's Diplomatic Policy for Joseon, before and after Sino-Japanese War, was more than a traditional 'investiture-tribute' relationship which showed a shape of the modern imperial country. Joseon executed an anti-Qing policy by 'Gyunse (均勢, similar to the Western balance of power) diplomatic policy' but when Joseon felt the crisis of the Dynasty's existence by Gyeongbokgung (景福宮) occupied by Japan, Joseon asked Qing Dynasty for 'protecting Joseon.' Though the 'dependent-state protectionism' disappeared by Qing's defeat at Sino-Japanese War, the pseudo- recognition which Qing does not regard Daehan imperial (大韓帝國) as a equal country as Qing had lasted until Korea-Qing Commercial Treaty was made. In Sept. 1894, Pyungyang battle, a major turning point of Sino-Japanese War, seeing that 'Big Country, Qing' was defeated and did violence, Dynasty and people gradually changed the view into 'negative for Qing' and 'positive for Japan.' In addition, As Korea-Qing Commercial Treaty which includes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ies was concluded in Sept. 1899, based on the advancing recognition on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and the beginning of Daehan Empire, the traditional East Asia International order saw the end.

After Sino-Japanese War, ‘Disregard Qing-Dynasty’ recognition was popularized among Gaehwapa (開化派, Open-the-Door Party)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intellectual who are influenced by civilization-enlightenment. Though Qing Dynasty was recognized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vertical hierarchy among Japan-Korea-Qing based on ‘Japan’s leading power’ was gradually concreted. In the background of changing recognition for Qing Dynasty, Korea-Qing Diplomatic relation of the Daehan empire, an Imperialistic shape, and Daehan Empire’s ‘Kwangmu Reform (光武改革)’ which goes after the MyungChi Reform (明治維新) was pursued.

keywords _ Sino-Japanese War, investiture-tribute system, Korea-Qing Commercial Treaty, Gando discourse, East Asia Solidarity

Concepts of East Asian order in the Japanese politics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Obinata Sumio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of trying to understand the Sino-Japanese War from a more global perspective rather than individual policy levels such as a policy toward Korea and a policy toward China.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nsider concepts of the East Asian order in the Japanese politics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based on the basic trend of the Sino-Japanese War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and tries to find out how Japanese political circles recognized the East Asia around the Sino-Japanese War period and what kind of concepts and policies on the East Asia they had. Specifically, Japan's Chinese policies and Korean policies as well as their correlation were examined through policy ideas and remarks of government officials around the Sino-Japanese War period. Based on the findings, analyses were made on recognition of the East Asia and concepts of the East Asian order in the politics of Japan as a background of the war. It was also analyzed how Japan's East Asian policy was presented as a result, and its historical position was examined. Especially, the

focus was placed on the fact that the key figures of the Japanese administration tried to form an idea of the East Asian order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led by advanced Western European countries. Some examples are the method to try to derive Japan's Korean policy from the U.K.'s Egyptian policy by comparing Korea to Egypt, and the idea of making Korea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which emerged as a plan to stabilize the point where interests of world powers are complicatedly involved.

This study covers the period from the Imo Incident through the assassination of Queen Min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Imo Incident, which seriously worsened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over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an issue to consider how the concept of the international order should be formed in the East Asia in the relationships of Japan, Qing, and Korea as well as the relations with the world powers in Europe and the U.S. involved in the conflict, and how Japan should face it. But the conflict between Japan and Qing basically “disappear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instead, a conflict between Japan and Russia over the Korean Peninsula became prominent. Remarkable increase of Russia'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riggered by the assassination of Queen Min. In order to make a projection for subsequent years, examination was conducted as to what kind of influence the new situat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had on the concept of the East Asian order, and what were the relation between the new concept and the conventional one. In general, the study was made on the concept of the East Asian order, which had been studied individually and fragmentarily,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by including the period after the Sino-Japanese War.

keywords _ Sino-Japanese War, Japan's Chinese policies and Korean policies, Imo Incident, Queen Min

The Qing Government's policy toward Japan on the eve of the Gabo Sino-Japanese War

Dai Dongyang

The paper investigates the Qing government's political and military operations from the upspring of Dong-hak party to the outbreak of the Gabo Sino-Japanese War. It indicates that the Qing government's policy toward Japan on the eve of the Gabo Sino-Japanese War was aggressive in the foreign affairs, although it was passive in military.

With the upspring of Dong-hak party, Chinese government sent troops to Korea with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Later, she dealt with relationships with Japan in full accordance

with the China-Japan's Treaty of Tien-tsin (天津條約). As the Japanese troops continued to surge in particular, the Qing government persisted in the principle of the "withdrawal of troops together," which was one article of China-Japan's Treaty of Tien-tsin. Therefore, the Qing government opened several negotiations with Japan, for example a talk between Yuan Shikai (袁世凱) and Otori Keisuke (大鳥圭介), the Japan's minister in Korea, and China's minister in Japan Wang Fengzao's talk with Japanese government in Tokyo. Both of them were not successful.

During the different periods, the Qing government continued to take adjustments and concessions as far as possible to avoid war when the Japan raised different conditions with different reasons. When Japan offered Mutsu Munemitsu's (陸奥宗光) three terms and the first letter of breaking off Japanese relationships with China, the Qing government's policy toward Japan once turned to the "against-Japan side." However, the Qing government still tried to resolve the crisi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he pinned the hopes on mediations of the West Powers. Finally, with the mediation of England, the Department (總署) took a talk with Komura Jutaro (小村壽太郎), the Japan's minister in China. But, for Japan this talk just was a half-hearted gestur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st, Japan carried out a sudden attack on the Chinese armed forces to start the war.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the Gabo Sino-Japanese War is a

war which was carefully planned and provoked by Japan because of Japanese ambitions.

The paper also introduces the studies of the Gabo Sino-Japanese War in China on four stages in the beginning of the paper.

keywords _ Treaty of Tien-tsin (天津條約), Yuan Shikai (袁世凱), Li Hongzhang (李鴻章), Mutsu Munemitsu (陸奧宗光), Komura Jutarō (小村壽太郎), Otori Keisuke (大鳥圭介), The protection of a vassal state (保護屬邦), withdrawal policy, Gabo Sino-Japanese War

The suppression of the Choson people by Japanese Military troops in the Sino-Japanese War

Focus on an illegality by Japanese Military troops

Kang, Hyosuk

At that time of the Sino-Japanese War, Japanese Intellectuals recognized the Sino-Japanese War as ‘the Civilization War’. However ‘Civilization’ means ‘International Law’ in here. British-Japanese Commercial Treaty signature on the 16th of July in 1894 meant that Japanese government must had to follow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the Sino-Japanese War. The Sino-Japanese War

had to be ‘the Civilization War’ of ‘a Justice’. This Ideology of ‘the Civilization War’ was used to use as a means of making voluntary cooperation possible for the external war (the Sino-Japanese War) among Japanese people bringing about nationalistic emotion, under the stage of the Sino-Japanese War in which the Ideology of an Emperor of Japan hadn’t yet penetrated to Japanese people.

In this paper, like this, Concerning the opinion which, at that time and still the present, insists the Sino-Japanese War regarding as the Civilization War compared to following wars, the author tried to reconsider the stature of the second Dong-hak Peasants War, shedding light on ‘illegal (=uncivilized)’ aspects of Japanese Military troop’s behaviors which were done during the second Dong-hak Peasant War which broke out in the close relation to the Sino-Japanese War.

The first dispatch of Japanese military troops by itself was illegal. The Japanese government dispatched Japanese military troops to Chosun without a consultation with Chosun government and the dispatched number of the Japanese military troops was also illegal number, compared to the protection of the Japanese legation and Japanese residents in Chosun.

The Japanese military troops continuously dispatched the construction battalion which set up electric wire for military purpose, the quartermaster corps, and the road reconstruction battalion which would be needed for making Chosun a commissary

base to wage the Sino-Japanese War, however, the dispatch of those battalions also was done ‘illegally’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Chosun government and each battalion had duty repressing Chosun people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as the Sino-Japanese War expanded, the duties were, by degrees, expanded to the protection of electric wire for military purpose and to repression of anti-Japanese Chosun people and of (Chosun) Peasant troops.

It was natural that Chosun people rose up against such Japanese military. The Japanese military thoroughly repressed Peasant troops to protect the information means which are electric wire for military purpose and the quartermaster corps, holding sway over victory and defeat of the Sino-Japanese War, this repression had already begun even before the Chosun government requested Japanese government to calm Peasant troops down.

On the 18th of October, the Chosun government’s official request to Japanese government to calm Peasant troops down also have been done but by Chosun government’s spontaneous request, but by Japan forcing Chosun government to request a reinforc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troops several times. This was accomplished on the 23rd of July, after the Japanese military had occupied (Chosun) Palace under the elaborate plan, confiscating all weapons of Chosun military troops.

On the 22nd of October, the quartermaster general of Incheon requested the quartermaster general of Chosun to dispatch

a ‘punitive expedition’ to repress peasants troops. On the same day, the quartermaster general of Chosun required a slaughter order that is ‘the removal of Dong-Hak Dang’ to be prudent.

He ordered to slaughter everyone afterwards. In this context, ‘Dong-hak Dang’ means not ‘military personnel’, but ‘general Chosun people’ who related to ‘Dong-hak’.

Above mentioned, illegality and violence of Japanese Military which are shown in the second Dong-hak Peasants War are stipulated in the text of law, Clause 1 Article 2 and Article 7 of 「people disposition ordinance in the occupied territory」 as the part of 『The preamble of International Law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which were completed on the 23rd of February in 1895. Japanese government had tried to be out o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further, to join in the rank of ‘a civilized nation’ by stipulating as ‘the law’.

keywords _ The second Dong-hak Peasants War, The Civilization War, The Sino-Japanese War, International Law, Illegally

| 찾아보기 |

ㄱ

가와카미 소로크[川上操六] 436, 454

가조약 46

갑오개혁 17, 18, 19

갑오개혁 정부 20, 21, 36, 40~42, 56, 59,
62, 74, 75

갑오정권 20, 49, 55, 62

개전 의뢰 위임장 45

건건록(蹇蹇錄) 261, 300

경복궁 36

경복궁 점령 21, 36, 38, 42, 49, 51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66, 268, 274,
332, 335, 347, 351

고문관 61, 66, 74, 77

고종 24~26, 37, 40, 51, 65, 93, 95, 98,
99, 107

공수동맹 97

광무개혁 109

구리노[栗野] 33

국제법 425, 456, 459~464

군국기무처 37~40, 45, 52, 64

김병시 37, 38

김옥균 88

김윤식(金允植) 37, 38, 44, 60, 86,
452~453

김홍집(金弘集) 29, 30, 37, 38, 40, 55, 60,
62

ㄴ

내정개혁 18, 21, 31, 33

내정개혁 요강 20개조 64

내정정리요강안(內政整理要綱案) 33

노인정 회의 34

농민군 탄압 421, 422, 425, 438, 441~448,
456, 459, 461~465

ㄷ

당소위(唐紹儀) 98~100

대원군 36, 37, 43, 51~55, 58, 60, 64

대한국국제 103

테니(Denny, O. N.) 90

동학관련판결선고서 429, 453

동학당 256~259, 269, 284, 293, 313, 351

ㄱ

로렌츠 폰 슈타인 154

ㄴ

만국공법 34, 81, 95, 97, 118, 124~125,
426~428

메이지[明治] 유신 82, 109

뮐렌도르프 146

무쓰 무네히쓰[陸奥宗光] 111, 151, 259,
261, 269, 282, 300, 318, 326, 335

문명담론 101, 104, 107

문명전쟁 424, 425, 428, 459~460

미야지마 세이이치로[宮島誠一郎] 139,
143~144

민간인 학살 445, 465

민비 살해 사건 166

민씨 정권 23, 75

민영익 89, 90

민영준(閔泳駿) 23, 25~27, 75, 91, 93

ㄷ

박영효 42, 63, 65, 72

박정양 38, 39, 57, 58

보병대사 56~58

보병사절 56

보아소나드 119~132

보호국화 21, 22, 61, 63, 66, 68, 74, 77

人

살광(殺光) 442, 445, 464

삼국간섭 22, 74, 163, 165

3국 동맹설 130

섬지초(葉志超) 28, 260, 263, 265, 282,
303, 310, 316, 327

속국 87, 88, 91, 99

속방(屬邦) 23, 32, 35, 82, 84, 94, 95, 107,
117, 133~135, 256, 267~268, 328, 330

속방론 122, 157, 160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 259, 269, 277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清三郎] 111

시모노세키조약 22, 97, 163

○

아관파천 98

아시아연대론 91, 104, 105

안경수(安駟壽) 37, 38, 51, 72, 93, 105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18, 130,

135, 137, 140~141, 151~152

양국 맹약 49, 51, 76

여서창(黎庶昌) 117, 139, 140, 142~144,
148

영세중립론 128

영세중립화 113, 130, 135, 136, 152, 174

오자와 히로아키[大澤博明] 113, 135

오키 다카토오[大木喬任] 127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32, 35, 270,
285, 300, 314, 331, 431

왕봉조(汪鳳藻) 260, 265, 269, 334, 343,
350

외교정략론 151, 152, 154

원세개(袁世凱) 24, 27, 28, 32, 75, 83, 88,
91, 93, 94, 258, 263, 269, 272

유길준 31, 38, 39, 42, 43, 59~62, 77, 92,
93

유인석 106

의증속약(議增續約, 경성조약) 290~292

의화군 58, 59, 77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62, 64, 66, 77,
117, 133, 135, 140, 143~150, 159

이노우에 고와시[井上馨] 117~123, 128,
133, 135~140, 149, 154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427

이준용 56~58

이집트 121~126, 160, 167~169, 174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60, 62, 111, 119,
133, 145, 149, 159, 170, 269, 296, 302,
304

이홍장 87, 94, 95, 261~263, 266, 268,
271~275, 281, 287~295, 300~305, 311,
316~318, 322~328

일·청 양국의 공동간섭론 31

일본군 421, 428, 430~435, 438, 441, 460

일조공수동맹 159

일조잡정합동조관 159

일청전역 국제법 전 454, 456~457, 463

ㄸ

자율성 20, 22

제정 차관 300만 원 68

제1차 철교서 250, 306, 313~314, 320, 351

제2차 동학농민전쟁 421, 457, 459~461,
463, 465

제노사이드(Genocide) 문제 425, 445

제물포조약 27

조공 112

조공국인 87

조병직 32, 37, 43

조선 변법 8개조 150

조선 사건에 관한 의견서 125

조선 사변 처분안 166

조선대국론 88

조선비청국지속국론(朝鮮非淸國之屬國論)

116, 118

조선정략 128

조일공수동맹 441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35, 87

조·청·일전쟁 464

중주권 76, 82, 83, 88

중립화론 92

ㄸ

차관조약 71, 72

친전조약 27, 93, 144, 149, 150, 153, 155,
256, 258~260, 265, 270, 271, 274, 279,
285, 291, 293, 295, 303, 313, 339, 341,
351

청·일 공동 철병책 150

청일동맹론 121, 127, 130

ㅋ

카시니(A. P. Cassini) 317, 332, 336, 338,

340, 342, 349

커존(Curzon, George N.) 170

E

타올성 18, 20, 22

표

폴란드 168, 169

ㅎ

학살 461, 462, 464

한성조약 149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83, 100, 102,
104, 108

합동조관 잠정(合同條款 暫定) 47, 50, 76

해위민중학살 465

홍계훈 25, 26

홍범(洪範) 14조 65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425

홍선대원군 36, 42, 51, 77, 9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초판 제1쇄 인쇄 2009년 4월 28일

초판 제1쇄 발행 2009년 5월 8일

지은이 왕현종, 은정태, 오비나타 스미오, 다이동양, 강효숙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17-4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